연구보고서 25-11

미측 고관세 부과 법령 분석 및 교역 현황 모니터링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연 구 진

<연구주관>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윤호성

<참여연구자>

연 구 원 김세라

연 구 원 구준회

연 구 원 한현선

1 서론

□ **2025년 미측은 보다 확장되고 강도 높은 무역규제가 예상되는바, 대표적인 對중 견제 및 보호무역 조치 관련 법령 파악 및 사례 수집·분석 필요**

○ 미국은 2018년 중국과의 무역분쟁 이후 자국우선주의 실행 수단으로 동맹국 및 對세계에 고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관세 부과 중

○ 미측의 무역수지적자 개선, 중국産 탈공급망, 우회수입 차단(불공정 거래)을 위해 시행 중인 관련 법령 조사하고, 반덤핑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1]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감소 지원 필요

- 미측 對중 견제(제재) 조치 및 대외 고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등 국가별 제재 대상이 물품에는 추가 관세(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수출 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증가

- 미측의 각 무역관련 규제(근거 법령에 의한 고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부인 시 고관세(보복관세 등) 부과가 예상됨

  ·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한-중연결공정제품은 고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으로 판정 가능성 존재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방지 조사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고관세 부과 법령 분석 : 232조, 301조, 201조, 122조,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 고관세 판정문(우회·회피·범위조사) 분석
- 우리 對미 수출현황 모니터링

□ 고관세 부과 법령 분석

○ 미측의 고관세부과 근거법령의 법령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

-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인 232조, 301조, 201조, 122조,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6개 법령의 내용, 제재 수단, 조사절차, 조사기관 등을 검토하고자 함

□ 고관세 판정문(우회·회피·범위조사) 분석

○ 미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회피 차단을 위한 미측 우회조사가 증가할 것을 대비, 해당 조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현재 232조, 301조, 비상경제수권법 등을 근거로 부과된 고관세 원산지 위반 사례는 공개되고 있지 않아,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판결문을 공개하는 우회·회피 조사 및 범위판정 판결문 분석
- 범위판정이란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임

[미국/EU/호주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자료 :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KITA 통상 리포트 2023.04)

□ 교역현황 모니터링

○ 미국 자국 산업 보호 조치 관련 무역규제 대상 물품[2]을 중심으로 미국 공급망 변화 분석, 중국·제3국·한국산 수입 규모(변화) 파악

- 우리측 對미 수출 및 對중 원재료 수입 추이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

2) 미측 232조, 301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중국 제재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3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 분석

□ 고관세 부과 법령 분석

○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직권 또는 정부부처의 조사를 등을 통해 동맹국 및 우방국을 포함한 대다수 교역국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3], 과거 사용되지 않던 법령들을 근거로 고관세 부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트럼프 취임 이후 주요 타임라인]

발표	발효	내용	관련 법령	행정명령 및 포고문 번호
25-01-20		▪ **트럼프 취임**		
25-02-01	25-02-04	▪ 중국에 대한 1차 펜타닐 부과(추가 10%)	IEEPA, NEA	EO 14195
25-02-01	25-03-04	▪ 멕시코와 캐나다 상대 관세 부과(25%)	IEEPA, NEA	EO 14193
25-03-06	25-03-07	▪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인하(10%)	IEEPA, NEA	EO 14231 및 EO 14232
25-02-10	25-03-12	▪ 철강, 알루미늄제품 및 파생상품 관세 부과(25%)	232조	Proclamation 10895 및 10896
25-02-10	25-03-12	▪ 러시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제재 (50% → 200%)	232조	Proclamation 10895 및 10896
25-03-11	25-03-14	▪ 타국산 철강을 활용하여 타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에 대해 철강 함유량에 따른 관세 부과(함유량에 따라 25%)	232조	Proclamation 10895 및 10896, 90 FR 12123
25-03-26	25-04-03	▪ 자동차(승용차, 소형트럭) 관세 부과 (25%)	232조	Proclamation 10908
25-04-02	25-04-05	▪ 상호관세 부과(명시한 국가 제외 기본 10%)	IEEPA,	EO 14257

3) 미측 연방관보에 따르면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157건이며, 포고문은 65건으로 고관세 부과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행정명령 및 포고문을 통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2025년 06월 16일 기준)

			NEA	
		▪ 주요국가: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베트남 46%	IEEPA, NEA	EO 14257 Annex 1
25-04-08	25-04-10	▪ 중국의 반격으로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4% → 84%로 50%p 인상	IEEPA, NEA	EO 14259
25-04-08	25-04-09	▪ 그 외 국가 상호관세 기본세율(10%) 적용 및 상호관세 유예	IEEPA, NEA	EO 14266
25-04-09	25-04-10	▪ 對중국 상호관세 인상(84% → 125%)	IEEPA, NEA	EO 14266
25-04-02	25-04-05	▪ 상호관세 제외품목 수정(전자기기)	IEEPA, NEA	EO 14257
25-04-02	25-05-02	▪ 對중국 de mininis 폐지	IEEPA, NEA	EO 14256
25-04-29	25-05-03	▪ 자동차부품관세(25%) 부과	232조	Proclamation 10925
25-05-12	25-05-14	▪ 미중 관세 합의로 중국 상호관세율 인하(125%→34%) 및 유예[보편관세(10%)+펜타닐관세(20%) 유지], De mininis 폐지 유예	IEEPA, NEA	EO 14298
25-05-20	25-05-16 **소급적용	▪ 캐나다, 멕시코 관세와 232조 관세는 중복 적용하지 않음. 철강/알루미늄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철강과 알루미늄 함유량 만큼 각각 중복 부과 가능	IEEPA, NEA, 232조	EO 14289 90 FR 21487
25-06-03	25-06-04	▪ 철강/알루미늄관세 인상(25%→50%, 멕시코/캐나다 포함) ▪ 영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신설(25%)	232조	Proclamation 10947 90 FR 25208
25-06-16	25-06-23	▪ 철강함유량 파생제품 세번 확대(HTS 8단위 기준 11개 세번)	232조	90 FR 25208

□ **현재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인 232조, 301조, 비상경제수권법 및 향후 근거 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는 201조, 122조, 338조에 대한 조사 절차, 제재 수단 및 권한, 관세율 등의 법령 내용을 검토함**

[미국 고관세 부과 법령 리스트]

별칭 (조항명)	실제 법	U.S. Code	주요 기관	내용 요약
Section 232	1962년 무역 확장법	19 U.S.C. §1862	상무부 → 대통령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한 대응 조치 가능
Section 301	1974년 무역법	19 U.S.C. §2411~§2419	USTR → 대통령	무역협정 위반 또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 가능
Section 201	1974년 무역법	19 U.S.C. §2251 ~ §2254	USITC → 대통령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조치 가능
Section 122	1974년 무역법	19 U.S.C. §2132	대통령	극제지급문제(무역수지 적자, 달러가지 하락 등) 발생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Section 338	관세법	19 U.S.C. §1338	대통령	미국에 대한 차별적 국외 조치(관세 및 무역장벽 등)에 추가 관세 부과 수입금지 조치 가능
IEEPA (국제비상수권법)		50 US Code §1701~§1708	대통령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 한하여 §1702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고관세 근거 법령 검토 결과

○ 고관세 부과를 받고 있지 않은 품목(산업) 확대 가능성 상시 존재

- 미측 대외 제재 근거 법령들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 및 차별, 국가 안보 위협, 무역수지 적자 및 환율 문제(국제지급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고관세를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제재 조치를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으나, 관련 조사 및 조치, 모니터링 현황 등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문, 조사 결과도 연방관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고관세부과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법령	발동 요건	주요 부처 (사전조사 여부)	조치	제재 기한	주요 사례
Section 232	국가 안보 위협 대응 조치	상무부 → 대통령 (상무부 조사)	관세 또는 수량 할당	제한 없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조치
Section 301	불공정 외국 무역 관행	USTR → 대통령 (USTR 조사)	관세, 무역 양허 철회/정지, 구속력 있는 합의	4년 후 자동 종료 (검토 후 연장 가능)	중국산 수입물품 1차~4차 리스트 대상 관세 부과
Section 201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USITC → 대통령 (ITC 조사)	관세 또는 수량 할당 (세이프가드)	일시적 구제 조치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 특정 산업에서 사용
Section 122	심각하고 대규모의 국제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대통령 (사전 조사 없음)	최대 15% 관세, 수량 할당	최초 150일 (의회 연장 가능)	사례 없음
Section 338	미국 상업에 불리한 차별 대응	대통령 (사전 조사 없음)	추가 관세 (최대 50%)	제한 없음	사례 없음
IEEPA (국제비상 경제수권법)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 (국가비상사태 선포 필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사전 조사 없음)	제재, 자산 동결, 수입 금지	선포된 관세 비상사태 기간에 따름	상호관세 (한국 15%, 중국 10% 등 국가별 상이)

-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고관세 부과 등을 명령하고 있어, 일정 기간 미측의 고관세 부과 및 대상 품목 확장 등의 일방적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측 대외 제재 근거 법령은 232조, 301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이며, 이들 법령은 관세부과, 수입제한(수량 제한 등), 양허 철회/정지 등의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122조,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은 사전조사 없이 대통령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우리 수출 물품의 고관세 부과 품목(산업) 증가 가능성 상시 존재함

  · 2025년 對세계 상호관세(한국 25%→15%/중국 34%→10%)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근거를 두고 있음

- 더불어 232조, 301조, 201조 등은 사전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관세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하나, 조사 부서(상무부, USTR, USITC)의 직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여 있어, 조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232조, 201조, 301조 등은 이해당사자의 청원 또는 조사 부서(상무부, USTR, USITC)의 직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 특럼프 행정부는 청원인에 의한 조사보다는 대통령 또는 조사 부서의 직권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령 조사 내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고관세 부과 예상 품목]

- 철강 및 알루미늄: 이미 25% 관세가 부과 중이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추가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관세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 핵심 부품도 별도 조사 및 관세 적용 대상
-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가안보 영향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큼
- 의약품 및 의약 원료: 국가안보 영향 조사 진행 중
- 목재 및 원목: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영향 조사 대상
- 구리: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착수
- 전자제품, 2차 전지 등도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주력 품목으로 타격이 예상됨

4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우회조사 사례 분석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우회·회피조사 및 범위판정 사례 분석**

-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우회조사
- CBP 반덤핑·상계관세 회피조사
- 상무부 범위판정 주요 내용 정리 및 사례분석

□ 개요

ㅇ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제도를 활용해오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생산·수출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우회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제도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DOC”)와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우회조사와 회피조사를 이원적으로 운용해 AD·CVD 명령의 기술적·불법적 회피 시도를 사전 차단하고 있음

- 상무부의 우회(circumvention)와 CBP의 회피(evasion) 조사는 모두 AD/CVD 명령의 효과 유지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성격에서 차이를 보임
- 상무부의 우회 조사는 제3국에서의 조립 또는 경미한 변경 등 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려는 기술적·구조적 시도에 초점을 맞춤. 즉 제도의 빈틈을 활용하는 기술적 방식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음
- 반면 CBP의 회피 조사는 환적, 원산지 허위 신고, 서류 조작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고의 회피 행위를 다루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1.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AD/CVD) 우회조사

□ 개요

○ 미국은 자국의 반덤핑·상계관세(AD/CVD) 명령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❶관세법 제781조(19 U.S.C. §1677j)와 ❷연방규정 19 CFR §351.226을 근거로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운영함

- 두 규정 모두 우회조사의 유형·개시 기준·판정 절차 등 기본 틀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조사 방식은 상무부의 재량에 따라 운용됨
- 19 U.S.C. §1677j는 우회 방지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조립·완성, 경미한 변경, 추후 개발 물품 등 다양한 네 가지 유형의 우회 행위를 규정함
- 19 CFR §351.226은 우회조사 개시 요건, 의견 제출 기한, 예비와 최종 판정 시한 등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령의 실제 집행을 지원함

[미국 반덤핑 우회 방지 제도의 법령·규정·기관 체계]

구분	명칭-조문	명칭·조문	연관기관
최상위 법률	관세법 제781조 (Tariff Act of 1930 §781, 19 U.S.C. §1677j)	• 미국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우회(circumvention) 행위를 규정하는 핵심 법적 근거. • 미국 내 조립·완성(Section 781(a)), 제3국 조립·완성(Section 781(b)), 경미한 변경(Section 781(c)), 추후 개발 물품(Section 781(d)) 등 4대 유형의 우회 방지 기준을 명시함 • 이 조항은 미국 연방법전(U.S. Code) 제19편 §1677j에 규정되어 있음	상무부
집행규정	연방규정집 19편 §351.226 (19 CFR §351.226)	• 상무부가 관세법 제781조에 근거하여 우회조사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행정규정. 우회조사 개시 요건, 이해당사자의 소명 절차, 예비판정 및 최종결정, 정보 제출·공개, 의견 진술, 판정 결과의 통지 및 소급 적용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규정함	

(2) 조사 절차

○ 우회조사는 상무부가 ①직권으로 개시하거나, ②수출업자, 수입업자, 미국 내 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공식 요청(청원)에 따라 개시함

- 청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상무부는 요청서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5~30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개시가 결정되면 상무부는 연방관보에 조사 개시 사실을 공고함
- 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는 최대 150일 이내에 예비 판정을 내려야 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예비 판정 결과는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됨
- 최종 판정은 개시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내려야 하고, 필요 시 최대 6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781조에 따라 우회 여부와 해당 제품이 기존 AD/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판정 내용과 그 사실·법적 근거는 연방관보에 최종 공개됨

(3) 우회 유형

○ 우회조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미국 내에서 완성·조립되는 경우, 둘째, 제3국에서 완성·조립되는 경우, 셋째, 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넷째, 기존 조사 이후 새롭게 개발된 물품(추후 개발 물품, 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하는 경우임
- 그 중 미국 내 완성·조립과 제3국 완성·조립은 근거 법령이 상이하지만,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짐

(4) 판정 요건(제3국 완성·조립 유형을 중심으로)

○ 제3국에서 완성·조립된 제품이 우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는 관세법 제781(b)에 규정된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림

- 수입 제품이 기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 상품과 '동일한 종류(same class or kind)'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제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나 부품이 실제로 제3국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함

- 또한 제3국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에 그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고려되며, 이를 위해 투자 규모, 연구개발(R&D) 수준, 공정의 복잡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평가함
- 이 과정에서 상무부는 특정 요소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회 여부를 판단함

[우회 유형별 정의 및 판정기준]

유형	정의	판정기준
① 미국 내 완성·조립	기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명령 대상국의 원재료를 제3국(미국)에서 수입 후 경미한 공정을 통해 최종 물품 생산	• 기존 반덤핑 명령과 동일 물품 여부 • 기존 반덤핑 명령 대상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제3국(미국) 내 생산공정의 경미성(▲투자규모, ▲R&D 수준, ▲생산공정의 특성, ▲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 등의 요건을 확인) • 기존 명령 대상국 원재료 가치 비중 • 추가 고려 요소(▲무역 패턴 변화, ▲특수관계 여부, ▲제3국(미국)의 명령 대상국 원재료 수입증가)
② 제3국 내 완성·조립		
③ 경미한 & 사소한변경	물리적 특성에 사소한 변경만을 가하여 명령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형태나 외관상 경미한 변경을 가한 물품 및 경미한 가공을 거친 원료 농산물도 포함될 수 있음)	• 기존 반덤핑 명령과 동일 물품 여부 • 최종사용자의 기대 • 물품의 용도 • 유통(마케팅) 경로 • 수입 물품의 총 가치 대비 변경 비용 • 추가 고려 요소(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시점 및 물량 등)
④ 추후 개발 물품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after an investigation is initiated) 개발된 물품을 의미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후속 개발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 기존 반덤핑 명령과 동일 물품 • 최종구매자가 기존 명령 대상물품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용도 • 유통 경로 • 광고·전시 및 진열 방식

자료 : 19 U.S.C. §1677j, 19 CFR §351.226 및 우회조사 가이드의 내용 정리

2. CBP 반덤핑·상계관세 회피(Evasion) 제도

(1) 개요

- ㅇ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 및 집행법(TFTEA,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제421조를 통해 새로운 행정 절차인 무역집행 및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 EAPA)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2016년 공식 발효됨. 이 조치로 인해 CBP는 반덤핑·상계관세(AD/CVD) 명령의 회피 혐의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됨
  - EAPA에 따라 CBP는 AD/CVD 회피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됨
  - EAPA는 기존에 AD/CVD 조사를 담당하던 미국 상무부(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절차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주요 조사 대상은 원산지 허위신고, 송장 조작, 제품 구성 은폐 등 AD/CVD 명령 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위임
  - 19 CFR Part 165는 EAPA 집행을 위한 구체적 이행 규정으로서 2016년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고 있음

(2) 회피조사 절차

- ㅇ 회피조사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가 회피 의혹을 제기하는 신고서(allegation)를 제출하면서 시작됨.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CBP의 e-Allegations 시스템 또는 승인된 방식으로 전자 제출해야 함
- ㅇ (개시) CBP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고 회피 의혹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개시함
- ㅇ (예비) 조사가 개시되면 CBP는 서류 요청, 현장조사, 행정·전자 기록 검토 등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수단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함. 그리고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피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인정되면, CBP는 보증금 납부 요구 등 잠정조치(interim measures)를 부과할 수 있음

ㅇ (최종) CBP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00일(복잡한 사건은 360일) 이내에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근거해 해당 수입품이 회피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림. 회피가 인정된 당사자는 이의제기(행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CBP EAPA 조사 일정]

구분	주요내용
0일[4]	조사 개시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달력일 기준)	회피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판단 및 잠정조치(interim measures) 발령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300일 이내	AD/CVD회피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또는 기한 연장 통지
조사가 매우 복잡한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360일 이내	AD/CVD회피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3) CBP의 EAPA 회피(evasion) 조사 현황

ㅇ CBP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기준으로 '중간 조치(interim measures) 및 최종 판정' 단계에 진입한 EAPA 사례는 총 405이며. 이 중 379건이 제3국을 경유한 환적(transshipment scheme)을 통한 회피와 관련되어, 회피 행위의 대부분이 중국 등 제재 대상국에서 직접 수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해 간접 수출되는 형태임을 보여줌

ㅇ 아래 현황표는 중국이 실제 또는 추정 원산지로 분류된 272건의 EAPA 회피 조사 사례에 대한 환적국 분포 및 회피 수법 유형을 시각화한 것임

- 주요 환적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한국 등이 확인되며, 회피 방식 중 단순 환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중국산 제품이 실질적 가공 없이 또는 추가 가공 후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며 AD/CVD 회피 목적의 원산지 허위신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4) CBP는 신고 접수 후 언제든지 신고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에 적법하게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상무부(DOC)에 심의 요청을 제출할 수 있음. CBP는 심의 요청일자를 조사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함. 상무부의 심의 및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CBP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CBP는 상무부의 결정 내용을 조사 당사자에게 통지함. 기한 및 통지 요건은 조사 당사자에게만 적용됨

[EAPA 회피 조사 현황 및 회피 수법 유형]

Cases by Country of Transshipment

Malaysia	104
South Korea	40
Thailand	40
Mexico	30
Vietnam	30
No Transshipment	26
Taiwan	26
India	25
Other Countries*	19
Cambodia	18
Indonesia	13
China	12
Dominican Republic	11

Cases by Primary Evasion Scheme

Failure to Pay AD/CVD Duties	8
Misclassification	14
Transshipment	379
Undervaluation	1

[중국이 실제 또는 추정 원산지로 분류된 회피 사례 및 환적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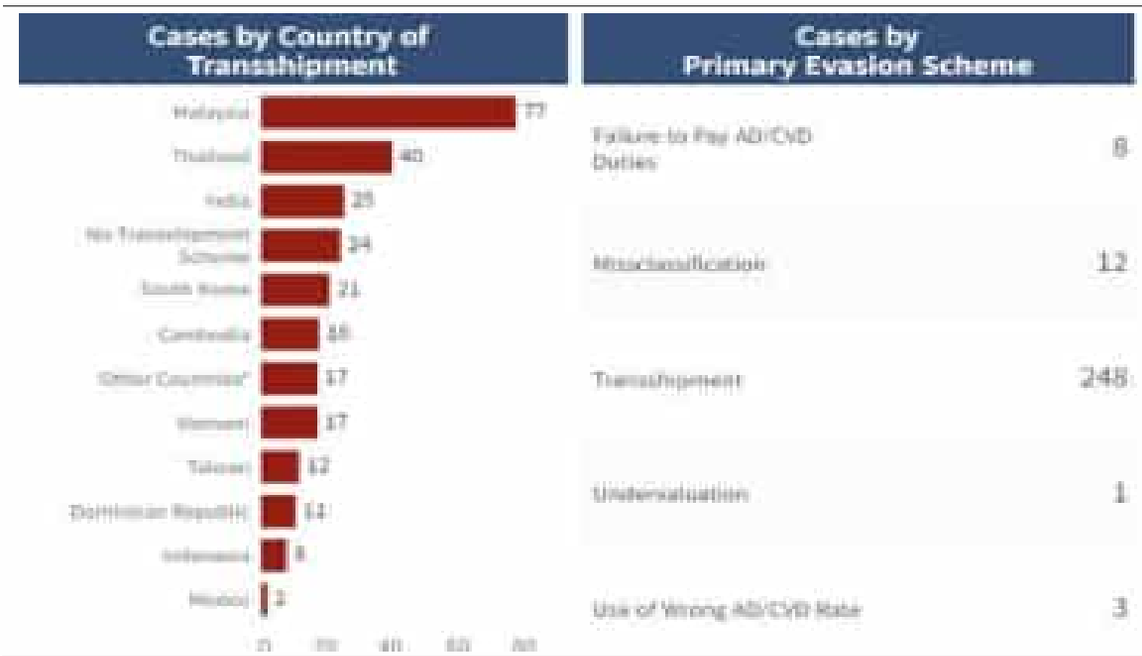

자료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APA Statistics & Notices of Action,” CBP.gov (2025년 6월 6일 기준)

3. 상무부·CBP 우회·회피 조사 사례 분석

○ 상무부 우회조사 18건, CBP 회피 사례 7건 각각 분석함

[상무부 우회조사 및 CBP 회피조사 사례 목록]

상무부 우회조사(18건)			CBP 회피조사(7건)		
명령 번호	결정일	물품명	명령 번호	결정일	물품
A-570-029	18.05.23	**냉간압연강재(CRS)**	A-570-082	23.12.22	특정 휠
A-570-026	20.07.13	**부식방지강(CORE)**	A-570-918	17.08.14	옷걸이
A-570-943	21.11.19	**유정용 강관**	A-570-836	22.07.22	글리신
A-570-910	23.11.02	**원형용접탄소강관**	A-570-092	24.09.19	매트리스
A-570-112	24.01.23	**스테이플**	A-570-139	25.06.30	이동식 작업장비 (리프트 등)
A-570-967	19.05.17	알루미늄 압출제품	A-570-062	24.05.29	주철 이음쇠

A-570-053	23.11.17	알루미늄 포일	A-570-992	25.09.15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A-570-095	25.1.23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A-570-900	19.07.10.	**다이아몬트 톱날 및 그 부분품**			
A-570-051	23.07.20	**하드우드 및 장식용 합판과 베니어 패널**			
A-570-979	23.08.18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A-570-051	19.11.12	나무 합판			
A-570-967	20.03.03	**알루미늄 압출제품**			
A-570-124	23.02.21	**듀얼(이중) 피스톤 엔진**			
A-570-124	22.12.09	**60cc 이상 99cc까지의 수직축 엔진**			
A-570-831	24.06.07	**중국산 IQF(개별급속냉동) 소형·대형 마늘 조각**			
A-570-104	24.08.02.	**무나사 핀**			
A-570-022	24.08.02.	**비도공지 인쇄용지**			

(1) 상무부 우회조사 사례분석 결과

① 개요

- 2011년 이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시스템 ACCESS*에는 약 30여 건**의 중국 관련 우회조사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 ACCESS는 AD/CVD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공개하며 관리하는 공식 플랫폼임

  ** 본 수치는 사건번호(case number)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하나의 사건번호 안에 복수의 우회조사가 병행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케이스 단위로 산정함(2011년부터 2025년 4월 기준)

- 이 가운데 총 18건을 선별해 분석을 진행했으며, 해당 사례들은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11건, 추후 개발 물품 3건, 경미한 변경 2건, 미국 내 조립·완성 2건으로 구성됨

○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우회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원재료 및 중간재의 주요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쟁점에 자주 등장하며, 한국 역시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해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 과정에서 유사함 우회조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상무부 우회조사 총 18건 목록]

유형	명령 번호	결정일	물품명	한국 관련
제3국 조립·완성 (11건)	A-570-029	2018.05.23	냉간압연강재(CRS)	●
	A-570-026	2020.07.13	부식방지강(CORE)	
	A-570-943	2021.11.19	유정용 강관	
	A-570-910	2023.11.02	원형용접탄소강관	●
	A-570-112	2024.01.23	스테이플	
	A-570-967	2019.05.17	알루미늄 압출제품	
	A-570-053	2023.11.17	알루미늄 포일	●
	A-570-095	2025.01.23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
	A-570-900	2019.07.10	다이아몬트 톱날 및 그 부분품	
	A-570-051	2023.07.20	하드우드 및 장식용 합판과 베니어 패널	
	A-570-979	2023.08.18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추후 개발 (3건)	A-570-051	2019.11.12	나무 합판	
	A-570-967	2020.03.03	알루미늄 압출제품	
	A-570-124	2023.02.21	듀얼(이중) 피스톤 엔진	
경미한 (2건)	A-570-124	2022.12.09	60cc 이상 99cc까지의 수직축 엔진	
	A-570-831	2024.06.07	중국산 IQF(개별급속냉동) 소형·대형 마늘 조각	
미국 내 조립·완성 (2건)	A-570-104	2024.08.02	무나사 핀	
	A-570-022	2024.08.02	비도공지 인쇄용지	

② 우회조사 사례 분석(제3국 완성·조립 유형을 중심으로)

ㅇ 사례 분석 결과, 미국 상무부는 우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우선 검토하였는데, 첫째, 최종 수입 제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과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둘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기존 제재 대상국인 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두 가지 전제조건은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회조사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위 두 조건이 충족된 이후, 상무부는 제3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국 공정의 기술적 복잡성, 투자 규모, 생산설비 규모, 연구개발 활동 수준, 공정 단계의 특성, 부가가치 비중, 최종 제품 가치에서 기존 제재국 물품(중국산)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중국산 원재료 비중이 높고 제3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제3국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이 수행되었더라도 제품의 본질적 특성과 기능이 중국산 핵심 부품이나 중간재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로 판단하여 우회에 해당한다고 봄

ㅇ 특히 산업 구조상 완제품과 중간재가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더라도, 제품의 핵심 성능이 중국산 구성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우회 판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무부 우회조사 제3국 조립·완성 유형 주요내용 정리]

구분	알루미늄 포일	유정용 강관	원형용접탄소강관	스테이플
Case no	A-570-053 C-570-054	A-570-943 C-570-944	A-570-910 C-570-911	A-570-112 C-570-113
경유국	한국	브루나이·필리핀	베트남(韓기업의 해외 법인)	태국
조사 개시	22.07.18 (직권)	2020.11.12 (직권)	2022.08.04 (청원)	2022. 12. 21[5] (청원)
명령 발효 (AD/CVD)	2018.4.19 (AD/CVD)	2010.05.21 (AD/CVD[6])	2008.07.22 (AD/CVD)	2020.07.20 (AD/CVD)

최종 판정일		2023.11.17	2021.11.19	2023.11.02	2024.01.23
대표 HS code		7607.11.3000 외 다수	7304.29.1010 외 다수	7306.30.1000 외 다수	8305.20.0000
주요 판단 요건	동일 물품 여부	기존 알루미늄 포일과 동일	기존 OCTG와 동일	기존 CWP와 동일	기존 스테이플러와 동일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중국산 시트·포일 사용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HRS) 사용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HRS) 사용	중국에서 제조된 철선(steel wire) 및/또는 와이어밴드(wire band) 사용
	투자 수준	일정 부분 인정 (장기투자 및 인력 고용)	중국의 통합 생산시설(평균 36억 달러) 대비 미미하다고 판단	중국의 통합 생산시설(평균 36억 달러) 대비 미미하다고 판단	중국의 통합 생산시설(평균 36억 달러) 대비 미미하다고 판단
	R&D 수준	일정 부분 인정 (장기간 R&D 활동 수행)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업체별 상이 (일부 보고 되었으나 영향 미미)
	생산 공정	제3국 공정이 중국산 중간재 생산 공정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제3국 공정이 중국산 중간재 생산 공정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제3국 공정이 중국산 중간재 생산 공정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제3국 공정이 중국산 중간재 생산 공정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생산 시설 규모	일정 부분 인정 (상당한 시설 규모 및 인력고용)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HRS) 생산 시설보다 규모가 작음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HRS) 생산 시설보다 규모가 작음	중국 통합형 설비 대비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음
	제3국 가공 가치 및 원재료 7)	제3국 부가가치 작은 비중, 중국산 원재료 약 68.5%8)	제3국 부가가치 작은 비중, 중국산 원재료 약 70%9) 이상	제3국 부가가치 약 28.4%(작은 비중), 중국산 원재료 약 71.6%10)	제3국 부가가치 작은 비중, 중국산 원재료 상당 부분 (비공개 정보에 분류)

적절성 (추가)	무역 패턴 변화	中→美 포일 −66.2%, 韓→美 +973.7%; 韓의 中산 시트 +83.4%, 포일 +91.9%	美 수입: BRU 0→35,796톤, PHL +53.2%; 中→BRU HRS +5,145.6%, 中→PHL +170.6%	中→美 CWP −16.2%, VNM→美 +8.2%, 中→VNM HRS +1.7%	中→美 −45.23%, THA→美 +69,897.8% (16.07-19.06 대비 19.07-22.12)
	원재료 수입 증가 여부	韓의 對中 수입 급증	BRU/PHL의 對中 수입 급증	VNM의 對中 수입 증가	THA의 對中 수입 급증
	특수관계 여부	해당없음[11] (※일부 업급)	해당	해당없음	해당

(2) CBP의 주요 회피(evasion) 조사 사례

① 개요

○ CBP 회피조사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산 원재료·중간재가 제3국을 경유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된 구조를 보이며, CBP는 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 여부, 실제 생산능력, 무역 패턴의 변화, 가격 과소신고(undervaluation) 여부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활용함

5) 연방관보 게재일임
6) 상계관세는 2010년 1월 20일에 발효
7) 동 요소들과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DOC)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후 자체적으로 법적·경제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체분석을 수행함
8)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직접 산출한 수치가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알루미늄 포일 예비 산업피해 보고서(AD/CVD)」에 근거한 것임.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원재료 비용은 총 매출원가(COGS)의 최대 6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USITC Pub. 4684 (May 2017) (hereinafter, *USITC Preliminary Aluminum Foil Report*)
9) 이 수치는 미국 상무부의 직접 산출치가 아니라, 미국 내 이해관계자(Domestic Interested Parties)가 ITC 보고서, 무역 통계 및 OECD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수치임
10) 이 수치는 미국 상무부의 직접 산출치가 아니라,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무역 통계 및 ITC 보고서를 근거로 자체 분석하여 제출한 주장
11) 한국 알루미늄 포일 수출 기업과 중국 공급업체 간 직접적인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중국 기업의 한국 내 투자 활동은 우회 조사 개시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음

- CBP 회피조사는 상무부 우회조사와 달리 생산공정의 '경미성(minor processing)' 여부나 복잡한 가치비중 분석보다, 공급망 구조, 생산능력, 특수관계, 환적 여부 등 사실관계에 기반한 실질적인 증거 중심의 논리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

- CBP 주요 회피 조사사례로 총 7건을 선발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CBP 회피조사 7건 목록]

· 제재국 부품에 제3국의 단순 조립을 더한 환적 방식으로 AD/CVD를 피하려 한 특정 휠
· EAPA 제도 최초 판정으로 기준을 확립한 옷걸이
· 중국 본사-제3국 제조법인-미국 수입업체 간 지배구조형 회피가 드러난 글리신
· 한국 기업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된 매트리스
· 유럽 경유 환적 구조가 확인된 이동식 접근장비
· 단순 환적과 가격 조작이 결합한 주철관·이음쇠
· CBP 회피조사와 상무부 우회판정이 연계적으로 작동한 MSG

↓

구분	특정 휠	옷걸이	글리신	매트리스	이동식 장비	이음쇠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선정 이유	실질적 변형 기준 확립 (CIT 확정)	EAPA 최초 회피 판정	중국과 제3국 국가간 지배구조형 회피 전형	한국 기업 직접 대상	유럽 경유 회피 구조	환적·가격조작 복합형	CBP-상무부간 협업, 상무부 우회판정 ↓ CBP 판정 영향 미침
Case No	7509	7175	7647	7856	7950	7819	7950
경유국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명령 발효	2019.5.24	2008.1	2017	2019	2021	2018	2008
조사 개시	2020.8.18	2016.10.11	2021.10.26	2023.11.17	2023.12.20	2023.7.26	2024.4.1
최종 판정	2023.12.22. (법원 2025.2.21)	2017.8.14	2022.7.22	2024.9.19	2025.6.30	2024.5.29	2025.9.15

반덤핑/상계관세	A-570-082 C-570-083	A-570-918	A-570-836 C-570-081	A-570-918	A-570-836 C-570-081	A-570-092 C-570-128	A-570-992

② CBP의 주요 회피(evasion) 조사 사례(EAPA Case 7509 - 특정 휠[12])

구분	특정 휠
사건번호	A-570-082 / C-570-083
조사번호	No. 7509
조사국가	태국(Thailand)
조사착수일	2020.08.18 (CBP EAPA 조사 개시)
최종판정일	2023.08.21 (CBP 최종 회피 판정), 2023.12.22 (CBP 행정재심 결정)
대상기업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oration (미국 수입업체) Asia Wheel Co., Ltd. (태국 제조업체)
제보자	Accuride Corporation, Maxion Wheels Akron LLC (미국 내 휠 제조업체)
조사 배경	• 미국 일부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디스크(disc)와 제3국산 강판으로 성형된 림(rim)을 태국에서 용접해 '태국산'으로 신고·수입하고 있다고 회피 의혹을 제기함 • CBP는 태국에서 최종 완성된 제품이 기존 AD/CVD 명령 범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상무부에 범위 판정을 회부함 • (쟁점)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은 혼합 원산지 물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 림과 디스크가 모두 중국산이어야만 해당되는지, (2)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중국산이어도 해당되는지 (3) 혼합 원산지 제품(중국산 부품+제3국산 부품)은 포함되는지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상무부에 범위 판정을 요청함

DISC		RIM		WHEEL
디스크는 중국 내 업체에서 절단 및 성형되어 완제품 형태로 태국 Asia Wheel로 수출됨.	+	림은 태국에서 성형되었으며, 사용된 직사각형 강판은 대부분 중국산이었으며, 일부는 제3국에서 공급됨	=	디스크와 림은 태국에서 및 도장되어 조립되었고, 최종 포장을 거쳐 미국으로 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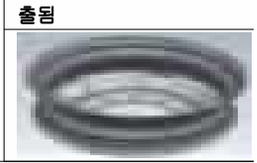

자료 : Slip Op. 25-18, Asia Wheel Co., Ltd. v. United States, Court No. 23-00143 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Feb. 21, 2025), 일부 각색 및 요약.

1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force and Protect Act ("EAPA") Case Number 7509: Certain Steel Wheel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Public Document, December 22, 2023.

판정 결과	상무부는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국에서의 가공 공정(용접 및 도장)은 중국에서 이미 진행된 공정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범위 내 물품으로 판정하였고, CBP도 상무부의 범위 판정을 근거로 AD/CVD를 회피한 것으로 결론지음

4. 상무부 범위 판정 및 사례 분석

(1) 개요

ㅇ 범위판정은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 여부(in scope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임

- 모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는 절차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정의하는 서면 설명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서면 설명은 명령의 범위를 정의하며, 내용에 포함되는 제품은 “범위 내” 제품이 됨
- 범위판정은 명령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심사 등 다른 절차와 독립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월 범위판정 신청 접수 현황을 고시하고 있음
- 범위판정과 관련된 규정은 19 CFR 351.225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2021년 9월 20일 대폭 개정되어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신청절차

ㅇ 상무부는 범위판정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범위판정 신청의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함

- 범위판정 신청이 미비하거나 기타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부는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상무부가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해 언제든지 완결된 신청서를 재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모든 문서는 영어 번역본과 원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① 신청서 구성

- ㅇ 범위판정 신청서는 총 다섯 개 절로 구성되며 제I절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며, 제II절에는 신청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
- ㅇ 제III절에는 제품의 원산지 관련 정보가, 제IV절에는 신청 취지와 관련 설명이 기술됨. 마지막 제V절에는 신청인이 이해당사자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출됨
  - 제II절, 제III절, 제IV절, 제V절에는 해당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항목		주요 내용
제I절	일반 정보	신청 목적, 첨부 문서 목록,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내용 기재
제II절	제품 정보	제품 설명과 관련되며 제품이 실제 생산 중임을 확인하는 정보
제III절	원산지 정보	제품의 원산지 및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과 관련된 정보
제IV절	제품 수입	신청서 제출일 현재 조사 대상 제품이 소비용으로 이미 미국 관세영역에 들어왔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제V절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에 대한 정보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에 관한 기본 정보와 신청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② 제출 방식 및 자료 보호 처리

- ㅇ 모든 제출물은 원칙적으로 상무부의 ACCE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동 제출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됨
- ㅇ 상무부는 범위판정에 제출된 자료를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PI)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③ 검증 및 주요 참고 자료

- ㅇ 상무부 범위판정 결과는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송달시스템인 ACCESS (https://access.trade.gov)에서 2011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범위 설명 및 과거 판정 (https://legacy.trade.gov/enforcement/operations/scope/index.asp)
- ACCESS 시스템(https://access.trade.gov)
- 사례 목록(https://access.trade.gov/caseinfo.aspx)
- 집행준수국(https://www.trade.gov/us-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ies)
- APO 관련 정보(https://access.trade.gov/Resources/Administrative_Protective_Order.aspx)

○ 범위판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정의		**○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임** - 범위판정은 (1)이해당사자(기업 등) 직접 신청 또는 (2) 상무부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 §351.226) 진행 중에도 병행/통합 검토 가능(§351.225(d)(2), (i)(1))
법정 근거		**○ 법적 근거: 19 CFR 351.225** - (관련문서)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 및 표준 신청서 공식 게재(홈페이지)
신청 방법		**○ (신청)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 ※ ACCESS 시스템(※ https://access.trade.gov) ※ (예외) 500페이지 초과·50MB 초과 파일, ACCESS 장애 등 일부의 경우 직접 제출 가능 - 서류 불완전 및 번역 누락 시 신청서 반려(서류 보완 후 재제출 가능) **○ 언어 : 영어(번역문에는 원본 사본 반드시 첨부)**
신청 절차		**○ 서류가 접수되면 상무부는 30일 내 검토 및 수리 → 사실관계 검토 → 120일 내 판정 발표** - 단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 총 300일 이내에 최종판정[13] **○ (공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범위 내/외’ 결정 공표**
범위 판정 신청서 구성		**○ 5개 절 구성(제II~IV절 해당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요구됨)** - 제I절 : 일반 정보(신청 개요, 첨부 문서 목록, 신청 목적 및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 제II절 : 제품 정보(공개 목적용 제품 정보 및 비공개 상세정보(생산이력, 생산량, 제조공정도 등), 마지막으로 해당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근거) - 제III절 : 원산지 정보(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IV절 : 제품 수입(미국 관세영역 반입 여부 등) - 제V절 :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신청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 및 관련 사실 기재)
범위	최우	**○ (범위판정) 원칙적으로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서면 설명이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1차 및 2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음**

<table>
<tr><td rowspan="3">판단기준</td><td>선고려사항</td><td>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1차 자료</td><td>•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td></tr>
<tr><td>2차 자료</td><td>•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td></tr>
</table>
</td></tr>
<tr><td>추가고려요건</td><td>ㅇ 서면 설명만으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이 명령의 "범위 내(in-scope)"인지 여부를 결정함
-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제품의 최종 용도
- 최종 사용자의 기대
- 거래 경로
- 제품이 광고 및 전시되는 방식
※ 이 중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td></tr>
<tr><td>원산지</td><td>ㅇ (원산지) 상무부 AD/CVD 범위를 판단할 때 필요 시 19 CFR 351.225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이때 CBP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별개로 요건 및 독립적인 권한을 가짐
- 범위판정 시 원산지 판단 기준
・최종 완제품이 원재료 제품과 다른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인지 여부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 완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인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제3국에서의 가공 성격 및 복잡성 수준
・제3국에서의 투자 수준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원산지 판단 시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장소를 고려할 수 있음</td></tr>
<tr><td colspan="2">주요 참고 사이트</td><td>ㅇ (과거 명령)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 및 범위 판정 기준에 관한 과거 사례·설명 자료
(https://legacy.trade.gov/enforcement/operations/scope/index.asp)
ㅇ ('11년 8월 ~ 現) 11년 8월 5일 이후 내려진 범위 결정은 상무부 전자기록시스템인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송달시스템(ACCESS)을 통해 제공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entralized Electronic Service System, ACCESS
ㅇ 행정보호명령(APO) 관련 정보
(https://access.trade.gov/Resources/Administrative_Protective_Order.aspx)</td></tr>
</table>

13) §351.225(e)(2)

(3) 범위판정 사례

① 업체 주장 (GPI 식품 원료)

○ 캐나다 GPI는 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은 중국산 잔탄검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아밀레이스 효소 비활성화 등 독자적인 가공 공정을 거쳐 본질적으로 다른 식품 원료로 재가공된 제품이라고 주장함

○ GPI는 캐나다 내 독자적 공정 적용, 최종 제품의 화학·구조적 특성 변화, 특정 고객 맞춤형 기능을 갖춘 특수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제품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범위판정을 상무부에 요청함

○ 또한 기존 사례를 Trendium Pool Products, TMB 440AE 인용하며, 자사 제품은 기존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② 주요 쟁점 및 판정내용

○ 상무부는 19 CFR 351.225(k)(1)에 따라 명령의 범위에 관한 서면 설명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GPI의 주장(공정 특성, 물리적 변화, 최종 용도, HTSUS 분류 등)은 범위 문구의 해석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함

- 상무부는 잔탄검의 명령의 범위가 화학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GPI 제품의 화학 구조는 이 정의와 정확히 일치함
- 업체가 주장하는 아밀레이스 효소 비활성화 등 가공 과정은 화학 구조 변화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음 → 따라서 물리적 형태·점도·고객 맞춤형 특성 등이 달라 보이더라도 근본적 화학 구조가 동일하므로 범위 대상으로 봄
-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혼합, 재포장, 단계 축소 등 단순·경미한 가공(minor processing)에 불과하며 원료 잔탄검의 핵심적 성질을 바꾸지 못한다고 평가함
- 또한 원가 분석에서도 잔탄검의 기여도가 가장 높아, 업스트림 원료(중국산 잔탄검)가 제품 본질을 지배한다고 판단함

[GPI 잔탄검 범위 판정 핵심 쟁점 및 상무부 판단]

구분	GPI의 주장	미국 상무부의 판단
제품 등급/종류	자사 제품은 여러 원료가 결합된 가공품으로 중국산 잔탄검과는 다른 등급 및 용도를 가지며, 특정 HTSUS 코드(예: 제2106.90.9898호)로 분류되어야 함	• 원료 잔탄검과 GPI 제품 모두 명령 대상 범위에 기술된 화학적 구조에 해당하므로 등급/종류가 동일함. 캐나다 공정은 원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함 • HTSUS 분류는 행정적 편의이며 서면 설명이 결정적이므로 GPI의 주장은 영향 없음
물리적 특성	혼합 및 가공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제품 형태가 달라졌으며,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했음	• 화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 제시 부족.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등 물리적/기능적 변화는 경미한 수준이며, 효소 유무는 범위 문언상 결정 요소가 아님 • 명령 문언은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되므로 물리적 특징 변화는 중요하지 않음
최종 용도	• 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은 특정 고객의 최종 용도에 맞게 개조된 제품이며 일반 잔탄검과 동일하지 않음 • 아울러 초기 ITC 산업 피해 보고서에 자사 제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해당 제품들은 동일 업종인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 사용되며 잔탄검으로 표기되므로 최종 용도 측면에서 잔탄검과 다르지 않음. ITC 역시 최종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 • 상무부는 ITC 보고서에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ITC가 피해 보고서에서 관련 제품을 광범위하게 검토했으며, GPI 제품의 용도가 ITC가 검토한 '식품 및 음료 등급' 잔탄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대상 제외 주장을 거부함
가치 및 원가 구조	자사 제품은 고객 맞춤형으로 잔탄검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평균값 산출은 무의미하며, 생산 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GPI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최종 제품의 생산 원가 및 부가가치가 중국산 잔탄검 투입량의 상당 부분을 변형시키지 못함. • GPI 제품의 총 원가에서 잔탄검 원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
생산 공정의 복잡성	• 자체 개발한 공정'으로 잔탄검의 변형을 주장 • 최종 용도에 따라 배합됨	• 원료 잔탄검 생산은 세균 보존, 여과 등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반면, GPI 공정은 특정 단계(예: 3단계)만을 거치므로 원료 생산이 GPI의 최종 제품 생산보다 더 집약적이고 정교하다고 판단
투자 수준	캐나다 시설에 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함	• 최종 제품과 원료 잔탄검 제품 간 투자 수준 비교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중립적 요소로 처리. 해당 주장 입증 책임은 GPI에 있음

실질적 변형 여부	특정 공정을 거쳐 물품의 명칭, 성질, 용도가 변형되어 원산지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판례를 인용	• GPI가 인용한 판례는 주로 CBP 판정과 관련되며, 상무부는 19 CFR 351.225(j)를 주로 적용함 • 상무부는 CBP 등 타 기관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고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 GPI가 자사 제품을 "우수한 잔탄 원료 또는 제품"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이 잔탄검임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강조함

5 고관세 대상 품목 대미 수출 현황 모니터링

□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변화**

○ 트럼프 1기 행정부(2018~2020년)에서 중국의 불공정무역, 지재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대규모 관세 부과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하여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함

- 무역확장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 국가 안보를 근거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시작(2018.03~)
-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 중국의 시장 왜곡/보조금 지급/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보고, 중국산 제품에 7.5~25% 추가 관세를 적용함(2018.07~)

○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받아 관세조치를 유지함

○ 트럼프 2기 행정부(2025~현재)에 들어와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고(25%→50%), 무역법 제301조 기반 관세를 종전 7.5~25%에서 7.5%~100%로 확대함

- 대통령의 포고령(proclamation 9704, 9705, 9980, 10895, 10896, 10947)을 통하여 세율을 명시함

-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경우 철강 또는 알루미늄의 파생상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은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호관세를 부과함
- 무역법 제301조는 기존 품목에 반도체 등 민감 품목을 추가하고 세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함

o 이와 더불어 중국에 대하여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등을 중첩 부과하고 있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반덤핑(AD) 관세 부과까지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의 우회수출 확산과 한국의 리스크 증가**

o 미국의 관세 강화 속에서 중국 기업은 ① 우리나라·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② 제3국 내 생산 후 미국 수출 방식으로 관세 회피를 시도하고 있음

o 미국은 DOC(상무부)의 우회(circumvention) 조사, CBP(관세국경보호청)의 회피(evasion)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산으로 판정되거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ex-'한국산 김치 중국산 판정' 사례 등)

o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렵고, 만약 미국내 유관 기관이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정할 경우 우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모니터링 품목 선정 기준**

o 우회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반덤핑(AD)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심으로 2단계 절차를 적용함

o 1차 선정 기준 : 제232조 & 반덤핑(AD) 관세 중첩 품목, 제232조 & 제301조 중첩 품목으로 선정함

- 제232조 & 반덤핑(AD) 관세 중첩 품목 : 2018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시행 이후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경쟁악화로 반덤핑(AD) 제소가 증가하였고, 이에 232조 위반 및 반덤핑(AD) 위반 조사가 확산됨

- 제232조 & 제301조 중첩 품목 : 트럼프 1기 이후 2기까지 지속·강화된 관세로, 2023~2024년 백악관·USTR 검토자료를 근거로 분석함

ㅇ 2차 최종 선정 기준 : UN 및 WTO 산하 ITC 통계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통계를 활용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을 선정함

- 한국 또는 중국중 단일 국가 의존도가 과도한 품목 제외
- 미국의 對중국 수입 ≥ 30% 감소 & 미국의 對한국 수입 ≥ 30% 증가
- WTO가 제시한 세계 무역량 연평균 증감율(2~3%) 대비 2배 이상의 증감율이 나타난 경우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우회 발생 가능성 有[14)]
- 원자재 흐름(중국→우리나라) 증가 여부 및 AD 제소 여부 포함

□ **최종 선정 품목(23개)**

ㅇ 위 기준에 따라 총 23개 HS 품목이 도출됨

- 제232조&반덤핑(AD) 중첩 품목 10개, 제232조&제301조 중첩 품목 13개

ㅇ 해당 품목들은 대부분 중국산 수입 급감, 한국산 수입 급증, 원자재(중→한) 흐름 증가, 과거 미 상무부(DOC) 우회·반덤핑(AD) 판정 이력 보유 등 특징을 가짐

14) 연평균 증가율 4%를 기준으로 7년 누적 약 31.5% 변동폭이 나타나므로, 30% 절사치를 기준으로 우회 가능성을 판단함

[교역 현황 모니터링 품목(23개)]

□ 시사점

○ 미국은 제232조/제301조/반덤핑(AD)/상호관세/펜타닐 관세 등 다양한 관세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제3국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도가 높아 미국의 우회 수출 의혹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선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원자재·수출 흐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3

제2장 미국의 무역규제 관련 법령

제1절 고관세부과 관련 법령 개요 ····· 11
제2절 무역규제 관련 주요 법령 ····· 12
1.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 ····· 12
1.1. 232조 개요 ····· 12
1.2. 조사 절차 ····· 13
1.3. 232조 조사 사례 및 조치 현황 ····· 15
2.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 ····· 26
2.1. 301조 개요 ····· 26
2.2. 조사 절차 ····· 27
2.3. 301조 조사 현황 및 對중 제재 현황 ····· 36
3. 무역법(Trade Act of 1974) 201조 ····· 48
3.1. 201조 개요 ····· 48
3.2. 조사 절차 ····· 48
3.3. 201조 조사 현황 ····· 52
4.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 ····· 54
5. 관세법 338조 ····· 56
6.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58
6.1. 개요 ····· 58
6.2. 법령내용 ····· 59
6.3. 발동사례 ····· 64

KIOI

제3장 미국의 대중국 제재 유형 및 판정 사례

제1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회피조사 ····· 77
1. 상무부 우회조사 ····· 78
1.1. 개요 ····· 78
1.2. 우회 유형 및 요건 ····· 78
1.3. 우회조사 주요 절차((19 CFR §351.226) ····· 84
2. CBP 회피조사 ····· 87
2.1. 개요 ····· 87
2.2. 회피조사 조사절차 ····· 87
2.3. 조사 현황 ····· 92

제2절 상무부·CBP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회피(evasion) 판정 사례 ····· 94
1.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 사례 ····· 94
1.1. 제3국 조립·완성 유형 ····· 96
1) 냉간압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CRS) ····· 96
2) 도금강판(CORE) ····· 106
3) 유정용 강관(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 118
4) 원형용접탄소강관(CWP) ····· 129
5) 스테이플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 138
6) 알루미늄 압출제품 ····· 148
7) 알루미늄 포일 ····· 162
8)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 ····· 171
9) 다이아몬트 톱날 및 그 부분품 ····· 181
10) 하드우드 및 장식용 합판과 베니어 패널 ····· 189
1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 202
1.2. 추후 개발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 221
1)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 및 베니어 패널(Veneered panels)221
2) 알루미늄 압출제품 ····· 235
3) 듀얼(이중) 피스톤 엔진 ····· 249
1.3. 경미한 변경 ····· 258
1) 60cc 이상 99cc까지의 수직축 엔진 ····· 258
2) 중국산 IQF(개별급속냉동) 소형·대형 마늘 조각(small and large garlic chunks) ····· 268

1.4. 미국 내 조립·완성 ····· 277
1) 나선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핀(unthreaded pins of alloy steel) ····· 277
2) 비도공지 롤(uncoated rolls) ····· 287
2. CBP의 주요 회피(Evasion) 조사 사례 ····· 295
1) 특정 휠(22.5인치 및 24.5인치 직경) ····· 296
2) 철사 옷걸이 ····· 302
3) 글리신 ····· 306
4) 매트리스 ····· 311
5) 특정 이동식 접근 장비와 그 부속 장치(이하 MAE) ····· 316
6) 배수용 주철관 및 이음쇠 ····· 322
7)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 328

제3절 상무부 범위판정 ····· 332
1. 개념 및 관련 규정 ····· 332
2. 신청절차 및 관련 요건 ····· 332
3. 범위판정 사례(GPI 식품 원료) ····· 341
3.1. GPI 범위판정 신청 배경 ····· 342
3.2. GPI의 핵심 주장 ····· 342
3.3. 상무부 판정 결과 ····· 348
3.4. 결론 ····· 353

제4장 고관세 대상 품목 대미 교역 현황 모니터링

제1절 개요 ····· 355

제2절 모니터링 방법 ····· 358
1. 모니터링 품목 선정 기준 ····· 358
2. 모니터링 대상 품목 수출입 동향 ····· 359

제3절 모니터링 결과 ····· 361
1. 제232조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 ····· 361
2. 232조 및 301조 관세 부과 대상 품목 ····· 371

제5장 결론

제1절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 검토 결과 ····· 385

제2절 우회(회피)조사 등 판정 결과 시사점 ····· 394
1. 미 상무부 우회(circumvention) 및 CBP 회피(evasion)조사 비교 ····· 394
2. 미 상무부 우회(circumvention) 및 CBP 회피(evasion)조사 판정 결과 시사점 ····· 396
2.1. 상무부 우회조사 ····· 397
2.2. CBP 회피 조사 ····· 398
3. 상무부 범위 판정 시사점 ····· 400

부록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 ····· 402

참고 문헌 ····· 418

<표 목차>

[표 1-1] 미측 우회조사 판정 사례 ····· 2
[표 1-2] 연구 내용 및 범위 ····· 3
[표 1-3] 미측 고관세 부과 사례(예시) ····· 5
[표 1-4] 교역현황 모니터링 예시 ····· 7
[표 2-1] 미측 고관세 부과 법령 리스트 ····· 11
[표 2-2] 232조 조사시 고려 또는 조사 내용(19 U.S.C. §1862 (d)) ····· 13
[표 2-3] 232조 조사 세부절차 요약 ····· 15
[표 2-4] 미측 232조 조사 사례 ····· 17
[표 2-5] 미측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 ····· 21
[표 2-6] 주요국가의 미측 232조에 따른 철강 쿼터 현황(2018년~2024년까지 현황) ····· 23
[표 2-7] 미축의 철강제품 관련 개정된 제232조 조치 현황 ····· 24
[표 2-8] 미축의 알루미늄제품 관련 개정된 제232조 조치 현황 ····· 24
[표 2-9]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조치 관련 변동사항(2025년 6월 기준) ····· 25
[표 2-10] USMCA 자동차 원산지기준 ····· 25
[표 2-11] 301조에 따른 의무적 조치 및 재량적 조치] ····· 27
[표 2-12] 301조 조사절차 ····· 31
[표 2-13] 301조 조항별 내용 ····· 35
[표 2-14] 조사 상대국별 조사 건수 현황 ····· 37
[표 2-15]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사 ····· 38
[표 2-16] 1995년 이후 미국의 제301조 조사 사례 ····· 40
[표 2-17] 미국의 301조 관련 對중 제재 조치 ····· 47
[표 2-18] 201조 조치의 제한 ····· 51
[표 2-19] 세탁기 및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관세율 ····· 53
[표 2-20] 122조(19 U.S.C. §2132) 내용 요약 ····· 54
[표 2-21] 338조(19 U.S.C. § 1338) 내용 요약 ····· 56
[표 2-22] 국제비상사태법 법령 내용 ····· 60
[표 2-23] 국제비상경제수권법 법령 내용 ····· 62
[표 2-24]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개정 연혁 ····· 63
[표 2-25] 미측 IEEPA 관련 행정명령 및 포고문 리스트 ····· 64
[표 2-26] 트럼프 행정부 2기 IEEPA 관련 행정명령 ····· 72
[표 3-1] 미국 상무부 우회조사 4가지 유형 ····· 78
[표 3-2] 미국 내 조립·완성 판단 기준 ····· 79

[표 3-3] 제3국 조립·완성 판단 기준 ····· 80
[표 3-4] 경미한 변경 고려 요건 ····· 82
[표 3-5] 추후 개발된 물품 판단 기준 ····· 83
[표 3-6] CBP EAPA 조사 일정 ····· 90
[표 3-7] CBP EAPA 재검토 일정 ····· 91
[표 3-9] 상무부 우회조사 유형별 목록 ····· 94
[표 3-10] 중국산 냉간압연강재(CRS)의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97
[표 3-11]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요약 ····· 98
[표 3-12] 중국 및 베트남 생산공정 비교 ····· 102
[표 3-13] 중국→미국 / 베트남→미국 / 중국→베트남(HRS) 무역 변화 비교 ····· 104
[표 3-14]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RS) 및 냉간압연강재(CRS) 기반 도금강판(CORE) 제3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108
[표 3-15]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109
[표 3-16]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세부 내용) ····· 112
[표 3-17] 중국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 제3국 도금강판 생산공정 및 상무부 최종 판단 ····· 113
[표 3-18]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의 브루나이·필리핀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19
[표 3-19] 명령의 범위 ····· 120
[표 3-20] 미국의 제3국산 유정용 강관(OCTG) 수입량 ····· 126
[표 3-21] 브루나이의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수입 동향(단위 : Tons) ····· 127
[표 3-22] 중국산 원형용접탄소강관의 베트남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30
[표 3-2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131
[표 3-24] 중국산 특정 강철 코팅 스테이플의 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39
[표 3-25]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140
[표 3-26] 미국의 수입 동향 변화 추이 ····· 146
[표 3-27] 합금 및 열처리된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의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50
[표 3-28]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152
[표 3-29] 알루미늄 압출제품 생산 공정 ····· 157
[표 3-30]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의 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63
[표 3-31] 명령의 범위 ····· 164
[표 3-32] 중국산 알루미늄의 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73
[표 3-3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174
[표 3-34]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의 제조공정 ····· 177
[표 3-35] 무역 패턴 변화에 따른 우회 가능성 분석 ····· 179
[표 3-36]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의 반덤핑 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83
[표 3-37]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184

[표 3-38] 세그먼트 생산 vs 코어 & 세그먼트 결합 비교 ····· 186
[표 3-39]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의 반덤핑 및 상계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191
[표 3-40]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193
[표 3-41] 베니어가 베트남 및 제3국에서 조달되어 전면/후면 베니어와 결합되는 5가지 시나리오 200
[표 3-42]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의 반덤핑 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204
[표 3-4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05
[표 3-44] 국가별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분석 결과 ····· 207
[표 3-45] 국가별 중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 분석 결과 ····· 208
[표 3-46] 국가별 투자 수준 분석 결과 ····· 210
[표 3-47] 국가별 연구개발 수준 분석 결과 ····· 211
[표 3-48] 국가별 생산 시설의 규모 분석 결과 ····· 214
[표 3-49] 국가별 투자 수준 분석 결과 ····· 216
[표 3-50] 국가별 특수관계 여부 분석 결과 ····· 218
[표 3-51]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의 반덤핑 및 상계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223
[표 3-52]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25
[표 3-53]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 우회 여부 판단 기준별 우회 조사 대상 기업 주장 ····· 229
[표 3-54] 중국산 알루미늄의 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230
[표 3-55] 합금 및 열처리된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의 우회 조사 주요 경과 ····· 237
[표 3-56]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39
[표 3-57] 듀얼 피스톤 엔진 AD/CVD 회피 조사 경과 ····· 250
[표 3-58]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51
[표 3-59] 중국산 소형엔진(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의 AD/CVD 회피 조사 경과 ····· 259
[표 3-60]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60
[표 3-61] 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 우회 조사: 배기량 비교 ····· 262
[표 3-62] 중국산 소형·대형 마늘 조각의 AD/CVD 회피 조사 경과 ····· 269
[표 3-6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70
[표 3-64] 나선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핀 AD/CVD 회피 조사 경과 ····· 278
[표 3-65] 반덤핑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79
[표 3-66] 원료부터 나사봉 제조단계 ····· 283
[표 3-67]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AD/CVD 회피 조사 경과 ····· 289
[표 3-68]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289
[표 3-69]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수입량 변화 추이(단위 : 메트릭톤(metric tons)) ····· 293
[표 3-70] 품목별 CBP 회피조사 사례 ····· 295
[표 3-71] Asia Wheel의 특정 휠 제조 과정 ····· 298

[표 3-72] 중국산 철사 옷걸이에 대한 AD/CVD 회피 조사 주요 사례 요약 ····· 303
[표 3-73] 상계관세 및 반덤핑 명령의 범위 ····· 308
[표 3-74] 공급업체, 수입업체, 한국산 매트리스의 총 수입액 ····· 313
[표 3-75] 상표 소유권 ····· 313
[표 3-76] 미국의 MAE 대중국 수입액 및 대폴란드 수입액(2019~2022) ····· 317
[표 3-77] 기존 명령의 범위 ····· 318
[표 3-78] 첫 번째 수입건에 대한 가격 과소신고 내역 ····· 324
[표 3-79] 두 번째 수입건에 대한 가격 과소신고 내역 ····· 324
[표 3-80] 기존 명령의 범위 ····· 330
[표 3-81] 신청서 구성 항목 및 주요 내용 ····· 333
[표 3-82] 인증 및 송달증명서 요건 ····· 336
[표 3-83] 신청서 작성시 반영해야하는 형식 ····· 337
[표 3-84] 제출물 제출 요건 ····· 338
[표 3-85] 수동 제출물 발송 주소 ····· 338
[표 3-86] 중국산 잔탄검(A-570-985) 명령의 범위 ····· 348
[표 3-87] GPI 잔탄검 범위판정 핵심 쟁점 및 상무부 판단 ····· 352
[표 4-1] 미국의 포고령 주요 내용 요약 ····· 356
[표 4-2] 미국의 對중국 관세조치 현황('25.11.5 기준) ····· 356
[표 4-3] 대미 우회 수출 의혹 제기 가능 품목 선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359
[표 4-4]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반덤핑(AD) 관세 적용 품목(10개) ····· 360
[표 4-5]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무역법 제301조 관세 적용 품목(13개)) ····· 360
[표 5-1] 트럼프 취임 이후 주요 관세정책 타임라인 ····· 385
[표 5-2] 미국의 고관세부과 근거 법령 주요 내용 ····· 387
[표 5-3] 중국산 물품 한국 경유 우회수출 적발 사례 ····· 391
[표 5-4] 상무부·CBP 우회·회피 비교표 ····· 396

<그림 목차>

[그림 1-1]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가중치 평균 관세율 추이(2015~24. 2.) ····· 3
[그림 1-2] 미국/EU/호주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 6
[그림 2-1] 긍정판정 대통령 조치(28건) ····· 52
[그림 3-1] EAPA 회피 조사 현황 및 회피 수법 유형 ····· 92
[그림 3-2] 중국이 추정 원산지인 회피 사례 및 환적국 분포 ····· 93
[그림 4-1] 한국의 주요 수출국 수출비중(단위 : %) ·····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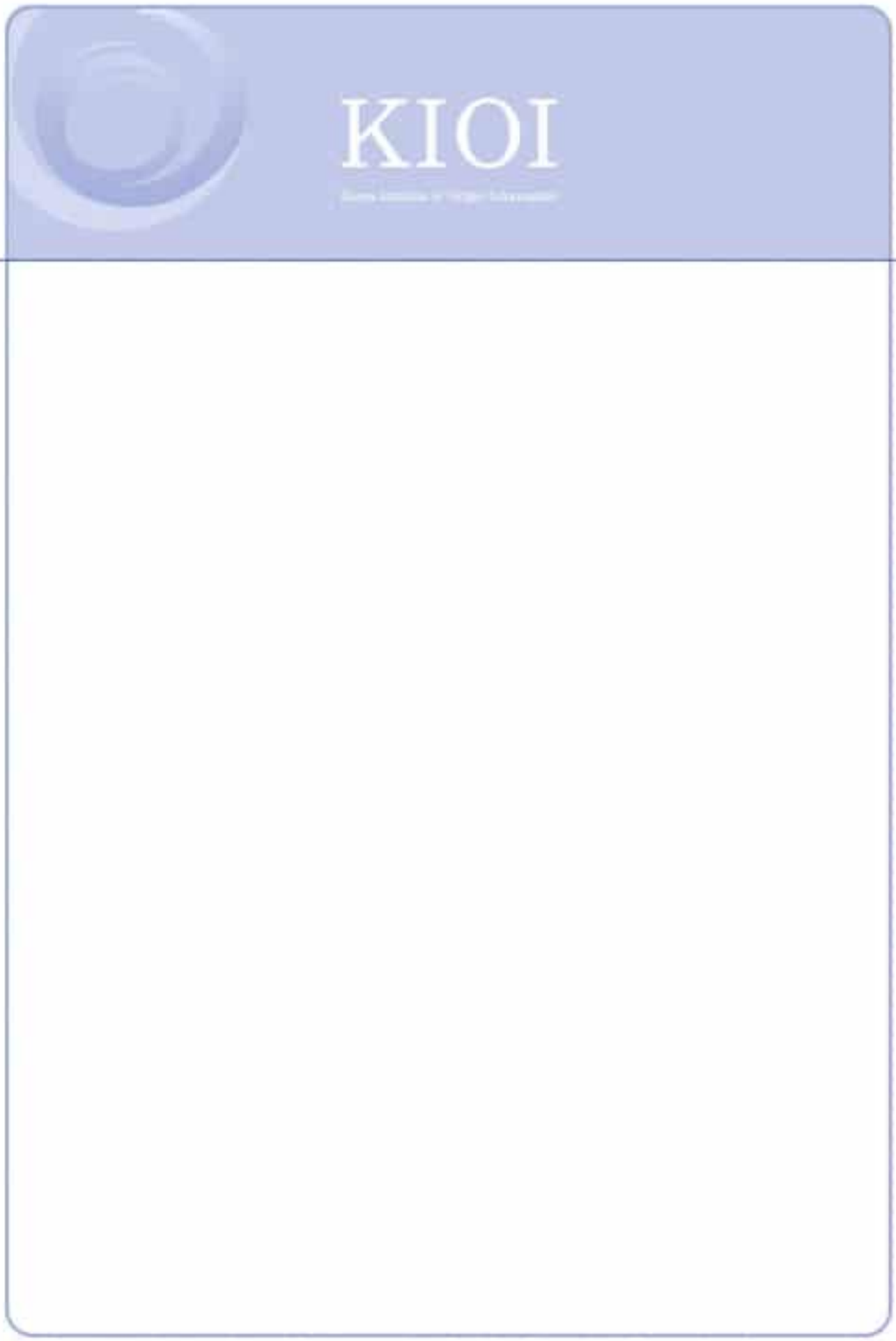
KIOI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5년 미측은 보다 확장되고 강도 높은 무역규제가 예상되는바, 대표적인 對중 견제 및 보호무역 조치 관련 법령 파악 및 사례 수집·분석 필요**

○ 미국은 2018년 중국과의 무역분쟁 이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우선주의 실행 수단으로 동맹국 및 對세계에 고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바탕으로 2025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관세 부과 중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고관세 조치는 행정부 1기의 기조를 유지 확장하여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음

○ 미측의 무역수지적자 개선, 중국産 탈공급망, 우회수입 차단(불공정 거래)을 위해 시행 중인 관련 법령 조사하고, 반덤핑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1]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감소 지원 필요

- 미측 對중 견제(제재) 조치 및 대외 고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우리 수출 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등 국가별 제재 대상이 물품에는 추가 관세(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수출 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증가
- 미측의 각 무역관련 규제(근거 법령에 의한 고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부인 시 고관세(보복관세 등) 부과가 가능성 존재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방지 조사를 말함

· 중국산 원재료 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한-중연결공정제품은 고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으로 판정 가능성 존재

[표 1-1] 미측 우회조사 판정 사례

[미 상무부, 중국産 알루미늄 호일의 한국, 태국 우회수출 예비판정 발표]

○ 미국 상무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이 중국산 호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회피하고 있다고 예비판정함

-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 수입은 급증했으며. 이 호일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및 완성된 뒤 수출된 것이라는 자료에 따라 상무부는 2022년 7월 한국 및 태국의 우회수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 상무부는 3월 16일에 연방관보 초안을 통해 한국과 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호일이 해당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림
- 한국 내 투자 수준과 같은 요인이 우회수출 부정 판정 요소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 내 조립 및 완성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minor or insignificant) 판단함
-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국에서만 공급되는 알루미늄 스트립(aluminum strip)을 투입하여 호일을 생산한 두 회사를 조사한 결과, 한 회사는 중국산 호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되기 직전에 설립되었고, 다른 회사는 명령이 부과된 직후에 설립된 것으로 밝혀짐
- 상무부가 연락을 취한 또 다른 태국 회사는 상무부 설문지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상무부는 해당 회사가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예비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이 조사에서 무역 및 소싱 패턴을 고려했으며, 알루미늄 호일의 대미 수출 근원지가 중국에서 한국 및 태국으로 변한 것이 이번 결정을 뒷받침한다고 결론 내림
- 연방관보에서 상무부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특정 품목이 해당 통지 부록에 명시된 성분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판정에 따라 정산 유예(suspension of liquidation) 또는 현금 예치금 징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상무부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 상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은 8월 2일임
- 2018년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진 무역구제 조사는 미국 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 무역집행실무그룹(Trade Enforcement Working Group)의 청원으로 촉발되었으며, 해당 청원서에는 26개의 보조금 프로그램과 23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열거되어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상뉴스(2023.03.20.)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표 1-2] 연구 내용 및 범위

• 고관세 부과 법령 분석 : 232조, 301조, 201조, 122조, 338조 구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 반덤핑 관련 우회조사 사례 분석
• 우리 對미 수출현황 모니터링

□ 고관세 부과 법령 분석

○ 미측의 고관세부과 근거법령의 법령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

- 트럼프 행정부 및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무역법 201조(세이프가드)·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평균 관세율도 증가

[그림 1-1]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가중치 평균 관세율 추이(2015~24. 2.)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24.04.24)

- 이에,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인 232조, 301조, 201조, 122조,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6개 법령의 내용, 제재 수단, 조사절차, 조사기관 등을 검토하고자 함

[관세 부과 근거 법령 조사 예시(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주요 사례 및 동향)]

□ 미국의 안보통상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1962년 제정되어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2017년 부활

- ㅇ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1962년 제정
- ㅇ 1979년, 1982년 각각 이란과 리비아에 원유 수입금지 조치가 단행된바 있음
- ㅇ 1995년 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나,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
-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 안보 침해를 막는다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2018년 3월)
- ㅇ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
  - 2024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경유해 무관세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2가지 대통령 특별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을 발표
    *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체결로 제232조 관세 적용 면제, 이에 제3국가 제품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것을 차단

[무역확장법 제232조 동향]

연도	내용
2018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2]
	• 2018년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 •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 수입국에 적용 • 무역확장법 제232조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사
	• 2018년 5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
2021	EU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합의
	• 2021년 10월 31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
2022	미국-일본 철강 관세 합의
	• 2022년 2월, 미국과 일본은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와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미국은 그간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일정 물량(쿼터)에 한해 면제하기로 함 • 면세 물량 기준 : 지난 2018~2019년 수입량을 근거로 산출, 54개 품목 연간 125만 미터톤임[3]
	미국-영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합의
	• 2022년 3월 22일, 미국과 영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 • 관세할당량(TRQ)을 설정하여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 제232조 관세에 대한 판정 (2022년 12월) ~ (現)
	•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판정 • 튀르키예,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제소한 이 사건에서, WTO는 미국의 조치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정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 • 미국은 이 판정에 불복하며, 추가 관세 폐지를 거부
2024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4]
	• 2024년 7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경유해 무관세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을 발표 • (철강제품) 북미지역(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강(melt and pour)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5% 관세를 부과 • (알루미늄 제품) 1·2차 제련국(primary and secondary country of smelt) 또는 가장 최근 주조국(country of most recent cast)이 중국, 이란, 벨라루스인 경우 10%, 러시아인 경우 200%의 관세를 부과

[표 1-3] 미측 고관세 부과 사례(예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규제 정책]
ㅇ [201조 세이프가드] 「무역법(Trade Act of 1974)」 201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4년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3년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 관세를 인상함(2018. 2.)
ㅇ [232조 관세]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함(2018. 3.)
ㅇ [301조 관세]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1~4차에 걸쳐 실시함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규제 정책]
ㅇ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및 301조 관세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고 있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관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우회조사 사례 분석

ㅇ 미측 우회조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 차단을 위해 제3국 우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최대를 기록함[5]

2) 한국무역협회(2018), 美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주요 영향
3) 한국무역협회(2022), 미일, 철강 25% 관세 일부 해소 합의… 쿼터분 적용
4) 법률신문(2024), 美 바이든 행정부, 멕시코 경유 우회 수출 中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치발표
5)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KITA 통상 리포트 2023.04)

- 미측의 고관세 부과 통상정책 기조는 제재 대상국의 물품이 제3국을 거쳐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1-2] 미국/EU/호주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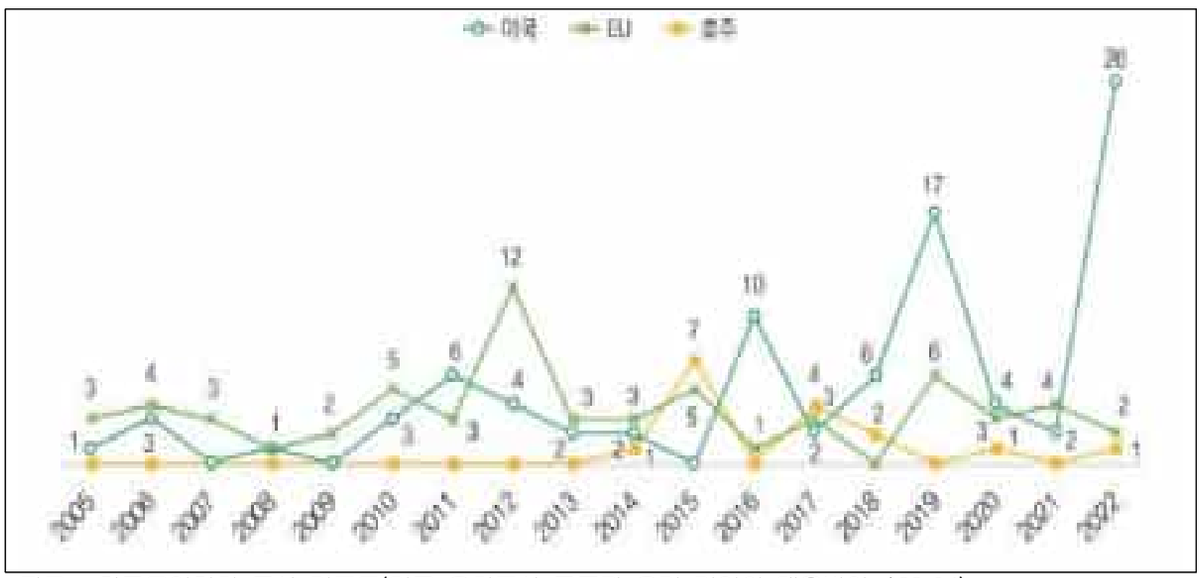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상 리포트(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23.04)

-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측 우회조사 급증의 원인이 철강 및 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실시간 수입 모니터링, 우회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 명확화 및 실효성 강화, 미국 기업들의 우회조사 제도 적극적 활용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우회조사의 증가는 미국이 중국 및 제3국에 대해 적용하는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사소한 공정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물품에도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232조, 301조뿐 아니라 다수의 품목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많은 중간재 및 원재료를 수입하여 최종재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회조사에 대한 사례 수집·분석 필요

□ 교역현황 모니터링

○ 미국 자국 산업 보호 조치 관련 무역규제 대상 물품[6]을 중심으로 미국 공급망 변화 분석, 중국·제3국·한국산 수입 규모(변화) 파악 후, 우리나라 대미 수출 및 대중 원재료 수입 추이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

[표 1-4] 교역현황 모니터링 예시

○ 2024년 7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경유해 무관세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을 발표

- (다변화)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추세, 반면 멕시코와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각각 증가
- (우리나라→미국)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대비 큰 폭으로(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

[중국의 HS 7308.90 수출동향 및 우리나라 및 미국의 수출입 변화 추이(단위 : USD 1,000)]

구분	내용	
미국의 제7308.90호 수입동향 (기존 수입선 중국 →멕시코로 변경)		`21년부터 멕시코 지속 증가, 중국 일정 수준 유지
중국의 대멕시코 제730890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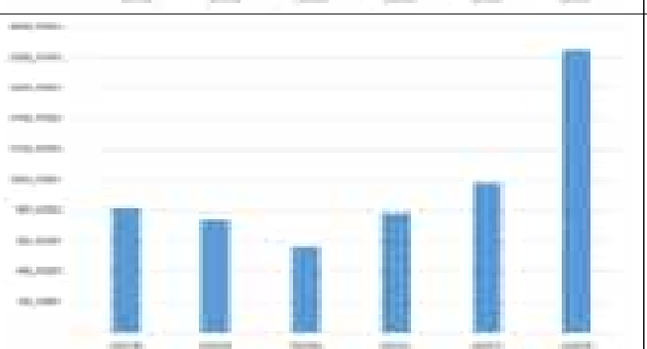	`21년부터 지속 증가
중국의 대한국 제730890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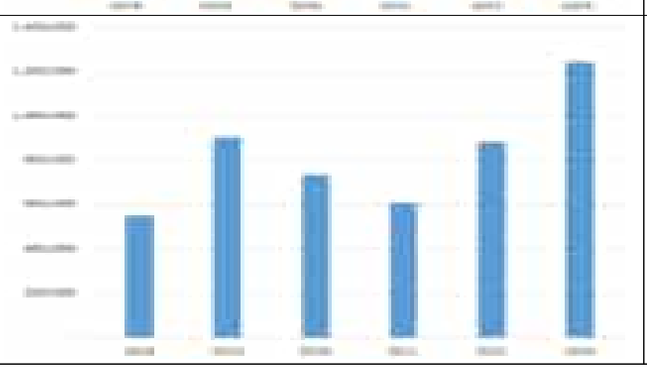	`22년부터 증가

6) 미측 232조, 301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중국 제재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대미 제730890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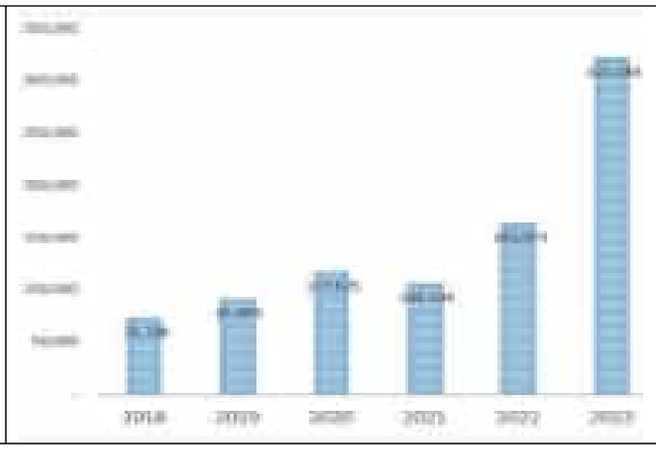	`22년부터 증가

제2장

미국의 무역규제 관련 법령

제1절 고관세부과 관련 법령 개요
제2절 무역규제 관련 주요 법령

제2장 미국의 무역규제 관련 법령

제1절 고관세부과 관련 법령 개요

□ **현재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인 232조, 301조, 비상경제수권법 및 향후 근거 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는 201조, 122조, 338조에 대한 조사 절차, 제재 수단 및 권한, 관세율 등의 법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표 2-1] 미측 고관세 부과 법령 리스트

별칭 (조항명)	실제 법	U.S. Code	주요 기관	내용 요약
Section 232	1962년 무역 확장법	19 U.S.C. §1862	상무부→대통령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한 대응 조치 가능
Section 301	1974년 무역법	19 U.S.C. §2411~ §2419	USTR→대통령	무역협정 위반 또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 가능
Section 201	1974년 무역법	19 U.S.C. §2251 ~ §2254	USITC→대통령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조치 가능
Section 122	1974년 무역법	19 U.S.C. §2132	대통령	극제지급문제(무역수지 적자, 달러가지 하락 등) 발생 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Section 338	관세법	19 U.S.C. §1338	대통령	미국에 대한 차별적 국외 조치(관세 및 무역장벽 등)에 추가 관세 부과 수입금지 조치 가능
IEEPA(국제비상수권법)		50 US Code §1701~§1708	대통령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 한하여 §1702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제2절 무역규제 관련 주요 법령

1.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

1.1. 232조 개요

□ **1962년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제232조(19 U.S.C. §1862)는 상무부가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함**

- ㅇ 상무부의 조사에 따라 긍정판단[7]일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이 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조치도 가능
  - 이 권한은 모든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허용함
- ㅇ 미국 헌법은 국제 무역 문제에 대한 주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232조는 의회가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권한을 위임함. 232조는 대통령의 조치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ㅇ 232조를 포함한 1962년 무역 확장법은 냉전시기, 국가안보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던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232조는 산업계의 청원에 또는 행정부가 자체적조사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용되어 왔음[8]
- ㅇ 232조는 조사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조사의 잠재적 범위는 매우 포괄적일 수 있음

7) 특정 수입품이 미국에 “그 양이나 상황 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CRS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2021)

1.2. 조사 절차

□ 232조 발동 요건

○ 232조 조사는 수입물품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9] 미국의 정부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청원, 또는 상무부의 자체 개시(self-initiation)에 따라, 상무부가 피해 조사를 수행함[10]

- 232조(19 U.S.C. §1862)에서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제32조 (d)항에[11] 조사시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표 2-2] 232조 조사시 고려 또는 조사 내용(19 U.S.C. §1862 (d))

구분	232조 조사시 고려 또는 조사 내용
국가 방위 관련	•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예상 국방 수요에 맞는 국내 생산량과, 국내 산업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고려 • 국방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제품, 원자재, 기타 공급품과 서비스의 현재 및 미래 확보 가능성을 평가 • 산업과 공급망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 탐사, 개발 등
수입품의 영향 관련	• 수입품의 양, 특성, 용도, 그리고 이들이 국내 산업 및 미국의 국가안보 충족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경제적 복지와 국가안보의 연계 관련	• 국가 경제 복지와 국가안보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외국과의 경쟁이 국내 개별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수입의 부정적 효과 관련	•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제품의 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정부 세수 감소, 기술 또는 투자 손실, 그 밖의 심각한 영향

자료 : 19 U.S.C. §1862 (d)를 바탕으로 작성

□ 조사 세부 절차

○ 상무부 장관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조사 착수) 미국의 정부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청원, 또는 상무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self-initiation)함[12]

9) 19 U.S.C. §1862(a)
10) 19 U.S.C. §1862(b)(1)(A)
11) 19 U.S.C. §1862 (d)
12) 19 U.S.C. §1862(b)(1)(A)

*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해당사자에게 해당 조사와 관련된 정보와 조언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상무부 장관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을 통해 조사를 수행. 상무부 장관은 조사 방법론 및 정책 문제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함

- (②국방부 통지) 상무부는 조사 착수시 모든 조사에 대해 국방부에 즉시 통지[13)]

  * 조사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모든 품목의 방위요건에 대한 평가를 장관에게 제공해야 함

- (③조사결과 대통령 보고)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장관은 해당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 또는 비조치에 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14)]

  * 상무부는 특정물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양 또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함

  *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상 기밀정보나 독점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여야 함

- (④조치결정) 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15)]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기간을 결정해야 함

- (⑤조치시행) 대통령이 조사결과에 따라 품목 및 파생상품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결정한 날로부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함[16)]

- (⑥의회통보) 대통령이 조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 보고서(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 함[17)]

13) 19 U.S.C. §1862(b)(1)(B)
14) 19 U.S.C. §1862(b)(3)(A)
15) 19 U.S.C. §1862(c)(1)(A)
16) 19 U.S.C. §1862(c)(1)(B)
17) 19 U.S.C. §1862(c)(2)

[표 2-3] 232조 조사 세부절차 요약

절차	내용	기한
① 조사 개시	• 상무부 조사 개시(청원 및 자체 개시 가능)	조사 개시후 270일
② 국방부 통보	• 모든 조사에 대해 국방부에 즉시 통지	
③ 대통령 보고	•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결과 대통령에게 보고	
④ 조치 결정	• 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 결정 * 국가 안보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시 절차 종료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⑤ 조치 실행	• 결정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조치 시행	조치 결정 후 15일
⑥ 의회통보	• 3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방관보에 해당 내용을 게재	-

자료 : 19 U.S.C. §1862 조항을 참고하여 정리

1.3. 232조 조사 사례 및 조치 현황

□ **미측은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등의 제재 사례는 WTO 출범 이전에 극소수의 사례가 있으나, 1995년 세계무역 기구(WTO)가 출범하면서 232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18)]**

ㅇ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통상협상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음[19)]

- WTO 출범 이전, 제232조를 근거로 실제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등 단 두 건에 불과함(표 2-4 참고)
- 1972년에는 원유 수입에 보존수수료(conservation fee)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해당 조치는 철회됨(표 2-4 참고)
- WTO 체제 출범 이후에도 1999년 원유, 2001년 철강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보복 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없음(표 2-4 참고)
- 이는 WTO 체제 도입 이후 232조에 근거한 수입제한 조치가 더욱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OECD의 자유화 규약(Codes of Liberalisation) 등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20)]

18) CRS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2021)
19)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윤충원, 집문당, (2004).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 **196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7건의 Section 232 조사가 이루어짐**

○ (총괄) 총 37건의 232조 조사에서 16건[21]은 해당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중 9건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조사가 진행된 총 37건 중 17건에서는 상무부가 해당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최근) 상무부의 총 37건(1962년~2025년) 232조 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1기 및 2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사 건은 총 9건이고, 이 중 긍정판정(국가 안보에 영향 있음)은 7건 이며, 7건 중 실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조사는 2건(철강 및 알루미늄) 임

- 긍정 : 네오디뮴-철-붕소(NdFeB) 영구 자석(대통령 미조치, 2021년 비이든 행정부), 변압기 및 전기강판(대통령 미조치, 2020년 트럼프 행정부), 티타늄 스펀지(수입 제한 안함,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우라늄 원광 및 제품(수입 제한 안함,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및 부품(승용차, SUV, 경트럭 포함)(미·EU·일본 협상 지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알루미늄(관세조치 10%,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철강(관세조치 25%, 2017년 트럼프 행정부)

  ·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우라늄 광석, 티타늄 스펀지, 변압기용 방향성 전기강판 등 건의 조사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22]

  · 바이든 행정부가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NdFeB)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국제적인 수입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301조 관세를 통해 중국산 NdFeB 및 기타 영구자석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301조 관세 확대안에 이들을 포함시킴[23]

  ·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목재 및 관련 제품, 구리 및 관련 제품의 232조 조사가 이루어짐

- 부정 : 바나듐(2020년 트럼프 행정부), 이동식크레인(청구인 요청에 따라 종료, 2020년 트럼프 행정부)

  · 바나튬의 경우 상무부에서 부정판정을 내렸으며,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청구인의 요청으로 조사가 종료됨

21) [표 2-4]의 연번 35, 32, 31, 30, 29, 28, 27, 25, 24, 19, 17, 16, 12, 11, 9, 8 등의 조사(음영 처리 연번은 대통령이 수입제한 조치한 9건)

22) President Trump Expands Steel and Aluminum Tariffs to All Countries; Effective March 12, 2025. Home Main navigation)

[표 2-4] 미측 232조 조사 사례

연번 (최근순)	조사 대상	조사 시작 연도	조사 개시자	재무부 또는 상무부 결정	대통령 조치
37	목재 및 목재 제품	2025	대통령 지시	미정	미정
36	구리 및 관련 제품	2025	대통령 지시	미정	미정
35	네오디뮴-철-붕소 (NdFeB) 영구 자석	2021	상무부	긍정	조치 없음
34	바나듐	2020	AMG Vanadium U.S.	부정	해당사항 없음
33	이동식 크레인	2020	Manitowoc Company, Inc.	청구인 요청에 따라 종료	해당사항 없음
32	변압기 및 전기강판	2020	상무부	긍정	미조치
31	티타늄 스펀지	2019	Titanium Metals Corp.	긍정	상무부 결과 불일치, 수입 제한 안 함; 일본과 협력그룹 설립
30	우라늄 원광 및 제품	2018	미국 우라늄 광산회사	긍정	상무부 결과 불일치, 수입 제한 안 함; 미국 핵연료 워킹그룹 설립
29	자동차 및 부품 (승용차, SUV, 경트럭 포함)	2018	상무부	긍정	미·EU·일본 간 협상 지시(Proclamation 9888)
28	알루미늄	2017	상무부	긍정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 부과(캐나다·멕시코 예외), (Proclamation 9704)
27	철강	2017	상무부	긍정	모든 국가에 대해 25% 관세 부과(캐나다·멕시코 예외), (Proclamation 9705)
26	철광석 및 완성 가공된 강	2001	하원의원 James Oberstar와 Bart Stupak	부정	-

연번 (최근순)	조사 대상	조사 시작 연도	조사 개시자	재무부 또는 상무부 결정	대통령 조치
25	원유	1999	상무장관	긍정	조치 없음
24	원유 및 석유 제품	1994	독립석유협회	긍정	조치 없음
23	세라믹 반도체 패키징	1992	Coors Electronic Package Co. 및 Ceramic Process Systems Corporation	부정	-
22	기어 및 기어링 제품	1991	미국 기어 제조업 협회	부정	-
21	우라늄	1989	에너지 장관	부정	-
20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계	1988	플라스틱산업협회	부정	-
19	석유	1987	국가에너지보안위원회	긍정	조치 없음
18	베어링	1987	항마찰베어링 제조업협회	부정	조치 없음
17	금속 절단 및 금속 성형 기계공구	1983	전미기계공구 제조협회	긍정	공식 조치 연기, 주요 외국 공급자와 자발적 규제 협정 추진(b)
16	리비아산 석유	1982	대통령 지시	긍정	리비아산 석유 수입 금지(Proclamation 4907)
15	철강 및 강철 볼트, 대형 나사	1982	국방부 장관	부정	-
14	망간, 실리콘, 크롬 페로합금 및 관련 금속	1981	페로합금협회	부정	부정 판정 이었으나, 표의 주석 (a)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짐
13	유리 라이닝 화학처리 장비	1981	세라믹 코팅사 (Ceramic Coating Co.)	부정	-
12	이란산 석유	1979	재무부 장관	긍정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Proclamation 4702)
11	석유	1978	재무부 장관	긍정	수수료 부과했지만 위법 판결 및 차단 (492 F. Supp. 614)

연번 (최근순)	조사 대상	조사 시작 연도	조사 개시자	재무부 또는 상무부 결정	대통령 조치
10	철강 및 강철 볼트, 대형 나사	1978	대통령 지시	부정	-
9	석유	1975	재무부 장관	긍정	추가 요금 부과(Proclamation 4341); 이후 요금 0으로 감축(Proclamation 4655)
8	석유	1973	석유정책위원회 위원장	긍정	기존 할당제에서 라이선스 수수료 제도로 전환 (Proclamation 4210)
7	고전압 전력 회로 차단기, 변압기 및 리액터	1972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부정	-
6	소형 정밀 볼베어링	1969	항마찰베어링 제조업협회	부정	-
5	망간, 실리콘, 크롬 페로합금 및 정제 금속	1968	페로합금 및 관련 제품 생산자 위원회	부정	-
4	시계 및 시계 부품	1965	대통령 지시	부정	-
3	항마찰 베어링	1964	항마찰베어링 제조업협회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청구인 요청에 따라 종료	-
2	텅스텐 압연 제품	1964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부정	-
1	망간 및 크롬 페로합금	1963	제조화학자협회 (Manufacturing Chemists Association)	부정	-

자료 : CRS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2021)을 참고하여 최근 조치를 추가하여 작성

□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치

ㅇ 2017년 및 2018년 상무부 조사 결과 및 권고 내용

-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두 건의 대통령 각서를 통해 상무부에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두 건의 자체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함[24)]
- 2018년 1월 11일과 1월 22일 각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 최종 보고서는 특정 제철소 제품[25)]과 특정 유형의 1차 알루미늄 및 미가공 알루미늄[26)]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정함
- 상무부는 "국가 안보 저해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 제철소가 정격 생산 능력의 80% 이상(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존립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수입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
- 대통령에게 "쿼터 또는 관세를 통해 이러한 수입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세 가지 잠재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함. 여기에는 특정 국가산 철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세 또는 쿼터 부과가 포함됨

ㅇ 2018년 232조 조치(철강 25%, 알루미늄 10%)

-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두 건의 포고문을 발표함[27)]
  - ・ 이 포고문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 부과를 명시하였으며, 이 관세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를 포함한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됨
- 다만, 관세 적용 국가 및 제품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하였는데 특히 미국과 "안보

24) U.S. President (Trump), “Memorandum on Steel Imports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April 20, 2017, https://www.gpo.gov/fdsys/pkg/DCPD-201700259/pdf/DCPD-201700259.pdf, and U.S. President (Trump), “Memorandum on Aluminum Imports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April 27, 2017, https://www.gpo.gov/fdsys/pkg/DCPD-201700284/pdf/DCPD-201700284.pdf.

25)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January 11, 2018, https://www.commerce.gov/section-232-investigation-effect-imports-steel-us-national-security.

26)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 January 17, 2018, https://www.commerce.gov/sites/commerce.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aluminum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20180117.pdf (hereinafter, Aluminum Report).

27) Presidential Proclamation 9704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83 *Federal Register* 11619, March 15, 2018, and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83 *Federal Register* 11625, March 15, 2018.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함

-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무역 상대국들과 잠재적 면제에 대해 양자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일부 국가에 대체협정, 수량제한 등의 방식으로 무관세 또는 저관세 할당 조치를 취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개정 논의의 맥락에서 연간 절대쿼터에 동의하여 철강 관세에서 면제됨[28]. 알루미늄에 대한 협정을 협상하지 않았으며, 2018년 5월 1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은 알루미늄 관세 10%를 적용받음
- 2018년 5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철강 수입에 대한 최종 쿼터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철강 관세에서 영구적으로 면제한다고 선언[29]함. 다만, 브라질은 알루미늄에 대하여 10% 관세를 부과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절대 쿼터를 설정하여 관세를 면제함[30]
- 호주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도 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였으며, 수량제한은 설정하지 않음. 캐나다, 멕시코 등의 USMCA 협정 당사국들은 추가 협정을 통해 2019년 관세 면제 조치를 확보함
- EU(2021년), 영국(2022년) 등은 저관세 쿼터(수량내 0%, 수량 초과 25%)를 적용받음

[표 2-5] 미측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

연도	포고문 (Proclamation)	미측 조치	국가별 협상 내용
2017	-	• 상무부 직권으로 철강, 알루미늄 수입 조사 개시(4월)	-
2018	9704 9710 9739 9758 9776	• 상무부 철강, 알루미늄 보고서 제출(1월) •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부과 발표(3월) • 튀르키예산 철강 수입품 관세 50%로 인상(8월)	• [한국] 철강제품 절대 쿼터를 적용 관세 면제. 알루미늄 제품 10% 관세 부과(4월) • [브라질] 철강제품 절대 쿼터를 적용 관세 면제. 알루미늄 제품 10% 관세 부과(5월) • [아르헨티나] 철강 및 알루미

28)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QB 18-118 Steel Mill Articles (AMENDED)*, May 1, 2018, https://www.cbp.gov/trade/quota/bulletins/qb-18-118-steel-mill-articles.

29) Proclamation 9759 of May 31,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83 *Federal Register* 25857, June 5, 2018.

30) Proclamation 9758 of May 31, 2018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83 *Federal Register* 25849, June 5, 2018.

			늄 관세를 대체하여 절대쿼터 적용(5월) • [호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쿼터 미설정)(5월)
2019	9772 9886	• 튀르키예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25%로 감축(5월)	• [캐나다, 멕시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단, 과거 교역량 이상으로 수입량 급증할 경우 관세 부과 가능)(5월)
2020	10064	•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파생 제품에 25% 및 10% 관세 부과(2월)	-
2021	10139	-	• [EU] 철강과 알루미늄 상품에 저율관세할당(TRQ) 적용(10월)
2022	10403	• 우크라이나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 부과 유예(5월)	• [영국] 철강과 알루미늄 상품에 저율관세할당(TRQ) 적용(6월)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 2018)
*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파생 제품 : 못, 전선 및 일부 자동차 차체 부품 등

○ 2025년 232조 조치 변경(모든 국가에 철강 25%, 알루미늄 10% → 25%)

- 미측은 2018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중 이었으나, 일부 국가에는 대체협정, 수량제한, 임시 조시 등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었음

  · 각국은 2018년 232조 추가 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한 개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한국 · 브라질 · 아르헨티나 절대 쿼터[31]를 선택함. EU·일본·영국은 저율관세할당(TRQ)[32]을 선택.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관세부과를 유예(임시조치)하고 있었음

31) 정해진 수량 만큼 무관세 적용 추가 수출 불가
32)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

[표 2-6] 주요국가의 미측 232조에 따른 철강 쿼터 현황(2018년~2024년까지 현황)

구분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일본	영국
철강	쿼터(톤)	263만	419만	18만	330만	125만	50만
	쿼터 외 물량	수출불가			쿼터 내 추가 관세 면제 (추가 수출시 관세(25%) 부과)		
	배정 기준	'15~'17년 평균의 70%	(원자재) '15~'17년 평균의 70% (반제품) '15~'17년 평균의 100%	'15~'17년 평균의 135%	'15~'17년 평균의 75% (일부 품목은 100%)	'15~'17년 평균의 119% (일부 품목은 100%)	'15~'17년 평균에 근접
	적용 시점	'18년 1월 (5일 시행 후 소급 적용)	'18년 5월	'18년 5월	'22년 1월	'22년 4월	'22년 6월
알루미늄		10%	10%	면제	면제	10%	면제

자료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가공

- 2025년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국가별 면제 및 쿼터 제도를 종료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33]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 이 조치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전에 면제되었던 국가들도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됨

  · (철강) 우리나라는 2018년 연간 263만톤 무관세 수출이 가능했던 절대 쿼터가 종료되고, 25%의 관세를 부과 받게됨

  · 중국은 2018년도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2025년 232조 개정 조치에 대한 추가 관세는 없으나, MFN 0~10% + 301조 25% + 232조 25% + 대중국 관세 10% 등이 부과됨

    * 현재(`25년 10월), 2025년 6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50%(25%→50%)로 상향되어 운영 중

33) 철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25%(기존 10%)로 관세가 상향됨

[표 2-7] 미축의 철강제품 관련 개정된 제232조 조치 현황

국가명	MFN (0~10%)	기존 232조(25%) '18.3월 발표	301조 (25%) '24.9월 발표	대중국 보복관세(10%) '25.2월 발표	변경 232조(25%) '25.3월 발표
캐나다	0%	0%	-	-	25%
브라질	0~10%	0% * 절대쿼터 (419만톤)	-	-	25%
멕시코	0%	0%	-	-	25%
한국	0%	0% * 절대쿼터 (263만)	-	-	25%
베트남	0~10%	25%	-	-	2018년 25% 조치 유지
중국	0~10%	25%	25%	10%	2018년 25% 조치 유지
EU	0~10%	0% * TRQ (330만톤)	-	-	25%

자료 : 미국의 철강 & 알루미늄 관세 조치내용 및 기업반응(2025.02.12.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재가공

○ (알루미늄)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어10% 관세가 적용되, 2025년 232조 조치로 15%(25%) 관세 상승함

* 현재(`25년 10월), 2025년 6월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50%(25%→50%)로 상향되어 운영 중

[표 2-8] 미축의 알루미늄제품 관련 개정된 제232조 조치 현황

국가명	MFN (0~6.5%)	기존 232조 (10%) '18. 3월 발표	301조 (25%) '24. 9월 발표	대중국 보복관세 (10%) '25. 2월 발표	변경 232조 (25%) '25. 3월 발표
캐나다	0%	0%	-	-	25% (25% 증가)
UAE	0~6.5%	10%	-	-	25% (25% 증가)
중국	0~6.5%	10%	25%	10%	25% (15% 증가)
한국	0%	10%	-	-	25% (15% 증가)
바레인	0~6.5%	0%	-	-	25% (25% 증가)
EU	0~6.5%	0%	-	-	25% (25% 증가)

자료 :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내용 및 기업반응(2025.02.12.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재가공

[표 2-9]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조치 관련 변동사항(2025년 6월 기준)

일자		변동사항	근거법령	포고문 번호
2025-06-03	2025-06-04	▪ 철강/알루미늄관세 인상 (25% → 50%, 멕시코/캐나다 포함) ▪ 영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신설 (25%)	232조	Proclamation 10947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232조 조치

○ 2025년 3월 수입 승용차 및 경트럭에 25%의 관세가 부과, 부품에는 현재 미 조치 중이나 추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일부 USMCA 예외 포함)

- 포고문(proclamation) 10908(2025-03-26)을 보면, 2019년 2월 17일, 상무부는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미니밴, 카고 밴) 및 경트럭(총칭하여 자동차)과 특정 자동차 부품(엔진 및 엔진 부품, 변속기 및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총칭하여 자동차 부품) 수입이 제232조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제출됨
- 2025년 4월 3일 오전 12시 1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자동차의 경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된 상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를 명령함
- USMCA 원산지 충족 물품 중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자동차의 경우 비미국산 가치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

[표 2-10] USMCA 자동차 원산지기준

역내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 RVC) 75%	철강·알루미늄 70% 이상 북미산	노동 부가가치 기준(Labor Value Content, LVC)
• USMCA 부속서 4-B월 부록 (Appendix: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for Automotive Goods), 자동차 부록 제3조 제1항~제4항 등에서 명시 • 승용차 및 경트럭 : 순원가 75% • 핵심부품은 : 순원가 75%이상 / 거래가격 80% 이상	• 동일 부속서에서 연간 구매량의 70% 이상을 북미산 철강·알루미늄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	• 자동차 부록 및 부속서 4-B에서 연간 40% 이상, 이 중 2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의 북미 내 생산시설에서 제조해야 함을 명시

2.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

2.1. 301조 개요

□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 무역법상의 제301조부터 제309조까지의 조항(19 U.S.C. §§2411-2419)을 말하며, 동 조항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일방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ㅇ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됨

-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협정 하의 미국 권리 집행 및 특정 외국 무역 관행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음
  - USTR이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행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ㅇ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1995년 WTO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 전까지 미국은 주로 301조 권한을 활용해 WTO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도로 사용하였음[34)]

- 1974년 법 제정 이후 총 130건의 301조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이 강력히 주장한 WTO 분쟁 해결 절차 도입 이후 미국의 301조 사용이 크게 감소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35건의 조사만 발생
-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를 WTO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301조 권한을 활용하여 "자유롭고(free), 공정하며(fair), 상호적인(reciprocal)" 무역을 추진하겠다고 목적하에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정당화하고 있음

34)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rigin, Evolution, and Use(2020. Schwarzenberg, Andres B.)

2.2. 조사 절차

□ 301조 조치 및 제재(권한)

○ 301조는 외국의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USTR이 취해야하는 조치를 의무적조치(mandatory Action)[35]와 재량적조치(discretionary action)[36]로 나누고 있음

- (의무적 조치)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이 무역협정 위반이 있거나, 외국정부의 행위、정책、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unjustifiable)”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burdens or restricts)” 경우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함[37]

[표 2-11] 301조에 따른 의무적 조치 및 재량적 조치]

구분	의무적 조치 (mandatory action)	재량적 조치 (discretionary action)
발동 요건	• 외국의 행위가 무역 협정상의 미국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 협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에 대한 무역 협정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행위가 미국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을 주는 경우	• 외국의 행위가 비합리적(unreasonable)이거나 차별적(discriminatory)이며, 미국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을 주는 경우
USTR의 의무	• 요건 충족 시 USTR이 반드시(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	• USTR이 조치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
적용 범위	• 주로 협정 위반, 미국의 국제법적 권리 침해 등 명확한 사안	• 협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이익 침해, 반경쟁 행위, 노동권 저해 등 광범위한 사안 포함

- (재량적 조치) USTR 미국 무역대표부)는 외국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unreasonable) 차별적(discriminatory)”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재량이 있음[38]. 모든 조치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시에 따르게 됨

35) §2411(a)
36) §2411(b)
37) 19 U.S.C. §2411(a)(1).
38) 19 U.S.C. §2411(b).

□ 301조 제재(외국의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

ㅇ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의무적조치(mandatory Action)와 재량적조치(discretionary Action)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301조에 의해 허가된 모든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실행 가능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음.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무역 협정의 양허를 철회 또는 정지[39]
- 관세부과[40]
- 기타 수입 제한(관세 이외에 관세 이외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수입 규제를 위해 부과되는 제한, 금지, 부과금 또는 징수를 포함)[41]
- 미국 상거래에 대한 부담)를 제거하거나 미국에 만족스러운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다만, USTR이 반드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음

[필수적으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해당 무역 정책이나 관행이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식 분쟁해결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42]
- USTR이 조사 대상 외국이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3]
- 조사 대상 외국이 해당 관행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에 들어가거나[44],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는 해결책을 찾거나[45], 미국에 보상적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46]
- USTR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취해지는 조치의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47],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48]

39) 19 U.S.C. §2411(c)(1)(A).
40) 19 U.S.C. §2411(c)(1)(B).
41) 19 U.S.C. §2411(c)(1)(B).
42) 19 U.S.C. §2411(a)(2)(A)
43) 19 U.S.C. §2411(a)(2)(B)(i)
44) 19 U.S.C. §2411(a)(2)(B)(ii)(I)
45) 19 U.S.C. §2411(a)(2)(B)(ii)(II)
46) 19 U.S.C. §2411(a)(2)(B)(iii). 19 U.S.C. §2411(c)(4)
47) 19 U.S.C. §2411(a)(2)(B)(iv).
48) 19 U.S.C. §2411(a)(2)(B)(v).

□ 301조 조사 착수 위험의 식별

○ 미국 의회 보고서[49]에 따르면 301조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게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을 경우, 모든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 권리 집행를 집행하고, 외국 국가의 특정 행위·정책 또는 관행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함. 더불어 해당 법률은 조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301조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 정부의 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미국의 무역 협정에 따른 권리를 외국 국가가 부인하는 경우[50] :
  - · 미국 무역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미국 무역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
  - · 미국 무역 협정에 따른 혜택을 미국에 부여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
-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51] :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은 미국의 국제 법적 권리를 위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됨.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 미국 기업에 대해 국가적 또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미국 기업의 설립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 지적 재산권(IPR)의 보호를 방해하는 경우.
-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위[52]: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반드시 미국의 국제 법적 권리를 위반하거나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경우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됨. 불합리한 행위, 정책, 관행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53]
  - · 수출 대상 지정(export targeting)[54],
    - *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산업·그룹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 정책을 제공하여 해당 주체가 특정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55]
  - · 기업 설립을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56],
  - · 지적재산권(IPR)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57],

---

49)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rigin, Evolution, and Use(2020. Schwarzenberg, Andres B.)
50) 19 U.S.C. §2411(a)(1)(A) 및 §2411(a)(1)(B)(i).
51) 19 U.S.C. §2411(a)(1)(B)(ii).
52) 19 U.S.C. §2411(a)(1)(B)(ii).
53) 19 U.S.C. §2411(d)(4). The MFN treatment generally refers to the practice of extending to a country the best trade privileges granted to any other nation.
54) 19 U.S.C. §2411(d)(3)(B)(ii).
55) 19 U.S.C. §2411(d)(3)(E).
56) 19 U.S.C. §2411(d)(3)(B)(i)(I).

· 지적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의 시장 접근 기회를 차별하는 경우[58],

· 시장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

또한 정책 및 관행(또는 그 부재)은 또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행위 패턴을 포함하는 경우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됨:[59]

·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조직화 및 단체 협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강제 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형태를 허용하는 경우,

· 아동 고용을 위한 최소 연령을 설정하거나, 근로자의 최소 임금, 근로 시간, 직업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차별적인" 행위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60]: 차별적인 행위, 정책, 관행에는 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투자가 국가적 또는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됨

□ **301조 조사절차 개요[61]**

○ 301조 조사는 USTR[62]이 주도하는 미국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정책직원위원회(TPSC)[63]의 하위 기관인 "301조 위원회"에서 수행함. 301조 위원회는 301조 관련 청원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치에 대해 TPSC에 권고안을 제시함. USTR은 TPSC가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림

57) 19 U.S.C. §2411(d)(3)(B)(i)(II).
58) 19 U.S.C. §2411(d)(3)(B)(i)(III).
59) 19 U.S.C. §2411(d)(3)(B)(iii).
60) 19 U.S.C. §2411(d)(3)(B)(iii).
61) sectiong 302조부터 309까지는 section 301조치에 관련된 내용임
62) 미국 무역대표부(USTR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이다.
63) 미국 무역정책실무협의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TPSC)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의장의 맡는 기구로 미국 관계부처간 미국 무역정책의 이행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주요 책임을 맡고 있으며, 특히 무역과 관련된 직접투자 문제를 담당한다.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미국 의회는 이러한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무역정책 메커니즘을 수립했다.(USTR의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의 설명. https://ustr.gov/about-us/executive-branch-agencies-trade-policy-staff-committee-and-trade-policy-review-group)

[무역정책실무협의회 소속 미측 관계부처]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관리 및 예산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경제 자문 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환경 품질 위원회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국제개발처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국가 안보 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자료 : USTR의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의 소개 자료

□ 조사 절차

[표 2-12] 301조 조사절차

①조사개시	②조사 및 협의	③ 결정	④조치 이행	⑤ 모니터링	⑥ 조치 종료
미국 기업 청원 및 USTR 자체 조사 개시	조사 착수 시 분쟁이 발생한 국가와 협의 진행	조사 개시 후 12~18개월 이내 조치를 결정	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시행	분댕 해결을 위한 외국의 조치 이행 모니터링	301조 관련 조치는 발동 4년 후 자동 종료 (청원인의 지속 제재 요구시 유지 가능)

ㅇ 조사개시(19 U.S.C. §2412)

- USTR은 이해당사자가 USTR에 301조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섹션 302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요구함

[301조 청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제301조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 외국 행위, 정책 또는 관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청원인의 경제적 이익을 설명
- 청원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무역 협정 또는 청원의 대상인 기타 행위, 정책 또는 관행 에 따라 위반되거나 거부되는 미국의 권리를 설명
- 미국이 해당 협정에 따라 침해 또는 거부한 것으로 주장되는 권리가 요청되거나 해당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받는 제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또는 외국인 직접 투자 사항 문제를 식별
-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또는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무역협정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에 발생하는 이익을 거부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설명)
- 미국 상거래가 부담을 받거나 제한을 받는 정도,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 규모 및 이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
- 청원인이 1974년 무역법 또는 기타 어떠한 법률 조항에 따라 다른 형태의 구제를 신청했거나(또는 신청 중인지) 여부를 명시

자료 : 15 CFR § 2006.1

  · 301조 조치를 요청하는 이해관계자 범위는 다음과 같음

[301조 조치를 요청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이해관계자란 문제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에 의해 중대한 이익이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상업적 수입자, 또는 수출자;
-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직접 투자를 추구하는 미국인;
-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자;
- 미국 내에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생산 또는 도매 유통에 종사하는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 인증된 노동조합 또는 인정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단체;
- 또는 청원에서 문제 삼은 행위, 정책 또는 관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중대한 경제적 이익이 영향을 받는 기타 민간 당사자.

자료 : 15 CFR § 2006.0(b)

- USTR는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혐의를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함

  · USTR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개시하고(청원 요약 포함), 가능한 빨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 해야함

- 또한 §2422에 따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64] 대해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해야 함

ㅇ 협의(19 U.S.C. §2413)

-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국제 무역 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청원을 접수하면, 해당 기관은 외국 정부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를 받지 못하면, USTR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USTR은 조사를 개시할 때, 제기된 쟁점에 대해 대상 외국 정부와 협의를 요청해야 함[65]. 조사가 무역 협정과 관련되어 있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150일 이내에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WTO 분쟁해결 절차, 개별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등)를 요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협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USTR은 청원인 및 적절한 민간 부문 대표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해야 함. USTR은 청원인(있는 경우)과 협의한 후, 청원을 검증하거나 개선하고 협의의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 요청을 최대 90일간 연기할 수 있음. 이러한 연기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사실을 의회에 통지하고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해야 함

- 현재 미측의 301조 관련 對중 제재조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결정(19 U.S.C. §2414)

- 외국과의 협의 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무역협정상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301조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정을 시작함. 청원(있는 경우), 조사, 협의 결과 및 301조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USTR은 결정을 내림

- 301조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에 대한 권고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66]

64) 19 US Code § 2242
65) 19 US Code § 2413(a)
66) 15 C.F.R. §2006.7(b).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통지한 후에 개최되어야 하며, 또는 USTR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 USTR의 결정이 긍정적일 경우, USTR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또는 취하지 않을지) 결정함[67]. 무역협정 위반이 관련된 조사인 경우, USTR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또는 조사가 개시된 후 18개월 이내(둘 중 더 이른 시점)에 결정을 내려야 함[68]

ㅇ 조치 이행(19 U.S.C. §2415)

- USTR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후 30일 이내에 §2411에 따라 ❶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을 부과하거나, ❷ 무역 협정의 양허를 철회 또는 정지하거나, ❸ 해당 행위(또는 미국 상거래에 대한 부담)를 제거하거나 미국에 만족스러운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

  · 다만, USTR은 다음의 경우 이행을 최대 18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301조 청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청원인 또는 해당 조치로 이익을 받을 국내 산업 대표의 과반수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 또는 USTR이 행위,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연기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 : 19 US Code § 2415(a)(2)(a)

ㅇ 모니터링(19 U.S.C. §2416)

- USTR은 301조 관련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외국이 취한 각 조치(WTO 분쟁해결 절차의 결정 포함) 또는 체결한 협정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외국이 이러한 조치나 합의를 만족스럽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69]

  · 특히, 제301조 조사의 결과로 취해진 조치 또는 합의를 외국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01조에 따른 합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의무적인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됨

  · USTR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 상품에 대해 보복리스트(retaliation list)[70]를 작성하여 해당 리스트에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리스트는 지속 수정될 수 있음

67) 19 U.S.C. §2414(a)(1)(B).
68) 19 U.S.C. §2414(a)(2)(A).
69) 19 US Code § 2416(a)
70) "보복 리스트"란,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의 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의 상품 목록으로, 무역대표부가 미국 통일관세표상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을 의미한다.(19 U.S. Code § 2416(b)(2)(E))

ㅇ 조치의 종료(19 U.S.C. §2417)

- USTR은 WTO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가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미국 상거래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 모든 조치를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 취해진 조치를 수정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청원인(있는 경우) 및 관련 국내 산업 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제안된 수정 또는 종료의 영향 및 조치의 수정 또는 종료가 적절한지에 대해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71]

  · 301조 관련 조치는 취해지고 청원인이나 그 조치로 이익을 얻는 국내 산업 대표자가 조치의 지속을 서면 요청하지 않으면 조치 4년 후 자동으로 종료됨(조치 종료 60일전 지속 조치를 위한 서면 요청 필요)[72]

  · 반면, 필요에 따라 USTR은 이전에 종료된 제301조 조치를 복원할 수 있음

[표 2-13] 301조 조항별 내용

Section	제목 (요약)	법령 내용 요약
2411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치 권한 (Actions by USTR)	• USTR은 의무적 조치와 재량적 조치에 따라 무역협정 철회 또는 정지, 관세부과, 수입제한, 기타 수입제한 등의 제재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음 • **[의무적 조치] 외국의 행위가 무역 협정상의 미국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협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에 대한 무역 협정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행위가 미국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을 주는 경우** • **[재량적 조치] 외국의 행위가 비합리적(unreasonable)이거나 차별적(discriminatory)이며, 미국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을 주는 경우**
2412	조사 개시 (Initiation of investigations)	• 청원에 의한 조사시 USTR은 45일 이내 조사여부를 결정 • 조사 착수시 연방관보에 사실을 공개하고 청문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
2413	조사 개시 시 협의 (Consultation upon initiation)	• 분쟁이 발생한 외국과 협의를 해야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와 같은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 해야함
2414	결정 (Determinations by	• USTR은 조사,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대한 권고를 결정함(반드시 공개 청문회 개최 포함)

71) 19 U.S. Code § 2417(a)(2)
72) 19 U.S. Code § 2417(c)(1)

	USTR)	• USTR은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고 30일 이내 또는 조사가 개시된 후 18개월 이내 결정을 내려야함
2415	조치 이행 (Implementation of actions)	• 대통령이 조치를 시행 결정후 30일 이내에 관세부과,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함
2416	외국의 이행 여부 감시 (Monitoring compliance)	•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외국이 취한 각 조치 (WTO 분쟁해결 절차의 결정 포함) 또는 체결한 협정의 이행을 모니터링 • USTR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 상품에 대해 보복리스트(retaliation list)[73]를 작성 및 수정할 수 있음
2417	조치 변경 및 종료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1조 관련 조치는 수정 및 종료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청원인의 지속적 조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조치 4년 경과후 종료됨

자료 : 19 US Code §2411~§2417을 참고하여 정리함

2.3. 301조 조사 현황 및 對중 제재 현황

□ 미측 301조 조사 현행

○ 미측은 2020년까지 총 130건의 301조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74] 이 중 WTO 분쟁해결 절차가 구축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건의 조사가 이루어짐

- 1995년~1999년 24건, 2000년~2020년 11건 등 총 35건

○ (조사개시 유형) 1975년부터 2020년까지 301조 조사(130건)의 60%는 민간 이해당사자가 USTR에 제출한 청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995년 이후 조사된 35건 중 대부분의 조사는 USTR이 자체적으로 개시함(74%)[75]

- 1995년 이후 조사된 35건중 이해관계자의 청원으로 개시된 조사는 총 9건이며, USTR 직권으로 시작된 조사는 26건으로, 주로 직권에 의해 조사가 개시됨

  · 1995년~1999년 조사 24건 중 직권조사 17건, 청원조사 7건

  · 2000년~2020년 조사 11건 중 직권조사 9건, 청원조사 2건

73) "보복 리스트"란,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의 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의 상품 목록으로, 무역대표부가 미국 통일관세표상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을 의미한다.(19 U.S. Code § 2416(b)(2)(E)

7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rigin, Evolution, and Use(2020. 12. 14.)

7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rigin, Evolution, and Use(2020. 12. 14.)

○ (조사 상대국) 캐나다 6건, EU 5건 등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며,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국가 등 다양한 상대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4] 조사 상대국별 조사 건수 현황

상대국	조사 건수	상대국	조사 건수	상대국	조사 건수
캐나다	6	아르헨티나	1	파키스탄	1
EU	5	온두라스	1	포르투갈	1
베트남	2	인도	1	프랑스	1
우크라이나	2	인도네시아	1	한국	1
일본	2	코스타리카	1	호주	1
중국	2	콜롬비아	1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1
멕시코	1	튀르키예	1		
브라질	1	파라과이	1		

○ (분쟁 이슈) 상대국의 미국에 대한 양허 철회나 차별적 대우, 특정 물품의 산업 피해, 특허보호, 지식재산권. 보조금, 특정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디지털세 등으로 다양한 분쟁 이슈를 제기하여 301조 조사를 개시함

○ (조치 유형) 총 35건의 조사에서 제재 조치를 시행한 건수는 총 6건이며, 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조사 건에서는 무역협정 양허 철회 방식도 사용함

- 보복 취하지 않은 조사건들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였거나, 당사국간 원활히 합의하여 보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01조 관련 조치는 2017년 조사(2018년 3월 조사 완료)의 결과임[76]

○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사

- 2017년~2020년까지 총 6건의 301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국 및 EU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 보복 조치가 이루어짐
- 조사 쟁점사항은 국외 디지털세 도입 부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통화가치, 불법목재, 민간항공기 보조금 지급 등을 사유로 조사가 이루어짐
- 이중 실제 관세부과 보복 조치가 시행된 건은 중국 및 EU 민간항공기 보조금 지급 관련임

76) 후술하는 301조 대중 제재 현황에서 자세히 기술하겠음

[표 2-15]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사

연도	상대국	쟁점	조사 유형	보복 조치	조치 유형	비고
2020	베트남	불법 목재의 수입 및 사용	직권	없음	-	• USTR은 2021년 채결권 베트남-미국 불법 벌목 및 목재 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사 대상 정책 및 관행이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2020	베트남	통화가치 평가	직권	없음	-	• 외환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포함한 베트남의 조사 대상 정책 및 관행 전체가 불합리하며 미국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함 • USTR은 미국 재무부와 베트남 중앙은행 간의 합의가 조사 대상 사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함 (2021년 7월)
2020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	직권	없음	-	• 디지털세는 미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며 일반적인 국제 조세정책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브라질, 체코, EU,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는 해당 국가들이 DST를 도입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종료됨 •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은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유예 후 대상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종료

2019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	직권	예 (일방적/중단)	[관세부과] 프랑스 수입품 13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추가 종가세 부과	• 추가 관세의 적용은 유예되었으며, 양국간 합의를 통해 종료됨
2019	EU	대형 민간 항공기 국내 산업 보조금	직권	예	[관세부과] 연간 약 75억 달러의 무역 가치를 지닌 제품 목록에 대해 10% 및 25%의 추가 종가세 부과	• 미국은 WTO에 소송(DS316)을 제기했으며, WTO 승인된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섹션 301 권한을 사용함 •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 되었으며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유효함) (85 FR 43292) • EU 및 영국과 합의에 도달,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5년간 (2021년 7월부터) 중단됨
2017	중국	기술 이전 지식 재산권 (IP) 정부의 정책/관행	직권	예	[관세부과]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품의 2/3 이상에 대해 7.5~25% 추가 관세 부과	• 미국은 또한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라이선스 요건에 관한 WTO 소송(DS542)을 제기했으나 2020년 8월 6일부로 중단됨(DS543)

[표 2-16] 1995년 이후 미국의 제301조 조사 사례

연도	상대국	쟁점(이슈)	조사 유형	연방 관보 고시	조치 유형	비고
1995	콜롬비아	EU로의 바나나 수출	직권	60 FR 3283	없음	양국간 합의를 통해 종료됨
1995	코스타리카	EU로의 바나나 수출	직권	60 FR 3284	없음	양국간 합의를 통해 종료됨
1995	캐나다	통신서비스 관행 (미국 소유 방송 서비스)	청원	60 FR 8101	없음	민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됨 (Country Music Television 및 New Country Network)
1995	일본	사진 필름 및 인화지	청원	60 FR 35447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사례번호 DS44)
1995	EU	EU 바나나 제도	직권	60 FR 52026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사례번호 DS27)
1995	EU	EU 확대 (미국에 대한 양허 철회 및 관세 인상)	직권	60 FR 55076	없음	미국과 EU 간 협상 종결 협정 체결 ("1994년 GATT 제XXIV:6조에 따라, 1996년 7월 22일 체결, 12월 30일 발효)
1996	캐나다	차별적 대우	직권	61 FR 11067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사례번호 DS31)
1996	포르투갈	특허 보호 기간	직권	61 FR 19970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37)
1996	파키스탄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한 특허 보호	직권	61 FR 19971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36)
1996	튀르키예	영화 박스오피스 수입에 대한 차별적 세금	직권	61 FR 32883 / 61 FR 30646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43).
1996	인도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한 특허 보호	직권	61 FR 35857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50).

1996	호주	가죽 보조금 문제	청원	61 FR 55063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57)
1996	아르헨티나	의류, 섬유, 신발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직권	61 FR 53776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56)
1996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진흥 관련 인센티브	직권	61 FR 54246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59)
1996	브라질	자동차 부문 무역 및 투자	직권	61 FR 54485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52/DS65).
1997	EU	EU 변성 전분 시장 접근 보조금	청원	62 FR 12264	없음	조사는 1997년 6월 6일에 종료됨 (62 FR 32398)
1997	일본	농산물 시장 접근 장벽	직권	62 FR 53853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76)
1997	캐나다	유제품 수출 보조금 및 시장 접근	청원	62 FR 53851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103)
1997	EU	유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약정 회피	직권	62 FR 53852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 (DS104)
1997	한국	자동차 수입장벽	직권	62 FR 55843	없음	정부간 합의를 통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조사는 1998년 10월 20일에 종료됨 (63 FR 59836)
1997	온두라스	지식재산권	직권	62 FR 60299	[양허철회]	온두라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카리브해 분지 이니셔티브(CBI) 프로그램에 따른 특혜 관세 대우를 중단함. 정부간 합의 후 미국은 온두라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

						도(GSP) 및 카리브해 분지 이니셔티브(CBI) 프로그램에 따른 특혜 관세 대우를 복원함
1998	파라과이	지적재산권	직권	63 FR 9292	없음	정부간 합의를 통해 양해각서(MOU)체결. 조사는 1998년 11월 17일에 종료됨(63 FR 64982)
1998	멕시코	고과당 옥수수 시럽	청원	63 FR 28544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DS101/DS132)
1999	캐나다	관광 및 스포츠 낚시	청원	64 FR 28545	없음	정부간 합의를 통해, 온타리오 주는 특정 미국 관광 서비스 제공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 차원의 조치를 철회했고, 캐나다 정부는 조사 중인 이민 조치가 NAFTA 임시 입국 실무 그룹에 의해 검토될 것에 동의함. 조사는 2000년 2월 15일에 종료됨(65 FR 7606)
2000	캐나다	캐나다 밀위원회	청원	65 FR 69362	없음	미국은 WTO에 제소함(DS276)
2001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직권	66 FR 18346	[양허철회 및 관세부과] (조치 1) 우크라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 대우를 중단함 (조치 2) 연간 무역 가치가 약 7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제품에 100% 종가세 부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적 재산권 보호 법규를 개선함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100% 종가세 부과를 해제함. GSP에 따른 무관세 대우를 복원함.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적 재산권 개선에 대한 자체 조치를 취함에 따라 1974년 무역법 182조에 의거하여 "우선 감시국" 지정을 취소함

2009	캐나다	연목재 계약 준수	직권	74 FR 17276, 74 FR 16436	[관세부과] 2006년 연방산 소프트우드 목재 협정(SLA) 하에서 온타리오, 퀘벡,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주에서 수입되는 연방산 소프트우드 목재 제품에 대해 캐나다가 SLA의 특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데 따라 10% 종가세가 부과. 이 관세는 미국이 총 5,480만 달러를 징수할 때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음	캐나다 정부가 SLA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조치를 채택함에 따라 정부간 합의함. 미국은 캐나다 연목재 제품에 부과된 10% 종가세를 해제함
2010	중국	녹색기술분야 (Green Technologies) 무역 및 투자	청원	75 FR 64776	없음	정부간 합의
2013	우크라이나	지적재산권	직권	78 FR 33886	없음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2017	중국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IP) 정부의 정책/관행	직권	82 FR 40213	[관세부과]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품의 2/3 이상에 대해 7.5~25% 추가 관세 부과	미국은 또한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라이선스 요건에 관한 WTO 소송(DS542)을 제기했으나 2020년 8월 6일부로 중단됨(DS543)
2019	EU	대형 민간 항공기 국내 산업 보조금	직권	84 FR 15028	[관세부과] 연간 약 75억 달러의 무역 가치를 지닌	미국은 WTO에 소송(DS316)을 제기했으며, WTO 승인된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섹션 301 권한을 사

					제품 목록에 대해 10% 및 25%의 추가 종가세 부과	용함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 되었으며(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유효함) (85 FR 43292) EU 및 영국과 합의에 도달,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5년간 (2021년 7월부터) 중단됨
2019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	직권	84 FR 34042	[관세부과] 프랑스 수입품 13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추가 종가세 부과	추가 관세의 적용은 유예되었으며, 양국간 합의를 통해 종료됨
2020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	직권	85 FR 34709	없음	디지털세는 미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며 일반적인 국제 조세정책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브라질, 체코, EU,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는 해당 국가들이 DST를 도입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종료됨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은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유예 후 대상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종료
2020	베트남	통화가치 평가	직권	85 FR 63637	없음	베트남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포함한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여 미국 상거래에 제한을 가함 USTR은 미국 재무부와 베트남 중앙은

						행 간의 합의가 조사 대상 사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함(2021년 7월)
2020	베트남	불법 목재의 수입 및 사용	직권	85 FR 63639	없음	USTR은 2021년 채결권 베트남-미국 불법 벌목 및 목재 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사 대상 정책 및 관행이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2024a. 5. 13.), 및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rigin, Evolution, and Use”(2020. 12. 14.)

□ 301조 관련 對중 제재 조치

○ 중국의 지식재산권(IPR),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혁신에 관한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8월 이들 정책과 미국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 2018년 3월에 조사가 완료되어 對중 제재조치 시행중

○ 미국의 중국의 네 가지 광범위한 정책 또는 관행이 확인되어 301조를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함

- 강제 기술이전 요구
- 미국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사이버 기반 절취
- 차별적이고 비 시장적인 라이선스 관행
- 미국 자산의 국가 주도 전략적 인수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4가지 시정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1~4차에 걸쳐 실시함

- (1차) 연간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한 25% 추가 관세부과(2018. 7.)
  - (중국의 대응조치) 즉시 동일 규모.세율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 (2차) 연간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가 화학(51%), 기계(16%), 운송장비(15%), 전자제품(12%)에 집중됨(2018. 8.)
  - (중국의 대응조치) 즉시 동일 규모.세율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 (3차) 1차, 2차에 비해 범위가 대폭 확대된 3차 관세부과 조치는 무려 연간 2,000억 달러 규모, 5,745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화학, 농업, 섬유, 광물, 목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입 당시 10% 관세부과 조치가 이후 25%로 상향 조정됨(2019. 5.)
  - (중국의 대응조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 부과(5~10% →'19.6월, 5~25%)
- (4차) 4차 관세(3,000억 달러 규모)는 1단계에서 농업, 섬유, 광물 등 3,729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며(2019. 9.),「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trade deal)」로 2단계 관세부과 계획은 철회되고 1단계 품목에 대해서도 도입 당시 10%에 비해 소폭 인하한 7.5%로 관세율을 조정함(2020.1. 조정)
  - (중국의 대응조치)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부과(5~10%)
  - (관세율인하.부과연기)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19.12월) 결과, 旣부과된 4차

추가관세율 인하(15%→7.5%) 및 일부 품목 관세부과는 무기한 연기

[표 2-17] 미국의 301조 관련 對중 제재 조치

구분		미국 對중 제재 조치			중국의 對미 대응조치		
		규모	품목수	관세율	규모	품목수	관세율
1차		USD 340억	818개 (IT・기계・전자・운송장비 등: 84~90류)	25%('18.7.6) ↓ 30%('19.10.15)	USD 340억	545개 품목	25%
2차		USD 160억	279개 (화학・기계・전자 등: 27~90류)	25%('18.8.23) ↓ 30%('19.10.15)	USD 160억	333개 품목	25%
3차		USD 2,000억	5,745개 (농축산물・섬유・광물・목재 등: 02~97류)	10~25% ('18.9.24) ↓ 30%('19.10.15)	USD 600억	5,207개 품목	5~10% ↓ 5~25%
4차	리스트 1	USD 3,000억	3,229개 (농축산물, 화학, 의류, 철강 등: 01~97류)	15%('19.9.1) ↓ 7.5%('20.2.14)	USD 750억	1,717개 품목	10%
	리스트 2		542개 (수산물, 목재・신발 등: 03~96류)	15%('19.12.15) ↓ 무기한연기		1,815개 품목	5~10%

3. 무역법(Trade Act of 1974) 201조

3.1. 201조 개요

○ 1974년 무역법 제201조(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그 품목과 유사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77], 일시적으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즉,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19 U.S.C. §2251 ~ §2254)을 말함

• § 2251. 수입 경쟁에 대한 긍정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 2252. 위원회의 조사, 결정 및 권고
• § 2253. 수입 피해 판정 후 대통령의 조치
• § 2254. 조치의 감시, 수정 및 종료

- 201조에 따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피해 조사 및 판정을 진행하며, 미국 시장에 급격히 수입되어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 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시행됨[78]

-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 산업이 수입 경쟁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추가 관세나 쿼터 부과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음

- 여기서 "긍정적인 적응(positive adjustment)"이란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후에도 해당 산업이 수입 제품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산업이 자원을 다른 생산 활동으로 질서 있게 이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79]

3.2. 조사 절차

□ USITC의 조사, 결정 및 권고(19 US Code § 2252)

○ (청원) 201조 조사는 일반적으로 무역 협회, 기업, 노동조합 또는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 근로자 집단의 청원에 의해 개시되며[80], 하원 세입위원회나 상원 재무

77) 19 U.S.C. §2251(a)
78) Safeguards: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01/13/2021. Wong, Liana. CRS Report)
79) 19 U.S.C. §2251(b)

위원회의 결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 또는 USITC 자체 결정에 의해서도 시작될 수 있음[81]

- 청원인은 청원서에 세이프가드 조치 요청의 구체적 목적을 기술한 진술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세의 인상 또는 부과, 양적 제한의 수정 또는 부과 등의 임시구제(provisional relief) 조치를 진술문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o (조사) USITC는 먼저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이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해당 수입 증가가 그 피해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82] 인지 조사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검토함

- (피해조사 판단 고려 요소) 피해 판단 시 USITC는 생산 설비의 유휴화[83], 산업 내 심각한 실업 또는 저취업, 국내 생산의 지속 가능성, 수입 추세, 생산·수익·임금·생산성·고용의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84]

[미측 201조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 판정 시 고려 요소]

- (유휴화) 가동되고 있지 않은 국내 생산시설의 규모
- 기업체 중 상당한 숫자가 국내 생산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이윤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여부
- 국내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의 감소, 재고의 증가, 생산량 · 이윤 · 임금 · 생산성 · 고용의 하락 추이
- 기업의 장비 및 공장 현대화(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R&D 지출 유지 가능성
- 여타 제3시장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미국으로 수입이 왜곡되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 수입이 증가되었고 자국 생산자들의 자국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여부

자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KIEP. 2002.04)

- (조사 기한) 자국 산업 피해 조사는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중대한 사항 발생 시 18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해야 하며, 조사 종료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다만 조사가 매우 복잡하다고 조사 시작 100일 이내에 판된되면, 150일로(중대한 사항 발생 시 210일 연장 가능) 조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공청회 개최) USITC는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하

80) 19 US Code § 2252(a)(1)
81) Safeguards: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01/13/2021. Wong, Liana. CRS Report)
82) 해당 법령인 19 US Code § 2252(b)에서 주요한 원인(substantial cause)을 다른 원인 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수입의 증가가 그 산업의 피해에 있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결정적인 이유(substantial cause)로 판정되는 경우임
83) 공장 폐쇄 또는 생산 용량의 활용 부족이 포함된다.
84) 19 US Code § 2252(c)

고, 이해당사자 및 소비자가 참석해 증거 제출, 의견 개진, 조정계획 논의, 상호 반론 등이 가능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

○ (결정 및 권고) USITC는 조사 결과, 자국 산업에 심삭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 인상, 관세율 할당제, 수입 할당, 국제 협상 개시 등 다양한 구제 조치[85] 등을 보고서의 형태로 대통령에게 권고함

□ 대통령의 조치(19 US Code § 2253)

○ 대통령은 USITC의 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권고안을 그대로 시행하거나(수정해 시행하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치 고려 요소) 대통령은 조치를 고려할 때 USITC의 권고, 산업의 자체 조정 노력, 조치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이익, 국내 산업의 경제적 위상, 국가 경제 및 안보 이익, 소비자 및 기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림

[201조에 따른 대통령의 조치 고려사항]

• USICT의 권고 및 보고서
• 보호를 요청한 산업이 정부의 조정 지원 수혜 여부 및 근로자 재교육 사업 참여 여부
• 산업이 수립한 조정계획 등의 노력 정도
• 조치의 효과성
• 조치의 단기 및 자기 경제·사회적 비용 대비 이익
• 미국 경제이익 관련 요소 (소비자, 경쟁, 조치에 따른 국제보상 의무 등)
• 수입의 우회 가능성
• 조치 회피 가능성
•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자료 : § 2253(a)(2)

○ 대통령이 위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다만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90일 이내에 제재에 대한 공동결의(joint resolution)를 채택하여,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ITC 권고안이 구제조치로 확정되어 대통령이 이를 30일 이내에 선포 해야함[86](대통령의 무조치를 미국 의회가 번복시킬 수 있음)

85) 관세 인상, 관세율 할당제, 수입 할당, 국제 협상 개시 등의 구제조치를 대통령에서 권고 할 수 있음
86) Safeguards: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01/13/2021. Wong, Liana. CRS Report) 및 § 2253(c)

[201조에 따른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

- 관세 인상 또는 부과
- 할당관세(TRQ)
- 수입 수량 제한
- 조정조치(예: 무역조정지원) 실행
- 외국과 수출 제한 협정 체결
- 수입 허가 제도 실시
- 국제 협상 개시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안 제출
- 법적 권한 하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 위 조치들의 조합

자료 : § 2253(a)(2)

o (조치의 제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초 최대 4년간 부과할 수 있고, 한 번 또는 그 이상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지속할 수 있음

- 조치가 3년을 초과할 경우 ITC는 중간 검토(midterm review)를 실시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산업의 조정 노력 부족이나 경제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조치를 수정·축소 또는 종료할 수 있음
- 또한 산업이 수입 경쟁에 긍정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청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조치 종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표 2-18] 201조 조치의 제한

구분	내용
조치기한	기본 4년 / 위원회 긍정 판정 및 연장 판단 시 최대 8년 (기본 4년+추가 4년)까지 연장 가능
관세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조치의 완화	1년 이상 지속되는 조치는 정기적으로 완화 해야함
동일한 품목의 반복 조치 제한	조치 종료 후 동일 기간 또는 최소 2년간 조치 불가 (단, 180일 이하 조치였을 경우, 1년 경과 후 가능)

자료 : § 2253(e)

3.3. 201조 조사 현황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5건의 201조 조사(Section 201 investigations)를 실시함[87)]**

○ 총 75건의 조사중 USITC는 33건에서 부정 판정을 내렸으며, 긍정 판정 42건 중 대통령이 조치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는 14건임

- 2001년 이후부터 트럼프 행정부 1기 이전까지는 진행된 201조 조사는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호 신규 201조 조사 진행되기 시작함

○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승인한 28건에서는 관세 인상, 조정 지원, 관세율 할당제 또는 수입 할당, 마케팅 협정, 복합 조치, 자발적 수출제한, 소득 지원, 재교육·이주지원 등 다양함

[그림 2-1] 긍정판정 대통령 조치(2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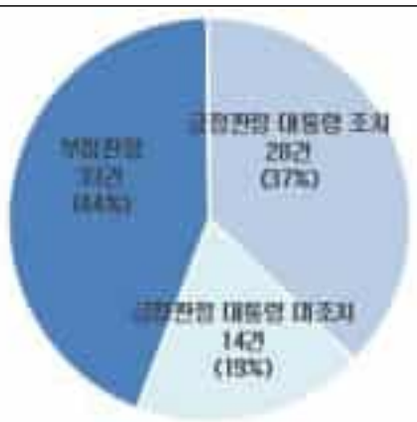

- 관세 인상: 9건
- 조정 지원(adjustment assistance): 6건
- 관세율 할당제 또는 수입 할당제: 3건
- 마케팅 협정(marketing agreements): 1건
- 위 조치들의 조합: 6건
- 그 외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구제 조치: 3건 (자발적 수출 자제 협정, 소득 지원, 노동자 재교육/재배치 등)

○ 2018년 2월 7일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88)]와 태양광제품[89)](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함

- (세탁기 관련) 동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정 수입량(쿼터)내에서 연차별(1~5년차)로 고세율(20% → 15%)을 적용 받으며, 쿼터량 초과시 보다 높은 고세율(50%→30%)을 적용 받음(표 2-16 참조)

87)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CRS, 01/13/2021
88) 포고문 9694(Proclamation 9694, 2018년 1월 23일)
89) 포고문 9693(Proclamation 9693, 2018년 1월 23일)

· 또한, 부품도 대상 조치에 포함되어 쿼터내에는 무관세를 적용받으나, 쿼터 초과시 고관세(50% → 30%)를 연차별 차등적으로 적용

· 대형가정용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0년 12월 USITC의 권고와 2021년 1월 대통령의 포고문[90]을 통해 2년간 연장되었다가 2023년 2월 종료됨

* 한국은 2018년 5월 미측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하여, 2023년 2월 승소 판정을 받은 후 미국이 상소를 포기하여 해당 조치가 2023년 2월 종료됨

- (태양광제품 관련) 태양광 셀의 경우 쿼터내 무관세를 적용하였으며 쿼터 초과시 고세율(50%→30%)을 연차별 차등적으로 적용함. 태양광 모듈의 쿼터 설정없이 고세율(30%→15%→18%)을 연차별(1~5년차) 차등적으로 적용함

·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조정 조치가 포고문을 통해 이루어짐. 주요 내용은 태양광 모듈 4년차 관세율을 당초 15% 대신 18%로 적용하는 포고문[91]이 발표되었으며,

· 더불어 2021년 8월 Auxin Slar 등 업계에서는 4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USITC에 제출함. 이에 USITC는 2021년 12월 4년 연장을 권고하였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서[92] 2026년 2월까지(8년차) 연장됨

[표 2-19] 세탁기 및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관세율

구분	기존 관세율	세이프가드 관세율	1년차 (2019년)	2년차 (2020년)	3년차 (2021년)	4년차 (2022년)	5년차 (2023년)
세탁기 완제품	1% (0.3%)	쿼터내 세율	20%	18%	16%	15%	15%
		쿼터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초과시	50%	45%	40%	35%	30%
세탁기 부품	2.6% (0.7%)	쿼터내 세율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쿼터	5만 개	7만 개	9만 개	10만 개	13만 개
		초과시	50%	45%	40%	35%	30%
태양광 셀	0%	쿼터내 세율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
		쿼터	2.5GW	2.5GW	2.5GW	2.5GW	-
		초과시	30%	25%	20%	15%	-
태양광 모듈	0%	관세율	30%	25%	20%	15%	15%→18%

자료 :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및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용 쟁점과 대응 방안 재가공

90) 포고문 10133(Proclamation 10133, 2021년 1월 14일)
91) 포고문 10101(Proclamation 10101, 2020년 10월 10일)
92) 포고문 10339(Proclamation 10339, 2022년 2월 4일)

4.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

□ **122조는 1974년 무역법상의 19 U.S.C. §2132를 말하며, 국제지급문제(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시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발동 조건) 제122조에서 명시하는 근본적인 국제지급문제는(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다음의 3가지로 명시하고 있음

① 심각한 국제 무역 수지 적자 ② 외환시장에서 중대하고 급박한 달러 가치 하락(평가절하) ③ 국제무역수지 정상화를 위한 외국과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

자료 : 19 U.S.C. §2132(a)

○ 위 조치가 충족되면 대통령은 § 2132 (a)항에 따라 구제적인 구제조치를 선포할 수 있음

- 최대 150일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15% 미만의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발동, 두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선포할 수 있음[93)]
- 제122조에 근거하여 부과된 조치를 150일 이상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후속 입법이 요구됨

○ 또한 대통령이 제122조에 근거한 제재 조치는 비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과 합치하여야 함[94)]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가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미국에 대해 지속적이거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는 일정 국가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12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의 예외를 부과할 수 있음

[표 2-20] 122조(19 U.S.C. §2132) 내용 요약

항목	조문 내용
(a) Presidential proclamations of temporary import surcharges and temporary limitations on	• 기본적인 국제지급문제 발생시 관세부과 수입할당량과 같은 임시 제한 조치를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 • 최대 15% 수입할증관세

93) 19 U.S.C. §2132(a)
94) 19 U.S.C. §2132(d)

imports through quotas	• 수입쿼터 • 위 조치의 조합
(b) Import restrictions not imposed when contrary to national interest	•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의회에 즉시 통보하고, 무역고문단(§2211(a))과 협의해야 함
(c) Presidential proclamations liberalizing imports	• 국제지급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 확대가 필요할 경우 다음 조치를 150일간 선언 가능 • 관세 최대 5% 인하 • 수입쿼터 상향 또는 해제 • 단, 조치가 국내 산업/국가안보/국익에 해로운 경우 제외
(d)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import restricting actions	• 대통령의 조치는 비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에 합치해야함 •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외
(e) Broad and uniform application of import restricting actions	• 대통령이 이 조의 목적에 따라 미국 경제의 필요에 따라 특정 품목이 수입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 범위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균일하게 적용 되어야 함
(f) Quantitative limitations	• 수량 제한 조치는 가장 최근 품목의 수입 물량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수량 또는 가치 보다 적지 않게 설정해야 함을 규정
(g) Suspens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proclamations	• 조치가 시행되는 150일 동안 수정 또는 종료가 가능

자료 :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

□ 조사 절차

o 122조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제무역위원회(ITC)나, USTR, 상무부와 같은 행정 기관의 사전 조사나 사실 조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음. 이는 대통령에게 보다 신속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가능함을 시사함

□ 조치 사례

o 「1974년 무역법」제122조는 현재까지 활용된 바는 없으며, 무역수지 적자, 달러 가치하락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조문임

5. 관세법 338조

□ **미국 관세법 338조(19 U.S.C. § 1338)는 미국에 대해 특정국가가 불리한 차별을 (관세 및 무역장벽 등) 가하는 외국에 대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또는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임**

○ (발동 요건) 미국의 상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확보하고 부당한 무역 차별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미국 상업에 불리한 차별을 해당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미국산 또는 생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국가에서 처분하거나 통과하는 운송 또는 재수출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합리한 요금, 부과, 규제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 미국의 상업을 법률이나 행정 규정 또는 관행, 관세, 항구 세금, 수수료, 요금, 징수, 품목 분류, 규정, 조건, 제한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차별하여 미국의 상업을 외국의 상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두는 경우

자료 : 19 U.S.C. § 1338(a)

○ (대통령의 조치) 추가관세(최대 50%), 수입제한, 제3국 이익에 대한 추가 관세(최대 50%)

- (조치 1 : 추가관세) 대통령은 미국 상품이나 선박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외국에 대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를 (최대 50%) 부과할 수 있음. 이는 미국산 제품이나 선박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임
- (조치 2 : 수입금지) 외국이 차별적 조치를 계속하거나 심화할 경우,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상품이나 선박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음
- (조치 3 : 제3국 제재) 외국의 차별 조치로 인해 제3국의 산업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그 산업의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최대 50%)를 부과할 수 있음

[표 2-21] 338조(19 U.S.C. § 1338) 내용 요약

항목	조문 내용	비고
(a) Additional duties (추가 관세)	대통령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품이나 선박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가하는 외국에 대해 새로운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외국이 미국산 제품 또는 선박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면, 미국 대통령은 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b) Exclusion from	외국이 차별을 지속 또는 강화할	차별이 멈추지 않으면 전면적인

importation(수입 금지)	경우, 대통령은 해당 외국의 상품이나 선박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수입 금지도 가능
(c) Application of proclamation(선포의 적용)	대통령은 조치를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한정할 수 있고, 필요시 수정·철회할 수 있음	조치는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대통령 재량으로 조정 가능
(d) Duties to offset commercial disadvantages(상업적 불이익 상쇄를 위한 관세)	대통령은 차별적 조치로 인해 미국 상업이 불이익을 입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불이익을 상쇄할 관세(최대 50%)를 부과할 수 있음	불이익을 상쇄하는 수준의 맞대응 관세부과 가능
(e) Duties to offset benefits to third country(제3국에 대한 이익 상쇄를 위한 관세)	다른 국가의 차별 조치로 인해 제3국 산업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그 산업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최대 50%)를 부과할 수 있음	우회 이득을 얻는 제3국에도 대응 조치 가능
(f) Forfeiture of articles (물품의 몰수)	위 조항에 위반해 수입된 물품은 몰수 대상이 되며, 세관법에 따라 압류·처벌됨	위반 물품은 미국 세관에 의해 몰수됨
(g) Ascertainment by Commission of discriminations(위원회의 차별 여부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차별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USITC가 감시·조사 역할을 수행함
(h) Rules and regulations (규칙 및 규정)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함	재무부가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함
(i) “Foreign country” defined(“외국”의 정의)	"Foreign country"는 제국, 국가, 식민지, 보호령 등, 자체 관세 제도나 규제가 있는 지역을 포함함	광범위한 외국 지역을 포함하는 정의

자료 : 19 U.S.C. § 1338 바탕으로 정리

□ 조사 절차

- 122조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제무역위원회(ITC)나, USTR, 상무부와 같은 행정 기관의 사전 조사나 사실 조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음. 이는 대통령에게 보다 신속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가능함

□ **조치 사례**

○ 338조는 현재까지 활용된 바는 없으며, 미국에 대해 특정국가가 불리한 차별(관세 및 무역장벽 등)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조문임

6.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6.1. 개요

□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은 선언된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국민의 거래 금지, 자산 몰수 등의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

○ 「국제비상경제수권법(1977년 제정) 모태는 1917년 제정된 적성국교역법(TWEA : Trading with Enemy Act) 임

○ 적성국교역법(TWEA : Trading with Enemy Act)은 미국의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참전 직후 적국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됨[95)]

- 1933년 미 의회는 대통령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내외 거래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TWEA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함
- TWEA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냉전 전략에서 국외 제재를 가하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됨
- 미 대통령들은 TWEA를 활용하여 국제 금융 거래 차단,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 압류, 수출 제한, 금 보유 억제를 위한 규정 변경,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

○ 미 의회의 조사 결과 40년 넘게 미국이 국가비상사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의회는 국가비상사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회 보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EA)과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제정함

95)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2024. Casey, Christopher A.; Elsea, Jennifer K.)

6.2. 법령내용

□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1601)에 따라 '국가비상상태' 선언이 선포되어야 함[96]**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 (§§ 1601 - 1651)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 1701 - 1710)

○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대통령은 의회에서 승인한 법률에 따라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할 권한을 갖으며, 이러한 선포는 즉시 의회에 전달되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되는 절찰 등[97]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 1601 비상사태 종료) 197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유효한 모든 국가비상사태는 2년 후 종료를 규정함[98]
- (§ 1621 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은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갖으며, 비상사태 선포시 즉시 의회에 전달되고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되어야 함
- (§ 1622 비상사태 종료 등) 대통령이 비상사태 종료 선언이나 의회의 공동 결의안 채택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는 종료됨
  - 의회의 공동 결의안에 의해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검토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매 6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회의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종료 여부를 결정
- (§ 1631 권한 행사)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조치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는지는 비상사태 선포와 동시에 하거나, 그 직후 또는 추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이루어짐
- (§ 1641 보고의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는 경우,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포고문(Proclamation) 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주요 명령에 대한 파일과 색인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명령(행정명령 포함)과 기밀이 보장되는 수단을 통해 즉시 의회에 전달되어야함

96) § 1701(a)
97) § 1621(a)
98) 기존 의회 보고 없이 대통령들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일괄 종료를 규정함

[표 2-22] 국제비상사태법 법령 내용

조항	주요내용
TERMINATING EXISTING DECLARED EMERGENCIES(현재 선언된 비상사태의 종료 (§ 1601))	197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유효한 모든 국가비상사태는 2년 후 종료됨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by President; publication in Federal Register; effect on other laws; superseding legislation(대통령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연방 등록부에 게재; 다른 법률에 미치는 영향; 대체 법률(§ 1621)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 즉시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연방관보에 공표 되어야함
National emergencies(국가비상사태(§ 1622))	비상사태는 매년 갱신 필요. 대통령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공동결의로 비상사태 종료 가능. 매 6개월마다 검토.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by executive order(행정명령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1631))	비상사태에 근거한 권한 행사 시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함 어떠한 법률에 따라 권한 행사인지를 명확히 밝혀야함
Accountability and reporting requirements of President(대통령의 책임 및 보고 요구 사항(§ 1641))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관련 조치 등에 관한 명령을 유지 관리 해야하는 의무를 명시
Other laws, powers and authorities conferred thereby, and actions taken thereunder; Congressional studies(다른 법률들, 그에 의해 부여된 권한 및 권력, 그리고 그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 의회의 조사(§ 1651))	NEA는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 다른 비상법에 따른 권한은 유지됨

자료 : 각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

□ 국제비상경제수권법(§§ 1701~1708)

○ (§ 1701)「비상경제수권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 한하여 § 1702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그 권한 행사는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대통령이 그러한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ㅇ (§ 1702) 대통령이 정한 규정, 지시, 기타의 방법에 따라 외환(금융) 거래에 대한 조사·규제·금지가 가능하며, 외국 정무 및 모든 이해당사자의 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 적대국 자산 몰수 등이 가능함

ㅇ (§ 1703) 다만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9],

- 1703조 (b)항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의회에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게 된 상황 • 대통령이 그러한 상황이 그 근원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미국 외부에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믿는 이유 • 행사될 권한과 그 권한을 행사하여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할 조치 • 대통령이 그러한 조치들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 •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외국(들)과, 그 국가(들)에 대해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이유

자료 : 50 US Code § 1703(b)

- (후속보고) 대통령은 권한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한 후 6개월마다 최소한 한 번씩 마지막 보고서 이후 해당 권한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와 이전에 제공된 정보에 관해 발생한 변경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해야함

ㅇ (§ 1704) 대통령은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

ㅇ (§ 1705) 대통령의 명령, 규정 또는 금지사항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것으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및 형사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민사상 벌금)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25만 달러 또는 위반의 근거가 되는 거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민사상 벌금으로 부과함

- (형사 처벌) 1,00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자연인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음

ㅇ (§ 1706)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에도 대통령의 판단으로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권한의 행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의회의 공동결의로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관련 제재조치를 지속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 대통령은 그 권한 행사(제재조치)를 지속할 수 없도록 견제 규정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음

99) 50 US Code § 1703(a)

○ (§ 1707) 미국 군대가 외국 국가의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한 다국적(다수의 국가와 공동으로) 경제 금수조치 및 외국 금융 자산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미국이 참전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무력 충돌이 14일 동안 지속된 경우 다국 경제 금수조치 및 금융자산 물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함

○ (§ 1708)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적 또는 산업적 스파이 활동을 식별하고 해당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이 § 1705에서 규정한 민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23] 국제비상경제수권법 법령 내용

조항	주요내용
§ 1701(대통령의 권한 선언 및 발동 조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특별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제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702(대통령의 권한(자산 동결, 수출입 제한 등))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외국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 권한을 가짐
§ 1703(보고 및 의회 통보 요건)	대통령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비상사태 선포 후 및 지속 기간 중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1704(규정 제정 및 집행 권한)	대통령은 본 법에 따른 권한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1705(위반 시의 처벌 규정)	본 법 위반 시 민사 및 형사 처벌 내용을 규정
§ 1706(예외 및 적용 배제 조항)	국가비상사태가 종료 되더라도 태통령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유지가 가능함을 명시 다만, 의회에 공동 결의로 비상사태 종료가 선언하고 조치의 계속 행사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경우 더 이상 대통령의 조치는 행사 될 수 없음
§ 1707)다국적 경제 금수조치)	미국과 무력 충돌 중인 국가에 대해 다수의 국가와 공동으로 경제 금수조리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708(사이버 상의 경제/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조치)	사이버상의 경제 또는 산업 스파이 활용에 대하여 대통령이 제재 할 수 있음

자료 : 50 U.S.C. §§ 1701~1708를 참고하여 정리

□ 개정 현황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8차례 개정되었으며, 이중 5번의 개정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발령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적용되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변경한 것으로 그 외의 개정 사항으로는 일부 정보자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IEEP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내용임

[표 2-24]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개정 연혁

Date	개정 내용
1977년 12월 28일	IEEPA 제정 (공법 95-223; 91 Stat. 1625)
1985년 8월 16일	대법원이 INS v. Chadha(462 U.S. 919, 1983) 판결에서 입법적 거부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후, 의회는 NEA를 개정하여 “합동 결의(concurrent resolution)”를 “공동 결의(joint resolution)”로 변경함 (공법 99-93; 99 Stat. 407, 448)
1988년 8월 23일	IEEPA가 개정되어 정보 자료는 제외됨(버만 수정안, 아래 설명 참조).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 공법 100-418; 102 Stat. 1107, 1371)
1992년 10월 6일	IEEPA 제206조가 개정되어 민사 및 형사 처벌이 강화됨. (1993년 재무부, 우정국 및 일반정부 세출법; 공법 102-393; 106 Stat. 1279)
1992년 10월 6일	IEEPA 제206조가 개정되어 민사 및 형사 처벌이 완화됨. (1993년 국방부 세출법; 공법 102-396; 106 Stat. 1876)
1994년 4월 30일	IEEPA가 개정되어 정보 자료의 정의가 갱신됨. (1994, 1995 회계연도 외교관계 인가법; 공법 103-236; 108 Stat. 382)
1996년 9월 23일	IEEPA가 개정되어 IEEPA 권한 하에 발급된 허가, 명령, 규정 또는 금지 사항의 위반 시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짐. (199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공법 104-201; 110 Stat. 2725)
2001년 10월 26일	USA PATRIOT법 개정, 아래 설명 참조: (2001년 미국 애국자법; 공법 107-56; 115 Stat. 272)
2006년 3월 9일	IEEPA 제206조가 개정되어 민사 및 형사 처벌이 강화됨(2005년 USA PATRIOT 개선 및 재인가법; 공법 109-177; 120 Stat. 192)
2007년 10월 16일	국제비상경제권 강화법에 따라 IEEPA 제206조가 개정되어 민사 및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법원 모독죄가 위반에 추가됨. IEEPA 권한 하의 위반 또는 금지 사항에 대한 처벌은 최대 25만 달러 또는 위반 거래 금액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 형사 처벌은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및/또는 최대 20년 징역이 포함됨. (국제비상경제권 강화법; 공법 110-96; 121 Stat. 1011)

자료 :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2024. Casey, Christopher A.; Elsea, Jennifer K.),

6.3. 발동사례

□ 1977년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 미 대통령들은 NEA(국가비상사태법) 및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근거로 92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100)]

[표 2-25] 미측 IEEPA 관련 행정명령 및 포고문 리스트

연번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행정명령(E.O.) 또는 포고문(Proclamation)의 제목	선포일	해제일	선포 행정명령/포고문 번호	해제 행정명령/포고문 번호
92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05-12	유지 중	14298	-
91	Addressing Certain Tariffs on Imported Articles	2025-04-29	유지 중	14289	-
90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2025-04-09	유지 중	14266	-
89	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04-08	유지 중	14259	-
88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5-04-02	유지 중	14257	-
87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2025-04-02	유지 중	14256	-
86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and Petroleum Products	2025-03-24	유지 중	14245	-
85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2025-03-06	유지 중	14231	-

100)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2024. Casey, Christopher A.; Elsea, Jennifer K.),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백악관,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Across Our Northern Border				
84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03-03	유지 중	14228	-
8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02-01	유지 중	14195	-
82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2025-02-01	유지 중	14194	-
8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2025-02-01	유지 중	14193	-
80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2025-01-29	유지 중	14156	-
79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2023-08-09	유지 중	14105	-
78	Bolstering Efforts to Bring Hostages and Wrongfully Detained United States Nationals Home	2022-07-19	유지 중	14078	-
77	Declaration of Emergency and Authorization for Temporary Extensions of Time and Duty-Free Importation of Solar Cells and Modules From Southeast Asia	2022-06-06	유지 중	14014	-
76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and Invocation of Emergency Authority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the Anchorage and Movement of Russian-Affiliated Vessels to United States Ports	2022-04-21	유지 중	10371	-
75	Protecting Certain Property of Da Afghanistan Bank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of Afghanistan	2022-02-11	유지 중	14064	-
74	Imposing Sanctions on Foreign Persons Involved in the Global Illicit Drug Trade	2021-12-15	유지 중	14059	-
73	Imposing Sanctions on Certain	2021-09-17	유지 중	14046	-

	Persons With Respect to the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risis in Ethiopia				
72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1-04-15	유지 중	14024	-
71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Burma	2021-02-10	유지 중	14014	-
70	Investments that Finance Chinese Military Companies	2020-11-12	유지 중	13959	-
69	Critical Minerals	2020-09-30	09/30/2021	13953	조치 만료
68	Hong Kong Normalization	2020-07-14	유지 중	13936	-
67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ssociated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20-06-11	4/01/2021	13928	14022
66	Securing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2020-05-01	5/1/2021	13920	조치 만료
65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2020-03-13	Ongoing	9994	-
64	Blocking Property and Suspending Entr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Syria	2019-10-17	유지 중	13894	-
63	Blocking Property and Suspending Entr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Mali	2019-07-26	유지 중	13882	-
62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2019-05-15	유지 중	13873	-
61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2019-02-15	1/20/2021	9844	10142
6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Nicaragua	2018-11-27	유지 중	13851	-
59	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2018-09-12	유지 중	13848	-
58	Blocking the Property of Persons Involved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 or Corruption	2017-12-20	유지 중	13818	-

57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Burundi	2015-11-23	11/18/2021	13712	14059
56	Blocking the Property of Certain Persons Engaging in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2015-04-01	유지 중	13694	-
55	Blocking Property and Suspending Entr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2015-03-08	유지 중	13692	-
54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Conflict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2014-05-12	유지 중	13667	-
53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South Sudan	2014-04-03	유지 중	13664	-
52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2014-03-06	유지 중	13660	-
51	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lating to the Disposi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Extracted From Nuclear Weapons	2012-06-25	5/26/2015	13617	13695
50	Blocking Property of Persons Threatening the Peace, Security, or Stability of Yemen	2012-05-16	유지 중	13611	-
49	Blocking Property of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2011-07-24	유지 중	13581	-
48	Blocking Property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Related to Libya	2011-02-25	유지 중	13566	-
47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Conflict in Somalia	2010-04-12	유지 중	13536	-
46	Declaration of a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2009 H1N1 Influenza Pandemic	2009-10-23	10/22/2010	8443	조치 만료
45	Continuing Certain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Nationals	2008-06-26	유지 중	13466	-
44	Blocking Property of Persons	2007-08-01	유지 중	13441	-

	Undermining the Sovereignty of Lebanon or Its Democratic Processes and Institutions				
43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Conflic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06-10-27	유지 중	13413	-
42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Undermining Democratic Processes or Institutions in Belarus	2006-06-16	유지 중	13405	-
41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Conflict in Cote d'Ivoire	2006-02-07	9/14/2016	13396	13739
40	To Suspend Subchapter IV of Chapter 31 of Title 40, United States Code, Within a Limited Geographic Area in Response to the National Emergency Caused by Hurricane Katrina	2005-09-08	11/3/2005	7924	7959
39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Goods from Liberia	2004-07-22	11/12/2015	13348	13710
38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the Export of Certain Goods to Syria	2004-05-11	유지 중	13338	-
37	Protecting the Development Fund for Iraq and Certain Other Property in Which Iraq Has an Interest	2003-05-22	유지 중	13303	-
36	Blocking Property of Persons Undermining Democratic Processes or Institutions in Zimbabwe	2003-03-06	유지 중	13288	-
35	Blocking Property and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Persons Who Commit, Threaten To Commit, or Support Terrorism	2001-09-23	유지 중	13224	-
34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by Reason of Certain Terrorist Attacks	2001-09-14	유지 중	13223	-
33	Continuation of Export Control	2001-08-17	유지 중	13222	-
32	Blocking Property of Persons Who Threaten International	2001-06-26	유지 중	13219	-

	Stabilization Efforts in the Western Balkans				
31	Blocking Property of Persons Who Undermine the Peace Process in Sierra Leone	2001-01-18	11/15/2004	13194	13324
30	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lating to the Disposi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Extracted From Nuclear Weapons	2000-06-21	6/21/2012	13159	조치 만료
29	Blocking Property and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the Taliban	1999-07-04	12/22/2002	13129	13268
28	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erbia and Montenegro), the Republic of Serbia, and the Republic of Montenegro, and the Republic of Kosovo,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Kosovo	1998-06-09	5/28/2003	13088	13304
27	Blocking Sudanese Government Property and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Sudan	1997-11-03	유지 중	13067	-
26	Prohibiting New Investment in Burma	1997-05-20	10/18/2016	13047	13742
25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and Release of Feed Grain from the Disaster Reserve	1996-07-11	07/01/1997	6907	조치 만료
24	Regulation of the Anchorage and Movement of Vessels With Respect to Cuba	1996-03-01	유지 중	6867	-
23	Blocking Assets and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Significant Narcotics Traffickers	1995-10-21	유지 중	12978	-
22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Iranian Petroleum Resources	1995-03-15	유지 중	12957	-
21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Terrorists Who Threaten To Disrupt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1995-01-23	09/09/2019	12947	-

20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994-11-14	유지 중	12938	-
19	Measures To Restrict The Participation By United States Persons In Weapons Proliferation Activities	1994-09-29	11/14/1994	12930	12938
18	Continu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1994-08-19	4/4/2001	12924	13224
17	Continu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1994-06-30	8/19/1994	12924	12914
16	Measures To Restrict The Participation By United States Persons In Weapons Proliferation Activities	1993-09-30	9/30/1994	12938	12947
15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UNITA	1993-09-26	5/6/2003	12865	24857
14	To Suspend the Davis-Bacon Act of March 3, 1931, Within a Limited Geographic Area In Response to the National Emergency Caused by Hurricane Andrew	1992-10-14	5/6/1993	6491	6534
13	Blocking "Yugoslav Government" Property and Property of the Governments of Serbia and Montenegro	1992-05-30	5/28/2003	12808	13304
12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Haiti	1991-10-04	10/14/1994	12775	12932
11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liferation	1990-11-16	유지 중	12735	-
10	Continu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1990-09-30	9/30/1993	12780	12868
9	Blocking Iraqi Government Property and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Iraq	1990-08-02	9/3/1991	12722	12773
8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Panama	1988-04-08	4/5/1990	12710	12774

7	Prohibiting Trade and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Libya	1986-01-07	9/20/2004	12543	13357
6	Prohibiting Trade and Certain Other Transactions Involving South Africa	1985-09-09	7/10/1991	12532	12769
5	Prohibiting Trade and Certain Other Transactions Involving Nicaragua	1985-05-01	11/8/1990	12513	12760
4	Continu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1984-03-30	7/12/1985	12470	12525
3	Continu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1983-10-14	7/20/1983	12444	12451
2	Sanctions Against Iran	1980-04-17	2/11/1981	12211	조치 만료
1	Blocking Iranian Government Property	1979-11-14	유지 중	12170	-

자료 :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2024. Casey, Christopher A.; Elsea, Jennifer K.),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백악관,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ㅇ 대부분의 비상사태는 특정 국가나 정부를 대상으로한 지리적으로 한정되나 1990년 이후로는 대통령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 테러, 악의적 사이버 활동 등과 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시작함[101)]

ㅇ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25년 05월 30일 기준) NEA 및 IEEPA관련 발동한 행정명령은 총 13건임[102)]

- 이 중 중국 관련 주요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펜타닐 관련 : EO 14195)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이 사회 구조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합성 오피오이디 생산, 판매 등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를 명령함. 중국 및 홍콩에서 생산된 전품목에 20% 관세 부과(최초 행정명령 10%(EO : 14195)에서 개정을 통해 20%(EO : 14228)로 인상)

101)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2024. Casey, Christopher A.; Elsea, Jennifer K.)

102)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확인 결과 트럼프(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152건으로, NEA 및 IEEPA관련 관세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행정명령은 제외하였으며, 구체적인 관세부과 조치가 있는 행정명령은 13건임

· (소액물품 관련)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에 의해 관세가 수정을 통해 현재 소액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54%임

- EO 14256를 통해 중국산 소액물품(800달러 이하) 관세 면제를 철회하고 30% 관세 부과를 결정
- EO 14259를 통해 중국 소액물품 관세 30% → 90%로 인상
- EO 14266을 통해 중국 소액물품 관세 90% → 120%로 인상
- EO 14298을 통해 중국 소액물품 관세 120% → 54%로 인하

· (상호관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는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 부족, 상이한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 외국의 경제 정책이 자국의 임금과 소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함. 현재 중국산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34%이며,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에 의해 상호관세가 수정되었음[103)]

- EO 14257을 통해 60여 개국을 대상을 상호관세 부과를 명령하였으며, 중국 34%, 한국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명령
- EO 14259를 통해 중국 상호관세 34%→84%로 인상
- EO 14266을 통해 중국 상호관세 84%→125%로 인상
- EO 14298을 통해 중국 상호관세 125%→34%로 인하

[표 2-26] 트럼프 행정부 2기 IEEPA 관련 행정명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일자	행정명령 제목	주요내용	제재 조치 /제재국	관세율	근거 법령
14298	25.05.12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조정(감면) 및 적용 범위 축소. EO 14257, 14266 등에서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일부 인하 및 예외 적용. 중국 상호관세 125%→34%로 인하 • 중국 소액물품 관세 120%→54%로 인하	중국	상호관세 125% ↓ 34%로 인하 소액물품 관세 120% ↓ 54%로 인하	IEEPA NEA
14289	25.04.29	Addressing Certain Tariffs on	• 중복 관세(IEEPA, 232조 등)가 동일 품목에	캐나다, 멕시코,	중복 관세 금지	IEEPA 232조

103) 최종 한국 상호관세 15%, 중국 10% 등 국가별로 상이하게 조정/적용되고 있음

		Imported Articles	누적 적용되는 것을 금지("stacking" 방지)	중국,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25% 등)	
14266	25.04.09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 EO 14257 등에서 부과한 상호관세(10% 기본, 일부국 추가) 일괄 90일간 일시 중단("pause"), 중국 등 보복국가에는 상호관세율 상향 조정(최대84%→125%) • 중국소액물품 관세 90%→120%로 인상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기본 10%, 중국 등 최대 125%	IEEPA NEA
14259	25.04.08	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에 대해 상호관세 인상(34%→84%) • 저가 수입품("de minimis")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30%→90%), EO 14257 및 14256 개정	중국	90% (저가품목)	IEEPA NEA
14257	25.04.02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기본 상호관세 부과, 무역적자 유발국·불공정 무역국 대상.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EU, 한국 등 약 60개국	기본 10%, 중국 등 최대 125% (한국 25%)	IEEPA NEA
14256	25.04.02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 중국산 저가 수입품("de minimis")에 대한 관세 신설(30%), EO 14257과 연동.	중국	30% (저가품목)	IEEPA NEA

		Low-Value Imports				
14245	25.03.24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and Petroleum Products	• 베네수엘라산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한 국가의 미국 수출품에 25% 관세 부과(직·간접 모두),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오일을 직간접 수입하는 모든 국가	25%	IEEPA NEA
14231	25.03.06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 2025년 2월 1일 발효된 EO 14193(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을 수정·보완하는 행정명령	멕시코, 캐나다	20→10% 인하	IEEPA NEA
14228	25.03.03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EO 14195관련 중국 펜타닐 관련 보복 관세 10%→20%로 인상	중국	20%	IEEPA NEA
14195	25.02.0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발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차단, 관련 품목 관세 부과	중국	10%	IEEPA NEA
14194	25.02.0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 멕시코발 펜타닐·합성오피오이드 공급망 차단 관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멕시코	25%	IEEPA NEA
14193	25.02.0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 캐나다발 펜타닐·합성오피오이드 공급망 차단 관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캐나다	25%	IEEPA NEA
14156	25.01.29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공급망 보호, 전략비축유 활용 등	-	-	IEEPA NEA

제3장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판정사례

제1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회피조사
제2절 상무부·CBP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회피(Evasion) 판정 사례
제3절 상무부 범위판정(Scope Ruling)

제3장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판정 사례

제1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회피조사

□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무역 구제수단임**

○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생산·수출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우회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제도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와 CBP는 각각 우회조사와 회피조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기술적 또는 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상무부의 우회(circumvention) 조사와 CBP의 회피(evasion) 조사는 모두 AD/CVD 명령의 효과 유지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성격에서 차이를 보임

- 상무부의 우회 조사는 제3국에서의 조립 또는 경미한 변경 등 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려는 기술적·구조적 시도에 초점을 둠. 이는 제도상의 허점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반면 CBP의 회피 조사는 환적, 원산지 허위 신고, 서류 조작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고의 회피 행위를 다루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상무부의 우회조사와 구별됨

1. 상무부 우회조사

1.1. 개요

□ **미국의 우회조사는 19 U.S.C. § 1677j (Section 781 of the Tariff Act of 1930) 근거하여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소속 집행·준수국(Enforcement and Compliance, E&C)이 수행함. 우회 조사는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이 적용된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거나 경미한 가공·변형을 통해 관세 부과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임**

- ㅇ 상무부는 우회조사 결과 우회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우회 물품을 명령(scope)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소급 적용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ㅇ 우회조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청원 또는 상무부의 직권으로 개시되며, 조사 과정에서는 ▲생산공정의 경미성, ▲부품·원재료의 가치 비중, ▲무역 패턴 변화, ▲특수관계 여부 등 정성·정량 요소를 종합해 우회 여부를 판단함

1.2. 우회 유형 및 요건

□ 19 U.S.C. § 1677j (Section 781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른 우회조사는 네 가지(▲미국 내 조립·완성, ▲제3국 조립·완성, ▲경미한 변경, ▲추후 개발된 물품) 유형으로 구분됨

[표 3-1] 미국 상무부 우회조사 4가지 유형

유형		법적근거	주요 내용	비고
①	미국 내 조립·완성	§1677j(a)	미국 내에서 반덤핑 대상 부품을 사소하게/경미하게 조립·완성	사소함/경미함(5요소), 부품 가치 비중+추가고려요소
②	제3국 조립·완성	§1677j(b)	제3국에서 반덤핑 대상 부품을 사소하게/경미하게 조립·완성	사소함/경미함(5요소), 부품 가치 비중+추가고려요소
③	경미한 변경	§1677j(c)	기존 명령 적용 상품에 사소한/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가함	본질적 특성 동일성
④	추후 개발 물품	§1677j(d)	명령 발효 후 개발된 본질적 동일 상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기능·용도·시장 경쟁 관계

□ 19 U.S. Code § 1677j(a) – 미국 내 조립·완성

○ 본 유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국가로부터 부품 또는 구성품을 수입한 후, 미국 내에서 별다른 부가가치 없이 단순 조립 또는 완성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우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 U.S. Code § 1677j(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상무부는 해당 물품 또는 수입 부품을 기존 명령 범위(Scope)에 포함함

- 동일한 종류 또는 분류
  -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기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동일한 종류 또는 분류(class or kind)에 속해야 함
- 기존 제재국(명령 대상국) 부품 사용
  - 명령이 적용되는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구성품으로 미국 내에서 조립 또는 완성되어야 함
- 미국 내 조립·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 조립 또는 완성 과정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경우를 의미함. 이때 상무부는 ▲투자 수준, ▲연구개발(R&D) 수준, ▲생산공정의 성격, ▲생산시설의 규모, 그리고 ▲가공 과정의 부가가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표 3-2] 미국 내 조립·완성 판단 기준

항목	법령 근거	해석
투자규모	(A) the level of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투자 수준
R&D 수준	(B) the leve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연구개발(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C) the nature of the produc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생산공정의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D) the extent of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생산설비의 규모
가공 부가가치 비중	(E) whether the value of the processing performed in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 small proportion of the value of the merchandise sol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수행되는 가공 가치가 미국 내 판매 제품 가치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

- **외국 부품 가치의 비중**
  - 명령 대상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치가 완성품 총가치의 상당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해야 함
- **추가 고려 요인**
  - 상무부는 위 요건 외에도 ▲상품의 무역(거래) 패턴 변화, ▲관련 업체 간 특수 관계 여부, 그리고 명령 부과 이후 ▲미국으로의 수입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회 판정을 내림

□ 19 U.S. Code § 1677j(b) - 제3국 조립·완성

○ 이 유형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구성품을 제3국으로 이전하여 조립·완성한 뒤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함

○ 동 유형의 판단 기준은 조립·가공 장소가 '제3국'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미국 내 조립·완성 유형과 실질적으로 요건이 동일하며, 상무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회 판정을 내림

- **동일한 종류 또는 분류**
  - 제3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기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동일한 종류(class or kind)에 속해야 함
- **기존 제재국(명령 대상국) 부품 사용**
  - 미국 수입 이전에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완제품이 명령 적용국(ex-중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구성품을 사용해야 함
- **제3국 내 조립·가공의 경미성**
  -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상무부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국 공정의 경미성 여부를 판단함

[표 3-3] 제3국 조립·완성 판단 기준

항목	법령 근거	해석(한국어 번역)
투자규모	(A) the level of investment in the foreign country	제3국 내 투자 수준
R&D수준	(B) the leve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제3국 내 연구개발(R&D) 수준

	in the foreign country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C) the nature of the production process in the foreign country	제3국 내 생산공정의 특성
생산설비 규모	(D) the extent of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foreign country	제3국 내 생산설비의 규모
부가가치 비중	(E) whether the value of the processing performed in the foreign country represents a small proportion of the value of the merchandis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제3국에서 수행된 가공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총가치 대비 작은 비중(small proportion)을 차지하는지 여부

- **외국 부품 가치의 비중**
  - 명령 대상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치가 완성품 총가치의 상당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해야 함
- 추가 고려 요인
  - 상무부는 위 요건 외에도 ▲상품의 무역(거래) 패턴 변화, ▲관련 업체 간 특수관계 여부, 그리고 ▲명령 부과 이후 제3국으로의 수입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회 판정을 내림

□ 19 U.S. Code § 1677j(c) - 경미한(사소한) 변경(minor alterations)

○ 본 유형은 상품의 형태나 외관이 경미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함

○ 특히 신선 농산물이나 기초 산업재와 같이, 단순한 외형 변경이나 보존물 첨가 등 경미한 공정을 통해 제품의 외관만을 변경하여 기존 명령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물품에 가해진 변경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물품을 기존 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물품이 기존 명령 대상과 동일한 HS 코드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회 판정이 가능함

[표 3-4] 경미한 변경 고려 요건

원문	해석(한국어 번역)
the overall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rchandise (including chemical, dimension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물품의 전반적인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
the expectations of the ultimate users	최종 사용자의 기대
the use of the merchandise	물품의 용도
the channels of marketing	마케팅(유통) 경로
the cost of modification relative to the total value of the imported product	수입품의 총 가치 대비 변경 비용
consider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roducts enter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황

자료 : 19 CFR 351.226(j)

□ 19 U.S. Code § 1677j(d)—추후 개발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 ㅇ 이 유형(추후 개발된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된 이후에 등장한 기술 혁신이나 신제품 출시로 인해, 명령의 적용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ㅇ 즉 명령 발효 당시 미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존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물품이 기존 명령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함
- ㅇ 상무부는 추후 개발된 물품이 기존 명령 대상 물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의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표 3-5] 추후 개발된 물품 판단 기준

유형			주요내용
1단계		최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시점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 여부	• 조사 개시 시점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여부는 상무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임 •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는 명령 발효 이후에 "추후 개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설령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우회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짐
2단계	①	일반적 물리적 특성	• 추후 개발 물품이 기존 제재국 물품과 동일한 일반적 물리적 특성을 갖는지 여부
	②	최종 구매자의 기대	• 추후 개발 물품의 최종 구매자가 기존 제재국 물품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최종 용도	• 기존 제재국 물품과 추후 개발 물품의 최종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
	④	유통 경로	• 추후 개발 물품이 기존 제재국 물품과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지 여부
	⑤	광고 및 진열 방식	• 추후 개발 물품이 기존 제재국 물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되고 전시되는지 여부

○ 아울러 ▲특정 제품이 단순히 외형상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거나 ▲품목분류가 다르게 분류된다고 해서 기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1.3. 우회조사 주요 절차((19 CFR §351.226)

□ 조사 개시

ㅇ 우회조사는 상무부 직권으로 개시되거나, 수출업자, 수입업자, 미국내 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공식 요청(청원)을 받아 개시할 수 있음

ㅇ 직권 개시(self-initiation) - § 351.226(b)

- 상무부는 이용 가능한 자료(available information)에 근거해 우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개시 통지(notice of initiation)를 게재해 직접 우회조사를 개시 할 수 있음

ㅇ 우회조사 요청(request by an interested party) - § 351.226(c)

- 법령상 이해당사자(예: 수출업자, 수입업자, 미국 내 생산자 등)는 상무부에 우회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청원)서에는 관련 사실관계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우회조사 요청서 필수 기재사항 및 제출 요건]

□ 우회 혐의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

ㅇ 물품의 물리적 특성 : 제품의 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

ㅇ 물품이 생산된 국가, 수출국, 신고된 원산지 국가

ㅇ 미국 HTSUS 및 CBP 품목분류 관련 자료

ㅇ 물품의 사용 용도

ㅇ 물품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도면, 사양서, 마케팅 자료 등

ㅇ 제품 생산에 사용된 부품, 재료 및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

ㅇ 요약본(상기 내용의 요약본)

□ 관련 당사자(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정보

ㅇ 해당 물품의 생산자(producer), 수출자(exporter), 그리고 수입자(importer)의 이름과 주소(name and address)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시만으로 가능

□ 우회 요청에 따른 의견

ㅇ 청원인은 관세법 제781조에 따른 우회(circumvention) 조사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함. 예를 들어 거래경로, 제3국에서 수행하는 공정 등

□ 조사 범위에 대한 청원인 의견

ㅇ 청원인은 우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국가 전체(country-wide basis)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원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상무부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이 특정 기업이나 또는 국가 전체(country-wide basis)에 적용될 수도 있음

□ **사실 정보 및 자료(데이터) 제출:**

ㅇ 동시에 청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ex-수출입 자료(import and export data) 등)

□ 조사 절차(§351.226(c)(3)) : 청원의 경우

ㅇ 의견 및 사실자료 제출(적절성 검토 및 자료수집)

- 상무부에 우회 조사 요청서가 공식 접수되면, 요청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는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및 새로운 사실정보를 1회 제출할 수 있음
- 적정성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정보가 제출된 경우, 요청자는 그 사실정보가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반박·명확화·정정하기 위한 의견 및 사실정보를 1회 제출할 수 있음

ㅇ 개시 결정 : 상무부는 우회 조사 요청서를 검토하여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기한 내에 이루어짐

- 초기 결정 기한 : 상무부는 우회 조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수용(accept)할지 거부(reject)할지, 그리고 조사를 개시(initiate)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기한 연장 조건 : 만약 30일 이내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추가 사실 자료 미제출 시) 만약 이해관계자들이 §351.226(c)(3)에 따라 새로운 사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기한을 최대 15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음

ㅇ (추가 사실 자료 제출 시) 만약 이해관계인들이 새로운 사실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무부는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음

ㅇ (요청서 거부 및 재제출) 요청서가 불완전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는 해당 요청을 거부하며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해줘야 함. 이 경우 요청자는 식별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해당 요청을 재접수할 수 있음

ㅇ 예비 및 최종 판정(preliminary & final determination)

- (예비) 상무부는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예비 판정을 내려야 함. 아울러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 판정 기한은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으며, 예비 판정 결과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됨

- (최종) 최종 판정은 최대 30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하며, 만약 조사가 다소 복잡하여 최종 우회 판정을 내리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는 최대 65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최종 판정 결과에는 19 U.S.C. § 1677j(관세법 제781조)에 따른 우회 요건 판단에 관한 사실적·법적 근거가 포함되며, 해당 제품의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적용 여부가 확정됨

  · 판정 결과는 연방 관보에 공개됨

□ **범위결정**

ㅇ 우회 조사 절차에서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무부는 범위판정 절차(scope ruling, §351.225)를 활용할 수 있음

ㅇ 상무부가 우회 조사 요청을 검토한 결과, 우회 분석에 앞서 범위 결정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우회 조사와 범위 결정의 병행 처리

  · 상무부는 우회 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범위 관련 쟁점(scope issue)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51.225(i)(1)에 따른 절차를 준수함

- 우회 조사 개시의 연기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개시될 범위판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우회 조사 개시를 연기할 수 있음

  · 만약 범위판정 결과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상무부는 그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우회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2. CBP 회피조사

2.1. 개요

□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의 부과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담당해왔으나, 명령 발효 이후 회피 행위에 대한 집행에는 행정적 한계가 있음**

○ 이에 「무역촉진 및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EA)」 제4편(Title IV)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회피 방지"(약칭: "집행 및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 EAPA)")을 제정하여 CBP에 회피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 접수부터 조사·판정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동 법률은 2016년 정식 발효되었으며, 19 U.S.C. §1517 및 이를 이행하는 19 CFR Part 165(회피 조사 절차 규정)에 따라 CBP가 AD/CVD 명령의 회피 의혹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판정-집행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음

・회피란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 중요한 정보 누락 등을 통해 관련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뜻함

・회피 행위 예시로는 **환적(transshipment), 품목분류 오분류(misclassification), 과세가격 저가 신고(undervaluation)** 등이 있음

・CBP 내 무역집행국(Trade Remedy Law Enforcement Directorate, TRLED)이 회피조사(evasion investigation)를 전담함

2.2. 회피조사 조사절차

□ **회피조사 신고 및 접수**

○ 회피조사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AD/CVD order)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고서(allegation)를 제출하면서 시작됨

- (정의) 이해관계자는 법령 상 광범위하게 정의되는데, 주로 상품과 직접 관련된 국내외 업체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 산업별 노동조합을 포함됨

- (신고서 작성) 회피 협의를 제기하는 신고서는 e-Allegation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또는 CBP가 승인하거나 지정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함

· 신고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절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회피조사 요청서 필수 기재사항 및 제출 요건]

ㅇ **신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19 CFR Part 165」의 § 165.11(b)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이해관계자 : 신고자의 이름,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 그리고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 이해관계자 자격 요건: 신고를 제기하는 주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설명
- 혐의 대상 수입업자 정보: 회피 혐의 대상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 대상 상품 설명: "대상 상품(covered merchandise)"에 대한 설명
- AD/CVD 명령 번호: 해당 AD/CVD 명령 번호
- 증거 자료 : 해당 수입자가 회피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 영업비밀(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BCI)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조사 개시 결정

ㅇ CBP는 제보가 접수되면 그 타당성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함.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됨

- CBP는 제보가 적법하게 접수된 날(§165.12(a)) 또는 연방기관의 조사요청(§165.14)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조사개시 기준 : CBP는 다음 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조사 개시를 결정함

[회피조사 개시 결정 기준]

ㅇ **물품의 성격(Nature of merchandise)**
-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 물품(covered merchandise)이 관련 AD/CVD 명령의 범위(scope) 내에 있어야 함
- 만약 CBP가 명령의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해당 사안을 상무부에 회부 해야함
ㅇ **회피 가능성(Likelihood of evasion)**
- 제보 또는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는 대상 물품이 환적(transshipment), 품목분류의 오분류(misclassification),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undervaluation) 등의 방식으로 회피되었을 가능성이 정황상 포착될 정도의 개연성을 보여야 함
ㅇ **(예외) 상기 기술한 내용이 충족되더라도 이해관계자 또는 연방 기관이 신고 또는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음**

- CBP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개시 통지서는 조사의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됨

[회피조사 결정 시 조사 통지 시점과 내용]

ㅇ **통지 시점 : CBP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조사 개시 결정 통지서를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함** ㅇ 통지 내용: 통지서에는 조사의 실제 개시일(actual date of initiation)이 명시되어야 함 ㅇ **CBP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제보를 제출한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함**

□ 정보수집 및 제출 요건

ㅇ 정보수집

- CBP는 법적으로 허가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조사 당사자는 회피 의혹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 모든 제출물은 § 165.4(정보 공개) 및 § 165.5 (정보 획득 및 제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서면으로 영어 또는 적절한 영어 번역이 첨부되어야 하고, CBP가 지정한 이메일 또는 승인된 방식으로 전자 제출되어야 함
- 아울러 자료 제출 시 § 165.5(b)(2) (필수 인증(certifications))을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제출물은 거부되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s)을 초래할 수 있음

[회피조사 수행 시 조사 당사자가 제출하는 정보에 대한 유의사항]

ㅇ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인증** - 제출물 및 그에 첨부된 모든 자료에 포함된 진술이, 제출 당사자를 대표하여, 본인의 지식과 신념에 근거하여 사실이며 진실됨을 인증함 ㅇ **정보 공개에 대한 인증 (영업비밀 제외)** - 제출물 중, §165.4(a)에 따라 영업비밀 처리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에 동의함을 인증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정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별도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ㅇ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험 통보에 대한 인증** - §165.7(a)에 따라, 대상 물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CBP에 통보할 것임을 인증함

○ 영업 비밀 보호 및 행정적 보호 명령(APO)

- (영업 비밀 보호 및 행정적 보호 명령(APO)) CBP에 자료를 제출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제출물의 일부를 영업 비밀 정보(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BCI)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이는 조사의 개시 및 행정적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포함하여 본 규정(Part 165)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CBP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적용됨
- CBP는 ① 영업 비밀 및/또는 ② 기밀인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는 영업 비밀 보호 자료로 승인
- (행정적 보호 명령 (APO) 발급 및 접근) CBP가 이해관계자의 제출물 중 일부를 영업 비밀 정보로 취급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한 조사 건에 한해 CBP는 행정적 보호 명령(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O)을 발부 APO에는 조사 당사자의 대표자들이 해당 영업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됨

○ 정보 검증 및 현장 방문 조사

- CBP는 회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또는 외국에서 수집된 정보를 재량에 따라 검증(verify)할 수 있음

□ **잠정조치(interim measures) 및 최종 결정(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 (잠정조치) CBP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수입업자가 회피를 통해 대상 물품(covered merchandise)을 반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을 경우에 발동됨

○ (최종 결정) 조사가 완료되면, CBP는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를 기반으로 대상 물품이 회피를 통해 미국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determination)을 내림

[표 3-6] CBP EAPA 조사 일정

구분	주요내용
0일[104]	조사 개시(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달력일 기준)	회피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판단 및 잠정조치(interim measures) 발령
잠정조치 이후 5영업일 이내	조사 개시 및 잠정조치 발령 여부에 대한 통지

조사 개시일로부터 200일 이내(달력일 기준)	사실정보(factual information)의 자발적 제출 마감일[105]
조사 개시일로부터 230일 이내	서면 주장의 제출 마감일(written arguments)
서면 주장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마감일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300일 이내	AD/CVD 회피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또는 기한 연장 통지
조사가 매우 복잡한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360일 이내	AD/CVD 회피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최종 판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CBP의 회피 여부 판정에 대한 통지

자료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행정적 재검토 및 사법심사

- ㅇ (재검토) 조사 당사자는 CBP의 회피 여부 판정에 대해 행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ㅇ 재검토 요청은 회피 여부에 대한 최초 판정이 발부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또한 조사의 당사자들은 재검토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을 행정 재검토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CBP에 제출해야 함
- ㅇ 다만, 기한을 넘기거나 불완전한 요청은 수락되지 않음
- ㅇ CBP는 해당 행정 재검토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함

[표 3-7] CBP EAPA 재검토 일정

구분	주요내용
0일	행정 재검토 개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재검토 요청서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 마감일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	행정 재검토 완료 (CBP의 최종 결정)

자료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소송) CBP의 최종 행정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명시되고, 이 최종 행정 결정은 TFTEA 제421조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됨

104) CBP는 신고 접수 후 언제든지 신고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에 적법하게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상무부(Commerce)에 심의 요청을 제출할 수 있음. CBP는 심의 요청일자를 조사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함. 상무부의 심의 및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CBP의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CBP는 상무부의 결정 내용을 조사 당사자에게 통지함. 기한 및 통지 요건은 조사 당사자에게만 적용됨

105) 조사 당사자는 CBP가 기록에 등재한 새로운 사실 정보 및 조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기록에 등재된 사실 정보에 대해 10일 이내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2.3. 조사 현황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기준으로 '중간 조치(interim measures) 및 최종 판정' 단계에 진입한 EAPA 사례는 총 405건임. 이 중 379건이 제3국을 경유한 환적(transshipment scheme)을 통한 회피와 관련되어, 회피 행위의 대부분이 중국 등 제재 대상국에서 직접 수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해 간접 수출되는 형태임을 보여줌

[그림 3-1] EAPA 회피 조사 현황 및 회피 수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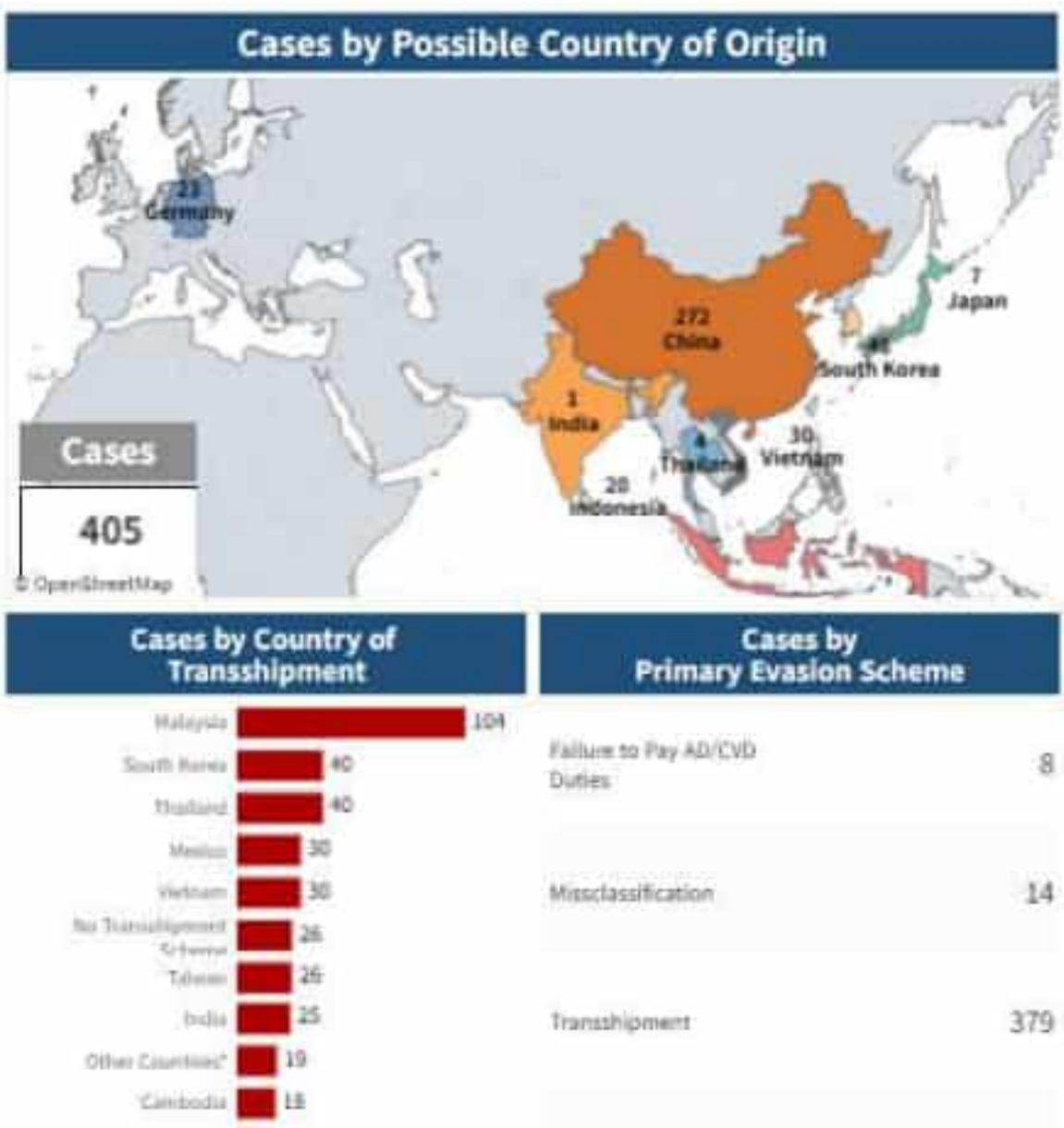

자료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EAPA Statistics & Notices of Action(2025년 6월 6일 기준)

○ [그림 3-2]는 중국이 실제 또는 추정 원산지로 분류된 272건의 EAPA 회피 조사 사례에 대한 환적국 분포 및 회피 수법 유형을 시각화한 것임

○ 주요 환적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한국 등이 확인되며, 회피 방식 중 단순 환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중국산 제품이 실질적 가공 없이 또는 추가 가공 후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며 AD/CVD 회피 목적의 원산지 허위신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3-2] 중국이 추정 원산지인 회피 사례 및 환적국 분포

자료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EAPA Statistics & Notices of Action, 2025년 6월 6일 기준)

제2절 상무부·CBP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회피(evasion) 판정 사례

1.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 사례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시스템 ACCESS[106]에는 2011년 이후 약 30여 건[107]의 중국 관련 우회조사 사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됨**

○ 이 가운데 총 18건을 선별해 분석을 진행했으며, 해당 사례들은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11건, 추후 개발 물품 3건, 경미한 변경 2건, 미국 내 조립·완성 2건으로 구성됨

-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우회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원재료 및 중간재의 주요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쟁점에 자주 등장함. 한국 역시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해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 과정에서 유사한 우회조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하에서는 주요 판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사례별 분석을 통해 상무부의 판단 요소와 유형별 반복 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표 3-9] 상무부 우회조사 유형별 목록

구분		케이스 번호		물품	판정일
상무부 (우회조사) 18건	제3국 조립·완성 (11건)	1	A-570-029 / C-570-030	**냉간압연강재**	18.05.23
		2	A-570-026 / C-570-027	부식방지강(CORE)	20.07.13
		3	A-570-943 / C-570-944	유정용 강관	21.11.19
		4	A-570-910 / C-570-911	원형용접탄소강관	23.11.02
		5	A-570-112 / C-570-113	스테이플	24.01.23
		6	A-570-967 / C-570-968	알루미늄 압출제품	19.05.17
		7	A-570-053 /	알루미늄 포일	23.11.17

106) ACCESS는 미국 상무부 집행·준수국(Enforcement and Compliance)이 수행하는 모든 AD/CVD 절차에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공개·관리하는 공식 플랫폼임

107) 본 수치는 사건번호(case number)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하나의 사건번호 안에 복수의 우회조사가 병행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케이스 단위로 산정함(2011년부터 2025년 4월 기준).

			C-570-054		
		8	A-570-095 / C-570-096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25.1.23
		9	A-570-900	다이아몬트 톱날 및 그 부분품	19.07.10.
		10	A-570-051	하드우드 및 장식용 합판과 베니어 패널	23.07.20
		11	A-570-979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23.08.18
	추후 (3건)	1	A-570-051	나무 합판	19.11.12
		2	A-570-967 / C-570-968	알루미늄 압출제품	20.03.03
		3	A-570-124 / C-570-125	듀얼(이중) 피스톤 엔진	23.02.21
	사소한 (2건)	1	A-570-124 / C-570-125	60cc 이상 99cc까지의 수직축 엔진	22.12.09
		2	A-570-831	중국산 IQF(개별급속냉동) 소형·대형 마늘 조각	24.06.07
	미국 내 (2건)	1	A-570-104 / C-570-105	무나사 핀	24.08.02.
		2	A-570-022 / C-570-023	비도공지 인쇄용지	24.08.02.

1.1. 제3국 조립·완성 유형

1) 냉간압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CRS)[108]

사례번호	A-570-029 / C-570-030	
조사 개시일	2016.11.04	
최종판정	2018.05.23	
조사 대상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RS)를 베트남으로 수입해 냉간압연 공정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한 냉간압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이하 CRS)	
조사 배경	2016년 중국산 CRS에 AD/CVD 명령 발효 이후 대미 수출 급감 청원인들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한 베트남 CRS가 실질적으로 중국산 우회 제품이라 주장 ※주요 업체: POSCO Vietnam, VNSteel-PFS	
적용 법령	19 U.S.C. §1677j(b); 19 CFR §351.226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7209.15.0000, 7209.16.0030, 7209.16.0060, 7210.90.9000 등	
상무부의 우회조사 판정 결과	투자수준	- 중국의 일체형 제강 설비: 최대 약 101억 달러 - 베트남 냉간압연 설비: 약 2,800만~7,000만 달러 수준 ▸상대적으로 미미한 투자로 판단
	생산공정 & 생산시설	- 베트남 공정은 주로 후공정(냉간압연 등)에 국한 - 중국 내 제강 및 열간압연 단계가 제품 가치 대부분 차지 - 베트남 공정은 복잡도 및 집약도가 낮다고 평가
	부가가치 (제3국) & 원재료 변화	- 최종 제품 가치 중 80~90%: 중국산 HRS - 베트남 가공 단계 부가가치: 약 10~20% 수준 ▸상무부는 최종 제품 가치의 80~90%가 기존 명령 대상국인 중국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제3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우회 판단의 근거로 삼음
	무역흐름 변화	- 중국산 냉간압연강재에 대한 AD/CVD 명령 이후 대미 수출 급감 - 같은 시기 베트남산 냉간압연강재 대미 수출 급증 - 베트남의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수입 또한 함께 증가
결론	- 베트남에서 생산된 냉간압연강재는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활용하여 경미한 공정만 수행한 것으로 판정 - 기존 중국 CRS 명령 우회(circumvention)로 최종 결정 - 무역흐름 변화, 원재료 구조, 부가가치 비율 등을 종합해 우회 인정	

108) **(조사개시)**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and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Nov 4, 2016)(barcodes : 2016-27850)
(예비판정)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and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Dec. 5, 2017)(barcodes : 2017-26607),
(최종판정 및 메모)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and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May 23, 2018)(barcodes : 2018-11029)

본 사례는 미국 상무부가 2016년에 부과한 중국산 냉간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한 것으로 판단된 베트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에 관한 내용임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냉간압연강재	16.05.24	7209.15.0000	16.11.04	베트남	최종판정 (18.05.23)

□ 조사 배경

○ 미국 철강업계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냉간압연강재(CRS)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원재료로 사용해 생산·수출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냉간압연강재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우회한다고 주장함

○ 이에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1월 베트남산 CRS 에 대해 우회를 개시했고, 베트남 내 주요 수출업체인 포스코 베트남(POSCO Vietnam)과 VNSteel-PFS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두 회사는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베트남에 수입하여 냉간압연 공정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상무부는 이 공정이 사소하거나 경미한(minor or insignificant) 수준인지 중점 검토함

- 우회 조사 결과, 베트남 내 공정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중국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재 전체가 미국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만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원산지 증명(Origin Certification)을 통해 미국 관세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표 3-10] 중국산 냉간압연강재(CRS)의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5.07.28	• 청원인(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Steel Dynamics, Inc.,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미국 상무부(DOC)에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냉간압연강재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함
16.09.22 16.09.27	• 청원인들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베트남에서 냉간압연강재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기존 중국산 냉간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16.11.04	• (조사 개시)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냉간압연강재에 대한 우회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

17.12.05	• (예비 판정)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을 사용하여 생산된 냉간압연강재가 기존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긍정 결정(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함
18.05.23	• (최종 판정)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냉간압연강재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함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냉간압연강재를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대상으로 함

○ (기존 명령의 범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는 다음과 같음

[표 3-11]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요약

□ 대상물품

ㅇ 이 명령이 적용되는 제품은 특정 냉간압연 평판 강제품(cold-rolled flat-rolled steel products)으로, 어닐링(annealed), 도장(painted), 바니시(바니시 처리, varnished), 또는 플라스틱이나 기타 비금속 물질로 코팅(coated)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명령의 적용 대상임. 단, 금속으로 클래드(clad), 도금(plated) 또는 코팅된(coated) 제품은 본 범위에서 제외됨

□ 두께 및 형태

ㅇ 폭 12.7mm 이상 코일(coil) 형태 제품은 그 형태(연속적 적층 모양, 나선형으로 감긴 모양 등)에 관계없이 포함

ㅇ 단, 코일 형태가 아닌 직선형 제품의 경우 1) 두께가 4.75mm 미만이고, 폭이 12.7mm 이상이며, 폭이 두께의 최소 10배 이상인 제품 또는 2)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150mm를 초과하며, 폭이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제품

ㅇ 위에서 설명한 제품들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기타 형상일 수 있으며, 압연 이후 별도의 가공(예: 모서리 절단(beveled) 또는 라운딩(rounded at the edges) 등)을 통해 비직사각형 단면 형태를 가진 “압연 후 가공된 제품(worked after rolling)”도 포함됨

□ 폭 및 두께 기준

ㅇ 공칭(nominal) 치수와 실제(actual) 치수가 다를 경우, 어느 측정 기준이든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해당 제품은 본 명령의 적용 대상임. 단, 제품별로 폭과 두께가 달라질 경우(ex-직사각형이 아닌 단면을 가진 특정 제품 두께, 직사각형이 아닌 특정 제품의 폭 등), 가장 큰 폭 또는 두께가 기준이 됨

□ 적용 대상 철강제품의 화학적 요건

ㅇ 철 함량이 가장 많아야 하고, 탄소함량이 2% 이하여야 하며 특정 원소들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109]

ㅇ 특별하게 제외되지 않는 한, 붕소(Boron) 및 티타늄(Titanium)의 함량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ㅇ 진공 탈가스 처리 및 완전 안정화강(IF강)[110], 고강도 저 합금강(HSLA강)[111], 모터 라미네이션강[112], 고급 고강도강(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AHSS) & 초고강도강(Ultra High Strength Steels, UHSS)[113]포함

□ 제3국 가공

ㅇ 제3국에서 어닐링(annealing), 템퍼링(tempering), 도장(painting), 바니시(varnishing), 절단(trimming), 커팅(cutting), 프레스·펀칭(punching), 슬리팅(slitting) 등의 추가 가공이 수행되더라도, 해당 가공이 본 명령의 범위에서 해당 상품을 제외시키지 않을 가공이라면 해당 제품은 명령의 범위 내에 포함됨

□ 제외 물품

ㅇ 볼 베어링강(ball-bearing steels), 공구강(tool steels) 실리코망간강(silico-manganese steel) 등임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ㅇ 7209.15.0000, 7209.16.0030, 7209.16.0060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동 명령을 적용 받는 제품은 7210.90.9000 외에도 다수의 HTSUS 품목번호가 명령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HTSUS 소호는 편의 및 관세 목적으로만 제공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명령의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임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 상무부는 우회조사 판단 시 조사 대상 제품이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과 동일한 종류(the same class or kind)에 속하는지 여부를 주요 요소로 검토함. 이에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제품이 명령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함

- 청원인은 베트남산 냉간압연강재가 기존 명령의 대상 품목과 동일한 HTSUS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베트남 내 주요 생산자들이 제출한 제품 목록 및 기술자료를 검토한 결과, 베트남에서 가공된 냉간압연강재는 기존 명령에 규정된 물리적·화학적 특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109) 망간 2.5% 이하, 실리콘 3.3% 이하, 구리 1.5% 이하, 알루미늄 1.5% 이하, 크롬 1.25% 이하, 코발트 0.3% 이하, 납 0.4% 이하, 니켈 2% 이하, 텅스텐 0.3% 이하, 몰리브덴 0.8% 이하, 나이오븀(콜럼븀) 0.1% 이하, 바나듐 0.3% 이하, 지르코늄 0.3% 이하, 붕소(boron) 및 티타늄(titanium) 함량 수준은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포함
110) 티타늄, 나이오븀 등 미량 합금으로 탄소와 질소를 안정화한 저탄소강
111) 크롬, 구리, 나이오븀, 티타늄, 바나듐, 몰리브덴 등 미량 합금 포함
112) 실리콘 및 알루미늄과 같은 미량 합금 수준의 원소를 포함
113) 고인장강도 또는 고연신강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

- 이에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기존 명령 대상과 동일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냉간압연강재가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재를 원재료(inputs)로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상무부가 확보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청원인들은 2015년 12월 중국산 냉간압연강재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이후, 베트남의 대미 냉간압연강재 수출이 급증하는 등 무역 패턴의 뚜렷한 전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실제로 중국산 냉간압연강재의 대미 수출이 2015년 이후 급감한 사실이 확인됨.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2015년 상반기 334,873쇼트톤에서, 2015년 하반기에는 153,153쇼트톤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154쇼트톤 수준으로 급감함

- 또한 베트남 내에서 냉간압연강재 생산에 필수적인 열간압연강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아울러 베트남 주요 생산·수출업체(POSCO Vietnam, VNSteel-PFS)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중 일부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상무부는 중국 내 철광석 투입부터 열간압연강재 생산까지 가능한 통합 제강 설비에 필요한 투자 수준과 베트남 내 냉간압연강판 생산을 위한 투자 수준을 비교함

  · 베트남에서 냉간압연강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은 약 2,8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로 추정됨

  · 반면, 중국에서 철광석 용해부터 열간압연강재 생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통합 제철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2억 9,500만 달러에서 최대 약 101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포스코 베트남은 자사의 냉간압연강판 공장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부과 이전인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우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

으나, 상무부는 이를 우회 판단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② 연구개발(R&D) 수준)** 상무부는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베트남 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활동은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POSCO Vietnam은 베트남 내에서 R&D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주요 연구개발 활동이 한국의 모회사(POSCO)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상무부는 관세법 §781(b)(2)(B)에 따라 제3국인 베트남 내에서 실제로 수행된 연구개발 활동만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활동은 본 분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한편 VNSteel-PFS는 R&D 비용을 보고하였으나, 상무부 검토 결과 이는 장비 설치 및 시운전(a test run) 비용으로 확인되어 R&D로 인정되지 않음
- **(③ 생산공정의 특성 및 ④ 생산시설의 규모)** 상무부는 제3국 생산 공정이 원재료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재료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질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3국 생산 공정을 평가하여 원재료 생산국의 공정보다 덜 복잡하고 덜 집약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경미한(minor or insignificant)' 가공으로 보고 우회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상무부 평가 방식) 상무부는 생산 공정 평가 시, 제3국 내 최종 생산 공정이 최종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생산 공정 대비 얼마나 복잡한지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본 사례에서도 원재료 생산국(중국)과 제3국(베트남)의 생산 공정 복잡성을 두고 우회 여부를 판단함
  - (원재료 생산국과 제3국 공정 복잡성 비교) 상무부는 중국내 열간압연강재 제조 공정이 복잡한 반면, 베트남 내 냉간압연강재 생산기업들의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활용한 가공공정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았으며, 베트남의 생산 공정 설비가 중국 대비 기술적으로 덜 복잡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은 일반적으로 (1)철광석을 원료로 용해(melting) 및 정련(refining) 단계를 거친 후, (2)주조 및 (3)열간압연공정을 통해 완성되는 일련의 다단계 통합과정으로 되며, 상무부는 완제품 가치의 대부분과 핵심 생산활동이 이러한 초·중간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함
  - (냉간압연강재 생산 공정) 반면, 베트남의 생산공정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수입하여 산 처리(pickling), 냉간압연, 어닐링(annealing) 등의 후공정을 수

행함. 상무부는 이러한 베트남의 공정이 중국의 통합 생산설비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제한적이며, 생산설비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표 3-12] 중국 및 베트남 생산공정 비교

항목	중국 열간압연강재 생산공정	베트남 냉간압연강재 생산공정
공정 시작 (원료)	철광석 등 천연 자원	수입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제조공정	철을 녹이는 용해 및 정련 → 주조 및 노외정련 → 열간압연	산처리 → 냉간 압연 → 어닐링
기술/설비 복잡성	통합설비 필요	제한된 범위의 후공정 위주 설비
투자 수준	매우 높음(수억 달러 규모) (USD 2억 9천 5백불 ~ USD 101억 불)	상대적으로 낮음 (USD 2천 8백만 불~USD 7천만불)
주요 가치 기여	열간압연강재를 생산하는 것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냉간압연강재의 전체 가치의 큰 비중	원재료인 열간압연강재에 대부분 의존

- (업체 반박의견 및 상무부의 판단) 베트남 내 주요 생산업체들은 이러한 상무부의 판단에 반박하여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한 베트남 내 냉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이 관세법 §781(b)에 따라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minor or insignificant)'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 이들은 최종 완제품 생산을 위해 냉간 압연(cold-rolling), 어닐링(annealing), 아연 도금(galvanizing) 등의 가공이 물리적 특성과 용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상품이 창출되고 원산지 또한 달라진다고 주장함
  - * 또한, 이러한 생산 공정이 단순 조립(screwdriver operations)을 넘어서는 복잡한 제조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산 중간재인 열간압연강재의 근본적인 물리적 특성과 상업적 용도를 변화시켜 새로운 상품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함
  - * 상무부는 베트남 내에서 수행된 냉간 압연이나 어닐링과 같은 공정이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정이 전체 냉간압연강재 제조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할 때, 열간압연강재 생산의 중요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여전히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베트남의 냉간압연강재 가공 공정이 중국내 열간압연강재 가공공정 대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덜 집약적이며,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최종적으로 우회 사례라고 판단함

- **(⑤ 부가가치 비중)** 청원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재가 제3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냉간압연강재 전체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자료에 따르면 냉간압연강재 전체 가치의 80~90%가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재에서 발생하는 반면, 베트남 내 냉간압연강재 가공 활동의 부가가치는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체 값(Surrogate Value, SV)*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의 가치와 베트남 내 냉간압연강재 가공 비용을 산정함

    *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부가가치 비중을 산정할 때 대체값(surrogate values)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체값(surrogate value)란 중국과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NME)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가나 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국가의 실제 가격 대신 시장경제국의 유사한 가격 데이터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값임

  · 산정 결과, 베트남 내 가공 부가가치 비중은 청원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최종 수출품 가치에서 작은비중에 불과한 반면, 중국산 열연강판(HRS) 원재료의 가치가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 고려 요소**

○ (무역 흐름의 변화 & 원재료 수입 구조 변화) 상무부는 냉간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이후 무역흐름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회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미국이 중국산 냉간압연강재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전인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조사가 개시된 7월부터 12월까지 중국산 냉간압연강재 수입은 54% 감소함. 이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 감소가 조사 개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함

- 한편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미국의 베트남산 냉간압연강재 수입

량이 급증함. 2014년까지 베트남은 미국으로 냉간압연강재를 수출하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베트남산 CRS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동시에 냉간압연강재 생산을 위한 원자재인 열간압연강재의 중국발 베트남 수입량도 큰폭으로 증가함. 상무부는 이러한 원자재 수입 증가가 베트남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해 냉간압연강재를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경로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함

- 실제로 중국산 HRS의 베트남 수입량은 2015년 1-7월까지 3,196,503(쇼트톤)에서 2016년 1-7월까지 4,504,419(쇼트톤)으로 41% 증가함

- 상무부는 이러한 무역 패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산 냉간압연강재 감소와 베트남산 CRS 수입증가, 그리고 중국산 원재료의 베트남 수입 증가가 모두 우회의 증거로 작용한다고 판단함

[표 3-13] 중국→미국 / 베트남→미국 / 중국→베트남(HRS) 무역 변화 비교

(단위 : 쇼트톤(short tons), %)

구분	기간	수출량	증감률
중국 → 미국 (냉간압연강판)	2015.1~6 (조사개시 전)	334,873	-
	2015.7~12 (조사개시 후)	153,153	▼54%
	2016.1~6	154	▼99.9%
베트남 → 미국 (냉간압연강판)	2014	0	-
	2015	8,686	-
	2016	51,018	▲587% (2015년 대비)
중국 → 베트남 (HRS 원재료)	2015.1~7	3,196,503	-
	2016.1~7	4,504,419	▲41%

- POSCO Vietnam 등 일부 베트남 생산·수출업체들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사용 비중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무부는 개별 기업의 진술보다는 전체 무역 패턴과 수입 동향의 변화가 우회 여부 판단에 더 결정적이라고 판단함

○ **(특수관계 여부)** 상무부는 베트남 기업과 중국 열간압연강재 생산·수출기업 간 제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특수관계 여부는 우회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우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우회판정 결과**

ㅇ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냉간압연강재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채 제한적 공정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함

- 특히 투자 수준, 생산공정,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및 중국산 원재료 비중 그리고 무역 흐름 변화 등 정량적·정성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회(circumvention)가 성립한다고 결론지음

2) 도금강판(CORE)[114]

사례번호	A-570-026 / C-570-027	
조사 개시일	2016년 9월 22일 (상무부 직권 개시)	
최종판정일	2018년 5월 23일	
조사 대상	제3국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ot Rolled Steel, HRS) 및/또는 냉간압연강재(Cold Rolled Steel, CRS)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미국에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으로 수출	
조사 배경	2015년 6월 미국 철강 업체의 도금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청 청원에 따라 미국 상무부(DOC)는 2016년 7월에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도금강판에 대하여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부과함 명령 부과 후 미국 상무부(DOC)는 제3국이 중국으로부터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를 수입하여 도금강판를 생산한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권으로 우회 조사를 개시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 19 CFR §351.225(h)	
HS code (명령범위)	총 42개 HS Code[115]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법적요건)	투자수준	중국의 통합 제강 설비 투자 비용 대비 제3국의 제강 설비 투자 비용은 중국 투자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공정 & 생산시설	제3국의 제강 시설은 중국의 통합 제강 설비에 비하여 소규모이고 일부 공정에 국한되며, 핵심 제철 공정은 중국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 (제3국)	제품 전체 가치중 제3국에서 실시된 단순 도포, 가공 등의 공정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함
	무역 흐름 변화 및 제3국 원자재 수출입 증가 여부	(베트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결과, 예비적으로 우회 피해를 인정한 직후인 2015년 마지막 5개월(8~12월)동안 베트남산 도금강판의 미국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11월 상무부가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하여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린 후에도 베트남산 도금강판 수입이 급증한 반면, 중국산 도금강판 수입은 감소함 (아랍에미리트) 상무부 조사 시점 전후로 49개월간 중국→아랍에미리트 철강 수입량 및 아랍에미리트→미국 도금강판 수출량 급증 (중국산 냉간압연강재 수입은 약 47% 증가하였고, 열간압연강재 수입은 약 35% 증가하였으며, UAE에서 미국으로의 도금강판 수출은 월 평균 5,752% 급증함)
결론	상무부는 제3국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냉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완성된 도금강	

114) **(조사개시)**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November 14, 2016)(barcodes : 2016-27327)
(예비판정)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December 11, 2017)(barcodes : 2017-26606)
(최종판정)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May 23, 2018)(barcodes : 2018-11028)

	판이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한 중국산 도금강판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최종 우회 대상으로 판단함

본 사례는 미 상무부가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산 도금강판(CORE)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며,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사례에 한정하여 작성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예비/최종) (판정 일자)
도금강판 (CORE)	A-570-026 (2015.6.3)	7210.30.0030 등 총 42개	16.11.14	베트남	최종판정(18.05.23)
			19.08.12	아랍에미리트	최종판정(20.07.13)
				코스타리카	최종판정(20.07.13)
				말레이시아	최종판정(20.07.13)
				과테말라	우회X(20.02.18)
				남아공	우회X(20.02.18)

□ 조사배경

- ㅇ 2015년 6월 3일, 미국 철강 업체(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Steel Dynamics, Inc.,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하“청원인”)는 인도, 이탈리아, 대한민국, 중국,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함
- ㅇ 2016년 7월 25일, 미국 상무부가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정황을 발견하였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와 관련된 실질적 피해를 인정한 이후, 2016년 7월 25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A-570-026) 및 상계관세(C-570-027) 명령을 부과함
- ㅇ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부과 후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을 활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베트남산 도금강판에 대한 우회조사를 실시함
- ㅇ 우회 조사 결과, 베트남 사례가 중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115) (기본)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7210.49.0091, 7210.49.0095, 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 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등
(추가) 7210.90.1000, 7215.90.1000, 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 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5.99.0090, 7226.99.0110, 7226.99.0130, 7226.99.0180, 7228.60.6000, 7228.60.8000, 7229.90.1000

[표 3-14]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RS) 및 냉간압연강재(CRS) 기반 도금강판(CORE) 제3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5.06.03	• 청원인(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Steel Dynamics, Inc.,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은 인도, 이탈리아, 대한민국, 중국, 대만산 도금강판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해달라는 청원 제출
16.07.25	•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제공이 있었다는 긍정적 예비 판정을 내렸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Order)을 부과함
16.09.22	•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81(b)조(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h))에 따라, Steel Dynamics, Inc.와 California Steel Industries는 상무부에 우회조사 개시를 요청 •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와 냉간압연강재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또는 조립된 도금강판이 미국으로 수출됨으로써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함
16.09.23	• 청원인 일부(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AK Steel Corporation)는 공동으로, 상무부에 베트남산 도금강판에 대해 예비적으로 우회 판정을 내려 수입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령할 것을 요청
16.11.14	• 16.09.23에 들어온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베트남산 도금강판 수입품에 대한 우회조사 개시를 공고함
17.12.11	• (베트남 예비판정) 상무부는 중국에서 제조된 열간압연강재 또는 냉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도금강판의 수입이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예비판정
18.05.23	• **(베트남 최종판정) 상무부는 중국에서 제조된 열간압연강재 또는 냉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도금강판 제품의 수입이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최종판정**

자료 : U.S. Federal Register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570-026, C-570-027][116]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또는 냉간압연강재를 원재료(inputs)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도금강판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를 조사함

○ (기존 명령의 범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는 다음과 같음

116) 우회조사 사건번호 : 2016-27327, 2017-26606, 2018-11028, 2019-18012, 2020-03139, 2020-03140, 2020-03141, 2020-03142, 2020-03143, 2020-15040, 2020-15074, 2020-15078, 2021-11849, 2021-11855

[표 3-15]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적용 대상
-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니켈-철 기반 합금 등 부식 방지 금속으로 클래딩(cladding), 도금, 도포된 철강제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steel) 이며, 물결모양(corrugated), 도색, 바니시[117] 처리, 적층(laminated)[118] 처리, 플라스틱 등 비금속 물질로 추가 도포된 여부 관계없음

□ 두께 및 형태
- 폭 12.7mm 이상 코일(coil) 형태 제품은 그 형태(연속적 적층 모양, 나선형으로 감긴 모양 등)에 관계없이 포함
- 단, 코일 형태가 아닌 직선형 제품의 경우 1) 두께가 4.75mm 미만이고, 폭이 12.7mm 이상이며, 폭이 두께의 최소 10배 이상인 제품 또는 2)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150mm를 초과하며, 폭이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제품
- 형태 :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기타 형태일 수 있고, 직사각형 또는 비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제품도 포함되며, 이러한 단면은 압연 공정 이후 형성된 것으로 봄
- 즉, 압연 후 가공(worked after rolling) 된 제품으로 모서리가 절단(beveled)되거나 둥글게 처리(rounded at the edges)된 제품이 이에 해당됨

□ 폭 및 두께 기준
- 공칭(nominal) 치수와 실제(actual) 치수가 다를 경우, 어느 측정 기준이든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해당 제품은 본 명령의 적용 대상임. 단, 제품별로 폭과 두께가 달라질 경우(ex-직사각형이 아닌 단면을 가진 특정 제품 두께, 직사각형이 아닌 특정 제품의 폭 등), 가장 큰 폭 또는 두께가 기준이 됨

□ 적용 대상 철강제품의 화학적 요건
- 철 함량이 가장 많아야 하고, 탄소함량이 2% 이하여야 하며 특정 원소들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119]
- 특별하게 제외되지 않는 한, 붕소(Boron) 및 티타늄(Titanium)의 함량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 진공 탈가스 처리 및 완전 안정화강(IF강)[120], 고강도 저 합금강(HSLA강)[121], 고급 고강도강(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AHSS) & 초고강도강(Ultra High Strength Steels, UHSS)[122] 포함(이들 모두는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이 높은 강재로 간주)되며, 제3국에서 추가 가공된 부식 방지 강판[123]도 포함됨

□ 적용 제외 대상
- 주석, 납, 크로뮴, 산화크로뮴, 주석과 납 두 가지 모두, 크로뮴 및 산화크로뮴(주석 없는 강철)을 사용하여 도금하거나 도포한 철강제 평판압연제품으로, 금속 도포에 추가적으로 기타 비금속 물질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coated), 바니시(varnish), 페인팅 한 것 여부에 상관없음
- 일정 폭 및 두께 이상을 가진 직선형 클래드(clad) 제품[124], 특정 클래드(clad)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125]

□ 적용 대상 HTSUS 번호
- 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 7210.49.0091, 7210.49.0095, 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 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7215.90.1000, 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 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5.99.0090, 7226.99.0110, 7226.99.0130, 7226.99.0180, 7228.60.6000, 7228.60.8000, and 7229.90.1000

117) 목재 및 기타 소재의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투명한 도료로 '니스'라고도 함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 상무부(DOC)는 조사 대상 제품이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회(circumvention) 판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함에 따라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이 기존 명령의 적용 범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를 검토함

-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도금강판은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 적용되는 중국산 도금강판 제품과 동일한 종류 또는 유형(same class or kind)의 제품으로 판정됨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도금강판이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를 원재료(inputs)로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 및 상무부가 확보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검토 결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도금강판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및/또는 냉간압연강재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3국 현지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규모,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118) 대상이 되는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레이어를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119) 망간 2.5% 이하, 실리콘 3.3% 이하, 구리 1.5% 이하, 알루미늄 1.5% 이하, 크롬 1.25% 이하, 코발트 0.3% 이하, 납 0.4% 이하, 니켈 2% 이하, 텅스텐 0.3% 이하, 몰리브덴 0.8% 이하, 나이오븀(콜럼븀) 0.1% 이하, 바나듐 0.3% 이하, 지르코늄 0.3% 이하, 붕소(boron) 및 티타늄(titanium) 함량 수준은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포함

120) 티타늄, 나이오븀 등 미량 합금으로 탄소와 질소를 안정화한 저탄소강

121) 크롬, 구리, 나이오븀, 티타늄, 바나듐, 몰리브덴 등 미량 합금 포함

122) 고 인장 강도와 높은 연신율(재료가 끊어지기 전까지 늘어나는 정도)을 특징으로 하는 강재임

123) 대상 물품에는 제3국에서 가공된 도금강판이 포함되는데, 가공 방식에는 어닐링(annealing), 템퍼링(tempering), 도장(painting), 바니싱(varnishing), 트리밍(trimming), 절단(cutting), 펀칭(punching), 슬리팅(slitting) 또는 기타 유사한 가공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명령 범위에 해당되는 도금강판(the in-scope corrosion resistant steel)의 원 생산국(the country of manufacture)에서 위와 같은 추가 가공 공정이 이루어졌어도,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준의 공정이라면,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이 이루어졌어도 해당 제품은 여전히 본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124) 코일이 아닌 일정 길이로 잘려 곧게 펴진 형태의 클래드 제품(Clad products in straight lengths)으로, 복합 두께(Composite thickness)가 4.7625mm 이상이며, 폭이 150mm를 초과하여, 두께의 최소 두 배 이상인 직선 길이 형태의 클래드(clad) 제품

125) 양면에 20%-60%-20% 비율의 스테인리스강인 철강재 평판압연제품 클래드(Clad)로 구성된 복합 두께 4.75mm 미만의 3중 구조 내식성(부식 방지) 철강재 평판압연제품

- **(① 투자 수준)** 상무부는 베트남 철강 업체들의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를 바탕으로 도금강판 생산을 위한 투자 수준과 중국 기업의 고로(Blast furnace) 또는 산소 기본로(Basic oxygen surface)를 포함한 완전 일체형 제강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수준을 비교한 결과, **베트남 철강 업체들의 투자금은 USD 7천만~9천만 불로, 중국내 일체형 제철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USD 2억 9천 5백만 불~ 101억 불) 대비 소규모임**
- **(② 연구개발(R&D) 수준)** 상무부는 베트남이 자체 제강 기술개발보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제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③ 생산 공정의 특성)** 상무부는 제3국 생산 공정이 원재료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재료의 '형태, 특징, 용도(form, features, and uses)'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질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3국 생산 공정을 평가하여 원재료 생산국의 공정보다 덜 복잡하고 덜 집약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경미한(minor or Insignificant)' 가공으로 보고 우회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상무부 평가 방식) 상무부는 생산 공정 평가 시, 제3국 내 최종 생산 공정이 최종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생산 공정 대비 얼마나 복잡한지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본 사례에서도 원재료 생산국(중국)과 제3국(베트남,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공정 복잡성을 두고 우회 여부를 판단하였음
  - (원재료 생산국과 제3국 공정 복잡성 비교) **상무부는 중국내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 제조 공정이 복잡한 반면, 베트남 내 도금강판 생산기업들의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활용한 도금강판 가공공정은 매우 단순하다고 보았으며,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공정 설비가 중국 대비 기술적으로 덜 복잡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HRS 생산 공정)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은 일반적으로 '용융 및 정련' → '용융강 반제품 형태 주조(슬라브 등)' → '반제품을 열간압연강재로 열간압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광석-슬라브-열간압연강재 압연공정 내에서도 여러 고강도 단계가 포함됨
  - (도금강판 생산 공정) 제3국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주로 '산 처리(acidification)', '도포 및 도금', '냉간압연', '절단' 등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간단함

[표 3-16]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세부 내용)

1단계 (원재료 준비 및 용광로 투입)		2단계 (슬래브 가공 - 재가열 및 압연)		3단계 (냉각 및 코일링)
• 철광석은 소결공정(sintering)*을 거치며, 석탄은 코크스 오븐(coke ovens)에서 가공 • 위 원재료 준비 후 용광로(blast furnace)에서 결합되어 고온에서 녹여진 용선(hot-metal)으로 변환됨 • 용선**(hot-metal)은 혼선차(hot-metal torpedo car)***를 통하여 전로(converter)로 옮겨지고, 그 후 연속주조기(concaster)에서 강철 슬래브(slab)****로 주조됨	→	• 생산된 슬래브(slab)는 재가열로(reheating furnace)에서 적정 온도로 가열된 뒤, 조압연(rough rolling mill)*****에서 두께가 대폭 줄고 길이가 늘어나는 압연 과정을 거침 • 사상압연(finish rolling mill)******에서 수요에 따라 일정 두께와 길이의 강판으로 변화함	→	• 압연공정이 완료된 강판은 라미나 냉각(laminar cool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냉각된 후, 코일링(coiling) 과정을 거쳐 유통 및 가공에 적합한 열간압연강재(hot-rolled steel) 형태로 완성됨 • 이 과정에서 제품 특성이 결정되며, 후속 소재 생산 또는 파생 제품 제조에 투입됨

*소결공정 : 분말 재료를 압축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녹지 않고 입자를 결합시키는 제조 공정
**용선 : 용광로에서 생산된 쇳물
***혼선차 : 고온의 용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철도차량
****슬래브 : 철강 반제품으로, 강판 재료로 쓰이며, 후판 압연기를 거쳐 후판으로 생산되거나 열간압연기에서 열간압연강재로 만들어짐
*****조압연 : 슬라브를 적당한 형상과 두께, 폭을 갖춘 압연 소재로 만드는 기계
******사상압연 : 압연을 마무리하고 목표하는 크기에 맞추어 가공/제조하는 단계
*******라미나 냉각 시스템 : 고온강판을 수냉하는데 있어 주로 사용되는 라미나 플로우(lamina flow) 냉각 방식, 폭방향으로 분사되는 냉각수 유량을 균일하게 하여 강판의 폭방향 균일냉각 가능

- 상무부는 중국에서 열간압연강재를 생산하는 공정은 철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친 뒤,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쇳물(용선)을 반제품 형태로 주조한 후 열간 압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복잡하다고 판단함
- 반면, 베트남에서는 열간압연강재를 풀고(unrolling), 산 처리(acidification)한 뒤, 냉간압연하여(필요 시), 도포·도금 절차를 적용하여 도금강판을 생산하므로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판단함

· 유사 사례로 인도·중국의 'Tissue Paper' 사례를 통하여 상무부에서 주장한 공정의 '경미한(minor or insignificant)' 수준이 다름을 주장하였으나, 상무부는 여전히 경미하다고 판단함

Certain Tissue Paper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2013)

□ 동 사례는 인도 업체 AR Printing and Packaging India Pvt. Ltd.(ARPP)가 중국산 티슈 페이퍼(tissue paper)를 수입, 가공(단순 절단, 접기 등)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 기존 중국산 티슈 페이퍼(tissue paper)에 부과된 반덤핑(AD) 명령[126]을 우회하였다고 판정된 사례로, 제품 생산공정에서 '경미한(minor or insignificant)'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

- **제품 : 제곱미터(㎡)당 29g을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0.5 inch 이상인 길이에 맞게 자른 티슈 페이퍼 시트(certain tissue paper products)**
- **특징 : 인도로 수입된 중국산 티슈 페이퍼(tissue paper)를 가공 단순 절단(cutting), 접기(folding) 후 미국으로 수출함**
- **중국산 도금강판 사례와 비교 : 동 사례에서의 생산공정(절단, 접기 등)이 아랍에미리트 도금강판 우회 조사 사례에서 언급한 냉간압연, 도금, 절단, 피클링 등 후단 가공 부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무부의 '중요하다(significant)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지지함**

· (결론) 상무부는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의 도금강판 가공 공정이 중국내 열간압연강재 및/또는 냉간압연강재 가공공정 대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덜 집약적이며,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최종적으로 우회 사례라고 판단함

[표 3-17] 중국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 제3국 도금강판 생산공정 및 상무부 최종 판단

중국 열간 압연 강재 (HRS) 생산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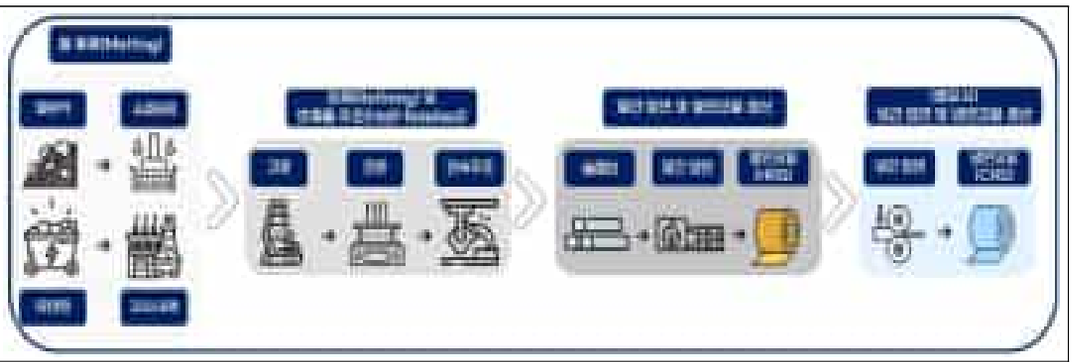
	철 용융 → 정제 및 반제품 주조 → 열간 압연 및 열간 코일 생산 → (필요시) 냉간 압연 및 냉연코일 생산
	↓

126) Notice of Amended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and Antidumping Duty Order: Certain Tissue Paper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05.03.30)

제3국 도금 강판 생산 공정	
	기 생산된 열간압연강재를 토대로 산 처리, 도포, 도금, 절단 등 간단한 공정 수행
	*슬래브 : 철강 반제품으로, 강판 재료로 쓰이며, 후판 압연기를 거쳐 후판으로 생산되거나 열간압연기에서 열간압연강재로 만들어짐 **열간압연 : 금속재료는 고온에서 변형 저항이 적기 때문에 큰 변형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열간압연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의 재결정 온도(약 250 ℃)이상의 온도에서 압연 하는것임 ***냉간압연 : 냉각된 코일을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압연 처리하여 스트립의 두께를 더욱 얇게 하는 공정
상무부 최종 판단	상무부는 제3국(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도금강판 가공 공정이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냉간압연강재 가공공정 대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덜 집약적이며,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최종적으로 우회 사례라고 판단함

자료 : Flaticon, 굿모닝경제, 한국철강협회

- **(④ 생산 시설의 규모)** 청원인은 베트남의 생산범위가 중국에 비하여 훨씬 제한적이고, 베트남 내 평판강(flat steel)제품을 생산하는 대형 업체가 약 10곳이라고 하였고,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 생산 설비가 전무하거나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상무부도 동일하게 판단함

- **(⑤ 부가가치 비중)** 청원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가 제3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도금강판 전체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실시한 도금강판 생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열간압연강재는 도금강판 가격의 약 70~80%를 차지하였으며, 냉간압연강재는 약 84~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3국에서 추가된 가치가 10~30%에 불과함을 의미함

· 중국은 비시장경제에 근거한 국가이므로 부가가치 비중을 산정할 때 대체값(surrogate values)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체값 확정기준 사례 및 이를 활용한 제3국의 부가가치 비중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대체값 확정 기준 : U.K. Carbon and Graphite Co. v. United States(2013)

□ 동 사례는 상무부가 비시장경제(NME) 국가의 반덤핑 절차에 사용되는 대체값(Surrogate values)으로 우크라이나의 대체값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과 이러한 방법이 미국으로 최종 수출된 상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한(minor or insignificant)'지 판단하는 선례임

- **제품 : 소경 흑연 전극(Small Diameter Graphite Electrodes, 이하 "SDGE")**
- **대체값 : 중국에서 미완성된 SDGE를 영국에서 완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안이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가 미국 수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덤핑(AD) 법령에는 비시장경제(NME)의 비용과 가격을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므로, 중국이 비시장경제(NME) 국가라는 점과 과거 관행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의 대체값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음**
- **중국산 도금강판 우회 사례와 비교 : 동 사례에서는 반덤핑(AD) 명령을 부과받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circumvention)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시장경제(NME)에 근거한 우회여부 조사방식이 아닌, 과거 관행 등에 따라 유사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대체값(surrogate values)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우회 조사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한 경험 유무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여 대체값을 적용함**

2. 대체값을 활용한 부가가치 산정 사례 : Peer Bearing Co. v. United States, 39 CIT(2015)

□ 동 사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1심에서 원고(Peer Bearing Co.)측에서 제시한 제3국(태국) 가공 부가가치 비중을 두고 과장(Overstate)된 수치라고 판단하여 환송하고, 상무부에게 수정된 대체값(surrogate values)을 적용하여 가공 부가가치 비중을 재산정하도록 명령한 후, 이를 토대로 제3국내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선례임

- **제품 : 중국산 테이퍼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s, 이하 TRBs)**
- **가공 비중 : 상무부는 당초 제3국내 가공 부가가치 비중이 42%인 것으로 보았으나, CIT의 환송판결에 따라 수정된 대체값(surrogate values)을 적용하여 가공 부가가치 비중을 재산정하였으며, 최종 제3국 가공 부가가치 비중이 38%인 것으로 나타남**
- **상무부는 위 재산정한 값(38%)이 의미 있는 값(meaningful value)이라고 보면서도, 제3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실질적 변형 기준들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 번형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함**
- **상무부 실질적 변형 기준 : ① 가공된 최종 제품이 원재료 제품과 '다른 종류 혹은 유형의 제품'인지 여부, ②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그리고 제품의 본질적 성격이 제3국에서 부여되었는지 여부, ③ 제3국 내 가공 공정의 성격과 기술적 복잡성, ④제3국 내 투자 수준, ⑤최종 사용처, ⑥ 제3국에서의 제조원가(COM : Cost of Manufacturing)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국산 도금강판 우회 사례와 비교 : 제3국 내 가공 가치 비중이 전체 제품 가공 가치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우회 판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지만, 중국산 도금강판 우회 조사에서는 상무부가 산출한 당초 제3국 가공 비중의 정확도, 원고측 요청에 따른 가공 비중 재산정 요청을 수행하였음에도 가공 비중이 소규모인 점만으로도 상무부의 우회 판정이 가능하였음**

· **(중국산 원재료의 가치 비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실시한 도금강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열간압연강재는 도금강판 가격의 약 70~80%를 차지하였으며, 냉간압연강재는 약 84~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및 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된 가치는 10~30% 정도로 추정됨

□ **추가 고려 요인(factors to consider)(§1677j(b)(3)에 명시)**

○ **(무역 흐름의 변화 & 원재료 수입 구조 변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결과, 예비적으로 우회 피해를 인정한 직후인 2015년 마지막 5개월(8~12월)동안 베트남산 도금강판의 미국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11월 상무부가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하여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린 후에도 베트남산 도금강판 수입이 급증한 반면, 중국산 도금강판 수입은 감소함

- 청원인은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최초 조사가 제기된 2014년 당시에는 제3국이 미국의 도금강판 수입처로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5년 1~7월까지의 수입량이 낮았다고 주장함

- (베트남산 대미 수출 급증) 조사 개시 이전 기간 동안 베트남산 도금강판의 대미 수출액은 약 4,280만 달러였으나, 조사 이후 기간에는 약 4억 5,910만 달러로 폭증함(973.7%)

- (중국산 대미 수출 급감)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산 도금강판의 대미 수출액은 6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수관계 여부)** 청원인은 중국의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 생산자와 베트남 도금강판 생산자간 제휴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영 무역회사 China Minmetals Corporation은 베트남 내 협력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을 토대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우회판정 결과**

○ 미국 상무부는 제3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도금강판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적용받은 기존 중국산 도금강판을 우회(circumvent)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일부 제3국(베트남,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이 최종적으로 기존 중국산 도금강판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토대로 CBP에 해당 제품 통관을 보류하도록 지시함[127)]

- ㅇ 이중 우회판정 기준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한 베트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베트남이 도금강판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수준이 중국의 투자수준 대비 소규모라고 보았고, 도금강판 가치 비중도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의 비중(70~90%) 대비 낮은 비중(10~30%)을 차지한다고 보았으며, 가공 공정도 중국의 생산공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함
- ㅇ 또한 2016년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개시 전후로 49개월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회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패턴 변화가 존재하였다고 보았고, 제3국의 원자재 수출입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함
- ㅇ 결론적으로,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도금강판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및 냉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경미한 수준의 가공만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제품은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기존 AD/CVD 명령을 우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127) 통관보류 조치외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예치금 납부가 수반되며, 반덤핑(AD) 세율은 중국 전반(PRC-wide entitiy)에 적용된 199.43%, 상계관세(CVD) 세율은 중국 기타 전반(All-others rate)에 적용된 39.05%를 적용함

3) 유정용 강관(OCTG·Oil Country Tubular Goods)[128)]

사례번호	A-570-943 / C-570-944	
조사 개시일	2020년 11월 03일	
최종판정	2021년 11월 19일	
조사 대상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브루나이·필리핀에서 가공·완성된 용접 유정용 강관(OCTG)	
조사 배경	중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우회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3국 가공 제품을 대상으로 한 직권 우회조사 개시	
적용 법령	19 U.S.C. §1677j(b), 19 CFR §351.226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OCTG: HTSUS 7304.29.10.10을 포함한 약 50개 품목 (OCTG 커플링 스톡은 7304.39.00.24를 포함한 약 30개 품목)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수준	브루나이·필리핀의 OCTG 생산은 단순 후가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제조와 비교할 때 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다고 평가함 상무부는 OECD(2015) 철강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 내 통합 제강소 건설에는 최소 2억 9,500만 달러에서 최대 101억 달러, 평균 약 36억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브루나이·필리핀의 설비 투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함
	연구개발 수준	제3국 생산 및 수출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 생산과 관련한 별도의 연구개발 지출이 없어, 연구개발 수준이 낮다고 평가함
	생산공정	중국의 열간압연강재 생산은 용해-정련-주조-열간압연 등 복잡하고 대규모 다단계 공정을 거쳐 두께·길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브루나이·필리핀의 생산은 슬리팅·용접·성형·열처리 등 단순 후가공에 불과하여, 공정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생산설비 규모	중국은 원재료 단계부터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춘 반면, 브루나이·필리핀은 후가공 설비만 보유하고 있어, 설비 규모가 낮다고 평가함
	제3국 가공의 부가가치	중국산 열간압연강재가 최종 OCTG 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브루나이·필리핀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결론	상무부는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 수행된 유정용 강관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투자 수준, 연구개발, 생산 공정의 특성, 생산 설비, 가공 가치 비중 등 모든 법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정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128) (조사개시) U.S. Department of Commerce,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lf-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5 Fed. Reg. 71877 (November 12, 2020) 및 첨부 Initiation Memorandum
(예비판정)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Aug 10, 2021)(barcodes : 4150086-02(From Brunei), 4150088-02(From the Philippines))
(최종판정 및 메모)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Nov 19, 2021)(barcodes : 4184168-02)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 기존에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우회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우회조사를 개시함. 이번 조사는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그중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 조립·완성된 유정용 강관이 미국으로 수입된 사례와 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판정 결과에 한정하여 작성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SU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유정용 강관	A-570-943 (10.05.21)	7304.29.10.1 0 총 51개	20.11.03	브루나이	최종 긍정 (21.11.19)
				필리핀	
				태국	조사 개시 (24.12.13)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는 2020년 11월 3일 자체적으로(self-initiated) 브루나이 및 필리핀산 용접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회조사를 개시함

- 상무부는 2014~2019년 기간 동안 중국의 브루나이 및 필리핀으로의 열간압연강재 수출이 급격히 증가(브루나이 +5,145.6%, 필리핀 +170.6%)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브루나이·필리핀산 용접 OCTG 수입 또한 급증한 점을 확인함

- 이러한 무역 패턴 변화는 중국산 중간재(열간압연강재)를 제3국에서 단순 가공·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우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회조사를 개시함

[표 3-18]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의 브루나이·필리핀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0.01.20 10.05.21	•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C-570-944) 발효 •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A-570-943) 발효
20.11.03	• (조사 개시) 상무부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우회조사 자체 개시
21.02.16	• (서면질의서) 상무부는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 생산된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과 관련하여, CBP 수입자료 및 서면질의서(Quantity & Value) 응답을 토대로 HLDS(B) Steel Sdn Bhd(브루나이), Shanghai Minmetals (Hong Kong) Co., Ltd.(브루나이), Beamplus International Pte. Ltd.(필리핀), HLD Clark Steel Pipe Co., Ltd.(필리핀)를 주요(의무) 우회 협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질의서를 발송함
21.08.04	• (예비 결정) 상무부는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하여 브루나이 또는 필리핀에서 조립·완성된 용접 유정용 강관이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는 것으로 예비 판정함

21.11.19:	• (최종 결정) 상무부는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 완성된 용접 유정용 강관이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최종 긍정 판정을 발표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Brunei and the Philippines), A-570-943, C-570-944, Doc No. 4184162-02, Federal Register, November 19, 2021.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본 우회조사의 대상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브루나이 또는 필리핀에서 완성·조립된 유정용 강관임

○ (기존 명령의 범위) 기존 명령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19] 명령의 범위

□ 물품 설명

○ 이 명령의 범위는 유정 케이싱과 튜빙을 비롯해 철(주철 제외) 또는 강철(탄소 철강과 합금 철강 모두 포함)로 된 원형 단면의 중공강 제품인 일부 OCTG로 구성되며, 무계목 또는 용접 여부, 끝단 마감 방식(예. 일반 끝단, 나사산 끝단, 나사산과 일체형 연결부가 있는 끝단 등), API 또는 비API 사양 준수 여부, 완제품(제한적 용도의 OCTG 제품 포함) 또는 미완성(그린튜브 및 제한적 용도의 OCTG 제품 포함) 여부, 나사산 보호기 부착 여부와 무관함

○ 명령의 범위에는 OCTG 연결관이 또한 포함됨. 중량 기준 10.5%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케이싱이나 튜빙, 드릴 파이프, 미부착 연결관, 미부착 나사산 보호기는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됨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 이 명령에 포함되는 물품은 현재 미국 관세율표(HTSUS) 상 7304.29.10.10[129]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또 명령의 적용을 받는 OCTG 연결관은 HTSUS 품목번호 7304.39.00.24[130]-이외에도 다양한 HTSUS 품목 번호로도 통관될 수 있음

○ HTSUS 소호는 편의 및 관세 목적으로만 제공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명령의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임

129) 7304.29.10.10, 7304.29.10.20, 7304.29.10.30, 7304.29.10.40, 7304.29.10.50, 7304.29.10.60, 7304.29.10.80, 7304.29.20.10, 7304.29.20.20, 7304.29.20.30, 7304.29.20.40, 7304.29.20.50, 7304.29.20.60, 7304.29.20.80, 7304.29.31.10, 7304.29.31.20, 7304.29.31.30, 7304.29.31.40, 7304.29.31.50, 7304.29.31.60, 7304.29.31.80, 7304.29.41.10, 7304.29.41.20, 7304.29.41.30, 7304.29.41.40, 7304.29.41.50, 7304.29.41.60, 7304.29.41.80, 7304.29.50.15, 7304.29.50.30, 7304.29.50.45, 7304.29.50.60, 7304.29.50.75, 7304.29.61.15, 7304.29.61.30, 7304.29.61.45, 7304.29.61.60, 7304.29.61.75, 7305.20.20.00, 7305.20.40.00, 7305.20.60.00, 7305.20.80.00, 7306.29.10.30, 7306.29.10.90, 7306.29.20.00, 7306.29.31.00, 7306.29.41.00, 7306.29.60.10, 7306.29.60.50, 7306.29.81.10, 및 7306.29.81.50.

130) 7304.39.00.24, 7304.39.00.28, 7304.39.00.32, 7304.39.00.36, 7304.39.00.40, 7304.39.00.44, 7304.39.00.48, 7304.39.00.52, 7304.39.00.56, 7304.39.00.62, 7304.39.00.68, 7304.39.00.72, 7304.39.00.76, 7304.39.00.80, 7304.59.60.00, 7304.59.80.15, 7304.59.80.20, 7304.59.80.25, 7304.59.80.30, 7304.59.80.35, 7304.59.80.40, 7304.59.80.45, 7304.59.80.50, 7304.59.80.55, 7304.59.80.60, 7304.59.80.65, 7304.59.80.70,및 7304.59.80.80.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미국 상무부는「1930년 관세법」제781(b)조(19 U.S.C. §1677j(b)) 및「연방규정」제351.226조에 근거하여, 제3국에서 이루어진 조립·완성 공정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회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 상무부는 △투자 수준 △연구개발(R&D) 수준 △생산공정의 성격 △생산설비의 범위 △제3국 내 가공이 최종 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어느 한 요소만을 단독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정성적·정량적 요소를 함께 고려함
- 본 사례에서는 생산공정의 특성,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등이 우회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음
  ·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투입재로 사용하여 단순 후공정 위주로 진행된 브루나이·필리핀 내 생산공정이 본질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강조됨
- 이와 더불어 비이상적인 무역패턴의 변화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제3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함
- 상무부는 냉간압연강재 우회조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재료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일관된 통합 생산설비(fully-integrated facility)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이에 비해 브루나이와 필리핀의 단순 후가공 설비는 투자 규모와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고 제한적이라고 평가함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131]

- 상무부는 브루나이와 필리핀에서 생산·수입된 유정용 강관이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과 동일한 종류·유형의 제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
- 검토 결과, 브루나이 및 필리핀산 유정용 강관은 명령의 물리적 요건에 부합하고 동일한 HTSUS 번호로 미국에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됨
-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브루나이·필리핀산 제품이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됨이 입증됨
- 아울러 브루나이와 필리핀의 생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명령 대상과 다르다는 객관적 증거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131) 4184162-02(필리핀), 4184168-02(브루나이)

- 따라서 미국 상무부는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 생산된 유정용 강관이 중국산 유정용 강관과 동일한 종류·유형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함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미국 상무부는 브루나이와 필리핀에서 생산된 유정용 강관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RS)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를 검토함
- 조사 결과, 브루나이의 HLDS(B) Steel과 필리핀의 HLD Clark Steel Pipe Co., Inc.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재를 투입하여 유정용 강관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됨
- 중국산 유정용 강관과 동일한 종류·유형의 제품에 해당하며,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로 조립·완성된 것으로 판단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의 핵심 원재료인 열간압연강재가 중국 내에서 막대한 투자와 대규모 설비, 복합적이고 집약적인 다단계 절차를 거쳐 생산되는 반면,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후가공은 이에 비해 경미하거나 사소한(minor or insignificant)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상무부는 OECD 2015년 철강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 내 통합 제강소 건설에는 최소 2억 9,500만 달러~최대 101억 달러, 평균 약 36억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브루나이·필리핀의 설비 투자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 반면, 브루나이와 필리핀의 생산자들(HLD respondents)은 자국 내에서 수행되는 유정용 강관 생산 공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본질적이라고 주장함
  - 이들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단순한 원재료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제3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복잡하고 본질적이어서 경미하거나 사소한(minor or insignificant) 수준이 아니라 '중요(major and significant)'하다고 강조함
  - 이에 유정용 강관을 중국산으로 간주하여 우회(circumvention)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함
  - (과거 사례 및 판례 인용) 상무부는 전체 생산 과정과의 투자수준 비교가 타

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판례인 ▲중국산 내식강판(CORES)[132] 우회조사(2018), ▲소구경 흑연전극(SDGE) 사건(2012)[133], ▲대만산 폴리에틸렌 쇼핑백 사건(2014)[134]을 인용함. 이를 통해 제3국의 제한적 후가공과 본래 생산국의 막대한 투자를 대비하는 일관된 원칙을 보여줌

- **(② 연구개발(R&D) 수준)** 상무부는 브루나이와 필리핀 업체들의 유정용 강관 생산 공정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함
  - 이는 특히 브루나이의 HLDS(B) Steel Sdn Bhd와 필리핀의 HLD Clark Steel Pipe Co., Inc.가 유정용 강관 생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개발 지출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임
- **(③ 생산공정의 특성)** 미국 상무부는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의 유정용 강관 완성 공정이 중국에서 수행되는 열간압연강재 제조 공정에 비해 훨씬 덜 광범위하고, 공정 강도도 낮은(less intensive) 단순한 후공정에 불과하다고 최종 판단함
  -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의 복잡성 및 집약성) 중국에서 열간압연강재(HRS)가 생산되는 과정은 철광석 등의 기초 원료를 제련해 슬래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두꺼운 강판으로 압연한 뒤 다양한 두께·규격의 최종 제품으로 가공하는 다단계·고강도 공정임**
    - * 이 과정은 소결, 코크스 오븐, 용광로, 전로, 연속 주조기를 거쳐 슬래브를 만든 뒤, 약 1,250℃에서 재가열하여 조압연과 최종 압연을 수행하며, 각 단계마다 두께와 길이 변화와 같은 본질적인 변형이 수반됨
    - * **또한 중국의 통합 제철소 건설에는 평균 약 3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상무부가 고려한 중요한 요소**였음
  - **(브루나이 및 필리핀의 유정용 강관 생산 공정의 제한적 성격)** 브루나이 및 필리핀의 유정용 강관 생산 공정은, 중국 내 원재료 단계부터 시작되는 복합적·고강도 공정과 달리 이미 완성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RS)를 수입하여 비교적 단순한 후가공을 수행하는 제한적 성격의 공정에 해당함

132) 중국산 내식강판(CORES) 우회조사 (2018년):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3 FR 23895 (May 23, 2018)

133) 소구경 흑연전극(SDGE) 사건 (2012년): Small Diameter Graphite Electrod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and Extension of Final Determination, 77 FR 33405 (June 6, 2012

134) 대만산 폴리에틸렌 쇼핑백 사건 (2014년) : Polyethylene Retail Carrier Bags from Taiwan: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79 FR 31302 (June 2, 2014)

* **브루나이 및 필리핀 업체들이 보고한 용접 유정용 강관(OCTG) 생산 공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됨**

* 이러한 후가공 중심의 절차는 제품의 외형과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수준에 그치며,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형을 거쳐 생산되는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공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상무부는 '경미한(minor)' 수준으로 평가함

- ①슬리팅 단계(slitting phase) : 열간압연강재가 생산될 용접 파이프의 외경에 따라 수직으로 절단
- **②용접 단계**(welding phase)이 단계에서 열연강판은 에지(모서리) 용접, 루프 저장, 성형(forming), 용접, 열처리(heat treatment), 공랭식(air cooling), 수랭식(water cooling), 사이징(sizing), 강화, 플라잉 톱 절단(flying saw cut), 초기 품질 테스트, 베벨링(필요시), 정수압(Hydraulic Pressure) 테스트, 초음파 검사, 그리고 강재 등급 상향(필요시) 단계를 거침
- ③나사 가공 및 커플링(threading and coupling): 필요에 따라 OCTG에 나사산이 가공되고 커플링이 연결됨

- (**업체 반박 의견**) 제3국 생산자들(HLD respondents)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유정용 강관 생산 공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본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는 단순한 원재료에 불과하고 제3국에서의 생산이 제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특히 이들은 자사의 공정이 단순한 "조립공정(screwdriver operations)"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함

-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CBP의 원산지 판정 기준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과 우회조사 기준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함. CBP의 실질적 변형 분석은 관세 목적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것인 반면, 상무부의 우회조사는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공정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두 분석의 목적과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함

- **(④ 생산시설의 규모)** 상무부는 브루나이 및 필리핀의 유정용 강관 생산시설이 중국의 열간압연강재 생산시설에 비해 사소하거나 경미하다고(minor or insignificant) 판단함

· 특히 상무부는 브루나이 및 필리핀의 유정용 강관 생산시설을 중국의 통합 열간압연강재 생산시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조사 과정에서 주요 제3국 수출자(HLDS(B), HLD Clark)는 유정용 강관 생산설비에는 투자했으나, 열간압연강재를 직접 생산하는 제강·제련 설비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고함

· 중국의 열간압연강재 생산시설은 철광석을 강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본 산소로(BOF), 고로(BF), 연속주조기 등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단계·고강도의 복합적 공정을 수행하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시설로 평가됨

· 반면 브루나이 및 필리핀의 유정용 강관 생산시설은 슬리팅, 용접, 성형, 열처리, 냉각, 품질 관리 등 일부 후가공에 국한된 설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조립·후가공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함

- **(⑤ 부가가치 비중)** 상무부는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유정용 강관(OCTG) 가공이 최종 수입 제품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할 때, 단순한 수치 계산보다는 질적 분석에 중점을 두어 검토함

· 이는 의회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URAA) 제정 시, 단순한 부가가치 비율 계산보다는 생산 공정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임

· **(생산 공정 비교)** 중국은 열간압연강재 생산은 철광석을 강판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소결 → 코크스 오븐 → 고로 → 전로 → 연속주조 → 재가열 → 다단계 압연 등 복합적이고 고강도의 공정을 포함함

  * 반면, 브루나이·필리핀의 OCTG 생산은 열간압연강재를 투입재로 하여 슬리팅, 용접, 성형, 열처리, 냉각, 품질 관리 등 후가공 절차로 이루어지며, 두께·너비·길이에 본질적 변화가 없음

  * 이에 따라 상무부는 브루나이·필리핀 공정이 열간압연강재 생산보다 사소하다고 판단함

· **(정량적 검토(보완적 역할))** HLDS(B)와 HLD Clark가 제출한 생산비용 및 미국 판매가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 가공 비용(노동, 간접비, 판매·관리비, 이자비용 포함)을 미국 판매가 대비 비율로 산정함

  * 계산 결과, 브루나이·필리핀에서의 가공 비용은 최종 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상무부는 질적 분석과 정량적 검토를 종합하여, 브루나이 및 필리핀에서의 조립·완성 공정은 전체 생**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다(minor or insignificant)”고 최종 판단함

- **(중국산 원재료의 가치 비중)** 상무부는 관련 법령(Section 781(b)(1)(D))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재의 가치가 브루나이·필리핀에서 가공·완성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종 유정용 강관의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함
  - 실제로 제3국 생산·수출자(HLDS(B)와 HLD Clark)는 모두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유정용 강관을 생산했다고 보고했으며, **제3국 수출자 역시 최종 제품 가치에서 중국산 중간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인정함**
  - 상무부는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여 말레이시아 대체값을 적용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의 가치를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영업기밀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며, 법적 기준인 "상당한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충족한다고만 판단함

□ **추가 고려 요소**

○ (무역 흐름의 변화 & 원재료 수입 구조 변화) 상무부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2010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 발효된 이후, 브루나이와 필리핀에서 생산된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점을 주목함**

- 구체적으로 2014-2016년 대비 2017-2019년 기간 동안 브루**나이의 대미 수출량은 0톤에서 35,796톤으로 증가하였고, 필리핀의 수출량은 90,388톤에서 138,474톤으로 5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상무부는 이러한 무역 흐름의 변화가 우회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판단함

[표 3-20] 미국의 제3국산 유정용 강관(OCTG) 수입량

단위 : Tons

구분	2014-2016	2017	증감율
브루나이	0	35,796	N/A
필리핀	90,388	138,474	53.2%

자료 : Global Trade Atlas(http://www.gtis.com)[135]

○ **(특수관계 여부)** 상무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우회 조사 대상 주요 응답업체인 HLDS(B) Steel Sdn Bhd(브루나이)와 HLD Clark Steel Pipe Co., Inc.(필리핀)은 중국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들과 특수관계(계열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135) 용접 유정용 강관(OCTG)의 수입량을 HTSUS 기준 7305.20.20.00, 7305.20.40.00, 7305.20.60.00, 7305.20.80.00, 7306.29.10.30, 7306.29.10.90, 7306.29.20.00, 7306.29.31.00, 7306.29.41.00, 7306.29.60.10, 7306.29.60.50, 7306.29.81.10, 7306.29.81.50을 산정함

- 이들은 중국 계열사로부터 열간압연강재를 수입하여 브루나이와 필리핀에서 유정용 강관을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함
- 이러한 특수관계는 무역 패턴 변화와 함께 상무부가 우회 행위로 판정한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제3국으로의 중간재(원재료) 수입 증가) 상무부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발효 이후, 중국산 원재료인 열간압연강재의 브루나이와 필리핀으로 비정상적인 대량 유입을 우회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음

- (브루나이) 2014~2016년 대비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수입량이 1,061톤에서 55,632톤으로 5,145.6% 급증
- (필리핀) 같은 기간 374,934톤에서 1,014,496톤으로 170.6% 증가
- 이와 동시에 **두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유정용 강관 물량도 크게 늘어나, 중국산 원재료 유입과 최종 제품 수출 간의 연관성이 확인됨**

[표 3-21] 브루나이의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수입 동향(단위 : Tons)

구분	2014-2016	2017-2019	증감율
브루나이[136]	1,061	55,632	5,145.6%
필리핀	374,934	1,014,496	170.6%

자료 : Global Trade Atlas(http://www.gtis.com)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브루나이와 필리핀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해 생산된 용접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기존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AD·CVD 명령을 우회하는 행위로 최종 확정됨

○ HLDS(B)와 HLD Clark는 중국 계열사로부터 열간압연강재를 수입하여 유정용 강관을 생산·수출하였으며,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가 최종 제품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함

○ 특히 양국의 생산 시설과 공정은 투자 규모와 연구개발(R&D) 수준이 낮고,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 제품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부가가치 역시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됨

136) 브루나이의 수입 통계는 보고되지 않아 중국의 대(對)브루나이 수출량으로 대체 표시하였으며, 자료는 용접 유정용 강관(OCTG)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열간압연강재 관련 HTSUS 7208.10, 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11.14, 7211.19, 7225.30, 7225.99, 및 7226.91을 집계함

- 이외 AD·CVD 명령 발효 이후 ▲브루나이와 필리핀의 대미 수출량과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수입량이 급증한 점,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중국 유정용 강관 업체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우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함
- 종합적으로 상무부는 브루나이와 필리핀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이 AD·CVD 명령 우회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함

4) 원형용접탄소강관(CWP)[137]

사례번호	A-570-910, C-570-911	
조사 개시일	2022년 8월 4일 (연방 관보 게재일 기준)	
최종 판정	2023년 11월 2일	
조사 대상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완성된 원형용접탄소강관	
조사 배경	미국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베트남산 원형 용접 탄소강관(CWP)에 대한 우회조사 개시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산 원형 용접 탄소강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CWP를 완성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를 문제로 제기함 이러한 수입은 본질적으로 기존 명령을 우회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을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적용 법령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섹션 781(b) 및 19 CFR 351.226	
HS code 기존명령범위	7306.30.10.00, 7306.30.50.25, 7306.30.50.32, 7306.30.50.40, 7306.30.50.55, 7306.30.50.85, 7306.30.50.90, 7306.50.10.00, 7306.50.50.50, 7306.50.50.7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 수준	베트남의 CWP 생산 설비(강판 절단, 성형, 용접, 마감, 아연도금 등) 투자 규모는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제철소 건설·운영 투자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구체적으로, 중국의 통합 제철소 건설에는 평균 약 36억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베트남 SeAH VINA의 파이프 생산 공장 건설 비용은 약 3,78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함
	연구 개발 수준	상무부는 베트남 내 연구개발(R&D) 수준을 경미하다고 판단함. 이는 주요 생산업체인 SeAH VINA가 독립적인 R&D 부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CWP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기 때문임
	생산 공정	열간압연강재 생산은 용해, 정련, 주조, 열간 압연 등 복잡하고 대규모의 다단계 공정 포함 반면 베트남의 CWP 생산은 열간압연강재를 단순히 절단·성형·용접·시험·마감·아연도금하는 수준에 그쳐, 본질적으로 후가공(post-processing)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생산 설비 규모	베트남 내 CWP 가공 시설은 중국의 대규모 제철소(용광로, 전기로, 압연공장 등)와 비교할 때 투자 규모와 설비 범위가 현저히 제한적이었음 또한 SeAH VINA는 열간압연강재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외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열간압연강재를 구매하여 사용함
	제3국 가공의 부가 가치	베트남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이 최종 수입품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임 열간압연강재 자체가 CWP 매출원가의 약 75~81% 또는 총 가치의 약 71.6%를 차지하는 반면,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간접재료, 노동, 에너지 비용 등은 전체 가치에서 작은 비중에 불과함
결론	미국 상무부가 진행한 우회조사 최종 판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활용해 생산한 원형용접탄소강관(pipe)의 현지 생산공정은 투자 수준, 생산설비 규모, 연구개발(R&D) 수준, 가공공정의 복잡성,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등 모든 측면에서 '사소하거나 경미한(minor or insignificant)' 수준으로 평가됨	

137) **(조사개시)**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Pip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on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Vietnam)(August 4, 2022)(barcodes : 4269087-2)
(예비판정)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Pip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Vietnam)(April 12, 2023)(barcodes : 4363640)
(최종판정)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Pip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Vietnam)(November 2, 2023)(barcodes : 4457488)

미국 상무부의 원형용접탄소강관(A-570-910) 우회조사에는 베트남 내 여러 생산업체들이 포함되었으나, 본 보고서는 그중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ot-Rolled Steel, HRS)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 업체인 SeAH VINA를 중심으로 정리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SU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원형용접 탄소강관	A-570-910	7306.30.10.00 외 13개	22.08.04	베트남	최종 판정 (23.11.02)
			24.11.12	오만	예비판정 (25.07.17)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는 2008년 중국산 원형용접탄소강관(CWP)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발효함

- 이후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원재료로 하여 베트남에서 성형·용접·절단 등 가공을 거친 원형용접탄소강관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무역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청원인들은 베트남산으로 신고된 원형용접탄소강관이 실제로는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단순 후가공한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베트남의 자체 생산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구조적으로 중국산 원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우회조사를 요청함

[표 3-22] 중국산 원형용접탄소강관의 베트남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08.07.22	• 중국산 원형용접탄소강관에 대한 반덤핑(A-570-910) 및 상계관세(C-570-911) 명령이 발효됨
22.08.04	•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완성된 CWP가 기존 명령을 회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930년 관세법」 §781(b)에 따른 제3국 경유(country-wide) 우회조사(Anti-Circumvention Inquiry)를 개시
23.04.12	• (예비판정)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으로 완성된 CWP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AD/CVD 명령을 회피한다고 잠정 판단하고 예비 긍정 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발표
23.11.02	• (최종판정)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확정하고,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으로 완성된 CWP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AD/CVD 명령을 회피한다고 최종 결정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Pip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Vietnam), A-570-910, C-570-911, Docs No. 4457488-01, 4457488-02, November 2, 2023.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본 우회조사의 대상은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완성된 원형용접탄소강관으로, 베트남에서 생산·가공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을 의미함

○ (기존 명령의 범위) 기존 명령의 적용 대상은 특정 원형용접탄소강관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2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ㅇ 본 명령의 적용 대상 물품은 특정 용접 탄소강 품질의 강관(steel pipes and tubes)이며, 원형 단면을 갖고 외경이 0.372인치(9.45mm) 이상 16인치(406.4mm) 이하인 제품임

ㅇ 제품들은 스텐실(stenciled) 유무, 벽 두께(wall thickness), 표면 마감(예: 흑관(black), 아연도금(galvanized), 또는 도색(painted)), 끝단 마감(예: 일반 끝단(plain end), 경사 끝단(beveled end), 홈이 있는(grooved), 나사산(threaded), 또는 나사산과 커플링이 결합된(threaded and coupled)), 또는 산업 규격(예: ASTM, 독점 규격(proprietary), 또는 기타 규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표준 강관(standard pipe) 및 구조용 강관(structural pipe)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은 또한 원형(circular), 구조용(structural), 또는 기계용 튜빙(mechanical tubing)이라고도 불릴 수 있음)

ㅇ 특히,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탄소 품질이어야 함. 먼저 (a)철(Iron)이 중량이 포함된 다른 각 원소의 중량보다 많아야 하고, (b) 탄소(Carbon)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2% 이하이며,그리고 아래 나열된 원소 중 어느 것도 표시된 중량 기준 함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망간 1.80%, 규소 2.25%, 구리 1.00%, 알루미늄 0.50%, 크로뮴 1.25%, 코발트 0.30%, 납 0.40%, 니켈 1.25%, 텅스텐 0.30%, 몰리브덴 0.15%, 나이오븀 0.10%, 티타늄 0.41%, 바나듐 0.15%, 지르코늄 0.15%)

ㅇ 표준 및/또는 구조용 규격과 미국 석유 협회(API)의 API-5L 규격 등 다른 규격에 다중으로 스텐실이 찍힌 강관도, 상기 명시된 물리적 설명에 부합하고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경우 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길이가 32피트 이하인 경우; 외경이 2.0인치(50mm) 미만인 경우; 아연도금 및/또는 도색된 표면 마감을 갖는 경우; 또는 나사산 및/또는 커플링이 결합된 끝단 마감을 갖는 경우. ("도색된(painted)"이라는 용어는 바니시(varnish)와 같이 운송 중 녹 방지를 위한 코팅은 포함하지 않으며, 폴리에스터(polyester)와 같은 코팅을 포함함

□ 제외되는 품목

ㅇ 본 명령의 범위에는 다음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a) 보일러, 과열기, 열교환기, 응축기, 정

제용 노(refining furnaces), 급수 가열기(feedwater heaters)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강관(냉간 압연 여부와 무관), (b) 기계용 튜빙(mechanical tubing, 냉간 압연 여부와 무관), (c) 완성된 전기 배선관(electrical conduit), (d) 완성된 비계(scaffolding), (e) 재가공을 위한 튜브 및 파이프 중공재(tube and pipe hollows for redrawing), (f) API 규격에 따라 생산된 유정용 강관 제품(oil country tubular goods), 그리고 (g) 오직 API 규격에 따라 생산된 라인 파이프(line pipe).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ㅇ 7306.30.10.00, 7306.30.50.25, 7306.30.50.32, 7306.30.50.40, 7306.30.50.55, 7306.30.50.85, 7306.30.50.90, 7306.50.10.00, 7306.50.50.50, 7306.50.50.7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 등 다양한 번호로 분류됨

- HTSUS 소호는 편의 및 관세 목적으로만 제공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명령의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임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원형용접탄소강관이 기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물리적 특성)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해 생산된 원형용접탄소강관은 기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 규정된 물리적 특성(외경, 벽두께, 표면 및 끝단 마감, 산업 규격 등)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원형용접탄소강관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사실을 확인함

  · 베트남의 주요 기업인 SeAH VIN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간(2017.1.1.~2021.12.31.) 동안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열간압연강재를 조달하여 베트남에서 원형용접탄소강관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고 보고함

  · 아울러, SeAH VINA는 관련 구매계약서, 송장, 운송 서류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상무부는 최종적으로 SeAH VINA의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 투자가 중국 열간압연강재 생산에 비해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정함**

  · 이는 유정용 강관 사례에서처럼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슬리팅·성형·용접·마감 등)에 필요한 투자 수준은 열간압연강재 생산을 시작하는 통합 제강소업체들의 투자와 비교할 때 최소한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또한 조사대상 강관의 생산 공정은 본질적으로 열간압연강재 생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전제로, 열간압연강재 생산국(중국)과의 비교가 타당하다고 설명함

  · **(청원인 주장**) 특히 미국 청원인들은 베트남 내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투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함. 특히 과거 중국산 유정용 강관사례에서 제시된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 내 통합 제강소 건설에는 최소 2억 9,500만 달러에서 최대 101억 달러, 평균 약 36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용함**

  · (반박 의견) 베트남 주요 생산업체들은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 투자를 열간압연강재 생산 투자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함. 동 **산업 특성상 중간재인 원료인 열간압연강재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구조이며, 열간압연강재 생산(제강)과 강관 생산은 별개의 공정임을 강조함**

  · 또한, SeAH VINA는 자사 투자액(3,780만 달러)이 미국 내 강관업체의 예상 초기 투자 비용(약 1,400만 달러)보다 크며, 고**도의 전문화된 설비와 수백 명의 인력을 통해 열간압연강재를 원형용접탄소강관으로 전환하는 전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상무부는 베트남 내 R&D 활동이 사실상 부재함을 확인하고, 이 요건을 경미한 수준으로 판정함

  · 특히, 상무부는 과거 냉간압연강재 및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한 강관 우회조사 사례와 동일하게, 제3국 강관업체들이 자체적인 R&D 활동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임을 지적함. 이번 사건에서도 상무부는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함

  · (업체 의견) 실제로 베트남의 주요 생산자인 SeAH VINA는 독립된 R&D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을 위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며, SeAH VINA는 원형용접탄소강관 및 기타 강관 제품과 관련된 R&D 활동은 한국 계열사인 SeAH Steel이 수행하며, 계열사들은 조사 기간 동안 R&D 결과를 SeAH VINA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힘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상무부는 베트남에서의 원형용접탄소강관 완성 공정이 중국에서의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에 비해 **훨씬 덜 광범위(much less extensive)하고, 덜 집약적(less intensive)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함(즉 사소하거나 경미하다고 판정함). 이는 과거 유사한 강관 우회조사에서 적용된 접근 방식과 유사함. 이러한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의 복잡성 및 집약성)** 중국의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은 철광석 등 기초 원료를 투입하여 슬래브와 두꺼운 강판을 거쳐 다양한 두께·길이의 열간압연강재로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공정 단계가 많고 기술적·에너지적 집약도가 매우 높은 복합 공정임

    * 열간압연강재 생산 과정은 소결, 코크스 오븐, 용광로, 전로, 연속 주조기를 거쳐 슬래브를 만든 뒤, 재가열하여 조압연과 최종 압연을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 두께와 길이 변화와 같은 본질적인 변형이 수반됨

    * 또한, 상무부는 과거 유정용 강관(OCTG) 우회조사에서 중국의 통합 제철소 건설에는 평균 약 36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점을 인용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함

  · **(베트남의 생산 공정의 제한적 성격)** (CWP 완성 공정의 단순성) 베트남 내 원형용접탄소강관 완성 공정은 열간압연강재를 외부에서 조달한 뒤, 슬리팅·성형·용접·시험·마감·아연도금 등 주로 후공정 위주의 공정을 수행함. 이는 열간압연강재 제조 공정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자본 및 기술 집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상무부는 비록 완성된 원형용접탄소강관이 열간압연강재와 구별되는 최종 제품으로서 독립적 정체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베트남 내에서 수행된 완성 공정은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음. 상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내린 판단이 기존 유사 사례(유정용 강관, CORE)들과 정책적으로 일관된 접근임을 강조함

- **(④ 생산시설의 규모) 상무부**는 베트남 내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 시설 및 장비의 규모가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비교할 때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베트남 내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시설과 장비 규모는 **중국에서 열간압연강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용광로, 전기로, 압연 공장 등 대규모 시설과 비교할 때 현저히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예비 및 최종적으로 판정함**

  · 또한 상무부는 강관의 전체 생산공정은 본질적으로 열간압연강재 생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비교가 타당하다고 설명함. 동시에 상무부는 이러한 비교·분석 방법론이 앞서 언급한 기존 선례(OCTG, CORE 등)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 바 있으며, 법원(미국 국제무역법원(CIT) 2021년 판결,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23년 Al Ghurair Iron & Steel LLC v. United States [138]사건에서 확정)에서도 합리적임이 인정된 선례가 있다고 부연 설명함

  · (청원인 주장) 특히 청원인들은 조사 기간 동안 베트남이 열간압연강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국의 대규모 열간압연강재 생산시설(용광로, 전기로, 압연 공장 등)에 비해 베트남의 설비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함

  · (반박 의견) 이에 대해 SeAH VINA는 자사의 생산시설 규모가 결코 미미하거나 사소하지 않다고 반박함. SeAH VINA는 베트남에 Bien Hoa 및 Nhon Trach 두 개의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공장을 운영하며, 각각 71,250㎡와 120,000㎡ 규모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함. 또한 이들 공장은 열간압연강재를 원형용접탄소강관로 가공하기 위한 슬리팅(slitting), 성형 및 용접, 시험 및 마감, 아연도금 등 필수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해당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⑤ 부가가치 비중)** (청원인 주장) 청원인들은 ITC『2016 원형용접탄소강관

138) Al Ghurair Iron & Steel LLC v. United States, 536 F. Supp. 3d 1357 (CIT 2021) (Al Ghurair I), affirmed in Al Ghurair Iron & Steel LLC v. United States, 65 F.4th 1351 (CAFC 2023) (Al Ghurair CAFC)

(CWP) Final』 및 『ITC 2012 원형용접탄소강관(CWP) Third Review』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 내 원형용접탄소강관 생산원가에서 열간압연강재의 투입 비중이 약 75~81%에 이른다고 강조함

- 또한 ITC 무역자료와 Global Trade Atlas(GTA)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의 베트남 수입 평균 단가(AUV)와 베트남산 원형용접탄소강관의 미국 수출 평균 단가(AUV)를 비교함
- 2021년 기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베트남 수입 평균 단가: 미터톤(MT)당 693.46달러
- 021년 기준 베트남산 원형용접탄소강관의 미국 수출 평균 단가:미터톤(MT)당 967.86달러
- 이를 토대로 청원인들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가 원형용접탄소강관 전체 가치의 71.6%를 차지**하며, 이에 베트남에서의 가공을 통해 추가된 부가가치는 28.4%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반박 의견) **SeAH VINA는 열간압연강재 원재료가 강관 생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업계 전반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원재료 비중이 높다는 점은 청원인들의 자료에서도 드러난다고 반박함.** 따라서 원재료 대비 부가가치 비율만으로 베트남 내 가공 공정을 단순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SeAH VINA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URAA)에 따른 행정지침을 인용하며, 부가가치의 엄격한 수치 계산보다는 **가공 공정의 본질적 성격을 중시한다고 설명함**
  * 그 결과,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가공은 미국 수입 원형용접탄소강관 가치에서 '작은 비중(small proportion)'에 해당하지만,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는 '상당한 비중(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한다고 판정함

□ **추가 고려 요인(Factors to consider)(§1677j(b)(3))**

○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중국산 열간압연강재를 사용해 생산된 원형용접탄소강관이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관세법 §781(b)(3)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 ① 무역 흐름의 변화, ② 특수관계 여부, ③ 제3국으로의 원재료 수입 증가를 검토함

○ (무역 흐름의 변화 & 원재료 수입 구조 변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원형용접탄소강관은 8.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원형용접탄소강관 수입은 16.2% 감소함

- 또한 중국의 대(對)베트남 열간압연강재 수출은 1.7% 증가하여 전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수출의 25% 이상이 베트남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베트남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의 주요 수입처임을 보여주며 무역 패턴 변화가 우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로 활용됨
- 다만 상무부는 이러한 무역 흐름 데이터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참고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함

ㅇ **(특수관계 여부)** 상무부 조사 결과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SeAH VINA는 한국 모회사(SeAH Steel International, SeAH Steel Holdings Corporation)의 자회사로, 중국 공급업체와 소유·지배·합작 관계가 없음
- 다만 상무부는 특수관계의 부재가 곧 우회를 배제하는 요건은 아니며, 다른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회로 판정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ㅇ 미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원형용접탄소강관이 중국산 열간압연강재(HRS)를 사용해 제한적 후가공만 거친 제품에 불과함이 확인됨. 베트남 내 공정은 중국의 열간압연강재 제조에 비해 투자·R&D·설비 규모·공정 복잡성 측면에서 모두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됨

ㅇ 또한 무역 흐름 변화(중국산 CWP 감소 vs. 베트남산 증가), 중국의 대(對)베트남 HRS 수출 확대 등 정황 자료 역시 우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됨

ㅇ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상무부는 베트남을 경유한 원형용접탄소강관은 기존 중국산 제품에 대한 AD/CVD 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최종 판단함

5) 스테이플 [139](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140]

사례번호	A-570-112 / C-570-113	
조사 개시일	2022년 12월 21일 (연방관보 게재 기준)	
최종판정	2024년 1월 23일	
조사 대상	중국산 철선 또는 와이어 밴드를 사용하여 태국에서 완성·조립된 특정 스테이플	
조사 배경	미국 상무부(Commerce)는 중국산 콜레이티드 스테이플에 대한 AD/CVD 명령 이후, 태국을 경유한 수출 증가가 회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1930년 관세법」 §781(b) 및 19 CFR 351.226에 따라 국가 단위 우회조사를 개시함	
적용 법령	「1930년 관세법」 §781(b), 19 CFR §351.226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8305.20.0000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수준	태국 생산업체의 투자는 와이어 밴드를 최종 스테이플로 전환하는 설비에 한정됨. 반면, 중국 내 완전 통합형 제철소 건설에는 평균 약 36억 달러(최소 2억 9,500만~최대 101억 2,000만 달러)의 투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태국 내 투자는 현저히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됨
	연구개발 수준	상무부는 태국 기업들의 R&D 활동에 대해 업체별로 상이한 평가를 내림 ((1) UM Industry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 (2) YF Thailand의 경우 R&D 활동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했으나 "경미성" 판단을 번복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함)
	생산공정	태국 생산업체들은 최종 성형 단계의 기본 장비(성형기, 접착기, 포장 설비)에만 투자하고, 철선재 생산·인발·도금 등 상류 공정 설비는 전혀 보유하지 않음. 중국 내 완전 통합형 제철소 건설에는 평균 약 36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으로 평가됨
	생산설비 규모	태국 업체들의 설비는 최종 성형에 필요한 일부 기계류와 인력만 보유. 와이어 로드 인발·도금 등 상류 생산 능력은 전혀 없어, 가공 활동이 “사소하거나 경미”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함
	제3국 가공의 부가가치	상무부 정량분석 결과, 태국 내 가공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비중국산 투입재, 인건비, 간접비 등)는 최종 완제품 가치에서 극히 제한적인 “작은 비중(small proportion)”에 불과함. 이는 태국 공정이 독립적 제조라기보다 중국산 중간재에 기반한 단순 후공정임을 뒷받침함
결론	미 상무부는 A-570-112 우회조사에서, 태국 내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철선 및/또는 와이어 밴드를 사용하여 스테이플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기존 AD/CVD 명령을 우회한다고 최종 확정함	

139) 본 보고서에서는 “collated steel staples”를 “스테이플”으로 통일하여 표기함. 이는 미국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A-570-112/C-570-113)의 대상 품목인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을 지칭함

140) **(조사 개시)**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December 14, 2022)
(예비 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ugust 24, 2023)
(최종 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January 23, 2024)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스테이플 우회조사는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보고서는 태국으로 한정하여 정리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ST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스테이플	2020.07. 20	8305.20.0000	22.12.21	태국	최종판정 (24.01.23)
				베트남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DOC)는 2020년 7월 20일,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에 대해 반덤핑(A-570-112) 및 상계관세(C-570-113) 명령을 발령함

○ 2022년, 미국 제조업체 Kyocera Senco Industrial Tools, Inc.는 중국산 철선(steel wire) 또는 철선 밴드(wire band)가 태국과 베트남으로 수출된 뒤, 현지 공장에서 절단·접착·포장 등 단순한 조립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3국 조립 공정을 통한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청원인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의 비중이 높고, 태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1일, 태국에서 조립·완성된 스테이플 제품이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A-570-112 / C-570-113)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우회 조사가 개시됨

- 상무부는 2023년 8월 24일 예비판정을 통해 태국에서 우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판단하였으며, 2024년 1월 23일 최종판정에서도 그 결론이 유지함

[표 3-24] 중국산 특정 강철 코팅 스테이플의 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20.07.20	• 중국산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에 대해 반덤핑 명령(A-570-112) 및 상계관세 명령(C-570-113)이 발효됨
22.11.15	• 미국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우회조사 절차가 개시됨

22.12.14	•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강선(steel wire)·와이어 밴드(wire band)를 사용하여 태국에서 조립·완성된 스테이플이 기존 AD/CVD 명령을 회피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회조사를 개시함
23.08.24	• (예비 판정) 상무부는 태국에서 중국산 강선·와이어 밴드를 사용하여 생산된 스테이플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한다고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림
24.01.23	• (최종긍정) 상무부는 태국에서 중국산 강선·와이어 밴드를 사용하여 조립·완성된 스테이플이 중국산 스테이플 대한 AD/CVD 명령을 회피한다고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림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ase No. A-570-112 / C-570-113, January 23, 2024.(4502946)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중국산 철사(steel wire) 또는 철 밴드(wire bands)를 사용하여 태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완성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

○ (기존 명령의 범위) 기존 명령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25]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 해당 명령(Orders)의 적용 대상 상품은 일정한 규격의 철강 스테이플(collated steel staples)임. 명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스테이플은 공칭 직경이 0.0355인치에서 0.0830인치까지(포함), 공칭 다리 길이가 0.25인치에서 3.0인치까지(포함), 공칭 크라운 폭이 0.187인치에서 1.125인치까지(포함)인 철선(steel wire)으로 제조됨
- 해당 스테이플은 어떠한 종류의 철강으로도 제조될 수 있으며, 코팅 여부 또는 코팅의 종류나 횟수와 무관하게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부식 방지 목적의 코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이러한 스테이플은 접착제(adhesive), 본드(glue), 접착 필름(adhesive film) 또는 접착 테이프(adhesive or paper tape) 등 어떤 재료나 재료의 조합을 사용하여 결합(collated)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해당 철강 스테이플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ASTM F1667-18a 규격에 따라 제조되지만, 다른 규격으로도 제조될 수 있음

□ 다음 품목은 명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산 박스 마감용 스테이플(carton-closing staples)에 관한 반덤핑 관세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모든 박스 마감용 스테이플. (참조: Carton-Closing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tidumping Duty Order, 83 FR 20792, 2018년 5월 8일자)
- 둘째,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 철선으로 제조되어 공칭 직경이 0.050인치에서 0.081인치까지(포함)인, 일반적으로 "C-링 호그링(C-ring hog rings)" 및 "D-링 호그링(D-ring hog rings)"

으로 불리는 결합형 패스너(collated fasteners).
- C-링 호그링은 다리가 크라운에 수직이 아니고 안쪽으로 휘어져, 전체 형상이 문자 “C” 모양을 이루는 패스너임. D-링 호그링은 다리가 크라운과 만나는 각도가 30도에서 75도 범위 내에서 수직이 아닌 직선 형태의 패스너임
- 해당 호그링은 접착제(glue), 접착 필름(adhesive), 또는 테이프(tape)를 사용하여 결합되며, 90도 블런트 포인트(무딘 끝단) 또는 15~75도 다이버전트 포인트(경사 끝단/갈라진 촉)임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 현재 동 물품은 주로 소호(subheading) 8305.20.0000에 분류됨
- HTSUS 소호 및 ASTM 규격은 단지 편의와 세관 절차 목적상 제공되는 것이며, 명령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서면상 상세 내용(written description)임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 상무부는 태국에서 생산·수출된 스테이플이 기존 명령 대상과 동일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잠정 및 최종 판정함

  · 태국의 주요 스테이플 생산업체인 ①YF Technology Thailand와 ②UM Industry는 모두 조사 기간 동안 동일한 종류의 스테이플을 생산·수출한 것으로 보고함

  · 해당 스테이플은 일정한 직경·다리 길이·크라운 너비 규격을 가지며, 코팅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접착 방식으로 결합되며 HTSUS 제8305.20.0000호에 분류됨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상무부는 YF Technology Thailand가 조사 기간 동안 중국에서 조달한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및 아연 도금 강선을 사용하여 스테이플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함

  · 한편 UM Industry의 경우 중국 내 계열사 및 기타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와이어 밴드를 사용하여 스테이플을 생산했다고 보고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상무부는 투자 수준을 평가할 때,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 통합형 생산시설(fully integrated production facility)"에 필요한 투자 규모와 비교하여 검토함
  - 태국의 주요 생산업체인 YF Thailand와 UM Industry는 스테이플 생산을 위해 일부 설비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스테이플 성형기계, 접착 및 포장 설비 등 최종 성형 단계에 필요한 기본 장비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됨
  - 일반적으로 콜레이티드 스테이플의 전체 생산 공정은 철선재(wire rod) 생산 → 철사 가공 → 아연도금 → 와이어 밴드 성형 → 최종 스테이플 전환 등 다단계를 포함하나, **반면 태국 업체들은 이러한 초기 단계의 원재료 제조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상무부는 이 사례에서도 앞서 살펴본 유정용 강관, 원형용접탄소강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완전 통합 제철소 건설 비용이 수십억 달러(평균 약 36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태국 업체들의 투자 수준을 이에 비해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minor or insignificant)"으로 판단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무부는 태국 기업들의 스테이플 생산 공정과 관련된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해 업체별로 상이한 평가를 내림
  - 먼저 UM Industry는 조사 기간 동안 R&D 지출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상무부는 이러한 R&D 활동의 부재를 태국 내 조립·완성 공정이 "경미하거나 사소하다(minor or insignificant)"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함
  - 반면 YF Thailand는 생산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일부 R&D 비용을 지출했다고 보고함. 구체적으로 동기화 장비(synchronizing equipment) 및 온라인 테스트 기술 개발, 다양한 다이(die) 수정(스테이플 다리 모양 정렬 개선, 접착제 코팅 와이어 밴드 응력 측정 개선 등) 활동이 포함됨
  - 상무부는 이러한 R&D 활동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였으나, 그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태국 내 조립·완성 공정이 경미하다는 결론을 번복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 즉, YF Thailand의 R&D 활동은 존재하고 일정한 기술적 노력이 확인되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인 경미성 판단을 바꾸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았음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상무부는 태국에서 생산된 스테이플의 생산 공정이 중국의 통합 생산 공정에 비해 훨씬 덜 광범위(much less extensive)하고 덜 집약적(less intensive)이라고 최종 판단함. 이러한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중국 내 열간압연강재 생산 공정의 복잡성 및 집약성)** 중국의 통합 공정은 철광석 단계에서 출발하여 제강 → 슬래브 제조 → 철선재(wire rod) 전환 → 인발(drawing)을 통한 철사 제조 → 아연도금(galvanizing) → 와이어 밴드 성형 → 최종 스테이플 제조로 이어지는 복합적 다단계 공정임

    * 이 과정은 물리적·화학적 변형을 수반하는 고도 공정이며, 막대한 자본 투입(수십억 달러 규모)이 요구됨

  · **(태국 내 생산 공정의 제한적 성격)** 태국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생산된 철사 및 와이어 밴드를 수입해 제한적인 후공정만 수행하고 있음. **상무부는 이러한 태국 내 공정이 중국의 완전 통합형 공정과 비교할 때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이라고 판단함**

    * 태국의 주요 생산·수출 업체별 검토한 결과, ①YF Technology Thailand(YF 태국)는 중국산 아연도금 강선이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하여 평탄화(flattening) → 밴딩(banding) → 성형의 세 단계를 수행했으나, 철선재를 철사로 전환하는 인발 공정이 포함되지 않아 덜 통합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다른 업체인 ②UM Industry 역시 중국산 원재료에 기반한 최소한의 단순 후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무부는 두 업체 모두의 공정이 중국 내 철사·밴드 제조 및 제강·압연 단계와 비교할 때 덜 광범위하고 덜 집약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태국에서의 조립·완성 공정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나 용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고 봄

    *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무부는 다음의 기존 판정 사례들을 인용함

· Aluminum Foil from Korea (2023):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을 한국에서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후가공(절단·포장 등)만 수행한 경우, 한국 내 가공이 최종 수출 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보아 경미하거나 사소한 공정으로 판정한 사례

· CORE from UAE (2020): 중국산 강재를 원재료로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내식성 강판(CORE)을 생산한 경우, UAE 공정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중국산 원재료가 최종 제품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 경미하거나 사소한 공정으로 판정한 사례

* 상무부는 이러한 선례와 비교하여, 태국에서 이루어진 단순 후공정 역시 중국의 통합형 공정에 비해 규모와 복잡성이 덜 광범위하고 덜 집약적이라고 판단함

· (반박 의견 및 상무부의 판단) 미국 수입자(Black & Decker) 및 YF Thailand는 태국 내 공정은 단순한 공정(스크루드라이버 작업, screwdriver operation)이 아니며 상당한 투자와 기술이 수반된다고 주장함

* **또한 중국산 강선이 최종 스테이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여 태국산 원산지를 획득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상무부는 CBP의 실질적 변형 분석과 상무부의 우회 분석은 법적으로 별개의 기준임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CBP의 실질적 변형 기준은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 반면 상무부의 우회조사 기준은 AD/CVD 명령의 우회 여부 판정에 사용됨 ·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조사 목적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및 판단을 수행함

- (④ 생산시설의 규모) 상무부는 태국의 생산업체들이 소수 인력과 제한적 규모의 설비만으로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태국의 스테이플 생산·수출업체들은 중국에서 이미 제조된 와이어 밴드 또는 강선을 반입하여 절단·성형·접착·검사·포장 등 최종 후공정만 수행함

· 따라서 이들 시설은 철광석 단계에서 출발하여 제선·제강·압연·도금·밴드 제조까지 이어지는 완전 통합형 제철소의 상류 공정을 전혀 포함하지 못한 채 단순 후처리 공정에 국한되어 있었음

· 설비 투자 역시 성형기·접착기·포장 설비 등 기본 장비에 한정되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완전 통합형 제철소와는 질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

· 상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태국 내 생산 시설은 실질적 규모나 복잡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그 결과 중국 내 통합형 공정과 대비할 때 “경미하거나 사소한(minor or insignificant)” 범주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함

- **(⑤ 부가가치 비중)** 상무부는 YF Technology Thailand 사례를 토대로, 비(非)중국산 원재료 투입비용, 노동비, 고정·변동 간접비를 단위당 비용으로 합산한 뒤, 이를

2022년 YF의 대미 수출단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공 가치 비중을 산출함

- 이 계산에 사용된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영업 기밀(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PI)로 분류되어 비공개이나, 예비판정에서는 태국 내 가공 가치가 최종 제품 가치에서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 최종판정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계산 항목에 일반관리비(G&A), 이자비용(interest expenses), 미환급 세금(unrefunded taxes)을 추가했으나, 여전히 부가가치 비중은 전체 제품가치에서 작은 부분(small proportion)에 불과하다고 평가됨
- (중국산 원재료 비중) 상무부는 태국에서 생산·수출된 콜레이티드 스테이플의 총 가치 중 중국산 원재료(와이어 밴드 및/또는 철선)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 그 결과 중국산 원재료의 가치가 최종 제품 가치의 상당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함
  * 이는 §781(b)(1)(D) 요건(최종 제품 가치에서 중국산 원재료 비중이 상당할 것)을 충족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태국을 통한 우회 행위가 존재한다는 긍정적 판정을 뒷받침함.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임
  * 또한 상무부는 중국을 비시장경제(NME)로 간주하여 중국 자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를 대체국(surrogate country)으로 선정해 그 시장경제 자료를 활용해 원재료 대체값(surrogate values)을 산출·적용함

□ **추가 고려 요소**

ㅇ (무역 흐름의 변화)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이플에 대한 AD/CVD 명령 발효 이후 태국을 통한 대미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확인함

- 구체적으로 명령 개시 이전 기간(2016.2 ~ 2019.6)과 이후(2019.7 ~ 2022.12) 기간 동안 태국산 스테이플의 대미 수입액은 약 69,897.80% 증가함
- 같은 기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된 물량은 45.23% 감소함
- 상무부는 이러한 무역 흐름의 변화가 단순한 시장 요인보다는 AD/CVD 명령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결과라고 강조함

[표 3-26] 미국의 수입 동향 변화 추이

(단위 : USD)

구분	조사 개시 전 (2016.2-2019.6)	조사 개시 후 (2019.7-2022.12)	증감률 (단위 : %)
중국	$264,536,316	$144,885,625	-45.23%
태국	$54,698	$38,287,395	+69,898%

○ (특수관계 여부) 태국 내 일부 생산업체들은 중국 공급업체와 밀접한 특수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일부 태국 업체는 홍콩 등록법인과 동일 가족 소유·통제하에 있었으며, 해당 홍콩 법인은 태국산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태국 업체는 중국 내 계열사 및 비계열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중간재인 와이어 밴드를 조달함
- 상무부는 이러한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우회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원재료 수입 구조 변화) 상무부는 태국이 중국산 중간재를 대규모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우회 행위 발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함

- 특히 명령 발효 전 기간(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과 발효 후 기간(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을 비교한 결과, ▲아연도금 강선 10.14%, ▲스테인리스 강선 74.64%, ▲와이어 밴드 158.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AD/CVD 명령 부과 이후 태국 내 생산공정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산 원재료 조달이 집중적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상무부는 태국 내 스테이플 생산활동이 중국산 중간재(아연도금 강선, 스테인리스 강선, 와이어 밴드)에 크게 의존한 제한적 후공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 특히 명령 발효 이후 중국산 중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실은 태국 내 생산이 독립적인 제조라기보다 중국산 원재료의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확인됨

○ 태국에서 수행된 절단, 성형, 조립, 포장 등 제한적인 공정은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나 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며, 독립적인 제조 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움

- 이러한 종합적 분석을 근거로, 상무부는 태국을 통한 콜레이티드 스테이플 수출이 AD/CVD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행위(circumvention)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6) 알루미늄 압출제품[141]

사례번호	A-570-967 / C-570-968	
조사개시일	2018년 3월 5일	
최종판정 발표일	2019년 5월 17일	
조사 대상	베트남 기업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중국의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및 완성한 후 알루미늄 압출제품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한 사례	
조사 배경	미국 알루미늄 압출제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중왕홀딩스 및 계열사에서 생산된 일부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제3국에서 완성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사례를 두고,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는 사례라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증거를 토대로 미국 상무부(Commerce)가 우회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c),(d), 19 CFR §351.225 및 19 CFR §351.226	
HS code (명령범위)	총 124개 HS Code[142]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법적요건)	우회 조사 초기에 중왕홀딩스의 수출 사례(미국 직접 수출, 베트남 우회 수출)와 도미니카공화국 우회 수출 사례 모두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 또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근거한 우회 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왕홀딩스의 미국 직접 수출 사례만 '추후 개발 물품'에 따른 우회 사례로 나타났으며, '제3국 우회 수출'은 베트남 사례에만 적용되고 도미니카공화국 사례는 제3국 우회 수출이 아닌 대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적용 범위 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남	
	제3국 우회 수출 (베트남, 도미니카)	(베트남) 중왕홀딩스는 2011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과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재처리 후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며, 투자 및 연구개발 수준과 생산공정 특성, 생산범위, 원재료 가치 및 제3국 생산 부가가치 비중, 추가 고려 요인(factors to consider) 등에 모두 해당되어 제3국 우회 수출로 판정[143]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되어 제3국 우회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3국 우회 수출이 아닌 해당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144]
결론	상무부는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베트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우회하였다고 판단함	

141) **(조사개시)**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March 5 2018)(barcodes : 2018-04390)
(예비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May 17 2019)(barcodes : 2019-10275)
(최종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and Partial Rescission(August 12 2019)(barcodes : 2019-17194)

142) (기본) 7609.00.00, 7610.10.00, 7610.90.00, 7615.10.30, 7615.10.71, 7615.10.91, 7615.19.10, 7615.19.30, 7615.19.50, 7615.19.70, 7615.19.90, 7615.20.00, 7616.99.10, 7616.99.50, 8479.89.98, 8479.90.94, 8513.90.20, 9403.10.00, 9403.20.00, 7604.21.00.00, 7604.29.10.00, 7604.29.30.10, 7604.29.30.50, 7604.29.50.30, 7604.29.50.60, 7608.20.00.30, 7608.20.00.90, 8302.10.30.00, 8302.10.60.30, 8302.10.60.60, 8302.10.60.90, 8302.20.00.00,

본 사례는 미 상무부가 2011년 5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부과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의 제3국(베트남 및 도미니카 공화국)을 거쳐 우회한 것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개시일	조사결과		우회판정 (예비/최종)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aluminium extrusions)	A-570-967 (2011.05)	7609, 7610 등 총 124개	18.03.05	베트남	제3국 우회	최종판정
				도미니카	(우회X) 명령 범위 내 물건 수출	해당X

□ 조사 배경

○ 2015년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제품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청원인”)는 2011년 5월에 발령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하 “명령”)이 부과된 알루미늄 제품[145]과 중국 중왕(Zhongwang)홀딩스 유한공사(이하 “중왕”) 및 계열사가 생산하는 화학적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된 알루미늄 제품이 상호 유사하다고 판단함

○ 2018년 3월 5일, 청원인은 중왕홀딩스 베트남 계열사의 수출사례가 「19 U.S.C. §1677j(c)의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과「19 U.S.C. §1677j(b)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무부에 우회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으며, 상무부는 2019년 5월에 최종적으로 우회 판정함

8302.30.30.10, 8302.30.30.60, 8302.41.30.00, 8302.41.60.15, 8302.41.60.45, 8302.41.60.50, 8302.41.60.80, 8302.42.30.10, 8302.42.30.15, 8302.42.30.65, 8302.49.60.35, 8302.49.60.45, 8302.49.60.55, 8302.49.60.85, 8302.50.00.00, 8302.60.90.00, 8305.10.00.50, 8306.30.00.00, 8414.59.60.90, 8415.90.80.45, 8418.99.80.05, 8418.99.80.50, 8418.99.80.60, 8419.90.10.00, 8422.90.06.40, 8473.30.20.00, 8473.30.51.00, 8479.90.85.00, 8486.90.00.00, 8487.90.00.80, 8503.00.95.20, 8508.70.00.00, 8515.90.20.00, 8516.90.50.00, 8516.90.80.50, 8517.70.00.00, 8529.90.73.00, 8529.90.97.60, 8536.90.80.85, 8538.10.00.00, 8543.90.88.80, 8708.29.50.60, 8708.80.65.90, 8803.30.00.60, 9013.90.50.00, 9013.90.90.00, 9401.90.50.81, 9403.90.10.40, 9403.90.10.50, 9403.90.10.85, 9403.90.25.40, 9403.90.25.80, 9403.90.40.05, 9403.90.40.10, 9403.90.40.60, 9403.90.50.05, 9403.90.50.10, 9403.90.50.80, 9403.90.60.05, 9403.90.60.10, 9403.90.60.8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9403.90.80.10, 9403.90.80.15, 9403.90.80.20, 9403.90.80.41, 9403.90.80.51, 9403.90.80.61, 9506.11.40.80, 9506.51.40.00, 9506.51.60.00, 9506.59.40.40, 9506.70.20.90, 9506.91.00.10, 9506.91.00.20, 9506.91.00.30, 9506.99.05.10, 9506.99.05.20, 9506.99.05.30, 9506.99.15.00, 9506.99.20.00, 9506.99.25.80, 9506.99.28.00, 9506.99.55.00, 9506.99.60.80, 9507.30.20.00, 9507.30.40.00, 9507.30.60.00, 9507.90.60.00, 9603.90.80.50.

143) 일례로 중국에 세계 수준의 경사 주조 시설과 아시아 최대 맞춤형 알루미늄 압출 다이(die) 제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베트남 계열사(GVA)의 경우 투자 수준이 미미하고 기술 수준도 단순 재용해 및 재압출에 불과하며, 생산공정 소요 비용도 노동비, 에너지비 등 일부에 불과함

144)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Orders)의 범위(scope)에서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조립·완성된 상품”은 제외되는데(유리가 포함된 완성 창문, 문, 그림 액자, 태양광 패널 등). 상무부에 도미니카공화국 사례 우회 조사를 요청한 원고(Air Master)는 중국산 창틀 압출제품과 도미니카공화국산 알루미늄 자루시 셔터 모두 완제품이 아니므로 명령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함

145)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부여받은 제품 범위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6으로 시작하는 합금으로 제조된 압출제품(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5로 시작하고 마그네슘 함량이 중량 기준 1%를 초과하는 합금으로 제조된 압출제품은 제외)

○ 2018년 9월, 미국 Air Master Awning 사(이하 “Air Master”)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틀 압출제품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도 마찬가지로 「19 U.S.C. §1677j(c)의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과 「19 U.S.C. §1677j(b)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무부에 우회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으며, 상무부는 202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우회조사를 철회함

○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U.S.C. §1677j(b)에 근거한 제3국 우회 여부에 해당되었으나, 도미니카공화국은 해당 명령 적용 범위내에 해당되어 우회조사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우회조사 철회를 결정함

[표 3-27] 합금 및 열처리된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의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1.05.26	• 2011년 5월 26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부과를 최종 확인하고, 반덤핑 관세(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하 “명령”)을 부과[146]하였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해당 수입품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함
15.12.30	• 미국 알루미늄 압출제품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청원인”)[147]는 2011년에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 부과된 알루미늄 제품과 유사한 중국 중왕(Zhongwang)홀딩스 유한공사(이하 “중왕”) 및 계열사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상무부에 관세법 제781조 (c)항의 경미함(minor or insignificant)과 (d)항의 추후개발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여부에 근거한 우회조사를 요청함 * 화학적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된 알루미늄 제품 •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 부과된 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6으로 시작하는 합금으로 제조된 압출제품[148]* • 청원인은 6시리즈 번호를 부여받은 합금은 마그네슘 함량이 총 중량의 최소 0.1% 이상 최대 2% 이하인데, 중왕홀딩스가 화학적 구성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6시리즈와 유사한 5시리즈 번호의 합금을 만들거나, 5시리즈 번호를 부여받은 합금에 6시리즈 합금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열처리(tampering)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음[149]
16.03.14	• 청원인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상무부는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 및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우회조사를 실시함
16.11.14	• (예비판정) 상무부는 화학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

	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와 관계없이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하여 중국의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였으며,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사안에 대한 우회조사 철회를 결정함
17.07.20	• (최종판정) 상무부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관계없이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의 화학 규격을 충족하고 열처리된 압출 알루미늄 제품이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사안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한다고 최종 판정함
18.03.05	• 청원인은 2016년도 중국 중왕홀딩스의 알루미늄 압출제품 우회사안에 대한 고발에 이어, 2018년 1월 9일에 문제의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하여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미 상무부에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of merchandise)과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 에 근거한 우회조사 실시를 요청함
18.09.25	• 미국 Air Master Awning LLC(이하 "Air Master")는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창틀 압출제품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공하여 알루미늄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s)로 생산한 다음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물건의 경미한 변경(mlnor alteration of merchandise)'라고 보고, 상무부에 우회조사를 요청함
19.05.17	• (예비판정)상무부의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베트남 우회 여부 조사 결과,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근거하여 2011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함
19.08.12	• (최종판정)상무부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일부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근거하여 2011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으며,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에 대한 우회조사는 철회함
20.03.03	• 2018년 9월 25일에 조사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공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기반 Jalousie 셔터 사례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는 우회조사 철회를 결정함 • 상무부는 최종 범위 판정에서 우회조사 목적이 '명령 범위 밖으로 보이는 제품이 경미한 형태나 외관 변경을 통하여 범위 내 제품으로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건은 명령 범위 내의 제품으로 판단함

자료 : U.S. Federal Register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570-967, C-570-968][150]

146)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Antidumping Duty Order(A Notice by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n 05/26/2011)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ㅇ (우회조사 대상) 중국의 중왕이 생산한 '화학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 과정을 거친 압출 알루미늄 제품'이며[151], 이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임

- 근거법령은 「19 U.S.C. §1677j(c)」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 「19 U.S.C. §1677j(d)」 '추후 개발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및 (b)항의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임

ㅇ (명령의 범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는 다음과 같음

[표 3-28]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적용 대상 : 알루미늄 협회에서 정한 합금 시리즈 번호(1, 3, 6으로 시작)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되었고, 압출공정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압출제품(extrusion)

- **1번 시리즈(순도 99% 이상 알루미늄), 3번 시리즈(망간이 주요 합금 원소이며, 무게 기준 전체 재료의 3% 이하), 6번 시리즈(마그네슘과 실리콘이 주요 합금 원소로, 무게 기준 전체 재료의 최소 0.1% 이상, 최대 2~3% 이하(마그네슘 최대 2%, 실리콘 최대 3% 이하))**
- **해당 알루미늄 압출재는 소수점 또는 선행 문자 없이 4단위 합금 시리즈로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함**
- **해당 알루미늄 압출재를 분류하는 약 160개의 등록된 합금중 대표적인 예시는 1350, 3003, 6060임**
- **알루미늄 압출재는 중공 프로파일, 기타 고체(soilid) 프로파일, 파이프, 튜브, 막대(Bar), 봉(Rod) 등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생산 및 수입되며, 압출 후 인발(drawn)된 알루미늄 압출제품도 본 명령의 범위 내에 포함됨**
-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다양한 마감 형태(도포 및 표면 처리)와 제작 방식으로 생산 및 수입되며, 해당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적용되는 도포 및 처리의 유형은 밀링(mill) 마감처리된 압출제품(도포나 추가 마감 처리 없음), 브러시처리(brushed), 버핑(buffed), 연마(polished), 산화 처리(anodized)(연마 산화 처리 포함), 액상 도장(liquid painted), 파우더 도포(powder coated)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147) Aluminum Extrusions Fair Trade Committee

148) 마그네슘 함량이 총 중량의 최소 0.1% 이상 최대 2% 이하이고, 실리콘 함량이 총 중량의 최소 0.1% 이상 최대 3% 이하 인 것으로 규정함

149) 이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현재 5050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열처리를 탬퍼링(Tampering) 공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5050 합금 기준으로 변형경화(Strain-hardening) 또는 냉간가공(Cold-working) 공정 기반 탬퍼링(Tampering) 적용 여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150) 최초 명령은 2011년 5월 26일에 발령되었으며 그 이후, 실제 우회조사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음
- 상무부 우회조사 사건번호 : 2016-06299, 2016-27346, 2017-15683, 2018-04390, 2019-09214, 2019-10275, 2019-17194, 2019-27135, 2019-28389, 2020-04345

151) 열처리를 거치며 마그네슘 함량이 약간 증가하여 5050 합금으로 분류되나(1.1%), 실질적으로는 6시리즈 합금(ex-6063 합금) 마그네슘 함량 범위(0.45~0.9% 기준)를 0.2% 높인 것으로 보고 명령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마그네슘 함량 증가는 마그네슘 시장 가격 기준 5050 제품 파운드당 4.63%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전체 빌렛(Billet) 생산비용을 놓고 보았을 때 0.52%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조립을 위하여 준비 또는 제작될 수 있으며, 제작 작업은 길이대로 절단하거나(cut-to-length), 기계 가공(machined), 천공(drilled), 펀칭(punched), 노치(notched), 구부림(bent), 늘림(stretched), 널링(knurled), 스웨징(swedged), 마이터(mitered), 모서리를 깎은 것(chamfered), 나선 가공(threaded) 및 방적(spun)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명령의 범위 내 제품은 마감 처리(도포 및 도장처리 등), 가공 또는 이들이 결합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포함**
- **해당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수입 시 수입 후 조립된 최종 완제품의 부품으로 설명 될 수 있고, 여기에 창틀, 문틀, 태양광 패널, 커튼 월(curtain wall) 또는 가구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물품에 국한 되지 않음**
- **알루미늄 압출제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부품도 본 명령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데, 하위 조립품을 만들기 위하여 (용접이나 파스너(fastener)에 의하여)부착된 알루미늄 압출제품 구성요소를 포함함. 즉,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의된 '키트(kit)' 완제품의 부품으로 수입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 하위 조립품 또는 해당 키트(kit)의 非알루미늄 압출제품은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압출제품, 예를 들어, 울타리 기둥(fence posts), 전기 도관(electrical conduits), 문지방(door thresholds), 카펫 트림(carpet trim), 방열판(heat sinks)(아래와 같이 완제품 방열판 제외 관련 문구를 충족하지 않음)의 경우 최종 사용 용도(end use)에 따라 구별되며, 수입 시 사용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령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충족할 경우, 명령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상품임**

□ 적용대상 물품의 HTSUS 코드는 다음과 같음

- **7609.00.00, 7610.10.00, 7610.90.00, 7615.10.30, 7615.10.71, 7615.10.91, 7615.19.10, 7615.19.30, 7615.19.50, 7615.19.70, 7615.19.90, 7615.20.00, 7616.99.10, 7616.99.50, 8479.89.98, 8479.90.94, 8513.90.20, 9403.10.00, 9403.20.00, 7604.21.00.00, 7604.29.10.00, 7604.29.30.10, 7604.29.30.50, 7604.29.50.30, 7604.29.50.60, 7608.20.00.30, 7608.20.00.90, 8302.10.30.00, 8302.10.60.30, 8302.10.60.60, 8302.10.60.90, 8302.20.00.00, 8302.30.30.10, 8302.30.30.60, 8302.41.30.00, 8302.41.60.15, 8302.41.60.45, 8302.41.60.50, 8302.41.60.80, 8302.42.30.10, 8302.42.30.15, 8302.42.30.65, 8302.49.60.35, 8302.49.60.45, 8302.49.60.55, 8302.49.60.85, 8302.50.00.00, 8302.60.90.00, 8305.10.00.50, 8306.30.00.00, 8414.59.60.90, 8415.90.80.45, 8418.99.80.05, 8418.99.80.50, 8418.99.80.60, 8419.90.10.00, 8422.90.06.40, 8473.30.20.00, 8473.30.51.00, 8479.90.85.00, 8486.90.00.00, 8487.90.00.80, 8503.00.95.20, 8508.70.00.00, 8515.90.20.00, 8516.90.50.00, 8516.90.80.50, 8517.70.00.00, 8529.90.73.00, 8529.90.97.60, 8536.90.80.85, 8538.10.00.00, 8543.90.88.80, 8708.29.50.60, 8708.80.65.90, 8803.30.00.60, 9013.90.50.00, 9013.90.90.00, 9401.90.50.81, 9403.90.10.40, 9403.90.10.50, 9403.90.10.85, 9403.90.25.40, 9403.90.25.80, 9403.90.40.05, 9403.90.40.10, 9403.90.40.60, 9403.90.50.05, 9403.90.50.10, 9403.90.50.80, 9403.90.60.05, 9403.90.60.10, 9403.90.60.8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9403.90.80.10, 9403.90.80.15, 9403.90.80.20, 9403.90.80.41, 9403.90.80.51, 9403.90.80.61, 9506.11.40.80, 9506.51.40.00, 9506.51.60.00, 9506.59.40.40, 9506.70.20.90, 9506.91.00.10, 9506.91.00.20, 9506.91.00.30, 9506.99.05.10, 9506.99.05.20, 9506.99.05.30, 9506.99.15.00, 9506.99.20.00, 9506.99.25.80, 9506.99.28.00, 9506.99.55.00, 9506.99.60.80, 9507.30.20.00, 9507.30.40.00, 9507.30.60.00, 9507.90.60.00, 9603.90.80.50**
- **적용대상 물품이 기타 알루미늄 제품의 부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HTSUS 제76류의 하위로 분류**

(7610.10, 7610.90, 7615.19, 7615.20, 7616.99)될 수 있음

ㅇ 핀형 증발기 코일(fin evaporator coils) : 8418.99.80.50 및 8418.99.80.60로 분류될 수 있음

□ 적용 제외 대상

번호	대상	내용
1	알루미늄 압출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2로 시작하며 중량 기준 구리 함량이 1.5%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압출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5로 시작하며 중량 기준 마그네슘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압출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7로 시작하며 중량 기준 아연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압출제품 • 수입 시 완전히, 영구적으로 조립·완성된 제품(ex-유리가 포함된 완제품 창문, 유리가 포함된 문, 유리판과 받침 재료가 포함된 사진 액자, 태양광 패널)
2	완제품 키트	• 시작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조립되어 완성된 부품의 형태를 가진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제품 제외[152] • 완제품 키트 내에 조립되지 않은채로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포함하는 완제품도 제외됨 • 완제품 키트(kit)는 수입 시 최종 완성품을 완전하게 조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포함하고, 추가적인 마감 또는 제작을 요구하지 않으며(예를 들어 절단 또는 펀칭), 현재 상태 그대로(as is) 조립해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포장된 부품 모음을 의미함 • 수입품은 완제품 키트(kit)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알루미늄 압출제품과 함께 포장된 물건에 나사, 볼트 등 파스너(fasteners) 부품을 포함한 것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됨
3	압출 공정외 기타 공정	• 압출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으로 제조된 알루미늄 합금 판재(Sheet)나 판(Plate)을 제외 • 주조(Casting) 방식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은 제외 : 주조 알루미늄 제품은 소수점을 포함한 네 자리 숫자로 구분되고, 네 자리 숫자 앞에 문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붙을 수 있으며, 알루미늄 협회가 지정한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번호는 208.0, 295.0, 308.0, 355.0, C355.0, 356.0, A356.0, A357.0, 360.0, 366.0, 380.0, A380.0, 413.0, 443.0, 514.0, 518.1, 712.0 등이 있음
4	모든 형태의 순수 비가공 알루미늄	• 알루미늄 협회에서 지정한 합금 코드 1080A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로 구성된 접이식 튜브형 용기(collapsible tubular container) • 접이식 튜브형 용기는(노즐을 제외) 길이 37mm 또는 62mm, 외경 11.0mm 또는 12.7mm, 두께 0.13mm 이하를 만족해야 함
5	완제품 방열판 (finished heat sinks)	• 알루미늄 압출제품(extrusions)으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열 성능 요건에 맞추어 설계 및 생산되며, 해당 요건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완전하게(개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험한 제품

□ 우회조사 판정 내용

152) 예를 들어 유리가 들어 있는 완성된 창문, 유리 또는 비닐이 포함된 문, 유리판 및 지지대(backing material)가 포함된 그림액자, 태양광 패널 등

ㅇ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 부과 물품 우회여부를 19 U.S.C. §1677j(b), (c), (d)」 및 19 CFR 351.225, 351.226에 근거하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사례 검토 과정에서 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에 명시한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153]'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안을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함

- 상무부는 베트남 사례가 19 U.S.C. §1677j (c)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19 U.S.C. §1677j (b)의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근거한 제3국 우회로 판단하고 '경미한 변경'에 따른 우회조사는 철회함

- 도미니카공화국 사례도 19 U.S.C. §1677j (c)의 '경미한 변경' 및 19 U.S.C. §1677j (b)의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해당하여 우회조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상 알루미늄 압출제품(Jalousie shutter)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범위 내 제품에 해당하여 우회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철회함

- 관련 사례에 대한 상무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9 U.S.C. §1677j (b)의 5가지 요건 중 하나인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에 집중됨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 상무부는 조사 대상 제품이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종류(the same class or kind)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회(circumvention) 판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함

-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이 기존 2011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적용 범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를 검토함

- (베트남) 상무부는 베트남에 위치한 중왕 계열사가 수입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2011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적용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함

153) 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도미니카공화국산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가 2011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적용받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과 동일 종류(same class or kind)라고 보았으며, 근거로 해당 제품이 미국내에서 동일한 HS Code로 수입되고 있음을 제시함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베트남) 상무부는 제3국에서 완성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원재료(inputs)로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청원인은 중왕이 글로벌 계열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2011년에 부과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상무부가 중왕에게 Scope ruling 관련 범위를 결정한 후 중왕이 미국 및 중국 계열사에서 베트남으로 제재 대상 제품을 보내 재처리하기 시작함을 주장함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UN Comtrade(유엔 상품무역통계) 자료를 통하여 2011년 명령 발동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중국산 문, 창문, 창틀 수입이 증가함을 주장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베트남) 청원인은 중왕이 베트남에 투자한 규모가, **최초 빌릿(billet) 및 압출 생산을 위해 중국에 투자한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고 주장**하였고, 중왕의 2016년 재무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 내에 90개의 알루미늄 압출 생산라인이 존재하는 것과 99개의 압출 프레스 추가 주문**이 있었다고 주장함

  · **중왕이 세계적 수준의 경사 주조 시설과 아시아 최대 맞춤형 알루미늄 압출 다이 제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중왕의 베트남 계열사(이하 "GVA"[154])에 대한 투자가 전체 중왕 회사 및 계열사 투자 대비 비중이 작으며**,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와 수출 환급액과 비교할 때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봄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조립에 필요한 투자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하였고, **중국 내 창틀**

154) Global Vietnam Aluminum Co., Ltd

압출제품 생산에 필요한 투자와 비교 시, 도미니카공화국 내 조립 및 마감 작업에 필요한 투자가 2,000배 이상 적다고 주장함

* 해당 값은 건물과 장비를 포함한 전체 투자 비용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국 내 압출 생산 투자에 비해 도미니카공화국 내 마감 투자는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중국 내 중왕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비해 **베트남 내 연구개발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는데, 중왕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규모 R&D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288명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인력이 근무해 전체 직원의 7.7%를 차지함

  · 반면 베트남 사업장 및 기타 베트남 압출업체들은 단순히 재용해 및 재압출만 수행하며, 고유 기술이나 중요한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음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도미니카공화국 내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제품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첨단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함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알루미늄 압출 공정은 합금 선정/가열/다이 설계 및 제작/압출/냉각 및 가공/후가공으로 구성됨

[표 3-29] 알루미늄 압출제품 생산 공정

합금 선정	• 적절한 알루미늄 합금 선정 • 내구성을 중시할 경우 강도가 높은 합금을, 경량성을 중시할 경우 가벼운 합금 선택
↓	
가열	• 선정된 알루미늄 합금을 4~500℃ 온도로 가열하여 유연하게 만든 다음 다이(Die)를 통과시켜 성형함 • 알루미늄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임
↓	
다이 설계 및 제작	• 다이는 최종 제품의 형상을 결정하는 금속 틀로, 정밀한 설계와 제작이 필요함 • 다이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가능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됨
↓	

압출	• 가열된 알루미늄 합금은 다이로 밀어넣어 압출함 • 압출 과정에서 알루미늄은 다이의 형상을 따라 변형되며, 최종 제품의 형태를 갖추게 됨 • 압출 공정은 고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다이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형상을 변형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며, 압출 프레스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함

↓

냉각 및 가공	• 압출된 알루미늄은 냉각되어야 함 • 냉각 과정은 압출된 알루미늄의 형태를 유지하고, 알루미늄의 물리적 특성을 안정시킴 • 냉각 후, 추가적인 가공이나 절단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압출된 알루미늄을 원하는 길이로 절단하거나, 표면 처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후가공	• 후가공 단계는 압출된 알루미늄 제품의 내구성이나 내식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임 • 후가공에는 표면 처리, 열처리, 도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품질을 결정함 • 제품의 사용 환경에 맞게 특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후가공을 통해 알루미늄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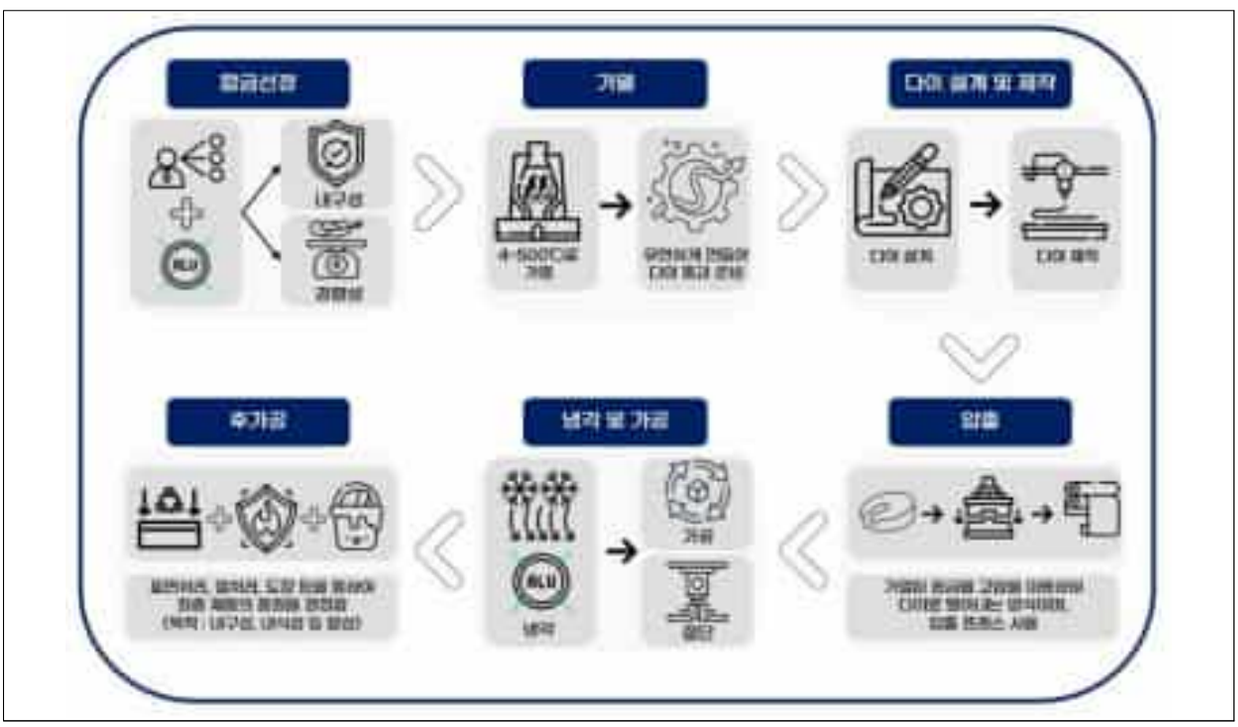

자료 : 바로발주(baro-order.com)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플래티콘(Flaticon)

· (베트남) 베트남 알루미늄 압출제품 생산자들의 생산공정 부가가치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는데,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용광로에서 재

용해한 뒤, 다시 가열된 압출물을 원하는 최종 형상을 만들기 위해 다이를 통과시키는 작업으로, 베트남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노동비, 에너지비, 간접비 등으로 전체 압출 비용의 약 8.8%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도미니카공화국 내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완성 공정이 중국산 창틀 압출제품을 단순히 길이 절단 후 나사 조립하는 수준**으로 보고, **제품 전체 가치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④ 생산시설의 규모)** (베트남) 청원인은 베트남 생산 시설이 중국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중왕은 베트남 내 GVA를 활용하여 중국 내 생산 시설의 가동을 유지하면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압출제품으로 전세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도미니카공화국 내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생산 시설은 3곳에 불과하고, 모두 중국산 창틀 압출제품을 조립을 토대로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를 단순 조립하는 시설이며, 해당 시설들은 푸에르토리코 수출용 제품만 생산함

- **(⑤ 부가가치 비중)**

  - (베트남) 청원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베트남에서 재가공되는 알루미늄 압출제품 총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함. 알루미늄 표준 소비량과 대체 비용 모델을 이용하여 빌릿(Billet)과 알루미늄 압출제품 생산 비용을 산정한 결과,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재가공 가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가치 대비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함

    * **상품 가치 대다수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가공 작업과 알루미늄 가치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 생산자가 투입하는 주요 원료(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외 베트남 생산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함

  - (도미니카공화국) 중국산 알루미늄 창틀 압출제품의 생산 가치가 전체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Air Master는 도**미니카공화국 내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완성품 가격 대비 중국산 창틀 압출제품의 가격 비중이 전체가격에서 최소 8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추정함

□ **추가 고려 요소**

○ 무역 흐름의 변화

- (베트남) 베트남의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수입과 베트남의 對미국 알루미늄 압출제품 수출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한 원 조사(original investigation) 요청 이후 급증**했다는 증거를 제출함

  · 중왕의 2017년 중간 재무보고서를 인용하며, 중왕의 '심층 가공 사업 매출량'이 2016년 동기 대비 80.7% 감소했는데, 이는 미·중 알루미늄 산업 무역 마찰 심화로 인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심층 가공 제품 판매량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함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UN COMTRADE 통계 등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문, 창문, 창틀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함

○ 특수관계 여부

- (베트남) **청원인은 중왕 직원들이 GVA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국에서 **중왕의 알루미늄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베트남 GVA로 배송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GVA의 베트남 수입 물량 대부분이 중왕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함

  · GVA의 일부 소유주는 Jacky Cheung으로, 중왕 계열사인 PCA/Perfectus 및 Alumincaste와 관련 있으며, GVA가 중왕의 미국 계열사인 PCA/Perfectus에 공급자 역할을 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미국 상무부(DOC)는 2011년 5월 26일 발령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Aluminum Extrusions)에 대한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과 관련하여, 베트남 경유 수출 사례를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에 해당하는 우회로 최종 판정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사례는 명령 범위 내 제품으로 판단되어 우회조사를 철회함

- 베트남 사례는 중국산 압출재 투입 → 제3국 단순 재가공·조립 → 對미 수출 급증이라는 패턴과 함께 제3국 가공의 경미성(투자/R&D/공정/생산범위/가공가치

비중), 중국산 투입재 비중, 무역흐름 변화, 특수관계 등이 우회 요건을 충족

- 도미니카공화국의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는 처음부터 명령 범위 내로 보아 우회 판단 자체가 불요

ㅇ 제품 동일성, 중국산 투입재 의존, 제3국 가공 경미성 등에 근거한 對미 수출 급증 등에 무게를 두고 최종 우회 판정함

- 제품 동일성 : 조사대상과 2011년 AD/CVD 명령 대상 '동일 종류(same class or kind)' 여부 중시
- 중국산 원재료 사용 : 중국산 원재료 투입을 통한 제3국 가공 여부, 공급망 연결성 검토
- 제3국 가공의 경미성 : ① 투자 수준(제3국 설비·라인·규모가 중국 내 핵심공정 대비 미미), ② R&D 수준(제3국은 재용해/재압출 등 저R&D 공정), ③ 공정의 본질(절단·조립 등 단순공정 중심), ④ 생산범위(제3국 생산설비·역할 제한), ⑤ 가공 부가가치 비중(제3국 VA 비중 극히 제한적)
- 추가 요소 : 무역흐름 변화(중국 비중↓ & 제3국 비중↑), 특수관계(계열·지배·인력 파견 등)

7) 알루미늄 포일[155)156)]

사례번호	A-570-053 / C-570-054	
조사 개시일	2022년 7월 11일 (상무부 직권 개시)	
최종판정	2023년 11월 17일	
조사 대상	한국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또는 시트 형태 중간재를 가공한 후 미국에 수출한 알루미늄 포일 제품	
조사 배경	2018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과 한국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이 동시에 급증함에 따라 상무부는 이를 기존 관세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 19 CFR §351.226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주요대상) 7607.11.3000, 7607.11.6000, 7607.11.9030, 7607.11.9060, 7607.11.9090, 7607.19.6000 (추가) 7606.11.3060, 7606.11.6000, 7606.12.3045, 7606.12.3055, 7606.12.3090, 7606.12.6000, 7606.91.3090, 7606.91.6080, 7606.92.3090, 7606.92.6080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수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수준이 사소하지 않다고 평가함. 이는 한국 생산기업들이 알루미늄 포일 생산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인력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 생산 기반을 구축해왔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임
	연구개발 수준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이 사소하지 않다고 판단함.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의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고객의 요구와 시장 변화에 부응하여 제품 특성을 개선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를 병행해왔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임
	생산공정	한국 내 알루미늄 포일 생산 공정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은 인정함. 다만, 해당 공정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알루미늄 원자재(중간재) 생산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단계로 평가함
	생산설비 규모	한국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시설이 사소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부가가치 (제3국)	상무부는 한국에서 수행된 가공이 최종 제품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중국산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것으로 평가함
결론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수준, 연구개발(R&D) 역량 및 시설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한국에서 수행한 생산 공정이 원재료 생산 공정보다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제한적이고, 해당 가공의 부가가치가 최종 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며, 중국산 원자재의 기여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우회한다고 결론 내림	

155) 본 문서에서는 '박'(poli) 대신 '포일(foil)'로 통일하여 표기

156) **(조사 개시)**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rea & Thailand)(July 12, 2022)(barcodes : 4262999).
(예비 판정)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March 22, 2023)(barcodes : 4354538),
(최종 판정 및 메모)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November 17, 2023)(barcodes : 4466289). and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Circumvention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17, 2023)

동 사례는 미국 상무부가 복수 국가(한국 및 태국)를 대상으로 우회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한국을 경유하는 공급망 구조와 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판정 결과만을 정리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대표)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알루미늄 포일	18.04.19	7607.11.6000	22.07.11	한국	최종긍정 판정 23.11.17
				태국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는 2018년 4월 19일부로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 반덤핑(A-570-053) 및 상계관세(C-570-054)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상무부는 명령 발효 이후, 한국의 對美 수출입 패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기존 명령을 회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판단함

- (한국산 포일의 對美 수출 급증) 중국산 반덤핑 명령 발효 이후 한국산 알루미늄 포일의 미국 수출액이 명령 발효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함
- 같은 기간, 한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및 시트(foil and sheet) 형태의 원자재 수입 역시 현저히 증가함

○ 상무부는 이러한 수출입 흐름을 한국이 중국산 중간재를 들여와 이를 최종 제품으로 가공한 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직권으로 우회조사를 개시함

[표 3-30]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의 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7.03.09	• (반덤핑 조사) 알루미늄협회 통상집행 실무그룹(The Aluminum Association Trade Enforcement Working Group)이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함
18.04.19	•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AD 및 CVD 명령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함
22.07.11	• (조사개시) 미국 상무부가 「1930년 관세법」 제781(b)조 및 19 CFR

157)	§351.226(b)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가공된 알루미늄 포일이 기존 AD 및 CVD 명령을 회피(circumvent)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우회조사를 자체적으로 개시함
23.03.22	• (예비판정) 상무부는 예비 판정에서, 한국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된 알루미늄 포일이 기존 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잠정 판단함
23.11.17	• (최종판정) 상무부는 최종 판정에서, 한국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된 알루미늄 포일이 기존 AD 및 CVD 명령을 우회한 것으로 확정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Korea), A-570-053, C-570-054, Doc No. 4466289-02, Federal Register, November 17, 2023.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본 우회조사의 대상 품목은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및/또는 시트(foil- and sheet-gauge products) 형태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가공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포일임

○ (기존 명령의 범위)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는 다음과 같음

[표 3-31] 명령의 범위

□ 물품 설명

○ 본 명령이 적용되는 상품은 두께가 0.2mm 이하이며, 폭과 관계없이 25파운드(약 11.34kg)를 초과하는 롤(reels) 형태의 알루미늄 포일임

○ 알루미늄 포일은 92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알루미늄 포일은 ASTM 규격 ASTM B479에 따라 제작될 수 있지만, 다른 규격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규격과 관계없이, 윤활유가 포일의 한 면 또는 양면에 도포된 알루미늄 포일을 포함하여, 위에 명시된 범위 설명을 충족하는 모든 알루미늄 포일은 범위에 포함됨

□ 제외되는 품목

○ 알루미늄 포일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종이, 판지, 플라스틱 또는 유사한 지지 재료(backing materials)가 뒷면에 보강된(backed with) 알루미늄 포일, 에칭된 콘덴서 포일(etched capacitor foil), 그리고 모양대로 잘라낸(cut to shape) 알루미늄 포일임

○ 명시된 공칭(nominal) 치수와 실제(actual) 치수가 다를 경우, 위에서 명시된 정의를 기준으로 공칭 치수 또는 실제 치수 중 하나라도 범위 내에 해당되면 해당 제품은 범위에 포함됨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157) 공식 공고일은 7월 18일(87 FR 42702)

ㅇ 동 물품은 대부분 7607.11.3000, 7607.11.6000, 7607.11.9030, 7607.11.9060, 7607.11.9090, 및 7607.19.6000으로 분류되고, 또한, 본 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품은 HTSUS 소호 7606.11.3060, 7606.11.6000, 7606.12.3045, 7606.12.3055, 7606.12.3090, 7606.12.6000, 7606.91.3090, 7606.91.6080, 7606.92.3090, 및 7606.92.6080으로도 미국에 반입될 수 있음 ㅇ 다만, HTSUS 소호는 참고 및 세관 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명령의 서면 범위 설명이 최종적 결정 기준임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 상무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포일이 기존 명령이 적용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과 동일한 종류(same class or kind)의 제품이라고 판단함
- 이는 해당 제품들이 기존 명령의 적용 범위에 명시된 물리적 특성을 충족하고,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조사 개시 이후 한국에서 수출된 제품들이 기존 명령에 기재된 HTSUS 번호로 미국에 수입된 사실에 기초함
- 또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에서 다수의 미국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품질, 제품 범위, 제품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하다고 평가한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함
- 상무부는 한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포일 또는 시트(sheet)를 원재료(inputs)로 사용하여 제조되었는 사실을 확인함
- 한국 업체들은 조사 기간(2017.4.1 ~ 2021.12.31) 동안 중국산 시트를 투입재로 사용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상무부(DOC)는 제3국 우회 결정의 5가지 기준 중 하나인 '투자 수준(Level of Investment)'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 왔음을 인정하며, 이는 '미미하거나 사소하지 않다(not minor or insignificant)'고 결론 내림

  · 상무부는 우회 결정을 내릴 때, 제3국의 시설을 기존 제재국인 중국의 통합 생산 설비*와 비교하는 비교 방법론(Comparative Methodology)을 사용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임

- 예를 들어, 철강 제품 관련 우회 조사에서는 종종 중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합 철강 공장과 제3국의 단순 가공 시설을 비교하여, 제3국의 투자는 그에 비해 미미하다고 결론 내림

  *** 통합 생산자란 원료 알루미늄을 용해·주조하여 반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다시 압연하여 최종 알루미늄 포일까지 모든 생산 단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중국 내 대규모 기업을 의미함**

- 하지만 이 사례에서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상당한 규모의 시설에 투자하고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우회 결정에 반하는 요소로 평가함. 이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의 설득력과 시설의 규모가 단순한 조립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하며, 상무부가 동-일 알루미늄(1989년 설립)과 롯데알루미늄(1968년 설립) 등 한국 기업들의 상당한 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 노력을 의미 있는 산업적 기반 구축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줌

- **(② 연구개발(R&D) 수준)** 미국 상무부는 제3국 우회 결정의 기준 중 하나인 R&D 활동 수준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R&D 역량을 보유하고 오랜 기간 산업에 참여하면서 신제품 개발과 공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함.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 내 조립·완성 과정에서의 R&D 활동을 단순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이 아닌 의미 있는(significant / not insignificant) 수준으로 판단함. 이는 투자 수준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우회 결정에 반하는 요소로 작용함

  - 청원인들은 한국 업체들의 R&D 투자가 중국의 대형 통합 생산자와 비교해 규모가 작고, 내용 또한 '일반적(generic)'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또한 일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 R&D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일반 사업 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국 기업들의 R&D 지출은 매우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함

  - 반면 한국 업체들은 단일 연도 재무제표만으로 R&D 투자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며, 한국 알루미늄 포일 제조 산업이 약 30~55년에 걸친 장기간의 R&D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아울러 누적된 연구개발 활동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무부는 최종적으로 이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 기업의 R&D 활동을 독립적인 생산 기반의 증거로 인정함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상무부는 제3국(한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공정의 성격을 우회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함. 다만 이는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네 가지 요소와 함께 총체적으로 고려된다고 강조함

  · 한국의 주요 알루미늄 포일 수출업체들은 주로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sheet) 또는 스트립(strip)을 수입하여, 이를 한국 내에서 압연(rolling) 및 후처리(finishing) 과정을 거쳐 최종 알루미늄 포일로 생산하는 구조임

    * 알루미늄 포일의 전형적인 제조는 ▲용해·정련(smelting & refining) ▲주조(casting) ▲압연(rolling)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은 주조(capacity to cast)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압연 이후 공정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압연) 알루미늄 포일 생산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반제품 형태의 알루미늄을 얇게 펴는 공정임. 예컨대 동일알루미늄(Dong-IL)은 알루미늄 스트립을 반복적으로 압연하여 두께를 줄이고 평탄도를 조절했으며, 초박형 포일의 경우 이중 압연(double rolling)을 수행함. 롯데알루미늄 역시 반복 압연을 통해 두께를 줄이고 치수를 유지함

    * (후처리) 압연 이후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기계적 특성(인장 강도(tensile strength), 연신율(elongation) 등)을 조절하기 위해 어닐링(annealing)을 실시하고, 이후 절단·세척·코팅 등 고객 사양에 맞춘 추가 공정을 수행함. 어닐링은 특히 초박형 포일 생산에서 중요한 단계로, 표면 품질 및 기계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후처리 공정임

  · (①물리적 형태 변화 vs. 화학적 변화 부재) 상무부는 한국 내 공정이 압연 및 후처리를 통해 두께·인장 강도·연신율 등 물리적·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정함. 그러나 이 과정은 알루미늄의 화학적 조성을 바꾸지 않으며, 용해·정련·주조와 같은 본질적 부가가치 창출 단계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내 가공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국한된다고 판단함

    * (②사례 인용) 상무부는 2012년 2월 8일 러시아산 『페로바나듐 및 질화 바나듐(Ferrovanadium and Nitrided Vanadium) 사건』을 인용함. 이 사례의 핵심은, 우회 여부를 판정할 때 단순히 부가가치율 계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산공정이 제품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임

*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질화(nitriding)’ 공정은 단순한 물리적 변형에 그치지 않고, 질소 존재 하에서 열처리되어 바나듐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는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을 수반하는 과정으로 확인됨. 상무부는 이러한 질화 공정이 제품의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 가공이 아닌 의미 있는 본질적 공정으로 인정함. 다만,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우회 판정을 내리지 않음(neg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 (비교) 이에 비해 한국 알루미늄 포일 사례에서는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압연과 후처리에 따른 변화는 물리적 특성에 국한됨. 상무부는 이 점을 근거로 한국 내 생산공정을 “경미한 수준의 가공(minor or insignificant processing)”으로 판정함

* (③ CBP의 ‘실질적 변형’과의 구분) 상무부는 CBP의 원산지 판정 기준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과 우회조사 기준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함. CBP의 실질적 변형 분석은 관세 목적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것인 반면, 상무부의 우회조사는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공정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두 분석의 목적과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함

- **(④ 생산시설의 규모)** 상무부는 동일알루미늄과 롯데알루미늄이 한국 내에 상당한 생산설비(substantial production facilities)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

* (청원인 주장) 한편 청원인들은 한국 내 생산설비가 중국의 통합 알루미늄 생산업체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주장함. 특히 한국 공장의 물리적 규모나 연간 생산량은 중국 통합 알루미늄업체에 비해 현저히 작으므로, 한국의 생산설비는 제한적이며 본질적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박 의견)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수십 년간 생산설비·장비·자동화 라인 및 연구개발(R&D)에 지속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해왔음을 강조함. 이러한 투자를 통해 한국의 알루미늄 포일 산업은 단순 조립이나 소규모 가공을 넘어 독자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반박함

* 즉, 상무부는 청원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알루미늄과 롯데알루미늄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고용 규모를 고려하여 한국 내 생산설비가 단순하거나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함

- **(⑤ 부가가치 비중)** 상무부는 한국에서 수행된 가공이 최종 알루미늄 포일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높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 (① 생산 설비의 제한성) 상무부는 한국 알루미늄 포일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압연(rolling) 설비만 보유하고 있고, 알루미늄 생산의 초기 단계인 용융(melting)·주조(casting) 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한국 내 가공은 압연과 마감 공정에 국한되며, 최종 제품 가치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 (② 높은 원자재 의존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vestigation Nos. 701-TA-570 and 731-TA-1346 (Preliminary), USITC Publication 4684, May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 비용이 총 매출원가(COGS)의 약 6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알루미늄이 포일 생산의 핵심 투입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산 원자재가 최종 제품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이 확인됨

  * 따라서 상무부는 한국 내 압연 및 마감 공정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미미하며, 최종 제품의 가치는 대부분 중국산 원자재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지었음

□ **추가 고려 요소**

○ (무역 패턴의 변화) 상무부는 2017년 3월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 개시를 기준으로 무역 흐름을 분석함. 그 결과, 명령 발효 이전(조사 개시 이전, 2012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과 명령 발효 이후(=조사 개시 이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은 약 66.2% 감소한 반면, 한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은 약 97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무역 패턴의 변화는 기존의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구조가 중국산 중간재가 한국에서 가공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로 전환됨을 보여주며, 이는 우회 행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근거로 해석됨

○ (원자재 수입 여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국 알루미늄 시트(sheet)와 포일(foil) 수입액도 각각 약 83.4%와 91.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158]. 상무부는 이러한

158) 이 수입 데이터는 HTSUS 7606.11에 해당하는 제품, 즉 두께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판·시트·스트립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한 것임. 다만, HTSUS 7606.11에 포함된 제품 중에서도 두께 0.250인치(약 6.35mm) 이상

중국산 시트와 포일이 최종 완제품이 아니라 알루미늄 포일 생산의 핵심 투입재로 사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수입 급증을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함

ㅇ (특수관계 여부) 상무부는 한국 알루미늄 포일 생산업체(동일, 롯데 등)와 중국 원재료 공급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한국 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중국뿐 아니라 국내 및 제3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음

□ **우회조사 판정 결과**

ㅇ 미국 상무부는 한국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을 원재료로 사용해 생산된 알루미늄 포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 회피 여부를 조사함

ㅇ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수준, 연구개발 수준 및 생산 설비 규모는 사소하지 않다고 보았음. 그러나 ▲생산공정의 성격, ▲한국 내 가공의 부가가치 비중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요소로 평가함

ㅇ 특히 한국 내에서 추가된 가공의 가치가 최종 수입 제품 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판단하여, 이는 우회를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함

ㅇ 결과적으로 상무부는 한국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된 알루미늄 포일 수입이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AD·CVD 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최종 판정함

- 동 사례에서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 연구개발 수준, 생산설비 규모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였으나, 이들 요소보다도 생산공정의 본질적 성격과 부가가치가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최종적으로 우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림

의 알루미늄 판(plate)으로 생산된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됨

8)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159]

사례번호	A-570-095 / C-570-096	
개시일	2023년 10월 19일	
최종판정	2025년 1월 17일	
조사 대상	중국산 중간재(알루미늄 봉, 알루미늄 잉곳, 알루미늄 연선 와이어)를 한국에서 추가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AWC 제품	
조사 배경	미국 상무부는 2019년 12월 중국산 AWC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발령함. 이후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은 급감한 반면 한국산 수출은 뚜렷하게 증가하여, 상무부는 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2023년 10월 19일 한국산 AWC가 중국산 명령을 회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우회조사 및 범위조사를 개시함	
적용 법령	미국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781(b)(third-country circumvention)	
HS code	8544.49.9000 (기타 전기전선/케이블류), 8544.42.9090 등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수준	부산케이블의 한국 내 투자 규모(약 330만 달러 상당의 설비)는 중국 모기업 Hebei Huatong(약 4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 및 중국 내 주요 AWC 생산업체들(1,460만~4,400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음. 상무부는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케이블의 한국 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경미한 수준(minor)이라고 평가함
	연구개발 수준	부산케이블의 연구개발 활동은 제한적이며, 주요 설계 및 기술적 의사결정은 중국 모기업 Hebei Huatong(연간 약 300만 달러 R&D 비용)에서 이루어짐. 부산케이블의 R&D 활동 내역은 영업비밀(BPI)로 분류되어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음. 상무부는 부산케이블의 한국 내 R&D 지출이 중국 주요 기업들에 비해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minor or insignificant)이라고 판단함
	생산공정	상무부는 USITC 보고서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AWC 생산공정(9단계)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함. 부산케이블이 한국 내에서 절연(insulation), 연선(stranding) 등 AWC 생산 과정의 핵심 제조 단계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함.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가공 공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 및 R&D 수준 등 다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회로 최종 판정함
	생산설비 규모	부산케이블의 한국 내 생산시설은 중국 내 주요 업체들(45,000~60,000㎡ 규모, 100~500명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생산능력이 제한적임. 그러나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실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함. 상무부는 법 제781조(b)(2)(D)항 기준상 '사소하거나 미미하지 않은(not minor or insignificant) 수준'으로 평가함
	제3국 가공의 부가가치	상무부는 대체값(surrogate value)을 적용하여 한국 내 부가가치를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의 부가가치는 전체 상품 가치의 40% 미만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함. 반면, 부산케이블이 2022년 8월 이전 중국에서 조달한 AWC 투입재의 가치는 최종 제품 총가치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상품 총가치의 상당 부분(significant portion)'으로 평가됨
결론	부산케이블이 실질적 가공 공정을 수행하고 일정 규모의 독립적 시설을 보유하나, 중국산 투입재 비중(85% 이상), 제한적 투자·R&D, 급격한 무역패턴 변화(한국→미국 수입 862% 증가) 등을 종합하여 우회로 최종 판정됨. 부산케이블은 2022년 8월 이후 중국산 중간재 사용을 중단하였으며(2024년 9월 현지검증 확인), 향후 비중국산 소재 사용 시 인증(certification)을 통해 관세 면제 가능	

- 본 우회조사 사례는 캄보디아, 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병행하여 진행됨. 다만, 본 문서에서는 실무적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국, 특히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Pusan Cables & Engineering Co., Ltd.)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함
- 미국 상무부는 한국 소재 기업 전체를 일괄적으로 우회 주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중국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및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를 중심으로 선별적 판단을 수행함
- 이에 이하에서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Pusan Cables & Engineering Co., Ltd.)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우회조사 경과 및 최종판정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룸
- 우회판정을 받은 부산케이블은 2022년 8월 이후 중국산 중간재 구매를 중단하였으며, 이는 2024년 9월 현지검증에서 확인됨. 이에 따라 부산케이블은 향후 비중국산 소재 사용 시 인증(certification)을 통해 관세 면제가 가능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A-570-095	8544.49.9000	2023.10.19	한국	2025.01.17 (25.1.23.)
				베트남	
				캄보디아	24.12.16. (부정 판정)

□ 조사 배경[160]

○ 미국 상무부는 2019년 12월 23일, 중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luminum Wire and Cable, AWC)에 대해 반덤핑(A-570-095) 및 상계관세(C-570-096) 명령을 발령함. 이후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은 급감한 반면, 한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의 수출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상무부는 이와 같은 수출입 구조의 변화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된 제품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 한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이 중국산 명령을 회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우회조사 및 범위조사를 개시함

159) **(조사 개시)**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Scope and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f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October 19, 2023)
(예비 판정)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Preliminary Neg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Cambodia(July 13, 2024)
(최종 판정)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Final Neg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Cambodia(January 17, 2025)(4701028-01)

160)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Decision Memorandum for the Scope Inquiry and Preliminary Decision Memorandum for the Circumvention Inquiry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2024년 7월 31일, 4607344-02

○ 범위조사 결과, 한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은 중국산 명령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제품은 중국산 명령을 우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됨

○ 본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한국 업체들은 상무부의 정보 제출 요청에 기한 내 대응하지 않아,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가 적용됨

[표 3-32] 중국산 알루미늄의 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9.12.23	• 미국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AWC)에 대해 반덤핑 명령(A-570-095) 및 상계관세 명령(C-570-096) 발령
23.10.19	• (조사 개시) 미국 상무부, 중국산 AWC 부품을 사용하여 한국[161](이외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에서 조립·완성된 제품이 기존 AD/CVD 명령을 회피하는지 여부에 대한 범위(scope) 및 우회(circumvention) 조사를 직권(Self-initiation)으로 개시
24.07.31	• 조사 후 예비 판정 - 범위판정 : 한국에서 완성된 제품은 기존 명령의 범위(scope)에 포함되지 않음 - 우회판정 :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높고 한국 내 가공이 경미하여 명령을 우회한 것으로 잠정 결정
24.9.16.~19.	• (현지검증 실시) 상무부가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Pusan)에 대한 현지 검증(Verification)을 실시함 → 해당 업체가 예비판정(2024.7.31.) 이후부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음 확인
25.1.17.	• 예비판정의 우회판정을 유지하되, 부산이 중국산 투입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검증 결과로 확인 • 이에 비중국산 소재 사용 시 AD/CVD 면제 결정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Final Neg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Cambodia, 90 FR 4066 (January 17, 2025). (문서번호 4701028-01)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중국산 중간재(연선 또는 미완성 케이블)를 한국에서 추가 가공·조립하여 완성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 중국산 중간재: 알루미늄 봉(aluminum rod), 알루미늄 잉곳(aluminum ingot), 알루미늄 연선 와이어(stranded aluminum wire)

- 한국 내 가공: 연선(stranding), 절연(insulation) 등의 공정

○ (기존 명령의 범위)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61) 동일 사안에 대해 베트남·캄보디아도 병행 개시

[표 3-3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로, 이는 8000 시리즈 알루미늄 합금(ASTM B800 에 따라 정의), 알루미늄 합금 1350 (ASTM B230/B230M 또는 B609/B609M 에 따라 정의), 및/또는 알루미늄 합금 6201 (ASTM B398/B398M 에 따라 정의)으로 만들어진 하나 이상의 전기 전도체로 구성된 조립체임

□ 조건

○ 전기 전도체 중 최소 하나는 절연되어 있어야 하며, 각 절연된 전기 전도체는 정격 전압(voltage rating)이 80볼트를 초과하고 1000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전기 전도체 중 최소 하나는 연선으로 되어있어야하며(stranded), 크기가 16.5천 순환 밀(kcmil) 이상이고 1000 kcmil 이하여야 함

□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접지 또는 중성 도체, 알루미늄, 강철 또는 기타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으로 피복된 것, 강철 지지 중앙선, 하나 이상의 커넥터 (connector), 테이프 차폐재(tape shield), 재킷 또는 기타 덮개, 그리고/또는 충전재(filler materials)

○ 대부분의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 제품은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유형인 THHN, THWN, THWN-2, XHHW-2, USE, USE-2, RHH, RHW, 또는 RHW-2를 준수하며, 또한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표준인 UL-44, UL-83, UL-758, UL-854, UL-1063, UL-1277, UL-1569, UL-1581, 또는 UL-4703을 준수하지만, 이러한 준수 여부는 해당 품목이 범위에 포함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님

○ 명령의 적용 범위에서 6피트 미만의 길이를 가진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 제품은 명확히 제외됨. 수입 시점에 이미 조립된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음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 현재 제8544.49.9000호에 분류되며, 일부 제품은 HTSUS 8544.42.9090 소호로도 통관될 수 있음

○ 다만, HTSUS 소호는 참고 및 세관 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명령의 서면 범위 설명이 최종적 결정 기준임

□ 우회조사 판정 내용

○ 미국 상무부는 제3국에서 이루어진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는지 판단할 때, 「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6」에 따라 다섯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이 과정에서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사례별로 정성적·정량

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함

○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 상무부는 한국에서 생산·수출된 알루미늄 전선이 기존 명령 대상과 동일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이 한국에서 제조한 AWC는 중국에서 공급받은 원자재(inputs)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은 기존 명령의 물리적 설명(physical description)에 부합하는 AWC의 물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물리적 특성의 부합성이 해당 상품이 기존 명령 대상 상품과 동일한 종류라는 판단의 근거가 됨

- 아울러 기존 명령의 범위와 일치하는 품목 전체의 미국 수출입 데이터도 제출함

○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해당 업체는 2019년 8월 한국에서 AWC 제조를 시작했으며, 2022년 8월까지 중국에서 조달된 AWC 중간재를 생산에 사용했다고 보고함

- 사용된 중국산 중간재에는 알루미늄 봉(aluminum rod), 알루미늄 잉곳(aluminum ingot), 알루미늄 연선 와이어(stranded aluminum wire) 등이 포함됨

- 동 물품의 우회조사 기간[162](2018년 11월 1일~2023년 9월 30일) 동안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주로 중국산 AWC 투입재를 사용하여 AWC를 생산하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미국 상무부는 관세법 §781(b)(2)(A)에 따라 한국 내 투자 수준을 검토하여,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의 조립·완성 공정이 경미한지 여부를 평가함

  · 상무부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aluminum wire and cable) 생산업체들의 투자 규모와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함

162) 조사기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시작 시점(2018년 11월 1일): 이는 중국산 AWC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underlying AD 및 CVD investigations)가 개시된 시점(2018년 10월 18일)의 다음 달부터임. ② 종료 시점(2023년 9월 30일): 이는 본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가 개시된 시점(2023년 10월 19일)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임

- 주요 비교 대상 기업으로는 Luoyang Sanwu Cable Co., Ltd.(자본금 약 1,460만 달러)
- Shaanxi Liangdingrui Metal New Materials Co., Ltd.(약 4,400만 달러 투자, 연간 생산능력 8만 톤)
- Changfeng Cable Co., Ltd.(설비 및 기술에 약 1,200만 달러 투자, 연간 약 7억5천만 달러 규모의 생산능력 보유)
- 특히 부산케이블의 중국 모기업인 Hebei Huatong Wires and Cables Group Ltd.는 약 4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케이블은 Hebei Huatong으로부터 약 330만 달러 상당의 케이블 제조 설비를 도입함
- 상무부는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케이블의 한국 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경미한 수준(minor)이라고 평가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상무부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의 연구개발 수준이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함
  - 상무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은 제한적이며, 주요 설계 및 기술적 의사결정은 중국 모기업 Hebei Huatong Wires and Cables Group Ltd.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함
  - 모 회사인 Hebei Huatong은 연간 약 300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을 보고함. 한편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일부 연구개발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과 관련 지출 내역은 영업비밀(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PI)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음
  - 이러한 비교 결과, 상무부는 조사기간 동안 P사의 한국 내 R&D 지출이 중국 주요 기업들에 비해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관세법 §781(b)(2)(B) 기준상 우회 판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예비 판정함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상무부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이 AWC의 특정 현장 생산공정을 영업비밀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USITC의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China」 보고서(2019년 12월)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AWC 생산공정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함**[163]

163)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China, Investigation Nos. 701-TA-611 and 731-TA-1428 (Final), Publication 5001," dated December 2019 (USITC Aluminum Wire and Cable Report) at

-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자사의 생산공정을 영업비밀(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PI)로 제출하였으며, 상무부는 위 USITC 보고서상의 일반적 공정을 비교 기준(reference framework)으로 활용하여 해당 업체의 의 실제 생산활동이 어느 범위의 제조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함
- USITC 보고서에 따르면, AWC는 일반적으로 9단계 공정을 거쳐 생산됨
- 상무부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이 한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제조 단계(절연, 연선, 기타 AWC 생산 과정의 실질적 가공 공정)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함
-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가공 공정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투자 규모 및 R&D 수준 등 다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회로 최종 판정함

[표 3-34]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의 제조공정

단계	공정명 (영문)	주요 내용 및 설명
①	원자재 투입(Raw Material Input)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선재(aluminum wire rod)를 준비함
②	인발(Drawing)	알루미늄 선재를 다이(die)를 통해 가늘게 인발하여 여러 가닥의 스트랜드(strand)를 형성함
③	어닐링(Annealing)	인발된 스트랜드를 열처리(annealing)하여 연성(ductility)을 회복 시킴
④	연선(Stranding)	여러 가닥의 스트랜드를 하나로 꼬아 도체(conductor)를 형성함
⑤	절연(Insulation)	완성된 도체 위에 절연체(insulation)를 적용함
⑥	케이블링(Cabling)	절연된 두 개 이상의 도체를 함께 꼬아 케이블 구조를 형성함
⑦	장갑(Armoring)	케이블 외부에 보호용 금속 또는 기타 장갑층(armoring layer)을 덧씌움
⑧	재킷팅(Jacketing)	케이블 최외곽에 외피(jacket)를 덮어 추가 절연 및 보호 기능을 부여함
⑨	시험 및 포장 (Testing & Packaging)	완성된 케이블의 성능을 시험(test)하고 포장(packaging)하여 출하함

자료 : USITC Aluminum Wire and Cable Report (2019), at I-13-I-14

- **(④ 생산시설의 규모)** 상무부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의 한국 내 생산시설 규모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생산능력이 제한적임을 확인함. 다만 일정 규모의 독립적인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소하거나 미미하지 않다(not minor or insignificant)고 평가함
  -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생산시설 규모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영업비밀로 제출하였고, 상무부는 해당 자료를 예비분석메모에서 별도로 검토함
  - 시설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중국 내 주요 AWC 생산업체와 비교함
  - Shaanxi Liangdingrui Metal: 약 45,000㎡ 규모의 공장, 주조·압연라인 및 어닐링·에이징 퍼니스 보유, 100~200명 고용

I-13 - I-14.

- Sino East Group: 약 60,000㎡ 규모의 공장, 합금 알루미늄봉 등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 생산
- Tianjin Jinhe Double Metal Wire: 알루미늄 전선용 선재 및 알루미늄 봉 생산, 100~500명 고용
- 상무부는 부산케이블의 한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의 대형 통합생산업체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생산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실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781조(b)(2)(D)항」 기준상 '사소하거나 미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함

- **(⑤ 부가가치 비중)** 미국 상무부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공 활동의 가치(부가가치)가 미국 수입품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해당 가공이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minor or insignificant)' 수준인지 판단함
  - 상무부는 중국을 비시장경제국(NME)으로 간주하고, 대체값(surrogate value)을 적용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평가함(평가 항목: 중국산이 아닌 자재 투입비, 인건비, 고정 및 변동 간접비, 판매·일반·관리비(SG&A), 이자비용 등)
  - 분석 결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의 부가가치는 전체 상품 가치의 4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상무부는 해당 가공 활동이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의 총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함
  - 반면, 부산케이블이 2022년 8월 이전 중국에서 조달하여 AWC 생산에 사용한 투입재의 가치는 미국으로 수출된 최종 제품 총가치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상무부는 이를 "상품 총가치의 상당 부분(significant portion)"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예비판정(2024.7.31) 및 최종판정(2025.1.17)에서 모두 유지됨
  - 결론적으로, 한국 내 가공 부가가치(40% 미만)는 경미한 수준인 반면, 중국산 투입재 가치(85% 이상)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됨

□ **추가 고려 요소**

○ (무역 패턴의 변화) 상무부는 명령 조사 개시 전 기간(2014년 5월~2018년 9월)과 개시 후 기간(2018년 10월~2023년 3월)의 무역 데이터를 비교하여 무역패턴 변화에 주목함

-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급격한 무역 흐름 변화가 확인됨:
  - 미국의 중국산 AWC 수입: 73.7% 감소
  - 미국의 한국산 AWC 수입: 862.42% 증가
  - 한국의 중국산 AWC 투입재(연선 및 비도금 케이블) 수입: 1,598.6% 급증
- 상무부는 이러한 무역패턴 변화가 우회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한다고 판단함

[표 3-35] 무역 패턴 변화에 따른 우회 가능성 분석

무역 흐름	비교 결과	판단 근거
중국→미국 (AWC 최종 제품 수입량)	73.7%(감소)	중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효과로, AWC의 미국 수입량이 감소
한국→미국 (AWC 최종 제품 수입량)	862.42%(증가)	같은 기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이 급격히 증가
중국→한국 (연선 및 비도금 케이블 투입재 수입량)	1,598.6%(급증)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연선 및 비도금 케이블(stranded wire and uncoated cable) 투입재의 수입량이 동시에 급증

ㅇ (특수관계 여부) 미국 상무부(DOC)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과 중국의 Hebei Huatong Wires and Cables Group Ltd.(Hebei Huatong) 간에 계열사 관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양 사는 특수관계(affili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Hebei Huatong은 과거 미국의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조사에서 주요 조사대상 업체 중 하나였으며, 현재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우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함
-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양 사 간에 실질적인 공급 및 투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함
- 부산케이블이 Hebei Huatong으로부터 케이블 제조 장비를 구매
- AWC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설비가 해당 중국 계열사로부터 공급됨
- 이러한 정황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함

ㅇ (원자재 수입 여부)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조사 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의 생산에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음. 다만, 예비판정 이후 중국산 투입재 구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출된 영업비밀(BPI)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투입재의 구매량은 2022년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그러나 구매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가 본 우회 조사 기간 동안 여전히 중국산 투입재에 의존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무부의 우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ㅇ 미국 상무부는 「관세법(19 U.S.C.) §781(b)」에 따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Pusan Cables & Engineering Co., Ltd.)이 한국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Aluminum Wire and Cable, AWC)이 기존 중국산 명령(A-570-095/C-570-096)을 우회(circumvent)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ㅇ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우회 증거가 확인됨:

- 한국 내 가공 부가가치는 완제품 총 가치의 40% 미만으로 경미한 수준인 반면, 중국산 투입재의 가치는 85% 이상을 차지함
- 한국→미국 AWC 수입이 2018년 이후 862% 증가하고, 중국→한국 중간재(연선·비도금 케이블) 수입이 급격히 확대됨
- 부산케이블은 중국의 허베이 화통(Hebei Huatong Wires and Cables Group Ltd.)과 계열관계(affiliation)에 있으며, 해당 중국 계열사로부터 원자재 및 제조설비를 조달함
- 부산케이블이 한국 내에서 절연, 연선 등 실질적인 제조 공정을 수행하고 일정 규모의 독립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위 사실들이 중국산 AWC가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적 흐름을 보여주며, 한국 내 가공활동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수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상무부는 「법 제781조(b)(1)(D)항 및 (E)항」에 따라, 부산케이블의 생산·수출 행위가 기존 중국산 AWC 명령을 우회(circumvention)한다고 최종 판정함
- 이에 따라 부산케이블은 우회 판정을 받았으나, 2022년 8월 이후 중국산 투입재 구매 중단이 확인되어 향후 비중국산 소재 사용 시 인증(certification)을 통해 관세 면제 가능

9) 다이아몬트 톱날 및 그 부분품[164]

사례번호	A-570-900	
조사 개시일	2017년 12월 07일	
최종판정	2019년 07월 10일	
조사 대상	태국내 기업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 코어 및 세그먼트를 수입하여 결합한 후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sawblades) 제품으로 완성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	
조사 배경	2009년 11월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 명령 발효 후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의 제3국 우회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아몬드 톱날 제조업체 연합(Diamond Sawblades Manufacturers' Coalition)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상무부에 우회 조사를 요청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 19 CFR §351.225(h)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제8502호~제8206호 + 8202.39.0040, 8202.39.0070, 6804.21.0010, 6804.21.0080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수준	제3국내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의 결합 및 레이저 용접을 넘어서는 활동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투자가 거의 없다고 판단함
	연구개발 수준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톱날 제작에 적용되는 결합 공정 및 레이저 용접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 생산에 필요한 공정 대비 정교함이 낮아 투자가 미미하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함
	생산공정	상무부는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 결합과정을 세그먼트(Segments) 생산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생산과정에서 극히 미미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생산설비 규모	2009년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 명령이 부과되기 전까지 태국의 對미 다이아몬드 톱날 수출 비중이 미미하였으나, 반덤핑 명령 이후 對미 수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수출액 대비 태국내 생산시설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
	제3국 가공의 부가가치	미국으로 수입되는 다이아몬드 톱날 생산 전체 비용중 태국내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의 결합을 위한 비용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므로, 부가가치 비중도 매우 미미함
결론	중국산 핵심 투입재 + 제3국 단순조립 + 對미 수출 급증이라는 전형적 우회 패턴과 더불어, 원재료 가치비중과 공정의 경미성, 무역패턴 변화, 특수관계를 종합평가하여 우회로 판정하였으며, ITC가 일몰 재심을 통해 명령을 연장함으로써 반덤핑(AD) 집행을 강화한 사례임	

164) **(조사개시)**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December 7, 2017)(barcodes : 2017-26398)
(예비판정) C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November 15, 2018)(barcodes : 2018-24939)
(최종판정)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Determin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July 16, 2019)(barcodes : 2019-15084)

본 사례는 미국 상무부가 2009년에 부과한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 명령을 우회한 제3국(태국)을 거쳐 우회한 것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다이아몬드 톱날 및 부분품	A-570-900	8202.39.00.00	2017.12.01.	태국	우회판정(최종) (19.07.10)

□ 조사 배경

○ 2009년 11월 4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이하 'AD') 명령을 부과함

○ 2017년 12월 1일, 미 상무부는 다이아몬드 톱날 제조업체 연합(Diamond Sawblades Manufacturers' Coalition, 이하 '청원인') 요청에 따라 「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h)」에 근거하여,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 및 부분품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AD) 관세 명령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실시함

- 중국산 코어(cores)와 세그먼트(segments)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톱날을 태국 Diamond Tools Technology(Thailand), Co., Ltd.(이하 '태국 수출자')가 다이아몬드 톱날로 제작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명령을 우회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함

○ 2019년 7월, 청원인 요청에 따른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 및 부분품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AD) 관세 명령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 결과, 해당 명령을 태국을 거쳐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함

○ 2020년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2009년에 시행한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 명령 일몰을 검토하였으나, 중국의 덤핑 지속 및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반덤핑 명령에 따른 손실 규모를 산정함

○ 2021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 명령 일몰 시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반덤핑 명령 연장을 결정함

[표 3-36]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의 반덤핑 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09.11.04	• 상무부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 명령을 공표함
17.08.09	• 청원인은 중국산 다이아몬드 코어(cores)와 세그먼트(segments)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톱날을 태국 기업이 태국 내에서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상무부에 우회 조사(circumvention ruling)를 요청하였으며, 조사 대상으로 Diamond Tools Technology(Diamond Tools), Bosun Tools(Bosun), Diamon Tools(Kingthai) 3개 회사를 지목함
17.09.22	• Bosun Tools(Bosun China)와 그 계열사인 Bosun Tools(Bosun Thailand)는 상무부에 중국에서 제작된 코어와 세그먼트를 단순히 결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17.12.07.	• 미 상무부는 태국 수출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다이아몬드 코어(cores)와 세그먼트(segments)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톱날을 태국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따라,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명령에 대한 우회 조사 실시
18.11.15	• 상무부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 명령 우회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함
19.07.10	• 상무부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 명령 우회에 관한 최종 긍정 판정함
20.08.03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개정된 관세법 제751조 (c)에 따라 반덤핑 명령의 일몰 검토를 시작하였으나, 반덤핑 명령의 일몰이 중국의 덤핑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 상무부는 관세법 제751조 (c)(1)항 및 제752조 (c)항에 따라 명령 취소가 덤핑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752조 (c)(3)항에 따라 해당 명령이 취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산정하여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보함
21.04.02	•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관세법 제751조(c)항 및 제752조(a)항에 따라 반덤핑 명령을 철회하면 미국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해당명령이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도록 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inuation of Antidumping Duty Order, A-570-900, 04/12/201=21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코어와 세그먼트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톱날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

○ (기존 명령의 범위) 기존 반덤핑 명령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37]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적용 대상

- **완제품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circular sawblades) 전체로, 슬롯(slot)이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작동부(working part)가 다이아몬드 세그먼트(diamond segment)[165] 또는 다수의 세그먼트(segments)로 이루어진 제품, 그리고 부품 전체를 포함하는데, 사이즈나 스펙(specification)에 관계없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를 제외함**
- **다이아몬드 톱날 코어(diamond sawblade cores) 및 다이아몬드 톱날 세그먼트(diamond sawblade segments)를 포함하는 반제품(semi-finished) 다이아몬드 톱날도 포함**
  - 다이아몬드 톱날 코어(diamond sawblade core)는 원형 철강판(circular steel plates)이고, 슬롯이 있으며, 비강재(non-steel) 판에 부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주로 합금강(alloy steel)으로 제조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다이아몬드 톱날 세그먼트(diamond sawblade segment)는 다이아몬드 혼합물(천연 또는 합성 여부, 다이아몬드의 양과 무관) 및 금속 분말(철, 코발트, 니켈, 텅스텐 카바이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혼합하여 고체 형태로 성형한 것임(고체 형태 가공 시, 일반적으로 가열 및 압축(Heating and pressing) 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HTSUS 제8202호에서 제8205호까지 별도로 분류된 제품이 소매용 세트와 같이 포장될 경우 다이아몬드 톱날(sawblades) 또는 부품(parts)은 HTSUS 제8202.39.00.00호에 따라 수입될 수 있음**
- **2011년 10월 11일 상무부는 미 CBP 요청에 따라 세관 사건 기준 파일에 HTSUS 제6804.21.00.00호를 포함하였음**
- **이후 2015년 1월에 CBP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HTSUS 8202.39.004, 8202.39.0070, 6804.21.0010, 6804.21.0080을 추가함**

□ 제외 품목

- **다이아몬드 세그먼트(diamond segment)를 포함하지 않되, 다이아몬드를 수지(resin)나 전기도금 결합(electroplated bond)을 이용하여 코어(core)에 직접 부착한 다이아몬드 톱날(sawblade)**
- **두께가 0.025인치 미만 또는 1.1인치를 초과하는 다이아몬트 톱날(diamond sawblades) 및/또는 톱날 심(sawblade cores)**
- **非다이아몬드 소재(non-diamond material)의 절삭날(Cutting edge)로 구성된 원형 강판(circular steel plates)으로, 외부 톱니(external teeth)가 원형 강판(circular steel plates) 외경에 돌출됨**
- **록웰 C 경도(Rockwell C hardness)가 25 미만인 다이아몬드 톱날 코어**
- **망사(mesh) 사이즈 번호가 240을 초과하는(250 또는 260) 다이아몬드가 있는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sawblades) 및/또는 다이아몬드 세그먼트(diamond segments)**

165) 절단, 연삭, 천공 등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구성된 절삭 공구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청원인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무부는 태국에서 중국산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와 결합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미국으로 수입되기 전에 소규모의 용접작업과 소규모의 가공(minor welding operation and minor processing)만 거친다고 판단함

- 청원인은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를 생산하는 중국 생산자들로 Bosun Tools Co., Ltd., Hebei Jikai Group, Wuhan Wanbang Laser Diamond Tools Co., Ltd. 3곳을 특정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무부는 태국에서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의 결합 및 레이저 용접을 넘어서는 생산 활동에 대해 유의미한 수준의 투자가 거의 없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따라 태국 내 투자 수준이 미미하다고 판단함

  · 태국 내 다이아몬드 톱날 생산 시설은 레이저 용접을 위한 장비외 세그먼트(segments)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정교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세그먼트(segments) 생산 시 저울, 혼합 장비, 냉간 성형 장비, 소결 프레스[166], 반경 연삭 장비[167] 등과 같은 설비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만[168],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를 결합하는 데 필요한 자본 투자는 레이저 용접 장비 한 대에 국한된다고 주장함

166) 분말재료를 녹이지 않고 덩어리로 결합하는 소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
167) 공작물의 원형(반경)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한 연삭기(고속으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을 이용해 가공물 표면을 소량씩 깎아내는 기계
168) 세그먼트 생산에 사용되는 유도 프레스(induction presses)와 저항 프레스(resistance presses)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됨
- 유도 프레스 : 유도 가열 기술(Induction heating)과 프레스(Press) 기술을 결합하여 재료에 압력과 열을 동시에 가하는 장비
- 저항 프레스 : 전기 저항을 이용해 금속을 가열하거나 접합하는 프레스 기계로, 저항 용접의 원리를 응용한 장비이며, 압력과 전류를 동시에 이용하여 금속 부품을 결합하거나 성형하는 공정에 사용함

[표 3-38] 세그먼트 생산 vs 코어 & 세그먼트 결합 비교

세그먼트 생산

&

코어 & 세그먼트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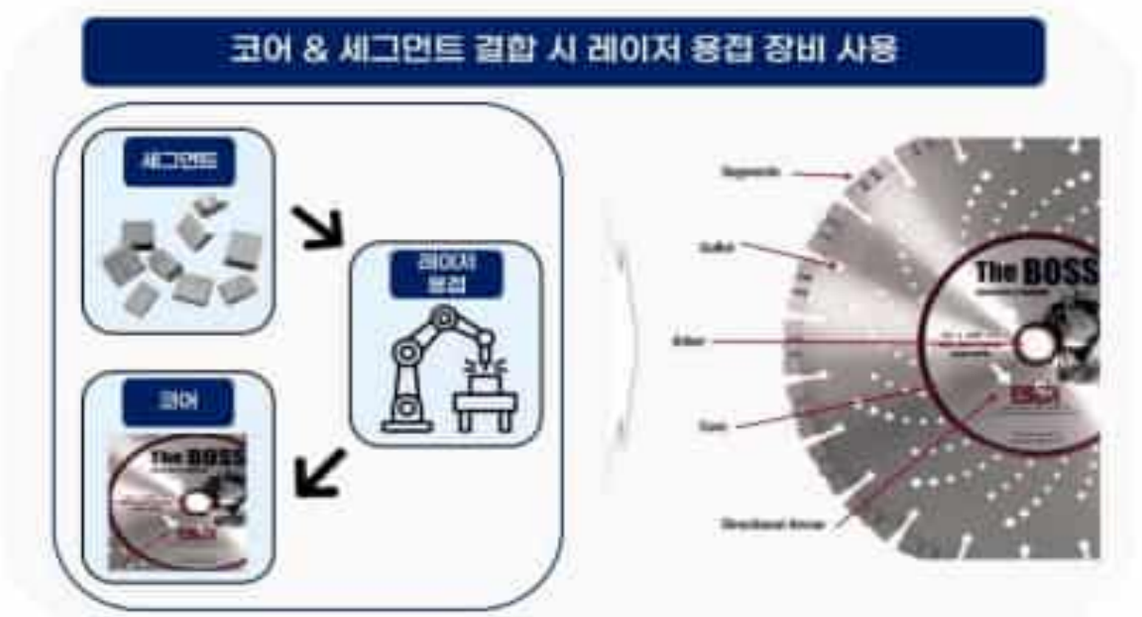

자료 : Flaticon, 다나와(danawa.com), eschsupply

- 그 외 완성된 다이아몬드 톱날 세그먼트(segments) 생산비용은 다이아몬드 톱날 전체 생산비용에서 70%를 차지하는 반면, 코어(cores)와 세그먼트(segments) 결합 비용은 전체 생산 비용의 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톱날 제작에 적용되는 결합 공정 및 레이저 용접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코어 및 세그먼트 생산에 필요한 공정 대비 정교함이 낮아 투자가 미미하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함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상무부는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 결합과정을 세그먼트(segments) 생산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생산과정에서 극히 미미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따라 그 공정이 미미하다고 판단함

  · 레이저 용접은 사실상 키보드만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이면 충분한 고도의 자동화 공정이라고 판단함

- **(④ 생산시설의 규모)** 2009년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대한 반덤핑(AD) 명령이 부과되기 전까지 태국의 對미 다이아몬드 톱날 수출 비중이 미미하였으나, 반덤핑 명령 이후 對미 수출액[169]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수출액 대비 태국내 생산시설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

- **(⑤ 부가가치 비중)**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다이아몬드 톱날 생산 전체 비용 중 태국내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의 결합을 위한 비용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나, 다이아몬드 톱날 세그먼트(segments)는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총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다이아몬드 톱날 생산 전체 비용중 태국내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의 결합 비용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므로, 부가가치 비중도 매우 미미함

□ **추가 고려 요소**

○ (무역 흐름의 변화)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반덤핑 명령이후 무역패턴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함

- 청원인은 다이아몬드 톱날의 태국발 미국 수입이 2005년 USD 40만 에서 2009년 반덤핑 관세 명령 부과 시점에는 USD 400만, 2015년에는 USD `4,050만, 2016년에는 USD 4,170만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함

○ **(특수관계 여부)** 상무부는 중국 기업과 태국내 해당 기업 계열사가 반덤핑 명령 우회에 연관되어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169) 청원인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US 180만 달러, 2012년 US 580만 달러, 2013년 US 1,140만 달러, 2016년 US 4,170만 달러로 증가세를 기록함

- 청원인은 우한 완방 레이저 다이아몬드 툴즈(Wuhan Wanbang Laser Diamond Tools Co., Ltd.)가 태국에 Diamond Tools Technology (Thailand)라는 계열사를 설립하였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 회사가 우회를 통해 미국에 상품을 반입했다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Bosun Tools Co., Ltd.와 같은 중국 다이아몬드 절단날 생산업체들이 태국에 생산 시설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ㅇ 미국 상무부는 태국 수출자가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sawblades and parts)에 대하여 2009년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부과한 반덤핑(AD) 명령을 우회한다고 판정함

– 상무부는 청원인이「19 U.S.C. §1677j(b)(1)(A)(i)」조에 근거하여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이아몬드 톱날이 반덤핑(AD) 관세 명령의 적용을 받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단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 및 다이아몬드 톱날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종류(class or kind)라고 판단함

– **상무부는 태국 수출자의 태국 내 다이아몬드 톱날 결합 공정이 다이아몬드 톱날 결합 재료인 코어(cores), 세그먼트(segments) 등을 생산하는 공정에 비하여 단순하다고 보았음**

– 총 생산비용에서 중국산 중간재를 생산하는데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태국 내 가공한 비용은 총 비용의 0.5% 수준을 기록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사 기간 전후로 태국발 다이아몬드 톱날의 미국 수입 규모에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태국 수출자와 중국 기업간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함

ㅇ 이 사건은 중국산 핵심 원자재 + 제3국 단순조립 + 對미 수출 급증이라는 전형적 우회 패턴과 더불어, 원재료 가치비중과 공정의 경미성, 무역패턴 변화, 특수관계를 종합평가하여 우회로 판정하였으며, ITC가 일몰 재심을 통해 명령을 연장함으로써 반덤핑(AD) 집행을 강화한 사례임

10) 하드우드 및 장식용 합판과 베니어 패널[170]

사례번호	A-570-051 / C-570-052	
조사 개시일	2020.06.17	
최종판정	2023.07.20	
조사 대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중국의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171]을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사례	
조사 배경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발효 후, 명령 발효 전까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었던 조사 대상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상품의 대체품으로 판매 및 마케팅되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활엽수 합판 공정 무역 연합(Coalition for Fair Trade in Hardwood Plywood, 이하 '청원인')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상무부에 우회 조사를 요청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c),(d), 19 CFR §351.225 및 19 CFR §351.226	
HS code 기존명령범위	총 127개의 HS code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중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	중국의 대(對)베트남 베니어 수출이 2015~2019년간 350% 이상 급증하는 등 무역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베트남 내 자체 원재료 생산 기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산 원재료에 의존한 조립 구조가 확인
	조립, 완성 공정 경미성	상무부는 베트남 내 투자, 연구개발(R&D), 생산 공정, 생산 시설 규모가 모두 중국 내 공정 대비 최소한(minimal)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장비 구성이 단순하고, 전체 생산 단계 중 핵심적·복잡한 공정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함
	가공부가가치 및 중국산 원재료 부가가치 비중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전체 가치에서 미미(insignificant)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재료 및 생산 비용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
	무역 흐름 급격 변화	베트남의 대(對)미국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수입액은 2016년 USD 29,358,000에서 2019년 USD 309,349,000으로 약 950%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대(對)베트남 베니어 수출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50% 이상 증가 베트남 목재·임산물 협회(Vietnam Timber and Forest Product Association)는 2018년 베트남의 대(對)미국 합판 수출이 2017년 대비 2.7배 증가했다고 공개함
결론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생산 공정이 실질적 생산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 무역 흐름의 급격한 변화, 특수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170) **(조사개시)**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ne 17, 2020)(barcodes : 2020-13075)
(예비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ly 29, 2022)(barcodes : 2022-16307)
(최종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ly 20, 2023)(barcodes : 2023-15431)

171) 표면(face) 및 이면(back) 베니어(Veneer)가 라디아타 소나무(radiata pine)나 아가티스 소나무(agathis pine)로

본 사례는 미 상무부가 2016년에 부과한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제3국(베트남)을 거쳐 우회한 것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 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활엽수 합판 (hardwood plywood)	A-570-051	총 127개의 HS code[172]	20.06.17	베트남	최종 긍정 (23.07.20.)

□ 조사 배경

- ㅇ 2018년 1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이하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이하 'CVD') 명령을 부과함
- ㅇ 2020년 2월, 청원인은 중국산 베니어합판이 베트남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상무부에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h)」에 근거한 우회 조사 개시를 요청함
- ㅇ (우회조사 개시) 2020년 6월, 상무부는 청원인의 요청을 받아「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c)(h)」에 근거한 우회 조사를 개시함

제작되어 있고, 유해물질규제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라벨을 보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urea formaldehyde), 폴리비닐아세테이트(polyvinyl acetate), 대두(soy) 중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하는 접착제(resin)를 주로 사용하여 제작된 합판

172) 하드우드 합판은 주로 다음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세번(subheadings) 하에서 수입: 4412.10.0500; 4412.31.0520; 4412.31.0540; 4412.31.0560; 4412.31.0620; 4412.31.0640; 4412.31.0660; 4412.31.2510; 4412.31.2520; 4412.31.2610; 4412.31.2620; 4412.31.4040; 4412.31.4050; 4412.31.4060; 4412.31.4075; 4412.31.4080; 4412.31.4140; 4412.31.4150; 4412.31.4155; 4412.31.4160; 4412.31.4180; 4412.31.5125; 4412.31.5135; 4412.31.5155; 4412.31.5165; 4412.31.5175; 4412.31.5235; 4412.31.5255; 4412.31.5265; 4412.31.5275; 4412.31.6000; 4412.31.6100; 4412.31.9100; 4412.31.9200; 4412.32.0520; 4412.32.0540; 4412.32.0565; 4412.32.0570; 4412.32.0620; 4412.32.0640; 4412.32.0670; 4412.32.2510; 4412.32.2525; 4412.32.2530; 4412.32.2610; 4412.32.2630; 4412.32.3125; 4412.23135; 4412.32.3155; 4412.32.3165; 4412.32.3175; 4412.32.3185; 4412.32.3235; 4412.32.3255; 4412.32.3265; 4412.32.3275; 4412.32.3285; 4412.32.5600; 4412.32.5700; 4412.33.0620; 4412.33.0640; 4412.33.0670; 4412.33.2630; 4412.33.3235; 4412.33.3255; 4412.33.3265; 4412.33.3275; 4412.33.3285; 4412.33.5700; 4412.34.2600; 4412.34.3235; 4412.34.3255; 4412.34.3265; 4412.34.3275; 4412.34.3285; 4412.34.5700; 4412.39.1000; 4412.39.3000; 4412.39.4011; 4412.39.4012; 4412.39.4019; 4412.39.4031; 4412.39.4032; 4412.39.4039; 4412.39.4051; 4412.39.4052; 4412.39.4059; 4412.39.4061; 4412.39.4062; 4412.39.4069; 4412.39.5010; 4412.39.5030; 4412.39.5050; 4412.94.1030; 4412.94.1050; 4412.94.3105; 4412.94.3111; 4412.94.3121; 4412.94.3141; 4412.94.3161; 4412.94.3175; 4412.94.4100; 4412.99.0600; 4412.99.1020; 4412.99.1030; 4412.99.1040; 4412.99.3110; 4412.99.3120; 4412.99.3130; 4412.99.3140; 4412.99.3150; 4412.99.3160; 4412.99.3170; 4412.99.4100; 4412.99.5115; 4412.99.5710. 4412.10.9000; 4412.94.5100; 4412.94.9500; 4412.99.6000; 4412.99.7000; 4412.99.8000; 4412.99.9000; 4412.99.950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 (예비 판정) 2022년 7월, 상무부는 우회 조사 개시 결과, 베트남 합판 생산 및 수출기업들이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하드우드 합판을 수출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함

○ (최종 판정) 2023년 7월, 상무부는 우회 조사 개시 결과, 베트남 합판 생산 및 수출기업들이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수출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함

[표 3-39]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의 반덤핑 및 상계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 내용
16.12.08	• 상무부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여부 조사를 개시함
18.01.04	• 상무부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공표함
20.02.25	• 청원인은 중국산 원산의 코어 베니어(core veneers), 다층 코어 베니어 패널(multi-ply core veneer panels), 베니어 코어 플랫폼(veneer core platforms)으로부터 제조된 합판이 베트남에서 조립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도 같은 명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원재료를 투입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합판 제품을 제781(b)조 및 19 CFR 351.225(h)에 근거하여 우회 조사(anti-circumvention inquiry)해 달라고 요청함
20.06.17	• 상무부는 청원인의 요청을 받아 제781(b)조 및 19 CFR 351.225(c)와 (h) 에 근거한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의 제3국(베트남) 우회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조사를 개시함
20.09.10	• 상무부는 59개 베트남 합판 생산/수출 기업들에게 미국으로의 합판 판매 및 중국으로부터의 합판 원재료 조달과 관련한 물량 및 가치(Quantity and Value)에 대한 설문지를 발송하였음 • 45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22개 기업의 설문 응답에 중대한 불일치/모순/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173]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응답 기업의 경우 • 이에 상무부는 일부 기업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리한 추정을 바탕으로 한 사실 근거 활용(Use of facts available with an adverse inference)에 기반하여 우회 조사에 대한 예비 및 최종 판정함
22.07.29	• (예비판정) 상무부는 5가지 시나리오 중 3가지 경우 중국산 합판 원재료가 베트남에서의 가공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변형(Substantially transformed)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들이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

	(CVD) 명령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정하였으며, 나머지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베트남에서 완성된 합판이 해당 명령을 회피(Circumvention)한다고 예비 판정함
23.07.20	• (최종판정) 상무부는 중국에서 제조된 합판 투입재 및 부품(앞면 베니어, 뒷면 베니어, 조립된 코어 또는 개별 코어 베니어)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완성된 특정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이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함

자료 : (우회 조사 개시)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Circumvention Inquiry Certain Softwood Species Public document(A-570-051, C-570-052)(2019.6.4.)
(예비 판정)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7 FR 45753 (July 29, 2022)
(최종 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8 FR 46740 (July 20, 2023)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ㅇ (우회 조사 대상) 미국 상무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활엽수 합판 제품(hardwood plywood products)에 대한 우회 조사를 개시함

- 표면(face) 및 이면(back) 베니어가 라디아타 소나무(radiata pine) 및/또는 아가티스 소나무(agathis pine)로 제작
- TSCA(유해물질규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또는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라벨을 보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
- 요소 포름알데히드(urea formaldehyde), 폴리비닐 아세테이트(polyvinyl acetate), 대두(soy) 중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하는 접착제(resin)를 주로 사용하여 제작

173) a) 초기에는 베트남 재판매업자(resellers)로부터 하드우드 합판 원재료를 조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이를 인정하거나 기록상 정보가 이를 반박하는 경우
b) 사용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또는 합판 원재료의 목재 수종(species of wood)을 전부 명시하지 않거나, 수종에 관해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제출한 경우
c) 중국으로부터 전면/후면 베니어(face/back veneers)만 수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크기 식별 가능성에 기초)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d) 조사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베트남 정부(GOV)가 제공한 통관 자료(entry data)는 해당 수입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경우
e) 위에서 언급한 불일치 사항 중 둘 이상을 동시에 포함한 경우
f) 중국 기업과의 제휴(affiliation) 관계 및 제휴사를 통한 하드우드 합판 원재료 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중국산 침엽수 합판 제품(softwood plywood products)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외부 베니어가 침엽수(softwood) 수종으로 제작된 합판에 대해 일정 조건[174]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증(certificate)해야 함

ㅇ (기존 명령의 범위) 기존 제품의 명령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40]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대상물품

ㅇ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 및 베니어 패널(Veneered panels)

ㅇ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 : 일반적으로 평평한 다층 합판 또는 기타 베니어(veneer) 패널로 정의되는데, 두 개 이상의 목재 베니어 층(Plies)과 심(Co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face) 및/또는 이면(back) 베니어가 활엽수(hardwood) 또는 대나무(Bamboo)로 제작된 것을 의미함('베니어 층';과 '심'은 다른 방식으로 접착 또는 결합 가능)

ㅇ 미국 국가 표준(ANSI/HPVA HP-1-2016, 그 개정판 포함)에서 규정하는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이 포함될 수 있음

- 베니어(veneer) : 두께에 관계없이 통나무(log), 볼트(bolt), 또는 플리치(flitch)에서 절단, 슬라이스, 톱질하여 얻은 목재 조각을 의미함. 표면(face) 베니어와 이면(back) 베니어는 다음에 명시된 추가적인 표면 코팅(surface coated)이나 덮개(covers)와 관계없는 심(core)의 양쪽에 위치한 가장 바깥쪽(the outermost) 베니어를 의미함

ㅇ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의 '심(core)'은 표면 및 이면 베니어 사이에 위치하는 한 층 또는 그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층으로 형성되어 있음

ㅇ '심(core)'은 활엽수(hardwood), 침엽수(softwood),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중밀도섬유판(MDF, medium-density fiberboard)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범위의 재료로 구성될 수 있음

- 모든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은 표면 베니어(face)와 이면(back) 베니어가 코팅 또는 커버되는지 여부 및 표면 코팅이나 커버가 목재의 결(grain), 질감(texture), 무늬(markings)를 가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령의 범위 안에 포함됨
- 표면 코팅 또는 커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례 : 자외선 경화 폴리우레탄(ultra violet light cured polyurethanes), 오일 또는 오일 개질 또는 수성 폴리우레탄(oil or oil-modified or water based polyurethanes), 왁스(wax), 에폭시-에스터 마감(epoxy-ester finishes), 수분경화형 우레탄(moisture-cured urethanes), 페인트(paints), 스테인(stains), 종이(paper), 알루미늄(aluminum), 고압 라미네이트(high pressure laminate),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MDF) 중밀도 오버레이(Medium Density Overlay, MDO), 페놀 필름(phenolic film)
- 추가적으로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의 표면(face) 베니어는 연마(sanded), 평활 처리(smoothing), 핸드 스크래핑(hand-scraping) 처리나, 와이어 브러싱(wire brushing) 같은 방법을 이용한 노화 처리 효과(distressed appearance)를 줄 수 있음

ㅇ 모든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은 재단(trimmed), 규격 절단(cut-to-size), 노칭(notched), 펀칭(punched), 천공(drilled) 또는 기타 경미한 가공(minor processing)을 거쳤더라도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ㅇ 또한 치수(dimension)에 상관없이(전체 두께, 표면 베니어 두께, 이면 베니어 두께, 심재 두께, 내부

174) 외부 베니어가 모두 라디아타 및/또는 아가티스 소나무로 제작되지 않았고, 주성분이 요소-포름알데히드,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대두 중 하나 이상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TSCA 또는 CARB 라벨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베니어 두께, 폭, 길이 등 무관) 명령 범위에 포함됨

-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의 일반적 패널(panel) 크기는 1219 x 1829 mm(48 x 72 인치), 1219 x 2438 mm(48 x 96 인치), 그리고 **1219 x 3048 mm(48 x 120 인치)임**
- **제3국에서 추가 가공된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도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추가 가공에는 다듬기(trimmed), 규격 절단(cut-to-size), 노칭(notched), 펀칭(punched), 천공(drilled)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추가 가공 공정이 원 제조국가에서 수행되었더라도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준의 가공인 경우 명령 범위에 포함됨**

□ 적용 제외 대상

- **구조용 합판(structural plywood)에 대한 미국 제품 표준 PS 1-09, PS 2-09, PS 2-10(구조용 합판에 대한 미국 표준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국제기준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 포함)을 충족하는 구조용 합판(structural plywood, '산업용 합판' 또는 '산업용 패널'과 동일함)으로, 침엽수(coniferous wood)로 구성된 표면(face) 베니어와 이면(back) 베니어를 가짐**
- **구조용 합판(structural plywood, '산업용 합판' 또는 '산업용 패널'과 동일함)**
- **표면(face) 베니어와 이면(back) 베니어 모두 코르크(cork)인 제품**
- **중국산 다층 목재 바닥재(multilayered wood flooring)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 따라 정의된 제품으로 아래의 공고에 명시된 범위를 따름**
  - Multilayered Wood Floor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6 FR 76690 (2011년 12월 8일, 공정가 이하 판매 최종판정(LTFV) 및 AD 명령)
  - Multilayered Wood Floor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6 FR 76693 (2011년 12월 8일, 상계관세 명령)
  - Amend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77 FR 5484 (2012년 2월 3일, 개정판)
- **표면(face) 베니어가 대나무(bamboo)이거나 전부가 대나무로 제작된 다층 목재 바닥재(multilayered wood flooring)**
- **평평한 패널(flat panel)이 아닌 기타 형태 또는 디자인을 가진 합판(단, 경미한 가공은 예외)**
- **대나무와 접착제로만 구성된 제품(또한 solid bamboo로 알려진 제품)**
- **페놀 필름 표면 합판(Phenolic Film Faced Plyform, PFF) 또는 페놀 표면 필름 합판(Phenolic Surface Film Plywood, PSF)[175]으로 엔지니어드 우드 협회(Engineered Wood Association) 기준에 따른 'Exterior' 또는 'Exposure 1' 접착 등급을 가지는 패널**
  - 표면 및 이면 베니어에 90g/m³ 이상 불투명 페놀 필름층이 영구적으로 부착되고, 모서리(edge)에는 불투명·내습성 코팅이 적용됨
- **수입 시 이미 완전히 조립(fully assembled)되어 있으며, 즉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제품**
- **조립식 가구(Ready to Assemble, 이하 "RTA") :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포장되어 수입되는 가구로, 수입 시점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 최종 완성 가구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재 부품(완성형 상태) 포함
  - 나사(screws), 와셔(washers), 목심(dowel), 못(nails), 손잡이(handles), 노브(knobs), 접착제(adhesive glues) 등 모든 부속품(accessory parts) 포함
  - 완성 가구의 조립 방법을 안내하는 조립 설명서 포함
  - 다음 제품도 RTA 가구로 간주되어 범위에서 제외
- **미조립 욕실 세면대 수납장(unassembled bathroom vanity cabinets) : 하나 이상의 세면대 공간이 있으며, 최종 치수(형상·사이즈)로 절단된 모든 활엽수 합판 부품과 함께 수입되며, 수입 전 도색·착**

색되어 있으며, 단일 포장 용기에 적재된 것(단, 다리(가구 받침대)는 별도 포장·선적 가능)

- **미조립 욕실 린넨 수납장(unassembled bathroom vanity linen closets) : 최종 치수(형상·사이즈)으로 절단된 모든 조립되지 않은 활엽수 합판 부품이 함께 수입되고, 수입 전 도색·착색되어 있으며, 단일 포장 용기에 적재된 경우(단, 다리(가구 받침대)는 별도 포장·선적 가능)**
- **수입 시점에 완전히 조립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및 조립식 주방 수납장(RTA kitchen cabinets)**
  - 조립식(RTA) 주방 수납장은 최종 소비자 판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됨
  - 최종 완성 수납장 조립에 필요한 모든 목재 부품(완성형 상태)
  - 완성 수납장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부품(나사(screws), 와셔(washers), 목심(dowel), 못(nails), 손잡이(handles), 놉(knobs), 접착제(adhesive glues) 등)
  - 완성 캐비닛의 조립 방법을 안내하는 조립 설명서를 모두 구비한 제품
- **완성된 테이블 상판(finished table tops) : 하부 프레임 또는 다리 부착을 위하여 사전 절단(pre-cut) 또는 타공 작업된 완성 형태로 수입된 테이블 상판으로, 수입 즉시 사용 가능하며, 추가적인 마감이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음**
- **완성된 조리대 상판(finished countertops) : 완성된 형태로 수입되며, 추가적인 마감이나 제조 공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 **적층형 베니어 목재(Laminated Veneer Lumber, LVL) 도어 및 창문 부품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 됨**
  - 최대 폭 44mm, 두께 30~72mm, 길이 2413mm 미만
  - 옥외용 내수 합판용 접착제(water boiling point exterior adhesive)[176] 사용
  -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가 1,500,000 psi(파운드/제곱인치) 이상
  - 모든층의 결(grain)이 평행하거나 다른 층에 결(grain)이 수직으로 형성된 3개 이하의 분산된 베니어 층으로 구성된 손가락 이음(finger-jointed) 또는 겹침 이음(lap-jointed)된 '심(core)' 베니어
  - 곡선 모서리(curved edge)와 하나 이상의 프로파일 채널(profile channels)로 가공된 상층(top layer)
  - 폭 50mm를 초과하지 않고, 길이는 2,450mm 미만의 적층형 베니어 목재(Laminated Veneer Lumber, LVL)로 만든 특정 도어 스타일(stiles) 및 레일(rails)

□ HTSUS 코드(단단한 목재로 구성된 합판)

- 4412.10.0500, 4412.31.0520 4412.31.0540 4412.31.0560 4412.31.0620 4412.31.0640 4412.31.0660 4412.31.2510 4412.31.2520 4412.31.2610 4412.31.2620 4412.31.4040 4412.31.4050 4412.31.4060 4412.31.4075 4412.31.4080 4412.31.4140 4412.31.4150 4412.31.4155 4412.31.4160 4412.31.4180 4412.31.5125 4412.31.5135 4412.31.5155 4412.31.5165 4412.31.5175 4412.31.5235 4412.31.5255 4412.31.5265 4412.31.5275 4412.31.6000 4412.31.6100 4412.31.9100 4412.31.9200 4412.32.0520 4412.32.0540 4412.32.0565 4412.32.0570 4412.32.0620 4412.32.0640 4412.32.0670 4412.32.2510 4412.32.2525 4412.32.2530 4412.32.2610 4412.32.2630 4412.32.3125 4412.32.3135 4412.32.3155 4412.32.3165 4412.32.3175 4412.32.3185 4412.32.3235 4412.32.3255 4412.32.3265 4412.32.3275 4412.32.3285 4412.32.5600 4412.32.5700 4412.33.0620 4412.33.0640 4412.33.0670 4412.33.2630 4412.33.3235 4412.33.3255 4412.33.3265 4412.33.3275 4412.33.3285 4412.33.5700 4412.34.2600 4412.34.3235 4412.34.3255 4412.34.3265 4412.34.3275 4412.34.3285 4412.34.5700 4412.39.1000 4412.39.3000 4412.39.4011 4412.39.4012 4412.39.4019 4412.39.4031 4412.39.4032 4412.39.4039 4412.39.4051 4412.39.4052 4412.39.4059 4412.39.4061 4412.39.4062 4412.39.4069 4412.39.5010

4412.39.5030	4412.39.5050	4412.94.1030	4412.94.1050	4412.94.3105	4412.94.3111	4412.94.3121
4412.94.3141	4412.94.3161	4412.94.3175	4412.94.4100	4412.99.0600	4412.99.1020	4412.99.1030
4412.99.1040	4412.99.3110	4412.99.3120	4412.99.3130	4412.99.3140	4412.99.3150	4412.99.3160
4412.99.3170	4412.99.4100	4412.99.5115	4412.99.5710	4412.10.9000	4412.94.5100	4412.94.9500
4412.99.6000	4412.99.7000	4412.99.8000	4412.99.9000	4412.99.950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 우회조사 판정 내용

○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 미국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회 조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적용 대상인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과 동일한 종류 또는 유형인 것을 확인함
- CBP 통관 자료(entry data)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명령 적용 대상 HTSUS 세번(subheadings) 하에서 베트남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이 상당한 물량으로 수입되었음을 확인함

○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베트남 목재 베니어 수출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50% 이상 증가하였는데, 베트남은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의 주요 생산국으로 알려진 바 없었으며, 이러한 무역 패턴이 나타난 것은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원재료가 베트남에서 조립·완성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의 미국 수입액이 약 950% 증가했지만,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의 미국 수출액은 많이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목재 베니어 대(對) 베트남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함
- 베트남에서는 합판 생산을 위한 원자재(ex-이탈리안 포플러 등) 플랜테이션(Planta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이 베트남에서 조립 및 완성되고 있음을 뒷받침함

176) 끓는 물에서도 견딜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한 것을 의미함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미국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베트남 기업들이 단순히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원재료의 조립에만 관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생산에 필요한 투자 수준은 최소한(minimal)이라고 판단함
  - 청원인은 베트남에서 조립 및 마무리에 사용되는 장비가 접착기(gluing machine), 베니어 더미를 제작하기 위한 냉압기(cold press), 베니어를 접착하기 위한 열압기(hot press), 절단 및 샌딩을 위한 장비에 국한된다는 증거를 제출함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되는 생산 단계가 더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며, 그중 일부는 통나무 저장, 통나무 컨디셔닝, 박피(debarking), 절단, 베니어 박피(peeling), 베니어 건조(drying)와 같은 최소한의 공정에 대해 정밀한 교정(calibration)을 필요로 함
  - 모든 베니어가 중국에서 조달되는 경우 하에서 베트남에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완성하기 위한 투자 수준은 경미(minor)하다고 판단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미국 상무부는 청원인의 증거에 근거하여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제조하기 위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단계는 공정 중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단계이지만, 베트남에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R&D) 수준은 상대적으로 극히 낮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단, 완성된 합판이 일부 베트남산 전면/후면 베니어를 포함할 경우, 베트남에서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R&D)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시한 근거에 따라, 베트남 생산 공정은 중국에서 베니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수많은 생산 단계와 비교할 때 최소한의 가공(minimal processing)만 포함된다고 판단함

- 청원인은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R&D, 투자, 생산 활동의 절대다수가 원목(logs)에서 시작되는 베니어 생산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공정의 최종 단계는 경미한 가공(minor processing)에 불과하며,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작다고 주장함
- 또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 13단계를 제시했는데, 이 중 7~8단계는 중국에서, 5~6단계는 베트남에서 수행된다고 주장함
- 청원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면/후면 베니어가 완성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의 총 제조원가(COM)와 전체 목재 원자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을 보여주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코어 베니어 생산과 관련된 공정의 범위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전면/후면 베니어 생산 공정의 범위보다 넓다고 볼 수 있음

- **(④ 생산시설의 규모)** 상무부가 청원인의 자료를 토대로 우회 조사를 개시한 결과, 베트남 내 기업들이 단순히 베니어를 조립하여 완성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내 생산 시설의 규모는 경미하다(minor) 판단함
  -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면 베트남 내 생산 시설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 활용중인 공정은 단순히 접착제를 바르고 베니어를 적층하는 과정에 불과함
  - 중국의 공정을 도입하려면 산림조성(forests for trees), 벌목 및 원목 절단 장비, 원목을 가공 시설로 운송하는 장비, 원목을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저수지(log yards/ponds), 박피 기계(debarking machinery), 원목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장비, 로터리 레이스(rotary lathes) 또는 기타 베니어 생산 장비, 규격화 및 등급화 시설(sizing and grading facilities), 베니어 건조 시설(veneer drying facilities), 보수 및 수선 시설(repairing and patching facilities) 등이 필요함
  - 반면, 베트남 내 생산 시설 냉압기(cold press), 열압기(hot press), 절단·샌딩·마무리 장비에 불과하였음
- **(⑤ 부가가치 비중)**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8.8%~79.4%

였는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의 주요 원재료 비용은 활엽수 베니어와 생산에 사용되는 기타 합판으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의 생산비(목재 베니어 원재료)는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함

- 그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산 코어 베니어(및 잠재적으로 중국산 전면·후면 베니어)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완성하는 데 수반되는 가치는 중국에서 수행된 주요 생산 단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insignificant)고 판단함
- 청원인은 미국 내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제조업체의 실제 생산비 자료도 제출하였는데, 전체 생산 비용의 대부분이 베니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었음
- (중국산 원재료 비중) 미국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생산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으로 조립을 위해 수출된 원재료(목재 베니어 및 코어)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함

□ **추가 고려 요소**

ㅇ (무역 흐름의 변화 및 원재료 수입 구조 변화) 상무부는 다음의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라 무역 흐름의 변화가 있었음을 판단함

- 베트남의 대(對)미국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수입액은 2016년 USD 29,358,000에서 2019년 USD 309,349,000으로 약 950%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대(對)베트남 베니어 수출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50% 이상 증가하였음
- 베트남 목재·임산물 협회(Vietnam Timber and Forest Product Association)는 2018년 베트남의 대(對)미국 합판 수출이 2017년 대비 2.7배 증가했다고 공개함

ㅇ (특수관계 여부)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따라 최소 7개의 베트남 기업이 중국 내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생산/수출기업과 제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예비 판정에서는 이중 시나리오 1, 2, 3은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나리오 4, 5만 포함하였으나, 최종 판정에서는 5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회 판정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 예비판정에서 시나리오 1, 2, 3 제외 사유 : 중국산 앞뒷면(face/back) 베니어(remote veneers), 조립(core) 플랫폼(platform) 등의 생산 및 조달 흐름(flow)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의 조립비율 및 가공 정도(processing)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았으므로,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적용 대상으로 판단함[177)]

[표 3-41] 베니어가 베트남 및 제3국에서 조달되어 전면/후면 베니어와 결합되는 5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주요내용	우회대상 여부	
		예비판정	최종판정
1	• 중국산 표·뒷면 베니어 + 중국산 조립 코어 → 베트남에서 합판 조립	×	○
2	• 중국산 조립 코어 + 베트남/제3국 표·뒷면 베니어 → 합판 완성	×	○
3	• 베트남에서 다층 코어(접착 코어 베니어) 제작 + 중국/베트남/제3국 표·뒷면 베니어 부착	×	○
4	• 중국산 표·뒷면 베니어 + 중국산 개별 코어 베니어 → 베트남에서 합판 조립	○	○
5	• 국산 개별 코어 베니어 → 베트남에서 가공 후 베트남/제3국 표·뒷면 베니어 부착	○	○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Circumvention Inquiry Certain Softwood Species Public document(A-570-051, C-570-052)(2019.6.4.)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7 FR 45753 (July 29, 2022)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8 FR 46740 (July 20, 2023)

○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우회 여부를 판단하였음

- 첫째, 제품 종류의 동일성 측면에서, 베트남에서 수입된 합판이 HTSUS 해당 세번을 통해 미국으로 대량 수입되었고, 명령 대상인 활엽수 합판(hardwood

177) https://www.customsmobile.com/adcvd/3215402

plywood)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임을 확인함

- 둘째, 중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對)베트남 베니어 수출이 2015~2019년간 350% 이상 급증하는 등 무역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베트남 내 자체 원재료 생산 기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산 원재료에 의존한 조립 구조가 확인됨
- 셋째, 조립·완성 공정의 경미성에 대해 상무부는 베트남 내 투자, 연구개발(R&D), 생산 공정, 생산 시설 규모가 모두 중국 내 공정 대비 최소한(minimal)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장비 구성이 단순하고, 전체 생산 단계 중 핵심적·복잡한 공정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함
- 넷째, 가공 부가가치 비중 및 중국산 부가가치 비중을 고려할 때,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전체 가치에서 미미(insignificant)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재료 및 생산 비용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다섯째, 회피 방지 조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무역 흐름의 급격한 변화(베트남 합판 수출 950% 증가, 중국→베트남 원재료 수출 350% 증가), 중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특수관계 등이 확인됨

ㅇ 최종 판정에서는 예비 판정 당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한 것과 미국 상무부의 우회 조사 관련 답변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근거한 '불리한 추정을 바탕으로 한 사실 근거 활용(use of facts available with an adverse inference)'에 기반하여 시나리오 1~5 모두 우회 대상으로 결정함[178)]

178)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8 FR 46740 (July 20, 2023)

1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179)]

사례번호	A-570-979, C-570-980	
조사 개시일	2022.04.01	
최종판정	2023.08.23	
조사 대상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을 수입하여 결합 등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모든 완성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조사 배경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부과 후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3국 우회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 Auxin Solar Inc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상무부에 우회 조사를 요청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 19 CFR §351.225(h)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8501.71.0000, 8501.72.1000, 8501.72.2000, 8501.72.3000, 8501.72.9000, 8501.80.1000, 8501.80.2000, 8501.80.3000, 8501.80.9000, 8507.20.8010, 8507.20.8031, 8507.20.8041, 8507.20.8061, 8507.20.8091, 8541.42.0010, 8541.43.0010.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수준	제3국내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전지로 가공하고 전지를 모듈로 조립하는 데 요구되는 투자 수준이, 중국내 폴리실리콘 및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투자 수준에 비해 미미하다고 판단함
	연구개발 수준	중국산 구성품을 사용하여 전지를 완성하고 모듈로 조립하는 것과 관련된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연구개발 수준이 중국내 연구개발 수준 대비 미미하다고 판단함
	생산공정	제3국에서의 생산공정의 성격이 중국내의 생산공정에 비하여 덜 정교한 공정이라고 보고, 중국의 통합형 전지 생산자의 생산 활동을 제3국 내 회사의 중국산 실리콘 웨이퍼를 전지로 전환하고 전지를 모듈로 조립하는 활동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중국산 부가가치 비중	청원인은 BloombergNEF 보고서를 인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은페이스트, 솔라 글라스, 알루미늄 프레임, 접속함, EVA, 백시트 및 기타 중국 공급 투입재의 비용이, 이 투입재들이 포함된 최종 제품의 총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고 주장함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 및 구성품을 대체값(surrogate value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중국산 물품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총 물품 가치에서 상당한 비중(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한다고 판정
	무역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태양전지 및

179) **(조사개시)**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April 1, 2022)(barcodes : 2022-06827)
(예비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December 1, 2022)(barcodes : 4419744-01)
(최종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ugust 23, 2023)(barcodes : 2023-18161)

	흐름변화	모듈의 총 수출액은 약 USD 28억에서 약 USD 21,320,358로 99% 이상 감소한 반면, 제3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금액은 최소 3배에서 11배 증가함
결론	사소한/경미한 조립 또는 완성 공정여부(투자수준, 연구개발 수준, 생산공정 정밀도) + 중국산 재료의 부가가치 비중 + 무역 흐름 변화 등 전형적 우회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회 판정함	

본 사례는 미국 상무부가 2012년에 부과한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및 상계관세(CVD) 부과 명령을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거쳐 우회한 것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개시일	경유국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A-570-979	8501.61.0000 8507.20.80, 8541.40.6020 8541.40.6030 8501.31.8000	2022.03.25	캄보디아	우회판정 (최종) (2023.08.18)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 조사 배경

○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이하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명령을 부과함

○ 2022년 3월 25일, 미 상무부는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Auxin Solar Inc(Auxin, 이하 "청원인") 요청에 따라 「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h)」에 근거하여,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실시함

-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기업이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모듈 등으로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회피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함

○ 2022년 4월, 상무부는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내 일부 기업이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한다고 보고 예비(Preliminary) 판정함

○ 2023년 4월, 상무부는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내 일부 기업이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회피

한다고 보고 우회를 최종(Final) 판정함

[표 3-42]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의 반덤핑 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2.12.07	• 미 상무부는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부과함
22.02.08	•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Auxin Solar Inc(Auxin, 이하 “청원인”)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태양전지 및 모듈이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한다고 보고, 미 상무부에 우회 조사 개시를 요청함
22.03.25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우회 여부 조사 개시 공표
22.04.01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우회 여부 조사 개시
22.12.01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관련 우회조사 예비 판정함
23.08.23	•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관련 우회조사 최종 판정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부과 대상 범위에 포함된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 라미네이트 및 패널[180] 등을 완성한 뒤,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

○ (기존 명령의 범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181]

180) 그 외 모듈, 라미네이트, 패널 내 다음 부품중 2개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 경우 : 은 페이스트(silver paste), 알루미늄 프레임(aluminum frames), 유리(glass), 백시트(backsheets),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시트(ethylene vinyl acetate sheets), 접속함(junction boxes)

181) HTSUS : 8501.61.0000, 8507.20.80, 8541.40.6020, 8541.40.6030, 8501.31.8000.

[표 3-4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대상물품

- ㅇ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및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로 구성된 모듈(modules), 적층체(laminates), 패널(panels)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기타 제품에 조립되는지 여부는 관계없으며, 이는 모듈(modules), 적층체(laminates), 패널(panels) 및 건물 일체형 자재(builiding integrated materials)에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ㅇ 두께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에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p·n접합(p·n junction)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전지가 기타 가공을 거쳤는지 여부는 상관없음[182]
- ㅇ 수입 시 명령 대상 범위로 고려되는 물품은 수입 후 조립되는 최종 완제품의 부품으로 설명 될 수 있고, 해당 물품에 모듈(modules), 적층체(laminates), 패널(panels), 건물 일체형 자재(builiding integrated modules), 건물 일체형 패널(building-integrated panels), 기타 완제품 키트(other finished goods kit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려 대상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이러한 부품들은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 ㅇ 중국에서 생산된 전지를 이용하여 제3국에서 모듈(modules), 적층체(laminates), 패널(panels) 등을 생산할 경우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 HTSUS 코드 : 8501.71.0000, 8501.72.1000, 8501.72.2000, 8501.72.3000, 8501.72.9000, 8501.80.1000, 8501.80.2000, 8501.80.3000, 8501.80.9000, 8507.20.8010, 8507.20.8031, 8507.20.8041, 8507.20.8061, 8507.20.8091, 8541.42.0010, 8541.43.0010

□ 적용 제외 대상

- ㅇ 제3국에서 생산된 전지로 중국에서 생산된 모듈, 적층체, 패널
- ㅇ 비결정질 실리콘(a-Si),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셀렌화 구리-인듐-갈륨(CIGS)으로 제작된 박막양광 제품(thin film photovoltaic products)
  - 전력 생산 외 기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재에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결합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표면적이 10,000mm²를 초과하지 않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하나 이상의 전지가 영구적으로 소비재에 결합될 경우,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할 목적을 위한 표면적(surface area) 대상은 소비재에 결합된 모든 전지의 전체 결합된 표면적이어야 함)
- ㅇ 검은색 전선 1개와 빨간색 전선 1개(각각 22 AWG 또는 24 AWG 규격, 패널 압출부에서 측정 시 길이가 206mm를 초과하지 않음)를 포함하고, 표면적이 3,450mm²~33,782mm² 사이이며, 2.9V, 1.1A, 3.19W를 초과하지 않는 패널
  - 어떠한 패널도 내부 배터리나 외부 컴퓨터 주변기기 포트(external computer peripheral ports)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ㅇ 아래의 특성을 가진 오프그리드(off grid)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CSPV) 패널
  - 패널당 총 전력 출력이 100W 이하일 것
  - 패널당 최대 표면적이 8,000cm² 이하일 것
  - 내장 인버터(built-in inverter)를 포함하지 않을 것
  - 8mm 수형 배럴 커넥터(male barrel connector) 또는 색상이 서로 다른 정사각형 하우징(square housings) 내 두 개 핀을 가진 2포트 직사각형 커넥터로 끝나는 영구적으로 연결된 선을 포함하여야 함

- 각 태양광 전지에 걸쳐 매 1~4mm 간격의 눈에 보이는 평행 그리드 집전기 금속 와이어 선(visible parallel grid collector metallic wire lines)을 포함해야 함
- 개별 소매 포장(retail packaging) 상태여야 함(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소매 포장은 주로 그래픽, 제품명, 설명 및/또는 기능, 운송용 완충재(foam)을 포함)

ㅇ 아래의 특성을 가진 유리 커버가 없는 오프그리드 CSPV 패널
- 패널당 총 전력 출력이 100W 이하일 것
- 패널당 최대 표면적이 8,000cm² 이하일 것
- 내장 인버터(built-in inverter)를 포함하지 않을 것
- 각 태양광 전지에 걸쳐 매 1~4mm 간격의 눈에 보이는 평행 그리드 집전기 금속 와이어 선(visible parallel grid collector metallic wire lines)을 포함해야 함
- 각 패널은 소비재에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봉제가 없는 적층된 물질에 둘러싸여 있으며, 특정 조건(패널은 눈에 보이는 봉제와 함께 바느질된 원단으로 둘러싸야 하고, 메쉬 지퍼가 달린 보관 주머니를 포함하며, 암형 USB-A 커넥터로 끝나는 영구적으로 부착된 와이어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

ㅇ 아래의 물리적 특성을 가진 유리 커버가 있는 단단한 형태의 오프그리드 CSPV 패널(수증기를 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진 완전하게 완성된 오프그리드 하이드로패널에 조립되는 것과 상관없음)
- 패널당 총 전력 출력이 80W 이하
- 패널당 표면적이 5,000cm² 미만
- 내장 인버터를 포함하지 않을 것
- 패널 가장자리 주위에 프레임이 없을 것
- 투명 유리 뒷면 패널(clear glass back panel)을 포함
- 2포트 직사각형 커넥터로 끝나는 영구적으로 연결된 전선을 포함

ㅇ 아래 특성을 가진 유리 커버가 있거나 없는 오프그리드 소형 휴대용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
- 패널당 총 전력 출력이 200W 이하
- 패널당 최대 표면적이 16,000cm² 이하
- 내장 인버터를 포함하지 않을 것
- 휴대가 용이하도록 일체형 핸들(integrated handle) 또는 패키지에 부착된 핸들 포함
- 설치 또는 각도 조정이 용이한 하나 이상의 일체형 지지대(integrated kickstands)를 포함할 것
- 최소 3미터 길이의 전선으로, 직경 8mm의 수형 배럴 커넥터(male barrel connector)로 끝나는 패키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183]

- 청원인이「19 U.S.C. §1677j(b)(1)(A)(i)」조에 근거하여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전지 및 모듈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을 받는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 청원인은 위 제3국 내 기업들이 우회조사 대상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음을

182) 전지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모으고 전달하기 위한 세정(cleaniong), 식각(etching), 도포(coating), 및/또는 물질 추가(금속화 및 도체 패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183) 4184162-02(필리핀), 4184168-02(브루나이)

보여주는 선적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상품이 동일한 관세 분류 번호(HTSUS)로 미국에 수입 신고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함

[표 3-44] 국가별 제품 종류의 동일성 여부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캄보디아	• 청원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에 대한 제품 종류 동일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함 • BYD HK : 캄보디아 내에서 미국 시장에 수출할 태양전지 및 모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독립된 외부 하청업체(unaffiliated tollers)와의 통가공(toll processing) 계약을 통해 전지와 모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가공 과정을 통해 제작된 조사대상 상품을 우회 조사 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 명령의 대상이 된 상품과 동일한 종류에 속한다고 보았음 • NE Solar : 우회 조사 기간 동안 명령의 대상이 된 상품과 동일한 종류 및 품목의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했다고 진술함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 청원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184]에 대한 제품 종류 동일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가별 대상 기업 모두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에 속한다고 판단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제3국 내 위치한 특정 태양전지 및 모듈 가공기업들이 중국(제3국내 기업들의 중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실리콘 웨이퍼, 은 페이스트, 실란, 솔라 글라스, 알루미늄 프레임, 접속함(junction boxes), EVA, 백시트 및 기타 자재를 공급받아 태양전지 및 모듈을 생산했다는 증거를 분석함

- 또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된 자재[185]가 최근에 급증하였음을 보여주는 무역 데이터를 제시함

- 청원인은 BloombergNEF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가치의 70%가 중국산 재료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태양광급 실리콘, 잉곳, 웨이퍼 및 전지 생산과 같은 조립 이전

184) 캄보디아(BYD HK, NE Solar), 말레이시아(한화, 징코), 태국(CSIL, TTL), 베트남(Boviet, Vina Solar)
185)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 페이스트, 실란, 솔라 글라스, 알루미늄 프레임, 접속함, EVA, 백시트 및 기타 자재

의 핵심 단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 또한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능력의 최대 99%, 잉곳의 95%,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의 64%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제3국의 태양전지 생산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태양광급 실리콘 웨이퍼를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음

[표 3-45] 국가별 중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캄보디아	•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와 캄보디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산 원재료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의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 BYD HK : 캄보디아 내 독립 하청업체들이 중국에서 조달한 투입재(inputs)로 태양전지 및 모듈을 생산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한 결과, 자회사인 BYD (Shangluo) Industrial Co., Ltd. (Shangluo BYD)로부터 중국산 웨이퍼를 공급받았으며, 중국에서 다른 원자재 투입재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기간 동안 구매한 부품·구성요소의 원산지를 회사가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나타내는 판매 및 선적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자료 분석 결과 캄보디아 하청업체가 미국 수출 전에 중국산 부품 및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발견함 • NE Solar : 조사 기간 동안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로 태양전지 및 모듈을 생산하였고, 자사 계열 공급업체들로부터 중국산 웨이퍼 및 기타 원자재 투입재를 공급받았으며, 자사의 중국 계열 투입재 공급업체들은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폴리실리콘, 또는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 가능한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함 • 우회 조사 기간 동안 미국으로 판매된 태양광 모듈에 관한 판매 및 선적 서류의 예시를 제출하였으며, 자료 분석 결과 미국 수입 전 중국산 부품 및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우회 조사 대상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발견함
말레이시아	•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와 말레이시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산 원재료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한화(Hanwha) :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조달한 투입재(inputs)를 사용하여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한 것과, 중국 내 비계열(unaffiliated) 생산업체로부터 중국산 웨이퍼(wafers)와 기타 원재료를 구매하였음 • 조사 기간 동안 자사가 구매한 부품/구성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보여주는 판매 및 선적 문서의 사례(sample sales and shipping documentation)를 제출함 • 진코(Jinko) : 중국에서 조달한 투입재(inputs)를 사용하여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하였고, 중국 내 계열사(affiliated producers)로부터 중국산 웨이퍼를 확보하였으며, 중국에서 기타 원재료 투입재를 구매함 • 진코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자사가 구매한 부품/구성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 사례(sample documentation)를 제출함
태국	•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와 태국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산 원재료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CSIL : 조사 기간 동안 Canadian Solar Manufacturing Co., Ltd. 태국 법인(이하 “THSM”)이 중국에서 생산된 웨이퍼 및 기타 원자재를 이용하여 태양전지 및 모듈을 생산하였으며, THSM이 조사 기간 동안 구매한 부품/구성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문서를 제출함 • TTL : CSIL과 마찬가지로 조사 기간 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웨이퍼 및 기타 원자재를 이용하여 태양전지 및 모듈을 생산하였으며, 조사 기간 동안 구매한 부품/구성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문서도 제출함
베트남	•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와 베트남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산 원재료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Boviet : 조사 기간 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웨이퍼 및 기타 원자재를 사용하여 태양전지 및 모듈을 생산하였으며, 우회 조사 기간 동안 구매한 부품·구성요소의 원산지를 결정한 방식을 보여주는 샘플 문서를 제출함 • Vina Solar : Vina Solar 계열사인 Vina Cell Technology Company Limited(Vina Cell)가 중국산 웨이퍼 및 기타 원자재를 사용하여 태양전지를 생산하였고, Vina Solar가 중국산 태양전지 및 원자재를 사용하여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였으며, 조사 기간 동안 구매한 부품·구성요소의 원산지를 결정한 방식을 보여주는 샘플 문서를 제출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ㅇ 제3국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19 U.S.C. §1677j(b)에 따라 상무부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조립·완성 공정 여부평가시 다섯 가지 요소(투자 수준, R&D 수준, 생산공정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규모, 부가가치 비중)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① 투자 수준)** 상무부는 **실리콘 웨이퍼를 전지로 가공하고 전지를 모듈로 조립하는 데 요구되는 투자 수준이, 폴리실리콘 및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투자 수준에 비해 미미하다고 판단**함

  · **청원인은 BloombergNEF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 내 폴리실리콘 정제 설비 투자 규모가 USD 6억 4,300만~21억 수준**인 반면, 중국 태양광 대기업의 **제3국 내 전지 및/또는 모듈 설비 투자 규모는 USD 770만~ 1억 6,000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표 3-46] 국가별 투자 수준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캄보디아	• 청원인의 주장과 캄보디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투자 수준을 조사한 결과, 1개 기업(BYD HK)은 연구개발 수준이 우회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반면, 나머지 기업(NE Solar)은 우회와 관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BYD HK : 1999년 중국 모기업 BYD Company Limited(BYD LTD)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홍콩 기업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제조 설비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대상 상품을 캄보디아에서 생산하기 위해 3곳의 독립된 캄보디아 통가공업체(Unaffiliated Cambodian toll processors)와 통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중임[186] • NE Solar : 2019년 3월에 설립되어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생산 시설에서 2019년 8월부터 태양전지(solar cells)와 모듈(modules)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NE Solar 자사의 중국 계열사들이 수출업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NE Solar는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폴리실리콘(polysilicon), 또는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음 • NE Solar는 2019년 설립 시점부터 2021년까지 캄보디아에서의 총 자본 지출(capital expenses) 및 모듈 생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계열사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하지 않아 우회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말레이시아	• 청원인의 주장과 말레이시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투자 수준이 상당하여 경미하거나 사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우회와 관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한화(Hanwha) :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의 대출과 말레이시아 외(중국은 아님)에 소재한 계열사로부터의 자본 투입을 통해 초기 창업 자본을 확보하였고, 비(非)계열 공급업체들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하였으며, 조사 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투자를 한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았음 • 한화는 전지(cells)와 모듈(modules) 생산시설 관련 비용이 포함된 말레이시아에서의 총 자본 지출(capital expenses) 정보를 제공함 • 진코(Jinko) : 2015년에 모회사인 Jinko Solar Co., Ltd.(진코 지분 100% 보유)가 제공한 자본으로 설립되었고, 우회 조사 기간 동안 잉곳(ingots), 웨이퍼(wafers) 및 기타 원재료, 태양전지(solar cells)와 모듈(modules)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는 여러 중국 내 계열사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함. 진코의 말레이시아 내 투자와, 중국 내 진코 계열사들의 투자액을 비교한 결과, 우리는 예비적으로 진코의 말레이시아 내 투자가 경미하거나 사소하지 않았음 • 자사 및 중국 계열사(잉곳과 웨이퍼 생산)의 시설 건설 및 가동에 필요한 총 투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웨이퍼, 잉곳 생산 단계로 구분함
태국	• 청원인의 주장과 태국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투자 수준을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투자 수준이 상당하여 경미하거나 사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우회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CSIL : 태국 THSM(Canadian Solar Manufacturing (Thailand) Co., Ltd.)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는데 필요한 총 투자액과, CSIL이 제출한 자사 중국 계열사들의 웨이퍼 및 잉곳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기 위해 필요했던 총 투자액을 비교한 결과, CSIL/THSM의 태국 내 투자 수준이 중국 내 계열사의 투자 수준과 비교하여 사소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보아 우회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TTL : 태국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시설의 건설 및 가동에 필요한 총 투자액과, 중국 내 계열사의 웨이퍼 생산 시설 건설 및 가동에 필요한 총 투자액을 비교한 결과, TTL의 태국 내 투자 수준이 중국 내 계열사의 투자 수준과 비교하여 사소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보아 우회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베트남	• 청원인의 주장과 베트남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투자 수준을 조사한 결과, 1개 기업(Boviet)은 투자 수준이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수준으로 보아 우회와 관련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나머지 기업(Vina solar)는 투자 수준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우회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함 • Boviet : 베트남 내 태양전지/모듈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총 투자 규모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Boviet은 자사의 중국 내 계열사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Vina Solar : Vina Solar가 보고한 Vina Cell과 Vina Solar의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필요한 총 투자 규모를, Vina Solar가 보고한 중국 내 계열사의 웨이퍼 생산 시설 건설 및 가동에 필요한 총 투자 규모와 비교한 결과, 중국내 투자 규모 대비 베트남 내 투자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187]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 **(② 연구개발(R&D) 수준)** 청원인은 중국산 구성품을 사용하여 전지를 완성하고 모듈로 조립하는 것과 관련된 **제3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연구개발 수준이 중국내 연구개발 수준 대비 미미하다고 주장**함

  · 제3국내 전지 및 모듈 가공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보다 중국 내 모회사의 R&D에 의존비중이 높고, 제3국 기업 재무제표에서는 R&D가 주된 사업 또는 활동으로 식별되지 않거나 R&D 비용이 별도로 식별되지 않았으며, 중국 모회사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표 3-47] 국가별 연구개발 수준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캄보디아	• 청원인의 주장과 캄보디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진술한 내용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연구개발 수준을 조사한 결과, 1개 기업(BYD HK)은 연구개발 수준이 우회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반면, 나머지 기업(NE Solar)은 우회와 관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BYD HK : CSPV 전지 및/또는 모듈 관련 연구개발(R&D)을 수행하지 않았고, 독립 통가공업체(unaffiliated tollers)가 수행한 R&D 활동에 대해서도 정보를

186) 그 외 BYD HK는 캄보디아 통가공업체들이 현지에서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총 투자와, 잉곳(ingots)과 웨이퍼(wafer)를 생산하는 중국 계열사 Shangluo BYD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BYD HK는 이러한 투자를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웨이퍼, 잉곳의 생산 단계로 구분함

187) Vina Solar는 베트남 내 계열사인 Vina Cell이 생산한 태양전지로 태양광 모듈을 조립하는 업체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자사의 중국 내 계열사인 Shangluo BYD 및 Shanghai BYD Company Limited가 태양전지 및 모듈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 NE Solar : 자사가 캄보디아에서 생산하는 태양전지 및 모듈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임 • 자사의 중국 내 계열사들은 태양전지, 모듈, 폴리실리콘, 또는 웨이퍼 생산과 관련된 R&D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NE Solar의 조사 기간 동안의 R&D 지출은 전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것임
말레이시아	• 청원인의 주장과 말레이시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연구개발 수준을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연구개발 수준이 상당하여 경미하거나 사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우회와 관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한화(Hanwha) : 말레이시아 내 연구개발(R&D) 활동은 제조 공정 최적화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변환 효율(conversion efficiency) 향상을 통해 와트당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태양전지의 두께를 줄여 실리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독일 R&D 센터에서 개발된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성공적인 실행 등이 있음 • 조사 기간 동안 한화의 R&D 활동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었으며, 중국 내에서 조사 대상 물품과 관련한 R&D를 수행한 계열사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하지 않았음 • 진코(Jinko) :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말레이시아 내 R&D 활동과, 폴리실리콘 블록(polysilicon blocks), 봉(rod), 잉곳(ingots), 웨이퍼(wafers)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계열사들의 R&D 활동 정보를 제출함 • R&D 비용이 발생한 각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감사를 거친 재무보고서를 통해 해당 R&D 비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함 • 중국 내 계열사와 컨설팅 또는 생산 서비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기술적 사안에 대한 교류는 이루어진다고 진술함
태국	• 상무부가 청원인의 주장과 태국 내 2개 기업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수준을 조사한 결과, 1개 기업(CSIL)은 우회와 관련이 없었으나, 나머지 기업(TTL)은 우회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함 • CSIL : 태국 THSM(Canadian Solar Manufacturing (Thailand) Co., Ltd.)은 태국에서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과 관련된 R&D 비용을 지출한 반면, 중국 내 계열사들은 잉곳 및 웨이퍼 생산과 관련된 R&D 비용을 지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태국 내 R&D 비용이 중국 내 계열사들의 잉곳 및 웨이퍼 생산 관련 R&D 비용과 비교하여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우회와 관련 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TTL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태국에서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과 관련된 R&D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반면, TTL의 중국 내 계열사들은 웨이퍼 생산과 관련된 R&D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함
베트남	• 상무부가 청원인의 주장과 베트남 내 2개 기업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수준을 조사한 결과, 1개 기업(Boviet)은 연구개발 수준이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수준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기업(Vina solar)는 투자 수준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함

	• Boviet : 베트남에서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과 관련하여 R&D 비용을 지출하였고, 자사의 중국 내 계열사들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Vina Solar : 자사와 Vina Cell이 베트남에서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과 관련하여 R&D 비용을 지출했으며, 자사의 중국 내 계열사들은 웨이퍼 생산과 관련하여 R&D 비용을 지출했다고 진술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청원인은 제3국에서의 생산공정의 성격이 중국내의 생산공정에 비하여 덜 정교한 공정이라고 보았으며, 중국의 통합형 전지 생산자의 생산 활동을 제3국 내 회사의 중국산 실리콘 웨이퍼를 전지로 전환하고 전지를 모듈로 조립하는 활동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상무부는 태양전지 및 모듈의 생산공정을 평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 조립 단계는 본질적으로 조립 공정이라고 보았고**, 이는 태양전지를 직렬로 연결(stringing)-적층(laminating)하여 유리로 덮인 알루미늄 프레임에 장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모듈 조립 단계는 전지 변환 또는 그 이전 단계의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공정이라고 판단**함

  * 다섯 생산 단계 중 **두 단계(전지 생산, 모듈 조립)만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폴리실리콘 생산, 잉곳 생산, 웨이퍼 생산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제3국의 활동은 생산 활동, 투자, R&D, 비용, 기술 측면에서 중국 전지 생산자의 활동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관련 항목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응답자들은 **특정 생산 공정을 영업비밀(BPI,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로 취급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

- **(④ 생산시설의 규모)** 국가별로 생산 시설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일부 국가내 있는 생산시설은 중국의 생산 시설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경미하거나 사소하다고 판정한 반면, 일부 국가는 중국의 시설에 상당하는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중 **1개 기업(BYD HK)**

는 캄보디아 내 생산설비의 규모가 중국 내 계열사의 생산설비 규모에 비해 경미하거나 사소하다고 예비 판정한 반면, 나머지 기업(NE Solar)는 중국 내 제휴 웨이퍼 생산 시설이 없으므로 우회와 관련없다고 판단함

* BYD HK와 NE Solar가 제출한 캄보디아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시설의 토지, 장비, 건물 비용, 총 면적, 고용된 생산직 노동자의 수, 생산능력(capacity) 관련 정보를 토대로 판단함

· (말레이시아)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우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말레이시아 내 생산 시설 범위가 중국 내 계열사의 생산시설 범위에 비하여 경미하고 사소하다고 주장하여 우회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한화(Hanwha)는 **중국내 계열사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하지 않았으므로 경미하고 사소지 않아 우회와 관련없다고 판단함**

* 징코(Jinko) : 청원인은 말레이시아내 태양전지 및 모듈 공장의 규모가 각각 8,191㎡ 및 12,679㎡인 반면, 중국 내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생산시설과 실리콘 잉곳 생산시설의 규모는 각각 68,397㎡ 및 165,333㎡이라고 주장함[188)]

· (태국) 태국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태국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시설과 중국 내 계열사의 웨이퍼 및/또는 잉곳 생산시설의 면적,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우회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함

· (베트남) 베트남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189)]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 규모를 조사한 결과, Vina Sola의 베트남 내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우회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Boviet은 중국내 태양광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없어 베트남 내 시설이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함

[표 3-48] 국가별 생산 시설의 규모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캄보디아	• 캄보디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중 1개 기업(BYD HK)는 캄보디아 내 생산설비의 규모가 중국 내 계열사의 생산설비 규모에 비해 경미하거나

188) 그 외 JA 솔라의 말레이시아 시설이 19,357㎡인 반면, 중국 내 관련 시설은 38,157㎡~ 559,973㎡ 규모임
189) 베트남 내 기업 정보(사용된 건물, 면적(제곱피트),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 능력 등), 중국 내 계열사들의 정보(웨이퍼 및/또는 잉곳 생산 시설의 면적,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 능력에 관한 정보 등)를 제출함

	사소하다고 예비 판정한 반면, 나머지 기업(NE Solar)는 중국 내 제휴 웨이퍼 생산 시설이 없으므로 우회와 관련없다고 판단함 • BYD HK와 NE Solar가 제출한 캄보디아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시설의 토지, 장비, 건물 비용, 총 면적, 고용된 생산직 노동자의 수, 생산능력(capacity) 관련 정보를 토대로 판단함
말레이시아	•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우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말레이시아 내 생산 시설 범위가 중국 내 계열사의 생산시설 범위에 비하여 경미하고 사소하다고 주장하여 우회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한화(Hanwha)는 중국내 계열사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하지 않았으므로 경미하고 사소지 않아 우회와 관련없다고 판단함 • 징코(Jinko) : 청원인은 말레이시아내 태양전지 및 모듈 공장의 규모가 각각 8,191㎡ 및 12,679㎡인 반면, 중국 내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생산시설과 실리콘 잉곳 생산시설의 규모는 각각 68,397㎡ 및 165,333㎡이라고 주장함
태국	• 태국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태국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시설과 중국 내 계열사의 웨이퍼 및/또는 잉곳 생산시설의 면적,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우회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함
베트남	• 베트남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190]를 바탕으로 생산시설 규모를 조사한 결과, Vina Sola의 베트남 내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우회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Boviet은 중국 내 태양광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없어 베트남 내 시설이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 **(⑤ 부가가치 비중)** 청원인은 BloombergNEF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광 패널(PV) 모듈의 가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가치 비중은 27%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대부분** 조립 이후의 상태로 동남아시아에서 도착하지만 **상품 가치의 70%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이는 **태양광급 실리콘, 잉곳, 웨이퍼 및 전지 생산과 같은 조립 직전의 핵심 단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뿐만 아니라, **실리콘 기반 모듈이** 미국 내에서 조립되든 해외에서 조립되든,

190) 베트남 내 기업 정보(사용된 건물, 면적(제곱피트),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 능력 등), 중국 내 계열사들의 정보(웨이퍼 및/또는 잉곳 생산 시설의 면적,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 능력에 관한 정보 등)를 제출함

총 가치의 절반은 페이스트, 유리, 백시트와 같은 非실리콘 원자재에 의해 구성되며, 해당 원자재 공급업체의 **절대 다수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함[191]

- (캄보디아)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캄보디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을 조사한 결과 BYD HK와 NE Solar가 생산한 조사대상상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부품과 구성요소 가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함
- (말레이시아)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과 말레이시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192]을 조사한 결과 한화(Hanwha)와 징코(Jinko)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가공한 조사대상 상품의 가치 비중이 작지 않다(not a small proportion)고 판단함
- (태국) CSIL이 태국에서 수행한 가공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조사대상 상품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판정한 반면, TTL이 수행한 가공가치는 비중이 높다고 판단함
- (베트남) 베트남은 비시장경제국(NME)이므로 대체값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Boviet과 Vina Solar가 베트남 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전체 가치에서 상당한 비중(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한다고 판단하면서 우회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표 3-49] 국가별 투자 수준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캄보디아	• 캄보디아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중 1개 기업(BYD HK)는 캄보디아 내 생산설비의 규모가 중국 내 계열사의 생산설비 규모에 비해 경미하거나 사소하다고 예비 판정한 반면, 나머지 기업(NE Solar)는 중국 내 제휴 웨이퍼 생산 시설이 없으므로 우회와 관련없다고 판단함 • BYD HK와 NE Solar가 제출한 캄보디아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시설의 토지, 장비, 건물 비용, 총 면적, 고용된 생산직 노동자의 수, 생산능력(capacity) 관련 정보를 토대로 판단함
말레이시아	•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우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말레이시아 내 생산 시설 범위가 중국 내 계열사의 생산시설 범위에 비하여 경미하고 사소하다고 주장하여 우회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한화(Hanwha)는 중국내 계열사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하지 않았으므로 경미하

191) 청원인(Auxin)이 인용한 미국 NREL의 태양광 생산 현황 조사 결과와 BloombergNEF 보고서에는 페이스트와 웨이퍼의 결합 비용이 전지 생산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함

192) 제3국 내 단위당(per-unit) 비용(비중국산 원재료 투입재, 노동, 고정 및 변동 간접비, 판매·일반관리(SG&A) 비용, 이자 비용)을 합산하고, 이를 2021년 응답 기업의 조사대상 물품 미국 수출 판매 단위당 가중평균가치(weighted-average value)로 나눈값에 대한 정보임

	고 사소지 않아 우회와 관련없다고 판단함 • 징코(Jinko) : 청원인은 말레이시아내 태양전지 및 모듈 공장의 규모가 각각 8,191㎡ 및 12,679㎡인 반면, 중국 내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생산시설과 실리콘 잉곳 생산시설의 규모는 각각 68,397㎡ 및 165,333㎡이라고 주장함
태국	• 태국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태국 내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시설과 중국 내 계열사의 웨이퍼 및/또는 잉곳 생산시설의 면적,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 모두 우회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함
베트남	• 베트남 내 2개의 우회 조사 의무 응답 기업이 제출한 자료[193]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 규모를 조사한 결과, Vina Sola의 베트남 내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우회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Boviet은 중국내 태양광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없어 베트남 내 시설이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 (중국산 원재료 비중) 청원인은 BloombergNEF[194]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은 페이스트, 솔라 글라스, 알루미늄 프레임, 접속함, EVA, 백시트 및 기타 중국 공급 투입재의 비용이, 이 투입재들이 포함된 최종 제품의 총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고 주장함

* BloombergNEF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태양광 패널 실제 가치의 70%가 중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는데, 태양광급 실리콘, 잉곳, 웨이퍼 및 전지 생산과 같은 조립 이전의 핵심 단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청원인의 주장과 더불어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 및 구성품을 대체값(surrogate value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195], 평가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중국산 물품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총 물품 가치에서 상당한 비중**

193) 베트남 내 기업 정보(사용된 건물, 면적(제곱피트),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 능력 등), 중국 내 계열사들의 정보(웨이퍼 및/또는 잉곳 생산 시설의 면적, 고용된 생산 노동자의 수, 생산 능력에 관한 정보 등)를 제출함

194) Bloomberg 계열의 전략 리서치 기업으로, 글로벌 상품시장, 에너지 전환(저탄소 경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https://about.bnef.com/?utm_source=chatgpt.com)

195) 중국은 비시장경제국(NME)이므로 대체값을 사용함

(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한다고 판단함

□ **추가 고려 요소**

○ 미국 상무부는 우회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19 U.S.C. §1677j(b)(3)」에 규정된 다음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무역 패턴의 변화)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반덤핑 명령이후 무역패턴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함

- 청원인은 국제 무역 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무역통계를 인용하여,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 태양전지 및 모듈의 가치가 약 USD 28억에서 약 USD 21,320,358로 99% 이상 감소함[196)]

- (캄보디아) 미국의 캄보디아산 태양전지 및 모듈 수입액은 2011년에 전무하였으나, 2021년에 USD 231,568,494로 폭발적으로 증가함

- (말레이시아) 미국의 말레이시아산 태양전지 및 모듈 수입액은 2011년 USD 562,810,729에서, 2021년에 USD 1,672,904,267로 약 3배 증가함

- (태국) 미국의 태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 수입액은 2011년 USD 336,420에서, 2021년에 USD 1,142,641,657로 약 3배 증가함

- (베트남) 미국의 베트남산 태양전지 및 모듈 수입액은 2011년 USD 1,270,736에서, 2021년에 USD 1,314,001,218로 약 11배 증가함

○ (특수관계 여부) 청원인은 제3국 내 태양전지 가공업체 및 모듈 조립업체와 그들에게 투입재를 공급한 중국내 태양광 대기업간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두 집단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표 3-50] 국가별 특수관계 여부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캄보디아	•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상무부가 캄보디아내 기업과 태국 기업간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모두 중국 내 업체들과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음 • BYD HK : 중국의 BYD LTD의 자회사로, BYD 그룹에는 태양전지, 모듈 등 제조에 사용되는 투입재를 생산하는 중국 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BYD HK는 조사 기간 동안 중국 내 제휴사로부터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과 구성요소를 공급받음 • NE Solar : 조사 기간 동안 중국 내 제휴기업으로부터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에

196) 웨이퍼(Wafer)와, 페이스트, 솔라 글라스, 실란, 알루미늄 프레임, 접속함, EVA, 백시트 등과 같이 웨이퍼를 태양광 모듈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직접 자재를 대상으로 조사함

	사용되는 부품과 구성요소를 공급받았으므로, 제휴 관계가 입증됨
말레이시아	•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우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말레이시아 내 생산 시설 범위가 중국 내 계열사의 생산시설 범위에 비하여 경미하고 사소하다고 주장하여 우회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한화(Hanwha)는 중국내 계열사로부터 투입재를 조달하지 않았으므로 경미하고 사소지 않아 우회와 관련없다고 판단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상무부가 말레이시아내 기업과 태국 기업간 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모두 중국 내 업체들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 한화(Hanwha) : 대한민국 한화솔루션 주식회사(Hanwha Solutions Corporation)의 자회사이고, 태양전지·모듈 및 관련 투입재를 생산하는 한국 내 기업들을 포함하는 한화 그룹(Hanwha Group)의 일원이며, 조사 기간 동안 한화의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에 사용된 부품과 구성품을 공급한 중국 내 계열사와 제휴관계가 없었음 • NE Solar : 중국에 소재한 Jinko Solar Co., Ltd.의 자회사이고, 태양전지·모듈 및 관련 투입재를 생산하는 중국 내 기업들을 포함하는 진코 그룹(Jinko Group)의 일원으로, 조사 기간 동안 진코의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에 사용된 부품과 구성품을 공급한 중국 내 계열사와 제휴관계에 있었음함 • 징코(Jinko) : 청원인은 말레이시아내 태양전지 및 모듈 공장의 규모가 각각 8,191㎡ 및 12,679㎡인 반면, 중국 내 징코(Jinko) 솔라 그룹의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생산시설과 실리콘 잉곳 생산시설의 규모는 각각 68,397㎡ 및 165,333㎡이라고 주장함
태국	•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상무부가 중국내 기업과 태국 기업간 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모두 중국 내 업체들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 CSIL : 캐나다에 법적으로 등록·설립된 Canadian Solar Inc.의 자회사로, 태양전지·태양 모듈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투입재를 생산하는 중국 내 업체들을 포함하는 Canadian Solar 그룹의 일원이며. 조사 기간 동안 CSIL은 태양전지 및 태양 모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부품 및 구성품을 공급한 중국 내 기업들과 제휴 관계에 있었음 • TTL : 중국의 Trina Solar Co., Ltd.의 자회사로, 태양전지·태양 모듈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투입재를 생산하는 중국 내 업체들을 포함하는 Trina 그룹의 일원이며, 조사 기간 동안 TTL은 태양전지 및 태양 모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부품 및 구성품을 공급한 중국 내 기업들과 제휴 관계에 있었음
베트남	• 청원인의 주장을 토대로 상무부가 중국내 기업과 베트남 기업간 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모두 중국 내 업체들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함 • Boviet : 중국에 본사가 있는 Ningbo Boway Alloy Materials Co., Ltd. 의 자회사로, 조사 기간 동안 Boviet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또는 태양전지/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투입물을 생산하는 중국 내 기업과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Boviet의 모기업인 Ningbo Kyanite International Trade Co., Ltd.는 중국의 非계열 기업들로부터 부품과 구성요소를 구매하여 이를 베트남에 있는 Boviet으로 수출한 사례가 있음 • Vina Solar : 중국에 본사를 둔 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Co., Ltd.의 자회사로, 조사 기간 동안 LONGi 그룹과 중국내 기업들로부터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부품과 구성요소를 공급받았음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570-979, C-570-980)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미국 상무부는 2012년 부과된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CSPV) 관련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과 관련하여,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서 명령 부과 대상 중국산 웨이퍼와 핵심 부품(은페이스트, 글라스, 백시트, EVA, 알루미늄 프레임, 접속함)을 사용해 조립·완성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가 우회(circumvention)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23.8.18)함

- 제3국 사례 분석 결과 제3국 내 조립·완성 공정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 등 중국 내 전(前)단계 핵심 공정에 비해 투자·기술·R&D 수준이 낮고, 공정 자체도 본질적으로 단순하다고 보았음

- 또한 모듈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형성되는 등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높고,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제한적인 점을 확인하였으며, 무역패턴 변화(중국산 수입 급감 및 제3국산 수입 급증)와 특수관계(제3국 생산·수출기업과 중국 내 모·자회사 또는 계열 기업간 관계)존재도 확인되어 최종 우회 판정함

○ 본 건은 중국산 핵심 투입재 의존 + 제3국 단순 조립 + 對미 수출 급증 + 특수관계 사안들을 종합평가하여 우회로 판정한 사례이며, 예비 판정('22.12.1)과 최종 판정('23.8.18)까지 일관성을 가짐

○ 이는 향후 글로벌 태양광 패널 시장내에 중국산 웨이퍼·부품에 의존한 제3국 단순 조립 모델이 AD/CVD 우회 방안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임을 뜻하며, 나아가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글로벌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을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1.2. 추후 개발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1)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 및 베니어 패널(Veneered panels)[197]

사례번호	A-570-051/ C-570-052	
조사 개시일	2018.05.25	
최종판정	2019.11.22	
조사 대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중국의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198]과 유사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	
조사 배경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발효 후, 명령 발효 전까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었던 조사 대상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상품의 대체품으로 판매 및 마케팅 되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활엽수 합판 공정무역 연합(Coalition for Fair Trade in Hardwood Plywood, 이하 '청원인')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상무부에 우회 조사를 요청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c),(d), 19 CFR §351.225 및 19 CFR §351.226	
HS code 기존명령범위	총 127개의 HS code[199]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상업적 이용가능성	우회조사 협조 의무가 있는 3개 기업(Glary, Yuantai, Futuwood)은 모두 조사 대상 제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여부 조사 개시 이전부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였고, 3가지 기준[200]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무부는 그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업적으로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물리적 특성	조사 대상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적용 상품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조되며, 라디에타(radiata) 및 아가티스(agathis) 소나무 베니어를 벗겨내는데 사용되는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며, 유사한 접착제를 사용함
	최종구매자 기대 및 사품용도	최종 구매자는 조사 대상 상품이 실내 인테리어용(캐비닛, 가구, 기타 장식 등)으로 사용된다고 보았고 CARB/TSCA 요건을 충족하는 라벨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함
	유통경로, 광고 및 전시방식	중국 생산자, 수출업자, 미국내 수입업자들은 과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상품을 구매하던 동일한 고객들에게 조사 대상 상품을 대체제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광고내에서도 기존 제품과 동일한 용도를 갖고 있고 CARB/TSCA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함
결론	상무부는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한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사례에 대하여 추후 개발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기준에 근	

197) **(조사개시)**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September 21, 2018)(barcodes : 2018-20609)
(예비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ne 11, 2019)(barcodes : 2019-12285)
(최종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November 22, 2019)(barcodes : 2019-25889)

	거하여 우회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회한다고 판단함

본 사례는 미 상무부가 2016년에 부과한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한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으로 우회한 것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조사개시일	판정(예비/최종) (판정 일자)
나무 합판	A-570-051	2018.06.25	우회판정(최종) (2019.11.12)

□ 조사 배경

○ 2018년 1월 4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이하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이하 'CVD') 명령을 부과함

○ 2018년 6월 25일, 미국 활엽수 합판 공정무역 연합(Coalition for Fair Trade in Hardwood Plywood, 이하 "청원인")은「19 U.S.C. §1677j(d) 및 19 CFR 351.225(j)」에 근거하여,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에 대한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실시함

198) 표면(face) 및 이면(back) 베니어(Veneer)가 라디아타 소나무(radiata pine)나 아가티스 소나무(agathis pine)로 제작되어 있고, 유해물질규제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라벨을 보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urea formaldehyde), 폴리비닐아세테이트(polyvinyl acetate), 대두(soy) 중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하는 접착제(resin)를 주로 사용하여 제작된 합판

199) 하드우드 합판은 주로 다음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세번(subheadings) 하에서 수입: 4412.10.0500; 4412.31.0520; 4412.31.0540; 4412.31.0560; 4412.31.0620; 4412.31.0640; 4412.31.0660; 4412.31.2510; 4412.31.2520; 4412.31.2610; 4412.31.2620; 4412.31.4040; 4412.31.4050; 4412.31.4060; 4412.31.4075; 4412.31.4080; 4412.31.4140; 4412.31.4150; 4412.31.4155; 4412.31.4160; 4412.31.4180; 4412.31.5125; 4412.31.5135; 4412.31.5155; 4412.31.5165; 4412.31.5175; 4412.31.5235; 4412.31.5255; 4412.31.5265; 4412.31.5275; 4412.31.6000; 4412.31.6100; 4412.31.9100; 4412.31.9200; 4412.32.0520; 4412.32.0540; 4412.32.0565; 4412.32.0570; 4412.32.0620; 4412.32.0640; 4412.32.0670; 4412.32.2510; 4412.32.2525; 4412.32.2530; 4412.32.2610; 4412.32.2630; 4412.32.3125; 4412.23135; 4412.32.3155; 4412.32.3165; 4412.32.3175; 4412.32.3185; 4412.32.3235; 4412.32.3255; 4412.32.3265; 4412.32.3275; 4412.32.3285; 4412.32.5600; 4412.32.5700; 4412.33.0620; 4412.33.0640; 4412.33.0670; 4412.33.2630; 4412.33.3235; 4412.33.3255; 4412.33.3265; 4412.33.3275; 4412.33.3285; 4412.33.5700; 4412.34.2600; 4412.34.3235; 4412.34.3255; 4412.34.3265; 4412.34.3275; 4412.34.3285; 4412.34.5700; 4412.39.1000; 4412.39.3000; 4412.39.4011; 4412.39.4012; 4412.39.4019; 4412.39.4031; 4412.39.4032; 4412.39.4039; 4412.39.4051; 4412.39.4052; 4412.39.4059; 4412.39.4061; 4412.39.4062; 4412.39.4069; 4412.39.5010; 4412.39.5030; 4412.39.5050; 4412.94.1030; 4412.94.1050; 4412.94.3105; 4412.94.3111; 4412.94.3121; 4412.94.3141; 4412.94.3161; 4412.94.3175; 4412.94.4100; 4412.99.0600; 4412.99.1020; 4412.99.1030; 4412.99.1040; 4412.99.3110; 4412.99.3120; 4412.99.3130; 4412.99.3140; 4412.99.3150; 4412.99.3160; 4412.99.3170; 4412.99.4100; 4412.99.5115; 4412.99.5710. 4412.10.9000; 4412.94.5100; 4412.94.9500; 4412.99.6000; 4412.99.7000; 4412.99.8000; 4412.99.9000; 4412.99.950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200) 외부 베니어가 모두 라디아타 및/또는 아가티스 소나무로 제작되지 않았고, 주성분이 요소-포름알데히드,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대두 중 하나 이상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TSCA 또는 CARB 라벨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19 U.S.C. §1677j(d)」 '추후 개발된 물품'에 근거하여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우회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19 U.S.C. §1677j(d) 및 19 CFR 351.225(j)」조에 근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19 U.S.C. §1677j(c)」조 '경미한 변경'에 따른 우회 조사로 변경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함

○ 2018년 9월 21일, 상무부는「19 U.S.C. §1677j(d)」조에 근거하여 우회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청원인이 요청한 「19 U.S.C. §1677j(c)」조 '경미한 변경'에 따른 우회 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는 제외함

○ 2020년 2월 청원인은 중국산 베니어 합판이 베트남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상무부에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h)」에 근거한 우회 조사를 요청함

○ 2020년 6월, 상무부는 청원인의 요청을 받아「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c)(h)」에 근거한 우회 조사를 개시함

[표 3-51]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의 반덤핑 및 상계명령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 내용
16.12.08	• 상무부는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함
18.01.04.	• 상무부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발효함
18.06.25	• 청원인은 「19 U.S.C. §1677j(d)」 '추후 개발 물품'에 근거하여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우회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19 U.S.C. §1677j(d)」조에 근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19 U.S.C. §1677j(c)」조 '경미한 변경'에 따른 우회 조사로 변경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함
18.09.21	• 상무부는 「19 U.S.C. §1677j(d)」 및 19 CFR 351.225(j)」의 '추후 개발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에 근거한 우회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청원인이 언급한 「19 U.S.C. §1677j(C)」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우회 조사는 개시하지 않음
18.11.09	• 우회 조사 협조 의무가 있는 3개 기업[201]에게 우회조사 설문지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한 결과, 모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청원인은 2016년 12월 8일 이전에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지 못하다고 반박함
18.12.19	• 상무부는 3개 기업에 보충 설문지를 발송하여, 동년 11월에 제출한 문서가 조사 개시일 이전 조사 대상 상품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함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19.02.12	• 3개 기업 모두 보충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함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함
19.03.11	• 이에 청원인은 3개 기업이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조사일(2016년 12월 8일) 이전에 일정 기준[202]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19.06.11	• (예비판정) 상무부는 「19 U.S.C. §1677j(d) 및 19 CFR 351.225(j)」의 '추후 개발상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근거한 우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물품이 우회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함
19.11.22	• (최종판정) 상무부는 「19 U.S.C. §1677j(d) 및 19 CFR 351.225(j)」의 '추후 개발상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근거한 우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물품이 우회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함

자료 : (우회 조사 개시)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Circumvention Inquiry Certain Softwood Species Public document(A-570-051, C-570-052)(2019.6.4.)
(예비 판정)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7 FR 45753 (July 29, 2022)
(최종 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8 FR 46740 (July 20, 2023)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ㅇ (우회 조사 대상) 미국 상무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활엽수 합판 제품(hardwood plywood products)에 대한 우회 조사를 개시함

- 표면(face) 및 이면(back) 베니어가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 및/또는 아가티스 소나무(agathis pine)로 제작
- 유해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SCA") 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 라벨을 보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인증
- 요소 포름알데히드(urea formaldehyde), 폴리비닐 아세테이트(polyvinyl

201) Lian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Co., Ltd. (Yuantai), Linyi Glary Plywood Co. Ltd. (Glary), Shanghai Futuwood Trading Co., Ltd. (Futuwood)
202) ① 외부 베니어가 아가티스 또는 라디아타 소나무로 제작, ② CARB/TSCA 인증 라벨 부착, ③ 접착제가 요소-포름알데히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대두를 주성분으로 구성

acetate), 대두(soy) 중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하는 접착제(resin)를 주로 사용하여 제작

- 중국산 침엽수 합판(softwood plywood products)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외부 베니어가 침엽수(softwood) 수종으로 제작된 합판에 대해 일정 조건[203]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증(certificate)해야 함

ㅇ (기존 명령의 범위) 본 추후 개발 제품 관련 명령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52]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대상물품

ㅇ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 및 베니어 패널(Veneered panels)

ㅇ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 : 일반적으로 평평한 다층 합판 또는 기타 베니어(veneer) 패널로 정의되는데, 두 개 이상의 목재 베니어 층(Plies)과 심(Co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face) 및/또는 이면(back) 베니어가 활엽수(hardwood) 또는 대나무(Bamboo)로 제작된 것을 의미함('베니어 층';과 '심'은 다른 방식으로 접착 또는 결합 가능)

ㅇ 미국 국가 표준(ANSI/HPVA HP-1-2016, 그 개정판 포함)에서 규정하는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이 포함될 수 있음

- 베니어(veneer) : 두께에 관계없이 통나무(log), 볼트(bolt), 또는 플리치(flitch)에서 절단, 슬라이스, 톱질하여 얻은 목재 조각을 의미함. 표면(face) 베니어와 이면(back) 베니어는 다음에 명시된 추가적인 표면 코팅(surface coated)이나 덮개(covers)와 관계없는 심(core)의 양쪽에 위치한 가장 바깥쪽(the outermost) 베니어를 의미함

ㅇ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의 '심(core)'은 표면 및 이면 베니어 사이에 위치하는 한 층 또는 그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층으로 형성되어 있음

ㅇ '심(core)'은 활엽수(hardwood), 침엽수(softwood),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중밀도섬유판(MDF, medium-density fiberboard)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범위의 재료로 구성될 수 있음

- 모든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은 표면 베니어(face)와 이면(back) 베니어가 코팅 또는 커버되는지 여부 및 표면 코팅이나 커버가 목재의 결(grain), 질감(texture), 무늬(markings)를 가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령의 범위 안에 포함됨
- 표면 코팅 또는 커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례 : 자외선 경화 폴리우레탄(ultra violet light cured polyurethanes), 오일 또는 오일 개질 또는 수성 폴리우레탄(oil or oil-modified or water based polyurethanes), 왁스(wax), 에폭시-에스터 마감(epoxy-ester finishes), 수분경화형 우레탄(moisture-cured urethanes), 페인트(paints), 스테인(stains), 종이(paper), 알루미늄(aluminum), 고압 라미네이트(high pressure laminate), 중밀도 섬유판(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중밀도 오버레이(MDO, medium density overlay), 페놀 필름(phenolic film)
- 추가적으로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의 표면(face) 베니어는 연마(sanded), 평활 처리(smoothing), 핸드 스크래핑(hand-scraping) 처리나, 와이어 브

203) 외부 베니어가 모두 라디아타 및/또는 아가티스 소나무로 제작되지 않았고, 주성분이 요소-포름알데히드,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대두 중 하나 이상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TSCA 또는 CARB 라벨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러싱(wire brushing) 같은 방법을 이용한 노화 처리 효과(distressed appearance)를 줄 수 있음

- 모든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은 재단(trimmed), 규격 절단(cut-to-size), 노칭(notched), 펀칭(punched), 천공(drilled) 또는 기타 경미한 가공(minor processing)을 거쳤더라도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 또한 치수(dimension)에 상관없이(전체 두께, 표면 베니어 두께, 이면 베니어 두께, 심재 두께, 내부 베니어 두께, 폭, 길이 등 무관) 명령 범위에 포함됨
-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의 일반적 패널(panel) 크기는 1219 x 1829 mm(48 x 72 인치), 1219 x 2438 mm(48 x 96 인치), 그리고 1219 x 3048 mm(48 x 120 인치)임
- 제3국에서 추가 가공된 장식용 활엽수 합판(hardwood and decorative plywood)도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추가 가공에는 다듬기(trimmed), 규격 절단(cut-to-size), 노칭(notched), 펀칭(punched), 천공(drilled)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추가 가공 공정이 원 제조국가에서 수행되었더라도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준의 가공인 경우 명령 범위에 포함됨

□ 적용 제외 대상

- 구조용 합판(structural plywood)에 대한 미국 제품 표준 PS 1-09, PS 2-09, PS 2-10(구조용 합판에 대한 미국 표준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국제기준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 포함)을 충족하는 구조용 합판(structural plywood, '산업용 합판' 또는 '산업용 패널'과 동일함)으로, 침엽수(coniferous wood)로 구성된 표면(face) 베니어와 이면(back) 베니어를 가짐
- 구조용 합판(structural plywood, '산업용 합판' 또는 '산업용 패널'과 동일함)
- 표면(face) 베니어와 이면(back) 베니어 모두 코르크(cork)인 제품
- 중국산 다층 목재 바닥재(multilayered wood flooring)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 따라 정의된 제품으로 아래의 공고에 명시된 범위를 따름
  - Multilayered Wood Floor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6 FR 76690 (2011년 12월 8일, 공정가 이하 판매 최종판정(LTFV) 및 AD 명령)
  - Multilayered Wood Floor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6 FR 76693 (2011년 12월 8일, 상계관세 명령)
  - Amend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77 FR 5484 (2012년 2월 3일, 개정판)
- 표면(face) 베니어가 대나무(bamboo)이거나 전부가 대나무로 제작된 다층 목재 바닥재(multilayered wood flooring)
- 평평한 패널(flat panel)이 아닌 기타 형태 또는 디자인을 가진 합판(단, 경미한 가공은 예외)
- 대나무와 접착제로만 구성된 제품(또한 solid bamboo로 알려진 제품)
- 페놀 필름 표면 합판(Phenolic Film Faced Plyform, PFF) 또는 페놀 표면 필름 합판(Phenolic Surface Film Plywood, PSF)[204]으로 엔지니어드 우드 협회(Engineered Wood Association) 기준에 따른 'Exterior' 또는 'Exposure 1' 접착 등급을 가지는 패널
  - 표면 및 이면 베니어에 90g/m³ 이상 불투명 페놀 필름층이 영구적으로 부착되고, 모서리(edge)에는 불투명·내습성 코팅이 적용됨
- 수입 시 이미 완전히 조립(fully assembled)되어 있으며, 즉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제품
- 조립식 가구(Ready to Assemble, 이하 "RTA") :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포장되어 수입되는 가구로, 수입 시점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 최종 완성 가구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재 부품(완성형 상태) 포함
- 나사(screws), 와셔(washers), 목심(dowel), 못(nails), 손잡이(handles), 노브(knobs), 접착제(adhesive glues) 등 모든 부속품(accessory parts) 포함
- 완성 가구의 조립 방법을 안내하는 조립 설명서 포함
- 다음 제품도 RTA 가구로 간주되어 범위에서 제외

ㅇ 미조립 욕실 세면대 수납장(unassembled bathroom vanity cabinets) : 하나 이상의 세면대 공간이 있으며, 최종 치수(형상·사이즈)로 절단된 모든 활엽수 합판 부품과 함께 수입되며, 수입 전 도색·착색되어 있으며, 단일 포장 용기에 적재된 것(단, 다리(가구 받침대)는 별도 포장·선적 가능)

ㅇ 미조립 욕실 린넨 수납장(unassembled bathroom vanity linen closets) : 최종 치수(형상·사이즈)으로 절단된 모든 조립되지 않은 활엽수 합판 부품이 함께 수입되고, 수입 전 도색·착색되어 있으며, 단일 포장 용기에 적재된 경우(단, 다리(가구 받침대)는 별도 포장·선적 가능)

ㅇ 수입 시점에 완전히 조립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및 조립식 주방 수납장(RTA kitchen cabinets)

- 조립식(RTA) 주방 수납장은 최종 소비자 판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됨
- 최종 완성 수납장 조립에 필요한 모든 목재 부품(완성형 상태)
- 완성 수납장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부품(나사(screws), 와셔(washers), 목심(dowel), 못(nails), 손잡이(handles), 놉(knobs), 접착제(adhesive glues) 등)
- 완성 캐비닛의 조립 방법을 안내하는 조립 설명서를 모두 구비한 제품

ㅇ 완성된 테이블 상판(finished table tops) : 하부 프레임 또는 다리 부착을 위하여 사전 절단(pre-cut) 또는 타공 작업된 완성 형태로 수입된 테이블 상판으로, 수입 즉시 사용 가능하며, 추가적인 마감이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음

ㅇ 완성된 조리대 상판(finished countertops) : 완성된 형태로 수입되며, 추가적인 마감이나 제조 공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ㅇ 적층형 베니어 목재(Laminated Veneer Lumber, LVL) 도어 및 창문 부품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 됨

- 최대 폭 44mm, 두께 30~72mm, 길이 2413mm 미만
- 옥외용 내수 합판용 접착제(water boiling point exterior adhesive)[205] 사용
-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가 1,500,000 psi(파운드/제곱인치) 이상
- 모든층의 결(grain)이 평행하거나 다른 층에 결(grain)이 수직으로 형성된 3개 이하의 분산된 베니어 층으로 구성된 손가락 이음(finger-jointed) 또는 겹침 이음(lap-jointed)된 '심(core)' 베니어
- 곡선 모서리(curved edge)와 하나 이상의 프로파일 채널(profile channels)로 가공된 상층(top layer)
- 폭 50mm를 초과하지 않고, 길이는 2,450mm 미만의 적층형 베니어 목재(Laminated Veneer Lumber, LVL)로 만든 특정 도어 스타일(stiles) 및 레일(rails)

□ HTSUS 코드(단단한 목재로 구성된 합판)

ㅇ 4412.10.0500, 4412.31.0520 4412.31.0540 4412.31.0560 4412.31.0620 4412.31.0640 4412.31.0660 4412.31.2510 4412.31.2520 4412.31.2610 4412.31.2620 4412.31.4040 4412.31.4050 4412.31.4060 4412.31.4075 4412.31.4080 4412.31.4140 4412.31.4150 4412.31.4155 4412.31.4160 4412.31.4180 4412.31.5125 4412.31.5135 4412.31.5155 4412.31.5165 4412.31.5175 4412.31.5235 4412.31.5255 4412.31.5265 4412.31.5275

4412.31.6000	4412.31.6100	4412.31.9100	4412.31.9200	4412.32.0520	4412.32.0540
4412.32.0565	4412.32.0570	4412.32.0620	4412.32.0640	4412.32.0670	4412.32.2510
4412.32.2525	4412.32.2530	4412.32.2610	4412.32.2630	4412.32.3125	4412.32.3135
4412.32.3155	4412.32.3165	4412.32.3175	4412.32.3185	4412.32.3235	4412.32.3255
4412.32.3265	4412.32.3275	4412.32.3285	4412.32.5600	4412.32.5700	4412.33.0620
4412.33.0640	4412.33.0670	4412.33.2630	4412.33.3235	4412.33.3255	4412.33.3265
4412.33.3275	4412.33.3285	4412.33.5700	4412.34.2600	4412.34.3235	4412.34.3255
4412.34.3265	4412.34.3275	4412.34.3285	4412.34.5700	4412.39.1000	4412.39.3000
4412.39.4011	4412.39.4012	4412.39.4019	4412.39.4031	4412.39.4032	4412.39.4039
4412.39.4051	4412.39.4052	4412.39.4059	4412.39.4061	4412.39.4062	4412.39.4069
4412.39.5010	4412.39.5030	4412.39.5050	4412.94.1030	4412.94.1050	4412.94.3105
4412.94.3111	4412.94.3121	4412.94.3141	4412.94.3161	4412.94.3175	4412.94.4100
4412.99.0600	4412.99.1020	4412.99.1030	4412.99.1040	4412.99.3110	4412.99.3120
4412.99.3130	4412.99.3140	4412.99.3150	4412.99.3160	4412.99.3170	4412.99.4100
4412.99.5115	4412.99.5710	4412.10.9000	4412.94.5100	4412.94.9500	4412.99.6000
4412.99.7000	4412.99.8000	4412.99.9000	4412.99.950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 주요 판단 요건 및 내용

○ 미국 상무부(Commerce)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을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가 개시된 시점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commercially available) 여부를 가장 먼저 고려함

-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상품이 이미 상업 시장에 존재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해 테스트를 마치고 생산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함

○ 상업적 이용 가능성(Commercial Availability)

- 우회 조사 협조 의무가 있는 3개 기업(Glary, Yuantai, Futuwood)은 조사 대상 제품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 여부 조사 개시 이전부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증빙하기 위한 판매 서류(Sales documentation)를 제출하면서, 다음 3가지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함

205) 끓는 물에서도 견딜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한 것을 의미함

[표 3-53]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 우회 여부 판단 기준별 우회 조사 대상 기업 주장

기준	기업 측 주장
외부 베니어가 아가티스 또는 라디아타 소나무로 제작	• (Glary)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해당 상품을 'pine plywood'로 기재하고 있으며, 식물 및 식물제품 신고서(Plant and Plant Product Declaration Form, 이하 "PPQ")는 표면과 이면 베니어가 모두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임을 명시함 • (Futuwood)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에 상품이 'Radiata Pine Plywood'로 명시되어 있고, PPQ에는 합판이 'Pinus Radiata'로 구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함 • (Yuantai) 판매 입증 서류에 라디에타 소나무 합판(radiata pine plywood)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함
CARB/TSCA 인증 라벨 부착	• (Glary) 구매 주문서와 상업송장에 ''compliant-CCR SEC 91320.12E' 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CARB 라벨이 개별 패널 또는 포장 상자(crates)에 부착하였으며, 2016년 12월 8일 이전에 CARB 인증을 받은 하드우드 합판 생산업체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CARB 등록 인증서(CARB registration certificates)를 제출함 • (Futuwood) 구매 주문서와 상업송장에 'Phase 2 CARB certified' 및 'CARB ATCM Phase 2'라는 문구가 포함되었고, CARB 라벨들이 개별 패널 또는 포장 상자에 부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라벨에 Futuwood의 고객명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Phase 2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함 • (Yuantai) 판매 입증 서류에 라디에타 소나무 합판(radiata pine plywood)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함
접착제가 요소-포름알데히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대두를 주성분으로 구성	• (Glary) 표면 및 이면 베니어와 심재는 요소-포름알데히드 접착제(urea formaldehyde glue)로 접합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 현재의 요소-포름알데히드 접착제 생산 시설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매년 발급된 CARB 및 TSCA 등록 인증서에는 'urea formaldehyde'가 접착제 유형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함 • (Futuwood) 부분 번역된 요소-포름알데히드 접착제 구매 송장(invoices)을 제출하였고, 해당 송장에는 일부 공급업체가 요소-포름알데히드 접착제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 • (Yuantai) Yuantai는 판매 관련 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 명세서(packing list)를 제출하였고, 접착제(glue)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추후 보충 답변에서 최초 판매 문서와 연결되는 구매 주문서에 E0 접착제(E0 glue)가 표기되어 있었으며, 공급업체와의 판매 계약서 번역본에 합판은 요소-포름알데히드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Circumvention Inquiry Certain Softwood Species Public document(A-570-051, C-570-052)(2019.6.4)

○ 상무부가 3개 기업(Glary, Yuantai, Futuwood)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응답 기업들이 2016년 12월 8일 이전에 생산 및/또는 판매한 상품이 앞서 언급한 3가지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년 12월 8일 이전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표 3-54] 중국산 알루미늄의 한국 경유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기준	상무부 주장
외부 베니어가 아가티스 또는 라디아타 소나무로 제작	• (Glary) PPQ상의 수입자(importer)와 화물 수하인(consignee)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CBP에 제출한 수입신고서 상에 기재된 날짜를 다른 서류와 대조한 결과, 신뢰할 수 없는 자료(unreliable)라고 판단함 • (Futuwood) Futuwood의 판매 문서에 기재된 상품 설명d은 제품의 표면 및 이면 베니어가 모두 아가티스(agathis) 및/또는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로 제작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마케팅 자료에서 합판의 양면이 모두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판매 문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8일 이전에 판매된 제품은 표면과 이면 베니어가 서로 다른 수종인 것으로 나타남 • (Yuantai) Yuantai가 부정확하게 번역된 문서를 제출했으며, Yuantai가 제출한 선적 문서(shipping documents)는 Yuantai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았음에도, 2016년 12월 8일 이전에 표면 및 이면 베니어가 라디에타(radiata)나 아가티스(agathis) 소나무로 된 합판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판단함
CARB/TSCA 인증 라벨 부착	• (Glary) 인증서들이 Glary가 CARB 인증을 받은 합판 생산업체임을 입증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라디에타 소나무 베니어(radiata pine veneer)로 제작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CARB 인증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한 점은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제출한 판매 문서와 CARB 인증서 사이의 직접적 연계성(link)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Futuwood) 2013년~2018년까지 연도별로 제출된 라벨 사진에 어떤 상품이 인증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출한 CARB 제3자 인증서(third party certifications)에 기재된 인증 기간이 CARB 라벨이나 판매 문서의 날짜와 일치하지 않아, 2016년 12월 8일 이전의 판매 건이나 제출된 라벨·판매 문서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고 판단함 • (Yuantai) Yuantai가 부정확하게 번역된 문서를 제출했으며, Yuantai가 제출한 선적 문서(shipping documents)는 Yuantai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았음에도, 2016년 12월 8일 이전에 표면 및 이면 베니어가 라디에타(radiata)나 아가티스(agathis) 소나무로 된 합판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판단함
접착제가 요소-포름알데히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대두를 주성분으로 구성	• (Glary) 제출한 사진은 Glary의 현재 생산 공정을 보여줄 뿐, 2016년 12월 8일 이전 생산 방식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제출한 CARB 인증서에는 Glary가 특정 제품을 요소-포름알데히드 접착제로 제조했음을 보여줄 수 있었으나, 이는 판매 문서에서 언급된 제품이나 라디에타(radiata)/아가티스(agathis) 소나무 베니어가 사용된 합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Futuwood) 접착제 구매 송장은, 해당 공급업체가 실제로 라디에타(radiata)나 아가티스(agathis) 소나무 베니어로 된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을 요소-포름알데히드 접착제로 생산했음을 입증하지 못함 • (Yuantai) 제출한 판매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이었고, 미국 외 국가에 판매한 건의 문서에도 요소-포름알데히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성분 사용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Circumvention Inquiry Certain Softwood Speciesublic document(A-570-051, C-570-052)(2019.6.4)

ㅇ 만약 상무부가 해당 제품이 조사 개시 시점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새로운 상품으로 판단하였다면, 상무부는 대상 상품이 다음의 5가지 요소(물리적 특성, 최종 구매자의 기대, 최종 용도, 유통 경로, 광고 및 진열 방식)를 고려하여야 함

① 일반적 물리적 특성

ㅇ 청원인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상품(subject merchandise, 이하 “명령 부과 상품”)의 직접적인 대체재(direct substitute)로 시장에 공급 중이며, 조사 대상 상품에는 활엽수(hardwood) 베니어가 포함되며, CARB/TSCA 인증이나 특정 접착제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조사 대상 상품은 동일한 규격(dimensions)으로 제조되며, 라디아타·아가티스 소나무 베니어를 벗겨내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대상 상품의 베니어를 가공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
- 라디에타(radiata)·아가티스(agathis) 소나무 베니어는 동일한 CARB/TSCA 라벨 요건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한 접착제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조사 대상 기업인 Glary와 Futuwood는 명령 부과 대상 상품(subject merchandise)과 조사 대상 상품은 어느 정도 상호 대체 가능하다(substitutable)고 보았으며, Yuantai도 파인 합판(pine plywood)은 범위 상품(scope merchandise)과 유사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함

ㅇ 상무부는 명령 부과 상품과 조사 대상 상품 모두 최종 구매자 관점에서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고 판정함

② 최종 구매자의 기대 및 상품 용도

ㅇ 청원인과 응답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상품(subject merchandise, 이하 “명령 부과 상품”)과 조사 대상 상품(inquiry merchandise)의 최종 구매자 기대는 동일하다고 보았음

- 명령 부과 상품이 주로 실내(interior) 용도에 사용된다고 보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조사 대상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부과 상품과 동일한 특성 및 동일한 용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최종 구매자의 기대가 두 상

품 모두 동일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함

- 또한 실내/장식용(interior/decorative) 합판은 반드시 CARB/TSCA 인증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최종 구매자는 명령 부과 상품과 조사 대상 상품 모두 CARB/TSCA 요건을 충족하는 라벨을 갖추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조사 대상 기업) Futuwood는 조사 대상 상품의 최종 구매자가 실내용(interior use)을 희망한다고 보았고, Glary와 Futuwood는 두 상품 간의 기대가 다르다고 시사하는 어떠한 구분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Yuantai는 조사 대상 상품에 대한 최종 구매자의 기대는 그 최종 사용 용도와 유사하다고 보았음

ㅇ (상무부 판정) 상기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상무부는 대상 상품과 조사 대상 상품 모두 최종 구매자의 기대가 동일하다고 판정함

③ 사용 용도 (Use of the Merchandise)

ㅇ 청원인은 명령 부과 상품과 조사 대상 상품의 최종 사용 용도가 동일하다고 보았고, 두 상품 모두 동일한 규격(dimensions)으로 제공되며, 캐비닛(cabinetry), 가구(furniture), 기타 장식·실내용 목적 등 동일한 실내 장식 용도로 판매된다고 지적함

- 청원인은 홈디포(Home Depot)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라디아타 소나무 합판의 화면 캡처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합판이 실내용(interior use)에 완벽하며 심미적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캐비닛 부품, 가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함

ㅇ Futuwood는 조사 대상 상품과 명령 부과 상품(subject merchandise)의 최종 사용 용도와 최종 구매자의 기대는 모두 실내용(interior use)이라고 진술하였고, Yuantai는 상품의 최종 사용은 가구, 장식, 포장, 바닥재 심재, 건축 자재 등에 사용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Glary는 최종 구매자의 기대와 최종 사용 용도를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 상품 모두 실내용에만 사용된다고 보았음

ㅇ 조사 대상 기업의 진술과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상무부는 대상 상품과 조사 대상 상품의 최종 사용 용도는 동일하다고 판정함

④ 유통(거래) 경로 (Channels of Trade)

ㅇ 과거 조사 대상 상품을 판매했던 중국 생산자, 수출업자, 미국 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고객에게 조사 대상 상품을 직접적인 대체재(direct alternative)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조사 대상 상품(inquiry merchandise)과 명령 부과 상품(subject merchandise)의 유통 경로가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온라인 판매 자료에서도 조사 대상 상품과 표면 및 이면이 활엽수(hardwood) 베니어로 된 대상 상품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함

- 대형 소매업체(big-box retailers)들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조사 대상 상품을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 범주 아래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홈디포(Home Depot) 및 알리바바(Alibaba) 웹사이트 화면 캡처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 해당 화면에는 'Prefinished Radiata Pine Plywood' 세부 설명 아래에 'Compare Similar Hardwood Plywood'라는 비교 부문이 있으며, 여기에서 버치(birch), 메이플(maple), 레드오크(red oak) 등 활엽수 베니어를 사용한 다른 합판들이 대체재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함

ㅇ (상무부 판정) 상무부는 청원인이 제출한 문서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 상품과 명령 부과 상품의 유통경로는 동일하다고 판정함

⑤ 광고 및 전시방식 (Advertisement and Display) 및 판매경로(Channels of Trade)

ㅇ 조사 대상 상품이 명령 부과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 및 진열되고 있다고 주장함

- 중국 생산자, 수출업자, 미국 내 수입업자들은 명령 부과 상품(표면 또는 이면이 활엽수 베니어로 된 제품)을 구매하던 동일한 고객들에게 조사 대상 상품을 직접적인 대체재로 제공하고 있었음

- 조사 대상 상품은 명령 부과 상품과 동일한 용도를 위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사 대상 상품은 광고(advertisements)에서 명령 부과 상품과 동일한 용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상품과 명령 부과 상품 모두 TSCA/CARB 요건을 충족(compliant)한다고 나타냄

ㅇ 원인이 제출한 문서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 상품과 명령 부과 상품은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 및 진열되고 있다고 판정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ㅇ 상무부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에 대한 우회 조사(A-570-051, C-570-052)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함

ㅇ 조사 대상 상품이 기존 명령 부과 상품인 활엽수 합판(hardwood plywood)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인지에 집중하였으며,「19 U.S.C. §1677j(d)」의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기준에 따라, 물리적 특성, 최종 구매자의 기대, 사용 용도, 유통경로, 광고 및 전시방식 등 다섯 가지 법정 판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함

- 물리적 특성 : 기존 합판과 동일 규격·재질을 갖추고 있으며, 차이는 단순한 외부 베니어 수종 및 접착제 요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구매자 기대 및 최종 용도 : 두 상품 모두 실내용·장식용으로 인식되며, 동일한 TSCA/CARB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 유통경로와 광고 방식: 동일한 수출입업자·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동일한 범주의 합판으로 광고·전시되는 점을 확인함

ㅇ 상무부는 해당 조사 대상 상품이 기존 명령의 대상 상품과 상업적·기능적으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이는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에 대한 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함

2) 알루미늄 압출제품[206]

사례번호	A-570-967 / C-570-968	
조사개시일	2016년 3월 14일	
최종판정일	2017년 7월 20일	
조사 대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중국의 알루미늄 압출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	
조사 배경	미국 알루미늄 압출제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중왕홀딩스 및 계열사에서 생산된 일부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2011년에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부과 받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또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국 상무부(DOC)가 우회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함	
적용 법령	19 U.S.C. §1677j(b),(c),(d), 19 CFR §351.225 및 19 CFR §351.226	
HS code (명령범위)	총 124개 HS Code[207]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법적요건)	우회 조사 초기에 중왕홀딩스의 수출 사례(미국 직접 수출, 베트남 우회 수출)와 도미니카공화국 우회 수출 사례 모두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 또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근거한 우회 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왕홀딩스의 미국 직접 수출 사례만 '추후 개발 물품'에 따른 우회 사례로 나타남	
	추후개발물품 (미국 수출)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이 부과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6시리즈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우회하는 제품(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 수입 내역, 가격 견적 확보 및 유사제품 시험 결과를 토대로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최종 사용자 기대 및 상품용도) 미국 국내 생산기업들이 6시리즈 합금으로 제조되는 샤워부스 부품 시장에서 문제의 알루미늄 합금제품과 경쟁중이며, 그 과정에서 합금종류가 고객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광고, 전시 및 판매경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6시리즈, 7시리즈 등과 구분 없이 관련 제품을 동일하게 취급 및 판매중임 (변경 비용 및 대상 상품 수입 당시 상황)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6시리즈 합금을 5시리즈 합금으로 변경하는데 증가한 비용(파운드당 약 4.6%)이 전체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180% 이상)과 비교하였을 때 미미함

206) **(조사개시)**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March 5, 2018)(barcodes : 2018-04390)
(예비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May 17, 2019)(barcodes : 2019-10275)
(최종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and Partial Rescission(August 12, 2019)(barcodes : 2019-17194)

207) (기본) 7609.00.00, 7610.10.00, 7610.90.00, 7615.10.30, 7615.10.71, 7615.10.91, 7615.19.10, 7615.19.30,

결론	상무부는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미국 직접 수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과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베트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우회하였다고 판단함

본 사례는 미 상무부가 2011년 5월에 부과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또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으로 우회한 것에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조사개시일	조사결과	우회판정 (예비/최종)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A-570-967 (2011.05)	7609, 7610 등 총 124개	16.03.14	추후개발물품	최종판정

□ 조사 배경

○ 2015년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제품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청원인")는 2011년 5월에 발령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하 "명령")이 부과된 알루미늄 제품[208]과 중국 중왕(Zhongwang)홀딩스 유한공사(이하 "중왕") 및 계열사가 생산하는 화학적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된 알루미늄 제품이 상호 유사하다고 판단함

○ 2015년 12월 30일, 청원인은 미국 상무부에 「19 U.S.C. §1677j(c)」의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과 「19 U.S.C. §1677j(d)」의 '추후개발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여부에 근거한 우회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상무부는 2017년 7월에 해당 사례가 '추후개발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기인하여 우회한다고 최종 판정함

7615.19.50, 7615.19.70, 7615.19.90, 7615.20.00, 7616.99.10, 7616.99.50, 8479.89.98, 8479.90.94, 8513.90.20, 9403.10.00, 9403.20.00, 7604.21.00.00, 7604.29.10.00, 7604.29.30.10, 7604.29.30.50, 7604.29.50.30, 7604.29.50.60, 7608.20.00.30, 7608.20.00.90, 8302.10.30.00, 8302.10.60.30, 8302.10.60.60, 8302.10.60.90, 8302.20.00.00, 8302.30.30.10, 8302.30.30.60, 8302.41.30.00, 8302.41.60.15, 8302.41.60.45, 8302.41.60.50, 8302.41.60.80, 8302.42.30.10, 8302.42.30.15, 8302.42.30.65, 8302.49.60.35, 8302.49.60.45, 8302.49.60.55, 8302.49.60.85, 8302.50.00.00, 8302.60.90.00, 8305.10.00.50, 8306.30.00.00, 8414.59.60.90, 8415.90.80.45, 8418.99.80.05, 8418.99.80.50, 8418.99.80.60, 8419.90.10.00, 8422.90.06.40, 8473.30.20.00, 8473.30.51.00, 8479.90.85.00, 8486.90.00.00, 8487.90.00.80, 8503.00.95.20, 8508.70.00.00, 8515.90.20.00, 8516.90.50.00, 8516.90.80.50, 8517.70.00.00, 8529.90.73.00, 8529.90.97.60, 8536.90.80.85, 8538.10.00.00, 8543.90.88.80, 8708.29.50.60, 8708.80.65.90, 8803.30.00.60, 9013.90.50.00, 9013.90.90.00, 9401.90.50.81, 9403.90.10.40, 9403.90.10.50, 9403.90.10.85, 9403.90.25.40, 9403.90.25.80, 9403.90.40.05, 9403.90.40.10, 9403.90.40.60, 9403.90.50.05, 9403.90.50.10, 9403.90.50.80, 9403.90.60.05, 9403.90.60.10, 9403.90.60.8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9403.90.80.10, 9403.90.80.15, 9403.90.80.20, 9403.90.80.41, 9403.90.80.51, 9403.90.80.61, 9506.11.40.80, 9506.51.40.00, 9506.51.60.00, 9506.59.40.40, 9506.70.20.90, 9506.91.00.10, 9506.91.00.20, 9506.91.00.30, 9506.99.05.10, 9506.99.05.20, 9506.99.05.30, 9506.99.15.00, 9506.99.20.00, 9506.99.25.80, 9506.99.28.00, 9506.99.55.00, 9506.99.60.80, 9507.30.20.00, 9507.30.40.00, 9507.30.60.00, 9507.90.60.00, 9603.90.80.50.

208)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부여받은 제품 범위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6으로 시작하는 합금으로 제조된 압출제품(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5로 시작하고 마그네슘 함량이 중량 기준 1%를 초과하는 합금으로 제조된 압출제품은 제외)

[표 3-55] 합금 및 열처리된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의 우회 조사 주요 경과

구분	주요내용
11.05.26	• 2011년 5월 26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부과를 최종 확인하고, 반덤핑 관세(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하 “명령”)을 부과[209]하였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해당 수입품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함
15.12.30	• 미국 알루미늄 압출제품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청원인”)[210]는 2011년에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 부과된 알루미늄 제품과 유사한 중국 중왕(Zhongwang)홀딩스 유한공사(이하 “중왕”) 및 계열사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상무부에 관세법 제781조 (c)항의 경미함(Minor or Insignificant)과 (d)항의 추후개발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여부에 근거한 우회조사를 요청함 * 화학적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된 알루미늄 제품 •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이 부과된 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6으로 시작하는 합금으로 제조된 압출제품[211]* • 청원인은 6시리즈 번호를 부여받은 합금은 마그네슘 함량이 총 중량의 최소 0.1% 이상 최대 2% 이하인데, 중왕홀딩스가 화학적 구성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6시리즈와 유사한 5시리즈 번호의 합금을 만들거나, 5시리즈 번호를 부여받은 합금에 6시리즈 합금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열처리(tampering)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음[212]
16.03.14	• 청원인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상무부는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 및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우회조사를 실시함
16.11.14	• (예비판정) 상무부는 화학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와 관계없이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하여 중국의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였으며,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사안에 대한 우회조사 철회를 결정함
17.07.20	• (최종판정) 상무부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관계없이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의 화학 규격을 충족하고 열처리된 압출 알루미늄 제품이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사안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한다고 최종 판정함
18.03.05	• 청원인은 2016년도 중국 중왕홀딩스의 알루미늄 압출제품 우회사안에 대한 고발에 이어, 2018년 1월 9일에 문제의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하여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미 상무부에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of merchandise)과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 에 근거한 우회조사 실시 요청에 따라 우회조사 개시
18.09.25	• 미국 Air Master Awning LLC(이하 “Air Master”)는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창틀 압출제품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공하여 알루미늄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s)로 생산한 다음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물건의 경미한 변경(mlnor alteration of merchandise)’라고 보고, 상무부에 우회조사를 요청함

19.05.17	• (예비판정)상무부의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베트남 우회 여부 조사 결과,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근거하여 2011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함
19.08.12	• (최종판정)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일부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근거하여 2011년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으며,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에 대한 우회조사는 철회함
20.03.03	• 2018년 9월 25일에 조사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공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기반 Jalousie 셔터 사례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는 우회조사 철회를 결정함 • 상무부는 최종 범위 판정에서 우회조사 목적이 '명령 범위 밖으로 보이는 제품이 경미한 형태나 외관 변경을 통하여 범위 내 제품으로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건은 명령 범위 내의 제품으로 판단함

자료 : U.S. Federal Register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570-967, C-570-968][213]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중국의 중왕이 생산한 '화학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 과정을 거친 압출 알루미늄 제품'이며[214], 이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임

- 근거법령은 「19 U.S.C. §1677j(c)」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 「19 U.S.C. §1677j(d)」 '추후 개발 제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및 (b)항의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임

  · 「19 U.S.C. §1677j(c)(1)」은 반덤핑(AD) 및 상계관세명령(CVD) 대상 상품과

209)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Antidumping Duty Order(A Notice by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n 05/26/2011)
210) Aluminum Extrusions Fair Trade Committee
211) 마그네슘 함량이 총 중량의 최소 0.1% 이상 최대 2% 이하이고, 실리콘 함량이 총 중량의 최소 0.1% 이상 최대 3% 이하 인 것으로 규정함
212) 이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현재 5050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열처리를 탬퍼링(Tampering) 공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5050 합금 기준으로 변형경화(Strain-hardening) 또는 냉간가공(Cold-working) 공정 기반 탬퍼링(Tampering) 적용 여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213) 최초 명령은 2011년 5월 26일에 발령되었으며 그 이후, 실제 우회조사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음
- 상무부 우회조사 사건번호 : 2016-06299, 2016-27346, 2017-15683, 2018-04390, 2019-09214, 2019-10275, 2019-17194, 2019-27135, 2019-28389, 2020-04345
214) 열처리를 거치며 마그네슘 함량이 약간 증가하여 5050 합금으로 분류되나(1.1%), 실질적으로는 6시리즈 합금(ex-6063 합금) 마그네슘 함량 범위(0.45~0.9% 기준)를 0.2% 높인 것으로 보고 명령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마그네슘 함량 증가는 마그네슘 시장 가격 기준 5050 제품 파운드당 4.63%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전체 빌렛(Billet) 생산비용을 놓고 보았을 때 0.52%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같은 종류의 상품이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 명령 우회가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음

· 「19 U.S.C. §1677j(c)(2)」는 행정 당국이 변경된 상품을 명령 범위 내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15] (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19 U.S.C. §1677j(c)」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19 U.S.C. §1677j(d)」의 '추후 개발 제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판단 기준인 상품 전체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자 기대, 상품의 용도, 판매 채널, 홍보 및 전시 방식 등을 고려함

○ (명령의 범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는 다음과 같음

[표 3-56]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적용 대상 : 알루미늄 협회에서 정한 합금 시리즈 번호(1, 3, 6으로 시작)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되었고, 압출공정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압출제품(extrusion)
ㅇ 1번 시리즈(순도 99% 이상 알루미늄), 3번 시리즈(망간이 주요 합금 원소이며, 무게 기준 전체 재료의 3% 이하), 6번 시리즈(마그네슘과 실리콘이 주요 합금 원소로, 무게 기준 전체 재료의 최소 0.1% 이상, 최대 2~3% 이하(마그네슘 최대 2%, 실리콘 최대 3% 이하))
ㅇ 해당 알루미늄 압출재는 소수점 또는 선행 문자 없이 4단위 합금 시리즈로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함
ㅇ 해당 알루미늄 압출재를 분류하는 약 160개의 등록된 합금중 대표적인 예시는 1350, 3003, 6060임
ㅇ 알루미늄 압출재는 중공 프로파일, 기타 고체(soilid) 프로파일, 파이프, 튜브, 막대(Bar), 봉(Rod) 등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생산 및 수입되며, 압출 후 인발(drawn)된 알루미늄 압출제품도 본 명령의 범위 내에 포함됨
ㅇ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다양한 마감 형태(도포 및 표면 처리)와 제작 방식으로 생산 및 수입되며, 해당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적용되는 도포 및 처리의 유형은 밀링(mill) 마감처리된 압출제품(도포나 추가 마감 처리 없음), 브러시처리(brushed), 버핑(buffed), 연마(polished), 산화 처리(anodized)(연마 산화 처리 포함), 액상 도장(liquid painted), 파우더 도포(powder coated)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ㅇ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조립을 위하여 준비 또는 제작될 수 있으며, 제작 작업은 길이대로 절단하거나(cut-to-length), 기계 가공(machined), 천공(drilled), 펀칭(punched), 노치(notched), 구부림(bent), 늘림(stretched), 널링(knurled), 스웨징(swedged), 마이터(mitered), 모서리를 깎은 것(chamfered), 나선 가공(threaded) 및 방적(spun)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ㅇ 명령의 범위 내 제품은 마감 처리(도포 및 도장처리 등), 가공 또는 이들이 결합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포함
ㅇ 해당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수입 시 수입 후 조립된 최종 완제품의 부품으로 설명 될 수

215)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altered merchandise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it would be unnecessary to consider the altered merchandise with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order, or finding.

216) 예를 들어 유리가 들어 있는 완성된 창문, 유리 또는 비닐이 포함된 문, 유리판 및 지지대(backing material)가 포

있고, 여기에 창틀, 문틀, 태양광 패널, 커튼 월(curtain wall) 또는 가구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물품에 국한 되지 않음

- 알루미늄 압출제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부품도 본 명령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데, 하위 조립품을 만들기 위하여 (용접이나 파스너(fastener)에 의하여)부착된 알루미늄 압출제품 구성요소를 포함함. 즉,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의된 '키트(kit)' 완제품의 부품으로 수입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명령의 범위에 포함됨

□ 하위 조립품 또는 해당 키트(kit)의 非알루미늄 압출제품은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압출제품, 예를 들어, 울타리 기둥(fence posts), 전기 도관(electrical conduits), 문지방(door thresholds), 카펫 트림(carpet trim), 방열판(heat sinks)(아래와 같이 완제품 방열판 제외 관련 문구를 충족하지 않음)의 경우 최종 사용 용도(end use)에 따라 구별되며, 수입 시 사용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령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충족할 경우, 명령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상품임

□ 적용대상 물품의 HTSUS 코드는 다음과 같음

- 7609.00.00, 7610.10.00, 7610.90.00, 7615.10.30, 7615.10.71, 7615.10.91, 7615.19.10, 7615.19.30, 7615.19.50, 7615.19.70, 7615.19.90, 7615.20.00, 7616.99.10, 7616.99.50, 8479.89.98, 8479.90.94, 8513.90.20, 9403.10.00, 9403.20.00, 7604.21.00.00, 7604.29.10.00, 7604.29.30.10, 7604.29.30.50, 7604.29.50.30, 7604.29.50.60, 7608.20.00.30, 7608.20.00.90, 8302.10.30.00, 8302.10.60.30, 8302.10.60.60, 8302.10.60.90, 8302.20.00.00, 8302.30.30.10, 8302.30.30.60, 8302.41.30.00, 8302.41.60.15, 8302.41.60.45, 8302.41.60.50, 8302.41.60.80, 8302.42.30.10, 8302.42.30.15, 8302.42.30.65, 8302.49.60.35, 8302.49.60.45, 8302.49.60.55, 8302.49.60.85, 8302.50.00.00, 8302.60.90.00, 8305.10.00.50, 8306.30.00.00, 8414.59.60.90, 8415.90.80.45, 8418.99.80.05, 8418.99.80.50, 8418.99.80.60, 8419.90.10.00, 8422.90.06.40, 8473.30.20.00, 8473.30.51.00, 8479.90.85.00, 8486.90.00.00, 8487.90.00.80, 8503.00.95.20, 8508.70.00.00, 8515.90.20.00, 8516.90.50.00, 8516.90.80.50, 8517.70.00.00, 8529.90.73.00, 8529.90.97.60, 8536.90.80.85, 8538.10.00.00, 8543.90.88.80, 8708.29.50.60, 8708.80.65.90, 8803.30.00.60, 9013.90.50.00, 9013.90.90.00, 9401.90.50.81, 9403.90.10.40, 9403.90.10.50, 9403.90.10.85, 9403.90.25.40, 9403.90.25.80, 9403.90.40.05, 9403.90.40.10, 9403.90.40.60, 9403.90.50.05, 9403.90.50.10, 9403.90.50.80, 9403.90.60.05, 9403.90.60.10, 9403.90.60.80, 9403.90.70.05, 9403.90.70.10, 9403.90.70.80, 9403.90.80.10, 9403.90.80.15, 9403.90.80.20, 9403.90.80.41, 9403.90.80.51, 9403.90.80.61, 9506.11.40.80, 9506.51.40.00, 9506.51.60.00, 9506.59.40.40, 9506.70.20.90, 9506.91.00.10, 9506.91.00.20, 9506.91.00.30, 9506.99.05.10, 9506.99.05.20, 9506.99.05.30, 9506.99.15.00, 9506.99.20.00, 9506.99.25.80, 9506.99.28.00, 9506.99.55.00, 9506.99.60.80, 9507.30.20.00, 9507.30.40.00, 9507.30.60.00, 9507.90.60.00, 9603.90.80.50
- 적용대상 물품이 기타 알루미늄 제품의 부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HTSUS 제76류의 하위로 분류(7610.10, 7610.90, 7615.19, 7615.20, 7616.99)될 수 있음
- 핀형 증발기 코일(fin evaporator coils) : 8418.99.80.50 및 8418.99.80.60로 분류될 수 있음

□ 적용 제외 대상

번호	대상	내용
1	알루미늄 압출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2로 시작하며 중량 기준 구리 함량이 1.5%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압출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5로 시작하며 중량 기준 마그네슘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압출제품 • 미국 알루미늄 협회 시리즈 번호가 7로 시작하며 중량 기준 아연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압출제품 • 수입 시 완전히, 영구적으로 조립·완성된 제품(ex-유리가 포함된 완제품 창문, 유리가 포함된 문, 유리판과 받침 재료가 포함된 사진 액자, 태양광 패널)
2	완제품 키트	• 시작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조립되어 완성된 부품의 형태를 가진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제품 제외[216] • 완제품 키트 내에 조립되지 않은채로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포함하는 완제품도 제외됨 • 완제품 키트(kit)는 수입 시 최종 완성품을 완전하게 조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포함하고, 추가적인 마감 또는 제작을 요구하지 않으며(예를 들어 절단 또는 펀칭), 현재 상태 그대로(as is) 조립해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포장된 부품 모음을 의미함 • 수입품은 완제품 키트(kit)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알루미늄 압출제품과 함께 포장된 물건에 나사, 볼트 등 파스너(fasteners) 부품을 포함한 것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됨
3	압출 공정외 기타 공정	• 압출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으로 제조된 알루미늄 합금 판재(Sheet)나 판(Plate)을 제외 • 주조(Casting) 방식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은 제외 : 주조 알루미늄 제품은 소수점을 포함한 네 자리 숫자로 구분되고, 네 자리 숫자 앞에 문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붙을 수 있으며, 알루미늄 협회가 지정한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번호는 208.0, 295.0, 308.0, 355.0, C355.0, 356.0, A356.0, A357.0, 360.0, 366.0, 380.0, A380.0, 413.0, 443.0, 514.0, 518.1, 712.0 등이 있음
4	모든 형태의 순수 비가공 알루미늄	• 알루미늄 협회에서 지정한 합금 코드 1080A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로 구성된 접이식 튜브형 용기(collapsible tubular container) • 접이식 튜브형 용기는(노즐을 제외) 길이 37mm 또는 62mm, 외경 11.0mm 또는 12.7mm, 두께 0.13mm 이하를 만족해야 함
5	완제품 방열판 (finished heat sinks)	• 알루미늄 압출제품(extrusions)으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열 성능 요건에 맞추어 설계 및 생산되며, 해당 요건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완전하게(개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험한 제품

ㅇ (우회조사 개시 여부)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 부과 물품 우회여부를 「19 U.S.C. §1677j(b), (c), (d) 및 19 CFR 351.225, 351.226」에 근거하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사례 검토 과정에서「19 U.S.C. §1677j(c), (d) 및 19 CFR 351.226」의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과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여부 외에,「19 U.S.C. §1677j(b) 및 19 CFR 351.225」에 명시한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217]'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안을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함

ㅇ 관련 사례에 대한 상무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of merchandise)' 또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하거나 '타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상품(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 of merchandise) : 베트남과 도미니카 공화국 내 기업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수입한 후 해당 제품을 최종 완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국가 사례 모두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았음

-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 중왕과 그 계열사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하여 '전체적인 물리적 특성', 사용자의 기대 및 상품용도, 판매경로, 변경 비용, 수입현황과 수입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후 개발 물품'에 해당함

ㅇ 수출 우회 여부 판단 근거로 '물건의 경미한 변경' 또는 '추후 개발 물품' 여부를 놓고 청원인(미국 직접 수출, 베트남)과 Air Master Awning LLC(도미니카 공화국)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상무부는「19 U.S.C. §1677j(c), (d)」에 따라 우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우회조사를 실시함

ㅇ 상무부가 우회조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중왕홀딩스 및 계열사의 미국 수출 사례, 제3국 우회 사례(베트남, 도미니카공화국) 모두 '물건의 경미한 변경 또는 추후 개발 물품'에 근거한 우회사례라고 예상하였으나,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중왕홀딩스 및 계열사의 미국 수출 사례만이 '추후 개발 물품'에 근거한 수출 우회 사례인 것으로 나타남

함된 그림액자, 태양광 패널 등

217) 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

ㅇ 중왕홀딩스 및 계열사 알루미늄 압출제품 미국 수출 사례의 ‘추후 개발 물품’ 기준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판단 요건 및 내용**

① 일반적 물리적 특성

ㅇ (미국직접수출) 청원인은 중국 중왕홀딩스 등 중국 기업들이 6 시리즈 합금 제품과 화학적·기계적 성질이 유사한 화학 규격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에 부합하고 열처리된 압출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여,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였다고 주장함

- 청원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제품을 조달하여 6시리즈 합금으로 제조되던 제품재료 및 기타 응용 분야에 사용한다고 주장한 수입업자 정보와 5050 합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 견적을 요청받은 미국 국내 생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함

- 또한 중국 중왕홀딩스에서 생산한 제품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제품으로 라벨링된 시료를 입수 및 시험한 결과, 6시리즈 표준과 화학적 성질이 중첩되고 열처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함

ㅇ (베트남) 공정위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대상 압출제품과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상무부가 두 차례의 명령 적용 범위 결정(Scope ruling)을 통하여 대상 상품으로 판정한 제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 베트남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중국산 대상 압출제품과 동일한 HTS(열간압연강) 세부 분류 하에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시하면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과 베트남산 압출제품 간의 유일한 차이는 베트남산 압출제품이 중국산 대상 상품을 재압출(re-extrusion)한 것뿐이라고 주장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창틀용 알루미늄 압출제품(window frame extrusions)이 오직 창틀 및 관련 부품 용도로만 제작되었고, 중국에서 수출 시 이미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색상으로 분체 도장한(painted) 상태였으므로, 이미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함[218)]

218) 창틀 압출제품과 자루시 셔터 모두 동일 관세 하위분류(HTS 7610.10.00.10)로 분류되므로, 별도 조립으로 인해 창틀 압출제품이 관세상 별도의 제품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봄

② 최종 구매자의 기대 및 상품 용도

ㅇ (미국직접수출) 청원인은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가 중왕의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압출제품에 대해 6 시리즈 합금으로 제조된 제품과 동일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생산되는 구체적인 합금 종류가 최종 용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청원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합금 종류가 고객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제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미국 국내 생산기업들이 6463 합금으로 제조되는 샤워부스 부품 시장에서 중국산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제품과 경쟁중임을 주장함

- 그 외 2011년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부과 후, 중왕이 대량의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중왕 제품이 미국 산업과 직접 경쟁하는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제품과 다르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ㅇ (베트남) 청원인은 베트남산 알루미늄 압출제품 구매자의 기대와 최종 사용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 압출제품의 기본 알루미늄 소재가 완전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베트남 알루미늄 압출 생산업체들이 자사 압출제품 마케팅 시 원재료인 알루미늄 빌릿(Billet) 출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함

- 베트남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이 중국산 대상 압출제품과 동일한 HTS(열간압연강) 세부 분류 하에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시하면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과 베트남산 압출제품 간의 유일한 차이는 베트남산 압출제품이 중국산 대상 상품을 재압출(re-extrusion)한 것뿐이라고 주장함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창틀 압출제품 목적은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로 조립되는 것이며, 최종 고객이 창틀 압출제품과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에 대해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

③ 광고 및 전시방식 및 판매 경로

ㅇ (미국직접수출) 청원인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부과 대상인 6시리즈 알루미

늄 압출제품과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압출제품 간에 판매 경로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무부 조사 결과 중국 생산자들이 5050 등급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6 시리즈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는 두 제품이 상호 호환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중왕 웹사이트가 서로 다른 합금으로 제작되거나 제작 가능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위치에서 제품 컬렉션을 광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왕의 5050 등급 알루미늄 합금 압출제품이 명령 적용 대상 6 시리즈 합금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의미함
- 중왕 웹사이트는 오직 6 시리즈 합금으로 제조된 제품 모음과 7 시리즈 합금으로 제조된 한 제품만을 광고하였고, 5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미국이 수입하는 5050 등급 알루미늄 압출제품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관련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광고하거나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함
- 위 상황을 바탕으로 중왕이 웹사이트에 미국에 제조 및 수출중인 5시리즈 제품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6 시리즈 제품과 상호 교환 가능하여 기존 2011년에 부과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려는 의도인 것을 추정할 수 있음

ㅇ (베트남) 청원인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의 유통 경로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여러 회사 웹사이트 마케팅 페이지가 베트남산 압출제품과 중국산 압출제품(재용해 및 재압출된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양 압출제품 간에 차이가 있다면, 기업들이 이를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 발동 전 중국산 창틀 압출제품이 푸에르토리코 내 알루미늄 압출제품 중개업체(broker)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명령 발동 후, 동일 중개업체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조립된 자루시 셔터를 푸에르토리코에서 수입·판매하였다고 주장함

- Air Master는 중개업체가 창틀 압출제품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돌려 보내고, 경미한 가공 후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수출하는 우회 수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푸에르토리코 시장에서 창틀 압출제품과 자루시 셔터의 마케팅 경로가 동일하다고 보았음

④ 변경 비용 및 대상 상품의 미국 수입 당시 상황

○ (미국직접수출) 청원인은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6시리즈 합금을 5050 합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화학 조성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보았는데, 마그네슘 함량 증가는 우회조사 신청 당시 마그네슘 시장 가격 기준으로 5050 빌렛 합금 파운드당 합금 비용 4.63% 증가로 이어졌지만, 명령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180% 이상임을 감안하였을 때 미미하다고 주장함

- 우회조사 첫 조사(original investigations) 완료 당시 중국 전체 반덤핑 관세율이 33.28%였고, 상계관세율이 374.15%였는데, 이처럼 높은 관세율이 중왕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 알루미늄 공정위는 우회조사 당시 5050 시리즈 합금이 존재하였으나, 압출이 아닌 압연용(Rolling)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으며, 열처리된 5050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알루미늄 협회에서 알루미늄 압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알루미늄 공정위가 우회조사를 요청할 당시,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5050 시리즈 합금에 대한 열처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베트남) 청원인은 베트남에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체 생산 비용 및 제품 총 가치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고, 베트남 생산자들은 단지 중국산 압출제품을 용해 및 재압출할 뿐이므로 베트남 내 생산은 최소한의 추가 가공[219]에 불과하다고 봄

- 청원인은 베트남 기업[220]이 압출제품을 단순히 용해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빌릿 생산(billet) 생산에 투입되는 금속 원가를 회피한다고 보고, 빌릿(Billet) 생산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빌릿 생산 비용은 압출 생산 비용의 약 80%를 차지함)

- 베트남 내 가공 비용은 전체 알루미늄 압출제품 생산 비용의 약 10~20%에 불과하며, 해당 비용은 노동, 에너지, 기타 간접비로 구성되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 비하여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함

○ (도미니카공화국) Air Master는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조립 비용이 전

219) 해당 가공은 베트남 기업(GVA, Global Vietnam Aluminum Co., Ltd)가 중국산 압출제품을 빌릿(Billet)으로 용해하는 공정과 GVA가 빌릿을 압출하는 공정으로 구성됨
220) Global Vietnam Aluminum Co., Ltd

체 제품 생산 비용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함

- 알루미늄 압출제품(Jalousie shutter) 조립 작업을 지원하는 비용과 중국 내 창틀 압출제품 생산 비용[221)]
- 알루미늄 압출제품(Jalousie shutter) 조립의 직접 비용과 알루미늄 압출제품(Jalousie shutter) 전체 생산 비용[222)]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11년 5월 26일 발령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aluminum extrusions)에 대한 AD/CVD 명령과 관련하여, 중국 중왕(Zhongwang) 및 계열사의 '5050 화학규격에 부합하고 열처리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으로 보아 우회로 최종 판정함

- 5050 열처리 제품은 6시리즈(ex-6063)와 물리적 특성, 용도, 시장 대체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추후 개발 물품'에 해당한다고 봄

○ (베트남 경유) 동일 품목이 '제3국에서 완성·조립된 상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제3국 우회 건으로 최종 판정하였으며, '추후 개발 물품'과는 관련 없음

- 중국산 원자재 투입 및 제3국 가공(재용해/재압출/절단/조립)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투자/R&D/공정/생산범위/가공가치 비중이 작고, 무역흐름 변화 및 특수관계 정황까지 확인되어 제3국 우회 건으로 판단함

○ (도미니카공화국) 중국산 창틀 압출재를 가공한 자루시 셔터(Jalousie shutter) 건은 처음부터 명령 범위 내 제품으로 판단되어, '경미한 변경 및 타국 조립'에 대한 우회조사를 철회함

- '자루시 셔터'가 명령 대상 HS 코드와 동일한 부류에 속하여 명령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우회 판단이 불필요하다고 봄

○ 5050 합금(열처리)을 6시리즈(ex-6063)와 비교하였을 때, 물리·기계적 특성, 용도, 판매경로가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화학적 성질 조정 등으로

221) 중국 내 최소 규모 압출기 투자 비용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마감 작업 투자 비용보다 약 2,000배 높으므로, 중국 내 압출 생산 투자에 비해 도미니카 내 마감 투자는 미미하다고 결론

222) 중국산 창틀 압출제품 생산 비용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조립된 자루시 셔터 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는데, 중국산 창틀 압출제품 생산 비용이 전체 비용의 최소 85%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정함

얻는 기능이 6시리즈와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함

- 화학적 성질 변경 비용은 합금 원가의 약 4% 수준이지만, 빌렛(billet) 총원가 기준 약 0.52%에 불과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과거 30~370%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 웹사이트 및 마케팅 내용 등에서도 5시리즈·6시리즈 구분 없이 호환 취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함
- 베트남 가공분은 부가가치 10~20% 내외의 저부가 공정(재용해, 재압출)으로, 중국산 투입재 의존이 높아 대부분의 제품 가치는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함

o 이 사건은 경미한 변경 또는 추후개발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 해당하는 제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사용자의 기대와 용도, 판매 경로 및 변경 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토대로 우회 판정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제3국 가공을 통한 우회와 더불어 다른 패턴을 이용한 우회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임

3) 듀얼(이중) 피스톤 엔진[223)]

사례번호	A-570-124, C-570-125	
조사 개시일	2022년 4월 25일	
최종판정	2023년 2월 21일	
조사 대상	듀얼 피스톤 엔진 (Dual-Piston Engines)	
조사 배경	조사 대상은 FNA Group, Inc.(FNA)가 설계한 듀얼 피스톤 엔진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임. 이 엔진은 두 개의 실린더가 하나의 공통 연소실을 공유하고, 두 피스톤이 동일한 연소 사이클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짐	
적용 법령	19 U.S.C. §1677j(b),(c),(d), 19 CFR §351.226	
HS code 기존명령범위	기존 명령의 대상 엔진은 주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8407.90.1010로 분류됨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물리적특성	상무부는 듀얼 피스톤 엔진과 단일 실린더 엔진 간의 주된 물리적 차이가 두 번째 실린더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 모두 불꽃 점화식, 비도로용, 공랭식 내연기관이며, 수직 동력 인출축을 가지고 배기량이 99cc 이상 225cc 미만이라는 점에서 명령의 범위에 정의된 핵심 특성이 동일하다고 판단. FNA가 주장한 높이, 무게, 출력 차이는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범위에 명시된 물리적 특성이 아니므로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함
	최종 구매자의 기대	상무부는 FNA가 제시한 주장들(더 뛰어난 성능, 상업적 응용 분야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따라서 듀얼 피스톤 엔진의 구매자 기대가 기존 제품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음
	사용용도	상무부는 예비 및 최종판정에서 조사대상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명령대상 엔진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 두 엔진 모두 보행식 잔디깎이, 고압 세척기 및 기타 실외 동력 장비에 주로 사용되며 용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함. 최종구매자의 기대와 유사하게 상무부는 듀얼 피스톤 엔진이 상업용 응용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는 FNA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최종 용도는 기존 명령 대상 엔진과 동일하다고 판단함
	유통경로	상무부는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대상 엔진이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다고 판단함
	광고 및 전시 방식	상무부는 청원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범위 내 엔진이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전시된다고 판정함
결론	듀얼 피스톤 엔진은 설계상 차이가 있으나 기본 사양과 용도, 구매자 심리 등의 핵심 기준에서는 기존 범위 내 제품과 동일하다고 미국 상무부는 판단함	

223) **(조사 개시)**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Dual-Piston Engines(April 25, 2022)(Barcodes : 4233381)
(예비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Dual-Piston Engines; Rescission in Part(September 29, 2022)(Barcodes : **4287463**)
(최종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A-570-124 (중국산 수직축 엔진) 사건에서 상무부는 60~99cc 엔진(경미한 변경), 듀얼 피스톤 엔진(추후개발물품) 등 두 가지 유형의 우회조사를 진행함. 본문에서는 이 중 추후개발물품으로 판정된 듀얼 피스톤 엔진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대표)	조사개시일	유형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A-570-124	2021.05.04	8407.90.1010	22.04.25	추후개발물품	최종 판정 (23.02.21.)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DOC)는 2021년 5월 4일, 중국산 배기량 99cc 이상 225cc 미만의 수직축 소형 엔진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A-570-124, C-570-125)을 발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엔진 수입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됨

○ 2022년 3월 4일 Briggs & Stratton LLC는 중국산 듀얼 피스톤(단일 공통 연소실) 수직축 엔진이 기존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며, 동 제품이 사소한 형태 변경(§781(c)) 또는 추후 개발된 물품(§781(d))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상무부는 2022년 4월 중국에서 생산된 듀얼 피스톤 엔진이 기존 명령을 회피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회조사를 개시함

[표 3-57] 듀얼 피스톤 엔진 AD/CVD 회피 조사 경과

구분	주요내용
22.03.04	• 미국 Briggs & Stratton LLC, 중국산 듀얼 피스톤(공동 연소실) 엔진이 기존 99~225cc 수직축 엔진 AD/CVD 명령을 회피한다는 혐의로 우회 조사 요청 제출
22.04.25	• 1930년 관세법 781(c)/(d)조에 근거하여 듀얼 피스톤 엔진에 대한 국가 차원(country-wide) 회피 조사 개시
22.09.29	• 상무부,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에서 해당 엔진을 '후발 개발 상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으로 판정
23.02.21	•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에서 예비판정 유지 → 듀얼 피스톤 엔진을 '후발 개발 상품'으로 확정하고 중국 전역에 국가 차원 회피 인정 결정, 22.04.25. 이후 미 수입분에 AD/CVD 관세 부과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Dual-Piston Engines(February 22, 2023)(barcodes : 4344175)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ㅇ (우회조사 대상) 본 우회조사는 FNA Group이 설계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듀얼(이중) 피스톤 엔진(dual-piston engine)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회피(circumvent)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시됨

- 동 제품은 두 개의 피스톤이 하나의 공통 연소실(common combustion chamber)을 공유하는 구조로, 두 피스톤이 완전히 동시에 작동하여 단일 엔진과 유사한 동력 발생 패턴을 가짐
- 주로 손으로 미는 잔디깎이(walk-behind lawn mower) 및 비휴대용 실외 동력 장비(non-hand-held outdoor power equipment)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배기량은 99cc 이상 225cc 미만임

ㅇ (기존 명령의 범위) 아래의 내용은 상무부가 2021년 5월 4일 발령한 「중국산 특정 수직축 엔진(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A-570-124) 및 상계관세(C-570-125)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를 요약한 것임

ㅇ 본 명령의 범위는 해당 엔진의 물리적 특성, 적용 장비, 미완성 엔진 정의 및 제외 대상(commercial·heavy commercial engines)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58]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ㅇ 본 명령의 적용 대상 물품은 완제품 또는 미완성품, 조립 또는 미조립 여부, 장착 또는 미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불꽃 점화식(Spark-ignited), 비도로용(Non-road), 수직축(Vertical shaft) 엔진으로 구성됨
ㅇ 주로 보행식 잔디 깎는 기계용으로 사용되나, 압력 세척기를 포함한 기타 비휴대용 실외 전력 장비용 엔진을 모두 포함함. 해당 엔진은 불꽃 점화식, 단일 실린더, 공랭식 내연기관으로, 수직 동력인출(power take off)축을 가지며, 최소 99 세제곱센티미터(cc)의 배기량과 최대 225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짐
ㅇ 통상적으로 이 크기의 배기량을 가진 엔진은 1.95~4.75kW의 출력을 발생시킴
ㅇ 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엔진은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0편 제I장 U소분류 제1054부에 따른 환경보호청(EPA)의 소형 비도로용 불꽃 점화식 엔진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받아야 함
ㅇ 범위의 물리적 설명에는 부합하나 40 CFR 제1054부 또는 EPA 대기 오염 통제 규정 U소분류의 다른 부분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엔진도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40 CFR 제1054부 및 U 소분류의 다른 부분 모두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엔진은 본 명령의 범

위에 계속 적용됨
- ㅇ 보행식 잔디 깎는 기계와 압력 세척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휴대용 실외 전력 장비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소형 수직축 엔진이 범위에 포함됨
- ㅇ 다만, 해당 엔진이 그러한 장비에 장착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엔진만이 범위에 포함됨. 대상 물품에는 대상국에서 생산된 특정 소형 수직축 엔진이 포함되며, 이는 대상국 또는 제3국에서 실외 전력 장비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 ㅇ (미완성 엔진 판단 기준) 대상 엔진은 다른 부품을 동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위에 포함됨. 본 명령의 목적상, 미완성 엔진은 최소한 다음 구성 요소(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구성된 엔진의 하위 조립품을 포함함
  - 크랭크케이스, 크랭크축, 캠축,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조립되거나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섬프(sump), 카뷰레터 스페이서(carburetor spacer),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s)), 밸브 트레인(valve train), 또는 밸브 커버(valve cover(s))와 같은 추가 구성 요소가 동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본 명령의 목적상 미완성 엔진으로 간주됨
  -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점화 플러그나 엔진과 동기화하여 고전압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 장치(예: 점화 코일)와 같은 다른 제품이 포함되어도 해당 제품은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 제3국에서 미완성 엔진 하위 조립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다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도 엔진은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 ㅇ (제외) 본 명령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품목은 40 C.F.R. §§ 1054.107 및 1054.135에 따른 "상업용(Commercial)" 또는 "중상업용(Heavy Commercial)" 엔진이며, 이는 (1) 160cc 이상의 배기량, (2) 주철 실린더 라이너, (3) 자동 압축 해제 장치, 그리고 (4) 3개 이상의 챔버와 400cc 초과의 용적을 가진 소음기라는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짐
- ㅇ (HTSUS) 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엔진은 주로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소호 8407.90.1010으로 분류됨. 대상 엔진의 하위 조립품은 소호 8409.91.9990으로, 장착 엔진은 소호 8433.11.0050, 8433.11.0060, 8424.30.9000으로 분류됨. 또한 소호 8407.90.1020, 8407.90.9040, 8407.90.9060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HTSUS 소호는 편의 및 관세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물품에 대한 서면 설명이 결정적인 효력을 가짐

□ 주요 판단 요건 및 내용

ㅇ 미국 상무부(Commerce)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을 판단할 때, 해당 물품이 기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가 개시된 시점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commercially available) 여부를 가장 먼저 고려함

ㅇ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이미 상업 시장에 존재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해 테스트를 마치고 준비된 상태였음을 의미함

ㅇ 만약 상무부가 해당 물품이 조사 개시 시점에 상업적으로 이용 불가능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물품은 추후 개발된 물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①물리적 특성 ②최종 구매자의 기대 ③최종 용도, ④유통/거래 경로, ⑤광고 및 전시 방식)

- (청원인 주장) 청원인 Briggs & Stratton LLC는 듀얼 피스톤 엔진이 2020년 4월 조사 개시 당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상무부가 2021년 3월 12일 원조사 최종 결정(반덤핑 및 상계관세)을 발표한 이후에도 FNA는 여전히 해당 엔진의 특허를 신청 중이었고, 같은 해 11월에도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증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조사 개시 시점에는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함
- (미국 업체의 반박) FNA는 해당 엔진의 개발이 이미 2019년 2월 28일에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도 잠정 특허가 출원 중이었다고 반박함. 따라서 조사 개시 이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함
- (상무부) 상무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듀얼 피스톤 엔진의 실제 개발 완료 시점이 2021년 8월 9일로 확인되어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7일)보다 이후이므로 해당 엔진이 당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함
- 아울러 FNA Group은 추후 개발된 물품이 기존 명령대상 제품의 '기술적 진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무부는 이를 부정하고 Target Corp. v. United States 판례를 인용하며, ITC 협의 조항이 추후 개발된 물품의 정의를 제한하지 않으며, 19 CFR 351.226(k) 에 따라 조사 개시 당시 그 제품이 이미 시장에 있었거나 완전히 개발되어 판매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상업적 이용 가능성(commercial availability)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함
- 또한 FNA는 자사의 듀얼 피스톤 엔진이 기존 명령 대상 제품의 '추후 개발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사 개시 이전(2020년 4월 7일)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다른 두 개의 실린더 엔진 사례로 빅타(Victa) 엔진 등을 인용했으나, 미국 상무부는 빅타 엔진이 조사대상 듀얼 피스톤 엔진과 구조 및 기술적 특성이 달라 추후개발물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의미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함

① 일반적 물리적 특성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 Briggs & Stratton은 듀얼 피스톤 엔진이 ▲불꽃 점화식,

▲비도로용, ▲공랭식, ▲99cc~225cc 배기량 등 기존 범위 내(in-scope) 엔진과 동일한 핵심 물리적 특성을 공유한다고 주장함

ㅇ (FNA의 주장) FNA는 듀얼 피스톤 엔진이 기존 단일 실린더 엔진과 비교하여 ▲두 개의 실린더를 보유하고, ▲무게가 약 15% 더 무겁고 높이가 약 23% 더 높으며, ▲구조 설계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ㅇ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조사대상 물품인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명령대상인 단일 실린더 엔진 간의 주된 물리적 차이는 두 번째 실린더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함. 다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이 동일한 일반적 물리적 특성(same 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s)을 공유한다고 판단함.

- 이는 두 제품 모두 불꽃 점화식(spark-ignited), 비도로용(non-road), 공랭식(air-cooled) 내연기관이며, 수직 동력 인출축(vertical power take-off shafts)을 가지고 배기량이 99cc 이상 225cc 미만이라는 점에서 명령의 범위(scope)에 정의된 핵심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 (무게·크기·토크 차이) 아울러 상무부는 FNA 업체가 주장한 높이, 무게, 출력 차이등은 동 물품의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범위에 명시된 물리적 특성이 아니므로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함

② 최종 구매자의 기대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 Briggs & Stratton LLC는 듀얼 피스톤 엔진의 최종 구매자 기대가 기존 제재품목인 소형 수직축 엔진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 구매자들은 듀얼 피스톤 엔진이 잔디깎이(walk-behind lawn mower)나 고압 세척기(pressure washer) 등 다양한 실외 동력 장비(비휴대용)(non-hand-held outdoor power equipment에 장착되어, 잔디를 깎거나 압력을 가해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충분한 동력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함

ㅇ (FNA의 주장) FNA Group은 더 뛰어난 성능, 더 상업적인 응용 분야, 더 높은 가격, 그리고 더 넓은 작동 속도 범위를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듀얼 피스톤 엔진이 통나무 스플리터(log splitters)나 선박용엔진(marine outboard engines) 등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장비에 적합할 것으로 구매자들이 기대한

다고 주장함

ㅇ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FNA가 주장 내용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따라서 듀얼 피스톤 엔진이 고성능 장비용으로 인식되거나 구매자 기대가 기존 제품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에 따라 듀얼 피스톤 엔진의 최종 구매자 기대가 기존 명령대상 제품의 구매자 기대와 다르지 않다고 최종 판단함

③ 최종 사용 용도 (Use of the Merchandise)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 Briggs & Stratton LLC는 듀얼 피스톤 엔진의 최종 용도가 기존 명령대상 단일 실린더 엔진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 두 제품 모두 주로 보행식 잔디깎이(walk-behind lawn mower)나 고압 세척기(pressure washer) 등 실외 동력 장비에 사용되며, 듀얼 피스톤 엔진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은 기존 엔진으로도 수행 가능하다고 설명함

ㅇ (FNA의 주장) FNA Group은 듀얼 피스톤 엔진이 통나무 절단기(log splitters)나 선박용(outboard marine engines) 등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장비에 사용되거나 이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함.

- 또한 듀얼 피스톤 엔진은 중장비 상업용 및 전문가용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기존 명령대상 엔진은 일반적으로 주거용(residential) 용도에 한정된다고 주장함

ㅇ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예비 및 최종판정에서 조사대상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명령대상 엔진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virtually indistinguishable uses)하다고 판단함

- 두 엔진 모두 보행식 잔디깎이, 고압 세척기 및 기타 실외 동력 장비에 주로 사용되며, 용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음

- 또한 상업용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기존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아울러 EPA의 엔진 유효 수명(useful life) 기준에 따르면 FNA의 듀얼 피스톤 엔진은 150시간으로 평가되어 주거용(residential) 범주에 해당하며, 상업용 엔진으로 분류되기 위해 요구되는 500시간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이에 상무부는 듀얼 피스톤 엔진이 상업용 응용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는 FNA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최종 용도는 기존 명령 대상 엔진과 동일하다고 판단함

④ 유통(거래) 경로 (channels of trade)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 Briggs & Stratton은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범위 내 엔진의 거래 경로(channels of trade)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소형 엔진들은 기존 범위 내 엔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OEM(예: MTD Products Inc.)에 판매되어, 이들이 잔디깎기 등 비휴대용 실외 동력장비를 조립·생산한 후, 완성된 장비가 홈디포(Home Depot), 로우스(Lowe's), 월마트(Walmart) 등 주요 주택개보수 소매유통망(home-improvement retailers)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고 설명함

ㅇ (FNA의 주장) FNA는 광고 및 전시의 매체와 대상은 유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모든 실외 동력 장비 엔진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일 뿐이라 주장함

ㅇ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대상 엔진이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다고 판단함

⑤ 광고 및 전시 방식 (advertisement and display)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 Briggs & Stratton LLC는 FNA社가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명령대상 엔진이 유사한 방식(similar manner)으로 전시·광고될 것임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두 제품 모두 OEM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잔디 깎기(lawn mowing) 용도에 적합함을 강조하고, 구매자에게 관련 있는 동일한 핵심 기술 사양(예: 배기량, 토크 등)을 제시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음

ㅇ (FNA의 주장) FNA는 두 엔진 모두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OEM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인쇄 카탈로그(hard copy catalog)를 통해, 장착된 경우에는 유통업체·딜러·소매 파트너 등을 통해 전시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이는 모든 실외 동력장비 엔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일 뿐이라고 반박함

- 아울러 개선된 성능 강조하여 기존 명령대상 엔진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광고될

것이라고 주장함

○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청원이의 의견을 수용하여 듀얼 피스톤 엔진과 기존 범위 내 엔진이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전시된다고 판정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상무부는 듀얼 피스톤 엔진이 기존 명령대상 단일 실린더 수직축 엔진과 비교할 때, 구조상 일부 차이(두 번째 피스톤 추가 등)는 존재하나 본질적인 물리적 특성, 최종 구매자의 기대, 최종 용도, 거래 경로 및 광고·전시 방식 등 주요 판단 요소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듀얼 피스톤 엔진은 기존 명령대상 제품이 조사 개시 시점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시기에 새롭게 개발된 상품으로 확인되어, 추후개발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상무부는 2023년 2월 21일 최종판정에서 듀얼 피스톤 엔진이 「중국산 특정 수직축 엔진(A-570-124/C-570-125)」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최종 결정함

1.3. 경미한 변경

1) 60cc 이상 99cc까지의 수직축 엔진[224)]

사례번호	A-570-124 / C-570-125	
조사 개시일	2021년 9월 17일 (관련 통지문 연방 관보 게재일 기준)	
최종판정	2022년 12월 9일	
조사 대상	중국산 배기량 60cc 이상 99cc까지의 수직축 엔진	
조사 배경	2021년 5월 4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배기량 99cc 이상 225cc 미만 수직축 엔진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함 청원인 Briggs & Stratton은 중국 충칭 소재 종셴이 생산한 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79cc NP80 모델)이 명령 회피를 위한 경미한 변경 상품이라고 주장함	
적용 법령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781(c) 및 19 CFR 351.225(i)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일반적으로 8407.90.1010, 부분 조립품: 8409.91.9990 장착된 엔진: 8433.11.0050, 8433.11.0060, 8424.30.9000 추가 적용 가능: 8407.90.1020, 8407.90.9040, 8407.90.9060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물리적특성	대상 엔진은 비도로용, 불꽃 점화식, 단일 실린더, 공랭식 내연기관으로 기존 명령 범위의 핵심 특성과 동일하거나 극도로 유사
	최종 사용자 기대 및 용도	업체가 주장한 경량성·경제성·사용 편리성은 79cc 엔진만의 고유 특성이 아니라 모든 배기량 엔진 장착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요소
	유통경로 (마케팅)	두 엔진 모두 동일한 마케팅 및 유통 채널(예: OEM을 통해 Lowe's, Home Depot와 같은 소매점으로 판매)을 통해 판매되고 광고되는 방식도 유사하다고 확인됨
	수입 제품의 총 가격 대비 변경 비용	종셴 그룹은 추가 개조비용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양 엔진은 동일 생산 공정(주조, 가공, 조립, 테스트, 포장)을 거치며 상당수 부품(81개 이상) 공유
	추가 고려요소	상무부는 미국 시장 유입 상황, 수입 시기, 수입 수량 등 추가 요소 고려 (상세 자료는 기업 기밀정보(BPI)로 비공개)• 79cc 엔진의 미국 판매는 2019년 단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명령 부과 이후 이루어짐• 명령 부과 이후 79cc 엔진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반면 기존 명령대상 엔진 판매는 현저히 감소 → 의도적 우회행위로 해석
결론	상무부는 79cc 엔진이 기존 명령대상 엔진과 5가지 판단요소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판매 패턴상 우회 의도가 존재한다고 판단 해당 엔진은 기존 명령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경미한 변경 상품으로 반덤핑(A-570-124) 및 상계관세(C-570-125) 명령 적용대상으로 확정	

224) **(조사 개시)**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60cc Up To 99cc Engines(barcodes : 4160564)
(예비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barcodes : 4278807)
(최종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60cc Up To 99cc Engines(barcodes : 4319517)

A-570-124 (중국산 수직축 엔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무부가 두 가지 유형의 우회조사를 진행되었으며, 동 파트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배기량 60cc~99cc 수직축 엔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대표)	조사개시일	유형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배기량 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	A-570-124	8407.90.1010 등	21.09.17	사소한 변형	최종 (22.12.09)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는 2021년 5월 4일, 중국산 배기량 99cc 이상 225cc 미만의 수직축 엔진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A-570-124, C-570-125)을 발효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엔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됨

○ 이후 2021년 7월 30일, Briggs & Stratton, LLC(청원인)는 중국산 배기량 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특히 종셴(Zongshen) 및 그 계열사가 생산한 79cc 엔진)이 기존 명령의 범위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단순한 외관상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무부에 §781(c) 및 §781(d)에 따른 우회조사를 요청함

○ 이에 상무부는 2021년 9월 13일 §781(c) 경미한 변경에 따른 조사를 개시함

[표 3-59] 중국산 소형엔진(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의 AD/CVD 회피 조사 경과

구분	주요내용
21.07.30	• Briggs & Stratton, LLC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기량 60cc 이상 99cc 이하의 수직축 엔진이 기존 99cc~225cc 수직축 엔진에 대한 AD/CVD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무부에 우회조사를 요청함. Briggs & Stratton은 해당 엔진이 기존 명령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또는 “추후 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21.09.13	• 미국 상무부는 「1930년 관세법」 §781(c)에 따라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혐의에 대한 우회조사를 개시함. 한편, 상무부는 해당 엔진이 이미 조사 개시 이전부터 상업적으로 존재하던 제품이라는 이유로 “추후개발 물품(later-developed merchandise)”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
22.08.25	• 상무부는 예비 판정에서 중국산 60cc~99cc 엔진이 기존 명령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명령을 회피한다고 예비적으로 판정함
22.12.09	• 상무부는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60cc~99cc 수직축 엔진이 기존 AD/CVD 명령을 회피한다고 확정 판정하고, 이 결정은 국가 전반(country-wide)에 적용된다고 명시함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60cc Up To 99cc Engines, 문서번호: 4319517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배기량 60cc 이상 99cc 이하의 수직축(vertical shaft) 엔진으로, 해당 엔진은 1P51, 1P51NU_, 1P51RU_ 등으로도 불림

○ (기존 명령의 범위) 아래의 내용은 상무부가 2021년 5월 4일 발령한 「중국산 특정 수직축 엔진(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A-570-124) 및 상계관세(C-570-125)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를 요약한 것임

○ 본 명령의 범위는 해당 엔진의 물리적 특성, 적용 장비, 미완성 엔진 정의 및 제외 대상(commercial·heavy commercial engines)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60]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ㅇ 본 명령의 적용 대상 물품은 완제품 또는 미완성품, 조립 또는 미조립 여부, 장착 또는 미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불꽃 점화식(Spark-ignited), 비도로용(Non-road), 수직축(Vertical shaft) 엔진으로 구성됨

ㅇ 주로 보행식 잔디 깎는 기계용으로 사용되나, 압력 세척기를 포함한 기타 비휴대용 실외 전력 장비용 엔진을 모두 포함함. 해당 엔진은 불꽃 점화식, 단일 실린더, 공랭식 내연기관으로, 수직 동력인출(power take off)축을 가지며, 최소 99 세제곱센티미터(cc)의 배기량과 최대 225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짐

ㅇ 통상적으로 이 크기의 배기량을 가진 엔진은 1.95~4.75kW의 출력을 발생시킴

ㅇ 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엔진은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0편 제I장 U소분류 제1054부에 따른 환경보호청(EPA)의 소형 비도로용 불꽃 점화식 엔진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받아야 함

ㅇ 범위의 물리적 설명에는 부합하나 40 CFR 제1054부 또는 EPA 대기 오염 통제 규정 U소분류의 다른 부분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엔진도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40 CFR 제1054부 및 U 소분류의 다른 부분 모두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엔진은 본 명령의 범위에 계속 적용됨

ㅇ 보행식 잔디 깎는 기계와 압력 세척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휴대용 실외 전력 장비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소형 수직축 엔진이 범위에 포함됨

ㅇ 다만, 해당 엔진이 그러한 장비에 장착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엔진만이 범위에 포함됨.

대상 물품에는 대상국에서 생산된 특정 소형 수직축 엔진이 포함되며, 이는 대상국 또는 제3국에서 실외 전력 장비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ㅇ (미완성 엔진 판단 기준) 대상 엔진은 다른 부품을 동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위에 포함됨. 본 명령의 목적상, 미완성 엔진은 최소한 다음 구성 요소(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구성된 엔진의 하위 조립품을 포함함

- 크랭크케이스, 크랭크축, 캠축,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조립되거나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섬프(sump), 카뷰레터 스페이서(carburetor spacer),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s)), 밸브 트레인(valve train), 또는 밸브 커버(valve cover(s))와 같은 추가 구성 요소가 동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본 명령의 목적상 미완성 엔진으로 간주됨
-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점화 플러그나 엔진과 동기화하여 고전압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 장치(예: 점화 코일)와 같은 다른 제품이 포함되어도 해당 제품은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 제3국에서 미완성 엔진 하위 조립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다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도 엔진은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제외) 본 명령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품목은 40 C.F.R. §§ 1054.107 및 1054.135에 따른 "상업용(Commercial)" 또는 "중상업용(Heavy Commercial)" 엔진이며, 이는 (1) 160cc 이상의 배기량, (2) 주철 실린더 라이너, (3) 자동 압축 해제 장치, 그리고 (4) 3개 이상의 챔버와 400cc 초과의 용적을 가진 소음기라는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짐

ㅇ (HTSUS) 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엔진은 주로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소호 8407.90.1010으로 분류됨. 대상 엔진의 하위 조립품은 소호 8409.91.9990으로, 장착 엔진은 소호 8433.11.0050, 8433.11.0060, 8424.30.9000으로 분류됨. 또한 소호 8407.90.1020, 8407.90.9040, 8407.90.9060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HTSUS 소호는 편의 및 관세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물품에 대한 서면 설명이 결정적인 효력을 가짐

□ 명령의 대상 포함 여부

ㅇ 미국 수입업체와 중국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79cc 엔진)은 명령 이전부터 생산·수출되던 상품으로, 새로운 형태의 우회 상품이 아니며 동 물품의 우회 조사 개시는 잘못되었다고 Deacero S.A. de C.V. v. United States (2016)를 인용함. 또한 상무부가 명령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expand)했다고 비판함

- 업체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Deacero(2016)외에도 Wheatland (1998), Smith Corona (1990), Eckstrom(2001) 등 여러 판례를 인용함

ㅇ 상무부는 Wheatland Tube Co. v. United States (1998) 판례의 핵심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본 사안의 배기량(cc)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범위(technical parameter)에 불과하며 “명시적 제외(specifically excluded)”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함. Wheatland 판례는 상무부가 기존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를 임의로 확장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명령의 문언(language of the order)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제품은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통해 다시 명령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임. 그러나 상무부는 본 사건의 79cc 엔진이 명령상 명시적으로 제외된 제품이 아니므로, Wheatland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또한 Deacero S.A. de C.V. v. United States (2016) 판례에 대해서는, 업체가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함. Deacero 사건은 Wheatland의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단순한 물리적 수치 차이(예: 단면적, 배기량 등)만으로 명령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781(c)에 따라 명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함.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79cc 엔진이 기존 명령대상 엔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 아울러 업체들이 인용한 Smith Corona (1990), Eckstrom(2001) 판례들은 모두 범위(scope)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본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781(c)) 조사와는 직접적인 법적 연관이 없다고 보아 주장을 기각함

[표 3-61] 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 우회 조사: 배기량 비교

구분	주요내용
기존 명령의 범위	• 기존 명령(Orders)의 범위는 "불꽃 점화식, 비도로용, 수직축 엔진"으로, 최소 99cc (cubic centimeters)의 배기량과 최대 225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진 엔진을 대상
조사 대상 물품	• 배기량이 60cc 이상 99cc 이하 사이에 있는 소형 수직축 엔진

□ 주요 판단 요건 및 내용

- (19 CFR §351.226(j), 관세법 §781(c) 기반) 미국 상무부는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자 기대, ▲주요 용도, ▲유통(마케팅) 경로, ▲수입 제품의 총가격 대비 변경 비용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우선 검토함. 아울러 ▲해당 상품의 미국 유입 여부, ▲진입 시기, ▲물량 급증 여부 등 추가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① 물리적 특성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은 79cc 엔진이 배기량을 제외하면 기존 명령 대상 엔진(99~225cc)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함. 또한 동 우회조사 대상물품은 기존 명령대상 물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반박 의견) 미국 수입업체 MTD 및 종셴(Zongshen Companies)는 조사 대상 상품이 기존 명령 대상 엔진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이 주장은 배기량 차이의 중대성과 부품의 상이성에 근거함

- (배기량 차이) 79cc 엔진은 99cc 엔진보다 실린더 크기가 20cc 작으며, 이는 99cc 엔진보다 약 20.2% 작은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상당하며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부품 차이) 79cc 엔진과 99cc 엔진은 다른 카뷰레터 크기, 튜닝, 피스톤, 피스톤 링, 크랭크케이스를 가지고 있어 완전히 다른 엔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출력의 차이) 또한 79cc NP80 엔진은 1.5kW의 출력을 내는 반면, 99cc NP100 엔진의 출력은 1.65kW로 절대적 차이는 0.15kW, 상대적 차이는 9.1%에 달한다고 강조함

ㅇ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배기량과 출력 차이가 존재함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이번 우회조사의 ‘일부(변경) 특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특히 대상 엔진(79cc)과 기존 명령 엔진(99cc 이상)이 명령의 범위가 정의하는 대로 비도로용(non-road), 불꽃 점화식(spark-ignited), 단일 실린더(single-cylinder), 공랭식(air-cooled)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며 수직 동력인출축(vertical power take-off shaft)을 갖춘 엔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거나 극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또한 업체가 주장한 출력(Power Output)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함

- 마지막으로 업체가 주장한 엔진 형태· 전체 무게, 기타 부품의 위치 및 방향 등 업체가 제시한 물리적 차이점들은 명령의 범위에 정의된 특성이 아니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② 최종 사용자의 기대 및 용도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은 배기량 60cc 이상 99cc 이하의 조사대상 엔진이 기존 명령대상 엔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며, 최종 사용자의 기대 또한 동일하다고 주장함

- 특히 본 조사대상 제품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완제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downstream merchandise)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중간재에 해당하므로, 최종 사용자의 엔진에 대한 기대는 해당 엔진이 통합된 완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기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ㅇ (반박 의견) 미국 수입업체(MTD)와 종셴(Zongshen Companies)는 본 조사대상 엔진이 기존 명령대상 물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본 엔진은 대규모 작업보다는 소규모 정원 관리나 작업에 보다 적합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이 기존 명령대상 엔진과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설명함

ㅇ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경량성·경제성·사용 편리성 등은 79cc 엔진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더 큰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제품에서도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종 사용자의 기대 및 용도가 기존 명령대상 엔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③ 유통(마케팅) 경로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 Briggs & Stratton은 조사 대상 상품이 장착된 장비와 기존 명령 대상 상품이 장착된 장비가 소매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마케팅 방식도 기존 명령의 대상 물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소형 엔진들은 기존 범위 내 엔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OEM(예: MTD Products Inc.)에 판매되어, 이들이 잔디깎기 등 비휴대용 실외 동력장비를 조립·생산한 후, 완성된 장비가 홈디포(Home Depot), 로우스(Lowe's), 월마트(Walmart) 등 주요 주택개보수 소매유통망(home-improvement retailers)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고 설명함

ㅇ (반박 의견) 광고 및 전시의 매체와 대상은 유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물리적 특성, 제품 기능 및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자료의 내용에 대한 강조함

ㅇ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업체가 주장한 마케팅 내용의 강조점 차이를 마케팅 및 유통 채널 요소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이 기존 명령 대상과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다고 판단함

④ 수입 제품의 총 가격 대비 변경 비용

ㅇ (청원인의 주장) 청원인인 Briggs & Stratton, LLC는 60cc 이상 99cc 이하 엔진이 기존 명령 대상 엔진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만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함

ㅇ (반박 의견) 종셴과 MTD는 79cc 엔진이 단순히 기존 엔진을 축소한 제품이 아니며, 별도의 설계와 부품 체계가 필요한 독립적 제품이라고 반박함

ㅇ 예를 들어, 79cc 엔진은 기존 명령 대상 엔진과 다른 부품(카뷰레터(carburetor) 크기, 피스톤 링(piston rings), 크랭크케이스(crank cases)) 등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단순한 외형 축소가 아니라 실질적 차이를 가진 별도의 제품임을 강조함

ㅇ 따라서 79cc 엔진 생산을 위한 변경은 단순한 비용 조정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총 가치 대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차별화된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ㅇ (상무부의 판단) 상무부는 60~99cc 엔진이 명령 대상 엔진(99~225cc)에 비해 전환하는(modification) 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함

ㅇ 조사 과정에서 종셴 그룹은 99cc 미만 엔진 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개조비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상무부는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또한 조사 대상 엔진과 명령 대상 엔진은 동일한 일반적 생산 공정(주조, 가공, 조립, 테스트, 포장)을 거치며, 상당수 부품(81개 이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됨. 79cc 엔진 생산을 위해 신규로 구매한 장비 중 단 한 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99cc 엔진 생산에도 사용되고 있었음

ㅇ 결과적으로 상무부는 수정 비용이 총 가격 대비 미미하므로, 해당 요소는 60~99cc 엔진이 명령 대상 엔진의 형태를 경미하게 변경한 상품이라는 결론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판정함

⑤ 추가 고려 요건

ㅇ 상무부는 상기 언급된 5가지 주요 판단 요소 외에 ▲해당 상품의 미국 시장 유입 상황(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roduct entered the United States), ▲수입 시기(timing of the entries), 그리고▲ 수입 수량(quantity of merchandise) 등의 상황적 요소를 고려함. 다만 상세 자료(연간 미국 수출량, 판매량)는 기업 기밀 정보(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PI)로 취급되어 공개하지 않음

ㅇ 다만 상무부는 79cc 엔진의 미국 판매가 2019년 단 한 건의 판매를 제외하면 모두 명령 부과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상품 판매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기존 명령 대상 상품 판매가 현저히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함. 이러한 판매 패턴은 의도적인 우회행위(circumvention behavior)로 해석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ㅇ 상무부는 최종적으로 79cc 엔진이 기존 명령대상 엔진(99~225cc)과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자의 기대 및 용도, 유통(마케팅) 경로, 생산공정, 그리고 수입 제품의 총가격 대비 변경비용 등 다섯 가지 판단요소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ㅇ 또한 79cc 엔진의 미국 판매가 2019년 단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명령 부과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해당 시점 이후 79cc 엔진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기존 명령대상 엔진의 판매는 현저히 감소한 점을 근거로 명령 회피를 위한 우회 의도가 존재한다고 보았음

ㅇ 아울러 상무부는 주요 협의업체들이 제기한 “상무부가 기존 명령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업체들이 인용한 Smith Corona(1990), Eckstrom(2001) 등은 모두 범위(scope) 해석과 관련된 판례로서 본건의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781(c)) 우회조사와 직접적인 법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함. 아울러 Wheatland(1998) 판례는 명령의 문언상 명시적으로 제외된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안의 79cc 엔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Deacero(2016) 판례는 제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781(c)에 따라 명령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상무부의 판단 근거가 됨

ㅇ 따라서 상무부는 위 주장을 관련성이 없는 선례에 근거한 것으로 기각하고, 79cc 엔진이 기존 명령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된 상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이에 따라 79cc 엔진은 반덤핑(A-570-124) 및 상계관세(C-570-125) 명령의 적용대상(covered merchandise)으로 확정됨

2) 중국산 IQF(개별급속냉동) 소형·대형 마늘 조각(small and large garlic chunks)[225]

사례번호	A-570-831[226]	
조사 개시일	2023년 6월 8일	
최종판정	2024년 6월 7일	
조사 대상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garlic chunks)	
조사 배경	Fresh Garlic Producers Association(FGPA) 등이 중국산 마늘 조각이 기존 반덤핑 명령(1994년 부과)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회조사 요청	
적용 법령	관세법(Tariff Act of 1930) § 781(c) 및 19 CFR § 351.226(j)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0703.20.0005, 0703.20.0010, 0703.20.0015, 0703.20.0020, 0703.20.0000, 0703.20.0090, 0710.80.7060, 2005.90.9500, 2005.90.9700, 2005.99.9700 등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물리적 특성	청원인은 마늘 조각이 절단을 제외하면 명령 대상 신선 마늘과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 상무부는 이를 인정하고, 크기 축소가 중요한 변화라는 업체(Green Garden)의 반박을 기각함
	최종 사용자 기대 및 용도	청원인은 마늘 조각의 주요 용도가 볶은 마늘 가루 생산이며, 명령 범위의 "주로 식품 및 조미료 사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Green Garden은 이 논리가 다진 마늘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함. 상무부는 마늘 조각이 볶은 마늘 가루, 딥, 매시, 샐러드 등에서 신선 마늘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동일한 최종 사용자 기대와 용도를 가진다고 판단함
	유통경로 (마케팅)	청원인은 마늘 조각과 신선 마늘이 동일한 산업 사용자, 소매점에 유사하게 판매되며, 중국 생산업체들이 제품을 구별 없이 광고한다고 주장. 상무부는 이를 인정하고 동일한 유통 채널을 공유한다고 판단함
	수입 제품의 총 가격 대비 변경 비용	청원인은 마늘 조각의 평균 단가가 명령 대상 제품보다 낮으며, 변경 비용이 미미하다고 주장. 상무부는 생산업체들이 더 저렴한 저등급 마늘(10~50% 저렴)을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변경 비용이 낮다고 판단함
	추가고려 요소	이번 사례에서 추가 고려 요소(미국 내 유입 시기, 물량 증가 등)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 대신 (1) 구연산 첨가에 따른 보존 여부, (2) '추가 가공' 여부가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졌음. 상무부는 두 사안 모두 반덤핑 명령의 명시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마늘 조각은 여전히 명령 범위 내 제품이라고 최종 판단함
결론	중국산 소형·대형 마늘 조각은 기존 반덤핑 명령을 우회한 것으로 간주되어, §781(c)에 따라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됨	

225) **(조사개시)** Fresh Garlic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Antidumping Duty Order - Small and Large Garlic Chunks(June 8, 2023)(barcodes : 4459389)
(예비판정) Fresh Garlic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 Small and Large Garlic Chunks, 88 FR 77959 (November 14, 2023)(barcodes : 4459389)
(최종판정) Fresh Garlic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 Small and Large Garlic Chunks(June 7, 2024)(barcodes : 4574105)

226) 상계관세(CVD) 번호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중국산 신선 마늘에 대한 우회 조사는 단일 사건(A-570-831)으로 진행됨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소형·대형 마늘 조각(덩어리)이 구연산으로 코팅되어 있어 "다른 재료의 첨가로 보존된 제품"에 해당하므로 기존 반덤핑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수입업체 측의 주장임.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구연산 코팅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마늘 조각을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판단함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대표)	조사개시일	유형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 (garlic chunks)	A-570-831	2004.90.8575 2005.99.9700	23.06.08	경미한 변경	최종 (24.06.07.)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는 1994년 11월 16일 중국산 신선 마늘(Fresh Garlic from China)에 대해 반덤핑 명령(A-570-831)을 부과함

○ 이후 2023년 2월 16일, 미국 Fresh Garlic Producers Association(FGPA) 및 그 회원사들은 중국산 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small and large garlic chunks)이 기존 명령을 회피(circumvent)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회조사 개시를 요청함

○ 상무부는 2023년 6월 8일, 1930년 관세법 §781(c)(Minor Alterations)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공식 개시함

○ 청원인은 해당 제품이 외형만 다를 뿐 기존 명령대상 신선 마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경미한 변경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함

[표 3-62] 중국산 소형·대형 마늘 조각의 AD/CVD 회피 조사 경과

구분	주요내용
94.11.16	•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신선 마늘(Fresh Garlic)에 대해 반덤핑 명령을 부과함
23.02.16	• Fresh Garlic Producers Association(FGPA) 및 그 회원사들은 중국산 소형·대형 마늘 조각이 기존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회조사를 요청함
23.06.08	• 상무부는 1930년 관세법 §781(c)(minor alterations)에 따라 소형·대형 마늘 조각에 대한 우회조사를 개시함

23.11.14	• 상무부는 예비 긍정 판정에서, 중국산 소형·대형 마늘 조각이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며 기존 명령을 회피한다고 잠정 결정함
24.06.07	• 상무부 최종 긍정 판정 확정(§781(c) 경미한 변경). 예비 결론 유지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Fresh Garlic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 Small and Large Garlic Chunks, Case No. A-570-831, June 7, 2024 (문서번호 4574105)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 (우회조사 대상) 미국 상무부의 이번 우회조사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chunks)을 대상으로 함.

○ 이들 제품은 모두 껍질을 벗기고(trimmed and peeled) 데친 후(blanched), 구연산 용액(citric acid solution)으로 코팅되어 개별급속냉동(individual quick freezing, IQF) 처리된 형태임. 미국 관세율표(HTSUS) 2004.90.8575호 및 2005.99.9700호에 분류될 수 있음

○ (기존 명령의 범위) 중국산 신선 마늘(fresh garlic from China)에 대한 기존 반덤핑 명령(A-570-831)은 1994년 11월 16일 처음 발령되었으며, 명령의 적용 범위(scope)는 다음과 같음

[표 3-63]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ㅇ 본 명령(Order)의 적용 대상 제품은 모든 등급의 마늘로서 통마늘(whole garlic)이든 구성 요소인 마늘 쪽(cloves)으로 분리된 형태이든, 껍질을 벗긴(peeled) 상태이거나 벗기지 않은(unpeeled) 상태이든, 신선(fresh), 냉장(chilled), 냉동(frozen), 일시적으로 보존된(provisionally preserved) 상태이거나, 물 또는 기타 중성 물질(in a neutral substance)에 포장된 형태 모두를 포함함

ㅇ 단, 다른 성분이 첨가되거나 열처리(heat processing)를 통해 조제 또는 보존된(prepared or preserved) 형태의 마늘은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됨

ㅇ 등급 간의 차이는 색상(color), 크기(size), 껍질(sheathing), 및 부패 정도(degree of decay)를 기준으로 구분됨

ㅇ 기존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마늘은 다음과 같음

ㅇ (a) 기계로 수확된 마늘(mechanically harvested garlic) 로서, 주로(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신선(non-fresh) 용도로 지정된 것

ㅇ (b) 종자용 마늘(seed garlic) 로서, 파종 전에 특별히 준비 및 재배되고 이후 수확 및 기타 준비 과정을 거쳐 종자(seed) 로 사용되도록 준비된 것

ㅇ 해당 제품은 주로 식품(food product) 및 조미료(seasoning) 용도로 사용됨

□ HTSUS

ㅇ 본 명령의 대상 제품은 현재 미국 관세율표(HTSUS) 상 다음의 소호(subheadings)에 분류될 수 있음

ㅇ 0703.20.0005, 0703.20.0010, 0703.20.0015, 0703.20.0020, 0703.20.0000, 0703.20.0090, 0710.80.7060, 2005.90.9500, 2005.90.9700, 2005.99.9700 등

ㅇ 다만, 위 HTSUS 소호는 편의(convenience) 및 통관(customs purposes)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상품이 본 명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dispositive criterion)은 상무부의 서면 설명(written description) 임

ㅇ 또한 위의 HTSUS 소호로 수입된 마늘이 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제품이 다음 중 하나임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명확히 증명해야 함

- 기계로 수확되어 주로(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신선 용도로 지정된 마늘, 또는
- 파종 전 특별히 준비 및 재배되고 이후 수확 및 기타 준비를 거쳐 종자로 사용되는 마늘

□ 주요 판단 요건 및 내용

ㅇ (19 CFR §351.226(j), 관세법 §781(c) 기반) 미국 상무부는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자 기대, ▲주요 용도, ▲유통(마케팅) 경로, ▲수입 제품의 총가격 대비 변경 비용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우선 검토함. 아울러 ▲해당 상품의 미국 유입 여부, ▲진입 시기, ▲물량 급증 여부 등 추가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① 물리적 특성

ㅇ (청원인 주장) 청원인은 동 우회조사제품의 물품(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이 마늘 끝을 다듬고 길이 또는 너비 방향으로 절단한 점을 제외하면, 반덤핑 명령의 대상인 신선 마늘과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함

ㅇ 또한 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은 IQF 마늘 쪽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성격을 지니며, 신선 마늘 및 IQF 마늘 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를 가진다고 주장함

ㅇ (반박 의견) 수입자(Green Garden)는 마늘 조각의 크기 축소가 중요한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식료품점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거나, 통마늘 쪽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요리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함

ㅇ 또한 Green Garden은 상무부가 마늘 조각을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s)'으로 간주하는 분석 논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마늘을 크게 변형시킨 다른 제품들(다진 마늘, 퓨레 등)까지 명령 범위에 포함시켜 결과적

으로 청원인들(Petitioners)이 애초에 의도했던 명령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게 만든다고 강조함

○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검토한 후,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고 Green Garden의 주장을 기각함

② 최종 사용자의 기대 및 용도

○ (청원인 주장) 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의 주요 용도는 볶은 마늘 가루(roasted garlic powder) 생산이며, 반덤핑 명령 대상인 신선 마늘이 “주로 식품 및 조미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용하여, 마늘 조각 역시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강조함

○ (반박 의견(Green Garden)) 상무부의 판정은 단순화된 분석에 불과하며, 물리적 특성과 유사하게 이 논리에 따르면 다진 마늘, 깍둑썰기 마늘, 마늘 퓨레 등도 모두 신선 마늘의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함

○ (상무부 판단) Green Garden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함. 상무부는 마늘 조각이 볶은 마늘 가루, 딥(dips), 매시(mashes), 샐러드 등에서 신선 마늘 및 동 대상물품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동일한 최종 사용자 기대와 용도를 지닌다고 결론지음

③ 유통(마케팅) 경로

○ (청원인 주장) 청원인들은 동 대상물품과 신선 마늘들이 산업 사용자, 식당, 그리고 소매 판매점에 유사하게 판매되며 동일하게 마케팅된다는 마케팅 자료를 제시함. 특히, 중국 생산업체들(Fenjun과 Hengxin)이 자사 브로슈어에서 소형 및 대형 마늘 조각 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광고하고 있음을 제시함

○ (반박 의견(Green Garden) Green Garden은 마늘 조각(garlic chunks)이 신선 마늘(fresh garlic)과 동일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두 제품은 시장 구조와 고객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함

○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Green Garden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음. 예비 판정 결론을 유지하며, 조사 대상 마늘 조각이 기존 명령대상 신선 마늘과 동일한 마케팅·유통 채널을 공유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인정함

④ 수입 제품의 총 가격 대비 변경 비용

- (청원인 주장) 청원인들(petitioners)과 상무부(DOC)는 마늘 쪽을 마늘 조각으로 만드는 물리적 변경이 최종 제품의 총 가치에 거의 가치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요소가 우회 행위(circumvention)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강조함
- 우회 조사 대상 상품(HTSUS 2004.90.8575 분류로 수입된 마늘 조각)의 평균단가(AUV)가 명령 범위 내 제품인 개별급속냉동 마늘 쪽, 신선한 통마늘, 신선한 껍질 벗긴 마늘 쪽의 평균단가보다 더 낮다고 주장함
- (반박 의견) 수입자인 Green Garden Produce, LLC는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Green Garden은 응답자들(Fenjun 및 Hengxin)의 보고에 근거하여, 낮은 등급 마늘을 마늘 조각으로 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20% 및 21.3% 더 높다고 주장함
- (상무부 판단) 상무부는 Green Garden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unconvincing) 함. 중국 생산업체 Fenjun 및 Hengxin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형·대형 마늘 조각(small and large garlic chunks) 또는 깍둑썰기 마늘(diced garlic)을 생산할 때 더 낮은 등급의 마늘(lower-grade garlic) 을 사용하며, 이 원재료의 비용은 계절별 시장 가격에 따라 일반 마늘 쪽(garlic cloves)보다 약 10%에서 50% 저렴 한 것으로 나타남

⑤ 추가고려요인 1 : 다른 성분 첨가로 인해 명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Green Garden은 해당 마늘 조각(small and large garlic chunks)이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주요 근거를 제시하며, 이는 명령 범위 자체에 명시된 명시적 제외 조항(explicit exclusions)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업체 의견) 중국산 대·소형 마늘 조각의 수입업체인 그린 가든(Green Garden)은 해당 제품이 반덤핑(AD)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제외근거) 기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범위는 “다른 성분의 첨가 또는 열처리로 가공되거나 보존되지 않은(but not prepared or preserved by the addition of other ingredients or heat processing)” 마늘 제품에 한정됨
- (그린 가든은 자사 제품이 시트르산(citric acid, 구연산)을 첨가하여 보존되었으므로 위 제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ㅇ 조사 대상 제품은 껍질이 벗겨지고, 다듬고 잘린 후 데쳐진(blanched) 다음, 구연산 수용액(citric acid aqua solution)으로 코팅되어 개별 급속 동결(IQF) 처리된 마늘 조각임
- ㅇ 특히 그린 가든은 기존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Wheatland Tube Co. v. United States(1998) 판례를 인용함.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명령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된 제품(specifically excluded product)은 회피 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통해 다시 명령의 범위로 편입될 수 없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그린 가든은 자사 제품이 명령상 명시적으로 제외된 제품에 해당하므로 회피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ㅇ 상무부는 전체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상무부는 조사 자료(record)에 그린 가든 제품이 구연산 첨가로 보존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ㅇ 아울러 상무부는 반덤핑 명령의 제외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안이 Wheatland 사건과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가지는 것은 인정했으나, 핵심 요건인 "다른 성분의 첨가로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마늘 조각들이 명령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Wheatland 기준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
- ㅇ 또한 Deacero S.A. de C.V. v. United States 사건은 기술적 기준(예: 단면적)에 따라 제품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 판례로, 그린 가든은 Deacero와 본 건을 구별하기 위해 명시적 제외 조항을 강조했으나, 상무부는 구연산 첨가에 의한 보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함

⑤ 추가고려요인 2 : 추가가공으로 기존 제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ㅇ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우회 조사에서 그린 가든의 주장—즉 자사 제품이 “추가가공된 제품(further processed product)”에 해당하므로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을 기각함. 상무부는 이 판단 과정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확립한 세 건의 주요 판례를 근거로 해당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함
- ㅇ 우선, Nippon Steel Corp. v. United States 사건은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조항의 입법 취지가 단순 문언상 포함 여부가 아닌,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제품을 명령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힌 판례로. 상

무부는 본 판례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며 해당 논리에 동의함. 그린 가든의 제품은 단순히 물리적 크기만 축소되었을 뿐이며, 사용 용도, 기능, 소비자 인식, 유통 경로 등 주요 특성에서 기존 생마늘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이는 Nippon Steel 판례가 설명한 “경미한 변경” 사례에 해당함

- 다음으로, Nippon Steel Corp. v. United States 사례는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조항의 입법 목적이 단순히 명령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명령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례로 상무부는 이 판례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며 해당 논리에 동의함. 즉 그린 가든의 제품은 단순히 물리적 크기만 축소되었을 뿐, 사용 용도, 기능, 소비자 인식, 유통 경로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생마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Nippon Steel 판례에서 의미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임
- 이어서 Deacero S.A. de C.V. v. United States 사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사양이나 특정 속성이 명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이 범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례로, 마찬가지로 상무부는 구연산 첨가에 의한 보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함
- 상무부는 위 두 판례(Nippon Steel, Deacero)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린 가든의 마늘 조각은 외형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본질적 특성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며, 반덤핑 명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경미한 변경”된 제품으로 간주되어 우회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상무부는 중국산 대·소형 마늘 조각이 신선 마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해당 제품이 단순한 외형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유통 경로, 변경 비용 등 5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음
- 특히 구연산 첨가에 의한 보존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명령에서 명시적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반덤핑 명령을 우회한 것으로 간주되어 §781(c) 기준에 따라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됨

1.4. 미국 내 조립·완성

1] 나선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핀(unthreaded pins of alloy steel)[227]

사례번호	A-570-104 / C-570-105	
조사 개시일	2023년 7월 12일	
최종판정	2024년 8월 20일	
조사 대상	중국에서 나선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핀이 미국으로 수출된 후 미국 내에서 나선가공(threading)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합금강 나사봉(threaded rod)으로 완성되는 제품	
조사 배경	미국 내 청원인이 제기한 요청에 따라, 중국산 나선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핀이 미국에서 나사 가공 처리를 통해 합금강 나사봉으로 완성되는 방식이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거래 형태에 대해 우회 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공식 개시함	
적용 법령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781(a), 19 CFR 351.226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7318.15.5051, 7318.15.5056, 7318.15.5090, 7228.60.8000, 7318.15.2095, 7318.19.0000, 7318.29.0000 등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동일한 품목	조사 대상인 나선 가공하지 않은 핀과 기존 명령 대상인 나선 가공한 합금강 봉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며, 단일 공정인 나선 가공(threading)을 통해 최종 제품으로 전환되므로 같은 종류(the same class or kind)의 제품으로 판단함
	미국 내 완성 조립	Birmingham 및 Dan Loc은 중국산 나선 가공하지 않은 핀을 수입해 미국 내에서 나선 가공을 수행하였고,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판매된 사실이 입증됨.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완성된 것으로 판단함
	경미성	투자 수준, R&D, 생산설비 모두 제한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고, 단일 기계로 수행 가능하며, 부가가치와 관련하여 판매가격 대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중국산 부품 가치 비중	나선 가공하지 않은 핀 또는 블랭크의 가치가 완제품(나선 가공한 합금강 봉)의 총 가치 중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ortion)을 차지하며, 이는 청원인의 제출 자료를 통해 입증됨
	추가고려요소	(무역 패턴 변화) AD/CVD 명령 이후 중국산 나선 가공한 제품 수입에서 나선 가공하지 않은 부품 수입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명령 회피 의도가 반영된 전략적 구조 변경으로 간주됨 특수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는 판정의 필수 요건은 아님
결론	상무부는 「1930년 관세법」 제781(a)조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된 합금강 무나사 핀이 미국 내에서 단순히 나사산 가공만 거쳐 합금강 나사봉으로 완성되는 방식은 기존의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227) **(조사개시)** 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bon and Alloy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Order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 - Unthreaded Pins(July 12, 2023)(barcodes : 4399417)

이 사례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완성·조립 방식의 우회에 해당함. 중국산 나선가공되지 않은 핀을 수입해 미국에서 나선 가공을 거쳐 나사봉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단순한(또는 경미한) 가공으로 판단되어, 우회 판정이 내려짐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대표)	조사개시일	유형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나선가공 하지 않은 합금강 핀	A-570-104 / C-570-105	7318.29.0000	23-07-12	미국 내 완성/조립	최종 판정 (24.08.02.)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DOC)는 2023년 7월 12일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81(a)조(미국 내 완성·조립)에 따라 중국산 합금강 및 특정 탄소강 나사봉에 대한 반덤핑(A-570-104) 명령과 탄소강 및 합금강 나사봉에 대한 상계관세(C-570-105) 명령의 우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함

- 본 우회조사는 미국 내 제조업체 Vulcan Threaded Products Inc의 청원으로 개시되었으며, 청원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나선 가공(threading)하지 않은 합금강 핀(unthreaded pins of alloy steel)'이 미국으로 수입된 후, 현지에서 경미하거나 미미한 나선 가공(threading)만을 거쳐 완제품 형태의 나사봉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함

- 청원인은 이러한 공정이 실질적인 제조 활동이라기보다는 단순 나선 가공 작업에 불과하며,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경미한 후공정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상무부는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식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개시함

[표 3-64] 나선가공하지 않은 합금강 핀 AD/CVD 회피 조사 경과

구분	주요내용
23.05.22	• Vulcan Threaded Products Inc.이 미국 상무부에 우회조사를 청원함

(예비판정) 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bon and Alloy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Unthreaded Pins(March 14, 2024)(barcodes : 4524091)

(최종판정) 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bon and Alloy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Unthreaded Pins(August 20, 2024)(barcodes : 4618865, 4618866)

	- (청원 내용) 중국산 나선 가공하지 않은(unthreaded) 핀형 강봉을 미국에서 단순 나선 가공만 거쳐 판매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
23.07.12	• 상무부가 우회조사 공식 개시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 (조사대상) 중국산 나선 가공하지 않은 핀(unthreaded pins)을 미국 내에서 나선 가공하여 완성한 나사봉(steel threaded rod)
24.03.14	• (예비 판정) 중국산 나선 가공하지 않은 핀이 미국 내에서 나선 가공 공정만을 거쳐 완성된 제품은 AD/CVD 명령을 우회하는 것으로 잠정 판단
24.08.20	• (최종 판정) Section 781(a)에 따라 중국산 나선 가공하지 않은 핀을 미국 내에서 단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전환한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회피(circumvention)한 것으로 최종 확정

자료 : 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bon and Alloy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Unthreaded Pins(August 20, 2024)(barcodes : 4618865, 4618866)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

ㅇ (우회조사 대상) 우회 조사 대상 물품은 중국에서 수출되는 나선 가공을 하지 않은 합금강 핀(unthreaded pins of alloy steel)으로 미국에서 나사봉으로 추가 가공되는 제품임

- 동 조사대상 물품은(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합금강 핀)은 고형의 원형 단면을 가지며, 직경과 길이에 제한이 없고, 머리(non-headed)가 없는 나선가공되지 않은 봉재(rod), 바(bar), 또는 스터드(stud)를 의미함

- 또한 이러한 제품은 모따기(unchamfered)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거나, 양 끝단이 이미 모따기된 상태로 수입될 수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 제품을 "피치 지름 스터드 블랭크(pitch diameter stud blanks)" 또는 "블랭크(blanks)"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음

- 동 제품들은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7318.15.5051, 7318.15.5056, 7318.15.5090, 7228.60.8000, 7318.15.2095, 7318.19.0000, 7318.29.0000 등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일부 세번은 합금강 나사봉(threaded rod)도 포함하고 있음

ㅇ (기존 명령의 범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는 다음과 같음

[표 3-65] 반덤핑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 이 반덤핑 명령의 적용대상 상품은 합금강 및 특정 탄소강으로 만든 나선 가공한 봉(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임
- 합금강 및 특정 탄소강 나선가공한 제품이란, 탄소강 또는 합금강 재질의 나사산형 봉강(threaded rod), 봉(bar), 또는 스터드(stud)를 말하며, 속이 찬(solid) 원형 단면을 가지고 직경이나 직선 길이에 상관없이 포함됨
-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발(drawing), 냉간압연(cold-rolling), 나선(threading) 가공, 교정(straightening) 과정을 거치며, 또는 열간압연(hot-rolling) 방식일 수도 있음
- 또한, 본 명령의 적용대상인 합금강 및 특정 탄소강 나선가공한 제품은 머리가 없으며, 전체 실제 길이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나사산(thread)이 가공되어 있어야 함
- 이 제품에는 임시 녹 방지용의 오일 마감(plain oil finish), 아연도금(zinc coating, 즉 전기도금 또는 용융아연도금), 페인트 도장(paint)과 같은 다양한 마감처리 또는 코팅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유사한 마감 또는 코팅이 가능함

□ 규격

- 합금강 나선가공한 제품은 보통 다음의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으로 생산됨: ASTM A193 B7/B7m, ASTM A193 B16, ASTM A320 L7/L7m, ASTM A320 L43, ASTM A354 BC 및 BD, ASTM F1554 Grade 105.
- 또한 다음의 규격에도 따라 생산될 수 있음 SAE(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 1429 Grade 5 및 Grade 8, ISO(국제표준화기구) 규격 898 Class 8.8 및 10.9, 그리고 API(미국석유협회) 규격 API 20E.
- 특정 탄소강 나선가공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ASTM A449 규격으로 생산됨
- 상기 물리적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강재 나선가공한 제품은 특정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명령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 제3국 가공 및 액세서리

- 본 명령의 대상에는 위 설명에 부합하는 물품 중 제3국에서 절단(cutting), 모따기(chamfering), 코팅(coating), 도장(painting), 다른 제품과의 결합 또는 포장 등과 같은 가공이나 조립, 포장공정이 수행된 경우도 포함됨. 이러한 작업이 원산국에서 수행되었다면 본 명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함
- 합금강 및 특정 탄소강 나선가공한 제품은 너트(nuts)나 와셔(washers) 등 다른 부품 및 부속품에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명령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다만, 이러한 비대상(non-subject) 상품과 결합된 상태로 수입될 경우, 나선가공한 제품 부분만 본 명령의 적용대상이 됨

□ 범위에서 제외되는 품목 (Exclusions)

- 한쪽 또는 양쪽 끝에만 나사산이 가공되어 있으며, 나사 가공이 전체 실제 길이의 25% 이하인 나사봉, 바(bar), 또는 스터드(stud)
- 스테인리스강 나선가공한 제품(stainless steel threaded rod) — 탄소 함량이 중량기준 1.2% 이하이고, 크롬 함량이 10.5% 이상(다른 원소 포함 가능)인 제품
- 또한, 본 반덤핑 명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존의 중국산 특정 강재 나선가공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 명령(74 FR 17154, 2009년 4월 14일자)에서 이미 다루어지는 물품임
- 특히, '조립식 가구(ready-to-assemble furniture)'에 포함된 하드웨어 패키지의 일부로 수입되는 나선가공한 제품은 본 명령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ㅇ 합금강 및 특정 탄소강 나선가공한 제품은 현재 미국 통일관세표(HTSUS)상 품목번호 7318.15.5051, 7318.15.5056, 7318.15.5090에 분류됨

ㅇ 또한, 7318.15.2095 및 7318.19.0000 로도 수입될 수 있음

ㅇ 다만 HTSUS 번호는 편의상 제공된 것이며, 명령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결정적인 효력을 가짐

□ 우회조사 판정 내용

ㅇ 동일한 품목 여부 (§781(a)(1)(A))

- 상무부는 조사 대상 물품이 기존 명령이 적용되는 물품과 물리적 특성상 동일한 종류(the same class or kind)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결정은 해당 핀이 미국에서 나선가공을 거쳐 최종 제품(나사봉)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근거함
- 이에 대해 미국의 주요 수입업체들은 나선가공되지 않은 핀이 기존 명령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상무부는 이 주장을 기각함
- 상무부는 우회 조사 목적상, 특정 제품이 기존 명령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효과가 있는 유사 품목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함. 특히 기존 명령에는 '나선가공되지 않은 핀'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수입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ㅇ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중국산 부품 또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미국 내에서 완성되거나 조립된 제품으로 판단함
- 청원인은 Birmingham과 Dan Loc이 중국에서 나선가공되지 않은 합금강 핀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추가 가공했다는 증거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Birmingham이 중국으로부터 나선가공 장비를 도입했다는 증거도 제시됨
- 청원인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된 중간재는 나선가공을 거쳐 나사봉으로 완성되는 전형적인 형태의 반가공 제품이며, 이 핀은 나선가공 외에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다른 용도가 없다고 주장함

-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해당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나선가공되지 않은 핀)을 이용해 미국 내에서 기존 제재 물품과 동일한 완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

ㅇ 미국내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① 투자 수준) 상무부는 나선가공되지 않은 합금강 핀을 나사봉(steel threaded rod)으로 가공하는 작업은 투입 중간재(핀) 생산에 필요한 투자 수준보다 제한된 투자만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는 다른 사례들과 동일하게 비교 방법론을 근거함

  · 청원인들은 생산 공정 관련 자료와 고정 자산 규모를 제시하며, 나선가공되지 않은 핀 생산 공정에 더 많은 투자와 설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미국 내 수입·가공업체들은 자국 내 나사봉 생산업체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강 생산 비용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상무부는 이 주장을 기각함

  · 오히려 상무부는 과거 Al Ghurair Iron & Steel LLC v. United States (CIT 2021, 연방항소법원 2023) 사례를 인용하며 주장을 기각함. 해당 사건에서 상무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생산자의 냉간 압연 강철(cold-rolled steel) 및 내식강철(corrosion-resistant steel) 공장 투자를 중국 통합 제철소의 투자와 비교하여 UAE의 투자 수준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도 이를 타당한 비교로 인정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상무부는 나선가공(threading) 공정이 '경미하거나 미미한(minor or insignificant)'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 내 연구개발(R&D) 수준을 검토함

  · 청원인은 R&D가 주로 나선가공하지 않은 핀(unthreaded pins) 또는 블랭크(blanks) 생산 단계에 집중되며, 나선가공 단계 자체에는 의미 있는 R&D가 거의 없다고 주장함

  · 미국 내 수입·가공 업체들도 청원인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임

  * Birmingham Fastener Inc.는 나선가공 관련 R&D 비용이 약 15만 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했으며, 상무부는 이 금액이 전체 비용 및 수익 대비 낮은 비중이라고 지적함

  * 또 다른 주요 수입자인 Dan Loc Group LLC는 관련 R&D 비용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

- 상무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미국 내 나선가공 공정에 수반되는 R&D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함

- **(③ 생산공정의 특성)** 청원인은 ①나선 가공하지 않은 제품(합금강 핀 또는 블랭크)에 나선 공정을 수행하여 나사봉을 완성하는 공정은 ②와이어 로드(wire rod) 또는 강철 바(steel bar)부터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훨씬 더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함

  - 원자재(와이어 로드 또는 강철 바)부터 시작하는 '전체 생산 공정'

    * 이 공정은 (1) 선재·봉재의 스케일 제거, (2) 냉간 인발, (3) 교정, (4) 열처리, (5) 물리적 특성 시험 및 제강소 인증서 발급, (6) 절단, (7) 모따기, 그리고 마지막 (8) 나선가공 등 총 8단계로 구성됨. 즉,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함

    * 중국산 중간재(나선가공되지 않은 합금강 핀 또는 블랭크)를 사용하는 '제한된 공정'

    * 이 경우, 이미 중국에서 (1)부터 (7)단계까지 상당 부분 가공이 완료된 "나선가공되지 않은 핀" 형태의 중간재를 수입함

- 미국 내에서는 이 중간재에 마지막 단계인 (8) 나선가공 공정만 수행하여 최종 나사봉을 완성함. 청원인은 이 나선가공 공정이 단일 기계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주요 수입업체들도 이 점에 동의함

  - 상무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미국 내 나선가공 공정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제한적(limited)이라는 판단을 내림

[표 3-66] 원료부터 나사봉 제조단계

스케일 제거	✓ 와이어 로드 또는 바의 표면 스케일(scale)을 제거
↓	
냉간 인발	✓ 와이어 로드 또는 바를 원하는 직경으로 줄이는 공정
↓	
교정	✓ 와이어 로드 또는 바를 곧게 펴는(straightening) 단계
↓	
열처리	✓ 강철의 미세 구조를 변경하여 표면 경도, 온도 저항성, 연성 및 강도와 같은 필수적인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계
↓	

테스트 및 인증	✓ 열처리된 제품을 시험하고,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증명하는 제강소 인증서(steel mill certificate)를 발급하는 단계
↓	
절단	✓ 와이어 로드 또는 바를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단계
↓	
모따기	✓ 와이어 로드 또는 바의 끝부분을 모따기(chamfering)하는 단계 ✓ 미국으로 수입된 나선가공하지 않은 물품들은 모따기 처리까지 완료된 상태로 들어올 수 있음
↓	
나선 가공	✓ 핀 또는 블랭크(blanks)를 나선가공 기계(threading machines)를 통해 공급하는 단계 ※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이 단계가 전체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단 하나의 기계만 필요로 하는 기술적으로 기초적(elementary in technique)이고 범위가 작은 과정이라고 강조함

- **(④ 부가가치 비중)**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가치가 미국 내 판매된 완제품 총 가치 중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나선가공(threading) 관련 비용을 미국 내 판매된 완제품의 판매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함

  · 청원인인 Vulcan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중국산 원재료 즉 나선 가공을 하지 않은 반제품(핀 또는 블랭크)의 1파운드 당 나선 가공비용이 미국 내 판매 가격 총 가치 대비 작은 수준으로 확인됨

  · 반면, 미국 수입업체인 Birmingham은 "핀을 강철 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특정 비용을 식별할 수 없다"고 진술했으며, Dan Loc 또한 "노동력이나 기타 비용을 작업별로 추적하지 않아 요청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함. 상무부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로부터 충분한 비용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청원인이 제출한 수치를 주요 근거로 분석을 진행함. 그 결과, 미국 내에서 수행된 나선가공의 부가가치는 완제품 판매가 중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미국 내 가공 가치가 경미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예비 판단했고, 최종 판정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함

  · 상무부는 다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비시장경제(NME) 국가인 중국에 대한 조사로, 상무부는 부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대체값(surrogate values, SVs)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중국 주요 수출업체인 용딩 패스너(Yongding Fastener)가 상무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함

- 상무부는 중국산 가치 판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고 이에 미국내 통합 생산자인 청원인(Vulcan Threaded Products)의 생산 경험과 자료를 주요 근거로 삼았음. 청원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무나사 핀(unthreaded pins) 또는 블랭크(blank)의 가치가 완성된 강철 나사산 봉의 평균 순판매가격(average net sales price)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상무부는 이를 수용함
- 이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가치가 미국 내에서 판매된 완제품 총 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했으며, 이러한 긍정적 예비 판정은 최종 판정에서도 유지됨

□ **추가 고려 요소**

ㅇ (무역 흐름의 변화) 상무부는 청원인과 미국 수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 패턴을 확인한 결과, 중국산 완제품(나선가공한 봉) 수입에서 중국산 부품(나선가공하지 않은 핀) 수입으로의 전환이 있었던 무역 패턴이 확인됨

- 청원인 Vulcan이 제출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7월 28일까지 최소 29건의 중국산 강철 나사산 봉(steel threaded rod)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22건은 반덤핑 청원서 제출일(2019년 2월 21일) 이후인 2월 21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졌음
- 청원인은 2019년 7월 29일을 Birmingham의 무역 패턴이 급격히 전환된 시점으로 특정했으며, 이후 2019년 8월 2일부터 Birmingham은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나사 없는 핀(unthreaded pins)과 나선가공(threading)용 기계를 주문하기 시작함. Dan Loc 또한 유사한 패턴 변화를 보임
- 상무부는 이러한 무역 패턴의 급격한 전환이 응답자들의 설문 응답 및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입증된다고 판단함. 이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전략적 조달 구조 변경으로서, 명령 회피(circumvention)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음

ㅇ (특수관계 여부) 부품 제조·수출업자와 미국 내 조립업체 간의 제휴 관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국 수입업체인 Birmingham과 Dan Loc이 중국 공급업체와 제휴 관계(affiliation)에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이 요소는 우회 판정을 내리는 데 필수 요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우회조사 판정 결과

○ 상무부는 「1930년 관세법」 제781(a)조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된 합금강 나사 없는 핀이 미국 내에서 단순히 나선가공만 거쳐 합금강 나사봉으로 완성되는 방식은 기존의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우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2) 비도공지 롤(uncoated[228] rolls)[229]

사례번호	A-570-022 / C-570-023	
조사 개시일	2019년 10월 18일	
최종판정 발표일	2021년 12월 14일 (연방 관보 게재일)	
조사 대상	중국에서 롤 형태로 생산·수출된 비도공지(uncoated paper rolls)가 미국 내에서 단순 절단(sheeting)을 통해 시트(sheet)로 전환되는 경우	
조사 배경	기존 AD/CVD 명령은 시트 형태 제품에만 적용되었는데, 일부 수입업체들이 동일 규격의 인쇄용지를 롤 형태로 수입한 후 미국 내에서 단순 절단하여 관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가 개시됨	
적용 법령	「1930년 관세법」 §781(a)	
HS code 기존 명령의 범위	(주요 분류) 4802.56.1000, 4802.56.2000, 4802.56.3000, 4802.56.4000, 4802.56.6000, 4802.56.7020, 4802.56.7040, 4802.57.1000, 4802.57.2000, 4802.57.3000, 4802.57.4000	
미 우회 판정의 주요 판단 요소	투자수준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국 내 전환 공정의 투자 규모가 매우 낮다고 판정. → 미국 내에서 필요한 장비는 절단기(sheeting machine)로 한정되며, 그 투자 규모는 극히 제한적임
	연구개발 (R&D)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 절단 공정은 자동화 기계로 수행되는 단순 과정으로, 별도의 R&D가 필요하지 않음
	생산공정	미국 내 절단 공정은 단순히 롤을 풀어 낱장(sheet)으로 절단하는 수준으로, 펄프부터 종이를 제조하는 복잡한 생산공정과 대조됨. 따라서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과정으로 평가됨
	생산설비	생산설비는 절단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자동·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운영 가능. 복잡하거나 대규모 시설이 요구되지 않음
	제3국 가공의 부가가치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수행된 절단 공정의 부가가치가 최종 상품 가치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 반대로 중국산 롤의 가치가 최종 시트 제품 가치의 상당한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한다고 결론지음
결론	상무부는 위와 같은 요인을 종합하여, 중국산 비도공지 롤을 미국 내에서 시트로 전환하는 공정은 경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minor and insignificant) 공정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이에 따라 해당 롤 제품은 기존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228) 본 문서에서 'Uncoated Paper'는 편의상 '비도공지 롤'로 일괄 표기함

229) (예비판정) Certain Uncoated Paper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for Uncoated Paper Rolls(November 13, 2020)(barcodes : 2020-25159-1),
(최종판정) Certain Uncoated Paper from Braz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ndonesi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s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for Certain Uncoated Paper Rolls, 86 FR 71025 (December 14, 2021); Correction(January 13, 2022)(barcodes : 4189069-01, 4189069-02, 4200445-01, 4200447-01)

미국 상무부(DOC)는 2016년 3월 3일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을 발령함. 현재 이들 3개국 모두에 대해 해당 명령이 여전히 유효함

- 이후 비도공지 사례는 두 가지 유형(경미한/미국 내 완성·조립)의 우회조사가 진행된 바 있음
- 첫째, 2017년 9월 1일 개시된 경미한 변경(minor alteration) 유형으로, 기존 명령 대상 제품과 동일한 용도와 특성을 가지면서도 백색도(brightness)가 다소 낮은 비도공지('83 Bright Paper')가 수입되는 사례에 대해 「1930년 관세법」 제781(c)조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외형상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정하고, 명령의 적용 범위를 '83 Bright Paper'까지 확대함
- 둘째, 2019년에 개시된 미국 내 완성(assembly or completion in the United States) 유형으로, 중국산 비도공지 롤(uncoated paper rolls)을 미국 내에서 절단(sheeter cutting)하여 시트(sheet) 형태로 완성·판매하는 행위가 AD/CVD 명령을 회피(circumvention)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됨
- 동 사례는「1930년 관세법」 제781(a)조(미국 내 조립 또는 완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상무부는 해당 절단 공정이 새로운 원재료 투입이나 화학적 변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고 보아, 중국산 비도공지 롤이 기존 명령을 회피(circumvention)한 것으로 최종 판정함
- 본 보고서는 이 중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미국 내 절단·완성 유형에 대한 우회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대상 품목	사건번호 (명령 부과일)	HTUTS (대표)	조사개시일	유형	판정 (예비/최종) (판정 일자)
비도공지 롤	A-570-022 (2016.03.01.)	4802.56.1000	20.10.14	미국 내 조립 완성	최종 (21.12.07)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DOC)는 2016년 3월 3일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 반덤핑(A-570-022 등) 및 상계관세(C-570-023 등) 명령을 발령함

- 해당 명령은 시트(sheet) 형태의 비도공지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명령 시행 이후 일부 수입업체들이 동일한 규격의 종이를 롤(roll) 형태로 수입한 뒤, 미국 내에서 단순 절단(sheeter cutting) 작업만을 거쳐 시트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
- 이에 상무부는「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제781(a)조(미국 내 완성 또는 조립, completion or assembly in the United States)에 근거하여 2019년 10월 18일 우회조사를 개시함

[표 3-67]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AD/CVD 회피 조사 경과

구분	주요내용
19.10.18	• 미국 상무부(DOC), 「1930년 관세법」 §781(a)에 따라 직권(Self-initiation)으로 우회조사 개시
20.10.14	• (예비 판정) 상무부,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미국 내 절단 공정(sheeting)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minor and insignificant)” 공정에 해당한다고 예비 긍정 판정 발표
20.11.06	• (최종판정) 상무부,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미국 내 전환이 기존 AD/CVD 명령을 회피(circumvention)한다고 최종 긍정 판정 확정

자료 : Certain Uncoated Paper from Braz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ndonesi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s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for Certain Uncoated Paper Rolls, 86 FR 71025 (December 14, 2021); Correction(January 13, 2022)(barcodes : 4189069-01, 4189069-02, 4200445-01, 4200447-01)

□ 우회조사 대상 및 명령의 범위[230)]

○ (우회조사 대상) 우회조사 대상 물품은 중국산 비도공지 롤(Uncoated Paper Rolls)로, 통상적으로 ‘시터 롤(Sheeter Rolls)’로 불림

○ (기존 명령의 범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는 다음과 같음

[표 3-68] 명령의 범위(Scope of the Orders)

□ 물품 설명

ㅇ 시트(sheet) 형태의 제품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종이를 포함하며 '이는 다음 각 조건을 충족하는 도포하지 않은 종이(Uncoated Paper)를 의미함

□ 밝기

ㅇ GE 밝기 85 이상의 백색지이거나 유색지

※본 범위 정의에서 “유색지(Colored paper)”란 흰색 외의 색조를 가지며, 마젠타(Magenta, 빨강), 노랑(Yellow), 시안(Cyan, 파랑)의 기본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 색상을 반사하는 종이를 의미함

ㅇ 밝기는 GE 반사율 척도(GE Reflectanc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되며, 이는 종이 표면의 빛 반사 정도를 나타냄. 수치 1은 가장 어두운(완전한 검정색) 반사율을, 100은 가장 밝은 반사율을 의미

230) 청산 지시 및 인증 요건(상무부는 최종판정 이후, 2019년 10월 18일 개시일 이후 수입된 중국산 비도공지 롤에 대해 CBP가 반덤핑·상계관세율로 청산하도록 지시함. 다만, 수입자가 해당 롤이 미국 내에서 시트로 절단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특정 비협조 기업(CNAL, Kingdecor, Shandong Sun Paper, Sun Paper HK, Sunpack)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됨)

□ 표면 특성
- 표면 장식·인쇄 여부(단, 제외 품목의 인쇄는 별도 규정), 올록볼록한(embossed), 천공(perforated), 펀칭(punched) 여부와 무관하며, 표면의 평활도(smoothness) 또는 크기와도 무관함

□ 펄프 종류
- 사용된 펄프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포함

□ 포함 대상
- 상기 정의를 충족하는 무목지(Uncoated Free Sheet Paper)
- 표백 화학열역학기계펄프(BCTMP)로 제조된 비도공지 목분지(Uncoated Ground Wood Paper)
- 사용된 펄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모든 비도공지

□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는 품목
- 최종 내용이 인쇄된 종이(printed with final content): 시트의 한 면 이상에 텍스트 또는 그래픽이 전체 표면의 5% 이상 인쇄된 경우
- 줄지(Lined Paper) 제품: 학용품 등으로 사용되며, 직선(가로선 및/또는 세로선)이 인쇄되어 복사 또는 인쇄용으로 부적합한 종이

□ 우회 조사에 따른 범위 확장
- (2017년 9월 1일) 본 명령의 적용 대상인 상품에서 경미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상품은 여전히 본 명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됨
  ※ 2017년 9월 1일, 상무부는 'GE 밝기 83±1%' 도포하지 않은 종이('83 Bright Paper')가 외형·형태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이를 본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 HTSUS
- 대상 품목은 주로 4802.56.1000, 4802.56.2000, 4802.56.3000, 4802.56.4000, 4802.56.6000, 4802.56.7020, 4802.56.7040, 4802.57.1000, 4802.57.2000, 4802.57.3000, 4802.57.4000으로 분류됨
- 일부 대상 품목은 4802.62.1000, 4802.62.2000, 4802.62.3000, 4802.62.5000, 4802.62.6020, 4802.62.6040, 4802.69.1000, 4802.69.2000, 4802.69.3000, 4811.90.8050, 4811.90.9080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
- 다만 HTSUS 번호는 편의상 제공된 것이며, 명령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결정적인 효력을 가짐

□ 우회조사 판정 내용

○ 동일한 품목 여부[231)]

- 청원인들은 중국에서 수출된 비도공지 롤(uncoated paper rolls)이 미국 내에서 단순 절단(sheeter cutting)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비도공지 시트(uncoated paper sheets)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류(class or kind)의 제품이라고 주장함

231) 4184162-02(필리핀), 4184168-02(브루나이)

- 비도공지 롤은 AD/CVD 명령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지 않지만, 청원인들은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시트 생산을 위한 중간재에 해당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음
  - 대부분의 중국산 롤은 미국 내에서 절단되어 시트 형태로 판매되며, 이는 명령 대상인 비도공지 시트와 동일한 최종 용도 및 상업적 기능을 가짐을 강조함
- 또한 청원인들은 이들 업체가 단순 절단만을 거쳐 명령 대상 제품과 동일한 완제품을 유통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선적서류 등)를 제출함
-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국 수출업체들로부터 충분한 자료 협조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판정함
- 상무부는 중국산 롤이 이미 시트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갖춘 상태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미국 내 절단 공정은 제품의 본질적 성질이나 상업적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 그치며, 중국에서 생산된 비도공지 롤은 절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기존 명령 대상 물품과 동일하다고 간주함

○ **기존 제재국 원재료 사용 여부**

- 청원인들은 중국에서 수출된 비도공지 롤(uncoated paper rolls)이 이미 시트 형태의 비도공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재료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갖춘 상태라고 주장함
-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단(sheeter cutting) 공정은 단순히 롤을 소비자용 크기의 시트로 절단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원재료 투입이나 실질적인 제조공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Domtar의 생산공정 자료와 ITC 최종보고서, 무역통계 자료 등을 제출함
- 상무부는 제품의 동일성 여부 판단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 자료 부족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함
- 그 결과, 중국산 비도공지 롤이 미국 내에서 사소한 절단만으로 명령 대상 시트로 전환된다고 판정함

ㅇ 미국 내 가공의 경미성(minor or insignificant) 여부

-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충분한 협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기초로 판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절단 공정이 제품의 본질적 성질이나 상업적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minor and insignificant) 수준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지음

- (① 투자 수준) 청원인들은 중국산 비도공지 롤을 시트(sheet)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 투자 규모가 극히 제한적(minimal capital investment)이라고 주장함

  · 주요 설비는 절단 기계(sheeting machines)에 불과하며, 이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은 펄프에서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약 20억 달러가 투입되는 완전 통합 제지공장(fully integrated paper mill) 건설비용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또한 복잡한 장비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화된 기계로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수행 가능한 단순한 과정이라고 강조함

- (② 연구개발(R&D) 수준 및 ③ 생산공정의 특성) 절단 공정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개발(R&D) 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절단 설비는 절단기와 포장 장비 등 제한된 시설(limited sheeting and packaging facilities)로 구성되어 있음. 상무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정 복잡성 및 기술개발 활동이 거의 없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함

- (④ 생산설비의 규모) 미국 내 생산 설비는 절단기와 포장 장비 등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화 수준이 높고 인력 투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규모가 작다고 평가됨

- (⑤ 부가가치 비중) 청원인들은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너지, 노동, 포장재 등)이 최종 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고, 상무부는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함

□ **추가 고려 요소**

ㅇ (무역 흐름의 변화) 청원인들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대미 수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조사 개시 이후(2015년) 수입량이 약 5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함

- 또한 청원인들은 중국의 한 제지 생산자가 “롤 상태 종이(sheeter rolls)”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를 미국 내 절단업체가 가공·판매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함

- 조사 과정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중국 수출업체들도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음. 이에 상무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수입 급증이 무역 및 조달 패턴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정량적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우회 판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함

o (특수관계 여부) 미국 내 절단업체와 중국 내 비도공지 생산업체들 간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음

- 상무부는 본 건에서 특수관계 여부가 결정적 판단요소는 아니며, 비도공지 산업의 구조상 대부분의 생산업체들이 절단 이전 단계에서 롤 형태로 제품을 분리·공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상무부는 특수관계 여부가 예비 및 최종 긍정판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o (원자재 수입 구조 변화) 청원인들은 비도공지 시트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비도공지 롤의 공급 구조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중국으로 급격히 집중되었다고 주장함

- ITC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대미 수입량은 2014년 1,214메트릭톤(metric tons)에서 2015년 2,998메트릭톤으로 증가하여, 조사 개시 이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상무부는 이러한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수입 급증을 조달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근거로 판단하였고, 이를 우회(circumvention)를 인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함

[표 3-69]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수입량 변화 추이(단위 : 메트릭톤(metric tons))

구분	2014년 (조사 이전)	2015년 (조사 개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량	1,214	2,998	2,624	1,686	620	183 또는 106

자료 : (예비 판정)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Uncoated Paper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for Uncoated Paper Rolls, 85 FR 72624 (November 13, 2020). (문서번호: 2020-25159-1)

□ **우회조사 판정 결과**

ㅇ 상무부는 본 조사에서 중국산 비도공지 롤(uncoated paper rolls)이 미국 내에서 단순 절단(sheeter cutting) 공정만을 거쳐 비도공지 시트로 완성·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함

- 절단 공정은 새로운 원재료 투입이나 화학적 변형 없이 제품의 형태만을 변경하는 수준에 불과함
- 또한 투자 규모, 연구개발 수준, 생산공정의 특성, 생산설비 규모 및 부가가치 비중 등 모든 측면에서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minor and insignificant) 수준으로 평가됨
- 아울러 중국산 비도공지 롤의 비정상적인 수입 증가는 우회(circumvention)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상무부는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미국 내 절단 공정이 제품의 본질적 성질이나 상업적 기능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비도공지 롤은 절단 후에도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기존 AD/CVD 명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정함

2. CBP의 주요 회피(Evasion) 조사 사례

□ **CBP 회피조사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산 원재료·중간재가 제3국을 경유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된 구조를 보이며, CBP는 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 여부, 실제 생산능력, 무역 패턴의 변화, 가격 과소신고(undervaluation) 여부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활용함**

○ 본 연구에서 선별한 사례는 총 7건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제3국 조립·완성을 통해 실질적 변형 여부가 쟁점이 된 강철 휠, ▲EAPA 제도 최초 판정으로 기준을 확립한 옷걸이, ▲중국 본사-제3국 제조법인-미국 수입업체 간 지배구조형 회피가 드러난 글리신, ▲한국 기업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된 매트리스, ▲유럽 경유 환적 구조가 확인된 이동식 접근장비, ▲단순 환적과 가격 조작이 결합된 주철관·이음쇠, ▲CBP 회피조사와 상무부 우회판정이 연계적으로 작동한 MSG 등이 이에 포함됨

○ CBP 회피조사는 상무부 우회조사와 달리 생산공정의 '경미성(minor processing)' 여부나 복잡한 가치비중 분석보다, 공급망 구조, 생산능력, 특수관계, 환적 여부 등 사실관계에 기반한 실질적인 증거 중심의 논리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

[표 3-70] 품목별 CBP 회피조사 사례

구분	특정 휠	옷걸이	글리신	매트리스	이동식 장비	이음쇠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선정 이유	실질적 변형 기준 확립 (CIT 확정)	EAPA 최초 회피 판정	중국과 제3국 국가간 지배구조형 회피 전형	한국 기업 직접 대상	유럽 경유 회피 구조	환적·가격조작 복합형	CBP-상무부간 협업, 상무부 우회 판정 → CBP 판정 영향 미침
Case No	7509	7175	7647	7856	7950	7819	7950
경유국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명령 발효	2019.5.24	2008.1	2017	2019	2021	2018	2008
조사 개시	2020.8.18	2016.10.11	2021.10.26	2023.11.17	2023.12.20	2023.7.26	2024.4.1
최종 판정	2023.12.22. (법원 2025.2.21)	2017.8.14	2022.7.22	2024.9.19	2025.6.30	2024.5.29	2025.9.15
반덤핑/상계관세	A-570-082 C-570-083	A-570-918	A-570-836 C-570-081	A-570-918	A-570-836 C-570-081	A-570-092 C-570-128	A-570-992

1) 특정 휠(22.5인치 및 24.5인치 직경)[232]

사건번호	A-570-082 / C-570-083	
조사번호	No. 7509	
조사국가	태국 (Thailand)	
조사착수일	2020.08.18 (CBP EAPA 조사 개시)	
최종판정일	2023.08.21 (CBP 최종 회피 판정), 2023.12.22 (CBP 행정재심 결정)	
조사대상기업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oration (미국 수입업체) Asia Wheel Co., Ltd. (태국 제조업체)	
제보자	Accuride Corporation, Maxion Wheels Akron LLC (미국 내 휠 제조업체)	
조사 배경	미국 Accuride Corporation, Maxion Wheels Akron LLC 등이 일부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디스크(disc)와 제3국산 강판으로 성형된 림(rim)을 태국에서 용접해 '태국산'으로 신고·수입하고 있다고 회피 의혹을 제기함 CBP는 태국에서 조립된 제품이 기존 AD/CVD 명령 범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범위판정을 상무부에 회부함	
주요 판단 근거	① 혼합 원산지(중국산 디스크 + 제3국 림) 제품의 범위 포함 여부	상무부는 중국산 디스크 및 제3국산 강판으로 성형된 림을 태국에서 용접·도장한 제품은 실질적 변형이 없으므로 중국산 명령 범위(covered merchandise)에 포함된다고 판정함
	②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적용	상무부는 ▲제품의 종류, ▲제3국 가공의 성격 및 복잡성, ▲제품 특성 및 핵심 부품, ▲생산비용 및 부가가치, ▲투자 수준 등 5가지 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태국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③ 태국 현지 생산능력 및 설비투자 실체 여부	CBP 현장조사에서 Asia Wheel 공장은 장기간 미가동 상태였고 설비는 노후되어 있었으며 재고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태국 내 실질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결론	상무부와 CBP는 태국 조립 제품을 실질적으로 중국산 구성품에 기반한 제품으로 보아 범위 내 제품으로 결정하였고, Vanguard의 수입행위를 EAPA상 회피(evasion)로 확정함.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비고	태국 업체 Asia Wheel 및 미국 수입업체 ZC Rubber America, Inc 등은 상무부와 CBP의 판정에 불복해 CIT에 제소하였으나, 법원은 2025.2.21 Slip Op. 25-18 판결에서 상무부의 범위 판정 해석 결과가 자의적 확대 해석이 아니라 문언 자체의 불명확성에서 출발한 합리적인 해석 이라고 판결함	

23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force and Protect Act ("EAPA") Case Number 7509: Certain Steel Wheel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Public Document, December 22, 2023.

- 본 사례는 CBP가 EAPA 제도(EAPA No. 7509) 하에서 중국산 도로용 강철 바퀴의 우회 수입 여부를 조사하던 중, 해당 제품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대상(covered merchandis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에 범위판정(Covered Merchandise Referral)을 요청한 데서 출발함

Asia Wheel 제품 구조
중국산 디스크 + 태국 생산 림(중국/제3국산 강판 → 태국 성형) → [태국에서 용접 + 도장]→ 완성

- 상무부는 2023년 6월 최종 범위판정에서 태국 Asia Wheel이 제조한 제품이 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국산으로 본다고 결정하였고, 이 판정은 CBP의 최종 회피(Evasion) 판정으로 이어짐

[중국산 특정 휠 AD/CVD 회피 사례 조사 경과 (EAPA No. 7509)]

구분	기관	주요 조치 및 내용	일자	연관 업체명	관련 근거
①	상무부 (DOC)	AD/CVD 명령 발령	19.5.24	Zhejiang Jingu Co., Ltd. (중국 제조사)	84 Fed. Reg. 24098 (May 24, 2019)
②	CBP	EAPA 회피조사 개시	20.8.18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 (수입업체); Accuride / Maxion (신고인)	EAPA Case No. 7509 - Notice of Initiation
③	CBP→상무부 (DOC)	적용 대상 물품 회부(CMR)	21.6.9	Asia Wheel Co., Ltd. (태국 생산업체); Zhejiang Jingu (중국 모회사/계열사)	86 Fed. Reg. 38270 (Jul. 20, 2021)
④	상무부(DOC)	최종 범위 판정 (Final Scope Ruling)	23.6.7	Asia Wheel Co., Ltd. / Zhejiang Jingu	DOC Final Scope Ruling
⑤	CBP	최종 행정판정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23.12.22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 (수입업체)	CBP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 Asia Wheel은 상무부가 명령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했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 조사 배경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는 중국산 도로용 강철 바퀴(22.5·24.5인치 튜브리스 타이어용) 및 구성품(디스크·림)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AD/CVD Orders, A-570-082 / C-570-083)을 발령함

○ 미국 제조업체(Accuride Corporation 등)들은 수입업체 Vanguard가 중국 업

체인 Zhejiang Jingu Company(Jingu)가 생산한 강철 휠을 태국 내 Jingu 계열사인 Asia Wheel을 통해 환적한 뒤, 이를 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들여와 AD/CVD 명령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CBP에 회피 혐의를 제기함

○ 그러나 CBP는 Vanguard이 수입한 Asia Wheel의 중국산 디스크와 태국에서 생산된 림(중국 또는 제3국산 원재료를 태국에서 가공)을 용접하여 제조한 강철 휠이 기존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 상품(covered merchandise)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음

- 반덤핑 명령의 범위(scope) 문구는 "중국산 림과 디스크(rims and discs from China)"를 제3국에서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지만, 림과 디스크 중 하나만 중국산인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표 3-71] Asia Wheel의 특정 휠 제조 과정

DISC		RIM		WHEEL
디스크는 중국 내 업체에서 절단 및 성형되어 완제품 형태로 태국 Asia Wheel로 수출됨	+	림은 태국에서 성형되었으며, 사용된 직사각형 강판은 대부분 중국산이었으며, 일부는 제3국에서 공급됨	=	디스크와 림은 태국에서 용접 및 도장되어 조립되었고, 이후 최종 포장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됨

자료 : Slip Op. 25-18, Asia Wheel Co., Ltd. v. United States, Court No. 23-00143,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Feb. 21, 2025), 일부 수정.

- 이에 CBP는 상무부에 해당물품이 명령의 범위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covered merchandise referral) 요청함

□ 상무부의 범위 판정

○ 상무부(Commerce)는 태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입된 도로용 강철 바퀴가 중국산 AD/CVD 명령(A-570-082 / C-570-083)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 명령의 범위를 검토함

□ 명령의 범위

ㅇ 이 주문의 범위는 도로용 강철 휠, 디스크 및 림을 포함하며, 이는 공칭 림 직경이 22.5인치 및 24.5인치인 튜브리스 타이어용이며, 폭에 관계없이 적용됨

…중략…

ㅇ 제3국 가공 제품 포함 (핵심 조항)

- (국문) 범위에는 제3국에서 추가로 가공된 림과 디스크가 포함됨. 여기에는 중국산 림과 디스크를 용접하거나 도장하여 강철 휠을 제조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한 동일한 가공이 중국에서 수행되었더라도 해당 상품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지 못했을 모든 가공 활동도 포함됨[233]

- (범위 문구의 구조적 문제)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은 혼합 원산지 물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음

  · 특히 (1) 림과 디스크가 모두 중국산이어야만 해당되는가?, (2)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중국산이어도 해당되는가? (3) 혼합 원산지 제품(중국산 부품+제3국산 부품)은 포함되는가?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상무부는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에는 ▲제품의 종류 동일성 여부, ▲제3국(수출국) 가공 공정의 성격 및 복잡성, ▲제품의 특성·핵심 부품 및 최종 용도, ▲생산 비용 및 부가가치, ▲투자 수준 등 다섯 가지 요건이 고려됨

- 상무부는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국에서의 가공 공정(용접 및 도장)은 중국에서 이미 진행된 공정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으로 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 특히 생산 공정 측면에서 보면 Asia Wheel이 생산한 바퀴는 중국에서 제조된 디스크와 중국 또는 제3국산 강판을 태국에서 성형한 림을 용접해 완성하는 구조임. 이러한 공정은 후공정(마무리 공정)에 해당하며 원산지를 변경할 만큼의 중대한 변형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CBP도 상무부의 범위 판정을 근거로 Asia Wheel(태국)에서 수입된 휠이 실제로는 중국산이라고 판단했으며, Vanguard가 이를 태국산으로 신고해 type 01(일반 수입)으로 반입함으로써 적용돼야 할 AD/CVD를 회피한 것으로 결론지음

233) 영문) The scope includes rims and discs that have been further processed in a third count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elding and painting of rims and discs from China to form a steel wheel, or any other processing that would not otherwise remove the merchandise from the scope of the proceeding if performed in China.

- 또한 CBP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Asia Wheel의 장기간 생산라인 미가동, 설비 노후화, 재고 부재 등은 회피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234)]

□ **(참고) 사법부의 판단: 국제무역법원(CIT) 판결**

○ 태국 제조업체 Asia Wheel과 미국 내 수입업체(ZC Rubber America, Inc.)는 이러한 판정에 불복하여 국제무역법원에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법원은 2025년 2월 21일 선고한 판결(Slip Op. 25-18)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상무부의 범위 판정과 CBP의 회피 판정이 모두 법령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시함

- 원고 측은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무부가 명령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함

○ 첫째, (범위 문구 해석과 모호성 인정)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은 혼합 원산지 물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including, but not limited to)”와 같이 적용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산 부품과 제3국 가공이 결합된 혼합 원산지 제품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모호성이 존재 한다고 법원이 판단함

○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문언을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실질적 변형 분석을 통해 개별 제품의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석 과정이며, 범위의 부당한 확장이 아니라 범위의 명확화라고 판시함

○ 셋째, 명령 문언의 "중국산 림과 디스크를 용접·도장하는 경우"는 제3국 가공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다른 형태의 제3국 가공(예: 혼합 원산지 제품)도 상황에 따라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범위 판정과 CBP의 회피 판정이 모두 법령에 부합하며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정함

234) CBP, Notice of Initiation of Investigation and Interim Measures, EAPA Case No. 7509 (Nov. 23, 2020), p.7.

□ **결론**

- ㅇ 상무부는 CBP의 EAPA 조사 과정에서 요청된 범위 판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 여부를 분석한 결과, 태국에서 수행된 공정(림 성형, 용접, 도장)이 중국에서 이미 진행된 공정의 단순한 마무리 단계에 불과하며 원산지를 변경할 만큼 중대한 변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
- ㅇ 이에 따라 CBP는 태국 Asia Wheel이 중국산 디스크와 중국 또는 제3국산 강판으로 제조한 림을 조립한 강철 휠을 '태국산'으로 신고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함. 2025년 2월 국제무역법원(CIT)도 이러한 상무부와 CBP의 판단이 법령에 부합하며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시함
- ㅇ 이번 사건을 통해 ①제3국 단순 조립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②혼합 원산지 제품도 핵심 부품이 중국산이고 실질적 변형이 없으면 AD/CVD 대상이 될 수 있고, ③범위 해석에 여지가 있을 때 상무부의 실질적 변형 분석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인됨

2) 철사 옷걸이[235)]

사건번호	A-570-918 (중국산 철선 옷걸이 반덤핑 명령)	
조사번호 (EAPA)	7175 (= EAPA Case No. 15135)	
조사국가	태국 (경유지)	
조사착수일	2016.10.11 (CBP EAPA 최초 조사 개시)	
최종판정일	2017.08.14 (최종 회피 판정 확정)	
조사대상 기업	Eastern Trading NY Inc. (미국 수입업체) Everbright Clothes Hanger(Thailand)Co.,Ltd.(태국업체)	
제조자	M&B Metal Products Company, Inc. (미국 내 제조업체)	
조사 배경	2008년 10월 중국산 철사 옷걸이에 대한 반덤핑 명령(A-570-918) 발령 이후, 일부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확인됨 2016년 9월 15일, M&B Metal Products Company가 CBP에 Eastern Trading NY Inc.가 중국산 옷걸이를 태국 경유로 우회수입하고 있다고 제보하여 2016년 10월 11일 조사 개시	
주요 판단 근거	① 무역 패턴의 급격한 변화	미국은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 - 이후 중국 기업들이 R&X Industries를 설립하였고, 2014년 9월 18일 태국에 Everbright를 설립함 - 이후 태국 업체 Everbright는 미국 수입업체(Eastern Trading)에 대규모 옷걸이를 수출하였으며, 자료 검토 결과 Everbright 설립 이전부터 이미 Eastern Trading이 수입을 시작한 시간적 모순이 발견됨
	② 제조 능력 부족	Everbright의 재무제표상 기계설비 가치는 약 27,300달러에 불과했으나, Eastern Trading은 2015-2016년 약 8,862만 개 수입함 옷걸이 제조 기계는 대당 약 24,000달러이므로 최소 3대 필요하나 설비 규모 현저히 부족했으며, 2016년 11월 25일 CBP 현장 방문 결과, 운영 시간에도 생산 없고 기계·인력·원재료 모두 부족 확인됨
	③ 문서상 불일치 및 공급망 연계	태국 생산업체와 중국 업체들 간의 특수 관계 확인. 한 중국 제조업체 Rongqing이 태국 업체 이름(Everbright Clothes Hanger)으로 중국에서 직접 Eastern Trading에 선적함 태국 경유 환적과 중국 직수입을 동시에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회피 의도가 명백함
결론	본 사건은 EAPA 제도 시행 이후 CBP가 최초로 공식 회피조사를 개시하고 최종 회피 판정을 확정한 사례로, 행정 절차만으로 반덤핑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명한 첫 선례임. - 조사 결과, 태국 Everbright는 실질적 제조시설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제조업체(Paper Company)"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산 철선 옷걸이를 단순 환적(transshipment)하여 원산지를 세탁한 전형적 사례임. - CBP는 현장실사, 재무제표 분석, 공급망 추적, 직접 중국 수입 증거 등을 종합하여 중국산 제품이 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위장한 것으로 최종 판정함. - 본 사건 이후 CBP는 동일 품목(철선 옷걸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경유 (사건번호 7191, 2017년), 인도 경유(사건번호 7379, 2019년)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으며, 본 사건의 조사 방법론과 판정 근거가 후속 사건들의 중요한 선례가 됨	

235) EAPA Case 7175

□ 조사 배경(사건번호 7175)

- ㅇ 조사대상 물품은 중국산 철사 옷걸이로, 2008년 10월 반덤핑 명령(A-570-918)이 발령된 바 있음. 이후 일부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옷걸이를 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확인됨
- ㅇ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철사 옷걸이 제조업체인 M&B Metal Products Company는 2016년 9월 15일 CBP에 Eastern Trading NY Inc.가 중국산 옷걸이를 태국 경유로 우회수입하고 있다고 제보함
- ㅇ 동 사건은 EAPA 제도 하에서 최초로 공식 우회조사가 개시된 사례로, 이후 동일 품목에 대한 회피조사가 말레이시아 경유(사건번호 7191), 인도 경유(사건번호 7379)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

[표 3-72] 중국산 철사 옷걸이에 대한 AD/CVD 회피 조사 주요 사례 요약

사건번호	조사개시	회피 경로	원산지 위장국	비고
7175	2016년 10월 11일	중국 → 태국 → 미국	태국	EAPA 최초 사건 (Eastern Trading NY Inc.)
7191	2017년 5월 12일	중국 → 말레이시아 → 미국	말레이시아	7175 사건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
7379	2019년 11월 21일	중국 → 인도 → 미국	인도	7175 및 7191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동일 품목(철선 옷걸이)에 대해 확대된 조사 사건

자료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EAPA 사건 7175·7191·7379 기준

□ CBP의 회피 근거 및 판정

- ㅇ CBP는 본 사건에서 무역 패턴의 급격한 변화, 제조 실체의 부재, 문서상 불일치 및 공급망 연결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산 철선 옷걸이가 태국을 경유한 환적(transshipment) 형태로 미국에 반입되었다는 합리적 개연성(reasonable suspicion)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ㅇ 생산능력 부족

- M&B Metal은 Eastern Trading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Everbright로부터 88,625,500개의 철사 행거를 수입했으나, Everbright는 이 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함.

  · Everbright의 재무제표에는 기계와 장비 가치가 27,300달러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옷걸이 제조 기계는 대당 약 24,000달러 수준임. 해당 수입량을 충족하려면 최소 3대 이상의 기계가 필요해 설비 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Eastern Trading은 Everbright가 기계를 들여놓기 이전부터 이미 수입을 진행해, 생산능력이 없는 시점에 수출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남

ㅇ 현장실사

- 실제로 CBP 현장조사 결과, 실제로 철제옷걸이를 생산하기에는 (1) 기계가 부족하고, 인력 역시 충분하지 않으며, 원재료도 부족한 것을 확인함

  · 공장을 실제 운영시간에 방문한 결과, 생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유 기계 수량은 제출 자료보다 적었으며, 원재료도 생산을 지속할 수준이 아님이 확인됨

  ·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CBP는 Everbright를 실질적 제조업체가 아닌 단순 환적지로 판단함

ㅇ 중국 업체와의 특수 관계

- M&B Metal은 Everbright가 실질적인 생산능력이 없고, 소유주인 R&X Industries가 중국 기반이며 주문도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생산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태국은 우회 경유지로 활용된 것으로 주장함

- Eastern Trading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중국 업체 R&X Industries와 동일하며, R&X는 스스로를 “중국과 태국에서 와이어 행거 사업의 업계 선두주자”라고 소개하고 있음

- R&X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두 행거 제조·수출 회사(Qingqing 및 Yingqing)에서 영업 이사와 운영 부사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해당 중국 기업들은 2014년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후 R&X Industries가 설립 및 2014년 9월 18일 Everbright가 설립됨

- M&B Metal은 이러한 시간적·구조적 연계를 토대로, 중국 업체들이 높은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태국을 통한 환적 구조를 마련했고 R&X Industries와 Everbright는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ㅇ 직접 증거

- 이외에도 또 다른 중국 제조업체 Rongqing이 "Everbright Clothes Hanger"라는 태국 제조업체 이름으로 중국에서 직접 Eastern Trading에 선적한 사실이 선하증권을 통해 확인됨
- 해당 선적 서류의 청구서에 표시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중국 업체 Qingqing 및 Yingqing과 동일함
- 이는 실질적으로 같은 중국 업체가 태국 업체 이름을 도용하여 수출한 것으로, 태국 경유 환적과 중국 직수입을 동시에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

□ **결론**

ㅇ 본 사건은 EAPA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공식 조사가 개시된 전형적인 환적(transshipment) 사례로, 이후 유사 사건의 조사 기준 및 판단 근거로 활용됨

- Everbright는 생산 설비, 인력, 원재료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회사만 설립하여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 목적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 동 사건 이후 CBP는 동일 품목에 대해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제3국 경유 환적을 집중 단속함

3) 글리신[236]

사건번호	A-570-836 (반덤핑 명령), C-570-081 (상계관세 명령)	
조사번호(EAPA)	7647(조사개시[237], 판정문[238], 행정 재심 판결문[239])	
경유국(제3국)	인도네시아	
조사개시일	2021.10.26 (CBP EAPA 조사 개시)	
최종판정일	2022.07.22 (TRLED 최종 회피 판정) / 2022.11.30 (RR 확정)	
조사대상 기업	Nutrawave, Starille, Newtrend USA (미국 수입업체) PT Newtrend Nutrition Ingredient(이하 "PTNNI",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제보자(청원인)	GEO Specialty Chemicals, Inc. (미국 글리신 생산업체)	
조사 배경	GEO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글리신을 인도네시아 PTNNI를 경유하여 미국에 반입함으로써 중국산 글리신에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함. GEO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TNNI 공장이 완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들이 PTNNI 명의의 글리신을 수입하기 시작함	
주요 판단 근거	① 생산능력 결여	PTNNI는 글리신 생산에 필요한 메탄올 등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했으며, 실제 구매량이 자체 보고 소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또한 USP 등급 글리신 생산에 필수적인 정제용 자재(활성탄 등) 확보도 부족하여, CBP는 PTNNI가 주장한 생산량과 정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② 특수관계 및 통제	PTNNI는 중국 Newtrend Group의 자회사로, 홍콩 소재 계열사 NTFC (Hong Kong) Co., Ltd.를 통해 경영·운영이 관리됨. 미국 수입업체 Nutrawave, Starille, Newtrend USA는 인적·재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해당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본사의 통제 아래 운영됨을 시사함
	③서류·포장 불일치	수출입 서류와 포장재에는 허위 제조일자 및 중국 본사 관련 표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질 생산지와 서류상 신고 내용이 불일치함을 보여줌
	④무역흐름의 변화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글리신 수입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30.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약 50% 급증함. 이는 PTNNI의 생산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량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우회 수입됨을 강하게 시사함
결론	CBP는 PTNNI의 생산능력 부재, 중국 Newtrend Group과의 특수관계, 서류·포장 불일치, 무역흐름의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업체들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중국산 글리신을 우회 수입함으로써 AD/CVD 명령을 회피했다고 최종 판정함	

236) EAPA case. 7647, 이번 인도네시아 사건 외에도, 중국산 글리신이 캄보디아, 태국, 인도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사례가 다수 조사된 바 있음
237) EAPA Consolidated Case 7647: Various Importers (Notice of Initiation of Investigation and Interim Measures, October 26, 2021)
238) EAPA Consolidated Case 7647: Various Importers (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July 22, 2022) | Publications
239) EAPA Consolidated Case 7647: Various Importers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November 30, 2022) | Publications

□ **조사 배경(사건번호 7647)**

- ㅇ 2021년 4월 30일, 미국 글리신 제조업체 GEO Specialty Chemicals, Inc.(이하 "GEO")는 미국 수입업체인 Nutrawave 및 Starille을 대상으로 EAPA 위반 혐의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9월 7일에는 Newtrend USA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추가로 제기함
- ㅇ GEO는 이들 수입업체가 중국산 글리신을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미국에 반입함으로써 중국산 글리신에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명령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함
- ㅇ 이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인 PT Newtrend Nutrition Ingredient(이하 "PTNNI")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산능력, 공장 가동 상태, 인력 구성 및 원자재 소비 내역 등에서 다수의 불일치와 의문점이 확인됨. 특히 2022년 5월 실시된 현장 검증 결과, PTNNI의 실제 생산능력이 보고된 수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남
- ㅇ 또한 PTNNI와 관련 업체 간의 자금 흐름 및 경영 통제 구조가 중국 본사(Newtrend Group)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중국산 글리신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반입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됨

□ **명령의 범위**

- ㅇ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모든 순도 수준(all purity levels)"의 글리신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특히 상계관세 명령은 제3국에서 가공된 글리신 및 전구체를 명시적으로 범위에 포함시켜, 단순 정제나 가공으로는 명령 적용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본 EAPA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계관세 명령이 "제3국에서 가공된 글리신 및 건조 결정 글리신의 전구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임
  - 이는 중국산 글리신을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가공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산 글리신으로 간주되어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PTNNI가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원료가 중국산이면 명령 적용 대상이 됨

[표 3-73] 상계관세 및 반덤핑 명령의 범위

상계관세 명령의 범위
ㅇ 본 명령의 적용 대상 물품은 모든 순도 또는 등급의 글리신(glycine)임. 조(粗) 글리신(crude glycine)이나 테크니컬(technical) 글리신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글리신산나트륨(sodium glycinate), 글리신 슬러리(glycine slurry),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아미노아세트산(aminoacetic acid) 또는 글리신이 포함됨 ㅇ 또한 제3국에서 가공된 글리신 및 건조 결정질 글리신의 전구체(precursors)도 범위에 포함됨 ㅇ 이러한 가공에는 정제(refining) 또는 기타 형태의 가공이 포함되며, 해당 가공이 범위 내 글리신 또는 전구체의 제조국에서 수행되었더라도 본 명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글리신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는 56-40-6임. 글리신 및 글리신 슬러리는 제2922.49.43.00호에 분류되며, 글리신산 나트륨은 제2922.49.80.00호에 분류됨 다만 HTSUS 세번과 CAS 등록번호는 편의 및 세관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제공된 것이며, 본 명령의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우선 적용됨
반덤핑 명령의 범위
ㅇ 본 절차의 적용 대상 물품은 글리신(glycine)으로, 소금이나 설탕과 유사한 자유 유동성(free-flowing)을 가진 결정질 물질임. 글리신은 다양한 순도 수준으로 생산되며, 감미료 또는 맛 향상제, 완충제(buffering agent), 체내 재흡수 가능한 아미노산(reabsorbable amino acid), 화학 중간체(chemical intermediate), 및 금속 착화제(metal complexing agent) 등으로 사용됨 ㅇ 글리신은 현재 미국 관세율표(HTSUS) 세번 제2922.49.4020호에 분류되어 있음. 본 절차는 모든 순도 수준의 글리신을 포함함. 다만 HTSUS 세번은 편의 및 세관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제공된 것이며, 본 조사의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우선 적용됨

□ CBP의 회피 근거 및 판정

ㅇ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EAPA 7647 사건에서 수입업체들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중국산 글리신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였다고 판정하였고,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ㅇ 생산능력 결여

- (생산능력 결여) CBP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PTNNI가 미국으로 수출된 글리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만큼의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 이는 PTNNI의 물리적 시설, 원자재 조달,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①원자재 조달의 불충분성) PTNNI는 글리신 생산의 핵심 원자재를 충분히 확

보하지 못함.특히 글리신 제조의 중간 단계인 중간체 글리신(intermediate glycine) 생산에 필수적인 메탄올의 구매량이 현저히 부족함

- 메탄올은 액상 용액에서 고체 형태의 중간체 글리신을 분리·정제하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로, 이 투입물이 없이는 공정 자체가 불가능함. CBP는 PTNNI의 메탄올 구매량이 자체 제출한 소비율 대비 현저히 낮고, 월별 소비량 변동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크다고 판단함
- 또한 USP 등급 글리신 생산에 필수적인 정제용 자재인 활성탄의 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PTNNI가 주장한 생산량을 충족할 만큼의 중간체 글리신을 실제로 제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함
- (②시설 및 공정 미비) PTNNI는 2020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시점 공장이 여전히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8월 기준 공장 외벽이 미완성된 모습이 포착되었고, 2020년 12월에도 공장 부지가 비포장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PTNNI가 주장한 생산 개시 시점에 실제로 공장 가동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③인력 및 운영상의 한계) PTNNI는 생산 개시 시점에 숙련된 인력,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핵심 기술자는 생산 개시 이후에야 생산시설에 도착함

ㅇ 특수관계 구조

- (특수관계 및 공급망 지배 구조) CBP는 중국 Newtrend Group, 인도네시아 PTNNI, 그리고 미국 수입업체들 간의 긴밀한 특수관계와 전반적인 공급망 지배 구조가 회피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고 판단함
  - (중국과의 특수관계) PTNNI는 중국 Newtrend Group의 자회사로, 홍콩 소재 계열사 NTFC (Hong Kong) Co., Ltd를 통해 경영·운영이 관리되고 있었고 이에 인도네시아 법인이 독립적인 제조·수출 주체가 아니라 중국 본사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보여줌
  - (미국회사들과의 특수관계) 아울러 미국 회사들과의 특수관계도 확인됨. 미국 수입업체 Nutrawave의 CEO와 Newtrend USA의 총괄 관리자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수입업체 Starille과 Nutrawave가 동일 인물로부터 무이자 대출 등 재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

ㅇ 서류 불일치

- 포장재 및 라벨에는 중국 Newtrend Group의 로고와 상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CBP는 출하 준비된 글리신 포장재에서 제조일자(date of manufacture)가 허위로 기재된 라벨을 발견함. 이 라벨의 날짜는 PTNNI 관계자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날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포장 및 서류상의 불일치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황 증거로 평가됨

ㅇ 무역 흐름의 변화

- CBP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역 통계와 중국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무역패턴을 발견함

  ·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중국으로부터 글리신을 대량 수입한 직후 동일 항구(자카르타)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한 정황을 확인함

  · HS 코드 2922.49.00(글리신 포함 아미노산 바스켓)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수입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30.8% 증가함

  · 특히 자카르타 항을 통한 수입은 31.7% 증가함

  · 이외 HS 코드 2922.49.19(글리신 단일 품목)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대(對)인도네시아 글리신 수출량은 2020년 2,097,000kg에서 2021년 3,102,000kg으로 약 50% 급증함

□ **결론**

ㅇ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CBP 무역구제법 집행국(TRLED)은 2022년 7월 22일 최종 회피 판정을 내림. 이후 수입업체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사를 요청하였으나, CBP 규제·해석국(Regulations and Rulings)은 2022년 11월 30일 TRLED의 판정을 최종 확정함

4) 매트리스

사건번호	A-570-092, C-570-128	
조사번호(EAPA)	EAPA Case 7856	
경유국(제3국)	한국	
조사개시일	2023년 11월 17일	
최종판정일	2024년 9월 19일	
조사대상 기업	Beanomy, Heniddy, IYEE Nature, Kakaivy, Kelanch, Sunwind, Ryan 등 (미국) Samyeong, Outigo 등(한국)	
제보자	Zinus USA Inc.	
조사 배경	미국 지누스(Zinus USA Inc.)는 다수의 미국 수입업체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을 경유해 환적(transshipment)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A-570-092) 및 상계관세(C-570-128)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제소함. CBP는 이 제소를 근거로 EAPA §421(19 U.S.C. §1517)에 따라 공식 회피조사를 개시함	
주요 판단 근거	한국 내 제조 능력 부재	CBP는 신고된 한국 공급업체들이 실제로 매트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다각도로 확인함. 한국 공급업체들의 주소지가 매트리스 제조 시설이 아닌 ①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으로 확인됨. ②(업종불일치) 일부 주소지에는 매트리스와 전혀 무관한 업체로 확인됨. ③한국 업체(KCH, Woomi)가 "중국산 수입 후 가공 없이 재수출"함을 공식 인정함
	중국 기업과의 특수성	중국 제조사(Foshan Aiyi)의 브랜드명과 미국 수입사 명칭이 동일하였으며, 수입업체들은 중국 제조사와의 독립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화물검사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경유해 수입된 매트리스 화물을 검사한 결과, 한국산 신고 화물 내에서 'Made in China' 라벨 및 중국 브랜드 표식 발견함. 이외 통관 서류와 인증서 상의 제조업체 정보가 불일치
	HTSUS 오분류	일부 수입업체는 매트리스를 HTSUS 소호 9404.10.0000(매트리스 받침대)로 잘못 분류하여 AD/CVD 부과를 회피함
	불리한 추론	미국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 공급업체 상당 부분 정보제공요청서에 협조하지 않음
결론	한국 내 제조시설 부재, 중국과의 특수 관계, 화물검사 결과, 오분류 증거 등을 근거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매트리스는 기준 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조사 배경

ㅇ 본 조사는 미국 매트리스 제조업체인 Zinus USA Inc의 제소로 개시되었으며, 제소자는 미국 수입업체 12곳이 중국산(A-570-092, C-570-128) 및 베트남산(A-552-827) 매트리스를 한국을 경유해 환적(transshipment)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여 AD/CVD 납부를 회피했다고 주장함

- 조사대상은 Anlowo, Beanomy, IYEE Nature, Kelanch, Wakodo, Xinshidian 등 12개 수입업체이며, CBP는 이들이 한국 공급업체(Samyeong, Outigo, KCH, Woomi 등)로부터 제품을 조달한 정황을 조사함

□ CBP 회피조사 판정 결과

ㅇ CBP는 조사대상 수입업체가 중국 명령(A-570-092, C-570-128)의 적용을 받는 중국산 매트리스를 회피 수단을 사용해 미국으로 반입한 실질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회피 판정의 근거는 다음 다섯 가지임

- (①한국 공급업체의 제조능력 부재) CBP는 수입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공급업체들의 소재지를 확인·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매트리스 생산에 필요한 제조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각 업체의 웹사이트 및 위성지도 분석 결과 모두 사무실 또는 쇼핑몰 등으로 매트리스 생산이 불가능한 비제조용 건물임이 확인됨

. 특히 한국 공급업체 KCH와 Woomi는 정보제공요청서(RFI) 답변을 통해 자사가 무역회사이며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없이 미국으로 재수출한다"고 진술함

・이외에도 일부 미국 수입업체가 보고한 한국 내 공급처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매트리스 생산과는 전혀 무관한 LCD 및 OLED 관련 업체가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정황들은 수입업체의 원산지 신고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회피 근거가 됨

[표 3-74] 공급업체, 수입업체, 한국산 매트리스의 총 수입액

한국 공급업체	미국 수입업체	한국산 매트리스 수입액
Samyeong	Beanomy, Heniddy, IYEE Nature, Kakaivy, Kelanch, Sunwind, Ryan James, Weekaly, Xinshidian, Zevoky	$[#]
Outigo	Wakodo	$[#]
KCH	Anlowo, IYEE Nature, Weekaly, Zevoky	$[#]
[회사명]	Kakaivy	$[#]
Woomi	Kelanch, Weekaly, Zevoky	$[#]
[회사명]	Beanomy	$[#]
[회사명]	Kelanch	$[#]
[회사명]	Xinshidian	$[#]

자료 : 무역 데이터 기록 첨부자료 1(2022년 11월 3일~2023년 11월 17일 수입 건을 반영한 CBP 데이터 인용)

- 둘째, (중국기업과의 특수 관계) 중국 매트리스 제조업체인 Foshan Aiyi는 IYEE Nature, Anlowo, Zevoky 등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명이 미국 내 수입업체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세 수입업체는 Foshan Aiyi와의 연계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이에 따라 CBP는 해당 수입업체들이 중국 제조업체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조직적인 관세 회피 정황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로 작용함

[표 3-75] 상표 소유권

상표권자	상표
Foshan Aiyi	IYEE Nature
	S Secretland
	Molblly
Molblly	Anlowo
	Zevoky

자료 : NOI 수정본(제소서 증거서류 2a 인용)

- 셋째, (화물검사) CBP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들의 화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포장에 'Made in China' 라벨과 Foshan Aiyi의 상표(Molblly, IYEE Nature 등)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일부 선적 관련 서류에는 제조업체가 Outigo(한국)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동일 선적에 포함된 "연방 표준 적합성 인증서(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with Federal Standard 16 C.F.R. § 1633)"에는 제조업체가 한국의 다른 업체명(Samyeong)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류 간 불일치가 존재함

- 이러한 서류 불일치는 CBP가 회피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 주요 정황 근거가 됨
- 넷째, (HTSUS 오분류) 일부 수입업체(Sunwind, Xinshidian)는 조사 기간 동안 매트리스를 기존 제재 물품이 아닌 '매트리스 받침대'(HTSUS 9404.10.0000)로 분류하여 수입함. 해당 수입 건의 화물 설명은 "매트리스" 또는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리스"였음. 이 역시 AD/CVD(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주요 증거로 작용함
- 다섯째, (불리한 추론) CBP는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 원칙을 적용함. 조사 당사자가 CBP의 정보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추론을 적용할 수 있음. 본 조사에서 미국 12개 수입업체 모두 CBP가 이메일과 FedEx를 통해 여러 차례 발송한 정보제공요청서(RFI)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았음. 한국 공급업체 중에서도 Samyeong, Outigo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음. 이에 CBP는 한국 내 제조 시설 부재, 중국과의 연계, 화물검사 결과, 오분류 증거 등을 근거로 결과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매트리스는 전부 중국산이므로 중국 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결론**

○ CBP 회피 조사 결과, 미국의 여러 수입업체가 한국 공급업체를 경유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환적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한국산으로 신고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최종 판정함. CBP는 다섯 가지 실질적 증거를 근거로 회피 행위를 입증함

- 첫째, Samyeong, Outigo, KCH, Woomi 등 한국 공급업체 대부분이 매트리스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무역회사로 확인됨
- 둘째, 중국 Foshan Aiyi社가 보유한 브랜드(IYEE Nature, Anlowo, Zevoky)와 미국 수입업체명이 동일하게 확인되어 특수관계를 보인다고 판단함
- 셋째, 화물검사를 통해 한국산으로 신고된 화물에서 'Made in China' 라벨과 중국 제조업체 상표가 발견되었으며, 선적서류 간 제조업체명 불일치가 확인됨. 넷째, 일부 업체가 매트리스를 '매트리스 받침대'로 잘못 분류하여 수입한 정황이 포착됨. 다섯째, 조사대상 미국 수입업체 12곳 전부와 한국 주요 공급업체들이 CBP의 정보제공요청에 회신하지 않아 불리한 추론이 적용됨
- CBP는 이상의 증거를 종합할 때 조사대상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매트리스가 실

제로는 전부 중국산이며, 따라서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A-570-092, C-570-128)의 적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정함

- 다만, 베트남 AD 명령(A-552-827) 회피에 대해서는 실질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회피 판정을 내리지 않았음

5) 특정 이동식 접근 장비와 그 부속 장치(이하 MAE)

사건번호	A-570-139 / C-570-140	
조사번호 (EAPA)	EAPA Case No. 7907	
경유국 (제3국)	폴란드	
조사개시일	2023년 12월 20일	
최종판정일	2025년 6월 30일	
조사대상 기업	Sinoboom North America, LLC (미국) Sinoboom Poland (폴란드)	
제보자	미국이동식접근장비제조사연합(Coalition of American Manufacturers of Mobile Access Equipment, CAMMAE)	
조사 배경	청원인은 미국 수입업체 Sinoboom NA가 모회사인 중국 Hunan Sinoboom Intelligent Equipment Co., Ltd.를 통해 중국산 MAE 부속 장치 및 소조립 구성품을 폴란드로 이전한 뒤, 폴란드에서 일부 조립한 제품을 '폴란드산'으로 표시해 미국으로 수입함으로써 AD/CVD 명령을 회피했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산 MAE에 대해 최고 165.30%의 반덤핑관세와 448.80%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점에서, 수입업체가 이를 회피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고 지적함 그 외 청원인은 2021년~2022년 사이 폴란드에서의 수입이 127%, 2023년 상반기에는 213% 증가한 통계를 근거로 회피 정황을 제시함	
주요 판단 근거	명령의 범위 포함 여부	미국 상무부 명령(A-570-139 / C-570-140)은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MAE 및 부속 장치를 포괄하며, 실질적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본 건 제품은 명령 적용 대상에 해당함
	기업구조	Sinoboom NA와 Sinoboom Poland는 모두 중국 본사(Hunan Sinoboom Intelligent Equipment Co., Ltd.)의 100% 자회사로, 공급망이 본사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높은 중국산 의존도	Sinoboom Poland는 중국산 부속 장치 및 소조립품을 반복적·대량으로 수입하였으며, 자체적인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아 단순 조립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무역패턴의 변환	AD/CVD 명령 발효 이후 중국산 MAE 수입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폴란드산 수입은 급격히 증가함 이는 회피 전략으로 폴란드 경유 수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고세율	최고 AD 165.30%, CVD 448.8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회피 유인이 존재하며, 청원인의 데이터와 세율 자료 역시 근거로 인정됨
결론	CBP는 Sinoboom NA가 중국산 MAE에 대한 AD 및 CVD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폴란드를 경유한 우회 수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최종 판정함. 공급망 구조, 제품 범위, 생산능력 부재, 수입 추이, 관세 수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건 수입품은 명령 적용 대상이며 회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조사 배경

○ 2023년 12월 20일, 미국이동식접근장비제조사연합(Coalition of American Manufacturers of Mobile Access Equipment)은 Sinoboom NA가 중국산 특정 이동식 접근 장비와 그 부속 장치(이하 MAE)에 대한 AD 명령 A-570-139 및 CVD 명령 C-570-140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APA 이의 제기를 함

○ 청원인들은 Sinoboom NA가 중국 본사인 Hunan Sinoboom Intelligent Equipment Co. Ltd.를 통해 중국산 MAE 부속 장치 및 소조립 구성품을 폴란드로 수입한 후, 폴란드에서 부분적인 조립 공정을 거쳐 원산지(COO)를 폴란드로 잘못 표기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함으로써 AD/CVD 명령을 회피했다고 주장함

- 특히 중국산 MAE에는 최고 448.80%의 상계관세와 최고 165.30%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수입업체들이 해당 명령을 회피할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갖게 한다고 지적됨

- 게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통계에 따르면, AD/CVD 명령이 발효된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폴란드에서 미국으로의 MAE 수입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함

-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3% 급증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던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입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76] 미국의 MAE 대중국 수입액 및 대폴란드 수입액(2019~2022)

가치 총액 (미국 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2년 1~7월	2023년 1~7월
중국	448,347,934	492,987,769	849,267,522	917,716,830	430,229,141	451,040,434
폴란드	23,924,866	16,708,437	17,922,142	40,764,225	15,202,049	47,656,341

자료 : USITC DataWeb, HTS statistical reporting numbers 8427.10.8020, 8427.10.8030, 8427.10.8070, 8427.10.8095, 8427.20.8020, 8427.20.8090, 8427.90.0020, 8427.90.0090, and 8431.20.0000.[240]

□ 명령의 범위와 적용 여부

○ Sinoboom NA는 폴란드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실질적

240) 상계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따라 원산지가 폴란드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ㅇ 그러나 CBP는 상무부가 해당 물품의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적용에 있어 대상 품목을 중국산 MAE 구성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구성품이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었거나, 제3국에서 부분적으로 조립된 후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됨을 의미함
- ㅇ 이에 해당 사례(Sinoboom NA)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즉, 중국산 부품을 폴란드에서 조립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품의 원산지를 변경할 만큼의 실질적인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는 AD/CVD 명령의 초점이 '중국산 구성품' 자체에 있기 때문에, 최종 완성품의 조립 또는 완성 국가가 명령 적용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해석에 기반함
- ㅇ 결론적으로, CBP는 Sinoboom NA가 수입한 MAE의 부속 장치 또는 비조립 부품이 HTSUS 코드 8431.20.0000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 AD/CVD 명령상의 제품 분류와 일치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본 수입품은 중국산 MAE 부속 장치에 해당하므로,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함

[표 3-77] 기존 명령의 범위

□ 물품 설명

ㅇ 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특정한 이동식 접근 장비로, 이러한 장비는 주로 붐 리프트, 시저 리프트, 자재용 텔레핸들러 등과 그 부속 장치에 해당됨

ㅇ 이동식 접근 장비는 이동식(자주식 또는 견인식) 차대를 10피트 이상의 작업 고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계로 사람, 도구 및/또는 자재를 들어 올려 주는 인양 장치(예: 시저 암, 붐 장치), 인양 장치의 부착점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커플러 및 기타 구성품과 결합시킨 장비임

ㅇ 이동식 접근 장비와 그 부속 장치는 완성 또는 미완성 여부, 조립 또는 비조립 여부, 그리고 해당 장비에 일차 인양 기능 이외의 기능을 갖춘 부가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본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됨

ㅇ 대상 상품은 다음과 같은 부속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차대와 플랫폼 장치를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시저 암 장치 또는 시저 암 부품. 이러한 장치로는 (1) 여러 부품을 연결해서 시저 암 장치를 만들어주는 핀 장치, (2) 암 장치의 전원을 켜서 늘어나고 줄어들게 해 주는 액추에이터 등이 있음
- 또한 프레임 및 플랫폼, 유압 호스, 전기 케이블 및/또는 기타 구성품의 말단 부분에 슬라이딩 기능을 더해 주는 블록은 상기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붐 턴테이블, 차대 장치, 플랫폼 장치 또는 인양 장치에 연결해야 하는 붐 장치 또는 붐 부품. 붐 장치는 가장 작은 부분(또는 튜브)을 그 다음으로 큰 부분(또는 튜브)에 끼워 넣은 다음 밀어서 길게 늘릴 수 있는 신축식 부품, 그리고/혹은 여러 개의 핀으로 접합

되어 있는 관절형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핀, 유압 실린더, 유압 호스, 전기 케이블 및/또는 기타 구성품은 상기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시저 암 장치, 붐 장치 또는 붐 턴테이블 장치에 연결해야 하는 차대 장치. 차대 장치로는 (1) 차대 프레임 및/또는 (2) 프레임 부품 등이 있음. 차축, 휠 말단 구성품, 조향 실린더, 엔진 장치, 변속기, 구동축, 타이어 및 휠, 크롤러 트랙 및 휠, 연료 탱크, 유압 오일 탱크, 배터리 장치 및/또는 기타 구성품은 차대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차대 장치 또는 붐 장치에 연결해야 하는 붐 턴테이블 장치. 붐 턴테이블 장치로는 턴테이블 프레임 등이 있음. 엔진 장치, 회전 링, 연료 탱크, 유압 오일 탱크, 배터리 장치, 균형추, 후드(인클로저) 및/또는 기타 구성품은 붐 턴테이블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ㅇ 조립 또는 비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부속 장치를 하나라도 수입할 경우, 해당 부속 장치는 본 명령의 목적에 따라 미완성 형태의 이동식 접근 장비로 간주됨

ㅇ 대상 범위 이내인 제품이 제조된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완성·미완성 형태의 이동식 접근 장비 및 부속 장치를 가공(예: 다듬기, 절단, 연삭, 홈 파기, 구멍 뚫기, 세로로 얇게 자르기, 굴착, 용접, 접합, 볼트 체결, 구부리기, 비스듬히 깎기, 대못 박기, 경미한 수준의 제작, 아연 도금, 도색, 피막, 마감, 조립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가공)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완성 또는 미완성 형태의 이동식 접근 장비의 일부분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타 구성품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해당 제품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지게차, 수직 마스트 고소작업차, 이동식 자주식 크레인, 그리고 시저 암 장치 또는 붐 장치가 내장된 자동차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됨.

- **지게차 : 일반적으로 포크 모양을 한 작업용 부착 장치가 달린 자재 취급용 차량임. 이 차량의 운전자는 수직 마스트 뒤쪽의 차대에 앉거나 서서 수직 가이드 레일을 따라 물체를 인양함**
- **수직 마스트 고소작업차 : 일반적으로 플랫폼 형태인 작업용 부착 장치가 달린 인간·자재 인양용 차량임. 이 차량의 운전자는 플랫폼에 서서 수직 가이드 레일을 따라 물체를 인양함.**
- **이동식 자주식 크레인 : 밧줄, 케이블 및/또는 사슬에 걸려 있는 다량의 도구 또는 자재를 인양하는 데 필요한 붐 부착 장치가 달린 자재 취급용 차량으로, 이 차량의 일부분인 붐의 최하단 위쪽 또는 근처에는 윈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붐의 구조를 따라 밧줄, 케이블 및/또는 사슬을 다룰 수 있음**
- **시저 암 장치 또는 붐 장치가 내장된 자동차(기계 동력으로 구동되거나 견인되며 주로 공공 거리, 일반 도로,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차량을 의미하지만, 49 U.S.C. § 30102(a)(7)에 따라 철도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역시 대상 범위에서 제외됨**
- **기계 동력으로 구동되거나 견인되고, 철도에서만 운전하며, 시저 암 장치 또는 붐 장치가 내장된 차량도 대상 범위에서 제외됨**
- **이외에도 대상 범위에서는 철도용 차량(고속 레일 기어 또는 트랙 휠과 고정식(신축 불가) 메인 붐이 달려 있으며 레일 깔기, 침목 설치 또는 기타 레일 유지보수 작업 등을 위해 철도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의미함), 철도용 차량의 일부 부속 장치(고정식(신축 불가) 메인 붐이 달린 철도용 차량의 차대용 부속 장치 및 붐 턴테이블용 부속 장치를 의미함) 등이 제외됨[241)]**

241) 22192~22193페이지의 AD 명령 및 70441~70442페이지의 CVD 명령을 참조함

□ CBP 회피조사 판정

ㅇ CBP는 Sinoboom NA가 중국산 MAE에 대한 AD 및 CVD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폴란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첫째, 기업 지배구조 분석 결과, Sinoboom NA(미국 법인)와 Sinoboom Poland(폴란드 법인)는 모두 중국 본사인 Hunan Sinoboom Intelligent Equipment Co., Ltd.의 100% 자회사로 확인됨. Sinoboom NA는 미국 내 MAE 유통을, Sinoboom Poland는 미국 수출 전 중간 관리·전달 역할을 수행함
- CBP는 이들 법인이 중국 본사의 지배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중국 → 폴란드 → 미국)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원산지 회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됨
- 둘째, (거래 자료 검토) CBP는 선하증권, 구매 기록, 재고 관리 시스템(SAP), 작업 지시서 등 거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Sinoboom Poland가 핵심 부속 장치 및 구성품을 반복적·대량으로 중국 본사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확인함
- 셋째, (현장검증) 현장 검증을 통해 Sinoboom Poland의 시설은 MAE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용접, 가공, 도장 등 필수 공정 장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됨. 해당 시설에서는 사전 조립된 부품이나 소조립품을 단순 조립·시험하는 수준의 작업만 수행되었으며, 독립적인 제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음
- 넷째, (무역통계 및 세율) CBP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AD/CVD 명령 발효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MAE 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폴란드로부터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Sinoboom Poland가 미국 수출을 시작한 시점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최고 165.30%의 AD 세율과 최고 448.80%의 CVD 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경로로 폴란드가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됨
- 즉, CBP는 청원인이 제시한 무역 데이터와 세율 정보 역시 회피 판단의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함

□ **결론**

○ CBP는 Sinoboom NA가 중국산 MAE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폴란드를 경유한 우회 수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함. CBP는 기업 지배구조, 공급망 운영 방식, 현장 검증 결과, 무역 데이터 및 세율 정보 등 다각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입품이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이며 회피 정황이 명백하다고 결론지음

6) 배수용 주철관 및 이음쇠

사건번호	A-570-062 / C-570-063	
조사번호 (EAPA)	EAPA Case No. 7819	
경유국(제3국)	말레이시아	
조사개시일	2023년 7월 26일	
최종판정일	2024년 5월 29일	
조사대상 기업	Besttn Industry Inc. (미국 수입업체) United Metal Industries (UMI,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로 신고됨)	
제보자	Cast Iron Soil Pipe Institute (CISPI)	
조사 배경	제보자 CISPI는 미국 수입업체(Besttn)이 중국산 배수용 주철관(CISP) 및 이음쇠(CISPF)에 적용되는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있다고 2023년 4월 25일 주장하며 EAPA 조사를 요청함 - Besttn이 중국 업체 Kingway China와 특수관계에 있음 - Kingway China는 CISP·CISPF에 대한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 -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환적(transshipment)을 통해 관세 회피	
주요 판단 근거	가격 과소신고 (Undervaluation)	미국 수입업체 Besttn은 두 건의 수입계약(22BTN101, 22BTN095) 모두에서 킬로그램당 약 1달러 수준의 단가로 신고 서로 다른 품목(CISP / CISPF)이고 다른 HTSUS 코드 적용됨에도 가격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되어, CBP는 인위적 가격 설정 또는 저가신고 가능성 제기 계약서에 두께, 길이, 표면 마감, 끝단 마감 등 가치평가 필수 사양 정보가 누락되어 정확한 정상가격 산정 불가
	공장 실체 미확인 및 비협조적 태도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로 신고된 UMI는 공장 주소와 사무실 주소 모두에서 CBP의 정보수집요청서(RFI)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공개 지도에서도 해당 위치에 실제 생산시설이 존재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CBP가 요구한 주요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아, CBP는 UMI가 실질적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판단함
	특수관계자	Besttn, Kingway China 간에는 특수관계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됨 Kingway China는 기존 AD/CVD 명령의 대상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Besttn이 중국산 CISP·CISPF를 우회 수입하기 위한 위장법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CBP는 판단함
결론	CBP는 Besttn이 중국산 CISP 및 CISPF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반입하고,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함으로써 AD/CVD 납부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회피행위가 존재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림	

□ **조사 배경**

ㅇ 미국 주철 배수관 협회(Cast Iron Soil Pipe Institute)는 2023년 4월 25일 미국 수입업체인 Besttn Industry Inc.가 중국산 배수용 주철관 및 이음쇠(CISP·CISPF)에 대한 AD/CVD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제기함

- 조사과정에서 수입업체 Besttn Industry Inc.가 중국업체인 Kingway China와 계열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ingway China는 이미 CISP·CISPF에 대해 AD/CVD 명령이 적용된 제재 대상 업체임

- 특히 Besttn이 중국산 제품을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신고가격 또한 비정상적으로 낮게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CBP가 회피(evasion)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주요 근거로 작용함

□ **CBP 판정 결과**

ㅇ CBP는 다음의 주요 증거를 종합하여 Besttn이 CISP 및 CISPF에 대한 AD/CVD 명령을 회피했다고 판정함

ㅇ 가격 과소신고 정황

- CBP는 Besttn이 제출한 두 건의 수입 거래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HTSUS 코드가 적용된 CISP와 CISPF 상품의 총 거래금액을 BL에 기재된 총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 중량당 가격이 모두 약 1달러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함

- 이는 각 상품의 특성, 규격, 단가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게당 평균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비정상적인 가격 패턴으로 판단되어 저가신고의 징후로 간주됨

- 첫 번째 수입 건(판매계약서 22BTN101)의 총 거래금액은 미화 48,976.72달러이며, 품목은 2인치 주철관 2,560개(개당 14.31달러), 3인치 주철관 576개(개당 20.37달러), 보강 비용 610달러로 구성됨 동 계약서에는 파이프 중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총 수량은 3,136개임

  · 송장에 명시된 사양은 치수에 한정되고, 벽 두께, 길이, 표면 마감, 끝단 마감, 스텐실 적용 등 기타 특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BL상 총중량

48,900킬로그램을 총 수량 3,136개로 나누면 개당 약 15킬로그램 수준임

[표 3-78] 첫 번째 수입건에 대한 가격 과소신고 내역

수입 건 xxxxxxx8820(판매계약서 22BTN101) (선하증권 OERT111701M00010에 기재된 화물 총중량: 48,900㎏) (Besttn이 CF-28 답변서에 첨부한 판매계약서 및 선하증권)				2024년 1월 1일 자 NewAge Casting 가격표(제소자가 EAPA Cons. 7819 조사 행정 기록용으로 제출)
판매계약서 품목	판매계약서 수량(개)	판매계약서 총 금액	판매계약서 단위 가격	가격표 단위 가격
2인치 주철관	2,560	$ 36,633.60	$ 14.31	$ 173.90
3인치 주철관	576	$ 11,733.12	$ 20.37	$ 240.50
계약 금액		$ 610.00		
합계	3,136	$ 48,976.72		

- 두 번째 수입 건(판매계약서 22BTN095)의 총 거래금액은 미화 24,598.48달러이며, 품목은 여러 규격의 클로짓 벤드, 숏 스웝, P-트랩 등 총 16,497개로 구성됨. 파이프 중량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BL상 총중량 23,800킬로그램을 총 수량 16,497개로 나누면 개당 약 1.4킬로그램 수준임

[표 3-79] 두 번째 수입건에 대한 가격 과소신고 내역

수입 건 xxxxxxx8101(판매계약서 22BTN095) (선하증권 OERT111701L00747에 기재된 화물 총중량: 23,800㎏) (Besttn이 CF-28 답변서에 첨부한 판매계약서 및 선하증권)				2024년 1월 1일 자 NewAge Casting 가격표(제소자가 EAPA Cons. 7819 조사 행정 기록용으로 제출)
판매계약서 품목	판매계약서 수량	판매계약서 총 금액	판매계약서 단위 가격	가격표 단위 가격
3×4×6×12인치 클로짓 벤드	1,000	$ 5,010.00	$ 5.01	$ 116.20
2인치 숏 스웝	2,400	$ 3,840.00	$ 1.60	$ 35.90
4인치 1/8 벤드	416	$ 836.16	$ 2.01	$ 38.90
1.5인치 P-트랩	595	$ 940.10	$ 1.58	$ 39.70
4인치 숏 스웝	80	$ 320.80	$ 4.01	$ 82.80
2인치 산 티	1,892	$ 2,554.20	$ 1.35	$ 35.40
2인치 1/4 벤드	1,210	$ 1,367.30	$ 1.13	$ 25.70
4인치 1/4 벤드	10	$ 24.50	$ 2.45	$ 53.00
3x2인치 BHO	460	$ 984.40	$ 2.14	$ 56.70

2인치 1/16 벤드	4,200	$	4,074.00	$	0.97	$	22.60
2인치 1/8 벤드	3,440	$	2,717.60	$	0.79	$	22.10
3인치 숏 스웝	794	$	1,929.42	$	2.43	$	46.80
합계	16,497	$	24,598.48				

- 두 수입 건은 별개의 제품으로 각기 다른 HTSUS 코드(22BTN101은 7303.00.0030, 22BTN095는 7307.11.0045)가 적용되었으나, 가격과 중량이 매우 유사하여 각 상품의 1킬로그램당 가격은 약 1달러로 나타남
- CBP는 제품의 성격과 가공정도가 상이한 두 품목군의 무게당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가격 패턴은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함

o 말레이시아 공급업체의 실체 및 비협조 (환적 의심)

- Besttn은 말레이시아의 United Metal Industries(UMI)를 제조업체로 보고했으나, CBP가 발송한 정보 요청서(RFI)는 UMI의 사무실 주소 및 공장 주소에서 모두 배송 실패로 처리되었고, 공개 지도에서도 해당 주소지에 생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불어 UMI는 원재료 송장, 재료시험보고서, 생산 공정 흐름도 등 핵심적인 생산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음
- 이러한 정황은 UMI가 실제로 제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CBP는 중국산 제품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환적된 것으로 판단함

o 특수관계자

- 아울러 Besttn과 Kingway China, Kingway USA 간에는 경영진, 법인 구조, 사업장 주소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특수관계가 확인됨
- Besttn의 CEO인 Xuguang Yang은 Kingway USA의 CEO, 총무, CFO 및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Kingway China의 대표로도 활동한 바 있음
- 이러한 정황에 따라 CBP는 Besttn이 Kingway China의 미국 내 우회 수입을 위해 설립된 형식적인 법인이며, 양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음

□ **결론**

ㅇ CBP는 Besttn이 중국산 배수용 주철관(CISP) 및 이음쇠(CISPF)를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것으로 판단함

ㅇ (가격 과소 신고) Besttn이 제출한 두 건의 수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HTSUS 코드가 적용된 CISP와 CISPF가 BL 중량 대비 거래금액을 단순 환산할 때 모두 약 1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남. 제품 특성과 규격이 다름에도 평균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됨

- (비협조적) 한편 CBP가 말레이시아 공급업체 United Metal Industries(UMI)에 정보 요청(RFI)을 발송했으나 UMI는 회신하지 않았으며, 사무실 및 공장 주소 모두에서 배송이 실패함

- 마지막으로 CBP는 Besttn이 이미 AD/CVD 명령 대상 중국기업인 Kingway China와 인적·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대표자와 법인이 사실상 동일 인물에 의해 운영된 점, 이러한 특수관계 정황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유통된 제품이 실질적으로 중국산임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함

붙임 가격 과소신고 자료

첨부자료 1: CISP 가격 과소신고

수입 건 xxxxxxx8820(판매계약서 22BTN101) (선하증권 OERT111701M00010에 기재된 화물 총중량: 48,900kg) (Besttn이 CF-28 답변서에 첨부한 판매계약서 및 선하증권)				2024년 1월 1일 자 NewAge Casting 가격표 (제소자가 행정 기록용으로 제출)	대용가격 및 과소신고 산출값		
판매계약서 품목	판매계약서 수량	판매계약서 단위 가격	판매계약서 총 금액	NewAge Casting 가격표	NewAge 총 대용가격	판매계약서 가격과 대용가격 간 차이	
(a)	(b)	(c)	(d) = (b)*(c)	(e)	(f) = (b) * (e)	(g) = (b*e) − (b*c)	
2인치 주철관	2,560.00	$ 14.31	$ 36,633.60	$ 173.90	$ 445,184.00	$ 408,550.40	(h)
3인치 주철관	576.00	$ 20.37	$ 11,733.12	$ 240.50	$ 138,528.00	$ 126,794.88	(i)
계약 금액			610		$ 583,712.00	$ 535,345.28	(j) = 총합(h:i)
합계	3,136.00		$ 48,976.72			총 차이	
				CF 28 판매계약서 금액		$ 48,976.00	(k)
				가격 과소신고율		91.6183%	(l) = j/(j+k)

첨부자료 2: CISPF 가격 과소신고

수입 건 xxxxxxx8101(판매계약서 22BTN095) (선하증권 OERT111701L00747에 기재된 화물 총중량: 23,800kg) (Besttn이 CF-28 답변서에 첨부한 판매계약서 및 선하증권)				2024년 1월 1일 자 NewAge Casting 가격표 (제소자가 행정 기록용으로 제출)	대용가격 및 과소신고 산출값		
판매계약서 품목	판매계약서 수량	판매계약서 단위 가격	판매계약서 총 금액	NewAge Casting 가격표	NewAge 총 대용가격	판매계약서 가격과 대용가격 간 차이	
(a)	(b)	(c)	(d) = (b)*(c)	(e)	(f) = (b) * (e)	(g) = (b*e) − (b*c)	
3×4×6×12인치 클로짓 벤드	1,000.00	$ 5.01	$ 5,010.00	$ 116.20	116,200.00	$ 111,190.00	(h)
2인치 숏 스윕	2,400.00	$ 1.60	$ 3,840.00	$ 35.90	86,160.00	$ 82,320.00	(i)
4인치 1/8 벤드	416.00	$ 2.01	$ 836.16	$ 38.90	16,182.40	$ 15,346.24	(j)
1.5인치 P-트랩	595.00	$ 1.58	$ 940.10	$ 39.70	23,621.50	$ 22,681.40	(k)
4인치 숏 스윕	80.00	$ 4.01	$ 320.80	$ 82.80	6,624.00	$ 6,303.20	(l)
2인치 산 티	1,892.00	$ 1.35	$ 2,554.20	$ 35.40	66,976.80	$ 64,422.60	(m)
2인치 1/4 벤드	1,210.00	$ 1.13	$ 1,367.30	$ 25.70	31,097.00	$ 29,729.70	(n)
4인치 1/4 벤드	10.00	$ 2.45	$ 24.50	$ 53.00	530.00	$ 505.50	(o)
3x2인치 BHO	460.00	$ 2.14	$ 984.40	$ 56.70	26,082.00	$ 25,097.60	(p)
2인치 1/16 벤드	4,200.00	$ 0.97	$ 4,074.00	$ 22.60	94,920.00	$ 90,846.00	(q)
2인치 1/8 벤드	3,440.00	$ 0.79	$ 2,717.60	$ 22.10	76,024.00	$ 73,306.40	(r)
3인치 숏 스윕	794.00	$ 2.43	$ 1,929.42	$ 46.80	37,159.20	$ 35,229.78	(s)
	16,497.00		$ 24,598.48		581,576.90	$ 556,978.42	(t) = 총합(h:2)
						총 차이	
				판매계약서 총 금액		$ 24,598.48	(u)
				가격 과소신고율		95.7704%	(v) = t/(t+u)

7) 글루탐산 모노나트륨(MSG)

사건번호	A-570-992 (중국산 MSG AD 명령)	
조사번호 (EAPA)	EAPA Case No. 7950	
경유국(제3국)	말레이시아	
조사개시일	2024년 4월 1일	
최종판정일	2025년 9월 15일	
조사대상 기업	CPF Legacy, LLC(영업명: C. Pacific Foods, 이하 “CPF”) Handylee Enterprises (USA) Corp.(이하 “Handylee”), Jefi Enterprise (USA) Inc.(이하 “Jefi”), Highland USA International Inc.(이하 “Highland USA”)	
제보자	Ajinomoto Health & Nutrition North America, Inc.	
조사 배경	•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중국산 MSG의 반덤핑명령 회피 제보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MSG 수입의 59.9%가 중국·인도네시아산 • Malaysia Ajinoriki는 MSG 생산 대규모 설비 미보유	
주요 판단 근거	특수관계	말레이시아 수출업체 Malaysia Ajinoriki와 중국 MSG 제조업체 Lotus Health 간 특수관계가 확인됨 Lotus Health는 2023년 12월, Malaysia Ajinoriki의 지분 50% 이상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양사 간 법적·경제적 연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됨
	말레이시아 내 제조 능력 부재	Malaysia Ajinoriki의 제조 시설 내에는 MSG 제조에 필수적인 설비가 존재하지 않음. 현장 조사 결과, 재포장 공간만 존재하며, 옥수수 제분 및 발효 공정과 같은 핵심 제조설비는 확인되지 않음 또 다른 말레이시아 수출업체(Habita Food)의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에 제조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추론	CBP는 수입자 및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들에게 생산 기록, 원료 구입 내역, 제조 장비 정보 등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함. 다만 업체들이 대부분 응답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자료만 제출함에 따라 CBP는 이들을 의도적 비협조로 간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적용
	상무부 판정	말레이시아에서 최종 가공된 MSG도 중국산 글루탐산을 사용한 경우, 반덤핑 명령(A-570-992)의 적용 대상으로 최종 판정함 이는 제3국 가공을 통한 우회(circumven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론	CBP는 수입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환적된 중국산 MSG를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산 글루탐산을 원료로하여 생산된 MSG를 수입한 후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로 허위 신고하는 식으로 중국산 MSG 명령을 회피했다고 판정함	

□ **조사 배경**

○ 미국 Ajinomoto Health & Nutrition North America, Inc.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중국산 글루탐산 모노나트륨(Monosodium glutamate, 이하 MSG)이 반덤핑 명령 A-570-992을 회피하고 있다고 제기함

- 제보자는 근거로 수출입데이터(Global Trade Atlas(GTA))를 제출했으며, 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MSG 수입 중 중국 및 인도네시아 비중이 약 59.9%, 2023년 1~10월 기준 약 6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통계는 제3국인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환적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아울러 제보자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업체 Malaysia Ajinoriki가 MSG 제조에 필요한 대규모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가 중국 등에서 들여온 글루탐산 모노나트륨(MSG)를 단순 재포장(repacking) 후 말레이시아산으로 표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함

□ **CBP 범위 판정 회부 → 상무부 범위 판정 결과**

○ CBP는 EAPA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중국산 반덤핑 명령(A-570-992)의 적용대상(covered merchandise)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문제된 제품은 중국산 글루탐산을 주원료로 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최종 완성된 MSG로, 제3국에서의 가공·완성이 기존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범위 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CBP는 “Malaysia Ajinoriki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3국에서 가공·완성한 MSG가 중국산 MSG 명령에 따른 covered merchandise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상무부에 공식적으로 범위 판정(scope ruling) 요청을 제기함

- Malaysia Ajinoriki는 제품 생산에 글루탐산·탄산나트륨(소다회)을 주요 원료로, 활성탄·염산·가성소다 등을 보조 원료로 사용한다고 보고함. 특히 중국 무역업체로부터 중국산 글루탐산을 직접 구매했고, 이 원료가 말레이시아산으로 신고된 MSG의 핵심 투입물이라고 설명함

ㅇ 상무부는 CBP의 범위 조사 요청에 근거하여 우회(circumvention) 조사를 개시함. 상무부는 우회조사 결과, 중국산 글루탐산을 사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완성된 MSG 또한 중국산 MSG에 대한 반덤핑 명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제3국에서의 단순 가공을 통한 우회(circumvention)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표 3-80] 기존 명령의 범위

ㅇ 본 명령의 대상 제품은 다른 제품의 혼합 또는 용해 여부와 무관한 MSG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타 제품과 혼합되었거나 그러한 제품이 용해되어 있는 MSG는 혼합의 결과물에 함유된 MSG가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인 경우 본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됨
ㅇ MSG와의 혼합이 가능한 제품으로는 소금, 설탕, 전분, 말토덱스트린 등 각종 조미료가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한 MSG는 물리적 형태(일수화물 또는 무수 형태, 기질, 용액, 입자 크기와 무관한 건성 분말, MSG 슬러리와 같은 미완성 형태 등에 해당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최종 용도의 적용 여부 또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본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됨
ㅇ 일수화물 형태의 MSG는 분자식이 C5 H8 NO4 Na-H2 O, 화학물질 요약서비스(CAS) 등록번호가 6106-04-3, 고유 성분 식별자(UNII) 번호가 W81N5U6R6U임. 무수 형태의 MSG는 분자식이 C5 H8 NO4 Na, CAS 등록 번호가 142-47-2, UNII 번호가 C3C196L9FG임

□ CBP 판정 결과

ㅇ CBP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수입자들이 중국산 MSG에 대한 반덤핑명령(A-570-992)의 적용을 회피한 상태로 반입한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았음

- 첫째, (특수관계) 말레이시아 수출업체와 중국 제조업체 간 특수관계 정황이 확인됨. Malaysia Ajinoriki는 중국의 MSG 제조사인 Lotus Health와 연계되어 있으며, Lotus Health는 2023년 12월경 Malaysia Ajinoriki의 지분 50% 이상을 매입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구조는 제3국을 통한 환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됨

- 둘째, (말레이시아 내 제조 능력 부재)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의 주요 MSG 수출업체인 Malaysia Ajinoriki는 MSG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등에서 수입한 MSG를 단순 재포장(repacking)한 후 말레이시아산으로 표시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또 다른 말레이시아 수출업체인 Habita Food는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식료품 및 관련 제품 도매업체로 분류되어 있었음

- 셋째, (불리한 추론) CBP는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수입 건에 대해 정보 제출 요

구(RFI)를 발송했으나, 제출된 서류는 제조·가공 내역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했으며 일부 수입자는 아예 응답하지 않았음. 이에 CBP는 Malaysia Ajinoriki, Habita Food 및 일부 수입자의 비협조(non-cooperation)를 근거로 불리한 추론을 적용하여, 문제된 MSG가 실질적으로 중국산임에도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신고되었다고 판단함

- 넷째, (범위판정) CBP는 해당 제품의 반덤핑 명령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상무부에 범위 판정을 요청함. 상무부는 우회 조사 결과, 중국산 글루탐산을 사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완성된 MSG는 중국산 MSG에 대한 반덤핑명령의 적용 대상이며 이는 제3국 가공을 통한 우회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함
- CBP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와 상무부의 범위판정을 종합하여, 해당 수입이 반덤핑 명령의 회피(evasion)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함

□ **결론**

ㅇ CBP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된 MSG가 실질적으로 중국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산으로 허위 신고되어 반덤핑명령(A-570-992)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최종 판단함

- 이러한 결론은 ① 말레이시아 수출업체와 중국 제조업체 간 특수관계, ②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들의 제조 설비 및 생산능력 부재, ③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로 인한 불리한 추론(AFA) 적용 등 핵심 사실관계에 기반함
- 또한 제품이 반덤핑명령의 적용대상(covered merchandise)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중국산 글루탐산을 사용해 말레이시아에서 완성된 MSG도 기존 명령의 적용 대상이며 제3국 가공을 통한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CBP는 이와 같은 상무부 범위 판정과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제품이 반덤핑명령 회피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함

제3절 상무부 범위판정

1. 개념 및 관련 규정

□ **범위판정이란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임**

○ 모든 AD/CVD 명령은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제품의 정의, 즉 “범위(scope)”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범위에는 제품 설명뿐 아니라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소호(subheading) 정보도 포함함. 다만, HTSUS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위 내용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됨

- 범위판정은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상무부의 범위판정 절차는 명령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지 않음. 또한 행정심사나 다른 유형의 절차와 독립적으로 또는 이와 병행해 진행될 수 있음
- 또한 매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범위판정 신청 접수 내역을 고시하고 있음

○ 범위조사 및 범위판정에 적용되는 규정은 19 CFR 351.22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1년 9월 20일 대폭 개정되어 2021년 11월 4일자로 발효됨

- 범위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범위에 관한 설명 및 명령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무부의 과거 범위판정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2011년 8월 5일부터 ~ 現) 상무부의 범위판정 결과는 상무부 전자기록시스템인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송달시스템(ACCESS, https://access.trade.gov)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최종 범위판정에 부여된 바코드를 이용하여 ACCESS에서 문서 공개본을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최근 범위판정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242)]

2. 신청절차 및 관련 요건

242) 1990년부터 2011년 8월 범위판정 확인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나, 2011년 8월 이전 내려진 일부 판정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음(https://legacy.trade.gov/enforcement/operations/scope/index.asp)

□ 절차

○ 상무부는 각 범위판정 신청서의 완결성을 검토하며, 19 CFR 351.225(d)(2)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상무부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범위판정 신청의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함

○ 범위판정 신청이 미비하거나 기타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무부는 범위판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 사유에 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함. 확인된 모든 미비점을 수정한 후 언제든지 완결된 범위판정 신청서를 상무부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범위조사 개시 후 상무부는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된 제출물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모든 번역문에는 원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문서가 미비하거나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범위판정 신청을 미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구성

○ 신청서는 크게 표지, 본문 신청서,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 신청서는 제I절부터 제V절까지 총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서는 크게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I절 일반 정보, ▲제II절 제품 정보, ▲제III절 원산지 정보, ▲제IV절 제품 수입에 관한 사항, ▲제V절 범위판정 신청자 또는 대리인 정보를 기입함

- 제II절부터 제IV절까지는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됨. 증빙서류가 제출이 필요한 항목은 신청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무부가 인정하는 문서 유형도 함께 제시되어 있음

[표 3-81] 신청서 구성 항목 및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제I절	일반 정보	· 신청 목적, 첨부 문서 목록,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내용 기재
제II절	제품 정보	· 다음 세 가지 정보를 기재해야 함 (1) (공개) 연방 관보 고시를 위한 정보로, 제품의 설명 정보(물리적 특성, 생산국·수출국·(수입된 경우) 원산지, HS code(HTSUS), 용도 등)를 포함 (2) (비공개) 영업비밀을 포함한 상세 제품 정보(생산 이력, 생산량, 생산공정, 부품·재료 등)를 제공 (3) 법적 범위 진술(범위 해당 여부)

제III절	원산지 정보	· 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원재료와 완제품의 동일성, 물리적 특성 변화, 용도, 생산비용·부가가치, 제3국 생산공정, 투자 수준 등
제IV절	제품 수입	· 해당 제품이 미국 관세영역으로 소비용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명시(신청서 제출일 기준) – 수입된 경우·수입되지 않은 경우 각각 기재
제V절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	·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에 관한 기본 정보와 신청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사항 기재
	부록A	· 범위판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누락된 문서와 그 사유, 그리고 해당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자가 취한 조치를 설명
	부록B	· 범위판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사실관계 정보의 정확성을 인증하고, 제출물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 범위판정 판단 기준

○ 상무부는 범위판정에 있어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며 범위의 서면 설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제품이 서면 설명만으로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를 근거로 최종 판정을 내릴수 있음

- 그러나 서면 설명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19 CFR 351.225(k)(1)(i)에 규정된 1차 및 2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필요 시 최종 판단을 내림

○ 1차 판단: 범위 문구 및 해석 자료

- 상무부는 19 CFR 351.225(k)(1)(i)에 따라 1차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1차 자료에는 ▲1차 자료에는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차 해석 자료에는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사항 등이 포함됨
- 1차 해석 자료와 2차 해석 자료가 상충할 경우 일반적으로 1차 해석 자료가 우선함

ㅇ 2차 판단: 보조 기준

- 상기 언급한 방법으로 범위 판정이 불문명한 경우 상무부는 다음의 5가지 요소를 추가로 고려함. ▲물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사용자의 기대, ▲물품의 최종 용도, ▲물품이 판매되는 거래 경로, ▲물품이 광고되고 전시되는 방식. 이 중 다른 요소들보다 물리적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또한 신청 제품이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거나, 물품이 전체 제품의 구성품인 경우에는 상무부는 추가 분석[243]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원산지 판정 기준

- 상무부는 범위판정 과정에서 필요시 제3국 가공 제품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있음. 이때 상무부는 ▲최종 완제품이 투입된 원재료 제품과 다른 등급 또는 종류(different class or kind)의 동일성 여부, ▲물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 완제품의 용도를 검토함. 또한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발생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해당 ▲가공 공정의 복잡성, 그리고 ▲투자 수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포함됨

[범위판정 시 원산지 판단기준(19 CFR 351.225(j))]

· 최종 완제품이 투입된 원재료 제품과 다른 품목 또는 다른 종류의 상품인지 · 물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최종 완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인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 제3국에서의 가공 공정 특성(복잡성) · 제3국에서의 투자 수준 · 또한 상무부는 원산지 결정 시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istics)이 부여된 장소를 고려 → 판정 기준의 핵심임

- 상무부는 상기 언급된 요건들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제품의 핵심 부품이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형성된 장소를 가장 중요한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삼음

- 또한 범위판정 원산지 판정 시 19 CFR 351.225에 따라 미국 CBP 등 다른 기관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 권한으로 판정함

243) 19 CFR 351.225(k)(3)

□ 제출문서의 요건

ㅇ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가능한 한 원본 문서와 동일한 직접 사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사본은 허용되지 않음

ㅇ 상무부가 요구할 수 있는 문서유형은 분명하고 판독이 가능한 사진, 도안, 사양, 표준, 마케팅 자료, 제품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기타 견본, 송장과 계약서를 비롯해 해당 수입 제품의 판매·구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기타 관련 상업 문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ㅇ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최대한 읽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모든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모든 신청 필요문서의 완전한 판독이 가능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기업은 부록 A를 작성해 문서 또는 완전한 판독이 가능한 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함.

ㅇ 또한 신청자는 보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락되거나 완전한 판독이 어려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신청자는 누락되거나 완전한 판독이 어려운 필요문서 사본 취득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기술해야 함

- 부록 A에 필요한 설명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판독이 어렵거나 변경된 문서는 해당 문서가 요구되는 분야의 증거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신청자가 부록 A에 완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범위판정 신청을 미비한 것으로 간주해 이를 기각할 수 있음

- 부록 B에는 사실관계 정확성 인증 및 송달증명서가 수록되어 있음

[표 3-82] 인증 및 송달증명서 요건

ㅇ 회사 인증은 신청 회사의 임원이 상무부에 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함을 나타냄
ㅇ 대리인 인증은 신청 회사의 대리인이 상무부에 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함을 나타내며, 이는 신청 회사가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만 해당함
ㅇ 송달증명서는 신청 회사의 임원이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명령에 대한 연간조사송달명부(annual inquiry service list)상의 모든 당사자에게 범위판정 신청서가 송달되었음을 나타내며, 송달명부는 동일 국가의 동일 제품에 적용되는 동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에 대한 연간조사 송달명부상의 당사자들을 포함해야 함

□ 제출 방식 및 절차

○ (신청) 모든 제출물은 상무부의 ACCESS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적으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대안을 수립해야 함. 답변을 보완하는 모든 법률, 규정, 기타 설명 자료는 최초 답변서와 같은 날짜에 제출해야 함

-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문서는 더 이른 시간이 지정되지 않는 한 동부시간 기준 마감일 오후 5시까지 ACCESS를 통해 문서 전체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어야 함

○ (형식) 신청서 오른쪽 상단에 해당 형식에 따라 특정 정보를 수록한 표지를 첨부해 제출해야 함

[표 3-83] 신청서 작성시 반영해야하는 형식

○ 첫 줄에는 신청서 제출 대상이 되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사례번호(case number)[244]를 표기
○ 둘째 줄에는 표지와 부록을 포함한 문서의 전체 쪽수를 표기
○ 셋째 줄에는 구체적 절차 부문을 표기(예. 범위조사).
○ 넷째 줄에는 19 CFR 351.303(d)(2)(iv)에 따라 절차를 처리하는 상무부 사무소[245]를 표기함. 사무소 정보는 해당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포괄하는 ACCESS 사례 목록(https://access.trade.gov/caseinfo.aspx)[246]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다섯째 줄 이후에는 문서 내 영업비밀정보의 포함 여부를 표기하고,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쪽수를 기재함. 또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함으로써 문서의 영업비밀/공개 지위 및 행정보호명령(APO)에 따른 제출 정보 공개의 동의 또는 반대 여부를 표기함
- 영업비밀 문서 :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 가능
- 영업비밀 문서 :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 불가
- 영업비밀/행정보호명령본 :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 가능"(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개본, 공개 문서

○ 답변은 타자로 작성된 형태로 영문으로 작성하며, 비영어 문서의 모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답변서에 첨부함.

- 비영어 문서의 모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답변서에 첨부해야 함

244) 하나의 신청서로 동일 국가의 동일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명령(즉, 동반 명령) 모두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음. 동반 명령에 대한 신청은 반덤핑관세 사례번호로 제출하되 신청서 표지의 "사례(CASE)" 정보에 동반 상계관세 사례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245) 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명령과 상계관세 명령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상무부 사무소를 모두 기재해야 함
246) ACCESS 사례 목록은 로그인 후 ACCESS E-File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할 책임이 있음

○ 모든 제출물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동 제출을 허용함

[표 3-84] 제출물 제출 요건

- 500페이지를 초과하는 문서는 행정보호명령·문서기록과(APO/Dockets Unit)에 수동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서는 “대용량 문서(bulky document)”로 지칭됨
- 50MB를 초과하는 데이터 파일은 CD-ROM이나 DVD로 수동 제출해야 함
- ACCESS 시스템이 지속적으로나 간헐적으로 제출물을 접수하지 못할 때는 행정보호명령·문서기록과에 수동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상기 사항 외에 상무부 규정 19 CFR 351.103(c)에서 정한 전자 제출 요건을 준수할 수 없을 때는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개정법률) 제782조제c항에 따라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고, 전자 제출 불가 사유에 대한 정식 서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대체 형식을 제안해야 함. 상무부는 제출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전자 제출 요건을 수정할 수 있음

- 수동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ACCESS에서 생성한 표지를 첨부해야 함. 수동 제출하는 대용량 문서의 경우는 또한 간지를 생성·사용해야 함

- 답변서가 대용량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수동으로 제출하기로 했을 때는 해당 문서의 동일한 서면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함. 승인된 다른 모든 수동 제출물의 경우는 서면 사본 1부만이 필요함

[표 3-85] 수동 제출물 발송 주소

수동 제출물은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함
Secretary of Commerce
APO/Dockets Unit, Room 18022
U.S. Department of Commerce
Fourteenth Street and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30
Attention: Enforcement and Compliance, AD/CVD Operations, Office
(사무소 번호 적시)

□ 영업비밀정보의 처리

○ 제출된 정보 중 공개적 이용을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취급을 요청함.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범위 절차 중에 접수되는 모든 서신과 제출물을 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ㅇ 비밀정보로 간주되는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특정 정보에 대해 비밀취급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19 CFR 351.304, 19 CFR 351.305, 19 CFR 351.306 참조. 영업비밀정보로 주장되는 사항을 상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비밀취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문서 내 영업비밀정보의 최종 괄호처리 검토 및 필요한 공개본 준비에 하루가 더 필요할 때는 19 CFR 351.303(c)(2)의 “1일 지연 규칙(one-day lag rule)”을 활용함. 1일 지연 규칙에 따른 제출 요건은 영업비밀 문서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이를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 CFR 351.303(c)(2)(i)). 영업비밀 문서 제출일의 다음 1영업일 업무 마감 시까지 완성된 최종 영업비밀 문서를 제출해야 함(19 CFR 351.303(c)(2)(ii)). 최종 영업비밀 문서는 괄호처리 수정을 제외하고 원본 문서와 동일해야 함

ㅇ 영업비밀 문서 제출일의 다음 1영업일 업무 마감 시까지(앞항의 “1일 지연 규칙” 참조) 답변서 공개본을 제출함(19 CFR 351.303(c)(2)(iii)). 공개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기밀 제출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히 상세한 공개용 답변.
- 요약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특정 정보의 항목별 기재. 요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보별로 서술

비고: 요약 요건은 제출물의 서술 부분에만 적용되지 않음. 이는 표와 기타 제출 첨부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적절하게 요약되지 않은 제출물 또는 그 일부는 절차 기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행정보호명령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정보의 제한적 공개와 관련해 필요한 진술을 제출함. 미국 법률은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전자 영업비밀정보를 비롯한 특정 영업비밀정보를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국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접수된 정보는 행정보호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음. 행정보호명령 공개를 관할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기밀 제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서
-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 부분을 항목별로 기재한 진술서(공개 반대를 뒷받침하는 논거 포함).

- 규정상 상무부는 이러한 진술서 중 하나가 포함되지 않은 영업비밀정보의 제출을 제출 시점에서 거부해야 함
-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보호명령에 따른 제출 정보 공개의 동의 또는 반대 여부를 제출물에 첨부하는 표지 오른쪽 상단에 명시해야 하며(ex-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 가능 또는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 불가), 세부 지침은 19 CFR 351.304 참조 필요

o 영업비밀 취급을 요청하는 정보는 괄호(“[ ]”)로 표기해야 하고, 동시에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이중괄호(“[[ ]]”)로 표기 해야 함

o 대리인에게 행정보호명령 접근권이 부여되고 상무부의 최신 행정보호명령송달명부에 등재된 모든 당사자에게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전체 제출물 사본(비밀 문서 및 공개본)을 제공함. 행정보호명령송달명부 및 공개송달명부는 ACCESS에서 기록 문서로 유지됨. 사례번호를 입력하고 문서 유형(Document Type) 드롭다운 메뉴에서 “행정보호명령송달명부(APO Service List)” 또는 “공개송달명부(Public Service List)”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음

o 행정보호명령에 따른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정보를 제외하는 경우 이중괄호 속 정보가 제외된 완전한 영업비밀본을 제출해야 함. 이러한 답변서 판본은 표지에 “영업비밀/행정보호명령본 – 행정보호명령에 따라 공개 가능”이라고 표시해야 함. 행정보호명령에 따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당사자는 공개본만을 제공함

o 제출된 모든 정보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정보에 대한 완전무결한 검증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정보에 대한, 또는 답변서 내의 기타 검증·비검증 항목에 대한 고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범위판정 사례(GPI 식품 원료)

사례번호	A-570-985	
사 례 명	중국산 잔탄검: GPI 식품 원료 범위 판정	
신청물품	GPI Purexan 80AN, GPI Purexan 200AN, GPI Quickxan 70	
접 수 일	2023년 9월 19일	
판 정 일	2025년 5월 20일	
신 청 인	Gum Products International, Inc.(대리인 Sandler, Travis and Rosenberg PA)	
제3국	캐나다	
핵심 쟁점	캐나다 GPI社가 중국산 잔탄검을 수입하여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처리 후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이 중국산 잔탄검 AD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무부 판정	범위 내용의 명확성	명령은 피복·혼합 여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건성 잔탄검 포함, 혼합물 내 잔탄검 15% 이상이면 범위 포함 (GPI는 15% 미만 증거 미제출)
	필수 성분/본질적 특성	화학적 구조 동일, 아밀레이스 유무는 명령문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소, 아밀레이스 비활성화는 구조적 변형이 아님
	제품등급/종류	미국 잔탄검 관련 생산 업체인 CP Kelco가 1994년부터 유사 제품 판매, 신규·혁신 제품 아님
	물리적 특성	다양한 형태로 혼합·가공되었으나 본질적 물리적 특성은 잔탄검과 동일
	최종용도	식품·음료 안정제로 중국산 잔탄검과 동일, 시장 차별성 증거 미제출
	생산비용/부가가치	전체 원가 중 중국산 잔탄검 원재료가 상당 비중 차지, 캐나다 공정의 경제적 기여 제한(구체적인 수치 비공개)
	가공 특성	중국의 잔탄검 생산(세균 배양, 발효, 정제 등)은 다단계 고도 공정인 반면, 캐나다의 아밀레이스 비활성화는 단순 스프레이 분사 및 혼합 수준으로 기술적 복잡성이 낮음 (원료) 세균 보존→세균 접종→여과/원심분리→증류→정수 처리→건조→ 제분 및 잠재적 피복 공정 : GPI 제품의 경우 1~3단계
	투자수준	130만 달러 투자 확인되나 원료(중국산 잔탄검) 제품 대비 비교 정보 없어 중립적 요인으로 평가
판정결과 (권고)	해당 제품은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in scope)	
시사점	화학적 구조 불변, 높은 원재료 비중, 단순 공정, 동일 최종용도가 결합되면 제3국 가공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변경 인정 어려움	

3.1. GPI 범위판정 신청 배경

□ 배경

○ 캐나다 소재 Gum Products International(GPI)는 중국산 잔탄검[247]을 원료로 가공한 자사 식품 원료 제품(PureXan 80AN, PureXan 200AN, Quickxan 70)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고 캐나다산으로 확인될 것을 요청하며 범위판정(scope ruling) 신청서를 제출함

- GPI는 해당 제품들이 중국산 잔탄검을 원료로 사용하지만, 캐나다에서 아밀레이스 효소를 비활성화하는 독자적인 가공을 거쳐 새로운 식품 원료로 재탄생했으므로, 본질적으로 중국산 잔탄검과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며 따라서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2. GPI의 핵심 주장

① 제품 정보

□ 잔탄검의 일반적 용도

○ 잔탄검은 공산품과 소비재의 안정성 및 점도를 더해 주는 유용한 첨가제로, 주로 5개 부문(식품 및 음료, 소비재, 의약품, 공업 용품, 유전 작업 용품)에 사용됨

○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식품, 그중에서도 특히 조미료, 음료, 시럽, 제과제빵, 가공식품의 안정제 겸 농화제로 사용됨. 이외에도 치약, 자외선 차단제, 약물 등의 소비재 및 의약품에 사용됨

□ GPI 제품의 특징

- GPI 제품은 이 제품들이 중국산 잔탄검을 원료로 사용하지만, 캐나다에서 아밀레이스 효소를 비활성화하는 독자적인 가공을 거쳐 새로운 식품 원료로 최종 생산되며, ▲50파운드 무게의 봉지에 담긴 건성 분말 형태, ▲GPI 고객의 특정 최종 용도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작, ▲캐나다 생산, 원산지 캐나다로 신고됨

- (Purexan 80AN 및 200AN) 이 제품들은 소스, 제과제빵, 육류, 유제품 등의 식품에 부드럽고 끈끈한 식감을 더해 주는 식품 원료

247) A-570-985

- (AN 표기) 이름 뒤에 붙은 'AN'은 해당 잔탄 제품이 아밀레이스 음성(Amylase Negative) 상태를 의미함
- 80메시(더 큰 입자)와 200메시(더 미세한 입자)로 구분
- (Quickxan 70) 고산도/저pH 환경(예: 식초 용액)에서 사용되는 농화제 겸 안정제

② 제조 원료 및 가공 공정

□ **(원료) 잔탄검 생산의 발효 단계에서 잔토모나스 세균이 아밀레이스를 생성하고 아밀레이스는 내열성이 매우 강한 효소로, 거의 모든 상업용 잔탄검에 잔여물로 남아 있음. 문제는 이 잔여 아밀레이스가 식품 내 전분을 분해하여 품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과제빵, 쌀, 감자, 푸딩, 소스 등 전분 함유 식품에는 일반 잔탄검을 사용할 수 없음**

ㅇ 이에 GPI는 아밀레이스 잔여물을 비활성화하는 독자 공정을 자체 개발함. 이를 통해 아밀레이스 양성 잔탄을 음성 등급으로 변형시키고, 자체 개발한 검사법으로 아밀레이스 존재 여부를 측정함. 이는 GPI의 고유 기술임

ㅇ GPI의 모든 대상 제품은 잔탄검, 말토덱스트린, 트리폴리인산나트륨, 구연산 및 기타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배합하여 만들어지며, 특히 중국산 잔탄검 원료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독자적인 가공을 거침. 이는 단순히 설탕, 무기물, 소금 또는 소수성 물질과 혼합되거나 피복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 GPI 공장에서 잔탄 고유 성분인 아밀레이스가 비활성화되면서 화학적 및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전혀 다른 제품이 되는 것임

- (Purexan 80AN과 200AN) 중국산 잔탄검 원료에 액체를 분사하는 작업이 핵심임. 이후 GPI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검사를 통해 검증됨.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은 고객 주문에 따라 다른 원료들이 특정 용도에 맞게 추가 배합됨
- (Quickxan 70) 한편 GPI의 독자적인 3단계 공정(비활성화, 조건화, 재활성화)에 따라 제조됨. 일반 잔탄검이 덩어리를 형성하는 환경에서도 신속 용해됨
- (맞춤형 배합) 각 제품은 고객의 개별 사양(온도 내성, 수화 특성, 입자 크기 등)에 맞춰 수입 전에 주문 제작됨. 다만 맞춤형이라도 완제품은 여전히 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으로 뚜렷하게 구분됨
- (투자 수준) 마지막으로 GPI는 이러한 독자 기술 개발과 제조 공정 구축을 위해 캐나다 생산시설에 13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장비에 투자함

③ GPI의 범위 해석

□ **(GPI 주장) GPI는 자사 제품인 Purexan 80AN, Purexan 200AN, Quickxan 70이 명령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들 제품은 중국산 잔탄검을 원료로 사용하지만 단순히 다른 원료와 혼합되거나 피복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아밀레이스를 비활성화하면서 화학적 변형을 거친 후 고객의 특정 용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조된 최종 제품이기 때문임**

- ㅇ (기존 범위) 기존 잔탄검 명령은 다른 제품의 피복 또는 혼합 여부와 무관한 건성 잔탄검을 포함하며, 용액, 슬러리, 건성 분말, 비연삭 섬유 등 다양한 물리적 형태를 대상으로 함. 다른 제품과 혼합된 잔탄검은 혼합 결과물에 잔탄검이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 함유된 경우 대상 범위에 포함됨. 잔탄검은 잔토모나스 캄페스트리스의 호기성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다당류이며, 특정 화학적 구조를 가짐. 여기서 '피복된 잔탄검'은 분사, 혼합, 생성 또는 기타 기계적/화학적 기법을 통해 다른 물질로 피복된 잔탄검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분산보조제를 덧바르거나 면실유, 폴리소르베이트 80, 스테아린산칼슘, 레시틴, 글리옥살 등 비수용성/소수성 물질을 도포하는 방식이 있음. 이는 잔탄검 입자의 응집을 막고 수용액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도움
- ㅇ (차별성) GPI는 이러한 기존 명령의 정의가 아밀레이스 비활성화와 같은 화학적 가공 공정이나 특정 용도에 맞는 맞춤형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배제적 문구가 없다고 해서 명령이 이러한 추가 가공 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ㅇ 또한 GPI의 PureXan 80AN/200AN 및 QuickXan 70은 대상 범위 내 잔탄검으로 추가 제조된 최종 제품이기 때문에, 명령의 대상 범위에 기술된 대상 상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와는 다른 장비로 제조됨
  - GPI는 제품이 HTSUS 소호 3913.90.2015로 지금까지 수입되어 왔으나, 이 분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이에 GPI 제품은 일반 잔탄검과는 다른 등급 또는 종류의 상품으로 이에 HTSUS 소호 2106.90.9898("기타 품목 어디에도 지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조제물"), 2103.90.9091("소스 및 다음 용도의 조제물"), 또는 2104.10.0020("수프 및 다음 용도의 조제물")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중국산 잔탄검은 단지 원료일 뿐 캐나다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쳤으므로 완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라고 주장함

ㅇ (ITC)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과정에서도 캐나다산 수입품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특수 제품이 명령 대상이 될 계획조차 없었다고 덧붙임

④ GPI 식품 원료의 판매방식 및 유통경로

□ **(판매 방식) 대상 제품은 광고되거나 전시되지 않으며, GPI와 일정기간 동안 교류한 미국 식품업계의 특정 고객들에게 판매됨**

ㅇ (무역 통로) GPI 제품은 식품 제조사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특수 원료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판매됨. 일반 중국산 상품을 담당하는 유통업체는 GPI의 특수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이는 GPI 제품 고객들이 요구하는 특정 수준의 온도 내성, 특이적 수화 특성, 잔탄 내 아밀레이스 효소의 필수 비활성화, 기타 원료와의 호환에 필수적인 특정 입자 크기 등의 사양을 충족할 능력이 없기 때문임

ㅇ 또한, 미국의 유일한 잔탄검 제조업체인 CP Kelco는 자사만의 독점 유통업체를 이용하므로, GPI 제품은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무역 통로와 동일한 곳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⑤ GPI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 분석(Trendium Pool Products, Inc. v. United States (2019) 및 TMB 440AE, Inc. v. United States (2020))

□ **GPI는 자사의 제품이 중국산 잔탄검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선례(①Trendium Pool Products, Inc. v. United States (2019)와 ②TMB 440AE, Inc. v. United States (2020))를 인용함**

ㅇ 이 판례들은 원재료(기존 명령의 대상)로부터 제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가공·변형 과정을 거친 경우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Trendium Pool Products, Inc. v. United States (2019)

ㅇ 중국 및 이탈리아산 내식강(CORE)에 대한 반덤핑 명령이 CORE를 포함한 수영장 키트 및 벽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음.

ㅇ 상무부는 CORE가 반덤핑 명령의 명문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반덤핑 원재료를 주 원료로 완성한 최종 제품인 수영장 키트가 기존 제재에서 제외되는지 검토하였으며, 상무부는 해당 사례에서 여전히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 ㅇ 그러나 법원은 상무부의 판단을 번복하며, CORE가 제조·조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완제품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상무부가 적용한 단순 혼합물품(mixed-media) 분석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음
- ㅇ 나아가 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기존 반덤핑 명령 조사에서 다룬 것은 CORE라는 원재료였으며, 완제품은 피해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함
- ㅇ 따라서 피해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명확히 판시함
- ㅇ GPI는 이 Trendium 판례의 논리를 적용하여, 중국산 잔탄검이라는 원재료를 실질적으로 가공(아밀레이스 비활성화 등)하여 만든 맞춤형 완제품은 원재료와는 별개의 제품이므로,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TMB 440AE, Inc. v. United States (2020)**

- ㅇ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측의 특수 심리스 파이프가 중국산 심리스 파이프에 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음
- ㅇ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특수한 제품임을 인지하였고, 19 CFR 351.225(k)(2) 항목의 요인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당시 최종제품까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단지 명령 문구에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위에 포함됨
- ㅇ 그러나 법원은 A.L. Patterson, Inc. v. United States, 585 F. App'x 778 (Fed. Cir. 2014) 판례를 인용하며, 상무부의 결정에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첫째, 상무부는 해당 상품이 ITC의 피해 조사 대상이었던 국내 산업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둘째, 해당 상품이 신청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명령이 적용된 상품과 물리적으로 구별됨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GPI의 최종 주장**

- ㅇ GPI는 이러한 법적 선례들을 근거로 자사 제품이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될 계획이 애초에 없었으며, 실질적 변형과 주문 제작이라는 특성상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ㅇ ITC의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 대상에서 캐나다는 잔탄검 수입원으로 언급되거나 고려된 적이 전혀 없어 자사 제품이 애초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이는 Trendium과 TMB 판례에서 법원이 "ITC가 조사하지 않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 일치하는 논리임

3.3. 상무부 판정 결과

□ 요약

ㅇ 상무부는 해당 제품의 반덤핑 명령의 적용 범위를 판정하기 위해 19 CFR §351.225에 따라 두 단계로 분석을 진행함

- 첫 번째 단계인 기존 명령 범위 해석(§351.225(k)(1))에서는 명령의 서면 설명, 초기 조사 기록, 과거 범위판정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음. 두 번째 단계인 원산지 판정(§351.225(j))에서는 생산공정의 특성, 생산비용 및 부가가치, 제품의 용도, 투자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했음. 아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상무부 범위판정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기존 잔탄검의 명령의 범위

ㅇ 상무부는 중국산 잔탄검(Xanthan Gum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대한 반덤핑 명령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음

[표 3-86] 중국산 잔탄검(A-570-985) 명령의 범위

반덤핑 명령의 해당하는 제품들은 다른 제품의 피복(coated)되거나 혼합(blended) 여부와 무관한 건성 잔탄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명령에 포함된 잔탄검의 물리적 형태는 용액, 슬러리, 입자 크기와 무관한 건성 분말, 비연삭 섬유 등에 해당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다른 제품과 혼합된 잔탄검은 혼합의 결과물에 함유된 잔탄검이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인 경우 상기 대상 범위에 포함됨. 잔탄검과의 혼합이 가능한 기타 제품으로는 설탕, 무기물, 소금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잔탄검은 잔토모나스 캄페스트리스의 호기성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다당류임. 이 반복성 5당류 단량체 단위의 화학적 구조를 이루는 중추는 P-1,4-D-포도당 단당류 단위 2개인데, 이 중 두 번째 단위의 3당류 측쇄가 P-D-만노스-(1,4)- P-D-글루쿠론산-(1,2)-a-D-만노스 단당류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음. 말단의 만노스는 피루빌화할 수 있고 내부의 만노스 단위는 아세틸화할 수 있음 동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 상품은 미국 HS 코드(HTSUS)의 제3913.90.20호, 제3913.90.2015호, 제3824.99.4900호로 분류되어 있음. 그러나 HS 코드(HTSUS) 분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대상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결정적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 상무부 범위판정 주요 결과

① 제품 등급/종류의 동일성 여부

- ㅇ 상무부는 원료 잔탄검과 GPI 제품 모두 명령 대상 범위에 명확하게 기술된 화학적 구조(5당 다당류)에 해당하므로, 이 제품들의 등급이나 종류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음. 특히 GPI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공정이 원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최종 제품이 여전히 중국산 잔탄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등급과 종류의 제품이라고 보았음. 또한, 상무부는 명령 대상 범위에서 관세 분류(HS 코드)가 편의 제공 및 통관을 위한 참고용에 불과하며, 서면 설명이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GPI의 HS 코드 분류 주장이 범위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 ㅇ 특히 상무부는 GPI 제품들이 특정 용도에 맞게 "배합·혼합 가공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 명령 범위(서면 설명)에 이미 "설탕·무기물·소금 등과의 혼합 가공품(잔탄검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음. 또한 GPI는 자사 제품의 잔탄검 함량이 명령 대상 제외 기준인 건조중량 15%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상무부는 "혼합 결과물에 함유된 잔탄검이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인 경우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음

② 물리적 특성

- ㅇ GPI는 혼합 및 가공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제품 형태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음. 그러나 상무부는 GPI가 화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ㅇ 상무부는 GPI의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공정 등 물리적·기능적 변화 주장을 경미 수준으로 판단했으며, 효소 유무는 범위 문언상 결정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음. 상무부는 또한 범위 문언이 제품의 물리적 형태 변화가 아닌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명령의 대상 범위는 다른 제품과의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잔탄검 자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판단했음
- ㅇ 또한 상무부는 미국의 다른 잔탄검 생산업체가 1994년부터 아밀레이스 특성을 명시한 사양의 잔탄검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점을 제시하며, GPI의 '독점 기술' 주장을 반박했음

③ 최종용도

ㅇ GPI는 자사 제품(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이 특정 고객의 최종 용도에 맞게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공정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일반 잔탄검과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음. 특히, GPI는 초기 반덤핑 명령 조사 당시 ITC 산업 피해 보고서에 자사 제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TMB 440AE, Inc. v. United States(2020) 판례를 인용함

ㅇ 상무부는 GPI 제품이 식품·음료 분야에서 잔탄검으로 사용·표기되며, ITC가 검토한 '식품 및 음료 등급' 잔탄검과 용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GPI의 주장을 기각했음

④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분석

ㅇ GPI는 자사 제품들이 고객 맞춤형으로 제조되어 잔탄검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평균값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과거 판례[248]에서 생산 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용했음

ㅇ 상무부는 GPI 측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최종 제품의 생산 원가·부가가치가 중국산 잔탄검 투입량의 상당 부분이 변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상무부는 GPI 제품 각각에서 잔탄검이 생산원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상세한 자료를 구했으며, 잔탄검 원가가 총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했음.[249]

⑤ 생산공정의 복잡성 비교 평가

ㅇ 상무부는 원료인 잔탄검이 세균 보존, 세균 접종, 여과/원심분리, 증류, 정수 처리, 건조, 제분 및 잠재적 피복 공정을 거치는 다단계 공정인 반면, GPI Purexan 80AN 및 200AN은 특정 단계(혼합 및 스프레이 분사)만을, GPI Quickxan 70은 3단계(비활성화→조건화→ 재활성화) 공정만을 거친다고 평가하며 원료 생산이 GPI의 최종 제품 생산보다 집약적이고 정교하다고 판단했음.

- 또한 GPI는 장기간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속 점도 분석기(Rapid Visco Analyzer)를 이용해 피복 처리된 잔탄검의 양을 검사하고 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으나, 상무부는 이를 오히려 GPI 공정

248)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Not Less Than Fair Value: Wax and Wax/Resin Thermal Transfer Ribb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69 FR 17645(April 5, 2004), Peer Bearing Company-Changshan v. United States, 128 F. Supp. 1286(CIT 2015

249)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이 복잡하지 않다는 근거로 해석했음. 특히 GPI가 강조한 '신속'·'저렴' 등의 특징은 검사가 집약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음

⑥ 투자 수준

○ 상무부는 최종 제품과 원료 잔탄검 제품 간 투자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중립적 요소로 처리했음. 특히 상무부는 GPI가 캐나다 시설에 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해당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이해관계자인 GPI에 있다고 강조했음

⑦ 필수 성분 및 본질적 특성 부여

○ GPI는 잔탄검이 자사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료이지만, 이러한 원료가 최종 제품으로 '실질적인 변형'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Acetric Health LLC v. United States, 949 F. 3d 719(Fed. Circ. 2020)[250]와 같은 관련 판례들을 인용했음. GPI에 따르면, 자사의 최종 제품들은 특정 공정을 거쳐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변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원산지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된다고 설명했음

○ 그러나 상무부는 GPI가 인용한 판례들이 주로 미국 CBP의 판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GPI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원산지 판정 시 주로 19 CFR 134.1을 적용하는 CBP와 달리, 상무부는 별도의 규정인 19 CFR 351.225(j)를 주로 적용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상무부는 CBP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고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상무부는 GPI가 자사 제품을 "우수한 잔탄 원료 또는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GPI 자신이 자사 제품의 본질이 여전히 잔탄검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음

○ 이에 따라 상무부는 GPI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7개 판단 요소 전반을 종합한 결과 GPI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여전히 중국산 잔탄검에서 유래한다고 판단했음

250) Acetric Health LLC v. United States, 949 F. 3d 719(Fed. Circ. 2020);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764 F. 2d 778(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1982); Gibson-Thomsen Co., Inc. v. United States, 27 CCPA 267(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1940); Cyber Power Systems, Inc. v. United States, 622 F. Supp. 3d 1397(CIT 2023),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8(CIT 1987)).

[표 3-87] GPI 잔탄검 범위판정 핵심 쟁점 및 상무부 판단

구분	GPI의 주장	미국 상무부의 판단
제품 등급/종류	자사 제품은 특정 공정을 거쳐 여러 원료가 혼합된 가공품으로 중국산 잔탄검과는 다른 등급 및 용도를 가지며, 특정 HTSUS 코드(예: 제2106.90.9898호)로 분류되어야 함	원료 잔탄검과 GPI 제품 모두 명령 대상 범위에 기술된 화학적 구조(5당 다당류)에 해당하므로 등급/종류가 동일함. 캐나다 공정은 원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함. HS CODE(HTSUS) 분류는 행정적 편의 목적이며 서면 설명이 결정적이므로 GPI의 주장은 영향 없음
물리적 특성	혼합 및 가공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제품 형태가 달라졌으며,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했음	화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 제시 부족.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등 물리적/기능적 변화는 경미한 수준이며, 효소 유무는 범위 문언상 결정 요소가 아님. 명령 문언은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되므로 물리적 특징 변화는 중요하지 않음
최종 용도	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은 특정 고객의 최종 용도에 맞게 개조된 제품이며 일반 잔탄검과 동일하지 않음 - 아울러 초기 ITC 산업 피해 보고서에 자사 제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해당 제품들은 동일 업종인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 사용되며 잔탄검으로 표기되므로 최종 용도 측면에서 잔탄검과 다르지 않음. ITC 역시 최종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 **상무부는 ITC 보고서에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ITC가 피해 보고서에서 관련 제품을 광범위하게 검토했으며, GPI 제품의 용도가 ITC가 검토한 '식품 및 음료 등급' 잔탄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대상 제외 주장을 거부함**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자사 제품은 고객 맞춤형으로 잔탄검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평균값 산출은 무의미하며,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GPI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최종 제품의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가 중국산 잔탄검 투입량의 상당 부분을 변형시키지 못함. GPI 제품의 총 원가에서 잔탄검 원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
생산 공정의 복잡성	'자체 개발한 공정'으로 잔탄검의 변형을 주장 **- 최종 용도에 따라 배합됨**	원료 잔탄검 생산은 세균 보존, 여과 등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반면, GPI 공정은 특정 단계(예: 3단계)만을 거치므로 원료 생산이 GPI의 최종 제품 생산보다 더 집약적이고 정교하다고 판단
투자 수준	캐나다 시설에 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	최종 제품과 원료 잔탄검 제품 간 투자 수준 비교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중립적 요소로 처리. 해당 주장 입증 책임은 GPI에 있음
본질적 특성	**특정 공정을 거쳐 물품의 명칭, 성질,**	GPI가 인용한 판례는 주로 CBP 판정과 관련

부여	**용도가 변형되어 원산지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판례**를 인용	되며, 상무부는 19 CFR 351.225(j)를 주로 적용함. 상무부는 CBP 등 타 기관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고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 GPI가 자사 제품을 "우수한 잔탄 원료 또는 제품"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이 잔탄검임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강조함

3.4. 결론

□ **미국 상무부는 GPI 제품이 캐나다에서 추가 가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범위 내 잔탄검의 본질적인 화학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덤핑 관세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 ㅇ 상무부는 GPI 제품이 혼합·가공되었으나 기본 잔탄검과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졌고, 범위 문구가 결정적(dispositive)이며, 잔탄검 함량이 15% 미만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 ㅇ 물리적 특징, 최종용도, 생산원가, 제조공정 특성, 투자 수준, 필수성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GPI 제품은 기존 중국산 잔탄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함
- ㅇ ITC 조사에서도 캐나다산 및 GPI 제품이 충분히 고려됐으며, GPI가 주장한 맞춤형 특수 제품이라는 점이 명령 적용 배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 ㅇ GPI의 아밀레이스 효소 비활성화 공정은 화학적 구조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며, 상무부는 범위 문구가 명확해 다른 요인을 따로 검토할 필요 없다고 봄
- ㅇ 요약하자면, GPI는 중국산 잔탄검으로부터 캐나다에서 특별 가공된 맞춤형 식품 원료 제품이므로 반덤핑 명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상무부는 이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산 잔탄검과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제품으로서, 명령 범위에 포함되며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최종 판정함

제4장
고관세 대상 품목 대미 교역 현황 모니터링

제1절 개요
제2절 모니터링 방법
제3절 모니터링 결과

제4장 고관세 대상 품목 대미 교역 현황 모니터링

제1절 개요

□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만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면서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규범을 활용하여 이러한 중국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함**

- ㅇ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對미 수출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가속화한다고 판단하여,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중국산 포함)에 대하여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함
- ㅇ 2018년 7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독점력을 활용한 공정무역 방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지적하고,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7.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
- ㅇ 2020년에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및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함[251]
- ㅇ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세율을 종전 25%에서 50%로 올렸고,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한 세율을 7.5%~최대 100%까지 올렸으며[252], 그 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등의 명목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251) EU, 일본, 영국과 협의하여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로 대체하였으며, 그 외 제232조 관세조치에 변동 없음
252) 품목별로 차등 적용하되, 반도체, 배터리 등 일부 민감품목에 인상 세율 적용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되, 그 외 부분(미함유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10%)가 부과됨
-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은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9704, 9705, 9980, 10895, 10896에 미국 HS 코드(HTSUS)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4-1] 미국의 포고령 주요 내용 요약

포고령	품목	추가 관세율 및 부과 시기
9704	알루미늄	10%(‘18) → 25%(’25.3.12) → 50%(‘25.6.4)
9705	철강	25%(‘18) → 25%(’25.3.12) → 50%(‘25.6.4)
9980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 25%, 알루미늄 10%(‘20) → 25%(’25.3.12) → 50%(‘25.6.4)
1089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25.3.12) → 50%(‘25.6.4)
10896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25%(’25.3.12) → 50%(‘25.6.4)
10947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50%(‘25.6.4)

자료 : KOTRA(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2025.6.10.)
*2018년 철강은 쿼터(Quota)를 두어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 추가관세 부과 없이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5.3.12일부터 쿼터를 폐지함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근거한 50% 추가 관세,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한 7.5~100% 관세외 최혜국대우 관세(MFN) 0~2.5%, 상호관세 10%, 기타 관세(펜타닐 관세 등) 10% 같은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음

[표 4-2] 미국의 對중국 관세조치 현황(‘25.11.5 기준)

일자	관세조치(%)						최종관세율(%)
	MFN 관세	301조 관세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25.4.2	0~2.5	7.5~100	20	34 (4.2)	84 (4.8)	125 (4.9)	145~247.5
‘25.5.14.~ (제네바 합의)	0~2.5	7.5~100	20	10			30~132.5
‘25.8.12.~ (행정명령 14334호)	0~2.5	7.5~100	20	10			30~132.5
‘25.11.10.~	0~2.5	7.5~100	10	10 (~‘26.11.26 限)			30~132.5

자료 : KOTRA(트럼프 행정부, 대중 관세 인하 행정명령 발표 주요내용, 2025.11.5.)

- ㅇ 여기에 과거 미국 상무부(DOC)의 반덤핑(Anti-Dumping, 이하 “AD”) 관세 부과 명령을 적용한 물품인 경우, 고율의 관세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음(품목마다 상이하나 약 4~200%)
- ㅇ 미국이 중국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종류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중국 기업은 제3국 기업을 활용한 우회 수출이나, 제3국내 생산 시설 마련 후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ㅇ 이에 미국은 상무부(DOC)의 우회 조사(circumvention)와 CBP의 회피 조사(evasion)를 활용하여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 조사 대상을 중국 및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그로 인한 중국과의 제품 공급망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미국 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ㅇ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내에 위치한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여도, 중국산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한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미국의 우회 의혹 제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1] 한국의 주요 수출국 수출비중(단위 : %)

자료 : 지표누리(한국의 상대국별 수출비율),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2절 모니터링 방법

1. 모니터링 품목 선정 기준

□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미국이 중국에 부과중인 관세 항목중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및 반덤핑(AD) 관세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을 선정함

○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후 최초로 부과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 관세를 기준으로 반덤핑(AD) 관세 명령과 중첩되는 품목 및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와 중첩되는 품목을 선정함

- 제232조 & 반덤핑(AD) 관세 :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232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생산 기업들은 원자재(inputs) 비용 부담 증가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당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완제품에 대한 [253] 반덤핑(AD) 관세 명령 부과를 요청하면서, 최근 제232조 위반 여부 및 반덤핑(AD)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제232조 & 제301조 관세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 항목들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법 제301조 관세의 경우 관세 부과 항목을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유엔(UN) 및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 무역 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ITC)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및 반덤핑(AD)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수입 및 對한국 수입 통계를 추출한 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우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함

253) With the increased costs of steel and aluminum inputs because of the Section 232 tariffs, some U.S. manufacturers had trouble competing with importers of finished, or derivative, products (e.g., steel wheels or metal filing cabinets). Thus, U.S. industries manufacturing similar products have sought AD/CVD protection from import competition. Thus,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in AD/CVD investigations on finished products containing steel or aluminum. The additional AD/CVD cases as a result of the Section 232 tariffs are in addition to any AD/CVD duties already in place. Some economists have called this phenomenon “cascading protection.”(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Updated August 24, 2020)

[표 4-3] 대미 우회 수출 의혹 제기 가능 품목 선정 기준 및 세부 내용

구분	무역확장법 제232조 & 반덤핑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 & 무역법 제301조
수입 규모 비교 범위	•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시작 • 제232조 관세로 인하여 미국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지자 제232조 위반 조사와 함께 해외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조사 급증 • 2018년에 제232조와 반덤핑(AD) 조사가 시작된 점, 2024년에 백악관이 발표한 제232조 관세 적용 일부 조정 내용 등을 감안하여 2018년&2024년 수입 증감율을 비교 분석함	• 두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부과되어온 항목이며, 2기 행정부에서 제301조와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고 있음 • 2023년 및 2024년에 백악관이 발표한 제232조 관세 적용 일부 조정 내용과 2024년에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제301조 적용 검토 결과[254] 등을 감안하여 2023년&2024년 수입 증감율을 비교 분석함
공통 기준	• 수입 의존도 : 우리나라 또는 중국중 어느 한쪽 국가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품목 제외 • 수입 흐름 :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직전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對중국 수입은 감소하고 對한국 수입은 증가하는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對중국 수입 및 對한국 수입 증감폭을 같이 고려하였음 • 무역량 연평균 증감율 : WTO 전 세계 무역량 연평균 증감율 4%를 기준으로 7년간 누적된 증감율 약 30%를 가정하고, 미국의 對중국 수입액 또는 수입량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對한국 수입액 또는 수입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품목 선별[255]. •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품목 조사 신청서가 존재하는 품목	

자료 : WTO, 백악관(THE WHITE HOUSE)

○ 우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품목의 원자재는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2013년~2023년까지 작성한 품목인증수출자보고서 등 내부자료 분석결과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참고하여 발굴함

2. 모니터링 대상 품목 수출입 동향

□ 기준에 따라 선정한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반덤핑(AD) 관세 적용 품목 10개(수출입 동향 붙임1 참조)

25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55) WTO 2025 전망 보고서 및 연도별 전 세계 상품 무역량 추이 분석 결과, 연간 전 세계 무역량 증감율(annual change)은 평균 약 2~3% 정도인데, 만약 증감율이 2배(4~6%)이상을 상회한다면 특정 원인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실제 2000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9~2021년 코로나(COVID-19)사태 당시 증감율이 약 2배~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음

[표 4-4]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반덤핑(AD) 관세 적용 품목(10개)

HTSUS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		미국의 대중국 수입량 & 미국의 대한국 수입량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	증감률(18-24) 對중국/對한국		증감률(18-24) 對중국/對한국	
7318	7318.15	7318.15.20	7318.15.20.95	-34.2	94.3	-25.3	34.3
7318	7318.15	7318.15.50	7318.15.50.51	-62.5	1,393	-65.1	1,714
7606	7606.12	7606.12.60	7606.12.60.00	-80.1	828.3	-83	1169
7610	7610.90	7610.90.00	7610.90.00.80	-37	84.5	-27.8	80.5
8302	8302.41	8302.41.30	8302.41.30.00	-52.9	298.3	-42	287.2
8302	8302.41	8302.41.60	8302.41.60.45	-37.9	142.5	-24.7	69.7
8433	8433.90	8433.90.10	8433.90.10.90	-68.8	2,873	-55.7	8,241
8481	8481.90	8481.90.90	8481.90.90.85	-37.2	55.9	-53.2	77.8
8503	8503.00	8503.00.95	8503.00.95.20	511.2	271.6	-46.2	47.3
8708	8708.29	8708.29.15	8708.29.15.00	-62.5	156.5	-51.1	-27.2

-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무역법 제301조 관세 적용 품목 13개(수출입 동향 붙임2 참조)

[표 4-5]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무역법 제301조 관세 적용 품목(13개))

HTSUS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		미국의 대중국 수입량 & 미국의 대한국 수입량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	증감률(23-24) 對중국/對한국		증감률(23-24) 對중국/對한국	
3209	3209.90	3209.90.00	3209.90.00.00	-45.1	60.4	-39.6	105.6
7214	7214.99	7214.99.00	7214.99.00.31	-55.9	883	-39.5	1,756.4
7229	7229.90	7229.90.50	7229.90.50.06	-50.1	27.9	-48.5	47
7304	7304.11	7304.11.00	7304.11.00.50	-82	1,669	-80.9	1,826.7
7606	7606.12	7606.12.30	7606.12.30.91	-72.3	34.6	-67	37.2
7616	7616.99	7616.99.51	7616.99.51.20	-33.9	191.7	-6.6	152.5
8301	8301.20	8301.20.00	8301.20.00.30	-39.7	165.5	-33	150.7
8483	8483.10	8483.10.30	8483.10.30.10	-54.6	64.1	-39	49.3
8501	8501.32	8501.32.55	8501.32.55.40	-47.9	46.4	16.2	1.1
8501	8501.53	8501.53.80	8501.53.80.40	-49.7	132	-78.8	90.4
8537	8537.10	8537.10.91	8537.10.91.30	-39.5	263.1	40	540.4
8708	8708.50	8708.50.95	8708.50.95.00	-69.5	92.1	3.38	48.65
8708	8708.10	8708.10.60	8708.10.60.10	-57.9	122.3	-31.3	66

제3절 모니터링 결과

1. 제232조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

<table>
<tr><th colspan="8">볼트 및 볼트와 이들의 너트 또는 와셔를 동일 선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것(기타)</th></tr>
<tr><td>HTSUS</td><td colspan="7">품목 설명</td></tr>
<tr><td rowspan="2">7318
7318.15
7318.15.20
7318.15.20.95</td><td>4단위</td><td colspan="6">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td></tr>
<tr><td>6단위</td><td colspan="6">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td></tr>
<tr><td colspan="3">제품군</td><td colspan="2">위반 요소</td><td colspan="2">Case ID</td></tr>
<tr><td colspan="3">철강파생상품</td><td colspan="2">232조/반덤핑</td><td colspan="2">A-570-104</td></tr>
<tr><td colspan="8">1. 교역 증감 동향</td></tr>
<tr><td colspan="8">- 최종재(금액 및 중량)</td></tr>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td><td colspan="5" rowspan="2">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td></tr>
<tr><td>중국산 (●)</td><td>한국산 (■)</td></tr>
<tr><td>금액 (단위: USD 1,000)</td><td>-34.2</td><td>94.3</td><td colspan="5" row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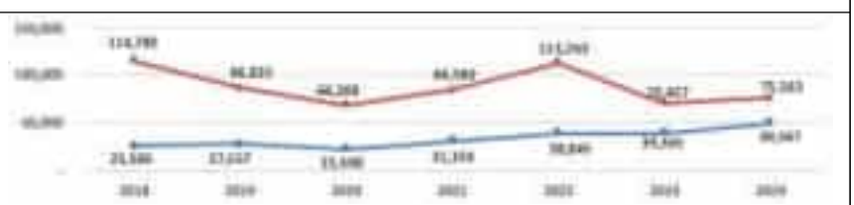 </td></tr>
<tr><td>중량 (단위:톤)</td><td>-25.3</td><td>34.3</td></tr>
<tr><td colspan="8">-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td></tr>
<tr><td>구분</td><td>HTSUS</td><td>평균 수출규모</td><td colspan="5">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td></tr>
<tr><td rowspan="2">수출액 (단위: USD 1,000)</td><td>722990 (■)</td><td>8,652</td><td colspan="5" row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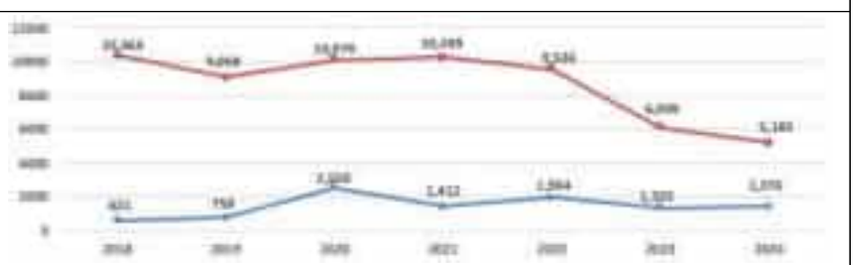 </td></tr>
<tr><td>721790 (●)</td><td>1,429</td></tr>
<tr><td rowspan="2">수출량 (단위:톤)</td><td>722990 (■)</td><td>8,067</td><td colspan="5" row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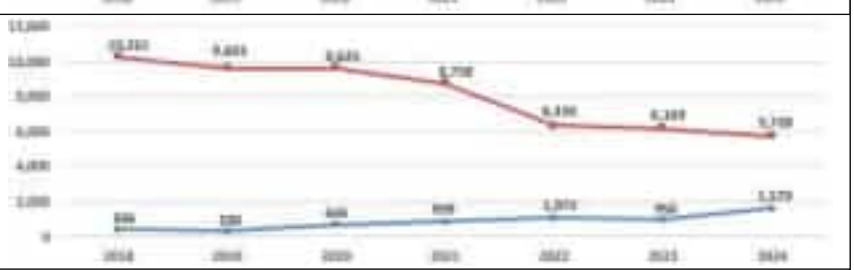 </td></tr>
<tr><td>721790 (●)</td><td>`823</td></tr>
<tr><td colspan="8">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td></tr>
<tr><td>규제현황</td><td colspan="7">-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합금 및 특정 탄소강 나선봉(threaded rod)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20.04~현재)</td></tr>
<tr><td rowspan="2">우회유무</td><td colspan="2">우회여부</td><td colspan="2">조사기관</td><td colspan="3">우회 대상 국가</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미국 상무부(DOC)</td><td colspan="3">미국(2024.08 최종 확정)
(중국산 非 나선 처리핀 이미 국내에서 나선봉으로 가공됨)</td></tr>
<tr><td colspan="8">3. 관세율</td></tr>
</table>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4.26~59.45%	0%	10%	89.26~146.95%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스터드(합금강)

HTSUS		품목 설명
7318 7318.15 7318.15.50 7318.15.50.51	4단위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6단위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철강파생상품	232조/반덤핑	A-570-104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62.5	13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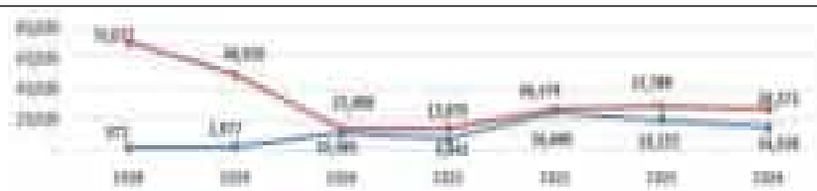
중량 (단위:톤)	-65.1	1714.1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22990 (■)	8,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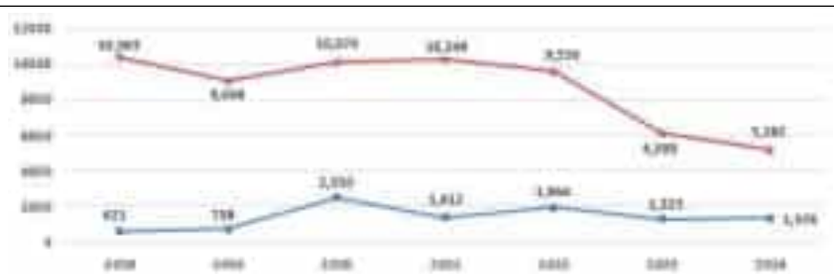
	721790 (●)	1,429	
수출량 (단위:톤)	722990 (■)	8,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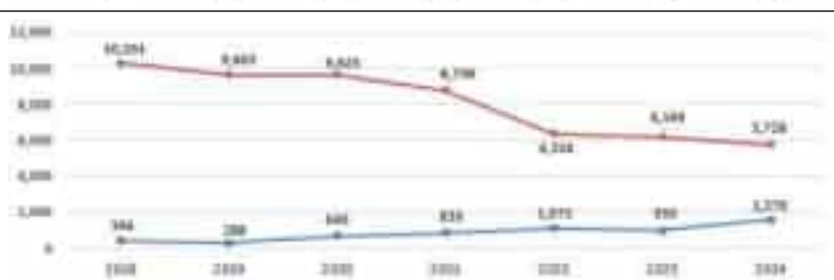
	721790 (●)	823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합금 및 특정 탄소강 나선봉(threaded rod)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20.04~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미국(2024.08 최종 확정) (중국산 非 나선 처리핀 이미 국내에서 나선봉으로 가공됨)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4.26~59.45%	0%	10%	89.26~146.95%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클래드(CLAD)

HTSUS	품목 설명	
7606 7606.12 7606.12.60 7606.12.60.00	4단위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 (두께가0.2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한정한다)
	6단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알루미늄	232조/반덤핑	A-570-053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80.1	8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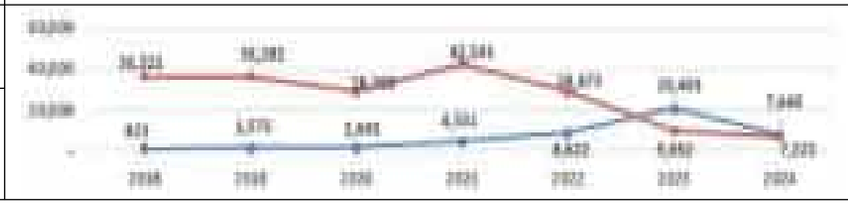
중량 (단위:톤)	-83.0	1169.0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60120 (■)	56,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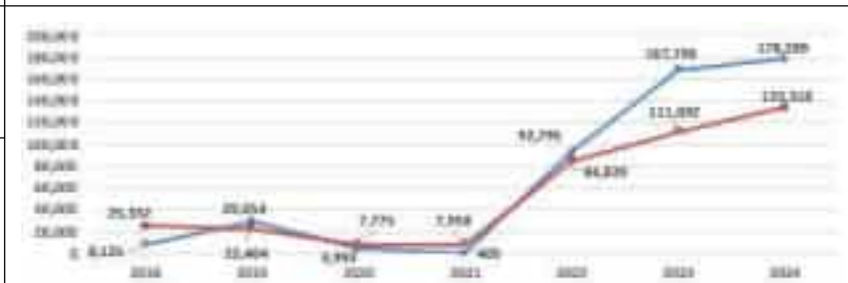
	760110 (●)	68,637	
수출량 (단위:톤)	760120 (■)	2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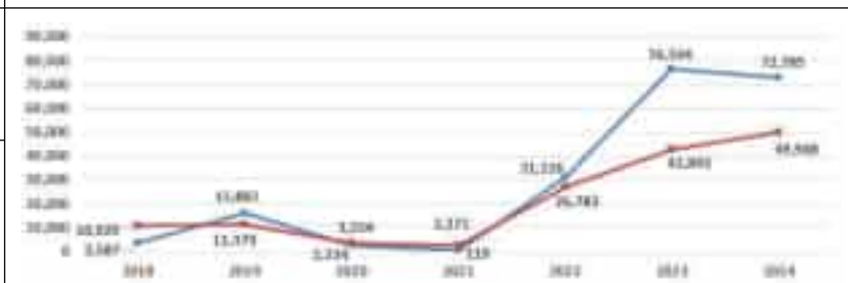
	760110 (●)	28,911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반덤핑(AD) :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 (2018.04~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대한민국 및 태국(23.11.27)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48.64~105.8%	0%	10%	133.64~193.3%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등 기타 제품

HTSUS	품목 설명	
7610 7610.90 7610.90.00 7610.90.00.80	4단위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6단위	기타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알루미늄파생상품	232조/반덤핑	A-570-967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37.0	84.5	
중량 (단위:톤)	-27.8	80.5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1,000)	731815 (●)	118,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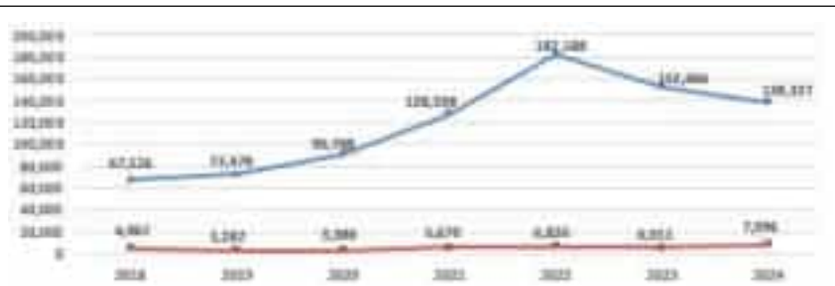
	760820 (■)	5,448	
수출량 (단위:톤)	731815 (●)	52,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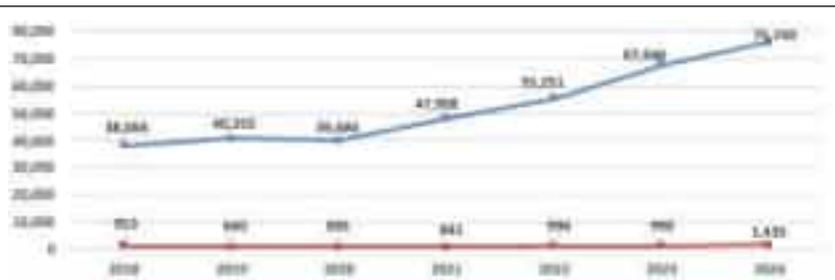
	760820 (■)	936	

3.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aluminium extrusions)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11.05~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베트남(19.08.12)

4.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32.79~33.28%	0%	10%	117.79~120.78%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도어 클로저(자동도어 클로저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HTSUS		품목 설명
8302 8302.41 8302.41.30 8302.41.30.00	4단위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6단위	기타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알루미늄파생상품	232조/반덤핑	A-570-967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52.9	298.3	
중량 (단위:톤)	-42.0	287.2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392690 (●)	561,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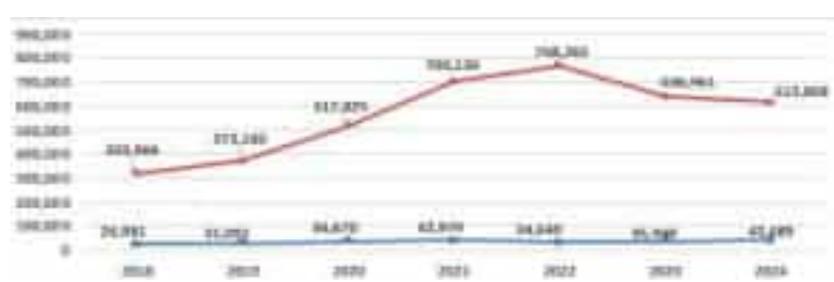
	830241 (■)	35,858	
수출량 (단위:톤)	392690 (●)	58,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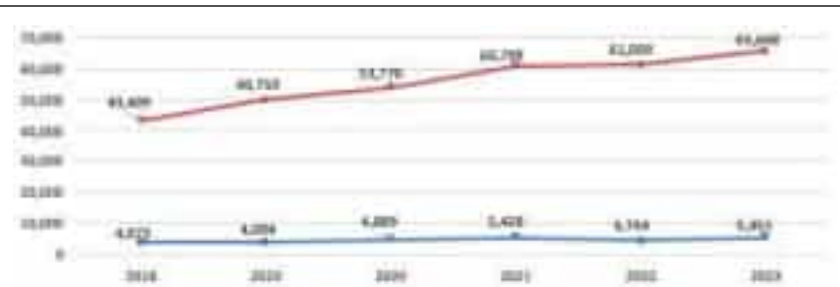
	830241 (■)	5,215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aluminium extrusions)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11.05~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베트남(19.08.12)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32.79~33.28%	0%	10%	117.79~120.78%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도어 관련 기타 부품(철강 또는 알루미늄, 아연으로 만든 것)

HTSUS		품목 설명
8302 8302.41 8302.41.60 8302.41.60.45	4단위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6단위	기타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알루미늄파생상품	232조/반덤핑	A-570-967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37.9	142.5	
중량 (단위:톤)	-24.7	69.7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22230 (■)	42,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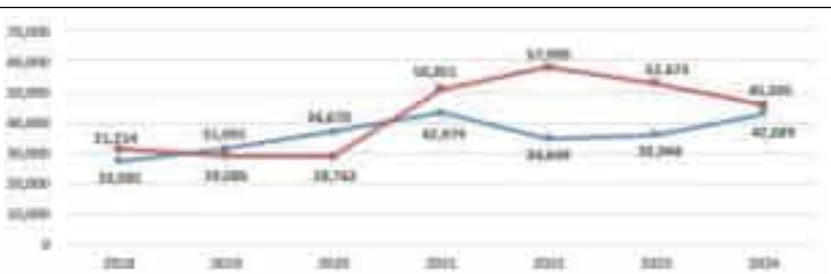
	830241 (●)	35,858	
수출량 (단위:톤)	722230 (■)	14,134	
	830241 (●)	5,215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반덤핑(AD)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aluminium extrusions)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11.05~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베트남(19.08.12)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 관세(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32.79~33.28%	0%	10%	117.79~120.78%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잔디깎이 부품

HTSUS		품목 설명
8433 8433.90 8433.90.10 8433.90.10.90	4단위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6단위	부분품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철강파생상품	232조/반덤핑	A-570-129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중량 : 데이터 확보한계로'20~'24년 기준작성)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68.8	2,8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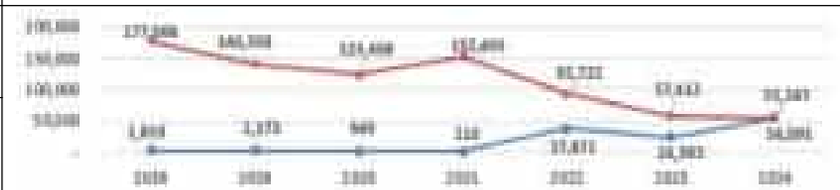
중량 (단위: number)	-55.7	8,241.4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HTSUS	구분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731816	수출액 (●) (단위: USD 1,000)	81,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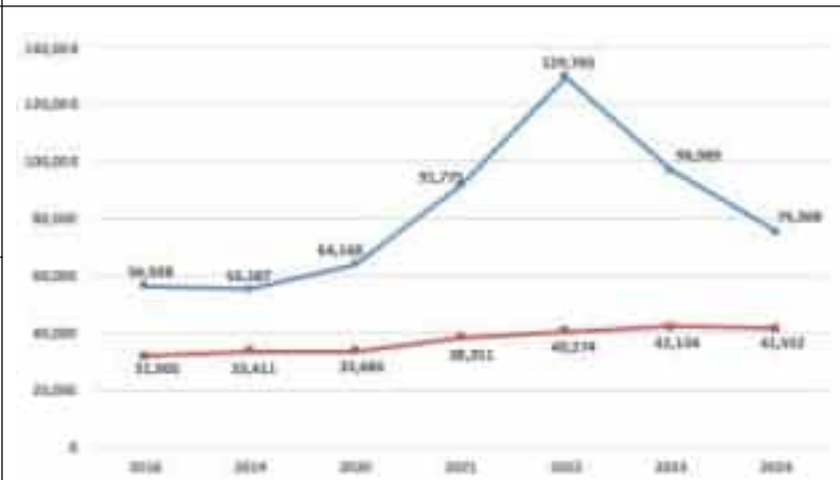
	수출량 (■) (단위:톤)	37,373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잔디깎이 기계 및 부품(walk-behind lawn mowers and parts)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21.07~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X	미국 상무부(DOC)	베트남(22.10.27 조사개시, 후 23.07.21 조사철회)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98.73~274.3%	10%	10%	193.73~371.8%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기타부품(파이프, 보일러, 탱크밸브, 탭 등)

HTSUS		품목 설명
8481 8481.90 8480.90.90 8481.90.90.85	4단위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6단위	부분품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알루미늄파생상품	232조/반덤핑	A-570-967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37.2	55.9	
중량 (단위:톤)	-53.2	77.8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32690 (●)	453,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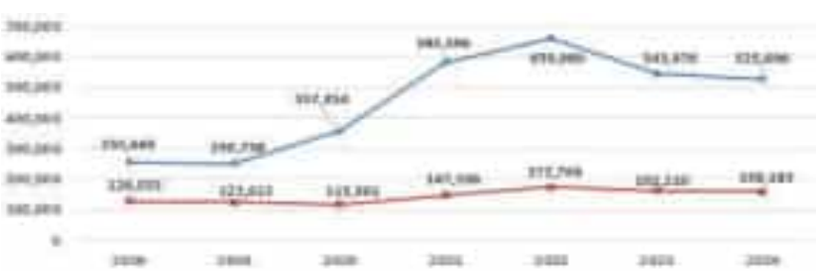
	848190 (■)	143,696	
수출량 (단위:톤)	732690 (●)	168,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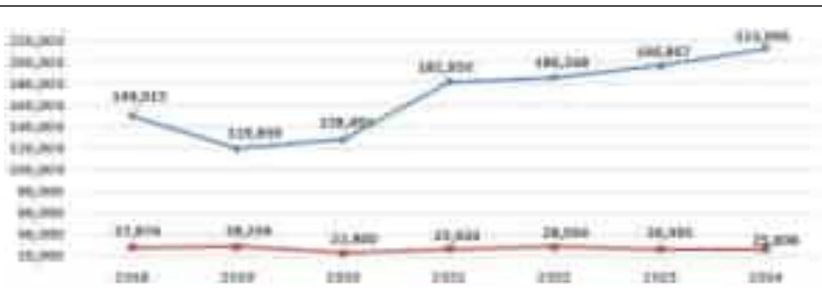
	848190 (■)	26,531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Aluminium extrusions)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11.05~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베트남(19.08.12)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 관세(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32.79~33.28%	0%	10%	117.79~120.78%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모터부분품(8501 전동기와 발전기 또는 8502 발전 세트와 회전 변환기 한정)

HTSUS	품목 설명	
8503 8503.00 8503.00.95 8503.00.95.20	4단위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기타

232조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알루미늄 파생 상품	232조/반덤핑	A-570-967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중량:데이터 확보 한계로 '19~'24년기준작성)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511.2	2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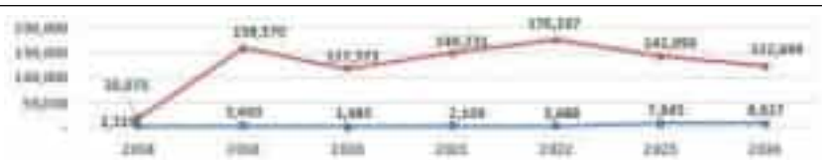
중량 (단위: number)	-46.2	47.3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392690 (●)	561,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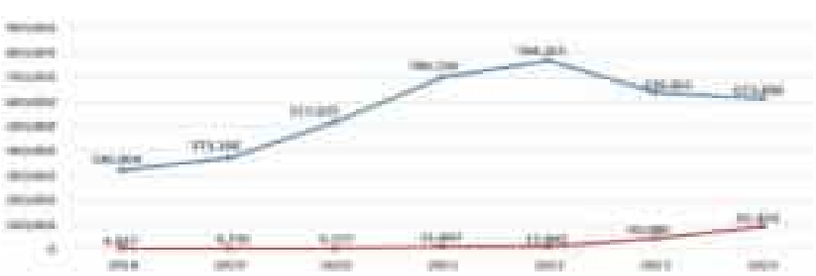
	854411 (■)	24,595	
수출량 (단위:톤)	392690 (●)	58,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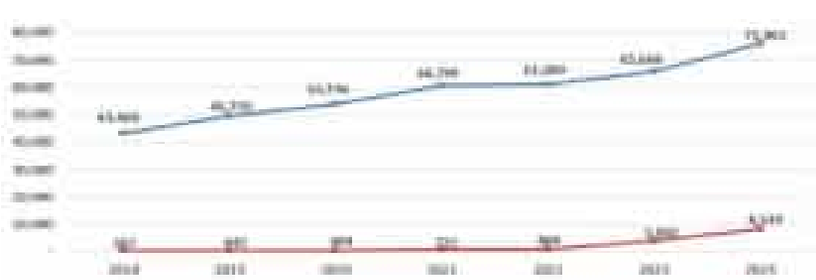
	854411 (■)	2,181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Aluminium extrusions)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 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11.05~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베트남(19.08.12)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32.79~33.28%	0%	10%	117.79~120.78%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문 조립품(Doorassemblies)

HTSUS		품목 설명
8708 8708.29 8708.29.15 8708.29.15.00	4단위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트랙터,10인이상수송자동차,사람을수송하는승용차,화물자동차,특수용도차량)
	6단위	기타

232조 제품군	위반 요소	Case ID
자동차부품	232조/반덤핑	A-570-967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18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62.5	156.5	
중량 (단위: number)	-51.1	-27.2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 및 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870829 (●)	289,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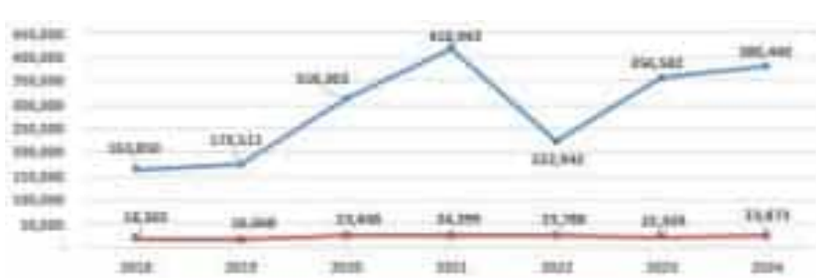
	392690 (■)	21,746	
수출량 (단위:톤)	870829 (●)	23,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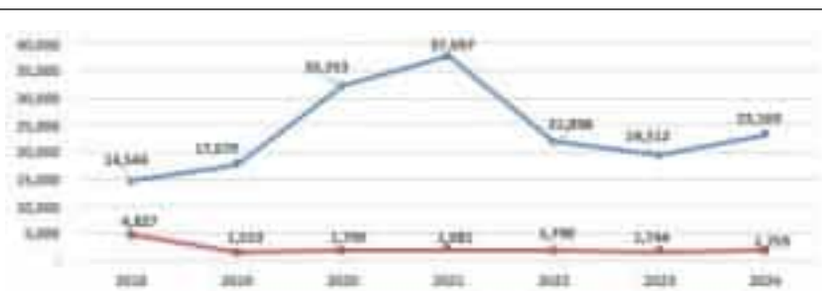
	392690 (■)	2,201	

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

규제현황	- 232조 : 철강,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세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 반덤핑(AD) :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Aluminium extrusions)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한다고 보고 반덤핑 명령 부과(2011.05~현재)

우회유무	우회여부	조사기관	우회 대상 국가
	○	미국 상무부(DOC)	베트남(19.08.12)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반덤핑	상호관세	기타관세 (펜타닐 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32.79~33.28%	0%	10%	117.79~120.78%
한국→미국	0%(FTA)	50%	-	-	15%	0%	65%

2. 232조 및 301조 관세 부과 대상 품목

<table>
<tr><td colspan="7">페인트와 바니시 관련 기타 물품</td></tr>
<tr><td colspan="2">HTSUS</td><td colspan="5">품목 설명</td></tr>
<tr><td colspan="2" rowspan="2">3209
3209.90
3209.90.00
3209.90.00.00</td><td>4단위</td><td colspan="4">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td></tr>
<tr><td>6단위</td><td colspan="4">기타</td></tr>
<tr><td colspan="2">제품군</td><td colspan="2">위반 요소</td><td colspan="2">통계세번</td></tr>
<tr><td colspan="2" rowspan="2">철강 파생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td><td colspan="2" rowspan="2">232조/301조</td><td colspan="2">232조</td></tr>
<tr><td>9903.81.91/9903.85.08</td><td>9903.88.03</td></tr>
<tr><td colspan="7">1. 교역 증감 동향</td></tr>
<tr><td colspan="7">- 최종재(금액 및 중량)</td></tr>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td><td colspan="4" rowspan="2">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td></tr>
<tr><td>중국산 (●)</td><td>한국산 (■)</td></tr>
<tr><td>금액 (단위: USD 1,000)</td><td>-45.1</td><td>60.4</td><td colspan="4" rowspan="2"> </td></tr>
<tr><td>중량 (단위:리터)</td><td>-39.6</td><td>105.6</td></tr>
<tr><td colspan="7">-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td></tr>
<tr><td>구분</td><td>HTSUS</td><td>평균 수출규모</td><td colspan="4">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td></tr>
<tr><td rowspan="2">수출액 (단위: USD 1,000)</td><td>382499 (●)</td><td>467,172</td><td colspan="4" rowspan="2"> </td></tr>
<tr><td>731010 (■)</td><td>32,635</td></tr>
<tr><td rowspan="2">수출량 (단위:톤)</td><td>382499 (●)</td><td>284,945</td><td colspan="4" rowspan="2"> </td></tr>
<tr><td>731010 (■)</td><td>1,631</td></tr>
<tr><td colspan="7">2. 규제 현황 및 우회유무</td></tr>
<tr><td>232조</td><td colspan="6">-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td></tr>
<tr><td>301조</td><td colspan="6">-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td></tr>
<tr><td>분석</td><td colspan="6">- 용도 : 건축&인테리어, 자동차&전자제품 코팅 등
- 페인트 및 바니시로 분류되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파생상품에 해당 되어 규제 적용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고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국→한국)도 2023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우회 모니터링 필요</td></tr>
<tr><td colspan="7">3. 관세율</td></tr>
</table>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95~9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지름 76mm 미만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rod)

HTSUS	품목 설명	
7214 7214.99 7214.99.00 7214.99.00.31	4단위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6단위	기타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232조	
철강	232조/301조	9903.81.87	9903.91.01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중국산(●)	한국산(■)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금액 (단위: USD 1,000)	-55.9	883.0	
중량 (단위:톤)	-39.5	1,756.4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수출액 (단위:USD 1,000)	720221 (●)	145,139	
	720449 (■)	1,347	
수출량 (단위:톤)	720221 (●)	99,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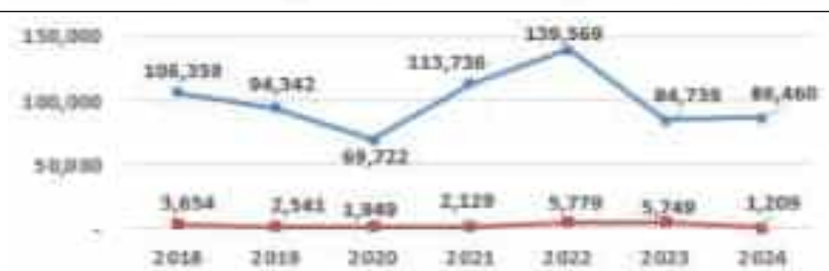
	720449 (■)	3,287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6단위 기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철강제 환봉 등 산업용 자재로 사용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어 우회가능성 有 -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국→한국)이 증가세(720221)와 감소세(720449)를 모두 보이고 있음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95~9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그 밖의 합금강의 선(구리를 도금 또는 도포한 것)

HTSUS	품목 설명	
7229 7229.90 7229.90.50 7229.90.50.06	4단위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6단위	기타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철강	232조/301조	232조	301조
		9903.81.87	9903.91.01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50.1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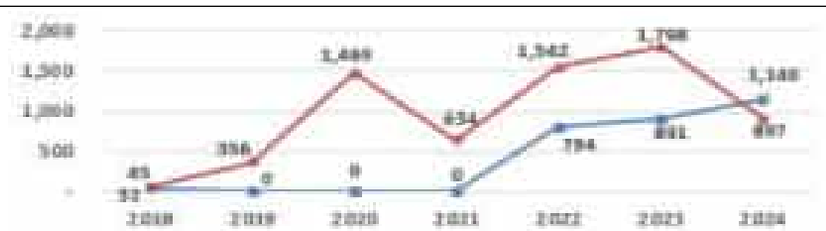
중량 (단위:톤)	-48.5	47.0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HTSUS	구분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722790	수출량 (■) (단위:톤)	350,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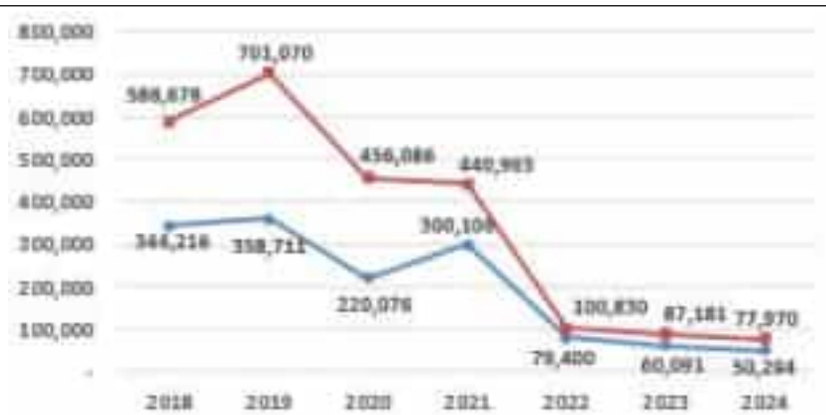
	수출액 (●) (단위: USD 1,000)	201,842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6단위 기준) 전기 아크 용접봉, 철책·거즈·망·못·로프(rope)·핀(pin)·침·공구와 스프링(spring) 제조용 등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이 확인됨 -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국→한국)이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0%	10%	85~8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외경 114.3mm 초과 ~ 406.4mm 이하)

HTSUS		품목 설명
7304 7304.11 7304.11.00 7304.11.00.50	4단위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6단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232조	301조
철강	232조/301조	9903.81.87	9903.91.01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82.0	1,6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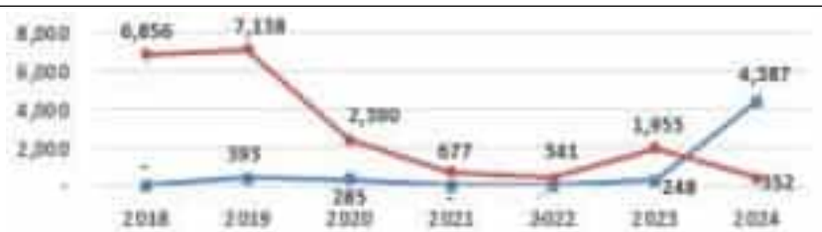
중량 (단위:톤)	-80.9	1,826.7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HTSUS	구분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730449	수출액 (●) (단위: USD1,000)	3,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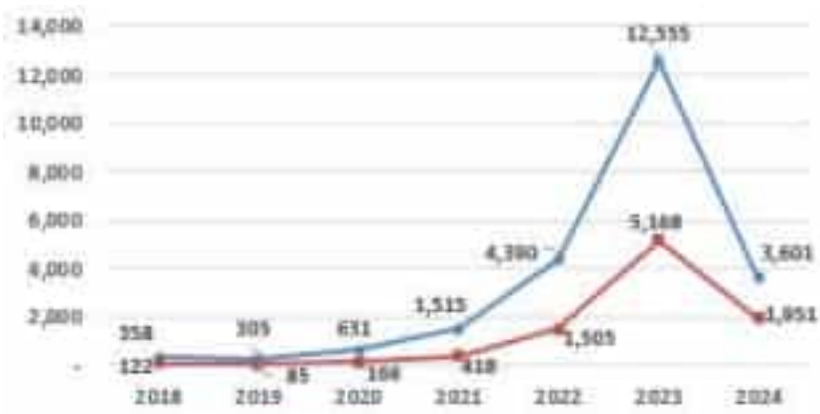
	수출량 (■) (단위:톤)	1,345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원유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매끄러운 이음 없는 배관재 등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어 우회 가능성 有 -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국→한국)은 2023년 이후 급감하고 있음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0%	10%	85~8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립(열처리가 가능한 공업용 합금)

HTSUS	품목 설명	
7606 7606.12 7606.12.30. 7606.12.30.91	4단위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232조	
알루미늄	232조/301조	9903.85.02	9903.91.01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72.3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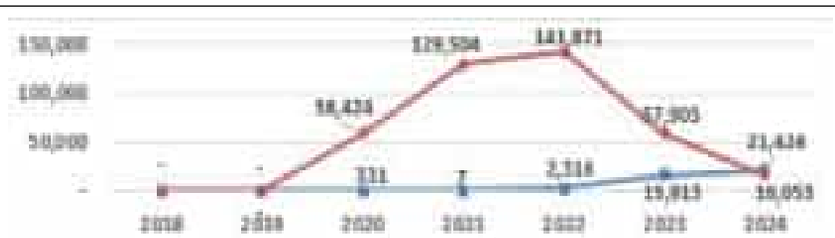
중량 (단위:톤)	-67.0	37.2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60612 (■)	592,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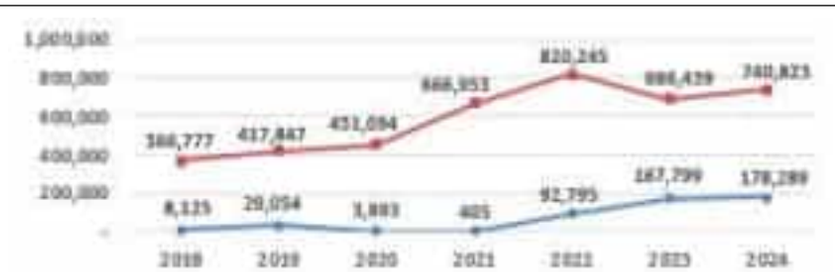
	760110 (●)	68,637	
수출량 (단위:톤)	760612 (■)	181,132	
	760110 (●)	28,911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6단위 기준)자동차 부품용 판 또는 시트, 건축 내/외장재용 등 산업용 합금으로 사용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어 우회 가능성 有 - 해당 제품의 원자재의 수출패턴(중→한)에서 원자재 별로 증가세(760612) 및 감소세(760110)를 보이고 있음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0%	10%	85~8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알루미늄의 2매 이상의 평판압연판을 접착제로 부착하거나 비금속 물질의 심을 가지고 있는 적층 물품)

HTSUS	품목 설명	
7616 7616.99 7616.99.51 7616.99.51.20	4단위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단위	기타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알루미늄	232조/301조	232조	
		9903.85.07	9903.88.03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33.9	191.7	
중량 (단위:톤)	-6.6	152.5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60612 (■)	592,883	
	392690 (●)	561,580	
수출량 (단위:톤)	760612 (■)	18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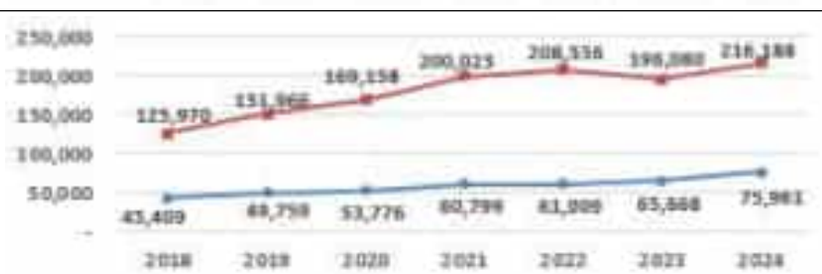
	392690 (●)	58,626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6단위 기준)제7317호에 규정한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스테이플, 제7318호에 규정한 스크루/볼트/너트/리벳/코터 등 물품, 제7319호에 규정한 코바늘, 자수용 수침, 안전핀 등 제품, 알루미늄 체인과 부품, 익스팬디드 메탈(점포 진열장, 휘발성 액체나 가스 등 운반과 저장 시 사용하는 폭발 억제제로 사용) 등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고, 해당 제품의 원자재의 수출 패턴(중→한)도 증가를 보여 우회 가능성 有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0%	10%	85~8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자동차용 자물쇠(비 일체형 스티어링 휠 이모빌라이저 장치)

HTSUS		품목 설명
8301 8301.20 8301.20.00 8301.20.00.30	4단위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6단위	자동차용 자물쇠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자동차 부품	232조/301조	232조	
		9903.94.05	9903.88.03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39.7	165.5	
중량 (단위: dozens)	-33.0	150.7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401699 (●)	46,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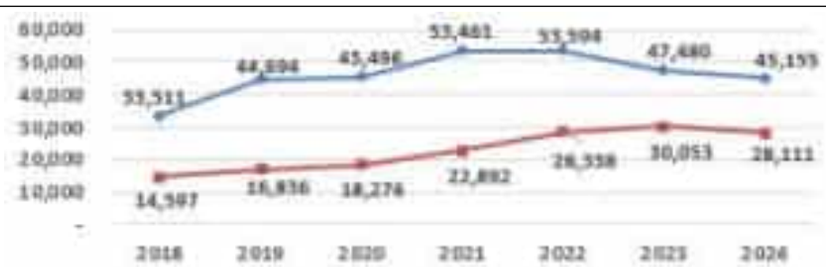
	830160 (■)	22,729	
수출량 (단위:톤)	401699 (●)	8,761	
	830160 (■)	2,084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자동차용 자물쇠 등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의 수출 패턴(중→한)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회 가능성 有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85~8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전동축[캠샤프트(cam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제87류의 차량용)

HTSUS		품목 설명
8483 8483.10 8483.10.30. 8483.10.30.10	4단위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6단위	자동차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용 자물쇠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자동차 부품	232조/301조	232조	
		9903.94.05	9903.88.03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54.6	64.1	
중량 (단위: number)	-39.0	49.3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22830 (■)	409,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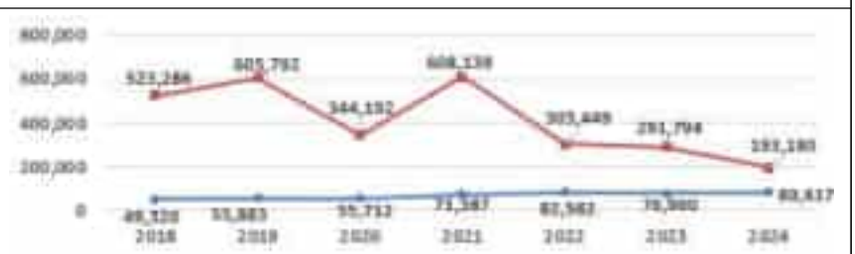
	848310 (●)	67,494	
수출량 (단위:톤)	722830 (■)	647,250	
	848310 (●)	11,349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6단위 기준)자동차 에어컨 압축기 부품, 차량 구동 모터 등에 사용되는 전동축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의 수출패턴(중→한)에서 증가세(848310)와 감소세(722830)를 모두 보이고 있어 우회 가능성 有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95~9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전동기와 발전기(출력이750W초과&75kW이하)의 기타

HTSUS	품목 설명	
8501 8501.32 8501.32.55 8501.32.55.40	4단위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6단위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자동차 부품	232조/301조	232조	301조
		9903.94.05	9903.88.01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47.9	46.4	
중량 (단위: number)	16.2	1.1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HTSUS	구분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850300	수출액 (●) (단위: USD1,000)	191,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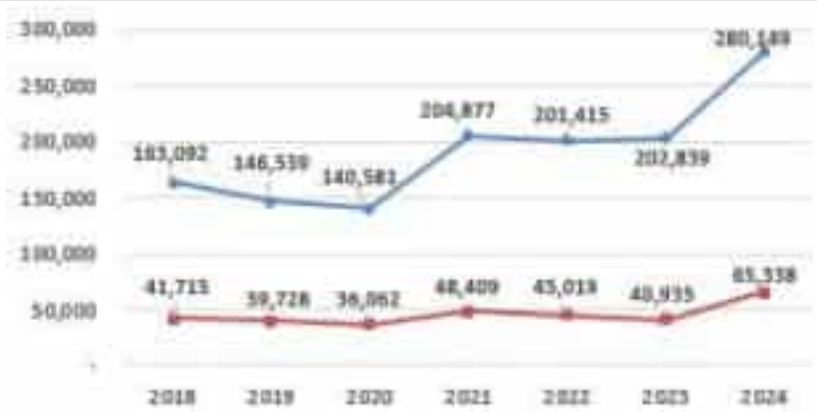
	수출량 (■) (단위:톤)	45,315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계기류, 시계, 타임스윗치, 재봉기, 장난감 등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이 확인되며,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한)은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우회 가능성 有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95~9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전동기와 발전기(출력이75kW초과& 엔진 동력이 373 kW 이하)

HTSUS	품목 설명	
8501 8501.53 8501.53.80 8501.53.80.40	4단위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6단위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자동차 부품	232조/301조	232조	
		9903.81.91	9903.88.01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49.7	132.0	
중량 (단위: number)	-78.8	90.4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732690 (■)	453,444	
	850300 (●)	191,356	
수출량 (단위:톤)	732690 (■)	168,064	
	850300 (●)	45,315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송풍기, 펌프, 압축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됨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고,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국→한국)도 2023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미국 수출 우회 가능성 有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95~9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공작기계 제어용 수치 제어식 보드/패널/콘솔등기반

HTSUS		품목 설명
8537 8537.10 8537.10.91 8537.10.91.30	4단위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6단위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자동차 부품	232조/301조	232조	
		9903.94.05	9903.88.03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39.5	263.1	
중량 (단위: number)	40.0	540.4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구분	HTSUS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수출액 (단위: USD 1,000)	853890 (■)	170,809	
	853810 (●)	10,463	
수출량 (단위:톤)	853890 (■)	11,767	
	853810 (●)	1,261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4단위 기준)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공작기계 제어용), 기기제어용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등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이 확인되나, -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한)에서 일부품목(853890)은 증가세지만 일부 품목(853810)은 감소세에 있음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95~9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스탬핑(Stamping)된 완충기의 부분품

HTSUS		품목 설명
8708 8708.10 8708.10.60 8708.10.60.10	4단위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6단위	완충기와 그 부분품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자동차 부품	232조/301조	232조	301조
		9903.94.05	9903.88.03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69.51	9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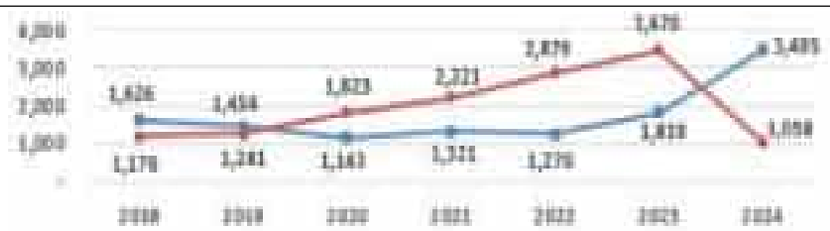
중량 (단위:number)	3.38	48.65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HTSUS	구분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830230	수출액 (●) (단위: USD 1,000)	1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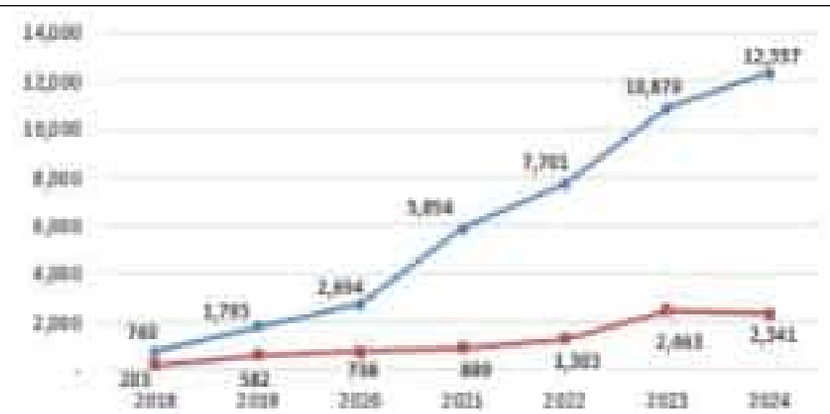
	수출량 (■) (단위:톤)	2,402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 : 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6자리 기준)자동차 비상제동장치(AEBS) 커버, 트럭 범퍼 등 스탬핑(stamping)된 완충기의 부분품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원자재 수출량(중→한)은 소폭 감소세임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0%	10%	85~8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하프샤프트(halfshaft)

HTSUS		품목 설명
8708 8708.50 8708.50.95 8708.50.95.00	4단위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6단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제품군	위반 요소	통계세번	
자동차 부품	232조/301조	232조	301조
		9903.94.05	9903.88.03

1. 교역 증감 동향

- 최종재(금액 및 중량)

구분	23년-'24년 미국의 수입 증감률(%)		교역 흐름 그래프(금액 기준)
	중국산 (●)	한국산 (■)	
금액 (단위: USD 1,000)	-57.9	122.3	
중량 (단위:톤)	-31.3	66.0	

- 원자재(중→한, 2018~2024년 평균)

HTSUS	구분	평균 수출규모	수출 흐름 그래프(수출액&수출량)
870850	수출액 (●) (단위: USD 1,000)	96,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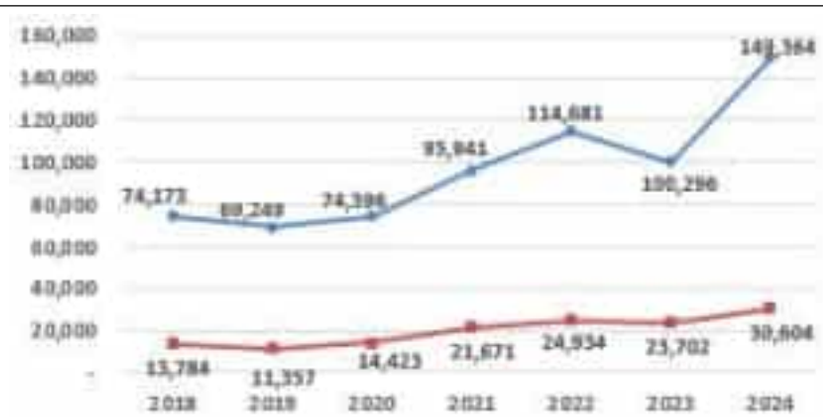
	수출량 (■) (단위:톤)	20,068	

2. 규제 현황 및 동향 분석

232조	- 미국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관세 부과 • 2018~2024년 : 25% • 2025년~현재:50%
301조	- 미국은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중국에 7.5~100%를 부과 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25% 부과중
분석	- 용도 : 자동차 구동축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 &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패턴이 확인되며, 원자재 수출량(중→한)도 증가세로, 우회 가능성有

3. 관세율

구분	MFN	232조	301조	상호관세	기타 관세 (펜타닐등)	최종 관세
중국→미국	0~2.5%	50%	25%	10%	10%	95~97.5%
한국→미국	0%(FTA)	50%	-	15%	0%	65%

제5장

결론

제1절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 검토 결과
제2절 우회(회피)조사 등 판정 결과 시사점

제5장 결론

제1절 고관세 부과 근거 법령 검토 결과

□ 현재 미국은 교역국에 대하여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직권 또는 정부부처의 조사를 등을 통해 동맹국 및 우방국을 포함한 대다수 교역국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256], 과거 사용되지 않던 법령들을 근거로 고관세 부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표 5-1] 트럼프 취임 이후 주요 관세정책 타임라인

발표	발효	트럼프 취임 2025-01-20	관련 법령	행정명령 및 포고문 번호
2025-02-01	2025-02-04	▪ 중국에 대한 1차 펜타닐 부과(추가 10%)	IEEPA, NEA	EO 14195
2025-02-01	2025-03-04	▪ 멕시코와 캐나다 상대 관세 부과(25%)	IEEPA, NEA	EO 14193
2025-03-06	2025-03-07	▪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인하(10%)	IEEPA, NEA	EO 14231 및 EO 14232
2025-02-10	2025-03-12	▪ 철강, 알루미늄제품 및 파생상품 관세 부과(25%)	232조	Proclamation 10895 및 10896
2025-02-10	2025-03-12	▪ 러시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제재(50% -> 200%)	232조	Proclamation 10895 및 10896
2025-03-11	2025-03-14	▪ 타국산 철강을 활용하여 타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에 대해 철강 함유량에 따른 관세부과(함유량에 따라 25%)	232조	Proclamation 10895 및 10896,

256) 미측 연방관보에 따르면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157건이며, 포고문은 65건으로 고관세 부과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행정명령 및 포고문을 통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2025년 06월 16일 기준)

2025-03-26	2025-04-03	▪ 자동차(승용차, 소형트럭) 관세 부과(25%)	232조	Proclamation 10908
2025-04-02	2025-04-05	▪ 상호관세 부과(명시한 국가 제외 기본 10%)	IEEPA, NEA	EO 14257
		▪ 주요국가: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베트남 46%	IEEPA, NEA	EO 14257 Annex 1
2025-04-08	2025-04-10	▪ 중국의 반격으로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34% → 84%로 50%p 인상	IEEPA, NEA	EO 14259
2025-04-08	2025-04-09	▪ 그 외 국가 상호관세 기본세율(10%) 적용 및 상호관세 유예	IEEPA, NEA	EO 14266
2025-04-09	2025-04-10	▪ 對중국 상호관세 인상(84% -> 125%)	IEEPA, NEA	EO 14266
2025-04-02	2025-04-05	▪ 상호관세 제외품목 수정(전자기기)	IEEPA, NEA	EO 14257
2025-04-02	2025-05-02	▪ 對중국 de mininis 폐지	IEEPA, NEA	EO 14256
2025-04-29	2025-05-03	▪ 자동차부품관세(25%) 부과	232조	Proclamation 10925
2025-05-12	2025-05-14	▪ 미중 관세 합의로 중국 상호관세율 인하(125%->34%) 및 유예[보편관세(10%)+펜타닐관세(20%) 유지], De mininis 폐지 유예	IEEPA, NEA	EO 14298
2025-05-20	2025-05-16	▪ 캐나다, 멕시코 관세와 232조 관세는 중복 적용하지 않음. 철강/알루미늄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철강과 알루미늄 함유량 만큼 각각 중복 부과 가능	IEEPA, NEA, 232조	EO 14289
2025-06-03	2025-06-04	▪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 멕시코/캐나다 포함) ▪ 영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신설(25%)	232조	Proclamation 10947
2025-06-16	2025-06-23	▪ 철강함유량 파생제품 세번 확대(HTS 8단위 기준 11개 세번)	232조	90 FR 25208

□ 고관세 근거 법령 검토 결과

○ 고관세 부과를 받고 있지 않은 품목(산업) 확대 가능성 상시 존재

- 미측 대외 제재 근거 법령들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 및 차별, 국가 안보 위협, 무

역수지 적자 및 환율 문제(국제지급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고관세를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제재 조치를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으나, 관련 조사 및 조치, 모니터링 현황 등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문, 조사 결과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2] 미국의 고관세부과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법령	발동 요건	주요 부처 (사전조사 여부)	조치	제재 기한	주요 사례
Section 232	국가 안보 위협 대응 조치	상무부→대통령 (상무부 조사)	관세 또는 수량 할당	제한 없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조치
Section 301	불공정 외국 무역 관행	USTC→대통령 (USTR 조사)	관세, 무역 양허 철회/정지, 구속력 있는 합의	4년 후 자동 종료 (검토 후 연장 가능)	중국산 수입물품 1차~4차 리스트 대상 관세 부과
Section 201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USTC→대통령 (ITC 조사)	관세 또는 수량 할당 (세이프가드)	일시적 구제 조치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 특정 산업에서 사용
Section 122	심각하고 대규모의 국제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대통령 (사전 조사 없음)	최대 15% 관세, 수량 할당	최초 150일 (의회 연장 가능)	사례 없음
Section 338	미국 상업에 불리한 차별 대응	대통령 (사전 조사 없음)	추가관세(최대 50%)	제한 없음	사례 없음
EEPA (국제비상 경제수권법)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 (국가 비상사태 선포 필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사전 조사 없음)	제재, 자산 동결, 수입 금지	선포된 관세 비상사태 기간에 따름	상호관세 (한국 15%, 중국 10% 등 국가별 상이)

- 현재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고관세 부과 등을 명령하고 있어, 일정 기간 미측의 고관세 부과 및 대상

품목 확장 등의 일방적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미측 대외 제재 근거 법령은 232조, 301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이며, 이들 법령은 관세부과, 수입제한(수량 제한 등), 양허 철회/정지 등의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122조,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은 사전조사 없이 대통령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우리 수출 물품의 고관세 부과 품목(산업) 증가 가능성 상시 존재함
  - 2025년 對세계 상호관세(한국 25%->15%/중국 34%->10%)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근거를 두고 있음
- 더불어 232조, 301조, 201조 등은 사전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관세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하나, 조사 부서(상무부, USTR, USITC)의 직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여 있어, 조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232조, 201조, 301조 등은 이해당사자의 청원 또는 조사 부서(상무부, USTR, USITC)의 직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 특럼프 행정부는 청원인에 의한 조사보다는 대통령 또는 조사 부서의 직권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령 조사 내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고관세 부과 예상 품목]

- 철강 및 알루미늄: 이미 25% 관세가 부과 중이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추가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관세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 핵심 부품도 별도 조사 및 관세 적용 대상
-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가안보 영향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큼
- 의약품 및 의약 원료: 국가안보 영향 조사 진행 중
- 목재 및 원목: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영향 조사 대상
- 구리: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착수
- 전자제품, 2차 전지 등도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주력 품목으로 타격이 예상됨

○ 미측 고관세 부과는 대외의존도 및 중국과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원산지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함

- 원산지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관세 부과 대상 여부 원산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미측 대외 고관세 부과 조치는, 타 국가 대비 중국에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원산지별 세율차가 존재함

- 이에, 중국산 중간재나 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고 이를 조립·가공하여 최종제품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미측의 원산지 부인 우려가 일정 기간 상시 존재 할 것으로 판단됨

[멕시코 원산지를 부인하고 대중 301조 제재 대상물품으로 판단한 사례]

[사례명]

○ CPU 열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CBP ruling 번호]

○ NY N337260(2024.01.26.

[사실관계]

요청자		Joaquin Barragan
제품	제품명	▪ 베이퍼 챔버가 없는 열 모듈(부품번호 CHP075GB1012) ▪ 베이퍼 챔버가 포함된 열 모듈(부품번호 CHPA29GB1012)
	구성	▪ 공통 : 알루미늄 핀, 구리 히트파이프, 알루미늄 베이스, 구리 플레이트, 고정용 부품 ▪ 베이퍼 챔버 포함 제품은 추가로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 포함
	용도	▪ 자동자료처리장치(ADP) 장비의 CPU에 장착되어 열 방출 및 냉각 기능 수행
	완재품	▪ 8473.30.5100
제조공정		1. 모든 부품을 중국산으로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 제조공정 - 납땜 페이스트 기계를 이용해 각 부품에 납땜재 도포(수작업으로 배치) - 고온 오븐에 투입하여 접합 - 열 성능 및 물리적 허용 오차 테스트 - 라벨, 써멀 그리스(thermal grease) 도포, 플라스틱 그리스 커버 부착 3.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외국산 신발 갑피(upper)에 미국에서 밑창(outsole)을 부착한 후 완제품 신발로 제조 된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
- 법원은 갑피가 신발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며(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 미국에서의 밑창 부착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시 된 실질적 변형 불인정, 원산지 외국산으로 유지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정 : CBP Ruling(HQ) W968434(2007)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535, 541(1987)

- 본 사안에서 CPU 열 모듈(Thermal Module)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중국산이며, 멕시코에서 수행된 열 전도성 자재의 수작업 배치, 조립, 오븐 가열을 통한 접합 공정은 복잡하지 않고, 열 방출 부품들을 열 방출 이외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조립 공정으로는 개별 부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열 모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

○ (판정결과) 멕시코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은 단순하며, 해당 공정으로는 새로운 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Thermal Module 제품은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임**

[판정결과]

○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CPU 열 모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자료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2025년 06월)

○ 우리 정부는 미측의 對중 고관세 회피 목적으로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옮겨 최종 제품을 생산하려는 시도나 중국산 제품을 우회수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

- 이러한 생산시설 이전이나 우회수출은 우리나라에 원신지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중국산 물품 우회수출국으로 지정될 수 있어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5-3] 중국산 물품 한국 경유 우회수출 적발 사례

구분	작발 사례
반덤핑 회피	① (반덤핑관세 회피)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허위 원산지 표시하고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 수출('24.1월) • 세관은 美 HSI와 공조하여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A회사를 이용하여 중국산 매트리스를 우리나라에 반입 후 한국산 제품처럼 위장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을 적발하였음 • A회사의 외관에는 다수의 국내 물류업체(22개) 명의로 하청하여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한국산 매트리스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포장한 서류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 •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등 일부 품목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며, 이로 인해 한국산으로 위장한 물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고관세 회피	② (고관세율 회피)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백만불 상당)를 국내에 수입하여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25.1월)

<table>
<tr><td></td><td>

- 세관은 국정원 정보('24.2월)를 토대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A사를 이용하여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 A사는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하여 국산과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함

</td></tr>
<tr><td>수입규제
회피</td><td>

③ (수입규제 회피) 미국이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19만불, 193억 원)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25.3월)

- 세관은 국정원 정보('24.9월)를 받아, 해당 취약 논란으로 인해 미국내 수입과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중국산 CCTV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A사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 A사는 중국산 CCTV 카메라를 부품상태로 수입하였으며 이를 국내에서 조립하면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함

</td></tr>
<tr><td>국산
프리미엄
차익</td><td>

④ (국산 프리미엄 차익) 국산 프리미엄을 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273톤, 200억원)를 수입하며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25.3월)

-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A사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 A사는 美 무역 감독과 한국 제품의 품질 인지도를 고려하여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기재

</td></tr>
</table>

전략물자 핵심기술 위장유출	⑤ (전략물자·핵심기술 위장수출)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여 미국·한국 등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고성능 반도체(3년간 61억원 상당)를 차명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 수출('24.12월) • 세관은 미국 및 한국 등에서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수출 통제를 받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 뒤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수출한 A사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 A사는 국내에 paper company 2개를 설립하여 수출통제 우회 창고로 이용하면서, 원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을 1/100으로 조작하여 수출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2025.04.21.)

○ 고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한 우회조사 권한 강화 및 명확화 가능성 존재

- 미측은 301조 고관세 부과 대상국이 제3국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제3국에 설립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우회수출에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인 ANTE Act[257]가 2025년 5월 23일 미하원에서 발의됨[258]

  · 동법 발의자[259]는 301조 조항인 19 U.S.C. §§2411-2419의 마지막에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함

  · 동 법은 최초 2024년 12월 미국 의회에 발의된바 있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countries)에 소유 · 지배 · 관할되거나 속하는 기업에 301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임[260]

257) ANTE Act(Axing Nonmarket Tariff Evasion Act)
258) H.R.3575 – 119th Congress(CRS)
259) 주 발의자: Mr. Arrington(텍사스주 하원의원) / 공동 발의자 : Mr. Moore of Utah, Ms. Van Duyne, Mr. Steube
260) https://arringto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2774

- 즉 ANTE는 USTR이 중국 기반 또는 중국이 지원하는 기업이 301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3국에 제조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제재당국의 기업이 제3국에 제조시설을 설립했다고 판단하면, USTR은 그 중국계 기업의 제3국내 예정되거나 기존의 사업장에 대해 301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예를 들어, 베이징이 소유한 제조업체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음료용품을 생산한다면, 해당 멕시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에도 ANTE에 따라 301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제2절 우회(회피)조사 등 판정 결과 시사점

1. 미 상무부 우회(circumvention) 및 CBP 회피(evasion)조사 비교

□ **미국 상무부와 CBP는 모두 미국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제도를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양 기관이 각각 수행하는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와 회피조사(evasion investigation)는 법적 근거, 주관 기관, 조사 초점, 절차, 적용 범위, 효력 등 여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이점이 존재함**

○ (법령) 상무부의 우회조사는 19 U.S.C. §1677j 및 19 C.F.R. Part 351을 근거로 하며, 2021년 신설된 §351.226 조항에 따라 절차가 정비되어 있음. 반면, CBP의 회피조사는 2015년 무역촉진 및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이하 “TFTEA”)에 의해 제정된 EAPA(19 U.S.C. §1517)와 이에 따른 19 C.F.R. Part 165 규정에 따라 수행됨

○ (조사기관) 상무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산하 집행·준수국이 우회조사를 담당하며, CBP는 무역구제법집행국(The Trade Remedy Law Enforcement Directorate, TRLED)을 통해 회피조사를 전담함. 상무부는 AD/CVD 명령의 적용 범위 자체를 회피하려는 구조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CBP는 수입 신고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또는 누락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를 집중 조사함

○ (유형) 상무부는 미국 내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경미한 변경, 추후 개발물품 등 구조적 변경을 통한 우회 행위를 주로 다룸. CBP는 허위 원산지 표기, 위

조 송장 제출, 저가 신고, 중요 정보 누락 등 직접적인 수입신고 단계의 회피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삼음

- ㅇ (조사 절차) 상무부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질의서 발송, 서면 답변, 현지 실사, 예비·최종 판정을 거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결과를 공표함. CBP는 EAPA 포털을 신고자로부터 혐의 접수를 받고, 서면 정보요구(RFI), 전자기록 검토 등을 통해 조사하며, 90일 내 잠정조치, 300일 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함. 상무부는 우회조사 개시 이후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이 보장되며, CBP의 절차는 간이화된 독립 행정 프로세스로 신속성과 기한 준수가 강조됨
- ㅇ (판정기준) 상무부는 해당 행위나 제품이 기존 AD/CVD 명령의 실질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며, 자료에 기초한 상당한 증거 기준을 적용함. CBP는 제출된 정보의 중요성과 허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동일하게 상당한 증거를 요구함
- ㅇ (결과) 조사 결과의 효력 또한 차이가 있음. 상무부의 우회 판정은 일반적으로 포괄적 효력을 가지며, 제3자 및 향후 동일 물품 수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실제로 상무부는 판정 내용에 따라 특정 물품 또는 생산·조립 방식을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이외 인증서 제출 요구나 특수 보고 의무 등 부가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반면, CBP의 회피 판정은 개별 수입자에 한정된 판정으로서, 제3자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음. 다만, 유사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회피 조사가 제기될 경우, 선례로 활용되어 관세 징수, 잠정조치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ㅇ 기관 간 관계 측면에서, CBP는 상무부의 범위판정 또는 우회 판정에 구속되며, 스스로 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없음. 반면 상무부의 판정은 CBP를 포함한 연방 기관 전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짐. 또한 CBP는 EAPA 포털 운영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과 조사 기한의 엄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ㅇ 이처럼 동일한 무역 구제 목적을 공유하지만, 우회조사는 제도의 실효성 보장에, 회피조사는 집행력 확보에 중점을 둠에 따라, 제도 설계와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

[표 5-4] 상무부·CBP 우회·회피 비교표

구분	상무부(DOC) 우회 조사	CBP(EAPA) 회피 조사
조사 근거	19 U.S.C. § 1677j 19 C.F.R. Part 351	19 U.S.C. § 1517, 19 C.F.R. Part 165
집행 기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집행·준수국(Enforcement and Compliance, E&C)	CBP(무역구제법집행국, TRLED)
주요 초점	AD/CVD 명령의 적용 범위 자체(scope) 우회	허위 정보 또는 누락을 통한 직접적 관세 회피
주요 유형	미국 내 조립·완성, 제3국 조립·완성, 사소한(경미한) 변경, 추후개발물품	환적, 허위 원산지 표기, 저가 신고, 송장 위조, 데이터 누락 등
심사(조사) 절차	직권/청원에 따른 개시, 질의서 발송, 현지 실사, 예비/최종판정, 연방관보 공표	신고 접수(EAPA 포털), 서면 질의, 자료 검토, 90일 내 잠정조치, 300일 내 최종판정
결과·효과	명령의 적용범위 확장, 인증 요구 등 부가조치 포함	특정 수입건 회피 여부 판단, 추징 및 제재 가능
비고	범위 판정에 대한 해석, CBP는 상무부 결정 따라 집행	EAPA 포털 운영, 회피 여부는 CBP 독자 판단, 범위 해석은 상무부 권한

2. 미 상무부 우회(circumvention) 및 CBP 회피(evasion)조사 판정 결과 시사점

□ **앞서 검토한 미국 상무부 우회조사·범위판정 및 CBP 회피조사 사례들을 종합하면, AD/CVD 집행 체계는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자적 분석 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을 도출할 수 있음**

- ㅇ AD/CVD 집행 시, 미국 상무부(DOC)와 CBP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독자적 분석 기준을 적용함. 상무부 우회조사는 중국산 의존도, 제3국 가공의 경미성, 무역 패턴 변화를 중심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변형 기준을 판단할 때 CBP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
- ㅇ CBP 회피조사는 신고 원산지 진위 여부와 제3국의 실질적 생산 능력을 검증하며, 증빙 자료 부족 시 불리한 추론을 통해 중국산으로 판정함
- ㅇ 상무부 범위판정은 특정 제품이 AD/CVD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

하며, 이때 범위의 서면설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등 보조 기준을 활용하고, CBP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음

- ㅇ 결론적으로,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제3국 가공 제품은 우회 또는 회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며, 각 기관의 판단 기준과 증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2.1. 상무부 우회조사

□ **미국 상무부(DOC) 우회조사 유형은 ① 제3국 조립·완성, ② 사소한 변경, ③ 추후 개발, ④ 미국 내 조립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에서는 공통적으로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 제3국 가공의 경미성, 무역패턴 변화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함**

- ㅇ 제3국 조립·완성 유형에서는 중국산 열간압연강재, 철선, 알루미늄 압출재 등 주요 생산 단계가 이미 중국에서 완결된 중간재 형태로 제3국에 이전되고, 제3국에서는 단순 성형·용접·조립·포장 등 후단 공정만 수행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상무부는 비교방법론을 적용해 이러한 공정이 단순하고, 범위·규모가 제한되며, 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형성하는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ㅇ 또한 청원인들은 완제품 가치 중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60%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제3국 공정의 기여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함. 실제로 상무부는 이 주장과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품의 기본적 특성과 가치는 중국 생산단계에서 이미 형성되며, 제3국 공정의 부가가치는 미미하다”고 판단함
- ㅇ 반면 제3국 생산·수출 업체들은 ①최종 제품과 원재료 산업의 경우 산업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②제3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공정을 수행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며, ③상당한 생산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함. 그러나 상무부는 제3국 공정이 중국의 원재료 생산 단계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 복잡성, 자본 및 설비, R&D 투입, 공정 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함
- ㅇ 아울러 상무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실질적 변형이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CBP와의 관계를 엄격히 구분하며, CBP의 기준은 품목분류· 표시 목적

의 원산지 판단을 위한 개념이며, 우회조사는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회피 여부 판단을 위한 별도의 제도이므로 목적과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함

- ㅇ 덧붙여 상무부는 실제 조사에서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 판단이 “어떤 면에서는 CBP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more rigorous)”고 강조함. CBP가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상무부는 공급망 구조, 투자·설비 수준, 공정의 성질, R&D, 부가가치 비중, 생산설비 규모 등 다수의 정량·정성 요소를 총체적으로 검토함. CBP의 판단은 상무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상무부의 판단 역시 CBP를 구속하지 않음
- ㅇ 전반적으로 상무부 우회조사는 공정 복잡성, 가치기여도, 투자 규모, R&D 수준, 시장 대체성 등 법정 요소를 정성·정량적으로 검토하나, 실제 사례에서는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제3국 공정의 부가가치가 낮은 경우 일관되게 우회로 판정되는 경향이 확인됨. 한편 한국 알루미늄 포일과 연선·케이블(AWC) 사례에서는 제3국 내 공정 일부가 인정되었으나, 높은 중국산 투입재 비중으로 우회 판정됨
- ㅇ 즉 상무부 우회조사 사례들은 중국산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제3국 가공 구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우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일관된 결론을 보여줌. CBP의 실질적 변형 기준을 넘어서는 엄격한 상무부 분석틀이 작동한 결과이며, 두 기관의 목적·권한·법적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의미함
- ㅇ 이외 추후 개발(later-developed merchandise) 유형의 경우, 명령 당시 시장에 없었으나, 기존 명령 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에 해당함. 상무부는 이러한 제품이 명령 범위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변형일 수 있다고 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구매자 인식, 판매·유통 방식을 포함해 기존 제재 대상과 비교하여 종합 검토함

2.2. CBP 회피 조사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행한 총 7건의 회피조사(EAPA)는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제3국에서 실제로 실질적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됨**

ㅇ CBP는 조사 과정에서 수입업체·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송장, 회계자료, 조달 기록, 생산공정, 재고 흐름(BOM·입출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3국 업체가 독립적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실질적 생산능력(capacity)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

-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제3국 제조업체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설비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원산지 변경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 다만 제3국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3국에서 일정 수준의 가공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산이 아니라 제3국산이라고 신고했으나, CBP는 생산설비 부재, R&D 활동 없음, 노동투입량 부족, 제조기록 미제출, 재고 흐름의 불일치 등 증빙상의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중국-제3국 간 또는 중국-제3국-미국 수입업체 사이에서 소유 구조·경영진·연계 관계 등 특수관계가 확인되었고, CBP는 이를 "원산지 위장을 위한 조직적 회피"로 판단함
- 제3국에서 수행된 공정 역시 절단·포장·단순 조립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생산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ㅇ CBP는 이러한 자료 부족 또는 불일치 상황에서 불리한 추론(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하였으며, 그 결과 7건 모두에서 중국산 AD/CVD 명령 회피가 최종적으로 인정됨

ㅇ 또한 검토 과정에서 중국산 직접 수출이 감소한 시점과 제3국 경유 수출이 급증한 시점이 일치하는 무역 패턴의 변화, 제3국의 중국산 중간재 수입량 증가, 완제품의 가격·조달 구조 변화 등도 회피 정황으로 확인됨.

ㅇ CBP는 이러한 정황 요소를 종합하여 제3국 신고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며, AD/CVD 납부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된 것으로 판단함

ㅇ 아울러 미국 상무부가 공정의 성격·기술·가치 기여도를 비교하여 AD/CVD 명령 회피 여부를 평가한다면, CBP는 신고된 원산지가 사실인지, 제3국이 실질적으로 제조를 수행했는지, 제출된 증빙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

3. 상무부 범위 판정 시사점

□ **미국 상무부의 범위판정(scope ruling) 제도는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AD/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절차임**

○ 모든 AD/CVD 명령에는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scope)가 정의되어 있으나,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가공·혼합이 이루어지므로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상무부는 19 CFR § 351.225에 따라 신청 후 30일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범위판정은 명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명령 범위를 확장하는 절차가 아님

○ 범위판정 신청서는 일반정보, 제품정보, 원산지 정보, 미국 내 수입현황,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 등 5개 절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도면·사양서·세관서류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영어 외 문서는 번역이 필수이며, 미비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문서 제출은 ACCESS를 통한 전자제출이 원칙임

○ 판정 기준은 19 CFR 351.225(k)에 따름. 상무부는 우선 19 CFR 351.225(k)(1)에 따라 범위 문구만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청원서, 초기 조사 기록, 과거 판정, ITC 보고서 등을 참고함

- 범위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19 CFR 351.225(k)(2)의 보조 기준(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무역 경로 등)을 활용하며, 이 중 물리적 특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제3국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19 CFR 351.225(j)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별도로 수행함. 상무부는 CBP의 관세분류나 원산지 표시 판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등급 변화,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부가가치 비율, 가공 정교함, 투자 수준, 필수 구성요소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질적 변형 여부를 결정함

○ GPI 잔탄검 사례는 이러한 판단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줌. GPI는 중국산 잔탄검을 캐나다에서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이므로 기존 명령 대상과 구별된다고 주장했으나, 상무부는 명령 범위가 혼합·피복 여부나 물리적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GPI 제품도 동일한 화학적 구조

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 아밀레이스 비활성화는 경미한 가공에 불과하며, HTSUS 분류가 다르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동시에 원산지 판정에서도 GPI 제품은 최종 용도와 필수 구성요소가 중국산 원료와 동일하고, 중국산 원료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캐나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산으로 판정됨. GPI는 잔탄검 함량이 15% 미만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함
-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범위 문구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범위 문구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 제3국에서 일정 수준의 가공·투자가 이루어져 외관이나 점도가 달라지더라도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면 범위 배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 HTSUS 분류 변경만으로는 명령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 상무부는 CBP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함

  · 중국산 원재료·중간재 비중이 높은 경우 범위 적용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공급망 점검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범위판정은 AD/CVD 체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며, 미국 조사(우회·회피) 대응 시 범위 문구 중심의 사전 검토와 화학적·기술적 증빙 준비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부록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Scope Ruling Application Guide)

본 가이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범위판정(scope ruling)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반덤핑(AD, Antidumping Duty) 및 상계(CVD, Countervailing Duty) 관세 명령에는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scope)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관세 적용 대상이 결정된다. 이 범위에 포함된 제품은 '범위 내 제품(in-scope)'으로 간주되어 해당 명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제품 설명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세 번(HTSUS) 분류 기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에 해당 제품이 명령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범위판정(scope ruling)'이라 한다.

미국 상무부는 19 CFR §351.225에 따라 범위판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Scope Ruling Application Guide)와 표준 신청서(Scope Ruling Application)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게재하였다.

이에 본 가이드는 상무부의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와 신청서를 충실히 번역하고, 실제 기업의 신청서 사례 및 상무부의 판정문을 함께 분석·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범위판정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미국의 통상 규제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 colspan="2">정의</td><td>ㅇ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AD) · 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임
- 범위판정은 (1)이해당사자(기업 등) 직접 신청 또는 (2) 상무부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 §351.226) 진행 중에도 병행/통합 검토 가능(§351.225(d)(2), (i)(1))</td></tr>
<tr><td colspan="2">법정 근거</td><td>ㅇ 법적 근거: 19 CFR 351.225
- (관련문서)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 및 표준 신청서 공식 게재(홈페이지)</td></tr>
<tr><td colspan="2">신청 방법</td><td>ㅇ (신청)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
※ ACCESS 시스템(※ https://access.trade.gov)
※ (예외) 500페이지 초과·50MB 초과 파일, ACCESS 장애 등 일부의 경우 직접 제출 가능
- 서류 불완전 및 번역 누락 시 신청서 반려(서류 보완 후 재제출 가능)
ㅇ 언어 : 영어(번역문에는 원본 사본 반드시 첨부)</td></tr>
<tr><td colspan="2">신청 절차</td><td>ㅇ 서류가 접수되면 상무부는 30일 내 검토 및 수리 → 사실관계 검토 → 120일 내 판정 발표
- 단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 총 300일 이내에 최종판정[261]
ㅇ (공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범위 내/외' 결정 공표</td></tr>
<tr><td colspan="2">범위 판정 신청서 구성</td><td>ㅇ 5개 절 구성(제II~IV절 해당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요구됨)
- 제I절 : 일반 정보(신청 개요, 첨부 문서 목록, 신청 목적 및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 제II절 : 제품 정보(공개 목적용 제품 정보 및 비공개 상세정보(생산이력, 생산량, 제조공정도 등), 마지막으로 해당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근거)
- 제III절 : 원산지 정보(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IV절 : 제품 수입(미국 관세영역 반입 여부 등)
- 제V절 :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신청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 및 관련 사실 기재)</td></tr>
<tr><td rowspan="2">범위 판단 기준</td><td>최우선 고려 사항</td><td>ㅇ (범위판정) 원칙적으로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서면 설명이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1차 및 2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음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1차 자료</td><td>•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td></tr>
<tr><td>2차 자료</td><td>•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td></tr>
</table></td></tr>
</table>

	추가고려요건	ㅇ **서면 설명만으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이 명령의 "범위 내(in-scope)"인지 여부를 결정함:** -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제품의 최종 용도 - 최종 사용자의 기대 - 거래 경로 - 제품이 광고 및 전시되는 방식 ※ 이 중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원산지	ㅇ **(원산지) 상무부 AD · CVD 범위를 판단할 때 필요 시 19 CFR 351.225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이때 CBP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별개로 요건 및 독립적인 권한을 가짐** - 범위판정 시 원산지 판단 기준 · 최종 완제품이 원재료 제품과 다른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인지 여부 ·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최종 완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인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 제3국에서의 가공 성격 및 복잡성 수준 · 제3국에서의 투자 수준 ·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원산지 판단 시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장소를 고려할 수 있음
주요 참고 사이트		ㅇ **(과거 명령)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 및 범위 판정 기준에 관한 과거 사례·설명 자료** · https://legacy.trade.gov/enforcement/operations/scope/index.asp ㅇ **('11년 8월 ~ 現)** 11년 8월 5일 이후 내려진 범위 결정은 상무부 전자기록 시스템인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송달시스템(ACCESS)을 통해 제공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entralized Electronic Service System, ACCESS ㅇ 행정보호명령(APO) 관련 정보 · https://access.trade.gov/Resources/Administrative_Protective_Order.aspx

261) §351.225(e)(2)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

(Scope Ruling Application Guide)

범위판정

용어 해설

본 용어 해설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기술 용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설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다. 난해하거나 세부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거나 상무부에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행정보호명령(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행정보호명령(APO)은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영업비밀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상무부는 대리인이 다음 네 가지 조건, 즉 (a) 정보를 해당 절차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b) 정보를 보호하고 행정보호명령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c) 보호명령 조건 위반 시 이를 신고한다, (d) 보호명령 조건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행정보호명령에 따른 비밀정보 공개를 승인한다. (관세법(개정법률) 제777조제c항).

반덤핑·상계관세 법률과 규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Regulations)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법률은 관세법(개정법률) 제VII편(미국법전 제19편 제1673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를 관할하는 상무부 규정은 19 CFR Part 351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보호명령 및 비밀정보 취급을 관할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1998년 5월 4일 연방관보(63 FR 24391)에 게재된 19 CFR Part 351과 Part 354 참조. 반덤핑·상계관세 절차에서의 우회 문제 관련 규정 및 반덤핑·상계관세 절차에서의 영업비밀정보 접근을 위한 송달명부, 대리인 등록, 수입자 제출 요건 관련 규정에 대한 상무부의 2021년도 개정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20일 연방관보(86 FR 52300)에 게재된 19 CFR 351.103, 19 CFR 351.226, 19 CFR 351.305 참조.

영업비밀정보(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영업비밀정보(BPI)는 공개 시 제출 당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업정보를 말한다. 요청이 제기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에서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취급하는 정보에는 생산 공정, 생산·유통 비용, 판매 조건, 개별 가격, 고객·공급자 이름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된다.

동반 명령(Companion Order)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명령이 동일 원산지의 동일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서로 짝을 이루는 동반 명령이 된다.

수출자(Exporter)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제품의 해외 발송 또는 운반을 담당한다. 대부분 제품 수출자는 제품을 소유하고 제품을 수입자에게 운송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재판매자가 아닌 중개당사자가 수출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취지에서 어느 당사자가 "수출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중개당사자가 제품의 판매·운송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일차적인 중점을 둘 것이다.

외국 유사 제품(Foreign Like Product)

외국 유사 제품이란 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대상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의미한다. 관세법 제771조제16호 참조.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y)

"이해당사자"는 관세법 제771조제9호에서 정의되며, "대상 제품의" "외국 제조자", "생산자", "수출자", "미국 수입자"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범위판정의 본질은 한 당사자에 의해 생산·수입·수출되는 제품이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한 당사자가 "이해당사자"인지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당 제품이 대상 제품인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범위 규정의 취지에서 "이해당사자"에는 범위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 실제로 범위 내에 있는 한에서 관세법 제771조제9호에 따른 "이해당사자" 정의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포함된다.

비밀 취급(Proprietary Treatment)

영업비밀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영업비밀 취급을 요청하고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는 데 상무부가 동의하는 경우 상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보가 비밀이라는 데 상무부가 동의하지 않고 제출 당사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정보를 반환하고 절차 중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요청이 있을 경우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관세국경보호청 공무원,

또 제한적 정보보호명령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에게만 영업비밀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관세법 제777조제b항 참조. 위의 "**행정보호명령**" 항목도 참조.

대상 제품(Subject Merchandise)

"대상 제품"이란 조사, 검토, 관세부과 유예협정, 명령의 범위 내에 있는 제품 종류를 말한다. 관세법 제771조제25호 참조.

검증(Verification)

상무부는 절차 중에 제출된 정보의 적절성과 정확성 규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제출물을 작성하고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를 잘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을 면담한다. 이러한 과정을 검증이라 한다. 상무부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활용되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관세법 제782조제i항, 19 CFR 351.307 참조.

2024년 5월 29일

표 지

{사례번호(A/C-XXX-XXX) 기입}
전체 쪽수: {전체 쪽수 기입}
집행준수국
범위조사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운영부, 사무소 {사무소 번호 기입}
{영업비밀, 공개본, 공개 문서 표기}

범위판정 신청서

신청자: {신청자명 기입}

대리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기입}

사례: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 명칭, 국가명, 사례번호(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동반 상계관세 사례번호 포함) 기입}

범위판정 요청 대상 제품: {신청자가 범위판정을 요청하는 제품명 기입}

제출일: {신청서 제출일 기입}

제I절 : 일반 정보

이 신청서는 {제품명 기입}에 대한 범위판정을 요청한다. 상무부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 및 19 CFR 351.225(c)에 따라 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모든 전자 파일은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업로드 되었다. 가급적 증거물은 여러 전자 파일로 분할하지 않았다. 웹사이트를 참조할 때는 해당 웹사이트의 스크린샷(screenshots)을 증거물로 제공하였다.

19 CFR 351.225(f)에 따라 19 CFR 351.301(c)의 제출 및 기간 제한은 이 범위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19 CFR 351.225(m)(2)에 따라 동일 원산지의 동일 상품에 적용되는 동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명령이 있을 경우 요청 이해당사자는 19 CFR 351.225(c)에 따라 두 명령에 해당하는 범위판정 신청서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절차 기록 시스템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 범위조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반 상계관세 명령이 있을 때는 신청서 표지의 "사례(CASE)" 정보에 동반 상계관세 명령 사례번호를 적시해야 한다.

본 신청서는 타이핑 방식으로 작성된 영문 문서로 제출되었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비영어 문서의 모든 해당 부분에 대해 원본과 번역본이 이 신청서에 첨부되었다. 모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서 이해에 필요한 근거문서 사본을 수록하였다.

다음의 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첨부물/증거물을 정리한 것이다.

첨부물/증거물 표 삽입

첨부물/증거물 1	첨부물/증거물 이름
첨부물/증거물 2	첨부물/증거물 이름
첨부물/증거물 n	첨부물/증거물 이름

비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무부가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 **1a에서 1d까지의 문항에 대한 공개용 답변을 비롯해 각 문항에 완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요청된 형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예. 참조 웹사이트의 스크린숏을 증거물로 제공하지 않음).
- **특정 질문에 완전히 답변하지 않거나 범위 신청 관련 특정 정보가 누락된 한에서 정보 취득을 위해 취한 조치를 비롯해 당사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해당 정보를 신청서에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제II절 : 제품 정보[262]

당사는 합리적으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요청 정보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고자 한다. 당사는 각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했으며,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때는 부록 A를 통해 정보 취득을 위해 취한 조치를 비롯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1a에서 1d까지의 문항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범위 신청을 공표하는 상무부의 월간 연방관보 고시에 게재하기 위한 것이다.[263] 따라서 제품에 관한 기술에는 일반 대중이 해당 제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공개용 개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을 소개하는 공개용 서술 및 아래 열거된 제품 관련 정보.

ㅇ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에 관한 기술. 19 CFR 351.225(c)(2)(i)(A) 참조.
- 물리적 특성에 관한 공개용 서술 기입. 1a에서 1d까지의 문항에 대한 답변 예시가 아래에 참고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ㅇ 제품 생산국, 제품 수출국, (수입된 경우) 신고 원산지. 19 CFR 351.225(c)(2)(i)(B) 참조 및 해당 국가명 적시

ㅇ 이미 수입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알려진 경우 미국통합관세율표(HTSUS)에 따른 제품의 관세 품목분류. 19 CFR 351.225(c)(2)(i)(C) 참조.
- 이미 수입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알려진 경우 HTSUS 품목분류번호 기입.

ㅇ 제품 용도. 19 CFR 351.225(c)(2)(i)(D) 참조 : 제품 용도에 관한 공개용 서술 기입.

ㅇ 제품을 소개하는 공개용 간단 개요(물리적 특성, 생산·수출국, 관세 품목분류, 용도에 대한 간략한 언급 포함). 19 CFR 351.225(c)(2)(ii) 참조.
- 다음은 수용 가능한 공개용 간단 개요로 간주된 과거의 답변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ㅇ 승용차 휠 기술 예:

- "림 크기 16x6~16x7인치, 볼트 패턴 8x6.5인치 및 8x170mm, 센터홀(즉, 허브 보어 크기) 4.57~4.93인치, 적재용량 2500~3750, 승용차 휠 용도, HTSUS 품목분류번호 8708.70.45.60.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수출될 예정이며, 신고 원산지는 중국이다."

ㅇ 목재 제품 기술 예:

- "복합 잼(jamb)은 주로 복합재로 만들어지며, 실내 문틀의 일부로 사용된다. 복합 잼의 코어는 10mm 두께의 OSB로 만들어지며, 전·후면은 소나무 합판으로 집성되어 있다. 마중대는 9mm 두께의 MDF로 제작되었다. 플랫 잼의 수치는 두께 약 16.67mm, 폭 115.89mm, 길이 2039.938mm이며, 대형 스테이플드 잼의 크기는 두께 약 16.67mm, 폭 115.89mm, 길이 2039.938mm이다. 복합 잼의 한쪽 면에는 홈이 있으며, 다른 쪽 면은 평평하고 매끄러운 표면으로 되어 있다. 복합 잼은 핑거 조인트로 집성되거나 접착제로 이어붙이지 않았다.

ㅇ 복합 잼과 마중대

- 중국에서 생산되며, 원산지는 중국이다. 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될 예정이다. 복합 잼의 HTSUS 품목분류번호는 HTSUS 소호 4418.99.9590이다."

2. 범위 신청 관련 추가 정보(**영업비밀정보** 포함). 19 CFR 351.225(c) 참조.

ㅇ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 및 용도와 관련해 위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제품 관련 비밀정보와 기타 세부 데이터 포함). 19 CFR 351.225(c)(2)(i)(A) 및 (D) 참조.
- 제품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과 정보 기입.

ㅇ 관세 품목분류와 관련된 세관 판정문 사본을 이 신청서의 증거물로 첨부한다. 19 CFR 351.225(c)(2)(i)(C) 참조.
- 첨부된 세관 판정문에 대한 증거물 번호 적시.

ㅇ 분명하고 식별 가능한 사진, 도안, 사양, 표준, 마케팅 자료, 제품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기타 견본을 이에 관한 설명과 함께 첨부물로 제공한다. 19 CFR 351.225(c)(2)(i)(E) 참조. 특정 문서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아래의 부록 A에 해당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해당 문서 취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시한다.

ㅇ 첨부물에 관한 서술 기입 및 해당 첨부물에 대한 증거물 번호 적시.

ㅇ 제품 생산에 사용된 부품, 재료, 생산 공정에 관한 기술. 19 CFR 351.225(c)(2)(i)(F) 참조.
- 부품, 재료, 생산 공정에 관한 서술 기입.

3. 제품 생산자, 수출자, 제3국 수출자,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19 CFR 351.225(c)(2)(iii) 참조.

ㅇ 생산자, 수출자, 제3국 수출자,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기입.

4. (해당 제품이 첫 번째 모델이 아닌 경우) 제품 구형 모델의 내력을 비롯한 제품 생산 이력. 19 CFR 351.225(c)(2)(iv) 참조.

○ 제품 생산 이력 기입.

5. 가장 최근 완료된 회계연도의 연간 제품 생산량. 19 CFR 351.225(c)(2)(v) 참조.
○ 연간 생산량 기입 및 측정 단위 명시.

6. 제품 광고, 전시, 판매용 포장 방법에 관한 기술.
○ 신청서에 첨부된 관련 증거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증거물의 참조번호 기입.

7. 19 CFR 351.225(c)(2)(viii)에 따른 것으로 제품의 명령 범위 포함 여부에 관한 진술.
○ 19 CFR 351.225(j) 및 19 CFR 351.225(k)에 준거할 때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령의 범위에 **포함된다/포함되지 않는다**.
- 제품의 명령 적용 여부에 대한 신청자의 판단과 관련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19 CFR 351.225(j) 및 19 CFR 351.225(k)에 대한 구체적 참조를 포함하는 진술 기입. 19 CFR 351.225(j)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된다.
- 원산지 결정 시 상무부는 사례별로 발생하는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는 이 범위판정 신청서의 제III절에 열거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제품 원산지에 대한 입장과 함께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9 CFR 351.225(k)(1)(i)는 범위 규정 및 제품의 명령 적용 여부 해석 시 상무부가 고려할 수 있는 1차 해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해당 명령 관련 진정에 포함된 제품 기술.
- 해당 명령 관련 초기 조사에 포함된 제품 기술.
- 장관의 과거 또는 최근 결정. 이러한 결정은 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이 있는 여타 명령과 관련된 선행 범위판정이나 각서, 또는 해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초기 조사에 따라 발행된 보고서를 비롯해 해당 명령과 관련된 위원회 결정.

○ 19 CFR 351.225(k)(1)(ii)에는 위에 적시되지 않은 장관 또는 위원회의 기타 결정, 세관 판정 또는 결정, 업계 관행, 사전, 기타 관련 기록 증거 등 상무부가 고려할 수 있는 2차 해석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의 명령 범위 포함 여부 결정 시 이러한 2차 해석 자료와 제(k)(1)(i)항에 따른 1차 해석 자료가 상충할 때는 일반적으로 1차 해석 자료가 우선한다.

○ 19 CFR 351.225(k)(1)에 따른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 상무부는 19 CFR 351.225(k)(2)(i)에 따라 다음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것이다.
-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
- 최종사용자의 기대.
- 제품의 최종 용도.
- 제품이 판매되는 거래 경로.
- 제품 광고 및 전시 방식.

○ 신청자의 제품이 둘 이상의 구성품을 포함하거나 이로 이루어지고 범위조사 대상 제품이 전체 제품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품일 때 상무부는 추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7a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다루어야 하는 추가 요소에 대해서는 19 CFR 351.225(k)(3) 참조.

○ 다음의 법적기관은 상기 진술을 뒷받침한다.
- 해당 법률기관에 대한 인용문 기입.

8. 상무부와 위원회의 관련 선행 결정(범위판정 포함), 세관 판정 또는 결정, 업계 관행, 사전, 기타 관련 기록 증거의 전체 사본을 비롯한 사실관계 정보를 각 문서가 상기 입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설명과 함께 첨부물(첨부물에 관한 기술 포함)로 제공한다. 19 CFR 351.225(c)(2)(ix) 참조.
○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 기입.

제III절: 원산지 정보

비고: 원산지가 세관 통관 시 신고한 국가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다음 문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 통관 시 신고한 원산지가 올바르다고 생각된다면 이 절을 건너뛰고 제IV절로 넘어간다.**

19 CFR 351.225(j)에 따라 이 범위판정 신청서는 합리적으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제품 원산지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1. 가공 제품(downstream product)이 원재료 제품(upstream product)과 다른 종류의 상품인지 여부.
   - ㅇ 범위판정 요청 대상 제품이 원재료 제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인지에 관한 서술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
   - ㅇ 범위판정 요청 대상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 제품 원산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서술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가공 제품의 최종 용도
   - ㅇ 범위판정 요청 대상 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가 제품 원산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서술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제3국 추가 가공에 따른 생산비용/부가가치.
   - ㅇ 범위판정 요청 대상 제품의 제3국 추가 가공에 따른 생산비용/부가가치가 제품 원산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서술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 제3국 가공의 특징
   - ㅇ 범위판정 요청 대상 제품의 제3국 가공의 성격과 고도화가 제품 원산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서술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6. 제3국 투자 수준.
   - ㅇ 범위판정 요청 대상 제품의 제3국 투자 수준이 제품 원산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서술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7. 19 CFR 351.225(j)(2)에 따른 것으로 제품의 필수 구성품 생산지 또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제품의 필수 특성이 부여되는 국가에 관한 기술 및 증빙서류 첨부.
   - ㅇ 구성품 또는 특성이 제품에 “필수적”인 이유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서술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8. 제품이 수입 후 미국에서, 또는 수입 전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는지에 관한 설명.
   - ㅇ 추가 가공 관련 설명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9. 추가 가공과 명령 범위의 관련성에 관한 설명.
   - ㅇ 추가 가공과 명령 범위의 관련성에 관한 설명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0. 제품이 다른 구성품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독자적 제품인지에 관한 설명.

○ 제품이 독립형 제품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의 구성품인지에 관한 설명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1.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품이 다른 구성품 또는 제품을 이루는 구성품이거나 그것의 부품인 한에서 다른 구성품, 해당 구성품의 원산지(알려진 경우), 완제품, 완제품이 완성된 국가에 관한 상세 적시 및 기술.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요청에 따라 설명 기입. 가용한 경우 관련 첨부물에 관한 서술 및 해당 첨부물의 참조번호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2. 제3국을 통한 제품의 미국 재판매에 대해 신청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
○ 제3국을 통한 제품의 미국 재판매 여부에 관한 진술 기입.

제IV절: 제품 수입

당사는 합리적으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제품 수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신고한다.

1. 이 제품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었다/수입되지 않았다**. 19 CFR 351.225(c)(2)(x) 참조.
○ 범위판정 대상 제품이 신청서 제출일 현재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었는지에 관한 진술 기입.

2. 제품이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 19 CFR 351.225(c)(2)(x)(B) 참조.
○ 제품이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된 국가에 관한 기술.
– 제품이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된 국가를 적시하는 진술 기입. 해당하는 국가를 모두 기재한다.
○ 하나 이상의 제품 항목이 수입자에 의해 **신고되었는지/신고되지 않았는지**, 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명령 대상으로 **결정되었는지/결정되지 않았는지** 명시한다. 19 CFR 351.225(c)(2)(vi)(A) 참조.
– 범위판정 대상 제품이 수입자에 의해 신고되었는지, 또는 관세국경보호청에 의해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 대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관한 진술 기입.
○ 수입 시 제품을 적시하는 세관 신고서((Customs Service entry summary) 양식(또는 전자통관시스템 문서)의 사본으로 날짜가 기재된 것, 또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지급영수증, 계약서와 같이 해당 수입 제품의 판매·구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상기한 수입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기타 관련 상업 문서 등의 문서를 제공한다. 19 CFR 351.225(c)(2)(vi)(B) 참조. 특정 문서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아래의 부록 A에 해당 문서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해당 문서 취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시한다.
– 관련 문서에 관한 서술 및 해당 문서의 참조번호 기입. 모든 문서는 동일 판매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제품이 아직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없음"이라고 적는다.
○ 다음의 서술은 2b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문서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문서 간의 구체적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 위의 2b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각 문서의 관계에 관한 설명 기입. 문서마다 수량이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이 서술을 통해 문서 간에 나타나는 분명한 불일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신청자는 관련 설명을 확증하는 데 필요한 추가 문서를 제공하고 이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송장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그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품이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지 않은 경우 — 19 CFR 351.225(c)(2)(x) 참조.
○ **제품이 상업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진술.** 19 CFR 351.225(c)(2)(x)(A) 참조.
– 제품이 상업적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 기입 및 제품 생산국 적시.

○ **제품이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된 국가에 관한 기술.** 19 CFR 351.225(c)(2)(x)(B) 참조.
– 제품이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된 국가를 적시하는 진술 기입. 해당하는 국가를 모두 기재한다.

○ **미국 외 국가에서의 해당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관련 문서.** 19 CFR 351.225(c)(2)(x)(C) 참조.
– 제품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 제공.

제V절: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범위판정 신청자의 정확한 성명과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
○ 위에 요청된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기입.

2. 상호나 "사업명(doing-business-as, DBA)"과 같이 자국 시장이나 제3국, 또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이름.
○ 모든 상호나 사업명, 또 상호나 사업명이 사용되는 시점과 상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표를 모두 채우고, 이러한 대체 명칭 각각에 대해 사업면허/등록서류상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는 표에 행을 추가한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사업자등록증 기재 (예/아니요)	상호/사업명을 사용하는 지위
상호/사업명		(예.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상호/사업명		(예.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상호/사업명		(예.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3. 회사의 사업면허/등록서류에 등재되지 않은 상호에 관한 설명 및 회사가 해당 상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빙자료.
○ 상기 요청에 따라 설명 기입. 설명에서 증빙서류가 언급되어야 한다.

4. 신청자는 다음 진술의 정확성을 인증하며, 이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다.
○ 신청자는 명령 대상 국가의 제품 생산자이다.
○ 신청자는 명령 대상 국가 제품의 수출자이다.
○ 신청자는 제3국 제품의 수출자이다.
○ 신청자는 미국의 제품 수입자이다.
○ 신청자는 미국의 국내 유사 제품 생산자이다.
○ 신청자는 제3국의 제품 가공자이다.
○ 신청자와 제품의 관계는 위와 다른 경우이다(자세한 설명 제공).

상기 요청에 따라 신청자와 제품 생산·수출·수입·가공의 관계에 관한 상기 진술 기재.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 제품의 관계를 입증하거나 추가 설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록 A

일부 증빙서류를 제공했지만 본 신청서에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완전하고, 판독 가능하며,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하지 못한 모든 기업은 부록 A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하지 못한 문서가 무엇인지 적시한다. 아래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문서의 예를 열거한 것이다. 해당 목록은 예시용으로 신청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진
- 도안
- 사양
- 제품 표준
- 마케팅 자료
- 제품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기타 견본
- 세관 신고서((Customs Service entry summary) 양식(또는 전자통관시스템 문서)의 사본
- 송장
- 계약서
- 기타 관련 상업 문서
- 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비상업 문서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한 증빙서류를 적시하는 것 외에 누락된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신청의 목적에서 해당 데이터 취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시한다.

완전하고, 판독 가능하며,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하지 못한 문서에 관한 기술 및 이의 취득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관한 서술 기입.

단, 누락된 정보가 범위판정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정보 누락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무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부록 B
사실관계 정확성 인증 및 송달증명서

사실관계 정확성 인증

범위판정 신청에서 사실관계 정확성 인증은 19 CFR 351.303(g)를 따른다.

(g) 인증. 사실관계 정보가 포함된 각 제출물에는 이 조의 제(g)(1)항에 적시된 자의 다음과 같은 인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당사자에게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이 있을 때는 이 조의 제(g)(2)항에 규정된 인증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 당사자는 서명이 기재된 원본 인증서를 해당 인증이 속하는 제출물의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명이 기재된 원본 인증서는 미국 상무부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무부에 제출하는 제출물에는 인증서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실관계 정보를 제출할 **공식적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 회사는 범위판정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 인증:*

현재 **(회사명)**에 고용된 본인**(성명과 직책)**은 **{(국가)의 (제품)에 관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사례번호)의 (범위판정)}**에 따라 **(날짜)을 만기로 하는, 또는 (날짜)에 제출된** 첨부 제출물 (**구체적 제출물의 제목 적시**)을(를) 작성하였거나 이의 작성을 감독하였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제출물에 포함된 **(인증자의 회사명)**의 공개 정보 및 영업비밀정보가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하고 완전함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제출물에 포함된 정보가 미국 상무부의 검증 또는 확증(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 본인은 미국 법률(미국법전 제18편 제1001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미국 정부에 고의로 중대 허위진술을 하는 개인에게 형사제재를 부과함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본인은 이 제출물이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절차 기록에서 철회될 수 있음에도 미국 상무부가 인증의 정확성 판정을 위한 취지에서 영업비밀 제출물을 비롯해 이 제출물을 보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은 서명이 기재된 인증서 사본을 이 제출물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 제출함을 확인한다.

서명:
날짜:

* 여러 사람이 인증하는 경우 인증서 첫 문장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한편 모든 사람이 인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에 맞춰 단수대명사와 소유형용사를 변경해야 한다(예. “I [본인]”는 “we[우리]”로, “my knowledge[본인이 아는 한]”는 “our knowledge[우리가 아는 한]”로 바꾸어야 한다).

(2)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인증:***

(법무법인 또는 기타 기업)에 소속된 본인**(성명)**은 **({ } 속에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기입: (회사명이나 국가 정부, 또는 기타 당사자 이름)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국가)의 (제품)에 관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사례번호)의 (범위판정)**}**에 따라 **(날짜)을 만기로 하는, 또는 (날짜)에 제출된** 첨부 제출물 **(구체적 제출물의 제목 적시)**을(를) 읽었음을 확인한다. 이 제출물과 관련한 **({ } 속에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기입: {변호사} 또는 {고문, 작성자, 검토자})**(으)로서 본인은 이 제출물에 포함된 정보가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하고 완전함을 확인한다. 본인은 미국 법률(미국법전 제18편 제1001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미국 정부에 고의로 중대 허위 진술을 하는 개인에게 형사제재를 부과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 본인은 이 제출물이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절차 기록에서 철회될 수 있음에도 미국 상무부가 인증의 정확성 판정을 위한 취지에서 영업비밀 제출물을 비롯해 이 제출물을 보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은 서명이 기재된 인증서 사본을 이 제출물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 제출함을 확인한다.

서명:
날짜:

*** 여러 대리인이 인증하는 경우 인증서 첫 문장에 모든 대리인의 이름과 소속 기업을 기재하는 한편 모든 대리인이 인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에 맞춰 단수대명사와 소유형용사를 변경해야 한다(예. "I[본인]"는 "we[우리]"로, "my knowledge[본인이 아는 한]"는 "our knowledge[우리가 아는 한]"로 바꾸어야 한다).

송달증명서

이로써 본인(증명 책임자 이름)은 (회사명) 을(를) 대표해 상기 제출물의 사본이 1급 우편 또는 직접 배달(사용된 방법 명시)을 통해 다음 당사자에게 (날짜) 자로 송달되었음을 확인한다.

다음을 대표함.
이름과 주소

(증명 책임자 서명)

262) 범위판정 신청서 제출 관련 규정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9/20/2021-17861/regulations-to-improve-administration-and-enforcement-of-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y-laws.

263) 예컨대, 반덤핑·상계관세 절차에 제출된 범위판정 신청 고시(*Notice of Scope Ruling Applications Filed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7 FR 2594(2022년 1월 18일) 참조.

참고 문헌

[국내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2016), 『한국형 FTA 원산지규정·절차 도입을 위한 현황 비교 분석』.
- 국제원산지정보원(2020), 『비특혜원산지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역할 연구』.
- 김중근·정은경(2022), "FTA 원산지증명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2권 제2호.
- 김창봉·박주원(2010),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 신한동(2007),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한 연구-교토협약 및 WTO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 심동섭·서청석(2008),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 이명구(2007), "FTA 원산지제도와 관세행정상 운용전략",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40호.
- 임목삼(2020), "한-미 원산지 표시 제도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21권 제2호.
- 임언선(201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정재완(2007), "특혜관세의 적용과 원산지제도",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46호.
- 정재호·이재선(202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 22-02.
- 조성제(2007),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 지표누리, "(한국의) 상대국별 수출비율"
- 최홍석(2004), 『최신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원산지결정기준』.
- 한상현(2010),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증명제도의 비교와 전망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 KOTRA 해외시장뉴스(2025). "[미국관세조치]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6.10 업데이트)"
- KOTRA 해외시장뉴스(2025). "트럼프 행정부, 對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발표 주요내용"

[해외자료]

- Estevadeordal & Kati Suominen(2004),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Working Paper*, 15.
- IMF(2010), "World Economic Outlook(WEO) Recovery, Risk, and Rebalanc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John J. Barcelo III(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06-049, Conel Law School.
- USTR(202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WCO(2011), *Survey of Single Window Implementation,* World Customs Organazation.
- WCO(2011), *Case Studies on Systematic Exchange of Commercial Information between Customs Administrations in Bilateral and Regional Arrangements,* World Customs Organazation.
- WCO(2020), *Comparative Study on Certification of Origin*, World Customs Organazation
- WTO(2002),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REG/W/45, 04/2002.
- WTO(2024), "World Trade Statistics(Key insights and trends in 2024)"

[협정문 및 참조 사이트]

- 대한상공회의소(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Main/appl/Main.asp)
- 법제처(https://www.moleg.go.kr/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DATAWEB, https://dataweb.usitc.gov/trade/search
- 미국 백악관(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entralized Electronic Service System (ACCESS), https://access.trade.gov/
-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force and Protect Act (EAPA), https://www.cbp.gov/trade/eapa
- 미국 연방정부,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Remedies Information System, https://trade-remedies.wto.org/en
- Ciel HS(https://www.clhs.co.kr/)
-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
- UN ITC TRADEMAP, https://trademap.org/index.aspx
- Yes FTA(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우회 및 회피조사 사례 참고 문헌]

[우회조사]

제3국 완성·조립

[A-570-029]

- (조사개시)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and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Nov 4, 2016)(barcodes : 2016-27850)
- (예비판정)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and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Dec. 5, 2017)(barcodes : 2017-26607),
- (최종판정 및 메모)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and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May 23, 2018)(barcodes : 2018-11029)

[A-570-026]

- (조사개시)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November 14, 2016)(barcodes : 2016-27327)
- (예비판정)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December 11, 2017)(barcodes : 2017-26606)

- (최종판정)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May 23, 2018)(barcodes : 2018-11028)

[A-570-943]

- (조사개시) U.S. Department of Commerce,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lf-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5 Fed. Reg. 71877 (November 12, 2020) 및 첨부 Initiation Memorandum
- (예비판정)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Aug 10, 2021)(barcodes : 4150086-02(From Brunei), 4150088-02(From the Philippines))
- (최종판정 및 메모)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Nov 19, 2021)(barcodes : 4184168-02)

[A-570-910]

- (조사개시)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Pip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on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Vietnam)(August 4, 2022)(barcodes : 4269087-2)
- (예비판정)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Pip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Vietnam)(April 12, 2023)(barcodes : 4363640)
- (최종판정)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Pip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Vietnam)(November 2, 2023)(barcodes : 4457488)

[A-570-112]

- (조사 개시)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December 14, 2022)
- (예비 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ugust 24, 2023)
- (최종 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ertain Collated Steel Stap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January 23, 2024)

[A-570-967]

- (조사개시)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March 5 2018)(barcodes : 2018-04390)
- (예비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May 17 2019)(barcodes : 2019-10275)
- (최종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and Partial Rescission(August 12 2019)(barcodes : 2019-17194)

[A-570-053]

- (조사 개시)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rea & Thailand)(July 12, 2022)(barcodes : 4262999).
- (예비 판정)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March 22, 2023)(barcodes : 4354538),
- (최종 판정 및 메모)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November 17, 2023)(barcodes : 4466289). and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Circumvention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17, 2023)(barcodes : 4466289-02).

[A-570-095]

- (조사 개시)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Scope and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f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October 19, 2023)
- (예비 판정)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Preliminary Neg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Cambodia(July 13, 2024)
- (최종 판정) Aluminum Wire and Cabl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Final Neg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the Kingdom of Cambodia(January 17, 2025)

[A-570-900]

- (조사개시)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December 7, 2017)(barcodes : 2017-26398)
- (예비판정) C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November 15, 2018)(barcodes : 2018-24939)
- (최종판정)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Determin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July 16, 2019)(barcodes : 2019-15084)

[A-570-051]

- (조사개시)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ne 17, 2020)(barcodes : 2020-13075)
- (예비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ly 29, 2022)(barcodes : 2022-16307)
- (최종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ly 20, 2023)(barcodes : 2023-15431)

[A-570-979]

- (조사개시)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April 1, 2022)(barcodes : 2022-06827)
- (예비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December 1, 2022)(barcodes : 4419744-01)
- (최종판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o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Determination and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With Respect to Cambodia,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August 23, 2023)(barcodes : 2023-18161)

추후 개발된 물품

[A-570-124]

- (조사개시)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September 21, 2018)(barcodes : 2018-20609)
- (예비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June 11, 2019)(barcodes : 2019-12285)
- (최종판정)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November 22, 2019)(barcodes : 2019-25889)

[A-570-967]

- (조사개시)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March 5, 2018)(barcodes : 2018-04390)
- (예비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May 17, 2019)(barcodes : 2019-10275)
- (최종판정) Aluminum Extrusi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and Partial Rescission(August 12, 2019)(barcodes : 2019-17194)

[A-570-124]

- (조사 개시)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y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Dual-Piston Engines(April 25, 2022)(Barcodes : 4233381)
- (예비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Dual-Piston Engines; Rescission in Part(September 29, 2022)(Barcodes : 4287463)

- (최종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Dual-Piston Engines(February 22, 2023)(barcodes : 4344175)

사소한 경미한 변경

[A-570-124]

- (조사 개시)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60cc Up To 99cc Engines(barcodes : 4160564)
- (예비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barcodes : 4278807)
- (최종 판정) Certain Vertical Shaft Engines Between 99cc and Up To 225cc,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60cc Up To 99cc Engines(barcodes : 4319517)

[A-570-831]

- (조사개시) Fresh Garlic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Antidumping Duty Order - Small and Large Garlic Chunks(June 8, 2023)(barcodes : 4459389)
- (예비판정) Fresh Garlic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 Small and Large Garlic Chunks, 88 FR 77959 (November 14, 2023)(barcodes : 4459389)
- (최종판정) Fresh Garlic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 Small and Large Garlic Chunks(June 7, 2024)(barcodes : 4574105)

미국내 조립·완성

[A-570-104]

- (조사개시) 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bon and Alloy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Order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 - Unthreaded Pins(July 12, 2023)(barcodes : 4399417)
- (예비판정) 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bon and Alloy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Unthreaded Pins(March 14, 2024)(barcodes : 4524091)
- (최종판정) Alloy and Certain Carbon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bon and Alloy Steel Threaded Ro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 Unthreaded Pins(August 20, 2024)(barcodes : 4618865, 4618866)

[A-570-022]
- (예비판정) Certain Uncoated Paper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for Uncoated Paper Rolls(November 13, 2020)(barcodes : 2020-25159-1),
- (최종판정) Certain Uncoated Paper from Braz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ndonesi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s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s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for Certain Uncoated Paper Rolls, 86 FR 71025 (December 14, 2021); Correction(January 13, 2022)(barcodes : 4189069-01, 4189069-02, 4200445-01, 4200447-01)

CBP 회피조사 EAPA

[A-570-082]
- EAPA Case No. 7509: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oration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December 22, 2023) ¦ Rulings
- EAPA Investigation 7509: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 (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August 21, 2023) ¦ Publications
- EAPA Investigation No. 7509: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oration (Notice of Covered Merchandise Referral, June 9, 2021) ¦ Publications
- EAPA Investigation 7509: Vanguard National Trailer Corp. (Notice of Initiation of Investigation, November 23, 2020) ¦ Guidance
- Slip Op. 25-18, Asia Wheel Co., Ltd. v. United States, Court No. 23-00143,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Feb. 21, 2025)

[A-570-918]
- EAPA Case Number 15135/7175: Eastern Trading NY Inc.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as to Evasion, August 14, 2017) ¦
- EAPA Investigation Number 15135/7175: Eastern Trading NY Inc. (Notice of Initiation of Inv. and Interim Measures, Dec. 13, 2016)

[A-570-836]
- EAPA Consolidated Case 7647: Various Importers (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November 30, 2022)
- EAPA Consolidated Case 7647: Various Importers (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July 22, 2022)
- EAPA Consolidated Case 7647: Various Importers (Notice of Initiation of Investigation and Interim Measures, October 26, 2021)

[A-570-092]
- EAPA Consolidated Case 7856: Various Importers (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September 19, 2024) ¦ Publications

[A-570-139]
- EAPA Case 7907: Sinoboom North America, LLC (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June 30, 2025) ¦ Publications

[A-570-062]
- EAPA Consolidated Case 7819: Besttn Industry Inc. (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May 29, 2024) ¦ Publications

[A-570-992]
- EAPA Cons. Case 7950: Various Importers (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September 15, 2025) ¦ Publications